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차 례 Contents

제1편

2026년도 여성·아동권익증진지침 현황 및 방향 ————— 1

- I. 전략목표 3
- II. 여성·아동권익증진 추진연혁 4
- III. 시설 및 상담소 현황 26
- IV. 2026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 내용 27
 - IV-1. 2025년·2026년 주요사항 비교표 31
- V. 2026년 주요사업 공통 적용사항 93
- VI.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 예산 94

제2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 97

- I. 무료법률 지원사업 99
- II.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105

제3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 119

- I. 성폭력피해상담소 121
- II.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시설) 157
 - II-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57
 - II-2.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 운영 지침 202
 - II-3.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수당 운영 지침 223
 - II-4.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252
- III.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269
- IV.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280
 - IV-1.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281
 - IV-2. 돌봄 비용 지원 306
 - IV-3.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314
- V.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325

제4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 363

I. 가정폭력 상담소	365
II.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시설)	391
III.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429
IV.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431
V. 여성긴급전화 「1366」	445
VI. 『긴급피난처』 지정·운영	459
VII. 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의료비 지원	471
VIII.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478
VIII-1. 사업수행 체계	478
VIII-2. 세부 운영지침	484

제5편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 491

I. 스톱킹·교재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운영	493

제6편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북한이탈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 — 515

I.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비공개 시설)	517
II.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운영(비공개 시설)	550
III.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557
IV.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574
V.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603

차 례

Contents

제7편

아동·청소년성보호사업 운영지침 ————— 613

I.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615
I-1. 취업제한제도 현황	615
I-2. 취업(예정)자 등 성범죄 경력 조회	625
I-3. 취업(운영)중인 성범죄 경력자 여부 점검	628
I-4.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630
I-5. 종전 형 확정자에 대한 제도 적용 및 불복절차	631
II.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651
III.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657

제8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 677

I.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공통지침	679
II.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 및 이용	709
III.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개별지침	711
III-1. 일반 및 청소년 지원시설 운영	711
III-2.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	716
III-3.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운영	718
III-4. 자활지원센터 운영	720
III-5.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부설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725
III-6.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728
IV.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731
V.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기능보강	739
VI.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761
VI-1. 추진체계 및 기준	761
VI-2. 『열린터』 운영	774
VII.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776

VIII.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기타 지원	790
VIII-1. 성매매피해자 신용회복 지원	790
VIII-2. 성매매피해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고용노동부)	791
VIII-3.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지원 절차	792
VIII-4. 성매매피해자의 주거지원	793

제9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 795

I.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797
I-1. 사업 개요	797
I-2.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결정 및 등록 절차	801
I-3.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804
I-4.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조사 및 보고	809
I-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법률상담등 지원	810

제10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 811

I.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개요	813
II.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818
III. 세부 사업 운영	824
IV. 예산의 지원 및 관리	831
V. 사업점검 및 평가	836

차 례

Contents

제11편

인신매매등 예방 및 보호·지원 운영지침 ————— 839

I.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개요	841
II. 인신매매등의 정의	843
III.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	845
IV. 인신매매등 피해자 신고의무	851
V.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전화	854
VI. 한시적 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인서 발급	856
VII.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운영지침	858
VIII. 인신매매등 신고의무자 교육	872

※ 각 지침별 ‘서식 및 참고자료’는 동 지침에 인쇄하지 않고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주요정책 → 정책자료실 → 인권보호)에 업로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사업 담당과 및 전화번호

번호	세부사업명	담당과	전화번호
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성폭력방지과	02-2100-6397
		친밀관계폭력방지과	02-2100-6426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성폭력방지과	02-2100-6397
3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침	디지털성범죄방지과	02-2100-6165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친밀관계폭력방지과	02-2100-6426
		친밀관계폭력방지과 (1366)	02-2100-6428
5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친밀관계폭력방지과	02-2100-6430
6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	친밀관계폭력방지과	02-2100-6447
7	북한이탈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		
8	아동·청소년성보호사업 운영지침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취업제한·신고의무제)	02-2100-6409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청소년성문화센터)	02-2100-6403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폭력예방교육과	02-2100-6448
1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권익정책과	02-2100-6489
11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폭력예방교육과	02-2100-6554
12	인신매매등 예방 및 보호지원 운영지침	폭력예방교육과	02-2100-6452

제1편

2026년도 여성·아동권익증진지침 현황 및 방향

- I. 전략목표
- II. 여성·아동권익증진 추진연혁
- III. 시설 및 상담소 현황
- IV. 2026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 내용
- V. 2026년 주요사업 공통 적용사항
- VI.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 예산



I

전략 목표

전략
목표

여성·아동폭력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국정98)

성과
목표

1.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2.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4.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5.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및 성매매·인신매매 피해 지원 강화
6. 아동·청소년 성보호 기반 강화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992	- 성폭력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결의(3.2) * 여성정책심의위원회 - 성폭력근절 실무추진회의(4.28) * 국무총리실 - 시·도에 보호업무지침 시달(5.18) - 시·도에 보호시설 시범운영지침 시달(8.31) •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서울 자매복지회관 지정)
	1994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 성폭력상담소 설치(11월)
	1995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1월)
	2000	- 장애인성폭력전문상담소 신설(9월)
	2001	- 여성부 신설로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이관(1월) - 「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 위촉(10월) • 경찰병원 등 7개소
	2002	- 성폭력체크리스트(진료기록) 및 성폭력응급 키트 개발(2월) - 시·도별 종합병원급 전담의료기관 확대(부산의료원 등 12개소) 지정(11월)
	2003	- 아동성폭력전담기구 설립 추진기획단 구성·운영
	2004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4월, 5월) -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6.18), 연세의료원 위탁·운영 - 성폭력피해자 치료보호제도 개선 • 가정·성폭력 치료비 통합운영 • 시·군·구 치료비 집행 및 치료비집행절차 간소화 • 성폭력응급키트 처치비 75,000원 신규 인정
	2005	- 영남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6. 9), 경북대병원 위탁·운영 -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6.29), 전남대병원 위탁·운영 -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설치추진(8개소)
	2006	-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설치(6개소) 및 운영(14개소) -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2007	-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의 사업수행방식 전환(지자체보조)
	2008	-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수립·추진('08.4~) ※ 총리실을 중심으로 9개 부처 합동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구성·운영
	2009	-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 수립·추진('09.10~)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2010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시범 운영지역 선정('10.7월) - 지역연대 표준모델 개발 연구('10.10월~)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사업 실시 - 보완된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설치·운영(2개소) ※ 경남(창원)전용쉼터(8.24개소), 경북(김천)전용쉼터(9.1개소) -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4개소 신설(부산, 강원영동, 전남, 서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10.4.15)
	2011	-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2개소 신설(경북, 울산)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표준운영모델 개발·보급 - 아동안전지도 제작 매뉴얼 개발·보급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11.1.1)
	2012	- 정부위탁형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 전환(부산, 광주, 충북) - 강원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개소(12월, 원스톱 및 아동센터 통합) -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교육(205명) - 성폭력 피해자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교육(150명) - 「성폭력·가정폭력 실태조사 방법 등 개선에 관한 연구」 완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3.6월 시행 예정) • 보호시설 종류 세분화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신고제 등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로 명칭 변경
	2013	- 원스톱지원센터 3개소 신규 개소(부산, 인천 북부, 경기 서부) - 경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개소(12.23, 기존 경기 원스톱 기능 확대) -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5개소 신규 지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축 및 개소 추진 • 장애인 보호시설 2개소 신규 개소(전남, 충남) 및 특별지원시설 신축 추진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개소 신규 개소(경남) - 2013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 2013년 전국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평가 실시(여성폭력평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6.19)
	2014	-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신규 개소(고양시) 및 거점센터 (아주대학교병원) 개소 - 성폭력상담소 4개소 신규 지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5개소 신규 개소 • 장애인 보호시설 2(대전, 제주), 일반(전남), 특별지원 2(경기, 대전) - 피해자 간병비 및 돌봄비용 지원, 치료동행서비스 신규 실시 -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사업비(생활지원비 등) 및 직업훈련비 신규지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21, 5.28)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2015 -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서울) 및 경북서부해바라기센터(경북 김천) 신규 개소 - 성폭력상담소 4개소 신규 지원 - 성폭력 피해자 자립공동생활시설 2개소 신규 지원(경북, 경남) - 피해자 돌봄비 지원 대상 13세 이상 1~3급 장애인까지 확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3) - 지역안전프로그램 사업 17개 시·도 실시
	2016 -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서울) 신규 개소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신규 지원(제주)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시행(16.6.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16.9.3)
	2017 -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전북) 신규 개소 -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충북) 신축 추진 - 피해자 돌봄비 지원 대상 피해아동의 13세 미만의 형제·자매까지 확대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추진(17.9.26.~)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시행(17.6.2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17.10.30)
	2018 -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강원) 신규 개소 -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충북) 개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개소(18.4.30.)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상담소 등의 장, 상담원뿐만 아니라 그 밖의 종사자도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18.3.13. 시행)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및 구상권 행사 근거 신설(18.9.14.시행) - 성폭력 피해자 비급여 심리치료 지원 단가 상향(1회당 15만원 → 1회당 20만원) - 외국인 등록과 상관없이 성폭력피해자라면 의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 -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사업 종료(19년 법무부로 이관)
	2019 -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부산) 신규 개소 - 전국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에 인력(1인) 추가배치 등 지원 강화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19.9.19)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애 대해서만 전임 의무를 부과하고, 다른 종사자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의 겸임을 허용하도록 개선
	2020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인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제주) 신규 개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29, 10.20)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2021	-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광주) 신규 개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1.12, 시행 7.13)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개선 •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단체의 장과 기관내 피해자 보호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성폭력 사건 신고의무 부과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신설
	2022	- 군 성폭력피해자 특화상담소 신규 국비지원(1개소, 10월) -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 전국 만19세~64세 이하 일반국민 1만명 대상 조사 -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사업* 시행('22.4.11) *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 위헌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출석 증가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22.11.11) • 피해자 지원기관의 폐지 신고시 서류 절차 간소화* *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로 대체
	202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4.18, 시행 '24.4.19)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 의한 기관 내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기간 단축(3개월→1개월) 및 사건통보 등 의무 위반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신설 -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경남) 신규개소
	2024	- 퇴소자립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 충남서남부해바라기센터 신규 개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4.4.19)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기준으로서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 외 가정폭력, 성매매, 스토킹 또는 성희롱 방지 관련 업무 근무 경력 인정 등 자격기준 완화
	2025	- 퇴소자립지원금 단가 상향(5백만원 → 1천만원) -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설(최대 5년간 월50만원) - 전남남부해바라기센터 신규 개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12.30., 시행 '26.7.1.) • 성폭력 피해 학생 치료, 상담 조치로 인한 결석 출석일수 포함, 보호시설 입소 미성년 피해자 입소기간 연장(25세가 될 때까지), 상담원·종사자 등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 마련 등
	2026	-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소(경기) 유형전환(일반→장애인)으로 1개소 확대 운영(일반76개소, 장애인 23개소)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2021	-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7개소) 운영 개시
	2022	-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10개소) 운영
	2023	-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14개소) 운영
	2024	-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14개소) 운영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24.10.16., 시행 '25.4.19.)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자 일상회복 신설(제3조), 삭제지원 대상에 신상정보 추가 (제7조의3), 중앙 및 지역 디성센터 설치운영 규정 신설(제7조의4)
	2025	-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15개소) 운영
	2026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7개소) 운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1997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12월)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12월)
	1998	- 가정폭력상담소 설치(7월)
	1999	- 가정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지원(1월) - 가정폭력피해자 일반치료비 지원(1월)
	2001	- 여성부 신설로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이관(1월)
	2002	- 가정폭력·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3월)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가정폭력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사업 협약(12월)
	2003	-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개발·보급(12월)
	2004	-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89개 상담소)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월, 4월, 5월) • 상담소, 보호시설의 설치 신고·인가권→시군구 자치단체장에게 부여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구상권 행사요건 완화 등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사업 협약(12월)
	2005	- 여성폭력피해자 진료지원 협약식 체결(1월) •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동반아동에 대하여 무료진료 지원
	2006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4월, 10월) • 정기(3년) 실태조사 및 초·중·고 예방교육 실시 • 피해아동 거주지의 취학지원 • 상담소 설치·운영기준 강화 등 • 교육훈련시설 신고제 도입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구상권 임의규정으로 변경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2007	-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용역 실시('06.8~'07.8)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의 폭력 재발률과 배우자 만족도 등 효과성 검증
	2008	- '08년 주거지원사업 시범실시 • 서울, 부산 2개 지역에 임대주택 21호 공급
	2009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09.11.9 시행) •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국가나 지자체에서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 보호시설 입소·퇴소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 • 여성긴급전화 1366 법적 근거 마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1.1월 시행예정) •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 및 동반아동에 대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지원 근거 마련 - 폭력피해여성 지원서비스 개편 추진
	2010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1월, 5월, 11월) •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 및 동반아동에 대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의료비 등 지원 근거 마련 • 피해자 긴급구조시 경찰관 동행 • 가정폭력관련 시설평가 및 평가결과 지원 등에 반영 • 가정폭력예방, 계도 등을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배포·송출 근거 마련 • 각급 학교에서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통합실시 • 장애인 가정폭력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 개선 -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 • 전국 16개 시·도 3,800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조사 등 - 2010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 상담소, 보호시설, 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등 363개소 평가실시
	2011	-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마련(5월, 법무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협의) • 사법경찰관의 긴급입시 조치권 도입 및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 주거지원시설 3개 지역 추가 확대(대구, 경기(안산), 제주) - 가족보호시설 설치 지원 •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설치 운영기관 선정(8개소) - 보호시설 운영비를 절감하여 입소자중 비수급자에게 생계비 지원
	2011	-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118개 상담소) -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 가정폭력 상담프로그램 운영인력 역량강화 교육 : 390명(양평원 위탁) ※ 성폭력 상담운영인력 포함 참여인원 : 744명 - 가정폭력을 막는 힘(홍보동영상) 제작, 배포 - 가정폭력 사건 수사관계자를 위한 인권의식교육 시범실시(52회 2,272명)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201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경찰관의 현장출입 및 조사권 도입 -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용역(3~9월) -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지원안내서 제작(50,000부) - 가정폭력 사건 수사관계자를 위한 인권의식교육 확대(36,239명) - 10세 이상 남아 동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추가 확충(5개) - 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36호) - 보호시설 입소 아동 교육비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수혜자 확대를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 치료회복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12.5~12.11개 지역별 1개소 운영) - 여성폭력피해 상담소 관리 및 서비스 수준향상 방안연구(9~12월) - 가정폭력 피해 대상과 유형별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발연구('12.7~'13.1월) -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122개 상담소)
	2013	- 8개 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마련(6월) - 2013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 - 10세 이상 남아 동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추가 확충(3개소) - 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40호)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연 5만원 이내) - 아동교육비, 교복비 지원대상 확대 • 아동교육지원비 (부교재비 : 초·중·고·고등학생, 학용품비 : 초·중·고·고등학생) • 교복비(중·고등학교 신입생, 전학생) - 보호시설에 입소한 비수급자에 대한 비일상적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추가
	2014	-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 시행('14.1.31) • 경찰관 현장출동 의무화, 가정폭력 의무대상기관 확대(학교 →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경찰관 현장출입·조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 시행('14.7.22) •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점검 및 부진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 10세 이상 남아 동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추가 확충(2개소)
	2014	- 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38호)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 신규지원('14.1월~)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취·창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비 신규 지원('14.1월~)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2015	- 10세 이상 남아 동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추가 확충(2개소) - 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43호) -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스트레스 치유프로그램 신규운영 지원 -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 시행('15.12.23) • 가정폭력 추방주간(매년 11.25~12.1) 신설 등
	2016	- 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30호)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16.9.3) • 가정폭력관련 시설 휴·폐지 시 시설 이용자의 권익보호조치 시행 • 가정폭력관련 시설 폐지 시 관할 세무서와 시·군·구 중 한 곳에 폐지 신고서 제출 가능
	2017	- 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20호) -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 국회의결('17.12.5 / '18.6월 시행) • 가정폭력피해자 인권보호 관점의 권리보장 강화의 기본이념 신설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자립·자활 지원 강화 • 가정폭력상당소를 외국인·장애인 대상 특화 운영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수사·재판과정 동행 등 다양한 지원 규정 • 가정폭력범죄 관련,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 시 벌칙 조항 신설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17.11.29) • 긴급전화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및 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 입소 기간 연장 절차 완화
	2018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18.6.13) • 가정폭력피해자 인권보호 관점의 권리보장 강화의 기본이념 신설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자립·자활 지원 강화 • 가정폭력상당소를 외국인·장애인 대상 특화 운영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수사·재판 과정 동행 등 다양한 지원 규정 • 가정폭력범죄 관련,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 시 벌칙 조항 신설 - 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20호) -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절차 간소화 등 건강지원 강화(1월) -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국비 지원 10개소 확대(10 → 20개소) -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다양한 여성폭력 관련 교육 추진
	2019	- 가정폭력피해자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 주택 20호 신규 공급 -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국비 지원 10개소 확대(20 → 30개소) - 가정폭력 일반상담소 국비 지원 15개소 확대(83 → 98개소)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실시('19.1월~)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2020	- 가정폭력피해자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10호) - 가정폭력피해자 일반보호시설 → 가족보호시설 전환(1개소)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인력확충(상담소 43명)
	2021	-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및 법률·의료 등 필요서비스 제공(4월)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인력확충(상담소 43명, 보호시설 65명) - 가정폭력피해자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10호)
	2022	- 가정폭력피해자 일반보호시설 → 가족보호시설 전환(2개소)
	2023	- 가정폭력피해자 일반보호시설 → 가족보호시설 전환(1개소) -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 신설(1개소) - 가정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강원도 지역 확대(5호)
	2024	-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국비 지원 26개소 확대
	2025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퇴소 후 2개월 이내 재입소자 자립지원금 시청 가능) -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보조기 지원가능 -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신규 설치(1개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설치(1개소) 및 전환(3개소, 일반→가족) - 가정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전남 지역 확대(3호)
여성긴급전화 「1366」	1997	- 위기여성 상담 특수전화번호 지정(12월)
	1998	- 위기여성 상담특수전화 「1366」 운영 개시(1월) - 120권역에 확대 설치(12월)
	1999	- 142권역에 확대 설치(12월)
	2000	- 144권역에 확대 설치(6월) - 전화권역의 광역화에 따라 권역별 통합 추진 • 144권역 → 56권역으로 통합·조정(12월)
	2001	- 여성부 신설로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이관(1월) - 전화권역의 통합·조정 완료(6월) : 56권역 → 16권역 - 전담직원 144명 배치 및 인건비 신규지원으로 365일 24시간 운영체계 구축(7월) - 시·도별 지역협의체 운영(7월)
	2002	- 외국인성매매·성폭력피해자보호를 위한 동시통역시스템 도입·운영(11월) • 제공언어 :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2003	- 여성긴급전화1366 주요상담사례집 발간(12월)
	2006	- 이주여성 긴급전화1366센터 설치(11월)
	2007	- 시군구 차원에서 지역협의체 확대(3월) - 1366 상담시스템 통계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4월)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여성긴급전화 「1366」	2009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09.11.9 시행) • 여성긴급전화 1366 법적 근거 마련
	2010	- 현장상담원 센터별 2명 배치
	2011	- 긴급전화 1366센터 외국어 응대 매뉴얼 발간(2월) -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북부센터 개소(6월)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개최(6월)
	2012	- 1366 중앙센터(위기여성을 위한 전국단위 대응체계) 설치(9월) - 여성긴급전화 중앙센터 설치(9월)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센터의 연계 및 지원기능 강화
	2013	- 여성긴급전화 중앙센터 해외성매매피해자지원을 위한 UIFN 서비스 운용 -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초기지원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매뉴얼 개발
	2014	- 지역센터당 상담원 1명씩 증원(총 17명) - 중앙센터 긴급피난처 신규설치
	2015	- 센터당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1명씩 신규배치(총 18명)
	2016	- 센터당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1명씩 증원(총 18명 증원)
	2017	- 센터당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1명씩 증원(총 18명 증원)
	2018	- 1366지역센터 상담인력 증원(총 34명) - 1366통합상담시스템 구축 및 운영(1월)
	2019	- 1366 운영매뉴얼 및 상담매뉴얼 제작
	2023	-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 시범운영(부산, 경기)
	2024	-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 개소 -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 확대(부산, 경기, 서울, 대전, 울산)
	2025	- 여성긴급전화1366시스템 범정부 AI기반 통합콜센터 시스템 구축 -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 확대 운영(11개소)
스토킹 피해자 지원	2023	- 스톱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23.1.17.)·시행('23.7.18.) - 스톱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실시
	2024	- 스톱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운영기관 확대 : 17개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2004	-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시작 : 2개소
	2006	-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설치·운영(11월) • 7개 국어 지원
	2007	-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확대 : 4개소 -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 홈페이지 오픈(1월)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2008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으로 센터 명칭 변경(6월)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원 및 지원언어를 8개 국어로 확대(7월) -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교육 실시 • 프로그램 연구·개발(8월) • 4개 지역 시범교육 실시(7월) • 전국 확대 실시(12월)
	2009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권역별 지역센터 설치(1~2월) • 4개소(수원, 대전, 광주, 부산) -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확대 : 18개소 -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으로 명칭 변경(11월) - 이주여성자활공간터 설치 계획 수립 및 부지선정(서울시 시흥동)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3주년 성과 및 실적분석(12월)
	2010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권역별 지역센터 설치(1~7월) • 2개소(구미, 전북)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지원언어를 8 → 10개 국어로 확대 - 이주여성 쉼터 18개소 운영 및 기능보강을 통한 환경개선 -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10년 11월, 서울시 시흥동) - 이주여성 그룹홈 운영 1개소(서울) -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 운영(2,742명)
	2011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야간상담팀 신규 운영(5월) - 이주여성쉼터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전국 확대실시
	2012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야간상담팀 기능 강화(3월) • 야간상담원 및 상담지원언어 확대 : 12명, 8개 국어
	2013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언어 확대(2개 국어) • 네팔, 라오스 확대 : 총 13개 국어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착신 전환(7월) - 이주여성상담원 수기집 발간(11월) - 이주여성쉼터 확대 운영(4개소) : 총 22개소 - 이주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2014 - 이주여성긴급지원(1577-1366)센터 다누리콜센터 통합운영 - 이주여성쉼터 확대 운영(2개소) : 총 24개소 - 이주여성그룹홈 확대 운영(1개소) : 총 2개소 • 보호시설 27개소 : 쉼터(24개소), 그룹홈(2개소), 자활지원센터(1개소)
	2015 - 이주여성쉼터 확대 운영(1개소) : 총 25개소 • 보호시설 28개소 : 쉼터(25개소), 그룹홈(2개소), 자활지원센터(1개소)
	2016 - 이주여성 폭력예방 홍보 책자 제작·배포
	2017 - 이주여성쉼터(1개소), 그룹홈(1개소) 확대 운영 • 보호시설 30개소 : 쉼터(26개소), 그룹홈(3개소), 자활지원센터(1개소) - 의료지원비(산후조리비) 및 아동양육비(학교준비물비) 지원 내역 확대 - 설치기준 완화(건조장 삭제)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2018	- 이주여성쉼터(2개소) 확대 운영 • 보호시설 32개소: 쉼터(28개소), 그룹홈(3개소), 자활지원센터(1개소)
	2019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신설(5개소) • 이주여성 상담소: 5개소 • 보호시설 32개소: 쉼터(28개소), 그룹홈(3개소), 자활지원센터(1개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신설(52명)
	2020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신설(3개소) • 이주여성 상담소: 8개소 • 보호시설 32개소: 쉼터(28개소), 그룹홈(3개소), 자활지원센터(1개소)
	2021	- 폭력피해이주여성 그룹홈 신설(1개소)
	2022	-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인력확충(33명)
	2024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동반아동 퇴소자 자립지원금 신설(45명)
	2025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인원 확대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2013	-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8개소 지정
	2014	-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10개소 지정(2개소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2006	- 성범죄자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제한 제도 도입·시행('06.6.30) • 취업제한기간: 5년(형이 확정된 날부터 적용) • 적용시점: '06.6.30~'08.2.3 기간 중의 성범죄자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신설('06.6.30)
	2008	-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및 대상기관 등 확대 시행('08.2.4) • 취업제한기간: 10년(형이 확정된 날부터 적용) • 적용시점: '08.2.4 이후 성범죄자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사업 실시
	2010	- 취업제한대상기관장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조회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10.1.1) - 취업제한 대상 기관 및 성인대상 범죄까지 대상자 확대 등('10.4.15) • (추가)대상기관: 개인과의 교습자 • 대상자 확대: 아동청소년대상은 물론 성인대상 성범죄까지 • 경력조회 대상자 확대: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10.1.1)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2012	-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관서 확대('12.3.16)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시행('12.8.2) • (추가)대상기관 :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12.8.2)
	2013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시행('13.6.19) • (추가)대상기관 : 경비업법인(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실을 갖춘 연습장업의 시설,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2014	-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책자 제작·배포('14.4)
	2015	-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서 출력 가능('15.1.2) -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장도 민감정보처리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가능('15.4.20)
	2016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시행('16.11.30) • (추가)대상기관 : 위탁교육기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 연 1회 점검·확인 의무 법제화 및 본인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 추가('16.11.30)
	2018	- 취업제한 선고 방식 변경 •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 선고(최대 10년) * 종전 성범죄로 인한 형 확정자의 경우 형량에 따라 5년, 3년, 1년 차등적용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시행('18.7.17) • (추가)대상기관 : 대학, 위스쿨, 위센터, 드림스타트, 장애인 특수 교육 지원센터, 어린이회관 등
	2020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시행('20.5.27) • (추가)대상기관 :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등
	2021	- 성범죄자 취업제한업무에 관한 지방이양일괄법 시행('21.1.1) • △경력자 점검확인·자료제출 △해임요구·기관폐쇄 △과태료 부과 징수 등 업무 지방이양 -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 확대 시행('21.6.9) • (추가)대상기관 : 위탁교육기관, 위탁교육시설, 학생상담지원시설, 제주국제학교,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2023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시행('23.10.12)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 추가('23.10.12) •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2025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결과 공개방법 개선('25.1.1.) • '25.1.1일 이후 실시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는 각 점검·확인기관(지자체, 교육청 등) 누리집에 공개하고, 공개기간을 확대(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시행('25.10.23.) • (추가)대상기관 :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로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장이 취업제한 기간 중 그 기간을 운영하여 기관 폐쇄요구에 불응하거나 성범죄자 취업여부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25.10.23.)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뿐만 아니라 보수교육 과정도 포함('25.10.2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2002	- 관련부처 합동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수립·추진 - 현장상담센터 등 여성복지상담소 운영지침마련
	2003	- 국무총리 산하 민·관합동 「성매매방지기획단」 설치(6월) - 탈성매매자활지원사업 및 외국인여성쉼터 시범사업 실시 -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2004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3.22), 시행령(9.23), 규칙(11.5) 제정 - 성매매방지종합대책확정(3월) -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구성(11월) - 성매매 집결지 시범사업 추진(11월) -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교육 실시(11~12월) - 성매매피해자 창업자금 지원사업 추진(11월)
	2005	- 성매매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1월) - 성매매피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개시(3월) - 성매매집결지 시범사업 중간평가(5월) ※ 2005. 미국무부 국제인신매매보고서의 1등급 분류, 국제모범사례 선정(6월) - 그룹홈 제도 시범도입(6월) -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1차 확대(9월) -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운영지침 수립(9월) -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2차 확대(10월) -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개소(11.23)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12.29) • 시설 입소기간 연장(1년), 피해자치료 전담병원 지정
	2006	-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3차 확대(3월)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5.2) • 그룹홈 설치 규정 마련 등 - 의료·법률·직업훈련 통합지원 가능, 간병인 지원 가능토록 지침 개정(8.14) - 자활지원센터 정식 사업운영(3개소) 및 운영지침 수립·시행 -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국제회의 개최(9.6) - 「자활지원가이드」 발간(9월) - 전국 집결지현황 실태 기초조사 실시(2~11월) - 「상담, 의료, 법률지원 매뉴얼(3종)」 발간(12월) -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교육 교과과정 가이드북 발간(12월)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2007 - 지방자치단체 성매매방지정책 이행평가 실시(1월) - 자활지원센터 일자리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최장 3년까지, 1월)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서비스대상을 입소자 이외에 “이용자”로 확대(1월) - 성매매예방교육 전문강사 위촉(2월, 12월)·운영(120명) - 2007 전국 성매매실태조사(3~11월) - 동료상담원 일자리 사업(부처공모형) 시행(8월) - 성매매방지법 시행3년 소책자 발간(9월) - 성매매피해자 자활정책 심포지엄 개최(9.17) -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강화책 마련(12월) - 청소년 성매매 예방교육 영상물 제작(12월) - 대학생 성매매 예방교육 자료집 발간(12월) - 성인 성매매 예방교육 가이드북 발간(부록 CD포함~12월) - 성인 성매매 예방교육 영상물 제작(12월)
	2008 - 장애인 대상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비 추가 지원(1월) -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재원 일반회계로 변경(1월)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3.21, 6.13),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9.10, 9.14, 9.22)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설치 법적근거 마련(6월)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기준 완화(9월) •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초·중·고 → 국가기관·지자체·공공단체까지)
	2008 •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 실시(3년 주기) - 성매매피해자 지원안내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12월) -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성과 진단척도 및 종합지원시스템 개발(3~11월) -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확대방안 마련(12월) - 성매매방지 종사자 양성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연중) - 해외 성매매방지를 위한 UCC 공모(8월) - 성인 성매매 예방교육 가이드북 발간(12월) - 성인 성매매 예방교육 영상물 제작(12월)
	2009 -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도입(1월, 7월) • 5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 운영(1월~) 후 10개 지역으로 사업확대(7월~) - 성매매집결지 열린터 8개소 설치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23) • 수습종사자 자격제도 법적근거 마련 • 성매매피해자 의료지원범위에 치아손상 치료비용 포함 -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 지침수립 및 기관통보(3월)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진학지원 개선방안 마련(4월)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운영(5월) - 여성폭력방지 중앙점검단 설치(6월) - 공공기관 성매매예방교육 전문강사 워크숍 개최(7월)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1개소 신규설치(경기 / 6월) - 자활지원센터 2개소 신규설치(대구, 전남 / 10~12월) - 성매매예방 종합관리시스템 운영(10월~12월)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2010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7.21) • 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 규정 신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8.3) • 보수교육의 교육내용,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평가 규정 신설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의 학습 결손 보완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1개소) -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확대(10 → 15개소) - 자활지원센터 일자리 제공사업 지원 강화 • 센터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자수 탄력적 배정 (센터별 동일 → 센터별 10~30명) •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인상(월 485천원 → 월 504천원)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기간의 현실화 • 최장 3년의 지원기간 산정 시 공백기간 제외 - 성매매피해자 관련 지원시설 시설평가 실시(82개소)
	2011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3.30) • 성접대 정의 및 성접대 실태조사 규정 신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0.4) • 성접대 실태조사 내용 규정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확대(청소년, 자활, 그룹홈, 대안교육위탁교육 각 1개소)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심리프로그램 시범 운영
	2011	-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및 근무시간 연장 ※ 월 504천원, 월 130시간(10년) → 월 529천원, 월 140시간(11년) - 성매매피해자 종사자 상해보험 필수가입(상담소) - ‘열린터’ 프로그램 운영비 신규 지원(개소당 월 50여만 원) - 성매매 방지정책 홍보 캠페인 전개(9.24) 및 국·영문리플렛 제작·배포
	2012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1) 및 동법 시행령(8.2) 개정 • 유흥주점 내,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업무·연락처 등의 정보를 게시하도록 의무화 • 미 게시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청소년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및 근무시간 연장 ※ 월 529천원, 월 140시간(11년) → 월 545천원, 월 150시간(12년) - 성매매피해 상담소 성매매예방 업무 확대 •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사이버포래상담, 청소년 밀집지역 아웃리치 등 - 시도별 구조지원사업비 중 35% 이내에서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 집행
	2013	- 전체 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원 확대 - 종사자 양성교육 실습을 소속기관에서 가능한 교육대상자에 ‘수습종사자’ 포함 - 법률소송 중인 외국인 지원시설 입소자의 자활지원센터 공동작업장 지원 - 자활지원센터 인턴십 지원기간 연장 가능 - 시도별 구조지원사업비 중 40% 이내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 집행 - 지원시설 입소자 ‘진정함’ 설치·운영 의무화(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2조)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에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입소자 포함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2014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3.27) • 성매매 예방교육 점검 강화, 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 성매매추방 주간 신설 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면개정(9.28)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 제정(12.29) -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청소년,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상담소 각 1개소) - 성매매피해자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12월) - 외부자원을 활용한 자활매장 활성화 지원(미용실, 카페 등)
	2015 -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증액(※ 시간당 6,030원 → 6,170원) - 일반·청소년 지원시설 간병비 지원 근거 마련 - 평택자활지원센터 1개소 설치·운영(고령 성매매피해자 중점 지원) - 자활사례집 ‘내가 제일 잘한 일’ 발간 - 자활지원 가이드북 제작 - 청소년지원시설 1개소 폐지('15.6월)
	2016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2.20) • 온라인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내용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 포상금 안내문 추가 규정 • 성평등가족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의 숙박업 등 업소 출입 지도 근거 마련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8.12) • 상담소등 휴·폐지시 보조금·후원금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제출 의무 규정 • 상담소등 폐지시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폐지신고서와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신고관청과 세무서에 모두 제출한 것으로 처리 •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과정 교육시간을 1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단축 • 별지서식 중 ‘상담기록카드’ 및 ‘입소·이용자 카드’를 삭제하고 지침으로 이관 - 고령 성매매피해자 중점 지원을 위해 동두천자활지원센터 지정·운영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확대(상담소 1, 자활지원센터 1) - 각 상담소는 보수교육 과정에 매년 최소 1명의 상담원이 ‘청소년지원 전문과정’에 연 1회 이상 참석 의무화 -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의 월 임차료(월 25만원 한도) 집행 가능 - 의료급여·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 및 의료지원에 수반되는 간접비용 지원 - 자활지원사례집 ‘언니, 같이 가자!’ 발간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2017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요건 완화 ※ 장애인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지원시설장이 입소자의 피해회복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보고하면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의 폐지·휴지 신고 처리기한 변경(즉시 → 10일) • 신고 수리 간주제도 도입 ※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월 임차료(월 25만원 한도) 집행 가능 - 자활지원센터 1개소 확충(93개소 운영 지원) -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인상(시간당 6,170원 → 6,470원) - 자활지원센터 인턴십 참여자 상해보험 가입비용 집행 가능 - 성매매피해상담소의 간병비 지원규정 신설
	2018	- 상담소 업무시간 규정 완화(09:00~18:00 → 8시간) - 금융기관 계좌개설 불가능할 경우 직업훈련 수당 현금지급 가능 - 기능보강비 상담소 시설임차료(전세보증금) 지원 규정 신설 - 현장지원사업 상담활동비 지급 규정 신설
	2019	- 시설운영비(사무실 임차료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월 25만원 (연 300만원) 초과 시 지자체 승인으로 집행 가능 - 자활지원센터 일자리제공사업 참여자지원금 인상(시간당 6,470원 → 7,030원)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일자리제공사업 확대(인턴십프로그램 추가) - 대안교육위탁기관 종사자 변경(센터장 신설) ※ (교사·직업훈련개발훈련교사 3명, 사무지원 1명 → 센터장, 교사·직업훈련개발훈련교사 2명, 사무지원 1명)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중 청소년지원시설의 치료·회복프로그램 비율 지자체 승인으로 상향(60% 이내 범위 → 지자체 승인으로 60% 이상)
	2020	- 종사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의무교육사항 및 수료기준 등 수정 - 지원시설 간병비 지원금액 상향(1인당 100만원 → 300만원) - 청소년지원시설 입소연령규정 명확화(19세가 될 때까지, (21) 2003년 출생자까지 입소가능) - 자활지원센터 일자리제공사업 명칭 변경(일자리제공사업 → 자활참여지원사업) - 자활지원센터 참여자지원금 인상(시간당 7,030원 → 7,320원) - 구조지원사업 치료·회복프로그램 숙박비 등 단가 상향 ※ (숙박비 : 4만원 → 실비, 식비 : 9천원 → 1만원, 간식비 : 5천원 → 7천원) - 기능보강 시설임차료(전세보증금)지원시 예외규정 추가 - 현장지원사업 집결지 폐쇄(4개 지역) 및 집결지 추가(1개지역)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2021 - 운영·정산실적 보고 시기조정(매반기 다음달15일 → 10일) - 자활지원센터 자활참여지원사업 지원기간 명확화 - 자활지원센터 참여지원금 인상(시간당 7,320원 → 7,780원) - 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지원종료(1개지역) 및 집결지 추가(2개지역) - '21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양평기금 7개소)과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사업(청육기금 11개소) 통합 - '21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중앙 1개소, 지역 17개소)
	2022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자활지원센터 참여지원금 인상(시간당 7,780원 → 8,310원) - 월 임차료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액 상향(월 25만원 → 월 30만원) - '22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중앙 1개소, 지역 17개소)
	2023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시설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성평등가족부에 '보고'하던 것을 '통보'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대한 자율성 제고
	2024 - 보장시설 비수급자 입소자에 대해 시설 운영비 중 간접경비에서 주·부식비, 피복비 등 집행 가능 - 월 임차료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월 30만원, 연 360만원 → 월 50만원, 연 600만원) - 자활지원센터 참여지원금 인상(시간당 8,310원 → 10,000원) - 치료회복 프로그램 예산 집행 가능비율 상향(50% → 70%)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개편
	2025 - 시설 운영비에서 제세 항목으로 협회비 지원 - 비수급자 입소자에 시설 운영비로 생계비, 교육비, 주·부식비, 피복비 등 집행 가능 - 공동작업장 및 인턴십 프로그램 통해 일 경험 제공하는 참여지원금 강화 ▪ 최대 월 150시간 참여 시 월 1백50만 원 지원 가능 - 자활지원센터 타 시도의 공동작업장과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연계 - 청소년의 경우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시 부모상담도 병행 - 시설 내 운영위원회에서 공동생활규칙(안) 마련
	2026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설 - 월 임차료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집행한도 상향(월 50만원, 연 600만원 → 월 100만원, 연 1,200만원) - 자활지원센터 참여지원금 시간당 단가 변경(시간당 10,000원 → 당해연도 최저시급) - 구조지원사업비 1인 지원한도액 상향(연 760만원 → 1,000만원)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통·번역 사례비 지급 기준 마련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상담 및 사례관리비 1인당 연간한도액 삭제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기간제 종사자의 자격기준 마련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1991 - 국내최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당시 67세) 기자회견
	1993 -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제정(’93.6.11 제정·시행)
	1998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특별지원금 인상(5,000천원 → 43,000천원) 및 특별지원금 기 지급자에 대한 추가 지급(38,000천원)
	2001 -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업무 이관(’01.1월)
	2002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기념사업 등 지원 등 근거 신설(’02.12.11 개정) - 월 평균 지원금 623천원 ※ 생활안정지원금 월 535천원, 건강치료 등 월 평균 88천원
	2003 - 월 평균 지원금 719천원(전년대비 96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600천원, 건강치료 등 월 119천원
	2004 - 월 평균 지원금 754천원(전년대비 35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640천원, 건강치료 등 월 평균 114천원
	2005 - 피해자 국적회복 등 지원 및 간병인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05.7.29.개정, ’06.1.30.시행) - 월 평균 지원금 822천원(전년대비 68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700천원, 건강치료 등 월 평균 122천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개관 및 운영
	2008 - 월 평균 지원금 1,088천원(전년대비 63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800천원, 간병비 월 평균 137천원, 건강치료 등 월 평균 151천원 - 독립기념관내 일본군‘위안부’ 피해 관련 전시물 보강 예산(5억원) 지원
	2011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맞춤형 치료사업 개편 ※ (개편 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시설 등에 개별지원 → (개편 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에서 사업 수행 및 지원체계 일원화 - 월 평균 지원금 1,259천원(전년대비 59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908천원, 간병비 월 평균 168천원, 건강치료 등 월 평균 183천원
	2012 -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12.12.18.개정·시행) - 월 평균 지원금 1,322천원(전년대비 63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953천원, 간병비 월 평균 177천원, 건강치료 등 월 평균 192천원
	2013 -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13.5.28.개정, ’13.11.29.시행) - 월 평균 지원금 1,383천원(전년대비 61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982천원, 간병비 월 평균 182천원, 건강치료 등 월 평균 219천원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2014 -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을 부양의무자 등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14.3.24.개정, '14.9.25.시행)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지방자치단체간 1대 1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월 평균 지원금 1,640천원(전년대비 257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1,012천원, 간병비 월 평균 328천원, 건강치료 등 월 평균 300천원 - 나눔의 집 역사관 리모델링 및 추모관 건립 등 예산(12억원) 지원
	2015 - 월 평균 지원금 1,853천원(전년대비 213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1,043천원, 간병비 월 454천원, 건강치료 등 월 356천원
	2016 - 월 평균 지원금 2,694천원(전년대비 841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1,260천원, 간병비 월 1,055천원, 건강치료 등 월 379천원
	2017 - 월 평균 지원금 2,775천원(전년대비 81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1,298천원, 간병비 월 1,087천원, 건강치료 등 월 390천원
	2018 - 월 평균 지원금 3,237천원(전년대비 462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1,337천원, 간병비 월 1,120천원, 건강치료 등 월 780천원
	2019 - 월 평균 지원금 3,583천원(전년대비 346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1,404천원, 간병비 월 1,360천원, 건강치료 등 월 819천원
	2020 - 월 평균 지원금 3,853천원(전년대비 270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1,474천원, 간병비 월 1,519천원, 건강치료 등 월 860천원
	2021 - 월 평균 지원금 4,072천원(전년대비 219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1,548천원, 간병비 월 1,621천원, 건강치료 등 월 903천원
	2022 - 월 평균 지원금 5,925천원(전년대비 1,853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1,626천원, 간병비 월 2,898천원, 건강치료 등 월 1,401천원
	2023 - 월 평균 지원금 5,993천원(전년대비 68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1,707천원, 간병비 월 3,126천원, 건강치료 등 월 1,160천원
	2024 - 월 평균 지원금 6,287천원(전년대비 299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1,792천원, 간병비 월 3,282천원, 건강치료 등 월 1,218천원
	2025 - 월 평균 지원금 6,607천원(전년대비 370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1,882천원, 간병비 월 3,446천원, 건강치료 등 월 1,279천원
청소년성문화 센터 설치·운영	2007 - 청소년성문화센터 표준콘텐츠 개발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07년 21개소) - 노동부 지원 사회적일자리창출<청소년성교육전문가>사업 지원 (20억, 175명)
	2008 - 신규시설 8개소 설치(고정형 29개소)
	2009 - 신규시설 설치 및 전문강사 예산추가확보(고정형 35개소, 전문강사 64명)
	2010 - 신규시설 설치 및 전문강사 3명(고정형 38개소, 전문강사 108명)
	2011 - 이동형 신규시설 1개소 설치(고정형 41개소, 이동형 1개소 등 42개소)
	2012 - 이동형 신규시설 2개소 설치(고정형 42개소, 이동형 2개소 등 44개소)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청소년성문화 센터 설치·운영	2013 - 신규시설 6개소 설치(고정형 43개소, 이동형 7개소 등 50개소)
	2014 - 신규시설 4개소 설치(고정형 45개소, 이동형 9개소 등 54개소)
	2015 - 신규시설 4개소 설치(고정형 48개소, 이동형 9개소 등 57개소) * 1개소 폐쇄 -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매뉴얼 보완·개발
	2016 - 신규시설 2개소 설치(고정형 48개소, 이동형 11개소 등 59개소)
	2017 - 고정형 48개소, 이동형 10개소 등 58개소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2018 - 고정형 47개소, 이동형 11개소 등 58개소
	2019 - 고정형 47개소, 이동형 11개소 등 58개소 -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매뉴얼 보완·개발
	2020 - 고정형 47개소, 이동형 11개소 등 58개소
	2021 - 고정형 47개소, 이동형 10개소 등 57개소
	2022 - 고정형 47개소, 이동형 10개소 등 57개소 -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매뉴얼 보완·개발
	2023 - 고정형 47개소, 이동형 10개소 등 57개소
	2025 - 이용자 대상 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전·후 성의식 향상률 조사
	2026 -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관련 기준 구체화 및 위탁 취소 기준 신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2013 - 폭력예방 교육지원 전달기관 설치·운영 - 비의무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 10개 시·도 10개 지역 교육지원기관 지정·운영
	2014 -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법적근거 신설(성폭력방지법 제5조의2) - 비의무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2015 - 지역 교육지원기관 전국 확대 및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전환 - 17개 시·도 18개 지역 교육지원기관 지정·운영
	2016 - 도서벽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시범운영 실시
	2017 - 도서벽지, 안전취약지역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실시
	2018 - 문화예술인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규 교육 대상 발굴 실시
	2019 - 체육인, 이주민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규 교육 대상 발굴 실시
	2020 - 초·중·고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2021 - 사업 운영 관리방식 개선(유형별 → 5개 교육 분야 실적 통합 관리)
	2022 -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중점 실시
	2023 - 가구방문노동자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규 교육 대상 발굴 실시
	2024 - 장애 아동·청소년 특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교제폭력 예방교육 실시
	2025 - 사업 운영 관리방식 개선(유형별 → 6개 교육 분야 실적 통합 관리)

III

시설 및 상담소 현황

(2025년 12월 기준)

번호	시 설 별	시설수	대 상	보호기간(최대)	비고
1	성폭력피해 상담소	179	성폭력 피해자		이용 시설
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자립지원 공동생활)	35	성폭력 피해자 등	• 일반(1년+1년6월+2년) • 장애인(2년+회복시) • 특별지원(18세+2년) • 자립지원(2년+2년)	생활 시설
3	해바라기센터	41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이용 시설
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일반·청소년)	35	성매매피해자 등	• 일반(1년+1년6월) • 청소년(19세가 될 때까지+2년)	생활 시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1	성매매피해자 등	• 2년+2년	생활 시설
6	대안교육 위탁기관	2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등	• 1년(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이용 시설
7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	1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 3개월(수사·소송진행 중인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생활 시설
8	자활지원센터	13	성매매피해자 등		이용 시설
9	성매매피해상담소	28	성매매피해자 등		이용 시설
10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중앙, 지역)	18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등		이용 시설
11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33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 2년 이내	생활 시설
12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9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이주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		이용 시설
13	가정폭력 상담소 (통합상담소)	123 (55)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		이용 시설
14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3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 가정구성원	• 6월(+3개월 2회 연장) ※ 장기시설: 2년 이내	생활 시설
15	여성긴급전화1366	19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성매매 등 피해자	• 긴급피난처 (최대7일)	이용 시설
16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356호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및 그 가정 구성원	• 2년(+2년)	생활 시설
17	청소년성문화센터	57	유아·초·중·고생 부모 등 전국민		이용 시설
18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7	디지털성범죄피해자 등		이용 시설

1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성폭력 피해 상담소 유형전환(일반→장애인)을 통한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1개소 확대운영
 - ※ ('25) 일반 77개소, 장애 22개소 → ('26) 일반 76개소 → 장애 23개소
- 보호시설 운영 주체가 변경되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와 협의를 통해 기존 시설에 준하는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 상담소·보호시설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미성년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 통지 예외 및 대리 통지 협조 필요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원칙 중 예외적 허용조항에 상담경력 7년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5년으로 완화
-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사업수행시설 선정 심사 시, 필수 선정 대상 시설로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지정

2 성매매 피해자 지원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설(월 500천원, 최대 1년간)
- 자활지원센터 자활참여자지원금 시간당 단가 변경
 - ※ (현행) 10,000원 → (변경) 당해연도 최저시급
- 구조지원사업 1인 연간 지원한도액 상향
 - ※ (현행) 760만원 → (변경) 1,000만원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번역 사례비 지급 기준 마련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상담 및 사례관리비 1인당 연간한도액 삭제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기간제 종사자의 자격기준 마련

3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고액 의료비 청구 기준 강화
 - 100만원(1회 당) 이상 고액의 검사 또는 고액의 비급여 항목 지원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서 검토, ▲내부 사례회의 등을 거쳐 지원 여부 결정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기준 확대
 - 상담횟수 완화 및 기타 프로그램 강사 단가 인상
- 1366센터 임차료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한도액 상향(70만원)

4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 상담-주거-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피해자 맞춤형 연계 지원 시행
 - 호신용품 등 휴대용 안전 장비 지원
- 주거지원 시설 보호기간 확대
 - 긴급주거지원: 피해자 수요, 입소 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 3개월까지 보호
 - 임대주택 주거지원: 최대 12개월까지 보호(기본 6개월, 1회 연장 가능)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매월 정액)
 - * (‘25) 1인당 월 1,882천원 → (‘26) 1인당 월 1,976천원
 - 간병비 지급(간병인 이용 실적에 따라 사후정산)
 - * (‘25) 예산 상 1인당 월 3,446천원 → (‘26) 예산 상 1인당 월 3,722천원

6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5.10.23. 시행)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
 - 적발 기관의 폐쇄 요구에 불응,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 시 과태료 부과
 - 아동청소년 대상 신고의무 교육을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자격취득과정뿐만 아니라 보수교육과정에도 포함

7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 국비 지원 중단 등 사유 신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3조 등에 따른 국비 지원 중단 사유 신설
- 위탁운영 관련 기관(단체) 선정 절차 및 선정 취소 세부 기준 신설

8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 교육 분야 신설
 - 교제폭력 예방교육 분야를 신설하여 6개 분야 교육을 지원('25년~)
- ※ (기존) 5개 분야(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디지털 성범죄 예방) →
(개선) 6개 분야(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디지털 성범죄·교제폭력 예방)

9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 국비 지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확대(15 → 16개소)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인원수 확대(2 → 3명)
 - 인건비·운영비 보조금 지원 단가 확대(39백만원 → 61.2백만원)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사회복지시설 전환 관련 명시
 -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준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집행 기준 명시

- 위탁 가능 대상 세부 기준 규정 및 위탁 결과 보고 관련 예외 사항 명시
- 종사자 근속연한 인정 기준 확대
 - 성폭력피해상담소 종사자가 지역여성센터로 근무지 변경시에도 근속연한 인정
- 피해 지원 대상자 명시
- 「치유회복프로그램 세부 운영지침」의 전문강사 자격기준 범위 확대
 - ※ 대면상담경력 및 상담경력 기준 추가, 집단상담경력의 집단 기준 완화(5인→2인)

IV-1 2025년·2026년 주요사항 비교표

공통 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주거 지원 사업	주거 지원 신청 대상, 절차 및 방법	바. 퇴거 등 (신규)	바. 퇴거 등 • <u>운영기관은 퇴거로 인한 공실발생 시 즉시 해당 시·도에 보고하고 해당 시·도는 소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지원기관에 공유하도록 한다</u>
	운영 기관 선정 및 사업 수행	라. 선정 방법 • 원활한 입소자 지원을 위해 운영기관별 그룹홈(10호)입대 시 가급적 보호시설에서 가까운 건물에 함께 입대	라. 선정 방법 (삭제)
		마. 사업 관리·운영 • 운영 기관에는 임대보증금과 사업운영비 (자립상담원 인건비, 사업관리비 등) 지원	마. 사업 관리·운영 • 운영 기관에는 임대보증금과 사업운영비 (자립상담원 인건비, 사업관리비 등), 노후비품 교체비 지원
		바. 운영 기관의 업무 (신규)	바. 운영 기관의 업무 •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에 대한 안내 및 입주 사실확인서 발급 등 및 절차 지원 등 • <u>운영기관은 시·도(시·군·구)를 통해 주거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운영하도록 한다.</u>
		아. 자립상담원의 역할 ○ 보호시설 퇴소 후 주거지원 사업 입주자에 대한 임대주택 퇴거 시 자립지원금 신청 지원 및 사후관리 (신규)	아. 자립상담원의 역할 ○ 보호시설 퇴소 후 주거지원 사업 입주자에 대한 임대주택 퇴거 시 자립지원금 신청 지원 및 사후관리 – 주거지원시설(시설장 또는 자립상담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임대주택 퇴거 시 퇴거사실을 지체없이 퇴소한 보호시설에 알려야 함 *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퇴소 자립지원금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금 신청 및 사후관리 절차 진행 ※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준용하여 지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주거 지원 사업	국고 보조 금의 지원· 관리	〈운영기관별 보조금 지원내역〉			〈운영기관별 보조금 지원내역〉			
		구 분		국비 지원액	비 고			
		임대 보증 금 등	신규 계약	호당 7,154천원	○ 신규 운영기관에 지원 ○ 지역별 임대계약금 편차에 따라 지원액 변경가능			
			재계 약	호당 662천원	○ 기존 주거지원사업 추진기관 중 재계약 해당 운영기관 ○ 지역별 주택 임대가격에 따라 지원액 차이 발생			
		사업운영비		월 3,547천원	○ 상담원 인건비, 사업관리비 ○ 사업개시일부터 지원			
		(신규)						
		아.노후 비품 교체 지원						
		○ 기존 주거지원시설 중 노후 비품의 교체 등이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지급						
		○ 가구, 비품 등 노후화된 장비 등 교체 비용						
		○ 구입한 비품은 반드시 비품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자산번호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식별·관리						
※ 비품관리대장 : 관리번호, 품명, 규격, 취득단가, 취득일자 등을 포함								
○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 이전에 교체할 수 없음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	상담소 인력 및 복무	나. 종사자 자격기준 상담원 자격요건의 예외(수습직원) －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6개월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나. 종사자 자격기준 상담원 자격요건의 예외(수습직원) － 수습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1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다. 운영시간 및 종사자 복무 ○ 주 5일, 평일 8시간 이상 운영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 신 설 〉	다. 운영시간 및 종사자 복무 ○ 주 5일, 평일 8시간 이상 운영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 근무시간선택제의 경우, 근무시간 내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 근무시간 외 근무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된 상담소 운영시간을 안내하여야 함																							
		마. 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강화 등 〈 신 설 〉	마. 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강화 등 ○ 법정 의무교육 이외에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연수비를 기관운영비 내에서 지출 가능																							
	재무 회계 관리 및 국고 보조금 지원 내역	다. 보조금 지원 단가(국비+지방비) (단위 : 천원) <table><tr><th>구 분</th><th>일반상담소 (4명)</th><th>장애인상담소 (5명)</th></tr><tr><td>인건비(4명) 및 운영비</td><td>151,322</td><td>151,322</td></tr><tr><td>장애인 상담소 추가지원</td><td>=</td><td>상담원(1인) : 34,167 교통비 : 12,037</td></tr><tr><td>합 계</td><td>151,322</td><td>197,526</td></tr></table>	구 분	일반상담소 (4명)	장애인상담소 (5명)	인건비(4명) 및 운영비	151,322	151,322	장애인 상담소 추가지원	=	상담원(1인) : 34,167 교통비 : 12,037	합 계	151,322	197,526	다. 보조금 지원 단가(국비+지방비) (단위 : 천원) <table><tr><th>구 분</th><th>일반상담소 (4명)</th><th>장애인상담소 (5명)</th></tr><tr><td>인건비(4명) 및 운영비</td><td>163,239</td><td>163,239</td></tr><tr><td>장애인 상담소 추가지원</td><td>=</td><td>상담원(1인) : 37,143 교통비 : 12,036</td></tr><tr><td>합 계</td><td>163,239</td><td>212,418</td></tr></table>	구 분	일반상담소 (4명)	장애인상담소 (5명)	인건비(4명) 및 운영비	163,239	163,239	장애인 상담소 추가지원	=	상담원(1인) : 37,143 교통비 : 12,036	합 계	163,239
구 분	일반상담소 (4명)	장애인상담소 (5명)																								
인건비(4명) 및 운영비	151,322	151,322																								
장애인 상담소 추가지원	=	상담원(1인) : 34,167 교통비 : 12,037																								
합 계	151,322	197,526																								
구 분	일반상담소 (4명)	장애인상담소 (5명)																								
인건비(4명) 및 운영비	163,239	163,239																								
장애인 상담소 추가지원	=	상담원(1인) : 37,143 교통비 : 12,036																								
합 계	163,239	212,418																								
	라. 보조금 집행 기준 1) 인건비 및 운영비 〈 신 설 〉	라. 보조금 집행 기준 1) 인건비 및 운영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 각종 수당은 지방자치 단체 실정에 맞게 지방비 추가 지급 가능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	재무 회계 관리 및 국고 보조금 지원 내역	라, 보조금 집행 기준 1) 인건비 및 운영비 〈 중 략 〉 ○ 보조금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 부정수급 등 사유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처분을 받은 경우, <u>여성가족부 장관</u>은 반환 대상 보조금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함 (「보조금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라, 보조금 집행 기준 1) 인건비 및 운영비 〈 중 략 〉 ○ 보조금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 부정수급 등 사유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처분을 받은 경우, <u>자치단체의 장</u>은 반환 대상 보조금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함(「보조금 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u>성평등가족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u>)
	협조 사항	〈 신 설 〉	○ 미성년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 통지예외 및 대리 통지 협조 〈미성년 범죄피해자 법정대리인 통지예외 및 대리 통지 규정〉 ○ 법적 근거 － 범죄수사규칙 제13조제3항(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 지원대상 : 13세 이상인 성범죄 피해자 ○ 개정내용 및 지원내용 가. 법정대리인 통지 예외사유 확대 ①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②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③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④ (13세 이상인 피해자) 피해진술 거부 등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대리 통지 : 법정대리인에게 통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조력할 ‘지원기관’ 또는 ‘변호사’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 예외사유가 적용되는 피해자는 관련 법 (성폭력방지법, <중 략>)에 따라 지원기관 및 국선변호사 지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보호 시설 설치 인가 등	라. 보호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유의사항 〈 신 설 〉	라. 보호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 유의사항 - 보호시설 운영 주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폐지신고 후 새로이 인가 신청을 해야 함. 단, 보호시설 운영주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 시설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지속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존 시설에 준하는 예산지원이 가능함 ※ 운영주체 변경 후 계속적 국비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성평등가족부와 협의
	보호 시설 인력 및 복무	나. 종사자 자격기준 상담원 자격요건의 예외(수습직원)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6개월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마. 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강화 등 〈 신 설 〉	나. 종사자 자격기준 상담원 자격요건의 예외(수습직원) - 수습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1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마. 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강화 등 법정의무교육 안내 - 법정의무교육 이외에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연수비를 기관운영비 내에서 지출 가능
	보호 시설 입소자 관리	다. 성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신청자격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한 일반공급의 입주 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다. 성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5의2) -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격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격 :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이며, 아래 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협조 사항	〈신 설〉	○ 미성년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 통지에외 및 대리 통지 협조 〈미성년 범죄피해자 법정대리인 통지에외 및 대리 통지 규정〉 ○ 법적 근거 － 범죄수사규칙 제13조제3항(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 지원대상 : 13세 이상인 성범죄 피해자 ○ 개정내용 및 지원내용 가. 법정대리인 통지 예외사유 확대 ①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법정 대리인인 경우 ②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 하게 침해하는 경우 ③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④ (13세 이상인 피해자) 피해진술 거부 등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대리 통지 : 법정대리인에게 통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조력할 ‘지원기관’ 또는 ‘변호사’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 예외사유가 적용되는 피해자는 관련 법 (성폭력방지법,〈중 략〉)에 따라 지원기관 및 국선변호사 지원																																																							
	재무 회계 관리 및 국고 보조금 지원 내역	다. 보조금 지원 단가(국비+지방비) － 일반보호시설 (단위 : 천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일반(인원수)</th></tr><tr><th>비위탁</th><th>위탁</th></tr><tr><td>인건비</td><td>169,709</td><td>203,562</td></tr><tr><td>운영비 등</td><td colspan="2">〈생 략〉</td></tr><tr><td>총계</td><td>(~10인) 205,409 (~15인) 210,309</td><td>248,762</td></tr></table> － 장애인보호시설 (단위 : 천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장애인(인원수)</th></tr><tr><th>비위탁</th><th>위탁</th></tr><tr><td>인건비</td><td>271,268</td><td>271,268</td></tr><tr><td>운영비 등</td><td colspan="2">〈생 략〉</td></tr><tr><td>총계</td><td>333,868</td><td>338,068</td></tr></table>	구분	일반(인원수)		비위탁	위탁	인건비	169,709	203,562	운영비 등	〈생 략〉		총계	(~10인) 205,409 (~15인) 210,309	248,762	구분	장애인(인원수)		비위탁	위탁	인건비	271,268	271,268	운영비 등	〈생 략〉		총계	333,868	338,068	다. 보조금 지원 단가(국비+지방비) － 일반보호시설 (단위 : 천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일반(인원수)</th></tr><tr><th>비위탁</th><th>위탁</th></tr><tr><td>인건비</td><td>184,252</td><td>221,006</td></tr><tr><td>운영비 등</td><td colspan="2">〈생 략〉</td></tr><tr><td>총계</td><td>(~10인) 219,952 (~15인) 224,852</td><td>266,206</td></tr></table> － 장애인보호시설 (단위 : 천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장애인(인원수)</th></tr><tr><th>비위탁</th><th>위탁</th></tr><tr><td>인건비</td><td>294,514</td><td>294,514</td></tr><tr><td>운영비 등</td><td colspan="2">〈생 략〉</td></tr><tr><td>총계</td><td>357,114</td><td>361,214</td></tr></table>	구분	일반(인원수)		비위탁	위탁	인건비	184,252	221,006	운영비 등	〈생 략〉		총계	(~10인) 219,952 (~15인) 224,852	266,206	구분	장애인(인원수)		비위탁	위탁	인건비	294,514	294,514	운영비 등	〈생 략〉		총계	357,114
구분	일반(인원수)																																																									
	비위탁	위탁																																																								
인건비	169,709	203,562																																																								
운영비 등	〈생 략〉																																																									
총계	(~10인) 205,409 (~15인) 210,309	248,762																																																								
구분	장애인(인원수)																																																									
	비위탁	위탁																																																								
인건비	271,268	271,268																																																								
운영비 등	〈생 략〉																																																									
총계	333,868	338,068																																																								
구분	일반(인원수)																																																									
	비위탁	위탁																																																								
인건비	184,252	221,006																																																								
운영비 등	〈생 략〉																																																									
총계	(~10인) 219,952 (~15인) 224,852	266,206																																																								
구분	장애인(인원수)																																																									
	비위탁	위탁																																																								
인건비	294,514	294,514																																																								
운영비 등	〈생 략〉																																																									
총계	357,114	361,214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재무 회계 관리 및 국고 보조금 지원 내역	- 특별지원시설 (단위: 천원) <table><tr><th>구분</th><th>특별지원</th></tr><tr><td>인건비</td><td>275,137</td></tr><tr><td>운영비 등</td><td>〈생 략〉</td></tr><tr><td>총계</td><td>346,237</td></tr></table>	구분	특별지원	인건비	275,137	운영비 등	〈생 략〉	총계	346,237	- 특별지원시설 (단위: 천원) <table><tr><th>구분</th><th>특별지원</th></tr><tr><td>인건비</td><td>298,698</td></tr><tr><td>운영비 등</td><td>〈생 략〉</td></tr><tr><td>총계</td><td>369,898</td></tr></table>	구분	특별지원	인건비	298,698	운영비 등	〈생 략〉	총계	369,898						
		구분	특별지원																						
		인건비	275,137																						
		운영비 등	〈생 략〉																						
		총계	346,237																						
		구분	특별지원																						
인건비	298,698																								
운영비 등	〈생 략〉																								
총계	369,898																								
- (장애인)자립지원시설 (단위: 천원) <table><tr><th>구분</th><th>장애인 자립지원</th><th>자립지원</th></tr><tr><td>인건비</td><td>(5인)173,578 (7인) 241,284</td><td>173,578</td></tr><tr><td>운영비 등</td><td colspan="2">〈생 략〉</td></tr><tr><td>총계</td><td>(10인 미만) 227,678 (10인) 301,884</td><td>208,778</td></tr></table>	구분	장애인 자립지원	자립지원	인건비	(5인)173,578 (7인) 241,284	173,578	운영비 등	〈생 략〉		총계	(10인 미만) 227,678 (10인) 301,884	208,778	- (장애인)자립지원시설 (단위: 천원) <table><tr><th>구분</th><th>장애인 자립지원</th><th>자립지원</th></tr><tr><td>인건비</td><td>(5인)188,436 (7인) 261,944</td><td>188,436</td></tr><tr><td>운영비 등</td><td colspan="2">〈생 략〉</td></tr><tr><td>총계</td><td>(10인 미만) 242,536 (10인) 322,544</td><td>223,636</td></tr></table>	구분	장애인 자립지원	자립지원	인건비	(5인)188,436 (7인) 261,944	188,436	운영비 등	〈생 략〉		총계	(10인 미만) 242,536 (10인) 322,544	223,636
구분	장애인 자립지원	자립지원																							
인건비	(5인)173,578 (7인) 241,284	173,578																							
운영비 등	〈생 략〉																								
총계	(10인 미만) 227,678 (10인) 301,884	208,778																							
구분	장애인 자립지원	자립지원																							
인건비	(5인)188,436 (7인) 261,944	188,436																							
운영비 등	〈생 략〉																								
총계	(10인 미만) 242,536 (10인) 322,544	223,636																							
다. 보조금 지원 단가(국비+지방비) 〈사업비 세부내역〉 (2) 사업비 2 세부내역 <table><tr><th>구 분</th><th>지급대상</th><th>지급금액</th></tr><tr><td>생 계 비</td><td>비수급자</td><td>356,568원</td></tr><tr><td>교 육 비 (교복 등 학습지원)</td><td>비수급자</td><td>250,000원</td></tr></table>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생 계 비	비수급자	356,568원	교 육 비 (교복 등 학습지원)	비수급자	250,000원	다. 보조금 지원 단가(국비+지방비) 〈사업비 세부내역〉 (2) 사업비 2 세부내역 <table><tr><th>구 분</th><th>지급대상</th><th>지급금액</th></tr><tr><td>생 계 비</td><td>비수급자</td><td>426,741원</td></tr><tr><td>교 육 비 (교복 등 학습지원)</td><td>비수급자</td><td>250,000원</td></tr></table>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생 계 비	비수급자	426,741원	교 육 비 (교복 등 학습지원)	비수급자	250,000원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생 계 비	비수급자	356,568원																							
교 육 비 (교복 등 학습지원)	비수급자	250,000원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생 계 비	비수급자	426,741원																							
교 육 비 (교복 등 학습지원)	비수급자	250,000원																							
라, 보조금 집행 기준 1) 인건비 및 운영비 〈신 설〉	라, 보조금 집행 기준 1) 인건비 및 운영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 각종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방비 추가 지급 가능																								
라, 보조금 집행 기준 2) 사업비 ○ 비수급자(입소자) 생계비 및 교육비 〈신 설〉	라, 보조금 집행 기준 2) 사업비 ○ 비수급자(입소자) 생계비 및 교육비 ※ 시설수급 신청하였으나, 조사기간 중 퇴소한 입소자의 경우 생계비 지원대상자가 보호시설에 입·퇴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입·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여 소급지급 가능 (1개월 미만 단기·일시보호 제외)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재무 회계 관리 및 국고 보조금 지원 내역	라, 보조금 집행 기준 2) 사업비 ○ 퇴소자립지원 - <u>퇴소자립지원금 및 퇴소자립지원수당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은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관련 서식'의 참고자료를 참조</u>	라, 보조금 집행 기준 2) 사업비 ○ 퇴소자립지원 - <u>퇴소자립지원금 및 퇴소자립지원수당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 및 서식은 II-2, II-3의 자료를 참조</u>
		사. 보조금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 부정수급 등 사유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처분을 받은 경우, <u>여성가족부 장관은 반환 대상 보조금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함(「보조금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u>	사. 보조금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 부정수급 등 사유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처분을 받은 경우, <u>자치단체의 장은 반환 대상 보조금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함(「보조금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성평등가족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u>
	퇴소 자립 지원	〈 신 설 〉	<u>II-2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 지원금 운영 지침</u> <u>II-3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 지원수당 운영 지침</u>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관련 서식'의 <u>참고자료를 본문에 반영</u>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 자립 지원금 운영 지침	2) 신청 자격 요건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다음의 입·퇴소 당시 연령 및 입소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연령 요건) - (입소기간 요건)	2) 신청 자격 요건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다음의 입·퇴소 당시 연령 및 입소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연령 요건) - (입소기간 요건)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 자립 지원금 운영 지침	〈 신 설 〉	*** 일반·장애인·특별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퇴소 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경우, 퇴소자립지원금은 주거지원시설 퇴소 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기한을 유예함. 이때 퇴소자립지원금 신청은 주거지원시설 연계 전 퇴소한 보호시설을 통하여 신청하고 해당 보호시설에서 사후관리하여야 함. ▶ 보호시설은 퇴소자립지원금 대상자가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될 예정인 경우, 대상자에게 주거지원시설 퇴소 전 지원금 신청의사 등을 보호시설에 알려야 함을 미리 고지해야 함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능보강 사업	지원 대상 및 내역 세부 기준	2-2. 보호시설 환경개선 다. 임차보증금 지원 (3) 고려사항 ○ 지원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야 함 〈 신 설 〉	2-2. 보호시설 환경개선 다. 임차보증금 지원 (3) 고려사항 ○ 지원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완료하고, 관련 사항(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을 성평등가족부로 보고하여야 함 ※ 다만, 임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 없이 계약할 수 있음
성폭력 상담원 교육 훈련 시설	교육 훈련 시설의 운영	다. 교육훈련시설 운영 일반 ○ 수강 등록 〈 신 설 〉	다. 교육훈련시설 운영 일반 ○ 수강 등록 ※ 다만, 교육과정 개설이 많지 않아 교육 이수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교육 개시 이후 전체 교육시간 10% 경과 이전까지 접수하면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성폭력피해자(스토킹, 교제폭력 포함), 성폭력피해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및 자매, 배우자 및 보호자 ※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국내에서 입은 피해에 한함)의 의료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지원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불법체류자 불가) 〈 신 설 〉	○ 지원대상 : 성폭력피해자(스토킹, 교제폭력 포함), 성폭력피해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및 자매, 배우자 및 보호자 ※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국내에서 입은 피해에 한함)의 의료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지원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삭제) ※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긴급의료지원 이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로 연계하여 피해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연계 조치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의료 지원 원칙	▶ 피해자 의료비는 (중 략) 집행 가능 ※ 피해자가 종전부터 이용해온 기관이거나 피해자가 사는 지역 인근에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 없는 경우 박사학위 수료자 또는 상담경력이 7년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기관도 예외적으로 집행 가능	▶ 피해자 의료비는 (중 략) 집행 가능 ※ 피해자가 종전부터 이용해온 기관이거나 피해자가 사는 지역 인근에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 없는 경우 박사학위 수료자 또는 상담경력이 5년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기관도 예외적으로 집행 가능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배정 절차	④ 프로그램별 사업수행시설 선정 심사 〈 신 설 〉	④ 프로그램별 사업수행시설 선정 심사 - 필수 선정 대상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필수 지원시설로서 사업수행 시설 선정 시 해당 시설을 포함할 것. 다만, 치료 회복프로그램과 관련하여「보조금법」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해 사업수행이 배제된 경우에는 필수 선정 대상시설에서 제외됨 ※ 지자체 검토 및 선정 심사 위원회의 심사 등 선정 과정에서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프로그램 사업계획 등과 관련한 의견이 있을 경우, 지자체에서는 해당 특별지원 보호시설과 협의하여 관련 의견을 반영·수행하도록 협의할 수 있음.
	행정 사항	나. 기타 행정사항 ○ 자아 정체감 형성 과정에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심리·정서적 치료 및 지원이 보다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 하여 프로그램 사업수행 기관 선정 시 <u>특별지원 보호시설과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 중인 보호시설을 우선 고려할 것을 권장</u> ※ 사업수행 기관 선정 시 우선 고려 대상 시설 :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미성년 피해자가 직전 연도말 기준 전체 현원 대비 50% 이상 입소한 일반 보호시설	나. 기타 행정사항 ○ 자아 정체감 형성 과정에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심리·정서적 치료 및 지원이 보다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 하여 프로그램 사업수행 기관 선정 시 (삭 제)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 중인 보호시설을 우선 고려할 것을 권장 ※ 사업수행 기관 선정 시 우선 고려 대상 시설: (삭 제) 미성년 피해자가 직전 연도말 기준 전체 현원 대비 50% 이상 입소한 일반 보호시설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성폭력 전담 의료 기관 관리	지정 현황	○ 지정현황(278개소) (2024년 3월 기준)				○ 지정현황(274개소) (2025년 11월 기준)			
		시·도별	지정기관수	시·도별	지정기관수	시·도별	지정기관수	시·도별	지정기관수
		서울	25	강원	30	서울	21	강원	30
		부산	18	충북	5	부산	17	충북	5
		대구	5	충남	21	대구	5	충남	21
		인천	10	전북	18	인천	10	전북	19
		광주	4	전남	39	광주	4	전남	39
		대전	3	경북	24	대전	2	경북	24
		울산	2	경남	23	울산	2	경남	24
		세종	3	제주	6	세종	3	제주	5
경기	42	전국	278	경기	43	전국	274		
※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는 연중 수시로 진행되므로 상기 현황은 변동될 수 있음 － 변동 세부 현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고 (정책정보☞정책자료실☞주제별 정책자료☞인권보호)				※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는 연중 수시로 진행되므로 상기 현황은 변동될 수 있음 － 변동 세부 현황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참고 (정책정보☞정책자료실☞주제별 정책자료☞인권보호)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가정 폭력 상담소	상담소 설치· 운영 기준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td><td>○ 종사자 수 - 상담소장 1인, 상담원 4인 이상 - 상담원 4인 (가정폭력상담원 2인, 성폭력상담원 2인 이상) 이상</td></tr></table>	구분	내용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 종사자 수 - 상담소장 1인, 상담원 4인 이상 - 상담원 4인 (가정폭력상담원 2인, 성폭력상담원 2인 이상) 이상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td><td>○ 종사자 수 - 상담소장 1인, 상담원 4인 이상</td></tr></table>	구분	내용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 종사자 수 - 상담소장 1인, 상담원 4인 이상
	구분	내용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 종사자 수 - 상담소장 1인, 상담원 4인 이상 - 상담원 4인 (가정폭력상담원 2인, 성폭력상담원 2인 이상) 이상									
	구분	내용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 종사자 수 - 상담소장 1인, 상담원 4인 이상									
상담소의 인력 및 복무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 -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6개월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 - 수습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1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상담소의 관리 및 운영	○ 기록의 보존 ※ 통합상담소에서의 성폭력 상담일지는 10년 이상 보관 후 폐기조치 하되,	○ 기록의 보존 ※ 상담소에서의 성폭력 상담일지는 10년 이상 보관 후 폐기조치 하되,									
국비지원 상담소 지원기준	○ 기존 지원 상담소의 경우에도 법령 및 지침 준수여부, 운영실적 등을 확인 하여 예산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 - 국거지원 상담소가 1개월 이상 운영 중단 시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함 (운영 재개 시 국비지원은 신규지원 기관 선정 절차를 적용함)	○ 기존 지원 상담소의 경우에도 법령 및 지침 준수여부, 운영실적 등을 확인 하여 예산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 - <삭제>									
2026년 국고 보조금 지원 내용	-	<신설> ○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은「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음									
	○ 예산항목별 세부내역 - 운영비	○ 예산항목별 세부내역 - 운영비 <신설> ※ 여비집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보호 시설의 인력 및 복무	○ 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강화 등 <u>법정 의무교육 안내</u> <신설> ※ 법정 의무교육 이외에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연수비를 기관운영비 내에서 지출 가능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입·퇴소 관리·운영	가정폭력 피해자 장기·장애인 보호시설의 운영 ① 장기 시설의 장은 단기시설을 거친 자를 우선적으로 시설에 입소시키되, 동반 자녀 유무, 폭력피해의 심각성, <u>피해 여성의 이혼의사 및 소송진행 여부, 자립의지 등을 면접을 통해 총체적으로 검토 후 입소 여부를 허용해야 함</u> ※ 장기시설의 장은 단기시설로부터 피해여성에 대한 서류(사본) 일체를 이송받아 참고하여야 함 ※ <u>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입소 시에 구체적인 창업·취업 등의 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u>	가정폭력 피해자 장기·장애인 보호시설의 운영 ① 장기 시설의 장은 단기시설을 거친 자를 우선적으로 시설에 입소시키되, 동반 자녀 유무, 폭력피해의 심각성, 소송 진행 여부, 자립의지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함 ※ 장기시설의 장은 단기시설로부터 피해여성에 대한 서류(사본) 일체 및 자립계획을 이송받아 참고하여야 함 ※ 〈삭제〉																												
	보호 시설의 관리·운영	○ 기록의 보존	○ 기록의 보존 〈신설〉 ※ 성폭력 상담일지는 10년 이상 보관 후 폐기 조치 하되,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강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전연령 대상 강간살인죄 등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담관련 자료 폐기에 신중하여야 함. 단, 피해자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피해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폐기 가능																												
	2026년 국고 보조금의 지원 내용	나. 지원 기준 및 항목 - <u>국고지원 보호시설이 6개월 이상 운영중단 시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함 (운영 재개시 국비지원은 신규지원 기관 선정 절차를 적용함)</u>	나. 지원 기준 및 항목 - 〈삭제〉																												
		다. 인건비, 운영비 지원 기준 ○ 가족보호시설 <table><tr><th colspan="2">정 원</th><th>종사자수</th></tr><tr><td colspan="2">10인 이하 시설</td><td>6명</td></tr><tr><td rowspan="4">11~30인 이하</td><td>15인 이하</td><td rowspan="4">6~7명</td></tr><tr><td>20인 이하</td></tr><tr><td>25인 이하</td></tr><tr><td>30인 이하</td></tr><tr><td colspan="2">30인 초과</td><td rowspan="2">7~8명</td></tr><tr><td colspan="2">40인 초과</td></tr></table>	정 원		종사자수	10인 이하 시설		6명	11~30인 이하	15인 이하	6~7명	20인 이하	25인 이하	30인 이하	30인 초과		7~8명	40인 초과		다. 인건비, 운영비 지원 기준 ○ 가족보호시설 <table><tr><th colspan="2">정 원</th><th>종사자수</th></tr><tr><td colspan="2">10인 이하 시설</td><td>6명</td></tr><tr><td rowspan="4">11~30인 이하</td><td>15인 이하</td><td rowspan="4">6~7명</td></tr><tr><td>20인 이하</td></tr><tr><td>25인 이하</td></tr><tr><td>30인 이하</td></tr></table>	정 원		종사자수	10인 이하 시설		6명	11~30인 이하	15인 이하	6~7명	20인 이하	25인 이하
정 원		종사자수																													
10인 이하 시설		6명																													
11~30인 이하	15인 이하	6~7명																													
	20인 이하																														
	25인 이하																														
	30인 이하																														
30인 초과		7~8명																													
40인 초과																															
정 원		종사자수																													
10인 이하 시설		6명																													
11~30인 이하	15인 이하	6~7명																													
	20인 이하																														
	25인 이하																														
	30인 이하																														
다. 인건비, 운영비 지원 기준 ○ 운영비는 지원 예산 총액의 10~3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다. 인건비, 운영비 지원 기준 ○ 운영비는 지원 예산 총액의 10~3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신설〉 ※ 여비집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 보호시설별 1곳의 협의회비만 집행 가능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2026년 국고 보조금의 지원 내용	바. 보호시설 기능보강	〈신설〉 ③ 임차보증금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임차보증금 지원’ 부문 준용 • 지원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완료 후, 관련 사항(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을 성평등가족부로 보고하여야 함 ※ 다만, 임대인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 없이 계약할 수 있음												
		- 시설장비 보강 : 모든 시설	④ 시설장비 보강: 사업계획서에 기자재명, 소요량, 사업비, 사용용도 및 기자재 보유현황 등을 포함시켜야 함 • 입소자 안전보장 및 편의를 위한 시설장비 우선 보강 원칙 • 기능보강비로 구입한 비품은 반드시 비품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번호 스티커 부착을 통해 식별·관리 * 관리번호, 품명, 규격, 취득단가, 취득일자, 내용연수 등을 포함(「물품관리법」제16조의 2에 따른 내용연수 참조)												
		마. 기타 피해자 지원 서비스 집행방법 〈 2025년도 비수급자 생계비(1인당) 지급기준 〉 <table><tr><th>구 분</th><th>금 액</th><th>지 급 시 기</th></tr><tr><td>주·부식비, 피복비</td><td>356,568원</td><td>매 월</td></tr></table>	구 분	금 액	지 급 시 기	주·부식비, 피복비	356,568원	매 월	마. 기타 피해자 지원 서비스 집행방법 〈 2026년도 비수급자 생계비(1인당) 지급기준 〉 <table><tr><th>구 분</th><th>금 액</th><th>지 급 시 기</th></tr><tr><td>주·부식비, 피복비</td><td>426,741원</td><td>매 월</td></tr></table>	구 분	금 액	지 급 시 기	주·부식비, 피복비	426,741원	매 월
		구 분	금 액	지 급 시 기											
		주·부식비, 피복비	356,568원	매 월											
구 분	금 액	지 급 시 기													
주·부식비, 피복비	426,741원	매 월													
- 생계비 지원 기준 * 특별위로금은 수급자 개인별 직접 지급	- 생계비 지원 기준 * 특별위로금은 수급자 개인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반 자녀 계좌 신규 개설이 필요하거나 이로 인해 입소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동반 입소자의 계좌로 입금 가능														
③ 교육활동지원비 • 지원내용 : 1인당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 지급 (교육부 2025년 교육급여 기준 적용)	③ 교육활동지원비 • 지원내용 : 1인당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 지급 (교육부 2026년 교육급여 기준 적용)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2026년 국고 보조금의 지원 내용	④ 교복비 • 지원방법 : 신입생의 경우, 동복비는 2월 하복비는 4월에 지급, 전학생은 전학시기 등 고려하여 지급	④ 교복비 • 지원방법 : 신입생의 경우, 동복비는 2월, 하복비는 4월에 지급 전학생은 전학시기 등 고려하여 지급하되, 타 기관·지자체 등에서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이 확인된 경우 환수 가능
가정 폭력 상답원 교육 훈련 시설	교육 훈련 시설의 운영 일반	다. 수강등록 ◁ 교육수강신청서[서식 9]는 교육실시 <u>15일 전</u> 까지 접수 완료하여야 함	다. 수강등록 ◁ 교육수강신청서[서식 9]는 교육실시 <u>개시 전</u> 까지 접수 완료하여야 함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여성 긴급 전화 1366 여성 긴급 전화 1366	운영주체 및 시설 설치기준 등	○ 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신설)	○ 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신규> - 시설 운영위원회의 보고사항(관련법 제36조제3항 참조) ※ 아래 사항 등을 운영위원회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은 아님 •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 서면 또는 대리출석에 의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원칙적으로 불가	- 회의개최 방법 • 대면심의가 원칙이며, 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원격영상회의는 허용(「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준용)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원격영상회의와 같은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심의 가능 다만 이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및 분쟁소지 해소를 위하여 영상회의를 녹화하여 보관 ①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함 ②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운영위원회 위원임을 확인) ③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간 의견교환이 가능하여야 함
		☞ 다만, 국가감염병(코로나-19 등) 확산 등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다자간(영상) 통화, 다자간 메신저(모바일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심의 가능	☞ 국가감염병 확산 등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서면보고로 같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여성 긴급 전화 1366	운영주체 및 시설 설치기준 등	- 기타 사항 •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운영 • 운영위원회 운영일지를 작성·보관	- 회의 개최 •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운영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재직위원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
		<신규>	- 회의 결과의 공개 •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할 원칙으로 하되, 개인 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위원장이 비공개 결정 가능(비공개사유는 공개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 운영일지를 작성·보관
	종사자 채용 및 근무 방법	○ 종사자 채용 및 임면 (신규)	○ 종사자 채용 및 임면 • 종사자 결원 시 1월 이내에 신규 종사자를 공개채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활용 하는 경우, 대체인력의 자격은 상담원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 한하며, 이 경우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운영 체계·방법	○ 24시간 Hot-line 운영 (신규)	24시간 Hot-line 운영 • 1366센터 운영이 중단될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1366센터의 기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 의 지원	○ 세부 지원 내용 - 인건비	○ 세부 지원 내용 - 인건비 • 종사자의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음
		- 운영비 • 일반수용비(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자원봉사 상담요원, 특근매식비, 여비, 홍보비, 차량비, 재료비 등	- 운영비 • 일반수용비(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자원봉사 상담요원, 특근매식비, 여비, 홍보비, 차량유지비, 재료비, 임차료(월 70만원한도 내) 등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및 범위	가.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스톱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18년 1월1일 이후 국내에서 입은 피해에 한함)의 의료비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지원	가.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스톱킹, 교제폭력 피해자 ※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 없이 외국인 피해자의 의료비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지원 ('18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입은 피해에 한함)
	지원 원칙	가. 지원 원칙 -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총 진료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서, 내부 사례회의,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급 여부 결정(단, 외상 치료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외)	가. 지원 원칙 -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단, 100만원(1회 당) 이상 고액의 검사 또는 고액의 비급여 항목 지원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서 검토, ▲내부 사례회의 등을 거쳐 지원 여부 결정 (단, 외상 치료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원 방법	(신설)	- 의료비 중복 지원 등의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 - 피해자 및 가족이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상황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 전체를 환수할 수 있음 * ▲ 피해자가 타 지원기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실손의료보험 등)에서 동일 폭력 피해 건에 대해 의료비를 받은 경우 ▲형·민사 합의금으로 의료비를 수령한 경우 등 ※ 비용환수절차 : 의료비를 지급한 기관 등의 의료비 통장으로 수령인이 지급받은 의료비를 반납하도록 함. 의료비 지급 기관은 반납 받은 의료비를 여타 가정폭력 등 피해자 의료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집행잔액은 지자체에 반납함
	의료 지원 원칙	▶ 피해자 의료비는 (중 략) 집행 가능 ※ 피해자가 종전부터 이용해온 기관이거나 피해자가 사는 지역 인근에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 없는 경우 박사학위 수료자 또는 상담경력이 7년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기관도 예외적으로 집행 가능	▶ 피해자 의료비는 (중 략) 집행 가능 ※ 피해자가 종전부터 이용해온 기관이거나 피해자가 사는 지역 인근에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 없는 경우 박사학위 수료자 또는 상담경력이 5년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기관도 예외적으로 집행 가능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의료비 지원	행정사항	(신설)	○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 등의 과다·중복 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집행내역 점검 등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 의료비가 집중·과다 지급된 의료기관 등이 있을 경우, 필요 시 해당 상담소 등에 대한 별도의 현장점검 실시 등 집행관리 강화 ○ 의료비 집행에 대해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동 지침의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준용 가능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치료 회복 프로그램	세부 운영 지침	나. 프로그램 운영 기준				나. 프로그램 운영 기준			
		종 류	상담횟수	강 사	비 고	종 류	상담횟수	강 사	비 고
		집단 상담	- 규모 : 최소4인 이상 - 주1~2회 (1회 2시간 ~ 3시간)	주진행(1인) : 전문(II), 전문(III) 보조진행 (1~2인) : 전문(I)	전문(I) : 최초 1시간 5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15,000원 전문(II) : 최초 1시간 10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35,000원 전문(III) : 최초 1시간 15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50,000원	집단 상담	- 규모 : <u>최소3인</u> 이상 - 주1~2회 (1회 <u>1시간30분~</u> 3시간)	주진행(1인) : 전문(II), 전문(III) 보조진행(1~2 인) : 전문(I)	전문(I) : 최초 1시간 5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15,000원 전문(II) : 최초 1시간 10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35,000원 전문(III) : 최초 1시간 15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50,000원
		기 타	전체회기의 30% 범위 내에서 필요시 활용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한 자로서 활동 경력 3년 이상인 자	최초 1시간 7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35,000원 전문(II) : 최초 1시간 7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35,000원 전문(III) : 최초 1시간 10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50,000원 보조진행 : 1인, 1일당 70,000원	기 타	전체회기의 30% 범위 내에서 필요시 활용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한 자로서 활동 경력 3년 이상인 자	최초 1시간 <u>100,000원</u> , 매 1시간 초과 시 35,000원 보조진행 : 1인, 1일당 70,000원
		나. 프로그램 운영 기준 (신설)				나. 프로그램 운영 기준 ○ 심신회복캠프에 참여하는 피해자 이외의 시설 관계자에 드는 제반 비용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솔(진행) 인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			
		바. 집단 상담 표준 운영 모델 1) 보호시설 입소 성인의 경우 2) 보호시설 입소 아동의 경우				바. 집단 상담 표준 운영 모델 (보호시설, 상담소 공통 적용)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운영	〈신 설〉	나. 스톱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1) 현황 2) 법적 근거 ○ 스톱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 3) 지원시설의 업무 ○ 스톱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피해자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 피해자등의 보호와 임시거소의 제공 및 숙식 제공 ○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의 제공 ○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 지원 ○ 스톱킹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 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수사·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 스톱킹의 예방·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에 위탁된 업무 ○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통합지원 가이드라인 ○ 단일한 기관에서 긴급주거지원과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 적극 발굴 ○ 상담-주거-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피해자 맞춤형 연계 지원 시행 ○ 피해 예방부터 일상 회복까지 전 단계에 걸쳐 피해자 보호·지원 실시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운영	다. 사업별 주요 내용 1) 긴급주거지원 ○ 원룸·오피스텔 등 임시숙소를 활용한 긴급 보호·지원(30일 이내) 〈신 설〉 3) 기타 지원 내용 〈신 설〉 4) 임대주택 주거지원 ○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공간 제공 (3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다. 사업별 주요 내용 1) 긴급주거지원 ○ 원룸·오피스텔 등 임시숙소를 활용한 긴급 보호·지원(30일 이내) ※ 피해자 수요, 입소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보호기간 동안 식품, 식료품, 생필품 제공 등 생활 지원 - 호신용품 등 휴대용 안전 장비 지원 3) 기타 지원 내용 ○ 호신용품 등 휴대용 안전 장비 지원 - 주거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지원 4) 임대주택 주거지원 ○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공간 제공 (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국고 보조 금 지원	나.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1)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① 인건비 : 급여 및 수당, 기관부담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는 여건에 따라 국비지원 인건비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종사자 호봉 책정을 할 수 있음 ② 운영비·사업비·안전장비구축비	나.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1)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① 인건비 : 급여 및 수당, 기관부담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는 여건에 따라 국비지원 인건비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종사자 호봉 책정 및 수당(명절 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 수당)을 할 수 있음 ② 운영비(기관) - 종사자 상해보험료 - 수용비(인쇄비, 소모성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등 -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회의비) - 종사자 소진방지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등에 예산 지원 가능(연간 1인당 30만원 범위 내)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	국고 보조 금 지원	2) 치료회복프로그램 : 강사료, 프로그램비 등 사업운영비 〈신 설〉	- 홍보비(리플릿·팸플릿 등의 제작· 배포 등) - 법정 의무교육 외 직무연수비 ③ 긴급주거지원 운영 - 주거지원 시설 월세, 청소비, 관리비 및 공과금, 숙박비 등 ※ 주거시설 내 입소자를 위한 소모성 물품 (집기, 간편식 등) 구입 가능 ④ 사업비 - 고정형 숙소 안전 장비 구축·유지비 (112신고 비상벨, CCTV 등) - 휴대용 안전 장비 지원비 - 식품, 식료품, 생필품 등 생활 지원비 - 피해자 지원·보호를 위한 소모성 물품 - (치료회복프로그램 예산이 소진된 경우)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비 2) 치료회복프로그램 : 강사료, 프로그램비 등 사업운영비 ※ 주거지원 입소자, 비입소자 모두 지원 가능
	행정 사항	〈신 설〉	나. 긴급주거지원 만족도 조사 및 치료 회복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결과 보고 ○ 시설 입소자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설문에 응하도록 적극 권장 ○ 방법, 제출 일정 등 상세 내용은 추후 통보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쉼터 운영	시설의 인력 및 복무	가. 보호시설 운영 및 종사자 관리 ○ 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강화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연중) ■ 시행기관 : 여성가족부장관(한국 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시·도지사(가정폭력 방지법 제8조의4)	가. 보호시설 운영 및 종사자 관리 ○ 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강화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연중) ■ 시행기관 : 여성가족부장관(한국 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시·도지사(가정폭력 방지법 제8조의4) ※ <u>법정의무교육 이외에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연수비를 기관운영비 내에서 지출 가능</u>																																														
	국고 보조금의 지원 내용	가. 지원 금액(지방비 포함) (단위 : 천원) <table><tr><th rowspan="2">정 원</th><th colspan="5">지원 금액</th></tr><tr><th>계</th><th>인건비·운영비</th><th>긴급 지원비</th><th>치료·회복 프로그램</th><th></th></tr><tr><td>5명 이상 10명 이하</td><td>232,954</td><td>190,595</td><td>10,359</td><td>18,000</td><td>14,000</td></tr><tr><td>11명 이상 30명 이하</td><td>279,630</td><td>228,715</td><td>10,915</td><td>24,000</td><td>16,000</td></tr></table> 나. 지원기준 ○ 국고지원 보호시설이 6개월 이상 운영중단 시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함 (운영 재개시 국비지원은 신규지원 기관 선정 절차를 적용함)	정 원	지원 금액					계	인건비·운영비	긴급 지원비	치료·회복 프로그램		5명 이상 10명 이하	232,954	190,595	10,359	18,000	14,000	11명 이상 30명 이하	279,630	228,715	10,915	24,000	16,000	가. 지원 금액(지방비 포함) (단위 : 천원) <table><tr><th rowspan="2">정 원</th><th colspan="5">지원 금액</th></tr><tr><th>계</th><th>인건비·운영비</th><th>긴급 지원비</th><th>치료·회복 프로그램</th><th></th></tr><tr><td>5명 이상 10명 이하</td><td>247,614</td><td>205,255</td><td>10,359</td><td>18,000</td><td>14,000</td></tr><tr><td>11명 이상 30명 이하</td><td>297,221</td><td>246,306</td><td>10,915</td><td>24,000</td><td>16,000</td></tr></table> 나. 지원기준 ○ 국고지원 보호시설이 운영중단 시 즉시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함 (운영 재개시 국비지원은 신규지원 기관 선정 절차를 적용함)	정 원	지원 금액					계	인건비·운영비	긴급 지원비	치료·회복 프로그램		5명 이상 10명 이하	247,614	205,255	10,359	18,000	14,000	11명 이상 30명 이하	297,221	246,306	10,915	24,000	16,000
	정 원	지원 금액																																															
계		인건비·운영비	긴급 지원비	치료·회복 프로그램																																													
5명 이상 10명 이하	232,954	190,595	10,359	18,000	14,000																																												
11명 이상 30명 이하	279,630	228,715	10,915	24,000	16,000																																												
정 원	지원 금액																																																
	계	인건비·운영비	긴급 지원비	치료·회복 프로그램																																													
5명 이상 10명 이하	247,614	205,255	10,359	18,000	14,000																																												
11명 이상 30명 이하	297,221	246,306	10,915	24,000	16,000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쉼터 운영	국고 보조금의 지원 내용	○ 긴급지원비 〈신설〉	○ 긴급지원비 (중략) ※ <u>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 전 입소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가능하나, 보건복지부 시설급여와 이중지원 불가</u>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쉼터 운영	국고 보조금의 지원 내용	〈 2025년도 비수급자 생계비(1인당 지급기준) 〉 <table><tr><th>구 분</th><th>금 액</th><th>지 급 시 기</th></tr><tr><td>주·부식비, 피복비</td><td>356,568원</td><td>매 월</td></tr><tr><td>월동대책비</td><td>40,000원</td><td>10월 지급(연 1회)</td></tr><tr><td>특별위로금</td><td>50,000원</td><td>설·추석 전월(연 2회) * 수급자 개인별 직접지급</td></tr></table>	구 분	금 액	지 급 시 기	주·부식비, 피복비	356,568원	매 월	월동대책비	40,000원	10월 지급(연 1회)	특별위로금	50,000원	설·추석 전월(연 2회) * 수급자 개인별 직접지급	〈 2026년도 비수급자 생계비(1인당 지급기준) 〉 <table><tr><th>구 분</th><th>금 액</th><th>지 급 시 기</th></tr><tr><td>주·부식비, 피복비</td><td>426,740원</td><td>매 월</td></tr><tr><td>월동대책비</td><td>40,000원</td><td>10월 지급(연 1회)</td></tr><tr><td>특별위로금</td><td>50,000원</td><td>설·추석 전월(연 2회) * 수급자 개인별 직접지급</td></tr></table>	구 분	금 액	지 급 시 기	주·부식비, 피복비	426,740원	매 월	월동대책비	40,000원	10월 지급(연 1회)	특별위로금	50,000원	설·추석 전월(연 2회) * 수급자 개인별 직접지급
	구 분	금 액	지 급 시 기																								
주·부식비, 피복비	356,568원	매 월																									
월동대책비	40,000원	10월 지급(연 1회)																									
특별위로금	50,000원	설·추석 전월(연 2회) * 수급자 개인별 직접지급																									
구 분	금 액	지 급 시 기																									
주·부식비, 피복비	426,740원	매 월																									
월동대책비	40,000원	10월 지급(연 1회)																									
특별위로금	50,000원	설·추석 전월(연 2회) * 수급자 개인별 직접지급																									
그룹홈 운영	국고 보조금 지원 내용	가. 지원금액 ○ 170,858천원(국비·지방비 포함) － 인건비 : 152,318천원 － 운영비 : 18,540천원	가. 지원금액 ○ 182,744천원(국비·지방비 포함) － 인건비 : 164,204천원 － 운영비 : 18,540천원																								
		나. 지원기준 ○ 국고지원 보호시설이 6개월 이상 운영중단 시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함 (운영 재개시 국비지원은 신규지원 기관 선정 절차를 적용함)	나. 지원기준 ○ 국고지원 보호시설이 운영중단 시 즉시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함 (운영 재개시 국비지원은 신규지원 기관 선정 절차를 적용함)																								
		다. 집행 기준 ○ 운영비 － 입소자 주·부식비 및 피복비는 보장 시설 수급자로 인정될 경우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로 지출	다. 집행 기준 ○ 운영비 － 입소자 주·부식비 및 피복비는 보장 시설 수급자로 인정될 경우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로 지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 전 입소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가능하나, 보건복지부 시설급여와 이중지원은 불가																								
자활 지원 센터 운영	시설의 인력 및 복무	다. 보호시설 운영 및 종사자 관리 ○ 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강화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연중) ■ 시행기관 : 여성가족부장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시·도지사 (가정폭력 방지법 제8조의4)	다. 보호시설 운영 및 종사자 관리 ○ 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강화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연중) ■ 시행기관 : 여성가족부장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시·도지사(가정 폭력 방지법 제8조의4) ※ 법정 의무교육 이외에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연수비를 기관운영비 내에서 지출 가능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자활 지원 센터 운영	국고 보조금 지원 내용	가. 지원금액 ○ 1,064,202천원(국비·지방비 포함) - 인건비: 420,185천원 - 운영비: 155,283천원 - 사업비: 488,734천원	가. 지원금액 ○ 1,095,578천원(국비·지방비 포함) - 인건비: 451,561천원 - 운영비: 155,283천원 - 사업비: 488,734천원
		나. 지원기준 ○ 국고지원 보호시설이 <u>6개월 이상</u> 운영중단 시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함 (운영 재개시 국비지원은 신규지원 기관 선정 절차를 적용함)	나. 지원기준 ○ 국고지원 보호시설이 운영중단 시 <u>즉시</u>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함 (운영 재개시 국비지원은 신규지원 기관 선정 절차를 적용함)
		다. 집행 기준 ○ 사업비 - 기초생활지원 (중략)	다. 집행 기준 ○ 사업비 - 기초생활지원 (중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 전 입소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가능하나, 보건복지부 시설급여와 이중지원은 불가
이주 여성 상담소 운영	상담소의 인력 및 복무	라. 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강화 등 ○ 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강화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연중) ■ 시행기관 : 여성가족부장관(한국여성 인권진흥원) 또는 시·도지사(가정폭력 방지법 제8조의4)	라. 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강화 등 ○ 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강화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연중) ■ 시행기관 : 여성가족부장관(한국여성 인권진흥원) 또는 시·도지사(가정폭력 방지법 제8조의4) ※ 법정무교육 이외에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연수비를 기관운영비 내에서 지출 가능
	국비지원 상담소 지원기준	나. 국비지원 대상 선정기준 ○ 국고지원 보호시설이 <u>1개월 이상</u> 운영중단 시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함 (운영 재개시 국비지원은 신규지원 기관 선정 절차를 적용함)	나. 국비지원 대상 선정기준 ○ 국고지원 보호시설이 운영중단 시 <u>즉시</u>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함 (운영 재개시 국비지원은 신규지원 기관 선정 절차를 적용함)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이주 여성 상담소 운영	국고 보조금 지원 내용	가. 예산지원 기준(1개소당 6명, 8명) (단위 : 천원) <table><tr><th>구분</th><th>계</th><th>인건비</th><th>운영비</th><th>사업비</th></tr><tr><td>종사자 6명</td><td>276,246</td><td>216,258</td><td>25,000</td><td>34,888</td></tr><tr><td>종사자 8명</td><td>357,332</td><td>288,344</td><td>34,000</td><td>34,888</td></tr></table>	구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종사자 6명	276,246	216,258	25,000	34,888	종사자 8명	357,332	288,344	34,000	34,888	가. 예산지원 기준(1개소당 6명, 8명) (단위 : 천원) <table><tr><th>구분</th><th>계</th><th>인건비</th><th>운영비</th><th>사업비</th></tr><tr><td>종사자 6명</td><td>292,202</td><td>232,314</td><td>25,000</td><td>34,888</td></tr><tr><td>종사자 8명</td><td>378,640</td><td>309,752</td><td>34,000</td><td>34,888</td></tr></table>	구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종사자 6명	292,202	232,314	25,000	34,888	종사자 8명	378,640	309,752	34,000	34,888
	구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종사자 6명	276,246	216,258	25,000	34,888																													
종사자 8명	357,332	288,344	34,000	34,888																													
구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종사자 6명	292,202	232,314	25,000	34,888																													
종사자 8명	378,640	309,752	34,000	34,888																													
	국고 보조금 지원 내용	다. 운영비 관련 사무실 임차료 및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는 월 50만원 한도에서 지자체 승인 없이 운영비로 집행 가능함. 단, 5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가 집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승인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함	다. 운영비 관련 사무실 임차료 및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는 월 70만원 한도에서 지자체 승인 없이 운영비로 집행 가능함. 단, 7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가 집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승인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함																														
북한 이탈 여성 상담 및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업 추진체계	나. 사업 주체별 역할 - 지방자치단체(시·도)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예산 배분 - 지역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신설> <중략>	나. 사업 주체별 역할 - 지방자치단체(시·도)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예산 배분 - 지역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 사업운영 재원 확보 및 지원 <중략>																														
	국고 보조금 지원 내용	나. 지원 기준 - 국고지원 시설이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시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함 (운영 재개시 국비지원은 신규지원 기관 선정 절차를 적용함) 다. 집행 기준 ※ <중략> 다만,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이 2025년 기준 최저임금액(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나. 지원 기준 - 국고지원 시설이 운영중단 시 즉시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함 (운영 재개시 국비지원은 신규지원 기관 선정 절차를 적용함) 다. 집행 기준 ※ <중략> 다만,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이 2026년 기준 최저임금액(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I. 성매매피해자 상담·보호·자활시설 운영 공통지침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3. 지원·상담·자활 시설의 종사자	나. 종사자 자격기준	○ 자격기준 특례(수습종사자) - 사무국장,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의 퇴직 등으로 일시적인 결원 상태가 발생한 경우 별표 2의 개별기준 중 사무국장,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둔 때에는 <u>1년간</u> 이를 각각 사무국장,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로 볼 수 있음	○ 자격기준 특례(수습종사자) - 사무국장,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의 퇴직 등으로 일시적인 결원 상태가 발생한 경우 별표 2의 개별기준 중 사무국장,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둔 때에는 <u>2년간</u> 이를 각각 사무국장,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로 볼 수 있음
	다. 종사자 소진방지	▶ 지원가능 액수 : 연간 1인당 30만원 범위(6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지원가능 액수 : 연간 1인당 30만원 범위
	마. 종사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 교육시간 : 이론 100시간, 실습 20시간 ▶ 현장실습은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성매매방지 시설·상담소등에서 수행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할 경우 소속기관 실습 허용(증빙서류 제출) : 만 1세 이하 영아를 양육 중인 종사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수습종사자, 감염병 확산 우려 등으로 타기관 실습이 불가피한 경우	○ 교육시간 : 이론 90시간, 실습 10시간 ▶ 현장실습은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성매매방지 시설·상담소등에서 수행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할 경우 소속기관 실습 허용(증빙서류 제출) : 만 1세 이하 영아를 양육 중인 종사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수습종사자, <u>한부모</u> 감염병 확산 우려 등으로 타기관 실습이 불가피한 경우
6. 지원·상담·자활 시설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공통기준	나. 예산 편성	○ 인건비 지원액: 35,472천원/1인(연간) ▶ 인건비 지원액(35,472천원)은 예산 편성 상 기준금액이며, 실제 종사자의 경력 및 직급에 따른 인건비는 지자체 및 시설의 내부 규정에 따름 - 종사자 월 기본급은 2025년 기준 최저임금액(10,030원×209시간 = 2,096,27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 인건비 지원액: 38,139천원/1인(연간) ▶ 인건비 지원액(38,139천원)은 예산 편성 상 기준금액이며, 실제 종사자의 경력 및 직급에 따른 인건비는 지자체 및 시설의 내부 규정에 따름 - 종사자 월 기본급은 2026년 기준 최저임금액(10,320원×209시간 = 2,156,88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6. 지원·상담·자활 시설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공통기준	나. 예산 편성	- 사무실 월 임차료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는 월 50만원(연 600만원) 한도에서 지자체 승인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로 집행 가능 ▶ 다만, 지자체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연 600만원)을 초과하여 운영비로 집행 가능	- 사무실 등 월 임차료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는 월 100만원(연 1,200만원) 한도에서 지자체 승인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로 집행 가능 ▶ 다만, 지자체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을 초과하여 운영비로 집행 가능
7. 행정사항		나. 종사자 채용시 개별자격기준 및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적정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토록 하며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의 이수가 안 된 종사자는 채용 1년 이내에 필히 양성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함 (종사자 자격기준 특례 참조)	나. 종사자 채용시 개별자격기준 및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적정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토록 하며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의 이수가 안 된 종사자는 채용 2년 이내에 필히 양성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함 (종사자 자격기준 특례 참조)
		(신설)	※ 성매매 지원시설 생계급여 수급자 책정 관련 시·군·구 필수 이행사항 ○ 보장시설인 성매매 지원시설이 입소자의 생계급여를 신청 하였으나, 수급자 책정 전 소득·재산 조사 단계에서 대상자가 퇴소하여 퇴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퇴소신청서를 즉시 접수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 책정 및 생계비 지출 후 퇴소신청서 접수 처리 (단, 지급 금액은 실제 퇴소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출하도록 하며, 과지급 되지 않도록 유의) (후략)

II.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개별지침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Ⅲ-1 일반 및 청소년 지원시설	1. 개요	나. 장애인 입소자의 입소기간 연장 (법 제9조 제5항) ○ (신설)	나. 장애인 입소자의 입소기간 연장 (법 제9조 제5항) 및 입소율 관리 ○ 장애인 입소율 계산시 입소인원을 1.5인으로 산정								
	2.국고보 조금 지원	(신설)	마.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 자립지원수당('26년 신설) ○ (지원대상) 성착취·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다음의 나이 및 입소 기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나이) 성착취·성매매 피해자로 시설 입소 당시 만 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만 19세 이상인 자 - (입소 기간) 퇴소일 기준, 과거 지원 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내용) 매월 1회 50만원, 최장 12개월 간 현금 지급 (본인 명의 계좌 이체)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 자립 지원수당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은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관련 서식'의 참고자료를 참조								
Ⅲ-4 자활지원 센터 운영	2. 자활 참여자 지원사업	<table><tr><th>구분</th><th>공동작업장</th></tr><tr><td>지원 조건</td><td>○ 월 100시간 이상 참여원칙 - 월 100시간 미만으로 참여한 경우 일 할계산 또는 시간당 10,000원 기준 지원 - 참여자가 100시간 이상 참여할 의욕이 있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 하는 경우, 작업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월 150시간까지 참여 하도록 할 수 있음(월 10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1시간당 10,000원 기준 으로 추가지원) - 공동작업장 참여자가 작업장 운영 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 작업장 총 참여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참여시간으로 인정</td></tr></table>	구분	공동작업장	지원 조건	○ 월 100시간 이상 참여원칙 - 월 100시간 미만으로 참여한 경우 일 할계산 또는 시간당 10,000원 기준 지원 - 참여자가 100시간 이상 참여할 의욕이 있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 하는 경우, 작업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월 150시간까지 참여 하도록 할 수 있음(월 10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1시간당 10,000원 기준 으로 추가지원) - 공동작업장 참여자가 작업장 운영 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 작업장 총 참여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참여시간으로 인정	<table><tr><th>구분</th><th>공동작업장</th></tr><tr><td>지원 조건</td><td>○ 월 150시간까지 참여 가능 - 참여지원금은 시간당 당해연도 최저 시급* 기준 지원 * '26년 기준 10,320원 - 공동작업장 참여자가 작업장 운영 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 작업장 총 참여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참여시간으로 인정</td></tr></table>	구분	공동작업장	지원 조건	○ 월 150시간까지 참여 가능 - 참여지원금은 시간당 당해연도 최저 시급* 기준 지원 * '26년 기준 10,320원 - 공동작업장 참여자가 작업장 운영 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 작업장 총 참여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참여시간으로 인정
		구분	공동작업장								
지원 조건	○ 월 100시간 이상 참여원칙 - 월 100시간 미만으로 참여한 경우 일 할계산 또는 시간당 10,000원 기준 지원 - 참여자가 100시간 이상 참여할 의욕이 있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 하는 경우, 작업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월 150시간까지 참여 하도록 할 수 있음(월 10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1시간당 10,000원 기준 으로 추가지원) - 공동작업장 참여자가 작업장 운영 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 작업장 총 참여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참여시간으로 인정										
구분	공동작업장										
지원 조건	○ 월 150시간까지 참여 가능 - 참여지원금은 시간당 당해연도 최저 시급* 기준 지원 * '26년 기준 10,320원 - 공동작업장 참여자가 작업장 운영 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 작업장 총 참여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참여시간으로 인정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Ⅲ-4 자활지원 센터 운영	2. 자활 참여자 지원사업	구분	인턴십 프로그램(전국사업)	구분	인턴십 프로그램(전국사업)
		지원 조건	○ 월 100시간 이상 참여원칙 - 월 100시간 미만으로 참여한 경우 일할계산 또는 시간당 10,000원 기준 지원 - 참여자가 100시간 이상 참여할 의욕이 충분하고 제후업체(기관) 등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경우 1일 최대 8시간까지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월 10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1시간당 10,000원 기준으로 추가 지원) -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는 월 150 시간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이상 경우 지원기관과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업체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지원 조건	○ 월 150시간까지 참여 가능 - 참여지원금은 시간당 당해연도 최저 <u>시급</u>* 기준 지원 * '26년 기준 10,320원 -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는 월 150 시간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이상 경우 지원기관과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업체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구분	공동작업장	구분	공동작업장
		지원 기간 (연장)	1년 원칙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그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한해 <u>최장 3년까지</u> 1년 단위로 연장 가능-별도 심사표 작성, 서식 16)	지원 기간 (연장)	1년 원칙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그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한해 <u>추가로 3년까지 (1년+3년)</u> 1년 단위로 연장 가능-별도 심사표 작성, 서식 16)

Ⅲ.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1. 사업개요		구 분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개요	구 분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개요
		사 업 내 용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 1인당 지원한도액 : 760만원 -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각종 질병 등 치료비, 선불금 등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및 취업·창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 지원 - (신설)	사 업 내 용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 1인당 지원한도액 : 1,000만원 -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각종 질병 등 치료비, 선불금 등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및 취업·창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 지원 - <u>외국인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통·번역비 지원</u>
		★ 중 복 지 원 불 가	▶ 성매매피해여성 1인이 여러 사업을 통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중 복 지 원 불 가	▶ 성매매피해자등 1인이 여러 사업을 통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음
3. 사업비 지원내용 및 집행방법	가. 공통사항	구분	구조지원사업비 초과지급	구분	구조지원사업비 초과지급
		대상	○ 1인당 지원한도액 760만원을 초과하였거나 지원기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구조지원이 반드시 더 필요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 입소·이용자	대상	○ 1인당 지원한도액 <u>1,000만원</u> 을 초과하였거나 지원기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구조지원이 반드시 더 필요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 입소·이용자
	나. 의료지원	구분	구조지원사업 의료지원	구분	구조지원사업 의료지원
		지원 내용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한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않는 의료비용 - 의료지원에 수반되는 간접비용 지원(의료진료 동행비, 교통비, 식비, 입원 시 필요한 생활용품 등) 지원 가능 ▶ 건강보조식품, 보약 등 시행규칙상 규정되지 않은 항목은 제외	지원 내용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한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않는 의료비용 - 의료지원에 수반되는 간접비용 지원 (의료진료 동행비, 교통비, 식비, 입원 시 필요한 생활용품, <u>통·번역비</u> 등) 지원 가능 ▶ 건강보조식품, 보약 등 시행규칙상 규정되지 않은 항목은 제외
	다. 법률지원	구분	구조지원사업 법률지원	구분	구조지원사업 법률지원
		지원 내용	○ 성매매 또는 성매매 목적의 고용 관계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및 기타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및 증거수집 등을 위한 제비용(조사 동행비, 교통비, 숙박비, 녹음비 등 간접비용)	지원 내용	○ 성매매 또는 성매매 목적의 고용 관계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및 기타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및 증거수집 등을 위한 제비용(조사 동행비, 교통비, 숙박비, 녹음비, 간접비용), <u>외국인 피해자 통·번역비, 귀국지원 비용</u>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3. 사업비 지원내용 및 집행방법	라. 직업훈련 지원	<table><tr><th>구분</th><th>구조지원사업 직업훈련지원</th></tr><tr><td>지원 내용</td><td> ○ 취업·창업 등의 준비 또는 진학을 위한 학원 등 수강료(재료비 포함) 및 직업훈련수당(월 20만원 이내 - 1인당 지원한도액 <u>760만원</u>안에 포함됨) ○ 직업훈련 지원에 수반되는 간접 비용 지원(교통비, 식비등) 추가 </td></tr></table>	구분	구조지원사업 직업훈련지원	지원 내용	○ 취업·창업 등의 준비 또는 진학을 위한 학원 등 수강료(재료비 포함) 및 직업훈련수당(월 20만원 이내 - 1인당 지원한도액 <u>760만원</u>안에 포함됨) ○ 직업훈련 지원에 수반되는 간접 비용 지원(교통비, 식비등) 추가	<table><tr><th>구분</th><th>구조지원사업 직업훈련지원</th></tr><tr><td>지원 내용</td><td> ○ 취업·창업 등의 준비 또는 진학을 위한 학원 등 수강료(재료비 포함) 및 직업훈련수당(월 20만원 이내 - 1인당 지원한도액 <u>1,000만원</u>안에 포함됨) ○ 직업훈련 지원에 수반되는 간접 비용 지원(교통비, 식비, 통·번역비 등) </td></tr></table>	구분	구조지원사업 직업훈련지원	지원 내용	○ 취업·창업 등의 준비 또는 진학을 위한 학원 등 수강료(재료비 포함) 및 직업훈련수당(월 20만원 이내 - 1인당 지원한도액 <u>1,000만원</u>안에 포함됨) ○ 직업훈련 지원에 수반되는 간접 비용 지원(교통비, 식비, 통·번역비 등)
	구분	구조지원사업 직업훈련지원									
	지원 내용	○ 취업·창업 등의 준비 또는 진학을 위한 학원 등 수강료(재료비 포함) 및 직업훈련수당(월 20만원 이내 - 1인당 지원한도액 <u>760만원</u>안에 포함됨) ○ 직업훈련 지원에 수반되는 간접 비용 지원(교통비, 식비등) 추가									
	구분	구조지원사업 직업훈련지원									
	지원 내용	○ 취업·창업 등의 준비 또는 진학을 위한 학원 등 수강료(재료비 포함) 및 직업훈련수당(월 20만원 이내 - 1인당 지원한도액 <u>1,000만원</u>안에 포함됨) ○ 직업훈련 지원에 수반되는 간접 비용 지원(교통비, 식비, 통·번역비 등)									
마.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외부)강사로 및 상담료 ▶ 단, 청소년의 경우 부모상담도 병행함	○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외부)강사로 및 상담료 ▶ 단, 청소년의 경우 부모상담도 병행가능									
	○ 집행방법 - 구조지원사업 예산 총액의 70% 이내에서 집행 가능하되, 지원 결정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함 ▶ 단, 청소년지원시설의 경우 지자체 승인 시 70% 이상 집행 가능함	○ 집행방법 - 구조지원사업 예산 총액의 70% 이내에서 집행하되, 지자체 승인 시 70% 이상 집행 가능하고, 지원 결정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함 ▶ 단서 삭제									
	- 숙박비 등 집행기준 <table><tr><th>구 분</th><th>지급 내용</th></tr><tr><td>교통비</td><td>대중교통 이용 원칙, 기타 교통비는 실소요액 지출 가능 ▶버스 등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차량 임차료가 프로그램 참여인원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가능</td></tr></table>	구 분	지급 내용	교통비	대중교통 이용 원칙, 기타 교통비는 실소요액 지출 가능 ▶버스 등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차량 임차료가 프로그램 참여인원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가능	- 숙박비 등 집행기준 <table><tr><th>구 분</th><th>지급 내용</th></tr><tr><td>삭제</td><td>삭제</td></tr></table>	구 분	지급 내용	삭제	삭제	
구 분	지급 내용										
교통비	대중교통 이용 원칙, 기타 교통비는 실소요액 지출 가능 ▶버스 등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차량 임차료가 프로그램 참여인원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가능										
구 분	지급 내용										
삭제	삭제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3. 사업비 지원내용 및 집행방법	마.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강사료 집행기준									
		<table><tr><th>강사 구분</th><th>지급 상한액(지급 상한시간)</th></tr><tr><td>1. 대학(원) 교수급 2. 관련분야 박사학위 이상인자 3.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으로 경력 3년 이상인자 4. 의사, 변호사, 회계 사, 세무사 등 자격 소지자 5.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td><td>최초 1시간 15만원 / 1시간 추가 시 매시간 7만 5천원 추가 (총 3시간까지 지급. 다만, 캠프의 경우 최대 5시간까지 지급 가능)</td></tr><tr><td>1.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으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2.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3.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td><td>최초 1시간 10만원 / 1시간 추가 시 매시간 5만원 추가 (총 3시간까지 지급. 다만, 캠프의 경우 최대 5시간까지 지급 가능)</td></tr><tr><td>보조 강사</td><td>1회당 3만원 ※ 단순 강의매체(PPT, 차트 등) 조작 제외</td></tr></table>	강사 구분	지급 상한액(지급 상한시간)	1. 대학(원) 교수급 2. 관련분야 박사학위 이상인자 3.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으로 경력 3년 이상인자 4. 의사, 변호사, 회계 사, 세무사 등 자격 소지자 5.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	최초 1시간 15만원 / 1시간 추가 시 매시간 7만 5천원 추가 (총 3시간까지 지급. 다만, 캠프의 경우 최대 5시간까지 지급 가능)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으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2.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3.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	최초 1시간 10만원 / 1시간 추가 시 매시간 5만원 추가 (총 3시간까지 지급. 다만, 캠프의 경우 최대 5시간까지 지급 가능)	보조 강사	1회당 3만원 ※ 단순 강의매체(PPT, 차트 등) 조작 제외	• 강사료는 I.성매매피해자 지원· 상담·자활시설 공통지침의 6. 지원· 상담·자활시설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공통기준의 강사료 등 사례비 지급기준 준용
		강사 구분	지급 상한액(지급 상한시간)								
		1. 대학(원) 교수급 2. 관련분야 박사학위 이상인자 3.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으로 경력 3년 이상인자 4. 의사, 변호사, 회계 사, 세무사 등 자격 소지자 5.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	최초 1시간 15만원 / 1시간 추가 시 매시간 7만 5천원 추가 (총 3시간까지 지급. 다만, 캠프의 경우 최대 5시간까지 지급 가능)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으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2.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3.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	최초 1시간 10만원 / 1시간 추가 시 매시간 5만원 추가 (총 3시간까지 지급. 다만, 캠프의 경우 최대 5시간까지 지급 가능)								
보조 강사	1회당 3만원 ※ 단순 강의매체(PPT, 차트 등) 조작 제외										
※ 강사료 지급 유의사항											
1. 관련분야 자격증이 민간자격증일 경우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으로 등록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http://www.krivet.re.kr , 민간자격등록현황에서 확인 가능)											
2. 내부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불가											
3. 관련분야 : 정신·심리 상담치료, 사회복지·사회사업· 여성학 등 학습·진로교육, 음악·미술·원예·정서치료 등											
4. 강사의 여비는 실소요액 지급가능(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5.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시 1시간으로 인정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3. 사업비 지원내용 및 집행방법	바. 통·번역 지원	(신설)	바. 통·번역 지원					
			<table><tr><th>구분</th><th>통·번역 지원</th></tr><tr><td>대상</td><td>○ 통·번역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등</td></tr><tr><td>지원 내용</td><td>○ 의료지원, 법률 지원, 직업훈련지원 시 필요한 통·번역 지원(1인당 최대 150만원) ○ 집행기준 :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기준에 따름 1. 통역료 :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0분씩 끊어 남는 부분은 이를 30분으로 본다)로 산정하되, 최초 30분에 대하여는 70,000원, 이후 추가 되는 30분에 대하여는 매 30분마다 50,000원을 지급 2. 번역료 :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지급 3. 통역인 여비 지급 가능, 단 대중 교통(철도 일반석, 고속버스 등)에 한하여 실비 지원</td></tr><tr><td>집행 방법</td><td>○ 통·번역인 통장사본 및 이력서, 통·번역비 지급영수증 등 - 지급 시 구체적인 통·번역 내용, 소요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 통·번역 지출 시 통·번역인 이력서에 관련 전문 이력이 명시되어야 함</td></tr></table>	구분	통·번역 지원	대상	○ 통·번역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 내용
구분	통·번역 지원							
대상	○ 통·번역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 내용	○ 의료지원, 법률 지원, 직업훈련지원 시 필요한 통·번역 지원(1인당 최대 150만원) ○ 집행기준 :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기준에 따름 1. 통역료 :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0분씩 끊어 남는 부분은 이를 30분으로 본다)로 산정하되, 최초 30분에 대하여는 70,000원, 이후 추가 되는 30분에 대하여는 매 30분마다 50,000원을 지급 2. 번역료 :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지급 3. 통역인 여비 지급 가능, 단 대중 교통(철도 일반석, 고속버스 등)에 한하여 실비 지원							
집행 방법	○ 통·번역인 통장사본 및 이력서, 통·번역비 지급영수증 등 - 지급 시 구체적인 통·번역 내용, 소요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 통·번역 지출 시 통·번역인 이력서에 관련 전문 이력이 명시되어야 함							

IV.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기능보강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2. 지원세부 기준	다. 지원단가	사업 종류	지원 단가	국비보조율	(삭제)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1,500천원×㎡	50%	
		개보수	실거래가 (계약규정 준용)	50%	
		기자재 구입	실거래가 (계약규정 준용)	50%	
		임차 보증금	나. 지방공사 등 임차보증금 기준	50%	

V.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3. 종사자 채용 및 자격조건	나. 종사자 자격기준	나. 종사자 자격기준 ○ 일반기준 *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1년 이내로 채용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나. 종사자 자격기준 ○ 일반기준 *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상담원 교육과정의 이수가 안 된 종사자는 채용 2년 이내에 필히 양성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함		
		나. 종사자 자격기준 ○ 개별기준	나. 종사자 자격기준 ○ 개별기준 - 중앙지원센터 <table><tr><th>직종별</th><th>종사자 자격기준</th></tr><tr><td>종사자 (기간제)</td><td>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 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 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 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td></tr></table>	직종별	종사자 자격기준
직종별	종사자 자격기준				
종사자 (기간제)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 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 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 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4. 국고 보조금 지원	나. 국고 보조금 지원 기준	나.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② 운영비 ○ 편성 기준 : 인건비 및 운영비 총액의 10~3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집행 ③ 사업비 ○ 편성 기준 : 상담, 아웃리치, 사례관리 등	나.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② 운영·사업비 ○ 편성 기준 : 운영·사업비는 통합 편성
		② 운영비 ○ 지원내용 - 종사자 소진방지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예산 지원(연간 1인당 30만원 범위내 사용 가능)	② 운영·사업비 ○ 지원내용 - 종사자 소진방지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예산 지원(연간 1인당 50만원 범위내 사용 가능)
		③ 사업비 ○ 지원내용 - 상담 및 사례관리비 1인당 연간 80만원	② 운영·사업비 ○ 지원내용 - (삭제)
		③ 사업비 ○ 지원내용 -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	② 운영·사업비 ○ 지원내용 -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 등 * 사업추진 등에 필요하여 기간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집행가능
		다. 예산집행 ○ 보조금은 사업선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 시 환수함	다. 예산집행 (삭제)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4. 국고 보조금 지원	나. 국고 보조금 지원 기준	라. 예산변경 ○ 사업의 목적달성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공문을 통해 사전에 시·도(시·군·구)에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 확정예산에 대해 예산 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시·도(시·군·구)의 사전 승인 후 실시하며, 시·도(시·군·구)는 예산 등 사업 변경 내역을 성평등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함 ○ 지자체와 협의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의 목간 변경이 가능함	라. 예산변경 ○ 예산변경은 각 지원센터에서 내부 결재를 통해 변경하고, “인건비”와 “운영·사업비” 상호간 변경시에는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함
		마. 세부 집행기준	(삭제)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I-1 취업제한제도 현황 2. 주요연혁	<추가>	○ <u>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5.10.23. 시행)</u> - <u>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u> - <u>적발 기관의 폐쇄 요구에 불응,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 시 과태료 부과</u> - <u>아동청소년 대상 신고의무 교육을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자격취득과정 뿐만 아니라 보수교육과정에도 포함</u>
I-1 취업제한제도 현황 5. 취업제한대상 기관	<추가>	○ <u>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로서 성평등 가족부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의 허가 또는 등록 받은 비영리법인·비영리 민간단체, 대안교육기관</u>
I-3 취업(운영) 중인 성범죄 경력자 여부 점검 5. 법 위반시 조치	<추가>	○ <u>기관 폐쇄 요구 거부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u> ○ <u>점검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u>
I-4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 (공개방식)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함	○ (공개방식)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누리집)를 통해 기관별 취합해서 일괄 공개(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시·도지사, 시·군·구 지자체장), 공개 기간은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함.
참고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Q&A	○ 취업제한제도 일반, 성범죄경력조치 경력조치 대상범위 등 Q&A	○ 다빈도 민원관련 취업제한제도 일반, 성범죄경력조치, 경력조치 대상범위 등 Q&A 추가 및 내용 최신화

1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7. 신고의무 종사자 교육	〈추가〉	교육기관 : 민간위탁사업자(공모선정) / <u>성평등가족부 나라배움터</u>

11

청소년성문화센터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청소년 성문화 센터 운영 성과목표	성과지표	'25년 목표
	이용자 수	1,773천명
	이용자 만족도	95.0점
	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전·후 성의식 향상률	12.7%
	성과지표	'26년 목표
예산규모 및 운영형태별 예산 지원 내역	이용자 수	1,761천명
	이용자 만족도	95.9점
	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전·후 성의식 향상률	13.8%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4,932백만원 - 1개소 지원 예산 173,052천원 - 시설 종사자 인건비 증액 - 센터장 35,331 천원 / 팀장 26,727천원 / 팀원 25,478천원 - 이동형(독립형) 센터장 31,093천원 / 운전기사 30,836천원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5,097백만원 - 1개소 지원 예산 178,842천원 - 시설 종사자 인건비 증액 - 센터장 36,481 천원 / 팀장 27,597천원 / 팀원 26,308천원 - 이동형(독립형) 센터장 32,106천원 / 운전기사 31,840천원
	〈신 설〉	나. 국비 지원 중단 등 사유 (국고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기존 국비지원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이 부실하거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 등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성평등 가족부에 서면보고(시·군·구는 시·도를 경유 하여 보고)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국비 지원 중단 등 사유		○ (국비지원 중단)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여야 함(보조금법 제31조의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성평등 가족부에 서면보고(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하여 보고)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보조금법 제33조 제3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인사관리	〈신 설〉	- 채용 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함 - 채용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복무관리		○ 휴일 및 휴가 : 근로기준법 적용	○ 휴일 및 휴가 :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준용, 기타 사항은 지자체 및 위탁법인의 운영 규정에 따름						
위탁 운영	기관 (단체) 의 선정	〈신 설〉	- 위탁운영 시 공개 모집으로 수탁자 선정 - 선정절차 ① 공고(시·도 또는 시·군·구) ⇒ ② 신청서 접수 (법인·단체 등) ⇒ ③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시·도 또는 시·군·구) ⇒ ④ 수탁기관 결정 ⇒ ⑤ 위탁 계약 체결(시·도 또는 시·군·구) ⇒ ⑥ 위탁계약 체결 결과 보고(시·군·구 → 시·도 → 성평등가족부)						
	선정 기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참조 -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table><tr><th></th><th>수탁자 격</th><th>위탁근거 법령</th></tr><tr><td>아동· 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청소년성 문화 센터)</td><td>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td><td>■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td></tr></table> -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 능력, 사업실적,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수탁자 격	위탁근거 법령	아동· 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청소년성 문화 센터)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수탁자 격	위탁근거 법령						
아동· 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청소년성 문화 센터)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선정 방법	○ 선정방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선정방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되, 선정심의 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자 배제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 - 심사평가표, 회의록 등 선정 과정에서의 기록 관리·보존 철저 - 평가 기준 및 선정 결과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위탁 운영	기관 (단체) 의 선정 취소	〈신 설〉	○ 선정 취소 사유 －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위탁 취소 세부 기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단체 등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 위탁을 받은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력 등 기준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5. 허위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유용하여 사업비가 환수된 경우 6.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보고가 허위인 경우 7. 청소년성문화센터 고유업무 외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및 위탁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지정·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9. 현장점검 결과, 시정·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지도·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센터 현지조사 및 해당 센터 관계자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도록 청문 과정을 거치는 등 투명하게 절차를 이행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지정 취소 처분 후 1주일 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위탁 취소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 － 지정취소를 통보받은 센터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익월부터 센터운영을 중단해야 함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기타 행정사항	〈신 설〉	○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행정 조치를 통보받은 성문화센터의 경우 예산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 ○ 소관 지자체에서는 강사의 선정 및 종사자의 인근 지역으로의 출강 빈도 등 집행·운영의 적정성을 관리·감독해야 함 ○ 위탁 취소 및 위탁기간 종료로 인한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 시, 선정 절차에 따라 선정 후 1주일 내에 성평등가족부 보고

1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월 평균 지원금	○ 생활안정 지원(1인당) - 생활안정지원금(정액) 월 <u>1,882천원</u> - 간병비 예산 상 월 <u>3,446천원</u> ※ 이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	○ 생활안정 지원(1인당) - 생활안정지원금(정액) 월 <u>1,976천원</u> - 간병비 예산 상 월 <u>3,722천원</u> ※ 이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																										
간병비 지원	○ (지원 금액) - 병원 간병은 <u>일 214,000원 이내</u> 지급 - 입주간병은 근무일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의 자택 등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24시간 간병인을 이용하는 경우로 <u>일 178,000원 이내에서</u> 지원 - 방문간병은 <u>일 143,000원 이내에서</u> 지원하되, <u>하루 이용시간이 5시간 이하인 경우 시간당 17,000원 범위</u> 내에서 지급 - 간병비 한도를 초과하여 신청된 금액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부담으로 함 <table><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3">1일 지원 한도</th></tr><tr><th rowspan="2">병원</th><th colspan="2">방문간병(시간제)</th></tr><tr><th>입주</th><th>방문</th></tr><tr><td>금액</td><td><u>214,000원</u></td><td><u>178,000원</u></td><td><u>143,000원</u></td></tr></table>	구분	1일 지원 한도			병원	방문간병(시간제)		입주	방문	금액	<u>214,000원</u>	<u>178,000원</u>	<u>143,000원</u>	○ (지원 금액) - 병원 간병은 <u>일 231,000원 이내</u> 지급 - 입주간병은 근무일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의 자택 등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24시간 간병인을 이용하는 경우로 <u>일 192,000원 이내에서</u> 지원 - 방문간병은 <u>일 154,000원 이내에서</u> 지원하되, <u>하루 이용시간이 5시간 이하인 경우 시간당 18,000원 범위</u> 내에서 지급 - 간병비 한도를 초과하여 신청된 금액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부담으로 함 <table><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3">1일 지원 한도</th></tr><tr><th rowspan="2">병원</th><th colspan="2">방문간병(시간제)</th></tr><tr><th>입주</th><th>방문</th></tr><tr><td>금액</td><td><u>231,000원</u></td><td><u>192,000원</u></td><td><u>154,000원</u></td></tr></table>	구분	1일 지원 한도			병원	방문간병(시간제)		입주	방문	금액	<u>231,000원</u>	<u>192,000원</u>	<u>154,000원</u>
	구분		1일 지원 한도																									
			병원	방문간병(시간제)																								
입주		방문																										
금액	<u>214,000원</u>	<u>178,000원</u>	<u>143,000원</u>																									
구분	1일 지원 한도																											
	병원	방문간병(시간제)																										
		입주	방문																									
금액	<u>231,000원</u>	<u>192,000원</u>	<u>154,000원</u>																									

13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구 분		2025년도(4월 수정판)	2026년도
사업 개요	참고 사항	〈 내용 추가 〉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하, 지역디성센터로 표기)
	목적	-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에 의한 심층 상담, 삭제 지원 및 수사 동행, 의료·지원 및 심리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 - 디지털성범죄 피해예방 관련 교육·홍보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교류로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피해 예방 대응 체계 강화	-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에 의한 심층 상담, 삭제 지원 및 수사 동행,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 -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교육·홍보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교류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및 피해 예방 대응체계 강화
	법적 근거	〈 내용 추가 〉	나. 법적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목 수정	다. 지역디성센터	다. 지역디성센터 업무
	지역디 성센터 현황	라. 지역디성센터 현황('25년) : 총 17개소 〈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황('25년) 〉	라. 지역디성센터 현황('26년) : 총 17개소 〈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황('26년) 〉 (표 현행화)
	# 기호 의미	마. 명칭 및 엠블럼 (참고) ‘#’(해시태그, 핵심어표시)는 디지털 시대의 상징적인 기호로, 온라인상에서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기관의 목표와 조화를 이룸. ‘#’는 연결과 결합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기호이며, ‘#’의 선을 여러 색상으로 표현하여 국제협력 등 연대감을 강조	마. 명칭 및 엠블럼 (참고) ‘#’(해시태그, 핵심어표시)는 디지털 시대의 상징적인 기호로, 온라인상에서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기관의 목표와 조화를 이룸. ‘#’는 연결과 결합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기호임

구 분		2025년도(4월 수정판)	2026년도
설치 운영 기준	설치 운영 기준	〈 내용 추가 〉	나. 설치·운영 기준 (중략) ○ 기타 사항 - 지역디성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분류(‘25.7.28.) 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등록·운영 등을 위한 제반사항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 ※ 시설 관련 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02-2077-3944) - 필요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른 ‘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특례’ 적용 가능
위탁 기준	제목 수정	3 지역디성센터 위탁기준	3 지역디성센터 설치·운영 위탁기준 및 관리
	위탁 가능 대상	나. 위탁 가능 대상 (중략) ○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나. 위탁 가능 대상 (중략) ○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법인 정관에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과 관련된 목적이 명시된 기관 또는 정관에 관련 목적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위탁 방법	○ 시·도지사가 지역디성센터를 위탁하여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 1)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9 제3항 [별표1]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 충족 여부 2)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 마목에 따른 종사자 자격기준 충족 여부 (생략)	○ 시·도지사가 지역디성센터를 위탁하여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 1) 지역디성센터 설치·운영 기준 충족 여부 ※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9제3항 [별표1] 2) 지역디성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충족 여부 ※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별표1] 1. 일반기준 나목 및 제2호 마목 (생략)

구 분		2025년도(4월 수정판)	2026년도
위탁 기준	위탁 결과 보고	마. 위탁 결과 고시 및 보고 ○ 시·도지사는 지역디성센터의 사업계획서를 수립·검토·확정하고 위탁 개요와 함께 성평등가족부에 위탁계약 후 2주 내 보고 ※ 위탁 개요 : 수탁기관 현황(수탁기관 명칭, 대표자, 주소, 기관 유형, 종사자 현황), 위탁기간, 고용승계 현황 등	마. 위탁 결과 고시 및 보고 ○ 시·도지사는 <u>지역 디성센터의 위탁 운영 기관을 선정·변경한 경우, 위탁 운영 개요를 위탁계약 후 2주 내 성평등가족부에 보고</u> ※ 위탁 개요 : 수탁기관 현황(수탁기관 명칭, 대표자, 주소, 기관 유형, 종사자 현황), 위탁기간, 고용승계 현황 등 ※ <u>시·도에서 지역 디성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 운영 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26년에 한하여 기존 수행방식(보조사업)으로 운영. 다만, '27년부터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위탁 운영에 대한 제반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운영</u>
	배치 기준	가. 종사자의 배치기준 (중략) * 지역디성센터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역디성센터의 장은 법인 대표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여성폭력 피해지원 업무를 하는 시설의 장이 겸임할 수 있음. 단, 센터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가. 종사자의 배치기준 (중략) * <u>센터장은 단독 전담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디성센터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역디성센터의 장은 법인 대표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여성폭력 피해지원 업무를 하는 시설의 장이 겸임할 수 있음. 단, 센터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함</u>
인력 및 복무	종사자 채용 근속 연한	○ 종사자 채용 (중략) ※ 지역디성센터 종사자가 다른 지자체 소속 지역디성센터로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도 근속연한으로 인정함	○ 종사자 채용 (중략) ※ 지역디성센터 종사자가 다른 지자체 소속 지역디성센터로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u>여성폭력 관련 기관 중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종사 하였던 종사자가 지역디성센터로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도 근속연한으로 인정함</u>
	종사자 임면 보고	〈내용 추가〉	〈공개모집의 원칙의 예외 추가〉
	자격 요건 특례	〈위치 변경〉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팀장 및 팀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의 위치를 “나. 종사자의 자격기준” 항목에서 “다. 종사자 채용 및 임면보고 등” 항목으로 위치 변경

구 분		2025년도(4월 수정판)	2026년도																						
인력 및 복무	종사자 근무 시간 및 복무	※ 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하며, 검직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근무시간 중 대학출강 등 타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는 검직으로 봄(소관 지자체는 검직 여부 반기별 확인) ※ 근무시간 중 디지털성범죄 대표 상담전화 1366으로부터 바로 연결되는 피해상담에 차질 없이 대응(종사자 간 상담시간 조정 및 자리 이석 시 착신, 출근 후 및 업무 중 온라인 신청 게시판 확인)	※ 센터장을 비롯한 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하며, 검직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근무시간 중 대학출강 등 타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는 검직으로 봄(소관 지자체는 검직 여부 반기별 확인) ※ 근무시간 중 디지털성범죄 대표 상담전화 1366으로부터 바로 연결되는 피해상담에 차질 없이 대응(종사자 간 상담시간 조정 및 이석 시 착신 권고, 출근 후 및 업무 중 온라인 신청 게시판 확인)																						
	재무 회계 원칙	○ 재무회계 관리는 「국가회계법」, 「지방 재정법」,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 회계 관련 법령 준용(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참고)	○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재무 회계 관리 및 보조금 지원 내역	보조금 지원 단가	다. 2025년 보조금 지원 단가	다. 2026년 보조금 지원 단가																						
		<table><tr><th>구 분</th><th>국비</th><th>지방비</th></tr><tr><td rowspan="3">인건비(2명) 및 운영비</td><td>39백만원 - 35.4백만원×2명×50% =35.4백만원 - 7.2백만원×1식×50% =3.6백만원</td><td>39백만원 - 35.4백만원×2명×50% =35.4백만원 - 7.2백만원×1식×50% =3.6백만원</td></tr><tr><td>사업비 (프로그램비 등)</td><td>8.5백만원 - 17백만원×1식×50% =8.5백만원</td><td>8.5백만원 - 17백만원×1식×50% =8.5백만원</td></tr><tr><td>합 계</td><td>47.5백만원</td><td>47.5백만원</td></tr></table>	구 분	국비	지방비	인건비(2명) 및 운영비	39백만원 - 35.4백만원×2명×50% =35.4백만원 - 7.2백만원×1식×50% =3.6백만원	39백만원 - 35.4백만원×2명×50% =35.4백만원 - 7.2백만원×1식×50% =3.6백만원	사업비 (프로그램비 등)	8.5백만원 - 17백만원×1식×50% =8.5백만원	8.5백만원 - 17백만원×1식×50% =8.5백만원	합 계	47.5백만원	47.5백만원	<table><tr><th>구 분</th><th>국비</th><th>지방비</th></tr><tr><td rowspan="3">인건비 (3명) 및 운영비</td><td>61,185천원 38,390천원×3명×50%= 57,585천원 7,200천원×1식×50%= 3,600천원</td><td>61,185천원 38,390천원×3명×50%= 57,585천원 7,200천원×1식×50%= 3,600천원</td></tr><tr><td>사업비 (프로그램비 등)</td><td>8,500천원 17,000천원×1식×50%= 8,500천원</td><td>8,500천원 17,000천원×1식×50%= 8,500천원</td></tr><tr><td>합 계</td><td>69,685천원</td><td>69,685천원</td></tr></table>	구 분	국비	지방비	인건비 (3명) 및 운영비	61,185천원 38,390천원×3명×50%= 57,585천원 7,200천원×1식×50%= 3,600천원	61,185천원 38,390천원×3명×50%= 57,585천원 7,200천원×1식×50%= 3,600천원	사업비 (프로그램비 등)	8,500천원 17,000천원×1식×50%= 8,500천원	8,500천원 17,000천원×1식×50%= 8,500천원	합 계
구 분	국비	지방비																							
인건비(2명) 및 운영비	39백만원 - 35.4백만원×2명×50% =35.4백만원 - 7.2백만원×1식×50% =3.6백만원	39백만원 - 35.4백만원×2명×50% =35.4백만원 - 7.2백만원×1식×50% =3.6백만원																							
	사업비 (프로그램비 등)	8.5백만원 - 17백만원×1식×50% =8.5백만원	8.5백만원 - 17백만원×1식×50% =8.5백만원																						
	합 계	47.5백만원	47.5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인건비 (3명) 및 운영비	61,185천원 38,390천원×3명×50%= 57,585천원 7,200천원×1식×50%= 3,600천원	61,185천원 38,390천원×3명×50%= 57,585천원 7,200천원×1식×50%= 3,600천원																							
	사업비 (프로그램비 등)	8,500천원 17,000천원×1식×50%= 8,500천원	8,500천원 17,000천원×1식×50%= 8,500천원																						
	합 계	69,685천원	69,685천원																						
보조금 집행 기준	제목	<내용 추가>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보조금 집행기준 사항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을 따름																						
	인건비 및 운영비	가. 인건비 및 운영비 ○ 각 지자체 및 지역디성센터는 여건에 따라 국비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종사자 호봉 책정을 할 수 있음	가. 인건비 및 운영비 ○ 각 지자체 및 지역디성센터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되, 여건에 따라 국비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단, 기존임금 저하 등의 종사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별도의 인건비 지급기준 등을 적용받는 종사자는 해당 기준에 의하며, 필요시 자체부담에 의거하여 추가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 별도 인건비 지급기준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규직 등에 대해 별도 기준 적용 가능																						

구 분		2025년도(4월 수정판)	2026년도
보조금 집행 기준	인건비 및 운영비	- 지역 다성센터 개소당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함	- 지역 다성센터 개소당 3명의 인건비를 지원함
		- 다만, 2025년도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은 2025년 기준 최저임금액(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이상이 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 다만, 2026년도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은 2026년 기준 최저임금액(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이상이 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준용	〈삭제〉
		- 수용비(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PC 등 통신시설 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등	- 수용비(인쇄비, <u>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u> , 간행물 구입비, <u>기관 운영 관련 홍보비</u>),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PC 등 통신시설 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u>PC 등 장비·물품의 임차료</u> 등
보조금 집행 기준	사업비 (치유 회복 프로그램 등)	○ 사업비는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피해자 의료비지원, 홍보비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집행	○ 사업비는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피해자 의료비지원, <u>예방교육</u> , 홍보비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집행
		- <u>지역다성센터 기관 홍보</u> ,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지원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리플릿, 팸플릿 등의 제작·배포 비용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운영을 위해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지원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리플릿, 팸플릿 등의 제작·배포 비용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운영을 위해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보고 사항	- 제출처 : 성평등가족부(디지털성범죄 방지과)	- 제출처: <u>성평등가족부(디지털성범죄 방지과)</u> ※ '26년에 변경되는 운영실적 서식 및 실적 입력 기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구 분		2025년도(4월 수정판)	2026년도
지역 다성 센터 업무 안내	지원 대상	나. 업무절차	나. 피해 지원 업무 및 지원 대상자 ○ 업무 절차 (표 중략) ○ 지원 대상자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 미성년인 피해자에게 상담, 삭제지원 등 원활한 피해 지원이 어려울 경우, 법정대리인들의 동의 없이 본인의 동의만으로 피해 지원 가능 ※ (참고사항) 「(경찰청) 수사규칙」 개정 ('25.10.31.)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일 때 피해자 진술 거부 등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들에 수사 진행상황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음(제13조 제3항)
	삭제 지원	1) 삭제지원 요청 ○ 피해당사자(지원대상자, 피해자)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피해당사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피해당사자 : 유포된 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피해로 인해 신상정보가 유포된 사람, ▲삭제지원요청자 : 피해당사자, 가족, 대리인 등 모두 포함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인 경우에도 단독으로 삭제지원 신청 가능	1) 삭제지원 요청 (시행규칙 제2조의6 제3항) ○ 삭제지원요청자 :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지원대상자 : 법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 ○ 삭제지원요청자가 요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만) - 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피해 당사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경우만)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인 경우에도 단독으로 삭제지원 요청 가능하며, 상세 업무 요령은 중앙다성센터에서 제공하는 삭제지원 매뉴얼 참조

구 분		2025년도(4월 수정판)	2026년도														
지역 다성 센터 업무 안내	중앙 다성 센터 삭제 지원 연계	〈 내용 추가 〉	※ 향후 중앙 다성센터 홈페이지 개편(협업 게시판 신설 등)으로 연계 방식 변화가 있을 경우, 중앙 다성센터에서의 안내에 따라 연계 수행														
		※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면서 삭제요청에 불응하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 중앙다성센터에서 ①‘불법성증명공문’ 발송 ②해외 피해지원기관과의 핫라인 구축을 통한 국제공조 등의 삭제지원 방법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음	※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면서 삭제요청에 불응하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 중앙다성센터에서 ①‘불법성증명공문’ 발송 ②해외 피해지원기관(美NCMEC, 英IWF 등)과의 핫라인 구축을 통한 국제공조 등의 삭제지원 방법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음														
		〈 내용 추가 〉	- 예시) '26.5.1. 신고 접수했다면 다음 달 10일부터 3개월간(6.10, 7.10, 8.10) 긴급 지원 결과보고서 발송, 이후 3년간('27.6.10, '28.6.10, '29.6.10) 연간 결과보고서 발송														
	중앙 다성 센터 소개	〈 내용 추가 〉	○ 삭제지원 기간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지원 대상</th><th>삭제 지원</th><th>모니터링</th></tr> </thead> <tbody> <tr> <td colspan="2">내담자</td><td>3년</td><td>3년</td></tr> <tr> <td rowspan="2">선제적 삭제지원</td><td>수사기관</td><td>3년</td><td>1년</td></tr> <tr> <td>아동·청소년 성착취물</td><td>영구</td><td>-</td></tr> </tbody> </table> ※ 삭제지원 및 모니터링 기간 연장 가능	지원 대상		삭제 지원	모니터링	내담자		3년	3년	선제적 삭제지원	수사기관	3년	1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구
지원 대상		삭제 지원	모니터링														
내담자		3년	3년														
선제적 삭제지원	수사기관	3년	1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구	-														
기록 보존 및 관리	보존 및 관리	○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합성·편집물)과 그 복제물 및 신상정보와 그 상담기록의 <u>보관 기간</u> 은 법령 또는 지침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보관하되, 삭제지원 요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확인서를 받아 즉시 폐기	○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그 상담 기록은 법령 또는 지침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수집·보관을 지원하되, 삭제지원요청자의 폐기 요청이 있는 경우 확인서를 받아 즉시 폐기 ※ (불법촬영물등)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 분		2025년도(4월 수정판)	2026년도
별첨1	전문 강사 자격 기준	다. 전문강사 자격기준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공통기준을 갖추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여야 함. (생략)	다. 전문강사 자격기준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공통기준을 <u>모두</u> 갖추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여야 함. (생략)
		공통기준 1. 성폭력피해자 상담관련 교육 (법정시간)을 이수하고	공통기준 1. 성폭력피해자 상담관련 교육 (법정시간)을 <u>이수한 자</u>
		3.전문강사(III) 1. 관련분야 박사 학위 이상으로 성폭력 피해자 대면상담경력 1년 이상인 자 2. 대면상담경력 10년 이상으로, <u>5년 이상의</u> 집단상담경력을 갖춘 자 3.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 대면상담경력 3년 이상인 자	3.전문강사(III) 1. 대면상담경력 10년 이상으로, 집단상담경력을 갖춘 자 2. 관련분야 박사 학위 이상으로 성폭력 피해자 대면상담경력 1년 이상인 자 3.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 대면상담경력 3년 이상인 자
		주 : 1. 대면상담경력 : 주 3회 이상, 1일 4시간 이상 대면상담 경력 2. 상담경력 : 주 1회 이상, 1일 2시간 이상 전화·면접 상담경력 3. 집단상담경력: 5인 이상을 대상으로 (생략)	주 : 1. 대면상담경력 : 주 3회 이상, 1일 4시간 이상 <u>또는 연 620시간 이상</u> 대면상담 경력 2. 상담경력 : 주 1회 이상, 1일 2시간 이상 <u>또는 주 2시간 이상</u> 전화·면접 상담경력 3. 집단상담경력: <u>2인</u> 이상을 대상으로 (생략)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I.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사업 개요	4. 사업 규모 및 지원 예산	- 등급별 예산 지원액 (단위 : 개소, 천원, 회)						- 등급별 예산 지원액 (단위 : 개소, 천원, 회)					
		구 분	유 형	사업목표 (교육횟수)	국비 (A)	지방비 (B)	총 지원액 (A+B)	구 분	유 형	사업목표 (교육횟수)	국비 (A)	지방비 (B)	총 지원액 (A+B)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자치단체 경상보조)	가 (2)	405	65,417	65,417	130,834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자치단체 경상보조)	가 (2)	405	66,394	66,394	132,788
			나 (14)	285	44,815	44,815	89,630		나 (14)	285	45,453	45,453	90,906
	다 (2)		175	33,378	33,378	66,756	다 (2)		175	34,007	34,007	68,144	
5. 사업 주요 내용	5. 성과목표						5. 사업 주요내용						
		성과지표	내 용		'24년 목표치		○ 지역사회에서 교육 기회와 접근성이 취약한 교육 대상을 분석 ○ 사회문화적 변화와 시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 교육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강사 관리와 교육 반응 분석 ○ 유관기관 연계·협업을 통한 폭력예방 인식개선 체계 구축						
		인식개선도 조사	사업 참여자 인식 개선도 측정		(인식개선도) 89.4점 이상								
6. 사업 추진 체계		나. 사업 주체별 역할 ○ 지방자치단체(시·도) - 지역 단위 자체 지원 계획 수립 ※ 성평등가족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연계 방안 등 수립						나. 사업 주체별 역할 ○ 지방자치단체(시·도) - 지역 단위 자체 지원 계획 수립 ※ 성평등가족부 '2026년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지역 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연계 방안 등 수립. 특히, 유관부서 협업(소속 협회·단체 등 연계) 및 관할 시·군·구, 지역 교육청, 지역 협회·연합회·단체 등과 교육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포함 ⇨ 지역 교육지원기관의 교육 수요 조사 및 교육 대상 발굴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활동을 지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II. 지원 기관 운영	1. 폭력 예방 교육 지원 기관 지정	가. <u>지정절차</u>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 <u>지역 교육지원기관</u> 나. <u>지정 대상</u> 다. <u>심사방법 및 기준</u> - 시·도에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되, 서류 심사, 실사 및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 기존 협의체 활용 가능 라. <u>지정취소기준</u>	가. <u>중앙 교육지원기관</u>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 (<u>출연사업비로 편성·운영</u>) 나. <u>지역 교육지원기관</u> □ <u>지정 절차</u> □ <u>지정 대상</u> □ <u>심사방법 및 기준</u> - 시·도에서 자체 심사위원회(<u>기존 협의체 활용 가능</u>)를 구성. - <u>공모 시 전문 기관 선정을 위하여 구비서류 검증*, 직원에 의한 현지 실사** 및 프레젠테이션 등 단계적·심층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공고·심사 진행</u> * 서류 간에 내용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 가능 ** 담당 직원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제출 서류와 실제 운영현황을 대조(시설, 인력, 프로그램 운영 상태 등을 확인하여 서류와의 일치성 검증) □ <u>지정취소기준</u>																
		<table><tr><th>구분</th><th>배경 및 필요성</th><th>교육대상(세부)</th></tr><tr><td>교육 우선</td><td>교육 기회가 부족·부재한 성범죄 취약계층과 관련 주변인을 발굴하여 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원</td><td> - 장애인¹⁾, 이주민²⁾, 노인, <u>학교밖청소년</u> 〈<u>신 설</u>〉 <u>양육자, 학부모 등 성범죄 취약계층 주변인</u> </td></tr><tr><td>취약 지역</td><td>지리적 조건이 취약 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좁아 교육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td><td> - 취약지역* 거주 주민, 채취·생산 종사자 * 도서벽지, 산간오지, 농산어촌, 도농복합 </td></tr></table>	구분	배경 및 필요성	교육대상(세부)	교육 우선	교육 기회가 부족·부재한 성범죄 취약계층과 관련 주변인을 발굴하여 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원	- 장애인¹⁾, 이주민²⁾, 노인, <u>학교밖청소년</u> 〈<u>신 설</u>〉 <u>양육자, 학부모 등 성범죄 취약계층 주변인</u>	취약 지역	지리적 조건이 취약 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좁아 교육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	- 취약지역* 거주 주민, 채취·생산 종사자 * 도서벽지, 산간오지, 농산어촌, 도농복합	<table><tr><th>구분</th><th>배경 및 필요성</th><th>교육대상(세부)</th></tr><tr><td>교육 우선</td><td>교육 기회가 부족·부재한 성범죄 취약계층과 관련 주변인을 발굴하여 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원</td><td> - 장애인¹⁾, 이주민²⁾, (<u>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u>), 노인 <u>청소년(학교밖청소년, 그룹홈쉼터보육시설 이용 청소년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u> <u>학부모 등 성범죄 취약계층 주변인</u> </td></tr><tr><td>취약 지역</td><td>지리적 여건이 제한적이고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좁아 교육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td><td> - 취약지역* 거주 주민, 채취·생산 종사자 * 도서벽지, 산간오지, 농산어촌, 도농복합 </td></tr></table>	구분	배경 및 필요성	교육대상(세부)	교육 우선	교육 기회가 부족·부재한 성범죄 취약계층과 관련 주변인을 발굴하여 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원	- 장애인¹⁾, 이주민²⁾, (<u>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u>), 노인 <u>청소년(학교밖청소년, 그룹홈쉼터보육시설 이용 청소년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u> <u>학부모 등 성범죄 취약계층 주변인</u>	취약 지역
구분	배경 및 필요성	교육대상(세부)																	
교육 우선	교육 기회가 부족·부재한 성범죄 취약계층과 관련 주변인을 발굴하여 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원	- 장애인¹⁾, 이주민²⁾, 노인, <u>학교밖청소년</u> 〈<u>신 설</u>〉 <u>양육자, 학부모 등 성범죄 취약계층 주변인</u>																	
취약 지역	지리적 조건이 취약 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좁아 교육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	- 취약지역* 거주 주민, 채취·생산 종사자 * 도서벽지, 산간오지, 농산어촌, 도농복합																	
구분	배경 및 필요성	교육대상(세부)																	
교육 우선	교육 기회가 부족·부재한 성범죄 취약계층과 관련 주변인을 발굴하여 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원	- 장애인¹⁾, 이주민²⁾, (<u>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u>), 노인 <u>청소년(학교밖청소년, 그룹홈쉼터보육시설 이용 청소년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u> <u>학부모 등 성범죄 취약계층 주변인</u>																	
취약 지역	지리적 여건이 제한적이고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좁아 교육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	- 취약지역* 거주 주민, 채취·생산 종사자 * 도서벽지, 산간오지, 농산어촌, 도농복합																	
III. 세부 사업 운영	2. 교육 대상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III. 세부 사업 운영

2. 교육 대상

3. 교육 운영

구분배경 및 필요성교육대상(세부)

마을 안전 지킴이주민 접촉 빈도가 높아 교육 시 지역사회 내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이 가능• 이·통·반장, 주민자치모임*,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아동안전지킴이·수호천사
• 사회복지 및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
• 밀집지역 소상공인*. 운수업 종사자
* 상가, 편의점, 약국, 학원(교습·생활체육) 등 운영

사건 발생성폭력 등 사건 발생으로 성범죄 예방,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필요성이 대두된 집단에 선제적 교육을 강화• 대학생, 문화예술인*, 체육인**
* 창작·실연·기술지원·프리랜서, 문화생, 큐레이터
** 선수촌·학교·단체 소속 운동선수, 지도자, 대회인력

전략 발굴관련 교육의 공백으로 성폭력 등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발굴하여 시의성 있는 교육을 지원할 필요• 장애인·아동·청소년, 북한이탈주민, 기구방문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수도 검침원, 택배·배달업 종사자, 재가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 3) <신 설>

다. 교육 내용 및 방법

○ 최근 교제폭력 사건의 연이은 발생에 대응하여 교육 분야(교제폭력 예방) 신설 및 지원 확대
※ (기존) 5개 분야(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디지털 성범죄 예방) → (개선) 6개 분야(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디지털 성범죄·교제폭력 예방)

○ 신종 범죄(교제폭력, 스토킹, 딥페이크 기술 이용 성적하위영상물 제작·유포 등),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 관련 내용 강화 및 현장 교육 수요와 지역사회 현안을 반영하여 시의성 높은 교육을 제공

구분배경 및 필요성교육대상(세부)

마을 안전 지킴이주민 접촉 빈도가 높아 교육 시 지역사회 내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이 가능• 지역리더(이·통·반장, 주민자치모임*,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아동안전지킴이·수호천사 등)
• 사회복지 및 청소년 시설 종사자
• 밀집지역 소상공인*. 운수업 종사자
* 상가, 편의점, 약국, 학원(교습·생활체육) 등 운영

사건 발생성폭력 등 사건 발생으로 성범죄 예방,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필요성이 대두된 집단에 선제적 교육을 강화• 대학생*, 장애인**
* 신입생 또는 전문대학, 단과대학 학생으로 한정
** 자원기관·단체·법인, 생활·이용시설의 임·직원, 입소자 등

전략 발굴관련 교육의 공백으로 성폭력 등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발굴하여 시의성 있는 교육을 지원할 필요•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및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3)
• 청년(사회초년생, 예비사회인, 고립·은둔 청년 등)

주: 3)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3조제4항)에 따라 상시 10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방교육 실시 가능

다. 교육 내용 및 방법

○ 폭력 유형별 가·피해자 현황, 예방적 요소(인식 개선 등)를 반영하여 중점 대상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연계하는 등 폭력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
※ (예시) ① 청소년·대학생·청년 : 디지털 성범죄/교제폭력(스토킹) +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② 민간기업 종사자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 교제폭력 예방교육(스토킹) ③ 노인 : 가정폭력 + 교제폭력 예방교육(스토킹)

* (6개 분야)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디지털 성범죄·교제폭력 예방

○ 신종 성범죄(교제폭력, 스토킹,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취업 사기 등)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청년층에 대한 교육 강화 및 현장 교육 수요와 지역사회 현안을 반영하여 시의성 높은 교육을 제공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III. 세부 사업 운영	5. 인식 개선도 등 조사	나. 환류 지역 교육지원기관은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강사에게 환류하고 확인서를 구비해야 함	나. 환류 - 지역 교육지원기관은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강사에 대한 강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 운영에 반영하여야 함. -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강사에게 환류하고 확인서를 구비 - 모니터링 과정에서 내용적 편향성·부적절한 발언 여부 등을 점검하여, 해당 사항이 강의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IV. 예산의 지원 및 관리	2. 보조금 집행 및 관리	가. 인건비 인건비 편성기준 (단위: 개, 천원, 명) <table border="1"> <thead> <tr> <th>유 형</th><th>기관수</th><th>인건비 총액</th><th>종사자수</th></tr> </thead> <tbody> <tr> <td>가</td><td>2</td><td>48,688.5</td><td>2인</td></tr> <tr> <td>나</td><td>14</td><td>31,816</td><td>1인</td></tr> <tr> <td>다</td><td>2</td><td>31,198</td><td>1인</td></tr> </tbody> </table>	유 형	기관수	인건비 총액	종사자수	가	2	48,688.5	2인	나	14	31,816	1인	다	2	31,198	1인	가. 인건비 인건비 편성기준 (단위: 개, 천원, 명) <table border="1"> <thead> <tr> <th>유 형</th><th>기관수</th><th>인건비 총액</th><th>종사자수</th></tr> </thead> <tbody> <tr> <td>가</td><td>2</td><td>50,642.5</td><td>2인</td></tr> <tr> <td>나</td><td>14</td><td>33,092</td><td>1인</td></tr> <tr> <td>다</td><td>2</td><td>32,456</td><td>1인</td></tr> </tbody> </table>	유 형	기관수	인건비 총액	종사자수	가	2	50,642.5	2인	나	14	33,092	1인	다	2	32,456	1인
유 형	기관수	인건비 총액	종사자수																																
가	2	48,688.5	2인																																
나	14	31,816	1인																																
다	2	31,198	1인																																
유 형	기관수	인건비 총액	종사자수																																
가	2	50,642.5	2인																																
나	14	33,092	1인																																
다	2	32,456	1인																																

구분	2025년	2026년
인신매매 등 피해자 구조 지원비 운영	1. 사업개요 구분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이하 '피해자 구조지원비') 지원 대상 사업 주체 -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제1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이하 '중앙권익보호기관') - 인신매매등피해자 지원기관	1. 사업개요 구분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이하 '피해자 구조지원비') 지원 대상 사업 주체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 1.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으로서 인신매매 등 피해를 입은 사람 2.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 3.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성평등 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중앙권익보호기관') - 인신매매등피해자 지원기관 -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개인 ※ 이주민 피해자의 경우 원활한 제도 이용을 위하여 피해지원기관에 조력 요청
	2. 사업추진 체계 가.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사업추진 체계도 1)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 (중략)	2. 사업추진 체계 가. 피해자 확인서를 받은 사람 1) 사업추진 체계도 2)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신청 및 접수 세부 절차 나. 인신매매등 범죄피해자 1) 사업추진 체계도 2)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신청 및 접수 세부 절차 다. 아동·청소년·장애인 인신매매등 피해자 1) 사업추진 체계도 2)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신청 및 접수 세부 절차 ※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운영지침」 세부 내용 참조

구분	2025년	2026년
인신매매 등 피해자 구조 지원비 운영	3. 사업비 지원내용 및 집행방법 라. 의료비 지원	3. 사업비 지원내용 및 집행방법 라. 의료비 지원
	구분	구분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은 제외한다) - 인신매매등 피해자의 의료상담 및 지도 - 인신매매등 피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 등 포함) - 약제비 및 의료기기 구입비	○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은 제외한다) - 인신매매등 피해자의 의료상담 및 지도 - 인신매매등 피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 등 포함) • 심리치료비의 경우 상담사 자격증, 상담일지, 비용 산정 확인 자료 - 약제비 및 의료기기 구입비, <u>보조기구 구입</u>
	지원 원칙	지원 원칙
	○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 지원(비급여 심리치료 제외)하되,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중략	○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 지원(비급여 심리치료 제외)하되,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중략 ○ <u>보조기구 구입의 경우 진료비 명세서 및 진료내역 등에 보조기구 필요에 대한 의사 소견 필요</u>

구분	2025년		2026년	
인신매매 등 피해자 구조 지원비 운영	마. 생계지원		마. 생계지원	
	구분	생계지원	구분	생계지원
	지원 내용	○ 당해연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비 지원금액에 한하여 물품 또는 금품 지원 가능 - 3회 지원(월 1회) 원칙이며, 필요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대 6회 지원 가능 - 생계지원 신청 시 생계지원 신청서[서식6]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참고] 제출 필수 단)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후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가능 ○ 생계지원 대상자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자의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지원금액 지원 ○ <u>피해자확인서 발급시점부터 소급 지원 가능</u>	지원 내용	○ 당해연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비 지원금액에 한하여 물품 또는 금품 지원 가능 - 3회 지원(월 1회) 원칙이며, 필요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대 6회 지원 가능 - 생계지원 신청 시 생계지원 신청서[서식17]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참고] 제출 필수 단)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후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가능 ○ 생계지원 대상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자의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지원 금액 지원 ○ <u>지급 기준</u> - <u>피해자확인서 발급시점부터 소급 지원 가능</u> - <u>인신매매등 범죄피해자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피해자는 대상자 인정 시점부터 소급 지원 가능</u>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보조사업비의 변경	○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 ○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 보조사업자의 승인 받아야 함 1.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2. 보조비목 간의 전용 ☞ 보조금법 제23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6조, 성평등가족부 관리규정 제16조
보조금 사용	○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만 인정 -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원칙 ☞ 통합관리지침 제18조, 성평등가족부 관리규정 제16조 ○ 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구매나 8천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등 계약은 조달계약으로 실시 ☞ 통합관리지침 제21조
계정 관리	○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 ☞ 보조금법 제34조, 통합관리지침 제20조, 성평등가족부 관리규정 제18조
자기부담금 집행	○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 ☞ 통합관리지침 제23조, 성평등가족부 관리규정 제21조
보조사업비의 이월	○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 금지 ○ 이월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 승인 필요 ☞ 통합관리지침 제25조, 성평등가족부 관리규정 제22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제출(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반납(종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 완료) * 정산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무이자 약정 금지 ☞ 보조금법 제27조, 통합관리지침 제26조, 성평등가족부 관리규정 제23조
정산보고서 검증 (해당시)	○ 개별 사업 국고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감사인이 검증 * 2017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 적용 ☞ 보조금법 제27조, 통합관리지침 제28조, 성평등가족부 관리규정 제26조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 감사 및 보고서 제출	○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실제로 교부 받은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보조사업자가 여러부처에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를 합친 금액 * 2017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 적용 ☞ 보조금법 제27조의2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 (대상)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1개 사업이 아니라 보조사업자가 받은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절차) 공시 대상자는 공시 대상사업을 접수하고, 각 공시사항을 e나라도움에 입력 후, 확정하면 공시 완료되어 대국민에게 공시 〈 정보공시사항 〉 •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수입은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등 재원별 합계액 ** 지출내역은 보조비목·보조세목별 합계액 • 정산보고서 •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해당 시) • 감사지적사항(해당 시) * 감사원,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통보 받은 지적사항 •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해당 시/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 2017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 적용 ☞ 보조금법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자료보관	○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 -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상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 가능 * 보조금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 보조금법 제25조, 통합관리지침 제31조, 성평등가족부 관리규정 제29조

- [참고]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4.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5.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6.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7.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8.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부정수급 (공통 적용사항)

- 부정수급 모니터링
 - 시·도지사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지도·감독
 -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부당 사용사례가 적발된 경우, 감사 등을 실시하여 환수 및 징계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분
- 보조금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 부정수급 등 사유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처분을 받은 경우,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반환 대상 보조금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함(「보조금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부정수급 제재 절차(보조금관리법제30조, 제31조, 제33조 등 관련)〉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환수	제재부가금(보조금 총액의 최대 5배 이내) 및 가산금(체납기간에 따라 최대 5%) 부과	보조사업 수행배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	중앙관서의 장	중앙관서의 장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반환금, 제재부가금 등 미납 시) 강제 징수	(신고 등이 있을 시) 신고포상금	
중앙관서의 장	중앙관서의 장, 지자체의 장	중앙관서의 장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관련)〉

제재부가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나.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행정조치를 통보받은 기관의 경우 예산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

〈부정수급자 수행 배제 또는 교부·지급제한 기준〉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취소 횟수	수행배제 또는 교부·지급 제한기간
보조금 반환 대상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결정 취소	1회 이상	5년
	2) 보조금,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결정 취소	2회 이상	3년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 취소	3회 이상	2년

사 업 명	2025년도	2026년도	비고
합 계	139,278	148,672	
□ 일반회계	24,606	27,188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1,045	980	
-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자 지원사업	555	454	
- 피해자 지원사업	10	10	
- 피해자 기념사업	320	320	
- 기타 경상경비	160	170	
-여성인권평화재단설립	-	26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4,054	2,701	
- 여성폭력방지 정책 조정협의 및 전략분석	188	330	
- 실태조사 및 시설평가 등	1,506	300	'26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관련 실태조사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	1,535	1,234	
-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825	837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운영지원	13,698	16,618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291	401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5,518	4,798	
- 신상정보 인터넷공개제도 운영	270	323	
- 신상정보 고지제도 운영	3,934	3,736	
-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제도 운영	154	154	
- 성범죄 가해아동청소년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	443	443	
- 성범죄 예방 및 제도운영	717	142	
○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신규	1,690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신규	1,115	

사 업 명	2025년도	2026년도	비고
□ 양성평등기금	70,327	75,993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19,037	21,137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14,749	15,821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1,849	1,849	
-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683	676	
- 지원시설 기능보강	491	1,291	
-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 지원	1,265	1,500	
○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3,167	46,261	
-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7,940	8,446	
- 가정폭력상담소 및 통합상담소 운영	12,937	13,773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712	(이관)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3,144	14,261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운영	1,155	1,342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등	1,853	1,853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3,195	3,995	
- 스톱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2,231	2,591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8,123	8,595	
-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6,445	6,832	
-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1,446	1,531	
-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지원	232	232	
□ 청소년육성기금	4,932	5,097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4,932	5,097	
-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운영	4,932	5,097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9,413	40,394	
○ 성폭력 피해자 지원	39,413	40,394	
-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14,980	16,060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20,035	20,622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	3,540	3,540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172	172	

제2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I. 무료법률 지원사업

II.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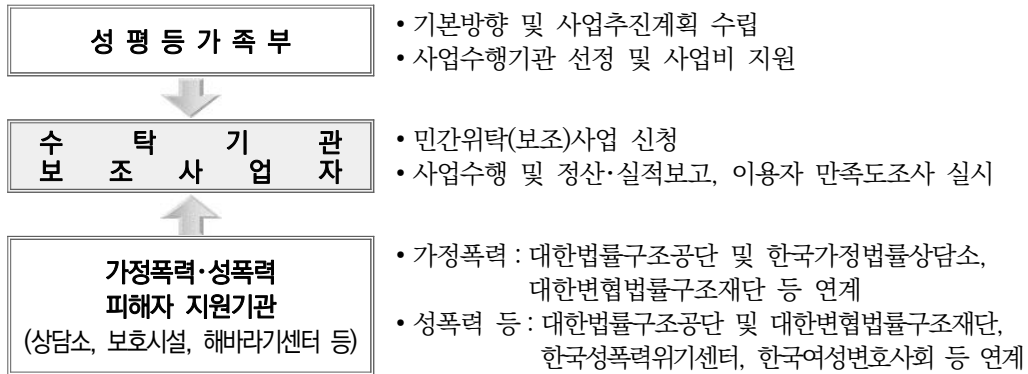
1 목적 및 기대효과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 보호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및 홍보사업을 통해 사회문제로 대두한 폭력범죄의 위해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소송수행에 따른 시간적 기회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 면제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수혜
- 법률계몽활동으로 가정평화 구현 및 피해자의 인권침해 방지
- 폭력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의 법률구조활동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

2 사업 개요

-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보조사업자(수탁기관)
 - 성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 가정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 스토킹, 교제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여성변호사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 사업 추진체계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사업 지역 : 전국

- 가정폭력피해자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 18개 지부 및 41개 출장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 18개 지부 및 41개 출장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 18개 지부 및 41개 출장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3 사업 대상 및 지원 절차

○ 구조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여성 포함)

※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도 포함하여 지원 가능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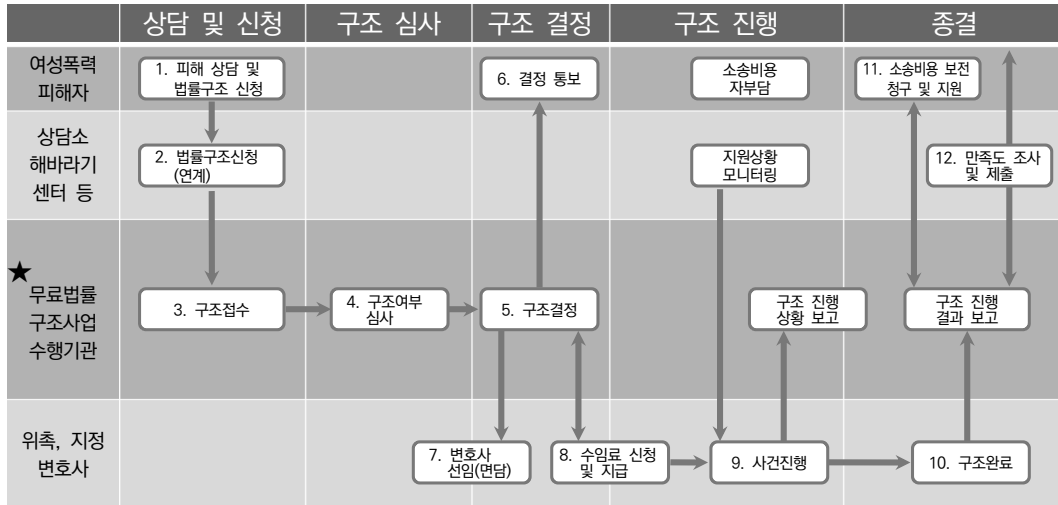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서식 34]
- 진단서 : 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 진단서
-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등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이 아닌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당한 업무수행과정 중에서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무료법률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음.

다만, 무료법률지원 후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유죄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무료법률 지원금을 환수조치함

○ 구조 대상 사건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 형사 사건 등

○ 구조 흐름도



○ 구조비 지원 기준

- 변호사 수임료는 심급별로 지원(선금)하되, 집행 시 부가가치세는 제외. 본안 사건은 150만원, 재정 및 항고신청, 기타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의 수임료는 40만원 기준임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수임변호사가 소속변호사(공익법무관)인 경우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이 정하는 변호사보수기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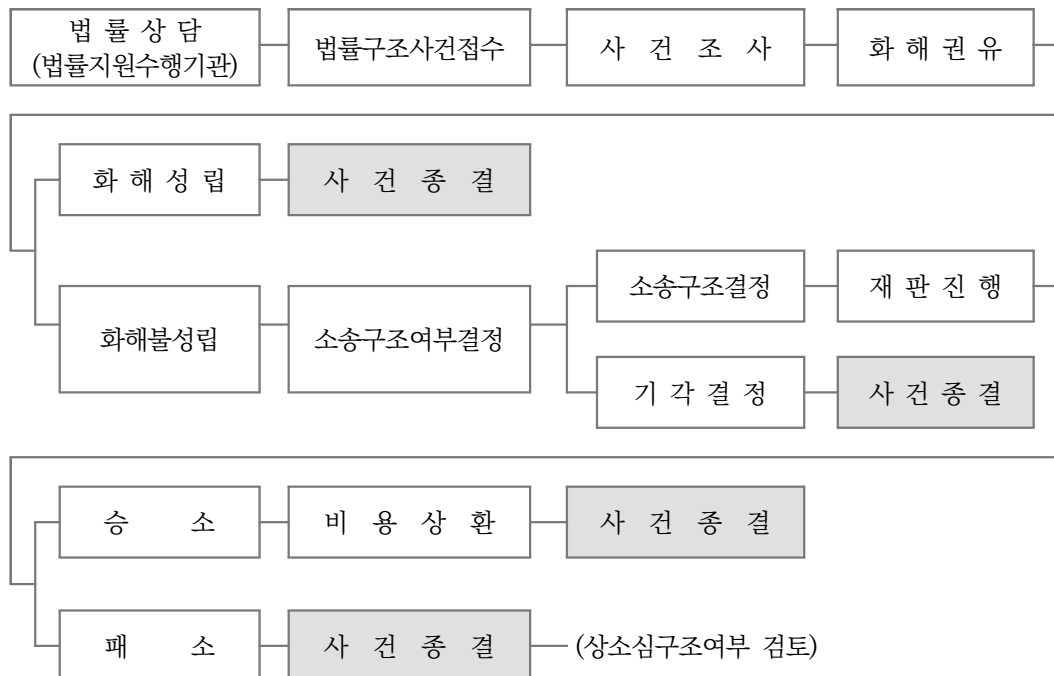
- 소송 진행 중 취하할 경우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수임료에 준하여 기관별 내부 지침에 따라 40만원 이내 지급 가능
-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다수일 경우, 기관별 내부 지침에 따라 1인 추가 시마다 40만원 이내 추가 지급 가능
- 폭력피해자가 디지털콘텐츠 및 기사 등으로 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입는 2차 피해 소송 지원
-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실비 지원
- 신청인이 지급한 경우 소송 종료 후 사업수행기관으로 청구서(서식 34)를 제출하여 보전 청구하되, 변호사의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에 수임료 청구 시 일괄 청구
- 통·번역비, 수화통역비 등 포함
-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운영비 집행 가능

○ 구조 지원 한도액 및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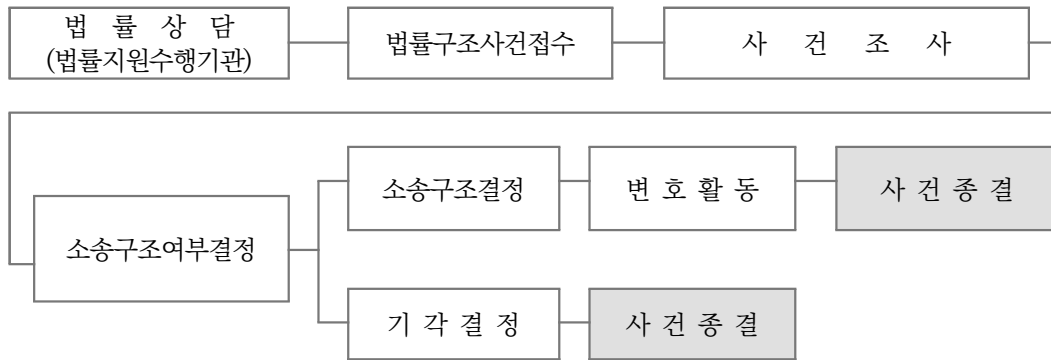
- 1인당 구조비용액이 총 600만원(보전사건 제외) 초과 시 성평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여부 결정
 -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진행(심사로 등 사업비로 지출 가능)
- 보조사업 수행 시 보조금은 당해 연도 지원사건(종결 또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할 것. 다만, 당해 연도 이전 종결사건에 대해 사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 ※ 사업수행기관은 수임변호사측에 지출사유 발생 시 해당 연도 내 비용을 청구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연도말 일시적 재원소진, 외부 사정으로 인한 소송비용 확정·청구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연도가 변경되어 지출하지 않도록 유의
-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지원은 법무부의 국선 변호인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수행기관은 피해자(신청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임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할 것
 - 추후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로부터 수임료 등 반환
 - ※ 단, 형사소송 지원을 위해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민·가사 소송까지 계속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민·가사 소송에 대해서는 무료법률구조사업으로 지원 가능

○ 구조절차

- 민사·가사사건 처리절차



- 형사사건 처리절차



4 사업 내용

○ 법률지원사업

- 민사·가사 소송대리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지원 결정 시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

- 형사소송 지원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법률상담과 피해자의 무료변호, 수사의회,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대리 등을 지원
-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공판절차 출석, 증거보전절차 청구 및 참여, 증거물 열람·등사 등이 가능하며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 행사

- 법률상담

- 면접, 전화, 사이버, 출장, 서신상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

○ 법률계몽사업

-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홍보활동
- 연계 상담소 및 변호사 등에 대한 법률지원 교육, 워크숍
- 현지출장 생활법률강연 및 이동법률상담, 무료 대서 등

- 시·도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시설에 사업내용 안내와 홍보
- 상담소 및 시설 등에서의 상담과정에서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가 무료법률구조를 원하는 것이 인지되었을 때에는, 상담소 및 시설 등에서 진단서, 사진 등의 초기 입증자료 확보를 도와주시기 바람
- 사업수행기관은 상반기 실적보고를 익월 15일까지, 연간 운영실적(정산보고 포함)은 익년도 1월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 목 적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

2 | 사업 개요

가. 사업 내용

-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사업'용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여, 폭력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제공
- 1개의 운영기관(사업수행기관)에 임대주택 10호 내외 배정
 - 1개 운영기관 당 10호 내외 당 자립상담원 1인을 배치하여 입주자 상담 및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입주자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음

나.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다. 추진 경과

- '08년 주거지원사업 시범실시(서울, 부산 지역에 임대주택 24호 공급)
- '09년 인천, 강원, 충북 지역에 임대주택 31호 신규공급
- '11년 대구, 경기, 제주 지역에 임대주택 28호 신규공급
- '12년 광주, 경기, 경남 지역에 임대주택 40호 신규공급
- '13년 대전, 광주, 경남, 울산 지역에 임대주택 42호 신규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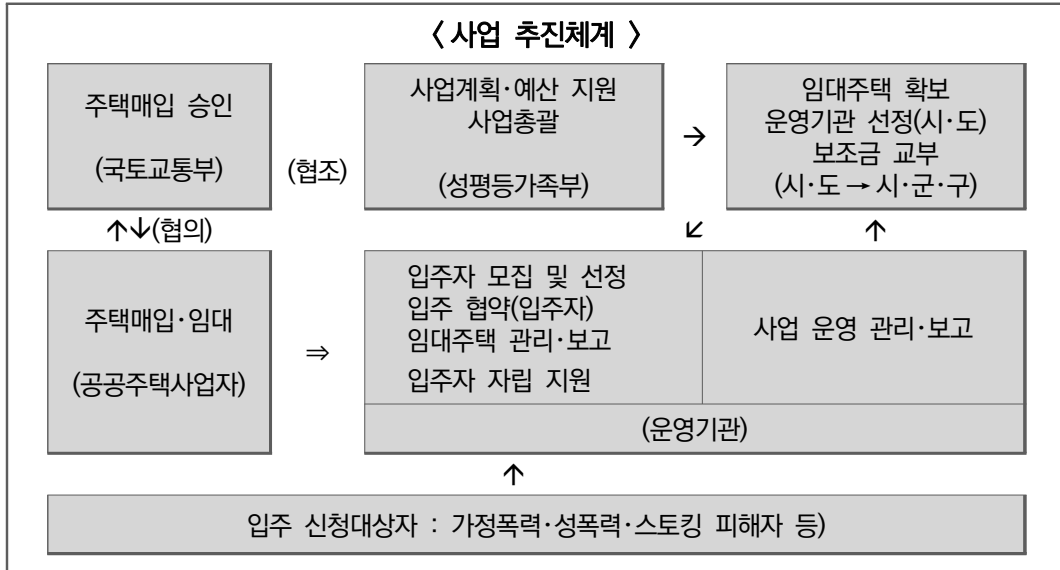
- '14년 부산, 대구, 인천 지역에 임대주택 38호 신규공급
- '15년 부산, 울산, 경기, 전북 지역에 임대주택 43호 신규공급
- '16년 대전, 경북, 경남지역에 임대주택 30호 신규공급
- '17년 충남, 전남지역에 임대주택 20호 신규공급
- '18년 대구, 충남지역에 임대주택 20호 신규공급
- '19년 전남, 경북지역에 임대주택 20호 신규공급
- '20년 서울 지역에 임대주택 10호 신규공급
- '21년 서울 지역에 임대주택 10호 신규공급
- '22년 강원 지역에 임대주택 2호 신규공급
- '23년 강원 지역에 임대주택 5호 신규공급
- '25년 전남 지역에 임대주택 3호 신규공급

3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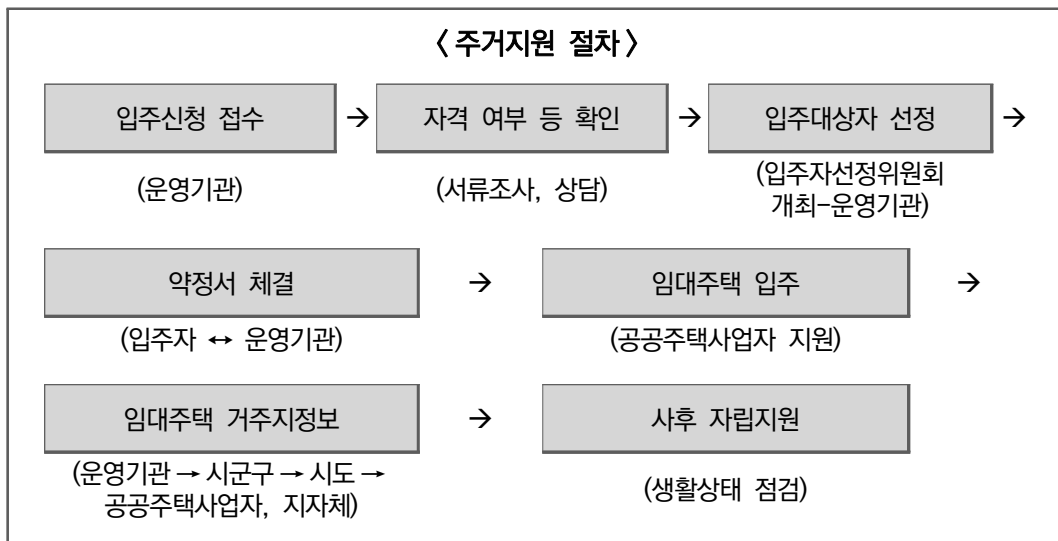
- 성평등가족부
 - 사업계획 및 사업지침 수립·시행
 - 사업총괄 및 공급물량 확보, 보조금 교부(성평등가족부 → 시·도) 등
- 국토교통부
 - 사업계획 및 사업지침 협의 및 사업 협조
 - 연도별, 시도별 공급물량 확정·배정 등
- 공공주택사업자(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 임대주택 제공
 - 운영기관과 임대차계약 체결
 - ※ 입주대상자 중복입주 여부 소명 절차 이행시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 지자체(시·도, 시·군·구)
 - 관내 주거지원사업 총괄 관리·감독
 - 운영기관 선정 및 운영기관별 물량 배정(시·도)
 - 보조금 교부(시·도 → 시·군·구 → 운영기관)
 - 운영기관 실태점검 및 관리·감독
 - 주거지원사업 홍보 및 지원대상자 발굴·신청 지원

○ 운영기관(사업수행기관)

- 입주자 모집·선정 및 입주 지원
- 입주자 선정위원회 운영
- 임대주택 관리비 수납 및 주택 관리·점검
- 입주자에 대한 상담과 직업훈련·취업 등 자립 지원



4 주거지원 신청 대상, 절차 및 방법



가. 입주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

나. 입주 조건

- 임대 기간 : 2년 원칙, 1차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단, 공실 현황, 입주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2차로 2년 연장 가능(최대 6년 입주)
-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운영기관에서 부담)
 -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퇴거 시 반환)
 - 관리비(월 임대료 포함)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 관리비는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책정

다. 입주신청 접수

- 운영기관은 지역 보호시설 등에 입주신청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등 대상자 모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 해당 시·도 소재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
- 운영기관은 입주신청자로부터 “주거지원신청서 별지[서식 15]”를 접수받아 “주거지원신청 접수대장 별지[서식 16]”에 등재하여 관리
 - ※ 운영기관은 “주거지원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와 신청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신청자의 입주 자격 여부를 확인
- 운영기관은 신청서 접수시 입주신청자가 임대주택 기거주 사실여부를 누락하지 않도록 작성 안내
- 시·도는 폭력 피해자 입주거주지 정보 등*을 공공주택사업자에 통보하고, 공공주택 중복입주 확인 등 업무절차 이행시 가해자에게 피해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주의사항 명기
 - * 피해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임대주택 거주지 및 거주사유, 보호시설 입소자의 경우 입소 기관 및 담당자 연락처), 임대주택 기거주 여부(주택제공기관, 입주연도·기간, 주소) 등
- 공공주택사업자는 폭력 피해자 등에게 주거지원하거나 중복입주 확인시 폭력 피해자 거주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및 입주주거지정보를 보호(기 거주 중복입주 확인 절차개선 및 직원 교육 강화)
 - ※ 피해자에 대한 임대주택 중복지원 소명은 시·도에서 제출한 입주자 정보자료로 대체 가능

라. 입주자 선정

1) 선정 기준

○ 기본원칙

- 입주자 선정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로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함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자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입주자 선정 시 성폭력피해자가 심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려하고, 각·시도별 공실률을 감안하여 우선 입주권 부여

2) 선정 방법

- 운영기관은 입주대상자로부터 주거지원신청서를 상시 접수
- 운영기관은 신규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퇴거가 예정되는 등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주거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주 우선순위에 따라 “주거지원신청자 우선순위 명부 별지[서식 17]”를 작성

- “우선순위 명부”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선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 입주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입주 우선 순위, 주거지원 필요성, 자립가능성 등이 포함된 “입주자 선정 평가표 별지[서식 18]”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평가결과 ‘자립가능성 부문’의 획득 점수가 20점 이하로서 위원 전원이 자립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등 입주가 곤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 제외 가능
 - 선순위 자가 입주를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 자를 입주자로 선정
- 입주자 선정 시 운영기관이나 운영기관의 설립주체인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보호시설 등 특정 시설 입소자 등이 과다 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마. 약정서 체결 등 입주절차 진행

1) 주거지원 기간 및 입주방식

- 신규 입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입주자는 주거지원 연장을 원할 경우 2개월 전에 운영기관에 연장을 신청
 - 단, 공실 현황, 입주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2차로 2년 연장 가능(최대 6년 입주)

2) 약정서 체결 및 임대차 계약

- 운영기관은 입주에 적절한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 임대차계약에 명시된 입주일 이후 입주 가능
- 운영기관과 입주대상자 간 “주거지원 약정서 별지[서식 19]”를 작성·약정체결하고, 입주대상자가 “입주자 부담금”을 운영기관 통장에 예치
 - “입주자 부담금”은 운영기관이 호당 700천원 범위 내에서 결정(1호에 공동 그룹형 가구일 경우 분담)
 - 운영기관은 입주자가 기간만료 등으로 퇴거 시 “입주자 부담금”을 반환하되, 관리비·각종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입주자 부담금”에서 공제
 - ※ 관리비 등 체납 시 이를 운영기관에서 대신 납부할 의사가 있을 경우 운영기관은 입주자에게 “입주자 부담금”을 면제 가능

바. 퇴거 등

- 운영기관은 임대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입주자에게 퇴거일자를 고지
 - 입주자가 임대기간 중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에 운영기관은 임대기간 만료일 전 공실기간(퇴거 후 차기 입주자가 입주하는 동안의 기간) 중 최초 3개월간 발생하는 관리비를 “입주자 부담금”에서 공제 가능(단, “주거지원 약정서”에 동 사항을 사전 규정 필요)
- 운영기관은 다음 사유로 주거지원을 계속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해제 또는 해지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주거지원 약정을 체결한 경우
 -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주거지원 기간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지원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 기타 입주자가 자립 의지가 없거나, ‘주거지원 약정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 주거지원을 계속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운영기관은 퇴거로 인한 공실 발생 시 즉시 해당 시·도에 보고하고 해당 시·도는 소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지원기관에 공유하도록 한다.

5 운영기관 선정 및 사업 수행

가. 운영기관 선정 대상

-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
-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신고된 보호시설 또는 설치·운영되는 1366센터
-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선정방법

- 시·도에서는 매 년 공공주택사업자의 해당 지역본부에 임대주택의 공급여부를 확인하고, 주택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운영기관을 선정
 -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주택을 시·도청 소재지 및 인구 30만 이상 시·군·구에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절대적 기준은 아님
- 주거지원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시·군·구를 거쳐 시·도에 신청
 - ※ 1366센터는 시·군·구를 거치지 않고 시·도에 신청 가능, 1366센터의 운영 주체가 바뀔 경우 주거지원사업 운영권도 중단

다. 선정기준

- 사업계획, 임대주택 공급 여건, 입주자 수요, 사업 신청시설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선정
 -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기관 심사 기준 마련, 활용

라. 선정방법(시·도가 운영기관 선정 시)

- 운영기관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 운영기관 신청 시·도가 선정기관 수 이내일 경우 심사 생략
- 선정심사 기준은 설치·운영기관의 재정능력, 사업 전문성, 조직·인력구성 적절성, 시설 설치 환경(접근성 등),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연계서비스 지원계획, 기존 보호시설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 원활한 입소자 지원을 위해 운영기관별 그룹홈(10호) 임대 시 가급적 보호시설에서 가까운 건물에 함께 임대
- 선정심사 우선 순위
 - (1순위) 주거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지자체
 - (2순위) 주거지원시설 공실률이 낮은 지자체
 - ※ 1순위 미달 시 2순위 심사·선정

마. 사업 관리·운영

- 선정된 기관의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도에서 3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여 재선정(재선정 횟수는 제한 없음)
 - ※ 시·도지사는 재선정하고, 재선정 결과를 10일 이내 성평등가족부로 보고

- 운영기관별로 ‘상담원’ 자격을 가진 담당인력(자립상담원) 1인을 배치
 - “자립상담원”은 운영기관의 주거지원사업 담당자에 해당하며 입주자의 자립을 돕는 역할을 병행
- 운영기관에는 임대보증금과 사업운영비(전담인력 인건비, 사업관리비 등), 노후비품 교체비 지원

바. 운영기관의 업무

- 각 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조하여 임대주택 물색 및 입주자 모집·선정
 - ※ 입주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 심사를 통해 입주순위 등 확정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자와 주거지원 약정서 체결
- 입주자에 대한 상담과 직업훈련·취업 등 자립 지원
- 입주자로부터 관리비(월 임대료 포함)수납, 주택 관리·점검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임대주택 퇴거자에 대한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자격 확인 후 자립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시·군·구 제출)
 - * 퇴소자 자립지원금 참조
-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에 대한 안내 및 입주 사실확인서 발급 등절차 지원 등
- 운영기관은 시·도(시·군·구)를 통해 주거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사.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
 - 심사위원은 시·도의 업무담당 공무원, 지역의 가정폭력·성폭력관련 단체·시설 협의회의 임직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호선
 - ※ 운영기관(법인 포함) 관계자는 최대 1인만 심사위원에 포함 가능
 -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단, 공무원인 심사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에 한함
-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 가능

- 심사위원회는 모집된 입주대상자의 입주순위 확정 등 입주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기타 입주자의 계약해지, 기간 만료자의 기간 연장 등 입주 상황의 변경에 있어 판단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

아. 자립상담원의 역할

- 임대주택 10호 내외당 자립상담원(상담원 자격소지자) 1인을 배치 권장
- 자립상담원은 지자체,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과 연계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입주자의 자활을 지원
 - 자립상담원은 “주거지원시설 입주자 자립지원카드 별지[서식 20]”를 작성하여 입주세대별 자립지원 현황을 관리
 - 주택 관리상태 및 입주자 생활상태 등을 정기 확인하고 관리비 등 납부 상황 체크 등
- 보호시설 퇴소 후 주거지원 사업 입주자에 대한 임대주택 퇴거 시 자립지원금 신청 지원 및 사후관리
 - 주거지원시설(시설장 또는 자립상담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임대주택 퇴거 시 퇴거 사실을 지체없이 퇴소한 보호시설에 알려야 함
 - *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금 신청 및 사후관리 절차 진행
 - ※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 준용하여 지원
- 입주자의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연계 발굴 및 필요시 퇴거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 확인 및 절차 안내
- 입주자에 대한 지역사회복지 지원 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자.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 운영기관은 매년 초에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운영기관 → 시·군·구 → 시·도, 매년 1월 15일까지)
- 운영기관은 반기별 입주실적을 보고(운영기관 → 시·군·구 → 시·도 → 성평등가족부,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운영기관에 대해 연 2회 이상 운영실태 점검
 - ※ 특히, 입주자 자격 및 입주자 선정 공정성 여부 등 집중 점검

6 주거지원 운영

가. 임대주택 입주 및 자립 지원

1)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입주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운영기관이 부담(국고보조금 활용)
- 관리비 및 전기료·수도료 등 개별 고지되는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관리비(월 임대료 포함)는 통상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책정

2) 운영기관 / 입주자의 의무

- 운영기관은 당해 주택이 일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가 승인하지 않은 간판·표식 등을 부착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
- 운영기관은 필요시 별지[서식 19] “주거지원 약정서” 상의 입주자 준수사항 내용을 적절히 변경하여 활용하거나 또는 본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별도의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와 협조하여 입주자가 응급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할 경우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입주자는 임대주택의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기타 “주거지원사업 지침” 및 “주거지원 약정서”상 입주자가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지켜야 함

3) 입주자 자립 지원

- 입주자에 대하여는 보호시설 입소자에 준하는 지원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구조,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직업훈련비 지원 등
- ※ ‘가정폭력피해자인 그룹 홈 입주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가정폭력방지법 제18조 제4항 단서에 규정된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행정기관에서 구상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 요망

〈운영기관별 보조금 지원내역〉

구 분		비 고	
임대 보증금 등	신규 계약	○ 신규 임대계약 보증금 지원 ○ 지역별 임대계약금 편차에 따라 지원액 변경가능	
	재계약	○ 지역별 임대계약금 편차에 따라 지원액에 변경 가능	
주거시설 노후비품 교체		○ 기존 운영 중인 주거시설 내 노후 생활가전·가구 등 생활비품 교체 등	
인건비		○ 자립상담원 인건비	30% 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영
사업운영비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수당, 출장여비, 공실에 따른 경비, 입주자 자립지원 운영비 등	

가. 일반 원칙

- 국고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감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함
- 국고보조금은 성평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 운영기관으로 교부
※ 1366센터는 시·군·구를 거치지 않고 운영기관 교부 가능
- 국고보조금은 임대보증금과 사업운영비로 구성되며, 임대보증금은 1/4분기 초에 일괄 지급하고 사업운영비는 분기별 균등 분할하여 매 분기 초 지급
- 사업결과는 운영기관 → 시·군·구 → 시·도 → 성평등가족부로 보고
(익년도 1월말까지)
- 운영기관은 주거지원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별개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보조금을 관리
- 통장에 관한 “총계정원장(총계정원장의 내역은 통장의 입출금 내역과 일치 하여야 함)”과 지출 증빙자료 관리를 위한 “총계정원장 보조부”를 비치·관리
- 지출결의서 내부결재를 득하고, 지출 내역은 6하 원칙에 따라 기재하며, 통장은 각각 건별로 인출하여 집행하며,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나. 임대보증금

- 지역에 따라 공급주택의 임대가격에 편차가 있으므로, 공공주택사업자와 지역의 임대여건을 사전 협의하여 주택 10호 임대액에 필요한 금액을 책정·지원

- 지원된 임대보증금으로 주택 10호를 임대 후에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잔액을 활용하여 추가 임대 가능하며, 신규 임대계약 보증금의 잔액은 신규 입주주택의 비품 구입등 입주준비금으로 사용 가능

※ 운영기관은, 가구당 부담할 월 임대료가 영구임대주택 수준보다 이상으로, 입주자 모집 및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기준액보다 더 지급하는 대신 월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 등을 주택사업자와 협의

- 임대기간 종료로 임대보증금이 회수된 경우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통장에 즉시 입금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체 주택을 확보하여 임대보증금으로 활용
- 운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 기관에 지원된 임대보증금과 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종전 임대계약에 따른 임차권 등은 새로이 선정된 운영기관으로 귀속 및 승계 조치
- 국고 보조되는 임대보증금은 사실상 운영기관에 무이자로 용자되는 것이므로 사업종료 시에는 운영기관에 기 교부된 임대보증금과 발생이자는 반드시 국고로 반납 조치

다. 인건비

- 4대보험, 퇴직적립금, 기본급,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사용 가능

라. 사업운영비

- 사업운영비는 자립상담원 인건비와 사업관리비로 지출
- 사업관리비는 일반수용비(홍보물 제작, 장부 구입 등), 공공요금(우편발송, 전화료 등),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출장여비, 공실(空室)에 따른 경비 및 기타 회의에 따른 업무추진비, 입주자에 대한 자립 지원 등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사용
- 운영기관의 사업운영비가 부족하거나 추가소요 발생 시에는 별도 지방비를 확보하여 지원

마. 노후비품교체 지원

- 기존 주거지원시설 중 노후 비품의 교체 등이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지급
- 가구, 비품 등 노후화된 장비 등 교체 비용

- 구입한 비품은 반드시 비품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자산번호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식별·관리
 - ※ 비품관리대장 : 관리번호, 품명, 규격, 취득단가, 취득일자 등을 포함
-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 이전에 교체할 수 없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 I. 성폭력피해상담소
- II.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시설)
- III.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 IV.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 V.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1 상담소 개요

□ 국비지원 상담소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예산지원	99 (23)	17 (4)	- -	1 -	3 (2)	3 (1)	2 (2)	2 (1)	1 -	15 (3)	4 (1)	6 (1)	9 (2)	6 (2)	7 (1)	7 (2)	13 (1)	2 -

* '26년 1월 기준('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지원된 상담소 수)

** ()는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수

가. 법적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나. 상담소의 업무

1) 성폭력 상담소 업무(법률 제11조)

- 성폭력피해,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폭력 등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정신질환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내담자는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시설 등 유관기관 연계
-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예의 동행 등 수사·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아동·청소년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피해자 등을 배려하여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
-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의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 캠페인 및 홍보

-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 그 밖에 성폭력 등 지원에 관한 업무
 - 성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 지원 : 열람·발급 제한에 필요한 서류 중 ‘성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가 포함됨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개정에 따라 친족 성폭력 피해자로서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성폭력 피해 상담을 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 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침 참조)
 - 피해아동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 제도 지원 : 피해학생의 전학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 성폭력 상담소 등에서 발급한 ‘성폭력 피해 등 상담사실 확인서’가 포함됨
 -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침 참조

2) 통합상담소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 피해 신고 접수 이에 관한 상담
 -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임시보호 및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 인도
 -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 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 폭력 예방과 방지에 관한 홍보 및 교육
- 그 외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 지원, 전자소송의 사전포괄동의 안내
 -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아동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 제도 지원 등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거부(제외)제도 안내

2 상담소 설치기준

가. 설치·운영 주체(법률 제10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

나. 시설기준(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1)

- 규모 : 연면적 49.59m² 이상
- 구조 및 설비 : 사무실, 면접상담실(사생활이 공개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함), 전화상담실, 보호실(임시보호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 비상재해대피시설

※ 통합상담소 시설 설치·운영기준, 신고방법 등은 [0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1. 가정폭력 상담소] 내용 참고

3 상담소 설치 신고 등

가. 설치·변경 및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신청서류

구 분	신 청 서 류
설치	- 신청서 :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지침 [서식1] - 첨부 서류 •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 •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상담소장의 자격증명 서류 • 상담소 종사자 명단 및 자격증명 서류 •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변경	- 신청서 :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3호서식] 지침 [서식2] - 첨부 서류 •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 또는 변경사유서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구 분	신 청 서 류
	• 변경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고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상담소 장의 자격증명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상담소 신고증
폐지·휴지·운영재개	-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서 :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8호서식], 지침 [서식3] - 첨부 서류(폐지 또는 휴지 시에만 해당) •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 • 상담소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제외) • 상담소 신고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음 • 상담소 종사자 인사기록카드(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

나. 상담소 설치신고(시행규칙 제3조)

○ 설치신고 및 수리 절차

- 신청서 제출: 신청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심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수, 종사자 자격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
 - 특히 상담원이 법령상 시·군·구에 신고된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3의2]의 교육시간, 과목 등)을 이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련 교육기관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등 설치요건의 준수여부 확인 강화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정 구비서류 외에 설치신고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나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특히 시설장의 요건) 및 건축법, 그린벨트 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하여 주무부서와의 협조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신고수리 여부 결정
 - ※ 상담소는 노유자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등으로 분류됨
- 신고증 교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인
 - ※ 신고증 서식은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2호서식] 참조

※ 상담소 설치 신고수리 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시·도명	상담소명	소재지(연락처)	운영주체(시설장명)	신고일
				0000.00.00.

○ 유의사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관내 타 상담소 등의 설치운영 및 상담수요, 향후 예산지원 전망 등을 사전 설명하고 해당지역의 상담소의 적정 공급수준을 유도
- 신고수리 후 상담업무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안내

다. 상담소 변경신고(시행규칙 제3조)

○ 사유(변경신고 신청 대상): 상담소의 명칭, 소재지 또는 상담소의 장 변경

○ 변경신고 및 수리 절차

- 신청서 제출: 신고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변경사항 확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소재지 변경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 등본 확인
- 상담소 신고증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교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인
 ※ 상담소 변경 신고수리 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 유의사항

- 상담소 운영 주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폐지신고 후 새로이 설치신고를 해야 함. 단, 상담소 운영주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 시설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지속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존 시설에 준하는 예산지원이 가능함
 ※ 운영주체 변경 후 계속적 국비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성평등가족부와 협의
- 개인상담소의 경우 ‘상담소의 장 변경’은, 운영주체가 동일한 경우[신고인(대표자)은 변경되지 않고 별도 고용된 소장이 변경]에 한함
- 지역을 달리하여 상담소를 이전할 경우, 기존 관청에 상담소 폐지신고 후 이전하고자 하는 관청에 신규 설치 신고하여야 함. 단, 운영실적, 운영기간 등은 개소일 부터 계속 인정하며 지원여부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지 않음

라. 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시행규칙 제10조)

-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휴지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함)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신고 및 수리 절차
 -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서류 제출 : 신고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폐지·휴지 신고 시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는지 확인 후 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에 따라, 시설 폐지 신고를 한 경우 폐지 신고가 수리된 즉시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폐지 신고 수리 전까지 결산보고, 보조금 정산, 입소자 퇴소보고, 종사자 퇴소보고 등의 업무 처리의 완료 여부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함
 - ※ 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수리 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참고)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15.2.3. 시행)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상담소에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음
- 상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별표5의 가항에 따라 상담소 업무의 폐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상담소가 폐쇄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폐쇄되는 상담서류 일체를 당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송토록 조치하고 5년 동안 보관 후 폐기 조치
 - ※ 단, 상담일지는 10년 이상 보관 후 폐기 조치하되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강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전연령 대상 강간살인죄 등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담관련 자료 폐기에 신중하여야 함. 단, 피해자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피해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자료 폐기 가능

가. 종사자 배치기준(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 상담소의 장 1인, 상담원 2인 이상

※ 단, 국비를 지원받지 않는 상담소의 경우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음

※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담원을 관리할 수 있는 직제를 운영할 수 있음

나. 종사자 자격기준(시행령 제7조 [별표 1])

구 분	내 용
자격 기준	①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2호)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장〉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행위(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의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성폭력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톱킹 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폭력 상담원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등 방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상담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보호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상담소만 해당)

구 분	내 용
	②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 2011년 이전 종전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훈련시간(64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
결격 사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 종사자 자격 중 각종 경력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영수증, 소득세 원천 징수부 등)를 첨부하여야 함. 단,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시설장의 서명 또는 직인으로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로 증명할 수 있음

상담원 자격요건의 예외(수습직원)

- (요건)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수습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 1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절차) 특례채용은 상담원 채용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또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3차 공고 시부터 적용 가능함
- (관리) 시설은 수습직원을 특례채용한 경우 이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즉시 보고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현장점검 시 채용의 공정성, 1년 내 교육과정 이수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
 - * 상담소는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교육과정(일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수습직원은 교육과정이 개설되는 즉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또한, 수습직원은 행정업무, 시설 운영보조, 기록정리, 프로그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자 직접 상담·중재·위기대응 등 전문업무는 성폭력상담원 또는 소장이 동행·감독해야 함

다. 운영시간 및 종사자 복무

- 주 5일, 평일 8시간 이상 운영(근무시간: 월~금 09:00~18:00)
 - * 시설별 종사자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시설장 책임하에 상담소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선택제 운용 가능
 - * 근무시간선택제의 경우, 근무시간 내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 근무시간 외 근무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된 상담소 운영시간을 안내하여야 함
- 상담소의 장은 전임(상근)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근무시간 중 대학출강 등 타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는 겸직으로 보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의 장은 상담소의 장 중 겸직자가 있는지를 반기별로 확인하여 겸직일 경우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상근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단,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겸직이 필요한 경우는 시·군·구청장의 승인 하에 겸직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은 인건비가 타 기관과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해당 시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함
 - ※ 겸직가능사유: 대학부설시설에 해당교수가 소장에 임명되는 경우, 법인부설 상담소의 소장을 해당 법인 대표가 겸직하는 경우,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장(동일법인·단체에 한함)과 겸직하는 경우
- 학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예방교육, 성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를 위하여 상담을 나가는 등 상담소 고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출장은 가능함
 - 이 경우 반드시 관련자료(근무상황부, 상담일지, 출장대장, 교육대장 등)를 비치하여 이를 증빙하여야 함
 - ※ 근무상황부, 출장대장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인사현황자료(출장현황, 휴가현황, 교육현황 등)로 대체 가능함
 - 잦은 출장으로 인해 피해자 상담 업무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업무 분담, 교육비 활용 기준 등에 관하여 상담소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교육비 수입은 자체수입통장에 입금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
 - ※ 상담소 종사자가 외출, 조퇴 등 이석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비치
-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
 - 「성폭력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철저
 - 상담소 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 ※ 특히, 상담소 종사자의 외부강의시 지원사례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유의

- 상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목적용 외에 수집 또는 제공할 수 없음
 - ※ 법령 위반 종사자는 「성폭력방지법」 제3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36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법령 위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78조(징계사유)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

(참고) 개인정보의 보호 및 유출방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 지자체와 시설장은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본래의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되어지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실시(「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수집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권리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거나,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경우 수집 가능
 - 입소/이용자, 후원자 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그 외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노력 등

라. 종사자 채용 및 임면보고 등

- 설립주체에 따른 종사자 임면권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기관의 장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시설의 장
 - 개인 : 시설의 대표자
 - ※ 종사자 임면권자는 법인의 내규 규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종사자의 채용
 - 공개경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 시 임금·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함
 - ※ 종사자는 교육훈련과정(100시간) 이수뿐만 아니라 시행령 상의 개별 기준도 갖추어야 하므로 채용 시 수료증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필히 확인함
 - ※ 상담소 종사자가 다른 지자체 소속 상담소로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도 근속연한으로 인정함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은 시설 포함)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해 공개 채용 과정에서 종교관련 정보, 가족 관계, 출신지역 정보 등 개인정보 취합 금지
 - ※ 공정한 채용을 위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권고(외부인원 50% 이상), 이 경우 법인 임직원은 내부위원으로 간주
- 장애인 상담소에 추가 지원되는 ‘상담지원인력’의 자격기준은 성폭력피해상담원 자격 기준을 갖춘 자이며, 경력자 등을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음
- 종사자 결원 시 1월 이내에 신규 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함

(참고) 종사자 결격조치 관련 시스템 활용

- (국가 및 지자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조회
- (국가·지자체 외)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통한 조회
 - ※ 결격조치와 관련된 관련법령을 명확하게 등록하여야 함

○ 종사자 임면보고

-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권자는 종사자 채용 시 반드시 사회 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상담소의 장은 국비(지방비 포함)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종사자 채용 시 관련시스템에 따라 종사자 임면보고(사유 : 종사자 경력인정여부의 증명서류 제출 시 증빙자료로 활용)

○ 종사자의 대체 인력 지원

- 시설장은 종사자의 퇴사, 육아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신규 또는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등 적정 인력을 운영하여야 함
- 대체인력의 자격은 상담원 등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무료법률 지원 사업 활용 가능

- 상담소 종사자가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역고소 등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성평등가족부의 무료법률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음

마. 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강화 등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연중)
 - 시행기관 : 성평등가족부장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시·도지사
(「성폭력방지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법정 의무교육 안내

구 분	법적근거	대상	시행주체	이수방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 평등법 제13조	전 종사자	고용노동부	직원연수·조회·회의, 사이버 교육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전 종사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privacy.go.kr) 참고
퇴직연금제도 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고용노동부	온라인, 집합, 서면, 상시게시(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	전 종사자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의2	전 종사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참고(연 1회 1시간 이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협회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8시간 이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연간 1시간 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연간 1시간 이상)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전 종사자	고용노동부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교육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 종사자	성평등가족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연 1회 이상)

※ 시설장 및 종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수하도록 노력할 것

- 법정 의무교육 이외에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연수비를 기관운영비 내에서 지출 가능

5 행정처분 및 벌칙

가. 행정처분의 요건(법률 제23조)

-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법 제22조)

-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상담원 등이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나. 행정처분의 주체(법률 제23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기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행정처분의 기준(시행규칙 제11조 [별표 5])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상담소·보호시설을 양도·상속하거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지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승계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업무의 폐지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보호시설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보호시설의 입소자를 전원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보호시설이 없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22조에 따른 지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담소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나.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담소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상담소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라. 추가 조치사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업무가 폐지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1조의2)
 - 이용자가 다른 상담소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 법 제23조에 따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 명령이나 인가취소를 받고도 상담소 등을 계속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업무의 폐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
 - ※ 「행정절차법」상 처분 및 청문 절차 참조
 - ※ 그 외 행정처분의 요건,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참조

〈참고〉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 2])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2항제1호	300만원		
나. 법 제3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2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8조 제2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8조 제2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바. 법 제33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 제2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가. 재무회계 원칙

- 상담소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 재무회계 관리는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 법령 준용(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참고)
- 상담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장부에 기재 후 집행
-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는 5년 이상 보존

나. 국비 지원 상담소 선정

- 지원요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신고된 상담소로서 상담소의 설치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준수하여 3년 이상 운영한 상담소
 - 단, 일부지역 및 도서벽지 등 3년 이상 운영 상담소가 없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판단 하에 1년 이상 운영 상담소 선정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 운영기간 기산일은 상담소로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실제 상담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함(휴지기간 제외)
 - ※ 위 사항은 국고 지원의 최소요건으로써 운영기간 최소연수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지원요건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님
- 선정절차 및 검토사항

단계	국비지원	담당기관
1단계	■ 상담소 국비지원 선정 계획 통보	성평등가족부
2단계	■ 국비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희망 상담소 → 시·군·구)	지원희망 상담소
	■ 시·도에 지원 신청 (시·군·구 → 시·도)	시·군·구
3단계	■ 현장실사, 추천심사위원회 개최, 국비지원기관 추천 (시·도 → 성평등가족부)	시·도
4단계	■ 상담소 국비지원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결정	성평등가족부
5단계	■ 상담소 국비지원기관 최종결과 통보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는 신규 국비지원 상담소 선정을 위해 시·도가 신청한 상담소에 대하여 심사·선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국비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서 시·군·구가 신청한 국비지원 대상 상담소에 대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상담활동 등 사업수행능력과 지역안배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함
 - ※ 국비지원 대상 선정 시 운영주체(법인 등)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여부 확인 필요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상담소에 대해 상담일지 기록상태 및 관련서류 비치 여부, 상담활동 및 대외 홍보 등 업무실적을 현지 확인을 통해 사전에 검토하여 국비지원 대상을 선정·신청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비지원대상 선정 시 내부 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 상담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활용
- 유의사항
- 동일한 운영주체(법인 또는 개인)가 동일 시·군·구 내에서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각각 개설하거나, 동일분야 상담소를 2개소 이상 운영하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함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최소 1개소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안배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함
 - ※ 「2025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결과 반영
 - 기존 국비지원 상담소의 운영이 부실하거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종사자 임면의 허위 보고 등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 직장내 괴롭힘 발생 등에 대한 조치의무 미이행 등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성평등가족부에 서면보고(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하여 보고)
- 국비지원 중단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여야 함(보조금법 제31조의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성평등가족부에 서면보고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보조금법 제33조제3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성폭력방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 행정처분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 여부 검토

다. 보조금 지원 단가(국비+지방비)

(단위 : 천원)

구 분	일반상담소 (4명)	장애인상담소 (5명)
인건비(4명) 및 운영비	163,239	163,239
장애인 상담소 추가지원	-	상담원(1인) : 37,143 교통비 : 12,036
합 계	163,239	212,418

※ 금액은 국비, 지방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국고보조율은 50%임. 단,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70% 국비 지원함

※ 각 지자체는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음

라. 보조금 집행 기준

1) 인건비 및 운영비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는 여건에 따라 국비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종사자 호봉 책정을 할 수 있음
- 종사자 인건비는 지원 예산총액의 70~9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상담소 개소당 4명(장애인 상담소는 5명)의 인건비를 지원함
 - 인건비는 기본급,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초과·야간·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함. 다만,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이 2026년 기준 최저임금액(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 (가입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 누리집 <http://insurancesupport.or.kr>

-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은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기본급에는 포함하지 않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 각종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방비 추가 지급 가능
- 중도 퇴직자 및 신규 채용자 인건비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 일할계산 산식 : 월 고정급(보험료 제외) ÷ 209시간 × 8시간 × 월 근무일수
※ 월 근무일수는 중도 퇴직일 또는 신규 채용일이 해당하는 월의 근무일수를 말함
- 개인이 운영주체이거나 법인·단체대표(운영주체)와 시설장이 동일한 시설의 경우 시설장의 퇴직급여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적립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반환해야 함(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 ■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해야 함

-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준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만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한: 시설장 만 65세 (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 종사자 만 60세
 - * 설립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특례: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①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 지자체 홈페이지, 복지넷, 워크넷, 희망이음* 중 2곳 이상에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 * 희망이음 공고 가능 개통 전이므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고 가능
-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63세까지는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 가능하며, 63세를 초과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는 위의 방식으로 1회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여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65세까지 계약 연장 및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
 - ※ 60세 초과 종사자를 특례 채용한 경우에는 특례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호봉으로 동결(이후 호봉 승급 없음)

②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내에서 청년 인력(만 29세 이하)을 채용하는 경우

- 신규 채용 및 인력 운용 계획을 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이사회를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 위의 계획에는 60세 초과 종사자 및 신규 채용 인력 2인의 인건비를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100% 내에서 지급하되, 60세 초과자의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청년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 적용
 - ※ ①, ②에 따른 절차를 거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

- 운영비는 지원 예산총액의 10~3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음
 - 종사자 상해보험료(1인당 보험료 연 5만원 이내)
 - 수용비(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협회비 등),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PC 등 통신시설 유지비), 소규모의 수선비, 차량비, 재료비 등
 - ※ 장애인 상담소의 경우 운영비에서 교통비 지급 불가
 - ※ 각 시설은 1곳의 협의회비만 지출 가능

- 출장비(일비 및 교통비) 지급, 여비집행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

〈여비 집행 기준〉

- ① 근무지 내 : 일비 4시간 이하 10,000원, 4시간 초과 20,000원
- ② 근무지 외 : 일비 25,000원, 식비 25,000원, 교통비 실비지급
 - ※ 근무지 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왕복)가 12km미만인 출장을 의미함. 출장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의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함
 - ※ 근무지 내 출장 시에는 교통비 별도 지급하지 않음
 - ※ 근무지 외 출장에 개인 차량 이용 시에도 실비 지급 가능

-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회의비)

- 사무실 임차료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월 50만원 이내, 단, 5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가 집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승인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

- ※ 단, 해당관청 관할 공공기관 건물 내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 입주하도록 검토·조치할 수 있음
-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임차료 등은 지방비에서 추가지원할 수 있음

-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비 내에서 슈퍼비전 또는 종사자 소진 방지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치료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 지원 대상 : 해당 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
- ※ 지원 가능 액수 : 연간 1인당 30만원 범위 내
- ※ 지원 가능 항목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치료, 개인 및 집단 상담·심리치료, 힐링 프로그램 교육 등 프로그램화된 것(상담소 자체 프로그램 포함)은 참여지원 가능(단순 여행이나 영화 관람은 지원 불가, 단 여행·영화관람도 소진방지를 위한 프로그램화한 경우 가능)
-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지방비에서 추가지원할 수 있음

○ 운영비 지출원칙(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각 시·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지침」 등에 따라 보조금 전용카드에 클린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관리
- 또한 각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지도·감독
-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부당 사용사례가 적발된 경우, 감사 등을 실시하여 환수 및 징계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분

▶ 보조금 전용카드란?

- ① 시설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 ②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발급 및 거래내역 전송
- ③ 클린카드 기능 탑재

*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계약한 금융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함

-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 금지)

* 보조금 전용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등은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보조금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 기능보강비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상담소 운영에 따른 기능보강비를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운영비(홍보비, 관리비 등)를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여부는 향후 상담소 운영 평가에 직접 반영되므로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함
- 시·군·구는 상담소로부터 연간 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서) 및 지급신청을 받을 때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집행하도록 유도

○ 보조금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 부정수급 등 사유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처분을 받은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반환 대상 보조금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함 (「보조금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성평등가족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관련)〉

제재부가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나.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2) 장애인 상담소 추가 지원

- 장애인 방문상담 등 상담소 업무에 소요되는 교통비(연간 12,036천원)를 별도 지원하며, 아래와 같이 집행 가능함
- 장애인 대상 성폭력 상담 및 예방교육 등 상담원의 업무에 소요되는 출장비(일비 및 교통비) 지급

※ 출장비 등은 상단 여비 집행 기준을 준용하여 집행(여비집행은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이밖에 업무 차량유지비(유류비, 차량보험료 및 수선비, 자동차세·환경부담금 등),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업무와 관련한 홍보에 필요한 경비(홍보물 제작 및 배포, 광고비 등)로도 집행 가능

마. 후원금품의 관리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발급(의료·사회복지·종교·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통해 후원금 또는 지정기탁금을 수령한 경우 포함)
 - ※ 금융기관 등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발급 가능
 - ※ 후원금 전용계좌는 시설 명칭이 부기된 시설 고유의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두어야 함
-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 비치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

■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 ■

연번	일시	후원자(법인)	후원금 유형 및 금액		지정후원금 용도	비고
			지정	비지정		
1	2020.1.25.	○○○법인	500,000원		청소년 생계비	
2	2020.1.30.			100,000원	청소년 교육비	

- 후원자가 후원금품의 용도를 지정했을 경우 지정 용도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후원자(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 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역을 통보
 -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용도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후원금으로 인정

- 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8, 별표 10의 세출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하되, 가급적 내역수준으로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 되도록 할 것
 - “법인·시설의 운영” 등과 같이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에 따라 관리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는 사용 금지
-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
- 시설비는 건물 노후화, 정원대비 협소한 공간 등 시설 입소·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원으로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상담소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제출 후 20일 이내에 상담소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함(단, 후원자 성명은 비공개)

7 그 밖에 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관리규정 제정 및 장부의 비치(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1)

○ 관리규정 제정

- 상담소의 장은 상담소의 운영방침, 직원의 업무분장, 상담소 이용자의 대응요령, 상담소의 이용수칙, 그 밖에 상담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상담소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

○ 장부의 비치

구분	관리에 관한 장부	사업에 관한 장부
종류	- 상담소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직원 관계철 (인사기록카드, 이력서, 사진 등) - 회의록 관계철 - 소속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 및 관계 결의 기록 - 문서철 (보고서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문서철) - 문서 접수·발송대장 - 종사자 근무상황부, 출장대장, 교육대장 등 각종 대장	- 상담소의 이용자 관계서류 (신상조사서, 지원기록 등) -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 상담원 교육관계서류 - 기타 운영실적 등
구분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그 외의 서류
종류	- 총계정원장 - 수입 및 지출보조부 - 금전출납부 및 증빙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비품수불대장 - 비품관리대장 -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후원금수입 및 사용내역서 - 정부보조금명세서 - 사업비명세서, 사무비, 명세서, 예비비사용조서 - 각종 증빙서류	- 사회복지시설신고증(상담소 신고증) * 신고시설만 해당하며, 국·공립 위탁시설은 위탁계약서 등 관계 서류 비치 - 시설의 운영계획서 -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 기타 상담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서식 및 자료는 별도로 비치 활용

- 상담소 신고증 게재
 - 시설 이용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신고 시설임을 알릴 수 있도록 시설 내에 신고증 게재
- 각종 기록 등의 보존 및 관리
 - 상담내용은 반드시 상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
 - 상담관련 자료는 10년 이상 보관
 - ※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강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전연령 대상 강간 살인죄 등에는 강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전연령 대상 강간살인죄 등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담관련 자료 폐기에 신중하여야 함.
 - 단, 피해자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피해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자료 폐기 가능

나. 업무의 전자화(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정책에 협력하여야 함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상담소의 장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지급·정산 등 회계업무, 종사자 인사업무, 통계관리업무 등 가능한 모든 업무를 전산화 하여야 함

다.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목적 : 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 구성 :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단, 각 부분별 인원은 2인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설의 장
 -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시설 종사자의 대표
-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① 시설장의 친인척, ②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시설장 제외)는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할 것

※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 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에 유의할 것(법제처 해석, 17-0433)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기능 : 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사항 심의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회의 결과의 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 정보 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 회의는 대면심의가 원칙이며 참여자 확인할 수 있는 원격영상회의는 허용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회의 관련(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운영 되는 것임
 - “심의”는 “심사하고 토의함”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 점, 위원회 회의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고 그 회의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 위원회 설치의 법률 취지가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함으로써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생활자 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면회의가 적절함
- 또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와 같은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심의 가능, 이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및 분쟁소지 해소를 위하여 영상회의를 녹화하여 보관

- ①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함
- ②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운영위원회 위원임을 확인)
- ③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 간 의견교환이 가능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 보고사항

※ 아래 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은 아님

-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 ☞ 국가감염병 확산 등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서면보고로 갈음 가능

○ 임기 및 운영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운영
 - 운영위원회 운영일지를 작성·보고 및 보관
 -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산 제출 시 함께 제출

라. 현장점검 및 감사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시·도 또는 시·군·구 등은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일지 등을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불가피하게 상담일지 제출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 입소자대장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범죄피해자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이 상담소 운영실태, 이용자 및 운영비 집행상황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담소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시설의 안전점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 보험 가입

-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함
-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종사자가 가해자 등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는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 보험가입여부 확인(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 ▶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 시·군·구는 시설 이용자와 생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법 제58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 [별표 5]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것
 - 지자체는 시설 정기안전점검 시 각 시설의 대인·대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1인당 배상책임보험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 책임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배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의미함
 - ** 책임공제라 함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설립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 의미함
- ▶ 시설의 지도·감독청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시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소멸식 상품을 가입토록 관리해 나가되
 - 불가피하게 해당 시설이 적립식 상품을 가입한 경우라면 시설이 그 만기 환급금 수령 후 시설 운영비로 세입처리를 반드시 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 자체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시설장은 소관시설에 대하여 매 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시안전점검 : 시설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점검기관에 수시안전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안전점검기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지침
 -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 지자체에서는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대상 선정 시 피해자 상담 등에 필요한 컴퓨터 등 주요물품과 시설 안전점검 결과 개보수 필요시설, 노후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

○ 지자체 안전점검

- 시·도 및 시·군·구는 하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성평등가족부에서 통보하는 안전 점검 계획에 따라, 종사자대상 교육훈련, 안전점검표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에 보고
-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 상태, 보험가입 여부, 시설거주자 건강 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며, 취약시기의 특성에 따라 감염병 관리 대책, 급식시설 위생상태, 폭설·제설·동파·난방관리 대책 등 추가 점검

○ 국토안전관리원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무료)’을 실시하므로 시설장 및 지자체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할 것
 - * 주요 점검내용 : 시설물 기초지반 침하 및 벽면 균열 발생여부, 시설물 주변 석축·옹벽, 비탈면의 결함 발생 여부 등
-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운영주체, 시설장, 지자체 담당자가 소규모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sfms.or.kr)에 신청(필요시 신청 전 지자체 현장확인 실시)

- 시설장 및 지자체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조치실적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그 실적을 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지자체에서는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보수 등이 시급히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능보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시설 사고 예방 및 조치
 -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자,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3조)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 소화시설·장비는 소방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종사자가 수시로 확인·점검
 - 시설장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평상시 종사자들에게 사고예방의 중요성 및 각종 시설물 취급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항상 숙지하도록 지도하여 사고발생 예방
 -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절기·해빙기 안전점검 철저(보일러·가스·전기 등)
 - 화재대피 훈련 등 방재훈련을 시설별로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
 - 시설장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보고, 의료조치, 초기대응(화재진화 등), 외부연락 등에 대한 종사자의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종사자들이 유사시 자신의 임무를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 시설장은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피난방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고에 따른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당해 지자체(시·군·구 → 시·도에 보고)는 성평등가족부에 지체 없이 보고 [서식 4]

바. 기타 사항

- 성폭력피해자 상담소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할 수 있음
-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시설안전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사회복지시설 화재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용할 수 있음

가. 보고서항

- 정산 및 운영실적 보고
 - 제출자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제출자료 : 관내 각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운영실적, 보조금 정산내역 등
 - 제출시기 : 상반기 실적은 7월 30일, 상·하반기 총실적은 차년도 1월 30일
 - 제출처
 - 정산실적 : 성평등가족부(성폭력방지과)
 - 운영실적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상담소 신고 내역 등 보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변경, 휴업·폐업·운영재개 신고사항 등을 수리 후 즉시 성평등가족부장관에 보고
- 안전점검 결과 및 시설 사고 발생 시 보고
 - 시·도 및 시·군·구는 하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성평등가족부에서 통보하는 안전 점검 계획에 따라, 종사자대상 교육훈련, 안전점검표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에 보고
 -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당해 지자체(시·군·구 → 시·도에 보고)는 성평등가족부에 지체 없이 보고 [서식 4]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 제 출 자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제출자료 : 관내 각 성폭력 피해 상담소 이용자(1~9월 간)의 만족도
 - 제출시기 : 매년 10월 초
 - 제 출 처 : 성평등가족부(성폭력방지과)
- 현장점검 결과 보고
 - 현장점검, 결과보고 일정 등 상세 내용은 추후 통보
- 기타 행정사항
 - 공무원의 사회복지법인·시설 재취업 공무원과 사적 접촉 방지 법령 신설 안내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22.5월 시행) ■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협조사항

- 학교 밖 청소년 발견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협조
 - 입소자와의 초기 상담과정 등에서 해당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정보 연계

연계 절차

- ①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안내
-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음
- ③ 주소지 또는 시설소재지 시·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공문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를 통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센터) 연계 시 필요사항
 - 상담소에서는 ①인터넷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등 원본 ②다운로드 받은 유포물(불법촬영물등), ③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유포 게시물의 URL(링크 주소), ④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유포 게시물 제목, ⑤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검색 가능한 키워드 등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확인하고 연계의뢰서[서식40, 41]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 ※ ①~⑤ 중 한 가지 이상 반드시 필요, 모니터링을 위해 피해 영상, 사진(이미지 파일)을 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안내
 - 유의사항
 -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에 대해 삭제지원 가능
 - 가해자의 유포협박, 유포불안 시 불법촬영물등 원본을 바탕으로 유포여부 모니터링지원 가능
 - 피해당사자 및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삭제지원 신청 가능
 - 센터에서는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로 삭제 및 유포현황 모니터링을 지원하므로, 삭제지원을 요청하는 피해자(미성년자 포함)는 센터 연계 후 삭제지원을 위한 신청서류 및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안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란

- 주요 업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불법촬영물 등·신상정보 삭제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
 - 상담 신청 및 방법
 - 상담신청: 온라인 게시판(<https://d4u.stop.or.kr>) 또는 전화(02-735-8994 / 여성긴급전화 1366)
 - 상담시간: 365일((전화상담 및 온라인 게시판 상담신청)
 - 삭제지원 절차: 초기 상담을 통해 삭제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유포 관련 자료와 삭제지원 구비서류 수령 ⇒ 플랫폼(웹하드, 성인사이트, SNS, P2P,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등) 별로 유포 현황 검색 후 삭제 요청 ⇒ 최초 지원 시작 후 3개월간은 긴급지원 기간으로 매월 1회(총 3회)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발송 ⇒ 이후 지속적 삭제지원 및 유포현황 모니터링 (연 1회 삭제지원 연간결과보고서 발송)
- (※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 접수 시 별도의 결과보고서는 발송되지 않음)

-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대상 <긴급사업장변경제도> 안내 협조
 - 상담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대상 사용자의 성폭행 피해 등을 인지 시 사업장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안내 협조('19.2.1. 변경고시 시행)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7호>

제5조(부당한 처우 등)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부당한 처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를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로서 긴급하게 사업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등을 당하여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등 사용자의 관리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 직장 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등을 당함으로써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성폭력피해자 대상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제도> 안내 협조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제도> 안내 협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제도> 내용

- 법적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및 제221조
- 지원대상 : 성폭력피해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 지원내용
 -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조사 前 신뢰관계자*의 동석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 시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 조치
 - *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형사소송규칙)
 - ※ 피해자 가족·변호사 등이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할 수 없거나 부적합한 경우, 센터 상담원은 사전 면담 등을 통해 라포 형성 후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상자별 유의사항
 - (19세 미만 또는 장애인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시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대한 동석할 수 있도록 조치
 - 피해자 등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거부한다고 해도 신뢰관계인 동석의 취지 및 이후 재판 단계에서의 효과 등을 설명하여 적극 설득
 - (13세 미만 및 장애인) 피해자 측의 신청이 없어도 신뢰관계인 동석이 법률상 의무임을 설명,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거부(제외)제도 안내 협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거부(제외)제도>

구분	등재 거부	등재 제외
내용	특정인에게 피부양자 자격이 등재되지 않도록 거부하는 제도	특정인 구분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이 등재되지 않도록 거부하는 제도
신청방법	피부양자 등재거부(제외) 신청서 작성 및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사 제출	

- ※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행 등 미성년 피해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 이후 퇴직 시 자동으로 부모(가해자)에게 피부양자로 연계되어 피해자 자격변동 내역이 전달됨(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한 부모에게 자동연계)

○ 미성년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범죄수사규칙 개정에 따른 협조

〈미성년 피해자 법정대리인 통지에의 및 대리 통지 규정〉

- 법적 근거
 - 범죄수사규칙 제13조제3항(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 지원대상 : 13세 이상인 성범죄 피해자
- 개정내용 및 지원내용

가. 법정대리인 통지 예외사유 확대 : 기존 예외사유^①에 3개 사유^{②③④} 추가

- ①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 ②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 ③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④ (13세 이상인 피해자) 피해진술 거부 등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대리 통지 :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조력할 '지원기관' 또는 '변호사'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 예외사유가 적용되는 피해자는 관련 법(성폭력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지원기관 및 국선변호사 지원

II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시설)

II-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 보호시설 개요

□ 보호시설 현황

('26.1월 시설 수 기준 / 개소)

구 분	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 체	35	2	3	1	2	3	2	1	4	1	3	1	2	2	2	3	3
일반	17	2	1	1	1	1	-	1	3	1	1	-	2	1	-	-	2
장애인	8	-	1	-	-	1	1	-	-	-	1	1	-	1	-	1	1
특별지원	4	-	-	-	-	-	1	-	1	-	-	-	-	-	1	1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6 (3)	-	1 (1)	-	1	1 (1)	-	-	-	-	1 (1)	-	-	-	1	1	-

※ 35개소 모두 국비 지원 / ()는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가. 법적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나. 보호시설의 업무(법률 제13조) 및 보호 내용

-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함)의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서의 동행
 - ※ 아동·청소년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피해자 등을 배려하여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
-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협조 및 지원 요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직업훈련비 지원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 보장과 특별보호
 - 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지원(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 등)
 -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전학 및 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

(초등학교) 취학 요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하여야 하고,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등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

(그 밖의 각급학교)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취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취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

- 이 경우 그 지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전학·편입학을 승낙하여야 함

- 관계기관은 시설입소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학교장에게 전·입학 요청

※ 상담소,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연계망 구축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다. 보호시설의 유형(법률 제12조)

종 류	기 능
일반	일반·장애인 등 피해자에게 보호, 숙식, 심리상담 등 제공
장애인	장애인 피해자에게 보호, 숙식, 심리상담 등 제공
특별지원	19세 미만 친족성폭력피해자에게 보호, 숙식, 심리상담 등 제공
자립지원	일반·장애인 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자활교육, 취업정보 등 제공
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인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자활교육, 취업정보 등 제공

2 | 보호시설 설치기준

가. 설치·운영 주체(법률 제1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시설기준(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2)

- 입지조건 : 시설의 적정한 분포,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

※ 보호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로 분류됨

- 보호시설 종류별 시설 규모

시설의 종류	정원 규모별 연면적			
	7인 이하	8인 이상 10인 이하	11인 이상 15인 이하	16인 이상 20인 이하
일반보호시설	-	99㎡ 이상	165㎡ 이상	198㎡ 이상
장애인보호시설	-	132㎡ 이상	198㎡ 이상	264㎡ 이상
특별지원 보호시설	-	132㎡ 이상	198㎡ 이상	264㎡ 이상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70㎡ 이상	99㎡ 이상	165㎡ 이상	198㎡ 이상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03㎡ 이상	132㎡ 이상	198㎡ 이상	264㎡ 이상

※ 보호시설의 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입소정원을 초과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수용 가능. 이 경우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구조 및 설비

- 침실 및 거실은 적당한 난방, 통풍 및 일조량을 갖춰야 함
-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을 향하도록 함
-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식당 및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 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 장애인보호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함

가. 설치·변경 인가 및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신청서류

구 분	신 청 서 류
설치인가	- 인가신청서 :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4호서식], 지침 [서식5] - 첨부 서류 • 법인의 정관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 •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보호시설 장의 자격증명 서류 • 보호시설 종사자 명단 및 자격증명 서류 •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변경인가	- 변경인가신청서 :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6호서식], 지침 [서식6] - 첨부 서류 •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 변경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고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보호시설 장의 자격증명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보호시설 인가증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서 :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8호서식], 지침 [서식3] - 첨부 서류(폐지 또는 휴지 시에만 해당) •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 • 보호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제외) • 보호시설 인가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음 • 보호시설 종사자 인사기록카드(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

나. 보호시설 설치인가(시행규칙 제5조)

- 인가 신청 자격 :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 인가 절차
 - 인가신청서 제출 : 신청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심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수, 종사자 자격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정 구비서류 외에 설치인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나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특히 시설장의 요건) 및 건축법, 그린벨트 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하여 주무부서와의 협조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인가 여부 결정
 - ※ 보호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등으로 분류됨
 - 인가증 교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인
 - ※ 인가증 서식은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 참조

다. 보호시설 변경인가(시행규칙 제5조)

- 사유(변경인가 신청 대상)
 - 보호시설의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 보호시설의 장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
- 변경인가 절차
 - 변경인가신청서류 제출 : 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변경사항 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소재지 및 입소정원 변경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 등본 확인
 - 보호시설 인가증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교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법인

라. 보호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시행규칙 제10조)

- 보호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휴지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함)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신고 및 수리 절차
 -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서류 제출 : 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폐지·휴지 신고 시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는지 확인 후 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에 따라, 시설 폐지 신고를 한 경우 폐지 신고가 수리된 즉시 사회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폐지 신고 수리 전까지 결산 보고, 보조금 정산, 입소자 퇴소보고, 종사자 퇴소보고 등의 업무 처리의 완료 여부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함

(참고)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15.2.3. 시행)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보호시설에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음
- 상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별표5의 가항에 따라 보호시설 인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보호시설이 폐쇄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폐쇄되는 상담서류 일체를 당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송토록 조치하고 5년 동안 보관 후 폐기 조치
- ※ 단, 상담일지는 10년 이상 보관 후 폐기 조치하되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강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전연령 대상 강간살인죄 등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담 관련 자료 폐기에 신중하여야 함. 단, 피해자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피해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자료 폐기 가능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시설 설치인가 또는 시설종류의 변경, 입소정원 변경 시 운영비 등 예산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와 사전 협의

- 보호시설 운영 주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폐지신고 후 새로이 인가 신청을 해야 함.
단, 보호시설 운영주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 시설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지속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존 시설에 준하는 예산지원이 가능함

※ 운영주체 변경 후 계속적 국비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성평등가족부와 협의

4 | 보호시설 인력 및 복무

가. 종사자 배치기준(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2)

시설의 종류		보호시설 정원			
		7인 이하	8인 이상 10인 이하	11인 이상 15인 이하	16인 이상 20인 이하
일반 보호시설	시설장		1	1	1
	상담원		2	2	2
	보조원		1	1	2
	총 계		4	4	5
장애인 보호시설	시설장		1	1	1
	상담원		3	3	3
	보조원		1	2	3
	총 계		5	6	7
특별지원 보호시설	시설장			1	1
	상담원			4	4
	보조원			2	2
	총 계			7	7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시설장	1	1	1	1
	상담원	1	1	1	2
	보조원	-	1	1	1
	총 계	2	3	3	4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시설장	1	1	1	1
	상담원	1	3	3	3
	보조원	1	1	2	3
	총 계	3	5	6	7

※ 보호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다만, 일반·장애인·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장은 소속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음

※ 특별지원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자립지원 전문상담원 1인을 상담원으로 배치하여야 함

※ 주거지원시설을 운영하는 보호시설은 자립상담원 1인 정원으로 추가

※ 상기 종사자 배치기준은 법령상 준수하여야 하는 종사자 수이며, 사업 예산을 통한 지원인력 수와는 차이가 있음 (지원인력 수(확정내시 참조) : 일반 5~6인, 장애인 8인, 특별지원 8인, 자립지원 5인, 장애인 자립지원 5~7인)

※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담원을 관리할 수 있는 직제를 운영할 수 있음

나. 종사자 자격기준(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네

- 보호시설의 장과 상담원의 자격기준 및 종사자 결격사유는 상담소와 동일함
☞ “I.성폭력피해상담소 - 4.상담소 인력 및 복무 - 나. 종사자 자격기준” 참조

상담원 자격요건의 예외(수습직원)

- (요건)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수습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 1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절차) 특례채용은 상담원 채용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또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3차 공고 시부터 적용 가능함
- (관리) 시설은 수습직원을 특례채용한 경우 이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즉시 보고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현장점검 시 채용의 공정성, 1년 내 교육과정 이수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
 - * 보호시설은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교육과정(일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수습직원은 교육과정이 개설되는 즉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또한, 수습직원은 행정업무, 시설 운영보조, 기록정리, 프로그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자 직접 상담·중재·위기대응 등 전문업무는 성폭력상담원 또는 소장이 동행·감독해야 함

다. 운영시간 및 종사자 복무

- 24시간 체제로 365일 무휴 운영함
 - 근무형태, 근무시간은 지자체 및 보호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백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조정·시행(2교대, 3교대, 4교대 등)

※ 〈예시〉 3교대의 경우

- ① 오전조(06:00~15: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② 오후조(14:30~23: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③ 야간조(22:30~06:30, 휴게시간 1시간 포함)로 구분

- 시설기준의 종사자 수에 포함된 시설의 장, 상담원 및 보조원은 상근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 근무시간 중 대학출강 등 타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는 겸직으로 보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의 장은 보호시설의 종사자 중 겸직자가 있는지를 반기별로 확인하여 겸직일 경우 종사자 인건비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함

※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에 한하여 근무시간 외에 다른 업무의 겸임은 예외적으로 허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 '19.9.19.)

- 법인의 대표자(이사장 포함)가 시설장을 겸할 수 없음
- 다만,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또는 특별지원보호시설의 장은 소속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또는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음
- 학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예방교육, 성폭력 피해자 상담 등 보호시설 고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출장은 가능함
 - 이 경우 반드시 관련자료(근무상황부, 출장대장, 교육대장, 상담일지 등)를 비치하여 이를 증빙하여야 함
 - ※ 근무상황부, 출장대장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인사현황자료(출장현황, 휴가현황, 교육현황 등)로 대체 가능함
 - 잦은 출장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교육 업무 분담, 교육비 활용 기준 등에 관하여 형평성 있는 보호시설 자체 규정을 구비하여야 함
 - ※ 보호시설 종사자가 외출, 조퇴 등 이석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를 비치
- 보조원은 시설 유형별 특성, 규모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운용 가능
 - 상담보조(반드시 상담원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함)
 - 기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 ※ 예시) 활동보조(장애인 시설 등), 행정지원 업무, 시설관리 업무, 식사보조(조리원) 등
-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비공개로 운영되며 시설관련 정보 등은 비공개 처리할 수 있음
 - 「성폭력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철저
 - 보호시설 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 ※ 특히, 상담소 종사자의 외부강의 시 지원사례를 활용할 경우, 시설정보(명칭, 소재지 등) 및 개인 정보가 공개되거나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유의
 - 보호시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목적용 외에 수집 또는 제공할 수 없음
 - ※ 법령 위반 종사자는 「성폭력방지법」 제3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36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법령 위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78조(징계사유)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

(참고) 개인정보의 보호 및 유출방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 지자체와 시설장은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본래의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되어지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실시(「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수집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권리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거나,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경우 수집 가능
 - 입소/이용자, 후원자 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그 외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노력 등

라. 종사자 채용 및 임면보고 등

- 설립주체에 따른 종사자 임면권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기관의 장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시설의 장
 - ※ 종사자 임면권자는 법인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종사자 채용
 - 공개경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 시 임금·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함
 - ※ 종사자는 교육훈련과정(100시간) 이수뿐만 아니라 시행령 상의 개별 기준도 갖추어야 하므로 채용 시 수료증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필히 확인함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은 시설 포함)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해 공개 채용 과정에서 종교관련 정보, 가족관계, 출신지역 정보 등 개인정보 취합 금지
 - ※ 공정한 채용을 위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권고(외부인원 50% 이상), 이 경우 법인 임직원은 내부위원으로 간주
 - 폭력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업무배치 규정 마련,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체계 등을 정비하여야 함

- 종사자 결원 시 1월 이내에 신규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함

(참고) 종사자 결격조치 관련 시스템 활용

- (국가 및 지자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조회
- (국가·지자체 외)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통한 조회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등 미조회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결격조치와 관련된 관련법령을 명확하게 등록하여야 함

○ 종사자 임면보고

-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권자는 종사자 채용 시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보호시설의 장은 국비(지방비 포함)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종사자 채용 시 관련시스템에 따라 종사자 임면보고(사유 : 종사자 경력인정여부의 증명서류 제출 시 증빙자료로 활용)

○ 종사자의 대체 인력 지원

- 시설장은 종사자의 퇴사, 육아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신규 또는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등 적정 인력을 운영하여야 함
- 대체인력의 자격은 상담원 등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무료법률 지원 사업 활용 가능

- 보호시설 종사자가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역고소 등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성평등가족부의 무료법률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음

마. 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강화 등 법정 의무교육 안내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 시행기관 : 성평등가족부장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시·도지사 (「성폭력방지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법정 의무교육 이외에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연수비를 기관운영비 내에서 지출 가능

○ 법정 의무교육 안내

구 분	법적근거	대상	시행주체	이수방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 평등법 제13조	전 종사자	고용노동부	직원연수·조회·회의, 사이버 교육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전 종사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privacy.go.kr) 참고
퇴직연금제도 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고용노동부	온라인, 집합, 서면, 상시게시(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	전 종사자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 촉진법 제5의2	전 종사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참고(연 1회 1시간 이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협회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8시간 이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전 종사자	고용노동부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교육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 종사자	성평등가족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연 1회 이상)

※ 시설장 및 종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수하도록 노력할 것

가. 입소 관리

○ 입소 대상자(법률 제12조, 제15조)

시설 종류	입소대상자
공통기준	- 성폭력피해자로서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친족에 의한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필요)
일반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 등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성폭력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 만 19세 미만의 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친족성폭력피해자 ※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함(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 ※ 특별히 피해자 보호자가 동행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인 숙식 및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가능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성폭력피해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5.1.)에 따라 외국인보호시설 근거 규정 마련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일반·장애인·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장애인보호시설 퇴소자

○ 입소보고(법률 제15조 제2항) 및 입소 승인(법률 제15조 제3항)

- 입소보고 :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의 현황을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입소승인 : 친족성폭력피해자, 지적장애인 등을 보호자의 입소 동의 없이 입소시킨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입소 기간 및 연장(법률 제16조, 시행령 제5조의2, 시행규칙 제7조의2)

유 형	입소 기간		
	원 칙	연 장	
		기 간 (원칙기간 도과 후 추가 기간)	대 상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1년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1회당 2년 이내)	입소자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지원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입소자가 초·중·고·대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각종 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 (입학확정자 포함)
외국인 보호시설	1년 이내	1년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입소자가 취업 및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이수중인 경우
【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 특례】 - 일반보호시설 입소자 중 아래의 <특별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기 연장기간 도과 후에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함 (이 경우 총입소기간은 1년(원칙)+1년 6개월(추가)+2년(특례) = 4년 6개월임) ①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피해자의 보호필요성, 생활환경,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보호시설 입소기간 추가 연장】 - 외국인보호시설 입소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상기 연장기간 도과 후에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2년의 범위에서 1회 추가 연장이 가능함 • 피해자의 보호필요성, 생활환경,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소 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소기간 연장 방법】 -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장기간 및 사유 보고 - 단, 장애인 보호시설 입소자가 2회 이상 연장 시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의 정도 또는 피해자의 입소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승인 필요			

나. 퇴소관리(법률 제17조)

-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음
 - 보호시설의장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퇴소를 명할 수 있음
 - 보호목적의 달성 또는 입소기간 만료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자
 - 타 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자해, 폭력, 내부규정 위반 및 그밖에 단체생활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 및 이용자 등). 이 경우, 독단적으로 결정하여서는 안 되며, 시·군·구와 협의한 후 퇴소토록 조치
- ※ 장애인 입소자가 보호기간 만료로 퇴소 시 계속적인 시설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시설장은 해당 시·군·구에 장애인시설로의 연계를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시·군·구 보호시설담당 공무원은 장애인시설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장애인시설로 입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다. 성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5의2)

-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격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격 :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이며, 아래 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① 지원대상
-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가해자 제외)
 - ※ 친족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름
 -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 아동·청소년의 범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 ② 지원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성폭력피해자(친족, 아동·청소년)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특별지원 보호시설의 경우 1년) 입소한 피해자. 다만 퇴소하였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17조제2항 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의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다만 퇴거하였을 경우 그 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우선 공급대상 임대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및 제3의2호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
 - 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다음 중 어느 하나)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개월(특별지원보호시설의 경우 1년) 이상 입소 확인서
 - 성평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의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 증거서류 신청·발급 절차

임대주택 모집공고

- (피해자)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서식 8]
- (시·군·구청장) 보호시설 또는 주거지원시설에 발급신청서 내용 확인 요청
- (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발급신청서 내용 확인 후 시·군·구청장에 제출 : [서식 9]
- (시·군·구청장) 신청자(피해자)에게 확인서 발급 : [서식 10]

- (피해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시 피해자가 입소·입주한 사실이 있는 보호시설 등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청장에 신청서[서식 8]를 작성하여 신청
- (시·군·구청장)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은 해당 보호시설 등에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 또는 확인 요청
- (보호시설 등) 시·군·구청장의 확인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확인서 [서식 9]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청장) 보호시설 등의 확인서 내용을 관련 보고서류 등과 확인하여 최종 검토 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입소 확인서」[서식 10]를 피해자에게 발급

보호시설 퇴소사유 기재요령(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1. 피해자 본인 의사 또는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
2. 보호 목적이 달성된 경우
3.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4.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5.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등

주거지원시설 퇴거사유 기재요령: 다음 중 어느 하나로 기재

1. 입주 목적이 달성된 경우(사회복귀, 자립 등)
2.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4. 그 밖에 관리비 체납 등 입주자 준수사항 위반 등

※ 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의 장은 반드시 임대주택 관련 서류를 「시설 입소 확인서 발급 대장」을 만들어 관리

라. 협조사항

- 학교 밖 청소년 발견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협조
- 입소자와의 초기 상담과정 등에서 해당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정보 연계

연계 절차

- ①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안내
-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음
- ③ 주소지 또는 시설소재지 시·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공문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를 통보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거부(제외)제도 안내 협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거부(제외)제도〉

구분	등재 거부	등재 제외
내용	특정인에게 피부양자 자격이 등재되지 않도록 거부하는 제도	특정인 구분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이 등재되지 않도록 거부하는 제도
신청방법	피부양자 등재거부(제외) 신청서 작성 및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사 제출	

※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행 등 미성년 피해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 이후 퇴직 시 자동으로 부모(가해자)에게 피부양자로 연계되어 피해자 자격변동 내역이 전달됨(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한 부모에게 자동연계)

○ 미성년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 통지예외 및 대리 통지 협조

〈미성년 피해자 법정대리인 통지예외 및 대리 통지 규정〉

- 법적 근거
 - 범죄수사규칙 제13조제3항(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 지원대상 : 13세 이상인 성범죄 피해자
- 개정내용 및 지원내용

가. 법정대리인 통지 예외사유 확대 : 기존 예외사유^①에 3개 사유^{②③④} 추가

- ①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 ②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 ③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④ **(13세 이상인 피해자) 피해진술 거부 등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대리 통지 :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조력할 '지원기관' 또는 '변호사'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 예외사유가 적용되는 피해자는 관련 법(**성폭력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지원기관 및 국선변호사 지원

[참고자료]

친족 성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 신청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 열람·발급 제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친족 성폭력피해자로서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성폭력 피해 상담을 한 사실이 있거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친족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 등)한 경우
 - 열람·발급 제한신청 방법(주민등록법시행령 제47조의2, 시행규칙 제13조의2)
 - 친족 성폭력피해자 본인*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및 증거서류를 제출
 -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에 대해 후견인이 될 수 있음(법원 허가 필요)
- ※ 피해자는 열람·발급을 제한신청 후 같은 방법으로 해제신청도 할 수 있음

열람·발급 제한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택일,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3조의2)

-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피해상담사실확인서(별지 [서식 20])
 - ※ 피해상담사실확인서 내 입증서류 첨부 : 경, 검찰, 법원의 증명서 및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등), 병원진단서, 사진, 영상, 문자나 메일, 통화·대화 녹음, 목격자 진술서 등, 기타 피해사실 입증이 가능한 자료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별지 [서식 7])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 자세한 세부 절차는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발급매뉴얼(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제도용)”(‘21.11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참조

친족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직권 등록사항 말소 등 제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에 있어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에 입소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아니함

정신질환자의 입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50조)

- (자의 또는 동의 입원) 입소 이후 정신병리적 특성이 발견되어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입원 조치할 수 있음.
- (특별자치시장 등에 의한 입원)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나, 자의 또는 보호자에 의한 입원이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요원을 통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음
-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음

가. 행정처분의 요건(법률 제23조)

-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법 제22조)

-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상담원 등이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나. 행정처분의 주체(법률 제23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기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행정처분의 기준(시행규칙 제11조 [별표 5])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상담소·보호시설을 양도·상속하거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지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승계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업무의 폐지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보호시설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보호시설의 입소자를 전원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보호시설이 없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당소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나.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당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당소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상당소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라. 추가 조치사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당소 업무가 폐지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1조의2)
 - 이용자가 다른 보호시설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 조치
 -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 법 제23조에 따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 명령이나 인가취소를 받고도 보호시설 등을 계속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업무의 폐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
 - ※ 「행정절차법」 상 처분 및 청문 절차 참조
 - ※ 그 외 행정처분의 요건,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참조

〈참고〉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 2])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2항제1호	300만원		
나. 법 제3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2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8조 제2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8조 제2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바. 법 제33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 제2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가. 재무회계 원칙

- 보호시설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 재무회계 관리는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 법령 준용(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참고)
- 보호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장부에 기재 후 집행
-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는 5년 이상 보존

나. 국비 지원 보호시설 선정

- 성평등가족부는 국비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시·도가 추천한 국비지원 대상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사업자에 대하여 심사·선정할 수 있음
 - ※ 국비지원 대상 선정 시 운영주체(법인 등)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확인 필요
 - ※ 이 외의 사항은 국비 지원 상담소 선정 절차를 준용함
- 국비지원 중단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여야 함(보조금법 제31조의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성평등가족부에 서면보고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보조금법 제33조제3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성폭력방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 행정처분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 여부 검토

- 기존 국비지원 시설의 운영이 부실하거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종사자 임면의 허위 보고 등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 직장내 괴롭힘 발생 등에 대한 조치의무 미이행 등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성평등가족부에 서면보고(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하여 보고)

다. 보조금 지원 단가(국비+지방비)

(단위 : 천원)

구분	일반		장애인		특별 지원	장애인 자립지원	자립 지원
	비위탁	위탁	비위탁	위탁			
인건비	184,252	221,006	294,514	294,514	298,698	(5인)188,436 (7인) 261,944	188,436
운영비	(~10인)15,700 (~15인)18,600	23,200	19,000	23,200	37,700	(10인 미만) 31,300 (10인~) 37,800	18,600
교통비 추가 지원	-	-	15,600	15,600	-	-	-
사업비	(~10인)20,000 (~15인)22,000	22,000	28,000	28,000	33,400	22,800	16,600
사업비 2 (비수급자 생계비 등)	'세부내역' 참조						
총계 (비수급자 생계비 등 제외)	(~10인)219,952 (~15인)224,852	266,206	357,114	361,214	369,898	(10인 미만) 242,536 (10인)322,544	223,636

※ 금액은 국비, 지방비가 포함된 금액이며(휴일수당 미포함), 국고보조율은 서울 50%, 그 외 지역은 70%임
단 비수급자 생계비·교육비는 국고보조율 100%임

〈사업비 세부내역〉

(1) 사업비 1 세부내역(국고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단위: 천원)

구분	용도	일반	장애인	특별 지원	장애인 자립지원	자립 지원
생활지원비	입소자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	(10인) 13,400 (15인) 15,400	19,200	25,200	20,600	14,400
학습지원비	학습·학원비, 방과후 학습비, 교통비 등					
의료· 법률지원 부대비용	건강검진비, 교통비, 감기 등 가벼운 치료소요비용,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증거수집 등 소송관련 비용					
프로그램비	치료회복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비용	4,400	6,600	6,000		
직업훈련비	직업훈련비	2,200	2,200	2,200	2,200	2,200
합계		(10인) 20,000 (15인) 22,000	28,000	33,400	22,800	16,600

(2) 사업비 2 세부내역(국고보조율: 100%, 퇴소자립지원금·수당 서울 50%, 지방 70%)

구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횟수	지급방법
생계비	비수급자	426,741원	12회 (월 1회)	시설 지원
교육비 (교복 등 학습지원)	비수급자	250,000원	2회 (반기별 1회)	시설 지원
퇴소자립지원금	퇴소자	10,000,000원	1회 지급 또는 2회 분할지급	퇴소자 지원
퇴소자립지원수당	퇴소자	월 50만원	월 1회, 최대 5년	퇴소자 지원

라. 보조금 집행 기준

1) 인건비 및 운영비

- 상기 인건비 및 운영비 총액은 보호시설 1개소당 최소 지원 금액으로 임의로 지급 단가를 감액 조정하여 지원할 수 없음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국비지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종사자 호봉 책정을 할 수 있음(상담원은 생활복지사 수준 적용)

- 인건비는 사업비를 제외한 보호시설 지원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인건비는 기본급,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초과·야간·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함. 다만, 보조원을 포함한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이 2026년 기준 최저임금액(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 (가입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 ※ 누리집 <http://insurancesupport.or.kr>

-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은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기본급에는 포함하지 않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 각종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방비 추가 지급 가능
- 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적립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반환해야 함(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 ■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해야 함

-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준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만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환: 시설장 만 65세 (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 종사자 만 60세

* 설립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특례: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①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 지자체 홈페이지, 복지넷, 워크넷, 희망이음* 중 2곳 이상에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 희망이음 공고 기능 개통 전이므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고 가능

-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63세까지는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 가능하며, 63세를 초과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는 위의 방식으로 1회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여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65세까지 계약 연장 및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
 - ※ 60세 초과 종사자를 특례 채용한 경우에는 특례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호봉으로 동결(이후 호봉 승급 없음)

②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내에서 청년 인력(만 29세 이하)을 채용하는 경우

- 신규 채용 및 인력 운용 계획을 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이사회를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 위의 계획에는 60세 초과 종사자 및 신규 채용 인력 2인의 인건비를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100% 내에서 지급하되, 60세 초과자의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청년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 적용
 - ※ ①, ②에 따른 절차를 거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

○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 종사자 상해보험료(1인당 보험료 연 5만원 이내)
- 수용비(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협회비 등),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 비유지비(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PC 등 통신시설 유지비), 소규모의 수선비, 차량비, 재료비 등

※ 각 시설은 1곳의 협의회비만 지출 가능

- 출장비(일비 및 교통비) 지급, 여비집행은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여비 집행 기준〉

- ① 근무지 내 : 일비 4시간 이하 10,000원, 4시간 초과 20,000원
- ② 근무지 외 : 일비 25,000원, 식비 25,000원, 교통비 실비지급
 - ※ 근무지 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왕복)가 12km미만인 출장을 의미함. 출장 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외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함
 - ※ 근무지 내 출장 시에는 교통비 별도 지급하지 않음
 - ※ 근무지 외 출장에 개인 차량 이용 시에도 실비 지급 가능

-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회의비, 보호시설과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겸직하는 시설장의 직책보조비)
 - ※ 단, 직책보조비는 1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숙식비(1일 1인 2만원,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등 종사자의 숙직, 연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활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활용 가능. 단, 대체인력이 성폭력상담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음
-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비 내에서 슈퍼비전 또는 종사자 소진방지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치료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연간 1인당 30만원 범위 내)
 - ※ 지원 가능 항목: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치료, 개인 및 집단 상담·심리치료, 힐링 프로그램 교육 등 프로그램화된 것은 참여지원 가능(단순 여행이나 영화 관람은 지원 불가(단순 여행이나 영화 관람은 지원 불가, 단 여행·영화관람도 소진방지를 위한 프로그램화한 경우 가능))
 -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임차료 등은 지방비에서 추가지원할 수 있음
- 운영비 지출원칙(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각 시·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지침」 등에 따라 보조금 전용카드에 클린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관리
 - 또한 각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지도·감독
 -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부당 사용사례가 적발된 경우, 감사 등을 실시하여 환수 및 징계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분

▶ 보조금 전용카드란?

- ① 시설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 ②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발급 및 거래내역 전송
- ③ 클린카드 기능 탑재
 - *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계약한 금융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함

-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 금지)

* 보조금 전용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등은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조건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 장애인 보호시설의 경우, 장애인 방문상담, 학교 방문 등 보호시설 업무에 소요되는 교통비(연 15,600천원)를 별도 지원하며, 아래와 같이 집행 가능함

- 방문상담 등 장애인 보호시설 업무에 소요되는 출장비(일비 및 교통비) 지급
※ 출장비는 상단 여비 집행 기준을 준용하여 집행, 여비 집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 이밖에 업무 차량유지비(유류비, 차량보험료 및 수선비, 자동차세·환경부담금 등), 운전기사 인건비, 성폭력 방지를 위한 홍보에 필요한 경비(홍보물 제작 및 배포, 광고비 등)로도 집행 가능

2) 사업비

- 생활지원비, 프로그램비, 직업훈련비 등

- 생활지원·학습지원·의료·법률지원부대비용, 프로그램비 및 직업훈련비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위 : 천원)

구분	용도	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장애인 자립지원	자립지원
생활지원비	입소자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	(10인) 13,400 (15인) 15,400	19,200	25,200	20,600	14,400
학습지원비	학습·학원비, 방과후 학습비, 교통비 등					
의료·법률지원 부대비용	건강검진비, 교통비, 감기 등 가벼운 치료소요비용,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증거수집 등 소송관련 비용					
프로그램비	치료회복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비용	4,400	6,600	6,000		
직업훈련비	직업훈련비	2,200	2,200	2,200	2,200	2,200
합 계		(10인) 20,000 (15인) 22,000	28,000	33,400	22,800	16,600

- 단,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소자의 특성 등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 가능함
 - 생활지원비, 학습지원비, 의료·법률지원 부대비용은 시설 입소자의 특성에 맞게 적정히 배분해서 사용

- 프로그램비와 직업훈련비는 시설 입소자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 가능
- 아동·청소년 입소자 많은 등의 입소자의 특성으로 인해, 학습지원비, 의료·법률지원 부대비용 등이 부족할 경우, 프로그램비와 직업훈련비지원액 합계의 50% 범위 내에서 생활지원비·학습지원비·의료법률지원 부대비용으로 사용 가능
- 직업훈련비는 국공립 직업훈련기관, 민간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모든 외부 훈련기관 포함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피부미용, 요리, 미용, 디자인, 컴퓨터 관련 실질적 취업 창업이 가능한 직업교육 및 진학교육비를 우선 지원함 (출석률 80% 이상 일 경우만 집행함. 시설이 교육 기관에 입금하되, 교육기관이 발행한 수강료 청구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리)

※ 입소자가 자립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제도(내일배움카드제)를 이용할 경우, 피해자 보호 시설 입소 확인서(서식 2)를 고용노동센터에 제출할 경우 자부담분 면제(고용노동부 협의, '13년~)

○ 비수급자(입소자) 생계비 및 교육비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횟수	지급방법
생 계 비	비수급자	426,741원	12회(월 1회)	시설 지원
교 육 비 (교복 등 학습지원)	비수급자	250,000원	2회 (반기별 1회)	시설 지원

- 생계비 : 입소자 중 비수급자로 확인된 경우 입소일부터 소급하여 지급가능
 - ※ 피해자 생계비 집행은 종사자 식비와 합산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함
 - ※ 시설수급 신청하였으나, 조사기간 중 퇴소한 입소자의 경우 생계비 지원대상자가 보호시설에 입·퇴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입·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여 소급지급 가능(1개월 미만 단기·일시보호 제외)
- 교육비 : 입소자 중 비수급자로 확인된 경우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지급하되, 소급지급 가능(교복, 교과서대, 부교재, 학용품 등에 사용)
 - ※ 보장시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지원

○ 퇴소자립지원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횟수	지급방법
퇴소자립지원금	퇴소자	10,000,000원	1회 지급 또는 2회 분할지급	퇴소 시점 전후 2개월 내에 신청 및 퇴소 시 지급
퇴소자립지원수당		월 500,000원	최대 60개월	

※ 보호시설에서는 퇴소자립지원 대상 입소자가 시설 퇴소 시 지원금 및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사용 용도와 금액 및 기간 등을 미리 계획할 수 있게 지도하는 등 해당 지원금 및 수당이 자립과 관련하여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 실시

- (법적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다음의 입·퇴소 당시 연령 및 입소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연령 요건) 성폭력 피해자로 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 (입소기간 요건) 퇴소일 기준, 과거 보호시설 입소 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 '25년 보호시설 퇴소자부터 적용, 소급적용 불가
- ※ 퇴소자립지원금 및 퇴소자립지원수당은 1인당 1회 지원(결정)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비수급자 구분 없이 지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산정 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퇴소자립지원금' 및 '퇴소자립지원수당'은 관련 소득·재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취업 또는 대학 입학 등으로 인해 조기 퇴소하는 경우 18세 이상인 자도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 시 관련 증빙 제출 필요
- ※ 일반·장애인·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일반·장애인·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포함하여 연속해서 보호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퇴소자립지원금 및 퇴소자립지원수당은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퇴소 시에 신청·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인당 1회 지원이므로, 지자체는 해당자가 이전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당시 관련 자립지원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지급해야 함
- 퇴소자립지원금 및 퇴소자립지원수당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 및 서식은 II-2, II-3의 자료를 참조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복지체계 내에서 보호 중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전원·입소하게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법 상의 보호대상아동과 관련한 자립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관련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원받게 된 경우,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퇴소자립지원금 및 퇴소자립지원수당 지원은 불가함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내용 및 요건 등은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을 참고

마. 지자체 집행 시 유의사항

- 지자체는 보호시설당 책정된 예산을 월별 적정 배정하여야 하며, 매월 초 지급 원칙
- 지자체 직영 보호시설의 경우 예산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배정
- 상반기 집행실적과 하반기 예산전망을 고려하여,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비수급자 생계비 등' 기초 지자체 또는 보호시설 간 배정액 적시 조정

바. 후원금품의 관리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발급
(의료·사회복지·종교·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통해 후원금 또는 지정 기탁금을 수령한 경우 포함)
 - ※ 금융기관 등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발급 가능
 - ※ 후원금 전용계좌는 시설 고유의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두어야 함
-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 비치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

■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 ■

연번	일시	후원자(법인)	후원금 유형 및 금액		지정후원금 용도	비고
			지정	비지정		
1	2020.1.25.	○○○법인	500,000원		청소년 생계비	
2	2020.1.30.			100,000원	청소년 교육비	

- 후원자가 후원금품의 용도를 지정했을 경우 지정 용도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후원자(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 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통보
 -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용도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 후원금으로 인정

- 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8, 별표 10의 세출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하되, 가급적 내역수준으로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 되도록 할 것
- “법인·시설의 운영” 등과 같이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에 따라 관리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는 사용 금지
-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
- 시설비는 건물 노후화, 정원대비 협소한 공간 등 시설 입소·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원칙으로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보호시설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 시 인터넷 공개 생략 가능)
- 같은 기간 동안 보호시설의 장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단, 후원자 성명은 비공개하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 시 인터넷 공개 생략 가능)

사. 보조금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 부정수급 등 사유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처분을 받은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반환 대상 보조금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함(「보조금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성평등가족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가. 관리규정 제정 및 장부의 비치

○ 관리규정 제정(시행규칙 [별표 2])

-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방침, 직원의 업무분장, 입소요령, 이용수칙, 입소자에 대한 소방·재난·보건 등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해야 함

○ 장부의 비치(시행규칙 [별표 2])

구분	관리에 관한 장부	사업에 관한 장부
종류	- 보호시설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직원관계철 (인사기록카드, 이력서, 사진 등) - 회의록관계철 - 소속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 및 관계결의 기록 - 문서철 (보고서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문서철) - 문서 접수·발송대장 - 종사자 근무상황부, 출장대장, 교육대장 등 각종 대장 - 시설안전교육일지, 시설안전점검일지, 시설안전 사고보고서, 차량운행일지 등	- 입소자 관계서류(신상조사서, 입소확인서, 입소자·퇴소자 명단, 지원기록 등) -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 운영프로그램 관리대장 (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평가 관련 서류) - 종사자 교육·훈련 관계 서류 - 운영실적 관련자료 등 • 의료비지원관련 서류 • 법률지원관련 서류 • 학업지원관련 서류 • 기타 보호시설 사업에 관한 자료 등
구분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그 외의 서류
종류	- 총계정원장 - 수입 및 지출보조부 - 금전출납부 및 증빙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비품수불대장 - 비품관리대장 -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 후원금수입 및 사용내역서 - 정부보조금명세서 - 사업비명세서, 사무비 명세서, 예비비 사용조서 - 각종 증빙서류	- 사회복지시설인가증(보호시설 인가증) * 인가시설만 해당하며, 국·공립 위탁시설은 위탁계약서 등 관계 서류 비치 - 시설의 운영계획서 -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 기타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된 각종 서식 및 자료는 별도로 비치 활용

○ 각종 기록 등의 보존 및 관리

- 입소자와 관련된 상담내용은 반드시 상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

- 입소자 상담 관련 자료는 10년 이상 보관

※ 단, 상담일지는 10년 이상 보관 후 폐기 조치하되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강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전연령 대상 강간살인죄 등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담 관련 자료 폐기에 신중하여야 함. 단, 피해자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피해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자료 폐기 가능

나. 보호시설 정보 비공개

- 시설장은 시설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는 사례(종사자 채용 공고, 법인홈페이지 등)가 없도록 주의

- 특별지원 보호시설 홍보 및 안내 시, 보호시설명만으로도 입소 피해자의 피해 유형(친족성폭력에 의한 피해자)이 유추가능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청소년 보호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여 안내

- 다만, 개별 안내 시에는 입소 가능 대상을 명시적으로 설명하도록 함

다. 업무의 전자화(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정책에 협력하여야 함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호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지급·정산 등 회계업무, 종사자 인사업무, 통계관리업무 등 가능한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여야 함

라.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목적 : 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 구성 :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단, 각 부분별 인원은 2인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설의 장
 -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시설 종사자의 대표
 -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① 시설장의 친인척, ②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시설장 제외)는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할 것
 - ※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에 유의할 것(법제처 해석, 17-0433)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기능 : 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사항 심의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회의 결과의 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 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 사유는 공개해야 함)
- 회의는 대면심의가 원칙이며 참여자 확인할 수 있는 원격영상회의는 허용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회의 관련(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운영되는 것임
- “심의”는 “심사하고 토의함”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 점, 위원회 회의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고 그 회의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 위원회 설치의 법률 취지가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함으로써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생활자 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면회의가 적절함**
- 또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와 같은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심의 가능, 이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및 분쟁소지 해소를 위하여 영상회의를 녹화하여 보관

- ①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함
- ②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운영위원회 위원임을 확인)
- ③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 간 의견교환이 가능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 보고사항

※ 아래 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은 아님

-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 국가감염병 확산 등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서면보고로 갈음 가능

○ 임기 및 운영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운영
- 운영위원회 운영일지를 작성·보고 및 보관
 -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산 제출 시 함께 제출

마. 현장점검 및 감사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시·도 또는 시·군·구 등은 보호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입소자대장 등을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하게 입소자대장 제출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 입소자대장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범죄피해자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호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이 보호시설 운영실태, 입소자 및 운영비 집행상황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시설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시설의 안전점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 보험 가입

-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함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가 가해자 등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는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 보험가입여부 확인(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 ▶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 시·군·구는 시설 이용자와 생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법 제58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 [별표 5]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것
 - 지자체는 시설 정기안전점검 시 각 시설의 대인·대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1인당 배상책임 보험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 책임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배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의미함
 - ** 책임공제라 함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설립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 의미함
- ▶ 시설의 지도·감독청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시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소멸식 상품을 가입토록 관리해 나가되
 - 불가피하게 해당 시설이 적립식 상품을 가입한 경우라면 시설이 그 만기 환급금 수령 후 시설 운영비로 세입처리를 반드시 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 자체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시설장은 소관시설에 대하여 매 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시안전점검 : 시설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점검기관에 수시안전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안전점검기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지침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지자체에서는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대상 선정 시 시설 안전점검 결과 개보수 필요시설, 노후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

○ 지자체 안전점검

- 시·도 및 시·군·구는 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성평등가족부에서 통보하는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종사자대상 교육훈련, 안전점검표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에 보고
-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 상태, 보험가입 여부, 시설거주자 건강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며, 취약시기의 특성에 따라 감염병 관리 대책, 급식 시설 위생상태, 폭설·제설·동파·난방관리 대책 등 추가 점검

○ 국토안전관리원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무료)’을 실시하므로 시설장 및 지자체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할 것

* 주요 점검내용 : 시설물 기초지반 침하 및 벽면 균열 발생여부, 시설물 주변 석축·옹벽, 비탈면의 결함 발생 여부 등

-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운영주체, 시설장, 지자체 담당자가 소규모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sfms.or.kr)에 신청(필요시 신청 전 지자체 현장확인 실시)
- 시설장 및 지자체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조치실적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그 실적을 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지자체에서는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보수 등이 시급히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능보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사. 시설 사고 예방 및 조치

-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3조)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 소화시설·장비는 관련 소방법령 등에 따라 구비하고 종사자가 수시로 확인·점검
- 시설장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평상시 종사자들에게 사고예방의 중요성 및 각종 시설물 취급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항상 숙지하도록 지도하여 사고발생 예방
 - 주간 및 야간근무자 지정 및 근무 철저
 -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절기·해빙기 안전점검 철저(보일러·가스·전기 등)
 - ※ 가스경보기를 설치하여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 미연에 방지
 - 화재대피 훈련 등 방재훈련을 시설별로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
 - 시설장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보고, 의료조치, 초기대응(화재진화 등), 외부 연락 등에 대한 종사자의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종사자들이 유사 시 자신의 임무를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 시설장은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피난방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고에 빠른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당해 지자체(시·군·구 → 시·도에 보고)는 성평등가족부에 지체 없이 보고 [서식 4]

아. 기타 사항

- 지자체는 관할 지원시설에 대하여 적정 입소자 비율이 유지되도록 지도하고 입소자 비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지자체 및 현장실정에 맞게 정원조정 추진
 - 지자체는 현장 점검 시 최근 3년 평균 입소율(이용자 제외)이 50% 미만인 시설에 대하여 정원조정 등 자체 개선안을 강구토록 지도
 - ▶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원에 따른 종사자 수의 유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정원조정 등 시설별 자체노력을 강구하여야 함
 - ▶ 지자체에서는 정원 대비 평균보호인원 비율이 낮은 보호시설의 정원을 시설과 협의하여 조정 검토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할 수 있음
-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시설안전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사회복지시설 화재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용할 수 있음

9 | 보고서항

가. 정산 및 운영실적 보고

- 제출자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제출자료 : 관내 각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실적, 보조금 정산내역 등
- 제출기한 : 상반기 실적은 7월 30일, 상·하반기 총실적은 차년도 1월 30일
- 제출처
 - 정산실적 : 성평등가족부(성폭력방지과)
 - 운영실적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나. 보호시설 인가 내역 등 보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변경 인가, 휴업·폐업·운영재개 신고사항 등을 인가 또는 수리 후 즉시 성평등가족부장관에 보고

다. 안전점검 결과 및 시설 사고 발생 시 보고

- 시·도 및 시·군·구는 하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성평등가족부에서 통보하는 안전 점검 계획에 따라, 종사자대상 교육훈련, 안전점검표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에 보고
-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당해 지자체(시·군·구 → 시·도에 보고)는 성평등가족부에 지체 없이 보고 [서식 4]

라. 입소자 만족도 조사 및 현장점검 결과 보고

- 입소자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 제출자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제출자료 : 관내 각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1~9월 간)의 만족도
 - 제출시기 : 매년 10월 초
 - 제출처 : 성평등가족부(성폭력방지과)
- 현장점검의 시기·방법, 결과보고 일정 등 상세 내용은 추후 통보

마. 예산지원 가능 여부 사전 협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시설 설치인가 또는 시설종류의 변경, 입소정원 변경 시 운영비 등 예산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와 사전 협의

바. 기타 사항

- 공무원의 사회복지법인·시설 재취업 공무원과 사적 접촉 방지 법령 신설 안내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22.5월 시행) ■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협조사항

-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대상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안내 협조
 - 상담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대상 사용자의 성폭행 피해 등을 인지 시 사업장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안내 협조(’19.2.1. 시행)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고시변경 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전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7호〉

제5조(부당한 처우 등)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부당한 처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를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로써 긴급하게 사업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등을 당하여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등 사용자의 관리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 직장 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등을 당함으로써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성폭력피해자 대상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제도〉 안내 협조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제도〉 안내 협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제도〉 내용

○ 법적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및 제221조

○ 지원대상 : 성폭력피해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 지원내용

-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조사 前 신뢰관계자*의 동석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 시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 조치

*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형사소송규칙)

※ 피해자 가족·변호사 등이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할 수 없거나 부적합한 경우, 센터 상담원은 사전 면담 등을 통해 라포 형성 후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상자별 유의사항

- (19세 미만 또는 장애인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시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대한 동석할 수 있도록 조치
- 피해자 등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거부한다고 해도 신뢰관계인 동석의 취지 및 이후 재판 단계에서의 효과 등을 설명하여 적극 설득
- (13세 미만 및 장애인) 피해자 측의 신청이 없어도 신뢰관계인 동석이 법률상 의무임을 설명,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

1 사업 개요

가. 목적

-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에 필요한 생활·교육·취업 및 주거 공간 등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나. 법적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다. 대상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다음의 입·퇴소 당시 연령 및 입소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5년 보호시설 퇴소자부터 적용·지원됨

- (연령 요건) 성폭력 피해자로 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 (입소기간 요건) 퇴소일 기준, 과거 보호시설 입소 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 제외 : 1. 성폭력방지법 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시설 퇴소 조치된 경우
2. 지원금 신청 시 타 법령 등에 따라 자립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등)
3. 시설 퇴소 후 원가정(위탁가정 포함)으로 복귀하는 경우

라. 지급 금액 및 방식

- 1회 1천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원칙
 - 다만,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및 지자체 검토 결과, 1회 전액 지급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판단될 경우 2회 분할 지급 가능
- 국비 및 지방비 매칭으로 국비의 경우 서울 50%, 기타 지방 70%

마. 사업 진행 절차

신청(퇴소자) → 추천(보호시설) → 접수 및 심의(관할 시·군·구, 선정심사위) → 결정·통보(관할 시·군·구)
 → 지급(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 수급자 관리(관할 시·군·구 및 보호시설)
 * 관할 시·군·구 및 시·도 :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시·도

단계	내용
입소자 대상 사전 안내 (보호시설)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 제도 안내 및 자립을 위한 사전 준비 지원
신청 및 추천 (신청자·보호시설)	(신청자) 지원금 신청서 등 작성 및 추천 요청 (시설)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또는 보호 시설 관할 시·군·구에 추천
접수 및 결정 (관할 시·군·구)	(접수)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시설 관할 지자체에서 추천서류를 접수 받은 경우,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이송 처리 (심의) 지원 여부 결정을 위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시·군·구 내 위원회 자체 설치) (결정)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결정
통지 (관할 시·군·구)	(통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 및 보호시설에 결정사항을 통지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지원금 지급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 신청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 예산 배정 및 행정 여건 등을 고려,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운영 (지급) 1천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 지자체 지원 결정 결과에 따라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수급자 관리 (관할 시·군·구 및 보호시설)	(지자체) 수급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호시설) 수급자 지원금 신청 당시 보호시설 - (사례관리) 자립생활 지도, 기타 정보 제공 등 자립지원

2 단계별 업무 처리 지침

□ 신청 및 접수

가. 지급 대상

1)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2) 신청 자격 요건 ※ '25년 보호시설 퇴소자부터 적용·지원됨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다음의 입·퇴소 당시 연령 및 입소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연령 요건) 성폭력 피해자로 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 (입소기간 요건) 퇴소일 기준, 과거 보호시설 입소 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퇴소자립지원금은 1인당 1회 지원(결정)되고, 취업 또는 대학 입학 등으로 인해 조기 퇴소하는 경우 18세 이상인 자도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지원금 신청 시 관련 증빙 제출 필요

* 성폭력방지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방지법 상의 보호시설 간 이동 및 일반·장애인·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일반·장애인·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포함하여 연속해서 보호 받은 것으로 간주

** 일반·장애인·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입소한 경우, 퇴소자립지원금은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퇴소 시에 신청·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일반·장애인·특별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퇴소 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경우, 퇴소자립지원금은 주거지원시설 퇴소 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기한을 유예함. 이때 퇴소자립지원금 신청은 주거지원시설 연계 전 퇴소한 보호시설을 통하여 신청하고 해당 보호시설에서 사후관리하여야 함.

▶ 보호시설은 퇴소자립지원금 대상자가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될 예정인 경우, 대상자에게 주거지원시설 퇴소 전 지원금 신청의사 등을 보호시설에 알려야 함을 미리 고지해야 함

※ 지원 제외

- 성폭력방지법 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시설 퇴소 조치된 경우
- 자립지원금 신청 시 타 법령 등에 따른 자립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자립준비청년 자립 정착금 등)
- 시설 퇴소 후 원가정(위탁가정 포함)으로 복귀하는 경우

○ 신청 기한

- 보호시설 퇴소일(‘월’ 기준)으로부터 2개월 이내

* 퇴소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나, 자립지원금 지급은 퇴소일이 속한 ‘월’에 지급되며, 퇴소 직후에는 실제 퇴소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 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 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

예시) 퇴소일이 7월25일인 경우, 퇴소한 달은 7월이므로 9월 말까지 신청

※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전 연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연말 퇴소 예정자의 경우, 퇴소한 달에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지원금 신청 및 지급결정 통보를 받아야함.

다만, 예외적으로 학업·취업 등 타당한 사유로 인해 연말에 긴급히 시설 퇴소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이전 연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며, 2회 분할 지급 결정으로 인해 다음 회계연도에 일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자체 이월 등 조치를 통해 지급 가능

○ 기타사항

- 기간 산정은 ‘역에 의한 계산(민법 제160조)’ 방식을 따름
- 일반·장애인·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입소한 경우,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것으로 간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비수급자 구분 없이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산정 시, ‘퇴소자립지원금’은 관련 소득·재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

나. 퇴소자립지원금 신청

1) 신청 서류 작성(신청자)

- 신청자는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호시설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천을 요청

* 신청 서류 : 신청서, 입·퇴소확인서, 국민연금공단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 자립계획서, 사후 관리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등

- 보호시설은 입·퇴소확인서 발급, 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국민연금공단 상담 서비스 확인서 등 제반 서류 준비 등을 지원

2) 추천(보호시설 → 관할 지자체)

-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내용을 확인 후,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또는 시설 관할 시·군·구에 추천

〈신청 및 추천 시 제출 서류〉

1. 퇴소자립지원금 신청서(서식1)
 2. 자립계획서(서식2)
 3. 보호시설 입·퇴소 확인서(서식3)
 4. 국민연금공단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
 5. 보호시설 보호 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서식4)
 6. 주민등록등본
 7.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8. 그 밖에 담당 공무원이 자격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 국민연금공단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참고)
 -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현재 재무상황 분석 및 저축·자산형성 방법 등 재무 상담을 실시하며, 상담 후 확인서가 발급됨.(비대면 방식)
- ※ 주의 사항
- 보호시설에서 관할 지자체에 추천 시, 공문 형태로 추천·제출
 -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여부 확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수급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 명의 통장에 한함(적금·청약통장 등 제외)
 - *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은 신청서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통장 사본' 제출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입금계좌 확인 가능

다. 신청 접수

- * 신청 접수 및 결정·관리 등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설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접수를 받은 경우 신청과 관련한 제반 서류를 신청자 주소지 시·군·구로 이관

1) 신청자격 등 확인

- 접수서류 및 신청자 인적사항 등 확인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으로 하되, 전산적 보존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

2) 신청 접수 시 안내사항

- (처리기한) 신청(추천) 접수일로부터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 (통지방법) 서면 통지(우편) 원칙,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우편(e-mail), 문자 메시지(SMS)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 (정보제공)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퇴소한 보호시설 등 사후 관리 담당자에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제공
- (지원금 환수)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처리
- (수급계좌)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수집된 정보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
 - ※ 지급 결정 후 수급권 상실 뿐 아니라 지급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도 5년간 정보 보유

□ 지급 결정 및 지급

가. 지급 결정 및 통지

1)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시·군·구 내에서 위원회 자체 설치)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시·군·구의 성폭력 업무 담당 공무원, 지역의 성폭력·가정폭력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시설협의회의 임직원으로 구성함(위원장은 호선)
 -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단, 공무원인 심사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에 한함
 -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선정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개최 여건에 따라 서면 심사 가능
 - 심사위원회는 퇴소자립지원수당 및 퇴소자립지원금과 관련한 지급요건 충족 및 지원 필요성 등 자립지원수당 및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
 - ※ 월 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별 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심사 기준 등
 - 퇴소자립지원금 신청서(서식1), 자립계획서(서식2), 시설 입·퇴소 확인서(서식3), 사후관리 동의서 등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서식5](예시)를 참조하여, 각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2) 지급 결정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에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및 접수된 신청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 후 지급 여부 결정
- 퇴소자립지원금은 1회 1천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이 원칙이나,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및 지자체 검토 결과 1회 전액 지급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판단될 경우 2회 분할 지급 가능

〈자격 확인 절차〉

- 확인주체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 확인사항 : ① 입소 및 사례관리 기간·자격, ② 본인 명의 계좌* 여부, ③ 연락처 등
*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 조치방법 : 제출서류 및 공적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청인 또는 추천 보호시설에 필요 서류 제출 안내·징구

3) 결정사항 통지

- 신청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는 결정 내용을 신청인 및 추천 보호시설에 통지
※ 신청인이 통지서 발송 전 신청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발송 불필요
- 서면 통지(우편)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 메시지(SMS), 전자우편(e-mail)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 (통지사항) 결정 내용, 급여·서비스, 사례관리 및 이의신청 안내 등

〈이의 신청 안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처리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

- (통지기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나. 지원금 지급

1) 지급 방법

- 지급 결정 대상자(신청자) 명의 금융계좌에 직접 개별 입금
 - ※ 퇴소자립지원금 지급 시 1회 현금 지급이 원칙이나,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및 지자체 검토 결과 분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2회 분할 지급 가능

다. 환수

1) 환수 주체

- 환수 대상으로 확인된 지급 건을 집행한 시·도 또는 시·군·구

2) 환수 대상

- 지원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지급된 경우
-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환수 절차

- 환수 대상 확인 및 환수 결정 → 환수고지(공문으로 본인에게 우편 발송) → 환수

□ 사례관리

※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 관련 사례관리를 할 경우, 통합하여 관리 가능

가. 사례 관리 개요

1) 목적

- 퇴소자립지원금을 지원 받은 퇴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 및 지원

2) 관리 주체 및 기간

- (사례관리) 지원금 신청을 추천한 퇴소 당시 보호시설
- (지도 및 감독) 수급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사례관리 기간) 시설 퇴소 후 1년

3) 관리 내용

- 수급자의 사회 정착 및 자립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지도·지원
 - 주거마련 지원(공공주택 연계 등), 독립생활·학업·취업지도, 경제교육 등 정보 제공 및 정부지원사업 안내·연계 등
 - * 수급자 사례 관리 시 보호시설 퇴소자 사후관리서(서식7) 양식 활용

나. 현황 관리

1) 관리 주체

- 수급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관리 내용

- 퇴소자립지원금 신청·접수·결정·지급 현황 및 수급자의 인적변동사항 등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기록 관리

3 | 서식

- 〈서식1〉 퇴소자립지원금 신청서
- 〈서식2〉 퇴소자립지원 신청 관련 자립계획서
- 〈서식3〉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퇴소 확인서
- 〈서식4〉 보호시설 보호 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
- 〈서식5〉 퇴소자립지원금 선정 심사 기준(예시)
- 〈서식6〉 퇴소자립지원 관련 이의 신청서
- 〈서식7〉 보호시설 퇴소자 사후 관리서
- 〈참고〉 국민연금공단 재무 상담 서비스
- 〈붙임〉 국민연금공단 거점 지사 현황

PART
01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PART
07

PART
08

PART
09

PART
10

PART
11

퇴소자립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1. 신청인				
시설 퇴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E-mail			
	주 소		연락처	전화 : 휴대전화 :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관련 통지방법 [] 서면(우편)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2. 추천 보호시설				
보호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시설장명			담당자명, 연락처	
시설 주소	()			
E-mail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본인은 퇴소자립지원금 지급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 (시·도, 시·군·구)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이용사무(이용목적) : 퇴소자립지원금 수급자격 검증을 위한 주소지 및 입금계좌 확인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입금계좌확인정보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요청 시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보호시설 관계자로부터 안내 를 받았습니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 향후 자립지원을 위한 사후관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환수 등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하며 퇴소자립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유)보호시설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뒤쪽)

안내사항		
처리기한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첨부서류	1. 자립 계획서 2. 보호시설 입·퇴소 확인서 3.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4. 국민연금공단 상담 서비스 제공 확인서 5. 보호시설 보호 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동의 사항		동의여부 (동의할 경우 √ 체크)
1. (중복수급 불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은 생애 1회만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 정착금(아동복지법) 등 타 법령에 따른 자립지원		[]
2.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퇴소자립지원금의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공된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소자립지원금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소자립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4. 퇴소자립지원금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본 지원금 신청을 추천한 퇴소 당시 보호시설에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추후 사례관리 등 퇴소자립지원금 수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퇴소자립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5. 퇴소자립지원금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자립지원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6. 퇴소자립지원금 지급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자·추천시설] [처리기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신 청 · 추 천 (신청자 및 해당 지원금 신청을 추천한 보호시설) 확 인 (신청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 신청결과 통지 결 정 (신청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		

[illegible]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퇴소 확인서

퇴 소 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용 도			
	제출처			
입·퇴소 시설 및 기간	시 설 명			
	시설 입소 기 간	20 ~ 20 까지 (개월 일)		
	시설 퇴소 사 유			
위와 같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퇴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기관 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명 (기관 인) 소 재 지 전화번호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군·구청장 귀하				

※ '시설명' 란에는 보호시설명 또는 주거지원시설명을 기재

[서식4]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 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 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사후관리 담당자	성명		직위	
사후관리 방법	☐ 전화 ☐ e-mail(사이버) ☐ 기타 _____			
사후관리 기간	<i>(퇴소자립지원금) 1년</i> <i>(퇴소자립지원수당) 수당 수급 기간(~5년)</i>			
개인정보 공개 및 관리	- (퇴소자립지원금) 본 동의서는 시설 퇴소 후 1년간 사후관리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 사후관리 진행 내용은 내부자료로 보관된다. - (퇴소자립지원수당) 본 동의서는 시설 퇴소 후 퇴소자립지원수당 수급 기간(최대 5년) 동안 사후관리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 사후관리 진행 내용은 내부자료로 보관된다. ※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퇴소 후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상담원의 역할과 의무	1. 상담원은 신청인이 신상의 어려움이나 변동이 있음을 알릴 경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2. 상담원은 모든 과정에 대한 사실과 기록을 내담자와 함께 공유해야 하며, 내담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상담원은 신청인이 퇴소 후 자립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상담원은 개인의 정보가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비고	본 동의서는 사후관리와 계획에 대하여 본 기관과 신청인이 상호 협의한 내용이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문제 및 어려움이 있을 때 신청인과 상담원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동의확인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상기와 같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서명 또는 인) 보호시설장 (서명 또는 인)			

[서식 5]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선정심사 기준(예시)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 선정 심사 기준(예시)

신청인 정보	성 명	○ ○ ○
	생 년 월 일	년. 월. 일. (00세)
	입·퇴 소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____개월)
신청 내역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1천만원, 분할 또는 일시금)	

심 사 내 용			
심 사 항 목		결 과	
신청 자격	▪ 시설 입·퇴소 당시 연령 및 입소기간 등	적합	부적합
심사 기준	▪ 자립계획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자립에 대한 의지 포함)	적합	부적합
지급 방법	▪ 지원금 1회 전액 지급의 필요성 여부	필요	불필요
선정 제외 대상	▪ 지원 제외대상 해당 여부 등	해당	미해당
종합의견		심의의견	
		가(可)	부(否)

상기인의 퇴소자립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확인함. 20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서식6]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지원금·수당) 관련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관련 처분 내용		대 상	☐ 퇴소자립지원금 ☐ 퇴소자립지원수당		
		내 용	☐ 선정 ☐ 보장변경/정지/상실 ☐ 환수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 월 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안 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구 비 서 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사후 관리서

작성자명:

작성일:

자원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사후관리 담당자	담당자명		직위	
사후관리 방법	☐ 전화 ☐ e-mail(사이버) ☐ 기타 _____			
사후관리 내용				
기타 특이사항 등				

[참고] 국민연금공단 재무 상담 서비스

신청·상담 방법	①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 대면 상담은 인근 국민연금공단 거점지사로, 비대면 상담은 공단 노후준비운영부로 전화하여 상담 신청 ※ 상담 방식별 연락처 (비대면 상담)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운영부(063-713-5961) (대면 상담) 국민연금공단 40개 거점지사[붙임1] • 온라인 신청 :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csa.nps.or.kr)에 방문하여 상담 신청 ※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 진단·상담 서비스 > 노후준비상담 예약 > 노후준비상담 예약 > 지역·지사, 방문일자 및 희망상담시간 선택하여 상담예약신청 ※ 공단 전문상담사의 상담 일정에 따라 상담 일자·시간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원활한 상담을 위해 희망 상담일로부터 최소 1달 전에 상담 신청 필요 ② 상담 방법 • 비대면 상담 : 공단 전문상담사와 온라인 실시간 상담 방식으로 진행 • 대면 상담 : 공단 거점지사를 방문하여 전문상담사와 대면 상담 방식으로 진행 ※ 상담 신청은 본인 외 보호시설 관계자가 신청은 가능하나, 상담은 퇴소자립지원신청자 본인이 받아야 함(대리상담 불가)						
상담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재무상담</td><td> • 현재 재무상황 분석 및 주택자금 마련, 창업준비자금 마련 등 재무목표 수립 •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저축, 자산형성, 위험관리 등 실천과제 제시 • 실천과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콘텐츠북 등을 통한 추가 정보제공 </td></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height: 20px;">▼</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사후관리 (선택)</td><td> • 필요시 2차 상담을 실시하여 재무목표 및 실천과제 재설정 </td></tr> </table> ※ 재무상담은 공단 노후준비서비스의 일환으로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분야에 대한 진단 추가 제공 ※ 재무상담 완료 후 국민연금공단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 발급(분실 등 확인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문의)	재무상담	• 현재 재무상황 분석 및 주택자금 마련, 창업준비자금 마련 등 재무목표 수립 •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저축, 자산형성, 위험관리 등 실천과제 제시 • 실천과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콘텐츠북 등을 통한 추가 정보제공	▼		사후관리 (선택)	• 필요시 2차 상담을 실시하여 재무목표 및 실천과제 재설정
재무상담	• 현재 재무상황 분석 및 주택자금 마련, 창업준비자금 마련 등 재무목표 수립 •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저축, 자산형성, 위험관리 등 실천과제 제시 • 실천과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콘텐츠북 등을 통한 추가 정보제공						
▼							
사후관리 (선택)	• 필요시 2차 상담을 실시하여 재무목표 및 실천과제 재설정						

국민연금공단 40개 거점지사 현황(대면 상담)

광역시도	지사명	연락처	관할 구역
서울특별시	서울북부지역본부	02-2176-9935	종로, 중구, 용산, 은평, 고양, 덕양
	동대문중앙지사	02-920-0536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노원지사	02-2112-2808	도봉, 노원, 의정부, 포천, 철원
	고양일산지사	031-920-5460	고양, 일산, 파주, 김포, 강화
	서울남부지역본부	02-3416-6119	강남, 역삼, 서초
	송파지사	02-3433-5875	송파, 강동, 하남
	관악지사	02-6934-2096	관악, 동작
	구로금천지사	02-2085-1515	구로, 금천, 영등포
	강서지사	02-2086-7160	강서, 양천
인천광역시	남동연수지사	032-451-0706	남동, 연수, 남인천, 서인천
경기도	경인지역본부	031-229-4120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처인기흥지사	031-288-1307	처인, 기흥, 경기 광주, 이천, 여주
	안양과천지사	031-420-2099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안산, 시흥
	분당지사	031-778-0201	분당, 수정, 중원, 수지, 북수원
	부천지사	032-610-2367	부천, 부평, 계양, 광명
	남양주지사	031-523-6373	남양주, 구리, 양평, 성동, 광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지사	033-259-7774	춘천, 홍천, 강릉, 삼척, 원주
	강릉지사	033-640-9305	강릉, 삼척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지역본부	044-715-1860	세종, 서청주, 공주, 부여
대전광역시	서대전지사	042-480-4907	서대전, 동대전
	북대전지사	042-670-1065	북대전, 옥천

광역시도	지사명	연락처	관할 구역
충청북도	동청주지사	043-251-5136	동청주, 충주
충청남도	천안지사	041-550-8996	천안, 아산
	예산홍성지사	041-630-8172	예산, 홍성, 서산, 태안, 보령
광주광역시	광주지역본부	062-958-2028	광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완주지사	063-270-5369	전주, 완주, 진안, 남원, 순창
	익산군산지사	063-850-0392	익산, 군산, 정읍
전라남도	목포지사	061-240-3371	목포, 나주, 해남
	순천지사	061-729-3045	순천, 여수
대구광역시	대구지역본부	053-589-4546	서대구, 달성, 고령
	대구수성지사	053-750-9150	수성, 동대구, 경산, 청도
경상북도	구미지사	054-450-8571	구미, 안동, 영주, 봉화, 문경, 김천, 성주
	포항지사	054-280-0811	포항, 경주, 영천
부산광역시	부산지역본부	051-797-7223	중부산, 서부산, 북부산, 사상, 동래, 금정
	동부산지사	051-610-6327	동부산, 남부산
울산광역시	남울산지사	052-226-2190	울산
경상남도	창원지사	055-278-9093	창원, 마산
	김해밀양지사	055-320-8410	김해, 밀양, 양산
	진주지사	055-760-0616	진주, 통영, 사천, 남해, 거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사	064-720-4145	제주, 서귀포

II-3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수당 운영 지침

1 사업 개요

가. 목적

-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퇴소자립 지원수당’을 지원, 시설 퇴소 이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나. 법적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다. 대상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다음의 입·퇴소 당시 연령 및 입소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25년 보호시설 퇴소자부터 적용·지원됨
- (연령 요건) 성폭력 피해자로 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 (입소기간 요건) 퇴소일 기준, 과거 보호시설 입소 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 지원 제외 : 1. 성폭력방지법 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시설 퇴소 조치된 경우
 - 2. 수당 신청 시 타 법령 등에 따라 자립지원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등) 3. 시설 퇴소 후 원가정(위탁가정 포함)으로 복귀하는 경우

라. 지급 금액 및 방식

-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원칙
- 국비 및 지방비 매칭으로 국비의 경우 서울 50%, 기타 지방 70%

마. 사업 진행 절차

신청(퇴소자) → 추천(보호시설) → 접수 및 심의(관할 시·군·구, 선정심사위) → 결정·통보(관할 시·군·구)
 → 지급(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 수급자 관리(관할 시·군·구 및 보호시설)
 * 관할 시·군·구 및 시·도 :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시·도

단계	내용
입소자 대상 사전 안내 (보호시설)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 제도 안내 및 자립을 위한 사전 준비 지원
신청 및 추천 (신청자· 보호시설)	(신청자) 수당 신청서 등 작성 및 추천 요청 (시설)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또는 보호 시설 관할 시·군·구에 추천
접수 및 결정 (관할 시·군·구)	(접수)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시설 관할 지자체에서 추천서류를 접수 받은 경우,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이송 처리 (심의) 지원 여부 결정을 위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시·군·구 內 위원회 자체 설치) (결정)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결정
통지 (관할 시·군·구)	(통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 및 보호시설에 결정사항을 통지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수당 지급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 신청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 예산 배정 및 행정 여건 등을 고려,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운영 (지급)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수급자 관리 (관할 시·군·구 및 보호시설)	(지자체) 수급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자격변동 관리)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등을 통해 수급자 자격 변동 사항을 확인·관리 (보호시설) 수급자 수당 신청 당시 (퇴소)보호시설 - (사례관리) 자립생활 지도, 기타 정보 제공 등 자립지원 - (기타) 수급자격 관련 변동 사항을 확인한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고, 수급자에게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

2 단계별 업무 처리 지침

□ 신청 및 접수

가. 지급 대상

1)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2) 신청 자격 요건 ※ '25년 보호시설 퇴소자부터 적용·지원됨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다음의 입·퇴소 당시 연령 및 입소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연령 요건) 성폭력 피해자로 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 (입소기간 요건) 퇴소일 기준, 과거 보호시설 입소 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퇴소자립지원수당은 1인당 1회 지원(결정)되고, 취업 또는 대학 입학 등으로 인해 조기 퇴소하는 경우 18세 이상인 자도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지원금 신청 시 관련 증빙 제출 필요

* 성폭력방지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방지법 상의 보호시설 간 이동 및 일반·장애인·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일반·장애인·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포함하여 연속해서 보호 받은 것으로 간주

*** 일반·장애인·특별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퇴소 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경우, 퇴소자립지원금은 주거지원시설 퇴소 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기한을 유예함. 이때 퇴소자립 지원금 신청은 주거지원시설 연계 전 퇴소한 보호시설을 통하여 신청하고 해당 보호시설에서 사후관리하여야 함.

▶ 보호시설은 퇴소자립지원금 대상자가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될 예정인 경우, 대상자에게 주거지원 시설 퇴소 전 지원금 신청의사 등을 보호시설에 알려야 함을 미리 고지해야 함

※ 지원 제외

- 성폭력방지법 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시설 퇴소 조치된 경우
-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 등에 따른 자립지원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등)
- 시설 퇴소 후 원가정(위탁가정 포함)으로 복귀하는 경우

○ 신청 기한

- 보호시설 퇴소일(‘월’ 기준)으로부터 2개월 이내
 - * 퇴소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나, 수당 지급은 퇴소일이 속한 ‘월’에 지급되며, 퇴소 직후에는 실제 퇴소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 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 ** 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
예시) 퇴소일이 7월25일인 경우, 퇴소한 달은 7월이므로 9월 말까지 신청
- ※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전 연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연말 퇴소 예정자의 경우, 퇴소한 달에 수당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수당 신청 및 지급결정 통보를 받아야함.(단, 예외적으로 학업·취업 등 타당한 사유로 인해 연말에 긴급히 시설 퇴소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이전 연도 수당 지급 가능)

○ 기타사항

- 기간 산정은 ‘역에 의한 계산(민법 제160조)’ 방식을 따름
- 일반·장애인·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입소한 경우,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것으로 간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비수급자 구분 없이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산정 시, ‘퇴소자립지원수당’은 관련 소득·재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

나.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청

1) 신청 서류 작성(신청자)

- 신청자는 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호시설에 수당 지급을 위한 추천을 요청
 - * 신청 서류 : 신청서, 입·퇴소확인서, 국민연금공단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 자립계획서, 사후 관리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등
- 보호시설은 입·퇴소확인서 발급, 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국민연금공단 상담 서비스 확인서 등 제반 서류 준비 등을 지원

2) 추천(보호시설 → 관할 지자체)

-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내용을 확인 후,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또는 시설 관할 시·군·구에 추천

〈 신청 및 추천 시 제출 서류 〉

1.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청서(서식1)
 2. 자립계획서(서식2)
 3. 보호시설 입·퇴소 확인서(서식3)
 4. 국민연금공단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
 5. 보호시설 보호 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서식4)
 6. 주민등록등본
 7.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8. 그 밖에 담당 공무원이 자격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 국민연금공단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참고)
-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현재 재무상황 분석 및 저축·자산형성 방법 등 재무 상담을 실시하며, 상담 후 확인서가 발급됨(비대면 방식)
- ※ 주의 사항
- 보호시설에서 관할 지자체에 추천 시, 공문 형태로 추천·제출
 -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여부 확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수급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 명의 통장에 한함(적금·청약통장 등 제외)
- *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은 신청서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통장 사본' 제출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입금계좌 확인 가능

다. 신청 접수

- * 신청 접수 및 결정·관리 등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설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접수를 받은 경우 신청과 관련한 제반 서류를 신청자 주소지 시·군·구로 이관

1) 신청자격 등 확인

- 접수서류 및 신청자 인적사항 등 확인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으로 하되, 전산적 보존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

2) 신청 접수 시 안내사항

- (처리기한) 신청(추천) 접수일로부터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 (통지방법) 서면 통지(우편) 원칙,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우편(e-mail), 문자 메시지(SMS)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 (신고의무) 수급 자격과 관련된 정보가 변동 되었을때*에는 30일 이내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부적정하게 수급한 급여는 환수 처리
 - * 수급 자격 관련 정보 변동 예시 :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주소지 변경, 지급계좌 변경, 외국 국적 취득, 수용시설 입소 등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0조

〈 변경 사유 발생 시 신고 방법 〉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에 신고
-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종
 - 관련 증빙서류
 - * 수급계좌 변경 시 퇴소자립지원수당 계좌 변경 신청서(서식7) 제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의무자가 사망 신고가 된 경우 수급권 상실 신고한 것으로 같음

〈 별도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 본인 사망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에 의한 사망신고를 한 경우
- 국적 상실 : 「국적법」 제16조에 의한 국적 상실자의 처리
- 90일 이상 국외체류 : 출입국 시 국내 여권을 사용한 경우
 - ※ 복수 국적자가 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 국외체류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을 안내

- (정보제공)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퇴소한 보호시설 등 사후 관리 담당자에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제공
- (지원금 환수)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사망 시 지급 등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환수 처리
- (수급계좌)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수집된 정보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
 - ※ 지급 결정 후 수급권 상실 뿐 아니라 지급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도 5년간 정보 보유

□ 지급 결정 및 수당 지급

가. 지급 결정 및 통지

1)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시·군·구 내에서 위원회 자체 설치)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시·군·구의 성폭력 업무 담당 공무원, 지역의 성폭력·가정폭력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시설 협의회의 임직원으로 구성함(위원장은 호선)
 -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단, 공무원인 심사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에 한함
 -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선정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개최 여건에 따라 서면 심사 가능
 - 심사위원회는 퇴소자립지원수당 및 퇴소자립지원금과 관련한 지급요건 충족 및 지원 필요성 등 자립지원수당 및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
 - ※ 월 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별 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심사 기준 등
 - 퇴소자립지원금 신청서(서식1), 자립계획서(서식2), 시설 입·퇴소 확인서(서식3), 사후관리 동의서 등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서식5](예시)를 참조하여, 각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2) 지급 결정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에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및 접수된 신청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 후 지급 여부 결정

자격 확인 절차

- 확인주체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 확인사항 : ① 입소 및 사례관리 기간·자격, ② 본인 명의 계좌* 여부, ③ 연락처 등
*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 조치방법 : 제출서류 및 공적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청인 또는 추천 보호시설에 필요 서류 제출 안내·징구

3) 결정사항 통지

- 신청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는 결정 내용을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 관련 통지서」(서식4)로 신청인 및 추천 보호시설에 통지
※ 신청인이 통지서 발송 전 신청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발송 불필요
- 서면 통지(우편)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 메시지(SMS), 전자우편(e-mail)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 (통지사항) 결정 내용, 급여·서비스, 사례관리 및 이의신청 안내 등
- (통지기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나. 지원금 지급

1) 지급 기간

- 신청자의 보호시설 퇴소일이 속하는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 신청자는 보호시설 퇴소일(‘월’ 기준)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퇴소자립지원수당을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하며, 지자체는 퇴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예시) 퇴소일이 7월 25일인 경우, 퇴소한 달은 7월이므로 9월 말까지 신청·접수 시 7월분까지 소급하여 수당 지급
※ 퇴소 후 2개월이 초과된 뒤 신청한 경우, 소급 지급은 불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지급
- 수당 지급은 퇴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가능

2) 지급 방법

- 지급 결정 대상자(신청자) 명의 금융계좌에 직접 개별 입금
※ 신청자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예산 배정 및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지급

다. 환수

1) 환수 주체

- 환수 대상으로 확인된 지급 건을 집행한 시·도 또는 시·군·구

2) 환수 대상

- 수급권이 상실된 자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
- 지급정지 기간 중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환수 절차

- 환수 대상 확인 및 환수 결정 → 환수고지(공문으로 본인에게 우편 발송) → 환수

□ 사례관리

- 환수 대상 확인 시 조치사항
 - 환수 대상이 확인된 경우 변동 발생일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 관리 대장(서식10)에 기록 후 환수 결정 처리
- 환수 여부 결정 기한
 - 본인 신고 또는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
 -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수급자 관리

가. 수급자 관리 개요

1) 관리 주체

- 수급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 * 시·도는 월 1회 이상 관할 시·군·구의 관리 현황을 점검

2) 관리 사항

-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수급자 거주지 변동,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교정시설 입소 등

3) 관리 방법

- 수급자의 신고, 확인조사, 공적자료 연계 등을 통하여 수급자격 변동여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

- 수급자의 거주지 변동 사항을 위하여 매월 수당 지급 전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조회
- 공적자료를 우선 확인하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에게 소명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 실시
-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별도 보관

나. 유형별 관리 방법

1) 지급 정지

- 교정시설 입소(금고 이상의 형)
 - (적용시점) 교정 시설 입소일
 - (지급정지) 입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출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후 관계인(친·인척 등)에게 증빙서류 징구(수용증명서)한 후 지급정지 처리 및 시설 퇴소자에게 통지
 - ※ 필요시 공문서로 입소 교정시설에 수용확인 요청 또는 관할 검찰청·법원에서 발행한 '법원판 결문'을 발급 받아 '신고일 및 형의종류' 확인
- 행방불명 및 실종 등
 - (적용시점) 경찰관서 등에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 (지급정지) 경찰관서 등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경찰관서 등 신고 해제일 또는 변경 신고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 ※ 단,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생사여부 확인 시 지급정지 제외
 - (확인 및 조치) 법원·경찰서 협조를 통해 반기별로 행방불명, 실종·가출 등을 확인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접수한 후 지급정지 처리 및 시설퇴소자 주소지로 통지
 - * 법원 : 실종·부재 청구 접수증, 실종·부재 신고 취소 신고증
경찰서 : 신고 접수증, 가출인 수배부,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등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적용시점) 국외체류기간이 90일이 되는 날
 - (지급정지) 국외체류기간이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 (확인 및 조치)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후 관계인(친·인척 등)에게 증빙서류(여권, 비행기 티켓 등) 징구, 지급정지 처리 및 시설퇴소자 주소지로 통지

※ 국외체류 90일 이상 지급정지 예외 사유 : 인턴, 해외유학, 워킹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단, 공적자료로 증빙 가능한 경우만 인정)

○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 (적용시점) 주민등록상 거주말소 등록 또는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날
- (지급정지)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된 달까지 지급 정지
- (확인 및 조치)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정지 처리하고 수급자 및 사례 관리 보호시설 주소지로 통지

2) 수급권 상실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 (적용시점) 직접 신고일 또는 확인한 날
- (지급기준)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 지급
- (확인 및 조치) ‘국적상실자’, ‘이민출국자’, ‘현지이주자’를 확인한 후 수급권 상실 결정 처리하고 수급자 및 사례 관리 보호시설 주소지로 통지

○ 난민 인정 취소, 난민 인정 결정 철회

- (적용시점) 난민 인정 취소일, 난민 인정 결정 철회일
- (지급기준) 난민 인정 취소·난민 인정 결정이 철회된 달까지 수당 지급
- (확인 및 조치) 법무부 ‘난민인정불처분’의 취소일 또는 철회일을 확인한 후 수급권 상실 결정 처리 및 수급자 및 사례관리 중인 보호시설 주소지로 통지

○ 사망

- (적용시점)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에 의한 사망신고일
- (지급기준)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 지급
- (확인 및 조치) ‘사망의심자’인 경우 실제 사망여부 확인(주민등록 자료, 가족 관계시스템 사망신고 여부 등 공적자료 확인)한 후 수급권 상실결정처리 및 수급자 주소지로 통지

* 사망으로 지급계좌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못한 급여가 있는 경우 환수 조치

다. 수급권 변동사항 통지

1) 통지방법

- 수급권 상실·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권 상실·정지 내용을 명시한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 관련 통지서(서식4)를 작성 후 우편발송(원칙) 하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 우편(e-mail)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2) 통지내용

- 결정 내용, 보장 구분, 급여·서비스 내용, 변경 신고 및 이의신청 안내 등
 - 실종신고 취소, 국적 회복 등 수급권 상실 사유, 교정시설 퇴소 등 수급권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이의 신청 안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처리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

가. 수급자 사례관리

1) 목적

-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수급 중인 퇴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 및 지원

2) 관리 주체 및 기간

- (사례관리) 지원금 신청을 추천한 퇴소 당시 보호시설
- (지도 및 감독) 수급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사례관리 기간)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 기간

3) 관리 내용

- 수급자의 사회 정착 및 자립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지도·지원
 - 주거마련 지원(공공주택 연계 등), 독립생활 지도, 진로 지도, 학업·취업 및 구직 연계, 경제교육 등 정보 제공 및 정부지원사업 안내·연계 등
- * 수급자 사례 관리 시 보호시설 퇴소자 사후관리서(서식9) 양식 활용

수급자격 변동 여부 모니터링 및 조치

-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보호시설은 수급자의 수급자격 관련 정보의 변동 여부를 수시 모니터링하고, 변동 있을 시는 즉시 관할 지자체(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유선 연락하고, 해당 수급자에게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
- * 거주지 변경,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교정시설 입소 등

나. 현황 관리

1) 관리 주체

- 수급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관리 내용

- 수급자의 인적변동사항 등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기록 관리
 -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청, 접수, 결정 및 지급 현황 관리
 - 대상자 추천·접수 및 결정사항, 이관사항, 변경사항 등
 - 수당 지급 현황, 예산 관리 현황 등
-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급자 관리 대장(서식10)

- 〈서식1〉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 〈서식2〉 퇴소자립지원 신청 관련 자립계획서
- 〈서식3〉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퇴소 확인서
- 〈서식4〉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 관련 통지서
- 〈서식5〉 퇴소자립지원금 선정 심사 기준(예시)
- 〈서식6〉 퇴소자립지원 관련 이의 신청서
- 〈서식7〉 퇴소자립지원수당 계좌 변경 신청서
- 〈서식8〉 보호시설 보호 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
- 〈서식9〉 보호시설 퇴소자 사후 관리서
- 〈서식10〉 퇴소자립지원수당 수급자 관리 대장
- 〈참고〉 국민연금공단 재무 상담 서비스
- 〈붙임〉 국민연금공단 거점 지사 현황

[서식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앞쪽)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1. 신청인				
시설 퇴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E-mail			
	주 소		연락처	전화 : 휴대전화 :
	계좌번호	은행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예금주:)	
관련 통지방법 ☐ 서면(우편)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2. 추천 보호시설				
보호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시설장명		담당자명, 연락처		
시설 주소		()		
E-mail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본인은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 (시·도, 시·군·구)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이용사무(이용목적) : 퇴소자립지원수당 수급자격 검증을 위한 주소지 및 입금계좌 확인 (최초 지급 결정 시 및 지급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입금계좌확인정보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 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요청 시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보호시설 관계자로부터 안내 를 받았습니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 향후 수급기간 중 신고의무(수급자격의 상실, 정지, 변경 등) 를 다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의 정지 또는 환수 등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하며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유)보호시설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뒤쪽)

안내사항		
처리기한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첨부서류	1. 자립 계획서 2. 보호시설 입·퇴소 확인서 3.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4. 국민연금공단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 5. 보호시설 보호 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동의 사항		동의여부 (동의할 경우 √ 체크)
1. (중복수급 불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은 생애 1회만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아동복지법) 및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청소년복지지원법) 수령 이력이 있더라도 중복수급으로 간주합니다.		[]
2.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퇴소자립지원수당의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공된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소자립지원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 선정에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병무·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		[]
3. 퇴소자립지원수당을 받으면서 정지사유(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 교정시설 입소,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행방불명·실종)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신청자의 주소지 시·군·구에 알려야 합니다.(유학, 취업 인턴으로 해외 체류하는 기간은 정지사유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신고 필요)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당을 받은 자 또는 수당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5. 퇴소자립지원수당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본 수당 신청을 추천한 퇴소 당시 보호시설에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추후 사례관리 등 퇴소자립지원수당 수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6. 퇴소자립지원수당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자립지원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7.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자·추천시설] [처리기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신청·추천 (신청자 및 해당 수당 신청을 추천한 보호시설) 확인 (신청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 신청결과 통지 결정 (신청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퇴소 확인서

퇴 소 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용 도			
	제출처			
입·퇴소 시설 및 기간	시 설 명			
	시설 입소 기 간	20 ~ 20 까지 (개월 일)		
	시설 퇴소 사 유			
위와 같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퇴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기관 <u>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명</u> (기관 인) 소 재 지 전화번호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군·구청장 귀하				

※ '시설명' 란에는 보호시설명 또는 주거지원시설명을 기재

[] 변경·정지·상실

[] 변경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 유	☐ 거주지 변동 ☐ 기타()		
[] 정 지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 유	☐ 교정시설 입소(금고 이상의 형 선고)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국외 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기타()		
[] 상 실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 유	☐ 사망 ☐ 국적상실 ☐ 국외이주 ☐ 난민법제18조에 의한 난민인정자 중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 기타()		

1.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당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주소지 변경 또는 지급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자립지원 사례관리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 5]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선정심사 기준(예시)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수당 선정 심사 기준(예시)

신 청 인 보	성 명	○ ○ ○
	생 년 월 일	년. 월. 일. (00세)
	입 · 퇴 소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____개월)
신 청 내 역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수당(월50만원, 5년)	

심 사 내 용			
심 사 항 목		결 과	
신청 자격	▪ 시설 입·퇴소 당시 연령 및 입소기간 등	적합	부적합
심사 기준	▪ 자립계획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자립에 대한 의지 포함)	적합	부적합
선정 제외 대상	▪ 지원 제외대상 해당 여부 등	해당	미해당
종합의견		심의의견	
		가(可)	부(否)

상기인의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확인함			
20 . . .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서식6]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지원금·수당) 관련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관련 처분 내용		대 상	[] 퇴소자립지원금 [] 퇴소자립지원수당		
		내 용	[] 선정 [] 보장변경/정지/상실 [] 환수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 월 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안 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처리합니다.				
구 비 서 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서식7]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계좌 변경 신청서

퇴소자립지원수당 계좌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수당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수당 지급 계좌	현 행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변 경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 계좌 변경을 신청하오니, 현재 지급받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위 변경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입금계좌 정보 ※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 계좌 변경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시·도, 시·군·구)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통장사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 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사후관리 담당자	성명		직위	
사후관리 방법	☐ 전화 ☐ e-mail(사이버) ☐ 기타 _____			
사후관리 기간	<i>(퇴소자립지원금) 1년</i> <i>(퇴소자립지원수당) 수당 수급 기간(~5년)</i>			
개인정보 공개 및 관리	- (퇴소자립지원금) 본 동의서는 시설 퇴소 후 1년간 사후관리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 사후관리 진행 내용은 내부자료로 보관된다. - (퇴소자립지원수당) 본 동의서는 시설 퇴소 후 퇴소자립지원수당 수급 기간(최대 5년) 동안 사후관리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 사후관리 진행 내용은 내부자료로 보관된다. ※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퇴소 후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상담원의 역할과 의무	1. 상담원은 신청인이 신상의 어려움이나 변동이 있음을 알릴 경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2. 상담원은 모든 과정에 대한 사실과 기록을 내담자와 함께 공유해야 하며, 내담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상담원은 신청인이 퇴소 후 자립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상담원은 개인의 정보가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비고	본 동의서는 사후관리와 계획에 대하여 본 기관과 신청인이 상호 협의한 내용이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문제 및 어려움이 있을 때 신청인과 상담원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동의확인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상기와 같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보호시설장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사후 관리서

작성자명:

작성일:

지원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사후관리 담당자	담당자명		직위	
사후관리 방법	☐ 전화 ☐ e-mail(사이버) ☐ 기타 _____			
사후관리 내용				
기타 특이사항 등				

[서식10]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급자 관리 대장

퇴소자립지원수당 수급자 관리 대장

① 관리 (발급) 번호	②추천 현황							③결정사항				④이관사항		⑤변경사항		⑥수당지급 현황(일자, 지급관청)					
	수급자				추천 보호시설																
	퇴소 일자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주소지, 연락처	추천 일자	시설명	담당자, 연락처	시군구명	담당자	결정 일자	결정 사항	이관 일자	시군구명	일자	내용	1회차	2회차	3회차	...	60 회차	
	'21.1.5	홍길동	123456-7890123	서울 용산구 가나다로 12	'21.1.10	서울 남자 중장기 쉼터	박샘터	서울 용산구	이웅산	'21.1.20.	적합	'23.11.1	경기도 광명시			'21.2.20	'21.2.20	'21.3.20		'23.12.20.	
				000-0000-0000																	02-3456-7890
	'21.3.4	이순신														신청 지연	신청 지연	'21.5.20		'24.2.20.	
																-	-	인천시	인천시		

(작성요령)

- ① 관리(발급)번호 : 시설입·퇴소확인서(최종시설 발급)의 관리(발급)번호
- ② 추천현황 :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청한 수급자 및 추천 보호시설 현황
- ③ 결정사항 : 추천을 접수한 시군구의 결정사항
- ④ 이관사항 : 지급결정 이후 수급자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옮겼을 경우 수당지급 업무를 이관한 일자와 관할 시군구(필요시 칸추가)
* 이관하는 시군구는 이관 직전까지의 현황을 이관 받는 시군구로 송부
- ⑤ 변경사항 : 수급자격 관련 정보의 변동(지급정지, 계좌변경 등) 일자 및 내용(필요시 칸추가)
- ⑥ 수당지급 현황 : 회차별 수당 지급일자 및 지급 관청

[참고] 국민연금공단 재무 상담 서비스

신청·상담 방법	① 신청 방법 전화 신청 : 대면 상담은 인근 국민연금공단 거점지사로, 비대면 상담은 공단 노후준비운영부로 전화하여 상담 신청 ※ 상담 방식별 연락처 (비대면 상담)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운영부(063-713-5961) (대면 상담) 국민연금공단 40개 거점지사[붙임1] 온라인 신청 :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csa.nps.or.kr)에 방문하여 상담 신청 ※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 진단·상담 서비스 > 노후준비상담 예약 > 노후준비상담 예약 > 지역·지사, 방문일자 및 희망상담시간 선택하여 상담예약신청 ※ 공단 전문상담사의 상담 일정에 따라 상담 일자·시간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원활한 상담을 위해 희망 상담일로부터 최소 1달 전에 상담 신청 필요 ② 상담 방법 비대면 상담 : 공단 전문상담사와 온라인 실시간 상담 방식으로 진행 대면 상담 : 공단 거점지사를 방문하여 전문상담사와 대면 상담 방식으로 진행 ※ 상담 신청은 본인 외 보호시설 관계자가 신청은 가능하나, 상담은 퇴소자립지원신청자 본인이 받아야 함(대리상담 불가)
상담내용	재무상담 - 현재 재무상황 분석 및 주택자금 마련, 창업준비자금 마련 등 재무목표 수립 -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저축, 자산형성, 위험관리 등 실천과제 제시 - 실천과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콘텐츠북 등을 통한 추가 정보제공 ▼ 사후관리 (선택) - 필요시 2차 상담을 실시하여 재무목표 및 실천과제 재설정 ※ 재무상담은 공단 노후준비서비스의 일환으로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분야에 대한 진단 추가 제공 ※ 재무상담 완료 후 국민연금공단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 발급(분실 등 확인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문의)

국민연금공단 40개 거점지사 현황(대면 상담)

광역시도	지사명	연락처	관할 구역
서울특별시	서울북부지역본부	02-2176-9935	종로, 중구, 용산, 은평, 고양, 덕양
	동대문중앙지사	02-920-0536	동대문, 종량, 성북, 강북
	도봉노원지사	02-2112-2808	도봉, 노원, 의정부, 포천, 철원
	고양일산지사	031-920-5460	고양, 일산, 파주, 김포, 강화
	서울남부지역본부	02-3416-6119	강남, 역삼, 서초
	송파지사	02-3433-5875	송파, 강동, 하남
	관악지사	02-6934-2096	관악, 동작
	구로금천지사	02-2085-1515	구로, 금천, 영등포
	강서지사	02-2086-7160	강서, 양천
인천광역시	남동연수지사	032-451-0706	남동, 연수, 남인천, 서인천
경기도	경인지역본부	031-229-4120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처인기흥지사	031-288-1307	처인, 기흥, 경기 광주, 이천, 여주
	안양과천지사	031-420-2099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안산, 시흥
	분당지사	031-778-0201	분당, 수정, 중원, 수지, 복수원
	부천지사	032-610-2367	부천, 부평, 계양, 광명
	남양주지사	031-523-6373	남양주, 구리, 양평, 성동, 광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지사	033-259-7774	춘천, 홍천, 강릉, 삼척, 원주
	강릉지사	033-640-9305	강릉, 삼척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지역본부	044-715-1860	세종, 서청주, 공주, 부여
대전광역시	서대전지사	042-480-4907	서대전, 동대전
	북대전지사	042-670-1065	북대전, 옥천

광역시도	지사명	연락처	관할 구역
충청북도	동청주지사	043-251-5136	동청주, 충주
충청남도	천안지사	041-550-8996	천안, 아산
	예산홍성지사	041-630-8172	예산, 홍성, 서산, 태안, 보령
광주광역시	광주지역본부	062-958-2028	광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완주지사	063-270-5369	전주, 완주, 진안, 남원, 순창
	익산군산지사	063-850-0392	익산, 군산, 정읍
전라남도	목포지사	061-240-3371	목포, 나주, 해남
	순천지사	061-729-3045	순천, 여수
대구광역시	대구지역본부	053-589-4546	서대구, 달성, 고령
	대구수성지사	053-750-9150	수성, 동대구, 경산, 청도
경상북도	구미지사	054-450-8571	구미, 안동, 영주, 봉화, 문경, 김천, 성주
	포항지사	054-280-0811	포항, 경주, 영천
부산광역시	부산지역본부	051-797-7223	중부산, 서부산, 북부산, 사상, 동래, 금정
	동부산지사	051-610-6327	동부산, 남부산
울산광역시	남울산지사	052-226-2190	울산
경상남도	창원지사	055-278-9093	창원, 마산
	김해밀양지사	055-320-8410	김해, 밀양, 양산
	진주지사	055-760-0616	진주, 통영, 사천, 남해, 거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사	064-720-4145	제주, 서귀포

II-4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1 사업 개요

가. 목적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비,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입소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 제공

나. 지원내용 및 대상

구 분	정 의	지원대상	주요 참고사항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일 경우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는지 확인 후 예산교부 신청
증·개축	•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림 •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		▶ 임차시설 제외 ▶ 비영리법인일 경우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는지 확인 후 예산교부 신청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 임차시설 제외 ▶ 비영리법인일 경우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는지 확인 후 예산교부 신청
개·보수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해 시설 건물의 내·외부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임차시설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필요시 예외 인정 * 예외: 방염설비 및 개·보수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시설안전에 위험이 따르는 경우(안전진단서 등 첨부)와 건축물 노후화로 인해 누수 등이 발생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에 보고한 후 개·보수비 지원
임차보증금 지원	보호시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단체 소유 공간을 임대할 경우 임차보증금 지원		▶ 신규시설 설립에 대한 지원은 불가
장비(기자재) 구입	장비 또는 기자재를 확충 또는 교체하는 것	• 모든 보호시설	▶ 가구·비품 등 노후화 된 장비, 사무용품 교체비용 등
공통	▶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 중인 시설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 불가		

다. 주요사항

- 보호시설 확충은 부지확보를 통한 시설 신축방안 이외에 건물 매입,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공동주택 내 보호시설 전환 등 다양한 확충방안 지속 추진
- 보호시설의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하여 개원 운영 중인 보호시설 현황을 사회 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행
- 시설 신축 등 기능보강사업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개별법 준수
- 시설 기능보강비는 상반기 중에 국고보조 및 착공이 이루어짐으로써 연내 개원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추진하되, 공사내역서, 설계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
- 시설 신축 또는 증·개축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기획 및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련 전문가의 건축 설계 자문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 기능보강비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지방비 추가지원 할 수 있음
- 지자체에서는 시설별 자체 실정에 맞게 임시주거(3일 이내)를 위한 1인실 확보에 노력

2 | 지원 대상 및 내역 세부기준

2-1. 보호시설 확충

가. 신축

(1)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비영리법인에 한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 운영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함

※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거나 부지를 미 확보하였더라도 부지 소유주에 부지사용승낙서 등을 구비한 개인도 가능하나 대상자 확정 후 예산교부 신청 시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와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이 설립되어야 함

- 보호시설 미설치 지역 등에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함
 - ※ 특히 장애인 보호시설은 기피시설임을 감안하여 장애인 보호시설을 적극 설치
- 최근 3년 이내에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지원하지 않음
 - ※ 특별한 사정 : 갑작스런 성폭력피해자의 수요 증가, 기존 장애인 보호시설 폐·휴지 등
- 기존 보호시설을 이전하거나 대체하여 신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나, 정원을 증원시키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2) 지원규모

- 개소당 전용면적 : 264㎡까지 지원(입소정원 20명까지)
 - ※ 토지구입비 및 설계용역비는 지원하지 않음

(3) 고려사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입지조건 등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함
- 해당지역의 건축제한 여부, 부지의 재산권 행사 하자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검토하여 시설 신축에 따른 제반문제를 사전에 제거
 - ※ 특히 법인기본재산이 근저당 설정 등 부채가 있을 경우 신축비를 지원할 수 없음
- 시설의 입지조건, 용도별 법정규모, 입소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입소자의 보호에 적합하게 설계·건축되어야 하며, 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
 - ※ 보호시설의 설치지역이 입소자 또는 보호자 등이 통원이 어려운 지역이나 위험시설 인접지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고지원에서 제외

보호시설 확충 등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 기존 보호시설의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 시·도 및 시·군·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신축, 증·개축 시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정비 조성 사업에 보호시설 또는 보호시설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나. 리모델링

(1) 지원대상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비영리법인에 한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축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기존건물을 매입·리모델링하여 보호시설을 신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기능보강비 지원 가능(예 : 주민센터 등 리모델링)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취약계층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태로 공급하는 주택을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보호시설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리모델링비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 기존 건물 매입(건물 감정평가액) 및 리모델링비 지원

(3) 지원규모

- 시설 유형별 지원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공사견적이 기준으로 지원
※ 설계용역비는 지원하지 않음

(4) 고려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신축 이외에도 기존 건물 매입·리모델링하여 보호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
-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존 보호시설을 위탁형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기존시설 운영자 등과 적극 협의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함
- 위탁형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의 보호시설을 우선함
- 기존 공동주택 내 보호시설의 경우 위탁형으로 전환 후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하지 않고 전환하기 전 그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개원 예정인 보호시설 기자재 또는 장비 구입비 지원 기준

- (1) 지원대상: 당해 연도 중에 준공 가능하거나, 개원 예정인 보호시설
 - ※ 리모델링 또는 건물 매입 경우 사업비와 동시 신청 가능, 신축의 경우 착공한 경우에 지원 가능
- (2) 고려사항
 -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 등을 구매하며, 차량구입비 및 시설 공사비로 사용 불가
 - ※ 다만, 차량구입비의 경우 성평등가족부가 별도 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원
 - 민간 건물 매입 또는 기존공동주택 보호시설의 경우 당초 사용하던 기자재 재사용 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되, 추가적으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설치 사업자 선정 절차

- 국고보조사업자 조사계획 시달(성평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 조사 실시(시·군·구)
 - 사업자 신청 공고(2주 이상)
 - * 사업자 공고 시 지자체 홈페이지, 보호시설협의회 등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고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 신청 접수(세부 사업계획서 3부 제출)
 - 보호시설 설치·운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드시 공개경쟁을 통하여 사업자 선정
 - * 기존 보호시설 운영 및 법인시설의 중복 지원 지양
 - * 시·군·구의 사업대상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부지 변경은 불가
 - * 선정 당시와 상황이 변경되는 것으로 상대비교에 의한 공개경쟁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대상자 선정 시 부지 등 사업추진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민원 소지 방지)
- 조사결과 보고(시·군·구 → 시·도 → 성평등가족부)
 - 사업계획서, 현장확인 결과, 검토 의견 등 첨부
- 현장점검 실시 및 최종사업자 선정(성평등가족부)
- 확정내시 → 국고보조금 교부
 - ※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별지로 첨부한다.
 - 성폭력피해자 현황 및 성폭력관련 상담실적 등
 - 기존 보호시설 및 관련 유사시설 설치현황
 - 운영계획(부지확보, 정원, 종사자 수 및 채용계획, 개원 예정일 등)
 - 건축설계도, 공사일정 및 비용 산출 내역
 - 시설장비 및 기자재 등 제반 설비 구입계획 및 산출내역
 - 총 재정소요 산출내역 및 조달계획
 - 법인재산 출연 계획(증빙서류 포함)
 - 국고 보조금 조건의 이행 여부
 - 기타 국고보조금교부에 필요한 서류

2-2. 보호시설 환경개선

가. 증·개축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기존 보호시설 중 증·개축이 필요한 시설. 단 임차시설은 제외
- 영세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
- 동일한 조건일 경우 장애인이 입소하여 있는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

(2) 지원내용

- 보호환경 개선 등 입소자에게 편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의 증·개축비를 지원 (창고 증축 등은 제외)

(3) 지원규모

- 개소당 99m²까지 지원하며 증·개축 면적에 따라 지원
- ※ 토지구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4) 고려사항

- 증축의 경우 기존건물의 안전도 등을 면밀히 검토
- 개축의 경우 부분 개축을 지양하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여 전체적인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
- 지원대상시설 설치 연도, 지원횟수, 시설의 자체 환경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증·개축 대상시설 선정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정할 수 있음
-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증축비 지원은 지양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시설에 다시 지원하지 않음
- ※ 특별한 사정 :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 이하 시설 등

- 시설 증·개축 시 입소자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법령, 소방법령 등 각종규정 준수 여부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기준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
- 증·개축 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을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시설은 비공개)

나. 개·보수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기존 보호시설 중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단, 임차시설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필요시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 예외 : 방염설비 및 개보수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시설안전에 위험이 따르는 경우(안전진단서 등 첨부)와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이 발생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에 보고한 후 개·보수비 신청
- 특히 입소자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의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지원
-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우선 지원
-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이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 가능
- 동일한 조건일 경우 위탁형으로 전환한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 가능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시설에 다시 지원하지 않음
 - ※ 특별한 사정 :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 이하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필요시 등
 - ※ 최근 3년 이내 : 2023년 이후(포함) 지원시설
- 개·보수 대상시설 선정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정할 수 있음
- 개보수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시설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 (시설은 비공개)

(2) 지원규모

- 시설의 규모, 개·보수의 필요 정도에 따라 실제 개·보수 금액을 지원하되 관계 공무원 확인 후 결정

다. 임차보증금 지원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기존 보호시설 중 노후화 및 안전성의 문제가 있고, 개·보수보다 이전이 효율적일 경우 지원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시설에는 지원하지 않음
 - ※ 특별한 사정 :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 이하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필요 등
 - ※ 최근 3년 이내 : 2023년 이후(포함) 지원시설

(2) 지원 조건

- 신규시설 설립에 대한 임차료 지원은 불가하며, 지원 가능한 임차형태는 다음 경우에 한정함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취약계층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태로 공급하는 주택
 - ② 공공기관·단체 소유의 유희공간 임대(이 경우 임차보증금이 ①의 유형과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더 낮아야 함)

(3) 고려사항

- 지원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완료하고, 관련 사항(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을 성평등가족부로 보고하여야 함
 - ※ 다만, 임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 없이 계약할 수 있음
- 시설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임차료 지원액 중 국비로 지원된 금액은 국고로 반납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지원은 총 1회에 한함

라. 장비(기자재)비 지원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기존 보호시설 중 장비(기자재)비가 필요한 시설

- 장비(기자재) 노후화 및 입소자 증가의 경우 우선 지원 가능
- 동일한 조건일 경우 장애인이 입소하여 있는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 가능

(2) 장비(기자재) 내용

- 내용 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단가 10만 원 이상인 물품
 - ※ 안전용품(소화기, 가스누출탐지기, 화재탐지기 등), 급식용품(조리기구, 자외선 살균기 등), 사무용품(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등), 실내공기질 개선물품(공기청정기 등), 기타(손씻기 시설 등)

(3) 고려사항

- 입소자의 안전과 급식개선을 위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 기존 보호시설에 지원한 장비비로 구입한 장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
- 기능보강비로 구입한 비품은 반드시 비품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번호 스티커 부착을 통해 식별·관리
 - * 관리번호, 품명, 규격, 취득단가, 취득일자, 내용연수 등을 포함(「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내용연수 참조)

3 사업수행

사업 흐름도

사업계획서 제출(전년도 4월) → 현지점검(전년도 8~9월) → 가내시 통보(전년도 10월)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전년도 12월) → 국고보조금 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집행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서식 11-1]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비를 일괄 작성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신청
 - ※ 성평등가족부는 확정 내시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지방비 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단기간에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시·도로 변경 내시할 수 있음
- 보조사업계획(사업변경 포함)에 대한 사업자의 수행능력과 타당성·효율성 등을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시·도지사의 의견서[서식 11-2]를 반드시 첨부

- 시설 신축 및 증·개축, 개·보수(리모델링 포함) 등은 사전에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무허가건물 여부와 건축가능 여부 및 건축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 시설의 건축규모는 입소자 수(정원) 및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신청
- 시설 신축 및 증·개축, 개·보수(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서[서식 11-4]에는 시설 설치장소(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 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자부담분),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도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도 지사가 검토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의견서'를 첨부 하여야 함
 - 다만, 시설의 건축허가기관이 다르거나 건축공사 실시설계(본 설계)가 완료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설계검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설계도서는 배치도와 평면도만 제출)
 - ※ 경미한 개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설계검토의견서 생략 가능
- 시설 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을 위한 부지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시설기자재 보강을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기자재명, 소요량, 사업비, 사용용도 및 기자재 보유현황 등을 포함시켜야 함

나. 교부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

사 업 별	제 출 서 류
공통서류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서식 11-1] □ 시·도지사의 의견서 : [서식 11-2] □ 기능보강사업 신청내역서(총괄표) : [서식 11-3]
시설신축· 리모델링, 매입 및 증·개축, 임차보증금 지원	□ 보호시설 신축·리모델링·증개축 계획서 ① 시설 신축 - 보호시설 신축 계획서[서식 11-4], 사업자 조사표 [서식 11-5] - 기술직공무원 또는 건축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의 설계검토 의견서 1부(시·도 보관) [서식 11-7] ② 기존건물 매입 - 보호시설 매입계획서[서식 11-4], 사업자 조사표 [서식 11-5] -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사본 각 1부 (건물, 토지분 매입가격 구분표시 된 것) - 리모델링 필요시 기술직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공사견적서 1부(시·도 보관) ③ 공동주택 및 기존건물 리모델링 - 보호시설 리모델링 계획서[서식 11-4], 사업자 조사표 [서식 11-5] - 기술직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공사견적서 1부(시·도 보관) ④ 증·개축 - 증개축 사업 계획서 [서식 11-6] - 기술직공무원 또는 건축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의 설계검토 의견서 1부(시·도 보관) [서식 11-7] ※ 설계도 등 기타 서류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검토 후 각 1부씩 보관 ⑤ 임차보증금 지원 - 보호시설 임차계획서[서식 11-4], 사업자 조사표 [서식 11-5] ※ 설계도 등 기타 서류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검토 후 각 1부씩 보관
시설 개·보수비	○ 보호시설 개·보수 계획서 [서식 11-8]
장비비 및 기자재비 지원	○ 보호시설 장비 및 기자재 구입계획서 [서식 11-9]

다. 국고보조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사업변경)

-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 할 경우, 아래의 사항은 사전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서식 11-10]
 - 사업추진방법(예 : 신축 → 민간매입), 시설명, 소재지, 비용분담내용 등
 - 낙찰차액 활용사업
 - ※ 입찰결과 등에 따라 차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이 원칙이나, 관급자재비 변동·법정경비·안전 시설물 설치·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 등 시·도지사가 해당 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음
-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도 지사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아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동일 시·군·구 내에서의 사업부지 변경
 - 공기연장,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변경, 사업량의 변경

라. 기타

- 신·증축비를 지원받아 시설을 운영 중인 법인은 법인해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으로 설치된 건축물 등을 10년 이상 보조금의 목적사업 수행만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 선금 지급 등 계약에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사업 수행실적 보고 및 점검

- 국고 보조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비 집행 및 사업추진현황을 매분기별 다음달 10일까지 성평등가족부에 제출
- 성평등가족부는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여 단기간 착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정산

- 시설의 신축 사업후보자 및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지원대상 시설 선정 시 사업 계획서에 자부담 금액이 포함된 경우 사업완료 후 정산 시에는 당초 사업계획서의 비용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 처리

예시

- ① 보호시설 사업후보자 선정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비용 분담 내역
 - 총사업비(533,200천원) : 국비(216,600천원), 지방비(216,600천원), 자부담(100,000천원)
 - 분담비율 : 국비(40.7%), 지방비(40.7%), 자부담(18.6%)
- ② 사업 완료 후 정산처리
 - 총사업비 : 490,000천원
 - 총사업비 감소로 분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정산
 - 국 비 : $490,000\text{천원} \times 40.7\% = 199,430\text{천원}$
 - 지방비 : $490,000\text{천원} \times 40.7\% = 199,430\text{천원}$
 - 자부담 : $490,000\text{천원} \times 18.6\% = 91,140\text{천원}$
 - 국비집행반납처리 : 17,170천원

○ 사업비 반납 및 이월

- 사업수행이 어려울 때에는 사유서 및 사업자의 포기서를 첨부하여 반납조치 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이월은 불가하나, 아래의 사유로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 동 공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는 성평등가족부의 승인을 얻어 이월할 수 있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5 | 보호시설의 폐지 시 설치비 등 반납

○ 대 상

- 법인(민간 포함)에서 설치비·임차보증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던 보호시설 등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폐지하는 경우 시설설치비·임차보증금을 반납
- 기자재비 및 장비비 등을 지원받아 구입한 물품은 시설의 폐지 시 시·군·구에 반납하여 타 시설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반납기준

- 시설공사비(칸막이, 보일러 등)는 내용연수 10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씩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
- 장비(기자재)가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내용연수는 2년을 기준으로 함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시행령 제4조 관련)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 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 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 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 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 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 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1)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로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삭제<2007.2.12>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16) 생략	-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1 개요 및 현황

-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원 양성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 ※ 신고 시설 현황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주요정책-정책자료실-인권보호) 참고

2 교육훈련시설 설치 개요

가. 설치주체 및 설치방법(법 제19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직접 설치
 - ※ 단, 지방자치단체 외의 각급 정부기관에서 설치 시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과 사전 협의할 것
-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 성평등가족부 또는 시·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위탁하거나 이를 교육훈련시설로 지정 가능

나. 설치 기준(법 제19조의2,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3의2)

- 교육훈련시설에는 강의실, 실습실, 교수연수실, 사무실 등을 갖추야 함
- 강의실은 교육인원 1인당 연면적 1㎡ 이상의 공간을 갖추야 함
 - ※ 자체 강의실을 확보하여야 함. 다만 교육공간이 부족할 경우 교육에 적합한 다른 장소 활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교육인원 1인당 면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사무실은 교수연구 및 사무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야 함
- 기타 화장실·급수시설·소방시설·방음장치·채광·환기·냉난방·조명시설 및 교재·교구 등을 갖추야 함

가. 설치 신고(시행규칙 제8조의3)

- 신고 자격 :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 신고 및 수리 절차
 - 설치신고서류 제출 [서식 11]
 - : 법인 등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사항 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처리기한 :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
 - 확인사항 : 신고자격(비영리법인 여부 등), 시설기준 준수, 시설 종사자 확보 여부 및 강사의 자격, 건축법령, 소방법령 등 관계법령 규정 준수 여부 등
 - ※ '건축물 용도기준'과 관련하여 노유자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외에 '업무시설' 등에도 설치가능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1항에 의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등본의 내용을 확인
 - ※ 법정 구비서류 외 설치신고 검토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음
 - 신고증 발급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법인 등
 - ※ 신고증 서식은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지 제7호의5서식] 참조

나. 변경 신고(시행규칙 제8조의3)

- 사유(변경 신고 대상)
 - 교육훈련시설의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 교육훈련시설의 장 또는 교육정원의 변경
- 신고 기한 :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 및 수리 절차
 - 변경신고서류 제출[서식 12]
 - : 법인 등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변경사항 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처리기한 :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 검토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1항에 의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등본의 내용을 확인
-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교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법인 등

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시행규칙 제10조)

- 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휴지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함)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신고 및 수리 절차 [서식 3]
 -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서류 제출 : 법인 등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폐지·휴지 신고 시 아래의 사항 확인 후 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는지 확인
 - 수강 중 환불을 요청한 교육훈련자에 대한 환불조치 여부, 교육훈련과정 수료 및 교육훈련실적 보고 완료 여부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
 - ※ 교육훈련자에 대한 불이익 발생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교육기간 중에는 휴·폐지신고 수리 불가

(참고) 시정명령

-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15.2.3. 시행)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교육훈련시설에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음

[참고자료]

구 분	설치·변경·폐지·휴지 및 재개 신고 신청서류
설치신고	- 설치신고서 : 시행규칙 제8조의3 [별지 제7호의4서식], 지침 [서식 11] 참조 - 첨부 서류 •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강사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에는 연간 교육계획 및 교육강사 등 확보 계획 등에 대한 관련사항을 포함
변경신고	- 변경신고서 : 시행규칙 제8조의3 [별지 제7호의6서식], 지침 [서식 12] 참조 - 첨부 서류 •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장의 변경의결서 •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서 :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8호서식], 지침 [서식 3] 참조 - 첨부 서류(폐지 또는 휴지 시에만 해당) •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 •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제외) • 교육훈련시설 신고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음 •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가.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 위탁(법 제19조의2)

- 위탁 가능 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 법률구조법인
 - 사회복지법인,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중 상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위탁방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시·도별 별도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위탁 규정 준용

나. 교육훈련시설 지정(법 제19조의2)

- 지정권자 :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지정받을 수 있는 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 법률구조법인
 - 사회복지법인,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중 상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 관할 지자체에 신고된 교육훈련시설에 한함
- 지정 신청서류
 -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 제출서류
 -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 대장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강사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 지정신청서를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처리
 - 처리 시 유의사항: 지정신청기관의 지리적 여건, 연간 상담원 양성교육인원 및 관내 수요, 교육훈련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교육훈련시설로 지정
 - 시·도별 지정 수: 관내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의 개소 수 및 수요를 감안하여 1~3개소(서울·경기는 5~7개소) 범위 내에서 지정 가능
 - 지정서 발급: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5 | 교육훈련시설의 운영

가. 교육 강사의 자격기준(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3의2)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7호(제7호의 경우 동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예의 입학학력으로 인정되는 학교만 해당)에 따른 학교(또는 「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포함)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성폭력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피해자 상담 외 업무만 담당한 종사자가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근무경력 확인 필요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밖에 유사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 예외적으로 여성인권, 성(性)인권 등과 관련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 과목에 한해 강의할 수 있음
 - ※ 교육훈련시설의 종사자 : 교육훈련시설의 시설장이나 종사자에 대한 별도 자격기준은 없음. 다만, 운영주체는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 및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함

나.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3의2)

○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

교육 분야	교육 과목	이수 시간
소양분야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성폭력의 개념과 특징의 이해 여성인권과 폭력 행정실무(문서작성 및 회계 등)	15
전문분야 I	성폭력의 이해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법률구조실무(수사절차의 이해 포함) 법적 절차 및 대응방식 피해자 등 의료지원 실무	30
전문분야 II	상담심리개론 상담원리와 기법 상담의 기법과 프로그램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대상별 상담과정	35
전문분야 III	상담 사례 연구 및 실무실습 역할연습 등	20
총계		100

○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 교육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여야 하되, 1일 강의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20퍼센트 범위에서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조정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 이수시간은 최소 100시간 이상이어야 함
-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분야 III의 경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서 실무실습을 10시간 이상 포함해야 함
 - ※ 온라인 교육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교육시간의 10% 범위 내에서 온라인(원격) 실시간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음

- 교육과목 강좌당 수강생은 70명 이하로 하여야 함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 상한의 범위(1인당 40만원 이내)안에서 교육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음
 - 강사 1인이 4과목 이상 강의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매 교육기간별 강사의 인적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상세 보고사항은 ‘다. 교육훈련시설 운영 일반’ 참조
 - 타 법령에 의해 교육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
 - 「아동복지법」 제 2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사항(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에 의거하여,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한 사항(신고방법,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등)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에 의거하여, 노인 학대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한 사항(신고요령, 피해노인 보호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함
 -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폭력 상담원 등 다른 교육훈련과정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없음
 - ※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원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150시간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별도로 각각 100시간을 운영하여야 함
 - 교육훈련시설의 경우 성폭력 상담원 교육과정과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조건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는 등의 불합리한 운영을 하지 않도록 함
- 중복수강 과목의 인정
- 가정폭력 또는 성매매피해 상담원 양성교육 과정 중에서 성폭력 상담원 양성 교육과 중복되는 3개 과목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어느 한 과정에서 수강하고 수료한 적이 있으면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 과정 일부 수강 면제

〈중복 교과목〉

- 소양분야 2과목 :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여성인권과 폭력
- 전문분야 1과목 :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 중복이수자는 이전에 교육을 받았던 교육훈련시설로부터 교과목 이수확인서[서식 18]를 발급받아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 제출

※ 수강 면제 신청을 받은 기관은 확인서를 제출한 수강생이 실제로 그 과목에 출석을 했는지 여부와 중복 수업을 인정할 교과목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수강 면제 인정 가능(이수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더 적은 수의 시간만 인정 가능)

다. 교육훈련시설 운영 일반

○ 수강생 모집

- 수강생 : 별도 기준 없음

- 수강생에게 교육과정 수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안내

- 모집방법 : 광고물,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모집 가능

- ※ 교육훈련시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강생 모집을 위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강료 환불 등을 하여야 함

○ 수강 등록

- 교육훈련시설은 교육희망자가 수강등록 하기 전 교육의 목적·과정 및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잘못 등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교육수강신청서[서식 13]는 교육실시 전까지 접수 완료하여야 함

- ※ 다만, 교육과정 개설이 많지 않아 교육 이수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교육 개시 이후 전체 교육시간 10% 경과 이전까지 접수하면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수강생 명부[서식 14]를 작성하여야 함

○ 수료 인정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교육과목 총 이수 시간(100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7서식, [서식 15])을 발급하도록 함
- 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 처리함

○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보고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매 교육과정별 운영계획서[서식 16], 수업시간표, 수강료 책정금액, 강사 인적사항, 수강생명부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교육훈련시설은 교육과정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실적보고서[서식 17], 수료자명단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수강료 수납 및 환불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 상한 범위(1인당 40만원 이내, 교재비 포함)에서 수납할 수 있음
- 수강료를 수납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가급적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교육훈련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이 중단되어 교육 전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교육생들이 수료를 못한 경우 교육훈련시설은 전액환불 조치하여야 함
- 교육훈련시설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에 따라 교육생이 교육 개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하고, 교육개시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이후 : 미환급

※ 다만, 교육이 시작된 이후에는 질병, 주거지의 이전 등 교육생이 부득이한 귀책사유로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 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여야 함

라. 벌칙 및 과태료(법 제36조 및 제38조)

○ 벌칙 : 아래 해당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교육훈련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경우
- 시정명령(설치·지정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미달되거나, 강사의 수가 부족한 경우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 교육훈련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한 경우

- 과태료 : 아래 해당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6 행정사항

- 교육훈련시설은 교육훈련실적에 관한 기록물 및 재무·회계 기록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교육훈련시설은 교육훈련실적, 재무·회계 서류 등을 폐지신고서에 첨부하여 당해 시·군·구청장에게 폐지 신고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 시·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교육훈련 실적 등을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IV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사 업	내 용
의료 지원	○ 성폭력 피해의 치료, 임신여부의 검사,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성병 감염 여부 검사,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질환 치료,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치료 보호에 소요된 비용 지원 ○ 병원 간병서비스 이용에 따른 간병비 지원 ○ 사업 기관: 전담의료기관,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돌봄 비용 지원	○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 사업수행기관: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지방자치단체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성폭력 피해자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사업기관: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법률 지원	○ 성폭력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 형사사건의 대리 및 변호를 무료로 제공 ○ 사업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연계)
주거지원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참고
보호 지원	○ 일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친족성폭력피해미성년자 등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치료·보호·학업 및 자립 등 지원 ○ 사업기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연계)

IV-1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1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1 사업 개요

- 목적 :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
- 근거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지원 대상 : 성폭력피해자(스토킹, 교제폭력 포함), 성폭력피해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및 자매, 배우자 및 보호자
 - ※ 단, 피해자 가족의 의료지원은 성폭력피해와 관련된 증상의 강도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지원
 - ※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국내에서 입은 피해에 한함)의 의료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지원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 ※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긴급의료지원 이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로 연계하여 피해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연계 조치

2 의료지원의 범위

- 성폭력피해자의 의료상담 및 지도
- 성폭력피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 등 포함)
- 성매개감염 질병검사 및 예방치료(피부과, 비뇨기과 등)
-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평가와 관리
-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또는 출산
 - ※ 낙태로 인한 부검 및 화장 비용 지원 가능
- 진단서 발급, 기타 의료적 평가(신체사정) 및 법적증거 확보(응급키트 등)
 - ※ 진단서는 일반진단서를 원칙(수사기관·재판 등 특별한 경우에는 상해진단서 발급 가능)으로 하며, 그 용도는 학교·직장·수사·법원 제출용 등에 한정하고 개인 보험과 관련된 진단서 발급 비용은 지원 불가

-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 지원(비급여 심리치료 제외)하되,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
 - 100만원(1회 당) 이상 고액의 검사 또는 고액의 비급여 항목 지원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서 검토, ▲내부 사례회의 등을 거쳐 지원 여부 결정
 - 500만원(누적금액) 이상 의료비 지급의 경우 ▲주치의 소견서 검토, ▲내부 사례 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지급 적정성 검토 의견을 첨부
 - (단, 외상치료에 대한 비용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외)
- 비급여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경우 회기당 20만원 이내로 함(회당 20만원 초과 시 자부담)
 - ※ 비급여 심리치료 지원은 6개월, 최대 400만원을 원칙으로 함. 단, 6개월(400만원) 초과 시 해바라기센터 또는 상담소 등에서 주치의 소견, 내부회의 등을 거쳐 치료기간 연장을 위한 의견서를 첨부한 경우 지원 가능
 - ※ 초기 심리평가(MMPI, 스트레스 검사 등) 비용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400만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 단순한 미용이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지원 제외(다만, 내·외과적 손상을 입어 성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입원실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기준병상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병실이 없거나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거나, 의사의 소견서 또는 상담원(간호사 등 의료지원 담당자 포함) 의견서 등 사유서를 첨부하여 상급병실 사용 가능
 - ※ 긴급 시 사유서를 사후에 첨부 가능
 - * 상급병실 사용 필요 : 13세 미만의 성폭력피해자 또는 심각한 외상 피해,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 되는 사건,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필요한 피해자 등
-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한 약값은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폭력 피해자 등이 긴급하게 구입하여 사용한 약값 등 의료비에 대하여는 지원(의료기관의 투약 및 조제료는 의료비에 포함)

- 성폭력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영양제, 배변주머니 등 피해자 본인이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지원 가능
- 의료보조기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단 임차 사용이 가능한 경우 가급적 임차료만을 지원
- 한방치료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한해 본인부담분만 지원
 - ※ 의료비 지원은 성폭력과 관련된 외상·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응급의료지원의 성격에서니므로 고가의 한방 침약이나 탕약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원칙으로 함(단,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통보 제외대상인 특수상병군 적용 강화)
- 저소득 의료급여(1, 2종) 수급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급여로 집행
 - ※ 특히 성폭력피해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의료비는 의료급여로 집행한 후 본인부담금 등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에서 지원

▶ 피해자 의료비는 '의료법' 제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료기관 부설 클리닉 혹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상담학, 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 아동심리치료학, 교육심리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심리상담기관도 집행 가능

※ 피해자가 종전부터 이용해온 기관이거나 피해자가 사는 지역 인근에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 없는 경우 박사학위 수료자 또는 상담경력이 5년 이상인자가 운영하는 기관도 예외적으로 집행 가능

※ 의료비 청구시 해당기관 운영자의 박사학위 혹은 전문의 자격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4 | 의료비 지원기간

- 피해발생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함
 - 단, 피해발생 후 2년 이상이 경과하여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피해사실과 인과관계 및 치료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성폭력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의 의료지원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지원 기관과 당해 지자체(시·도, 시·군·구)가 협의(유선 또는 문서)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의료지원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가. 의료비 예산배정

- 배정대상
 - 시·도, 시·군·구
 -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이하 '피해자 지원기관')
- 배정방법
 - 시·도는 지원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에도 예산을 배정하고, 설치된 시·군·구는 지원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되, 예산의 일부를 자체 보유하여 직접 집행 및 시설별 배정 예산의 부족에 대비(예산 배정 규모, 자체보유 규모 등은 관내 의료기관 등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판단)
 - 다만, 시·도는 예산 수요 및 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지원기관이 설치된 시·군·구의 모든 사업수행기관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당해 관할구역 내 거점 상담소 등을 지정하여 예산 배정하거나 직접 집행이 가능함
 - ※ 2~5개 시·군·구를 합하여 거점 기관(상담소 등)을 지정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지방비 부담액 중 당해 시·군·구비의 경우 당해 시·군·구에서 직접 집행토록 조치
 - 해바라기센터의 경우 해당 센터가 속한 의료법인이 아닌 센터로 직접 예산 배정
 - 지원기관에 예산 배정 시, 운영비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전년도 의료비 예산 집행 실적에 따라 차등 배정(전년도 실적이 없는 상담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정 대상에서 제외 원칙)
 - ※ 시·도는 관할구역내의 치료보호 실적이 특히 높은 상담소를 비롯하여 해바라기센터 및 피해자 진료에 적극적인 대형 '전담의료기관' 등의 예산소요를 반드시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 배정 또는 보유
- 배정시기 : 매 분기 초에 배정
 - ※ 시·도 및 시·군·구는 관할 지역 내 피해자 지원기관의 의료비 집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과부족에 의한 지원 불능, 집행지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변경(조정)배정 조치

나. 피해자에 대한 치료요구(의뢰)

- 지원시설의 장은 내담자에게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상자의 성폭력 피해사실 확인 후 의료기관에 피해자 치료를 의뢰
-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수사기관 등에서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치료를 요구

‘성폭력피해상담 사실확인서 등’이란?

-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명의로 발행한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 수사기관에의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사본
-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서명한 사실 확인서
- 스마일센터 이용사실 확인서
- 군 피해자의 경우 군에서 제출하는 성폭력 신고 확인서로도 증빙 가능

상담소 등의 ‘피해 상담 사실 확인(확인서 발행)’ 절차는 다음의 경우에 생략

- ① 피해자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의 사건(고소·고발·진정 등) 접수증 사본을 진료 받을 의료기관에 제출하거나,
- ②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 등의 사실 확인(확인서 작성 후 서명)이 있는 경우
- ③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 전담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경우(해당 병원은 진료기록을 자체 보관하고 상담소 등 혹은 시·도, 시·군·구에 의료비 청구서만 제출)

다. 의료비의 청구

- ① 의료기관(심리치료 기관 포함)에서 청구하는 경우 : [서식 21]
 - 성폭력피해자 등을 치료한 의료기관은 진료비 명세서*(간이영수증은 불가),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서식 19]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의 치료를 의뢰한 피해자 지원 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에 의료비(본인부담액)청구
 - ※ 해바라기센터에서 진료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 명세서, 상담사실 확인서 제출 불요(②~③ 동일)
 - ※ 전담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경우에는 상담사실 확인서 제출 불요(②~③ 동일)
- ②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서식 22]
 -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이미 지불한 의료비를 보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간이영수증은 불가)과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서식 19]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지원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에 의료비(본인부담액) 보전 청구
- ③ 성폭력응급키트 처치료의 청구
 - 의료기관에서 응급키트 사용 후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지원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에 청구
 - ※ 성폭력응급키트 처치료는 피해자 1인당(개당) 100,000원을 해당 병원 원무과 또는 해바라기 센터를 경유하여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에게 지급

응급키트 처치료 지급 관련

- 응급키트 처치료는 응급키트를 시행한 전문의 등 의사 개인에게 병원 내부 지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원활한 증거채취 및 응급 진료 협조를 위해 가급적 의사에게 직접 지원토록 노력하여야 함
- 일반적인 의료비 청구 절차와 동일하지만 피해자 본인은 청구 불가

라. 의료비의 지급

- 지급청구를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시·도 또는 시·군·구로부터 선급 받은 예산 중에서 이를 집행한 후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내역을 보존 관리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의료비를 직접 집행하는 경우, 지급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최소화하는 등 치료보호 활성화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협조관계에 유의하고,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내역을 보존 관리
 - ※ 피해자 등이 지원기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지자체로 의료비를 청구한 경우, 지자체는 중복지급 여부나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내역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의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급 여부 결정

마. 집행 및 정산

- 시·도 및 시·군·구, 지원기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예산을 별도로 운영(집행 내역 사업별 분리 정산·관리)
 -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지급하거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급은 불가능
 -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거나 예산이 부족한 상담소 등은 필요시, 해당 예산이 배정된 상담소 등 또는 시·군·구에 의료비 지급을 의뢰하여 피해자의 치료보호 조치(예산의 수시배정 조치 없이도 지원기관을 통하여 의료비의 과부족분 해소)
 - 피해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 성폭력 피해 발생지역 또는 피해자가 치료받은 의료기관 소재지의 지원기관과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다만, 의료비의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구 기준이 아닌 시·도를 기준으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의료비 예산을 배정(선급)받아 이를 집행한 지원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 집행 내역을 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시·군·구에 보고(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하고, 시·군·구에서는 이를 자체 집행 내역과 함께 관리

-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경우,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심리치료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및 진료)와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피해자를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유도
- 의료비 중복 지원 등의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
 - 피해자 및 가족이 성폭력 피해 상황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 전체를 환수할 수 있음
 - * ▲피해자가 타 지원기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실손의료보험 등)에서 동일 폭력 피해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형·민사 합의금으로 의료비를 수령한 경우 등
 - ※ 단순 재판결과의 무죄가 아닌 고의로 허위신고를 하거나 중복지원을 요청한 경우에 한함
 - ※ 비용 환수 절차 : 의료비를 지급한 피해자 지원 기관(상담소, 해바라기센터)의 의료비 통장으로 수령인이 지급받은 의료비를 반납하도록 함. 의료비 지급 기관은 반납 받은 의료비를 여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집행잔액은 지자체에 반납함
- 피해자가 지원받은 의료비 중 일부를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 환급금으로 환급받은 경우 의료비를 지급한 기관에 반드시 통보하고 환급금을 반납
 - ※ 본인부담액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은 의료비가 과다지급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의료비 등의 과다·중복 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집행내역 점검 등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가. 목적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간병 비용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회복 지원

나. 지원대상

- 성폭력피해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자로서 가족으로부터 간병 지원을 받기 어려운 자*

※ 예시) 피해자가 1인 가구, 세대 구성원 중 성인인 구성원이 본인밖에 없는 경우, 한부모, 조손, 장애부모가정의 자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기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지원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 가능

다. 지원 내용 : 병원 간병비 자부담 비용 지원

라. 지원 기간 : 최대 1개월

※ 당해 지자체(시·군·구)가 심의를 통해 피해정도, 가정환경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

마.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기준 단가 참고)

※ 불가피하게 지원액을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심의 필요

구 분		1일 기준 단가(예 시)	
		종 일	시 간 제
병 원	일 반 단 가	8만원	5만 7천원(주·야간 12시간 기준)
	특 수 단 가*	8만 5천원	6만 3천원(주·야간 12시간 기준)

※ 특수단가 적용 기준 : ① 사지마비, 편마비에 준하는 보행 불가능 상태인 경우

② 응급실, 폐쇄병동에 입원한 경우

③ 그 외 특수단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소견서 첨부)

※ 종일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도적인 주·야간 교대 지양

※ 간병비 예시 단가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자부담으로 함

바. 지급 절차

- 간병비 지원 안내
 -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의 장, 시·군·구에서 성폭력 내담자에게 간병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폭력 피해사실 확인 후 피해자에게 간병비 지원 안내

○ 간병비 청구

-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간병 서비스 이용 후 이미 지불한 간병비를 보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자 지원기관, 관할 시·군·구에 피해자 부담액에 대한 간병비 보전 청구 가능
- 제출서류
 - 간병비 지급 신청서 1부[서식 23]
 - 진료비(간병비) 계산서, 입원 확인서 각 1부
 - 1인 가구·한부모 가정·조손 가정·장애부모 가정 등 관련 증명서류
 -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확인서 예시)

○ 간병비 지원

- 지급청구를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시·도 또는 시·군·구로부터 선급 받은 예산중에서 이를 집행한 후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내역을 보존 관리
- 간병비는 성폭력 피해 발생지역 또는 피해자가 치료받은 의료기관 소재지의 지원기관과 시·도 또는 시·군·구, 피해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간병비를 직접 집행하는 경우,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지급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최소화하는 등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내역을 보존 관리
 - ※ 간병인은 간병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함. 단, 간병인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간병이 가능한 자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가족, 친인척은 제외함

- 지급, 환수 규정

지 급	환 수
▶ 간병비의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6개월 이내에 간병한 사안에 대하여 지급 처리(단, 사안이 인정되는 경우 사유서 제출 시 당해 연도에 한하여 6개월이 지나도 지급 가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비가 지급된 경우와 과·오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 ▶ 시·군·구청장은 간병비 회수결정서 및 납입 고지서를 납입일 1월전까지 환수대상자에게 통보 ▶ 환수는 이자를 적용치 않고 원금만 회수

- 간병비 지원은 간병비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지능력 부족, 기타 사정상 필요시에는 보호자 또는 간병인에게 직접지원 가능(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추가 확인 및 실태관리 철저 요망)

- 본인부담 후 보전이 원칙이며, 피해자의 가정형편 등 불가피하게 간병비를 우선 지원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피해자 지원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우선지원 여부 결정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여부 결정

8 비밀준수 의무

-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준수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준수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및 상담소 등의 종사자는 직무상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함(특히,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9 행정사항

- 정산 및 운영실적 보고
 - 제출자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제출자료 : 관내 의료비·간병비 지원실적, 보조금 정산내역 등
 - 제출시기 : 상반기 실적은 7월 30일, 상·하반기 총실적은 차년도 1월 30일
 - 제출처
 - 정산실적 : 성평등가족부(성폭력방지과)
 - 운영실적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 필요(특히 경찰서, 의료기관 등)
 - 의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 경찰,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에서도 관련 절차 숙지 및 안내에 유의
 - 의료비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체 예산 5% 이내에서 시·도별 관내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등에 대한 홍보비로 사용가능
 - 의료비 혹은 간병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 배정 총액 내에서 조정 가능

2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1

정의

- 성폭력 증거채취 등을 위한 응급 의료용품을 의료기관 등에 무상 보급

※ 2004. 10. 부터 성폭력 응급키트 사용에 따른 처치료를 의료기관에 지급

2

구성 물품

구 분	구성물품 목록
1단계 * 소형포함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국문, 영문 2종)
	관계인 동의서(국문, 영문 2종)
2단계 * 소형포함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3단계 * 소형포함	겉옷(Outer Clothing)봉투
	속옷(Inner Wear)봉투
	이물질(Foreign Material) 봉투
	생리대(Sanitary Pad) 봉투
	종이보
	종이팬티
	비닐소독장갑
4단계 * 소형포함	성폭력 피해자의 손톱 채취(NAIL COLLECTION)
	채취물 보관함
	손톱깎이
	멸균면봉
	면봉보관함
	손톱수거 표시용 왼쪽·오른쪽 라벨(주황색)
	종이보
	손톱수거용 지퍼백
	비닐소독장갑
5단계 * 소형포함	가해자의 얼룩 및 타액 채취(STAIN COLLECTION)
	채취물 보관함
	증류수 또는 생리식염수
	멸균면봉
	면봉보관함
	비닐소독장갑

구 분	구성물품 목록
6단계	가해자가 흘린 음모 채취(PUBIC HAIR COMBINGS)
	채취물 보관함
	음모채취용 지퍼백
	빗
	종이수건
	비닐소독장갑
7단계	생식기 증거 채취(GENITALIA SWABS AND SMEARS)
	채취물 보관함
	멸균면봉
	면봉보관함
	슬라이드글라스
	슬라이드글라스보관함
	비닐소독장갑
8단계	항문직장 내 증거 채취(ANORECTAL SWABS)
	채취물 보관함
	멸균면봉
	면봉보관함
	비닐소독장갑
9단계 * 소형포함	구강 내 증거 채취(ORAL SWABS)
	채취물 보관함
	멸균면봉
	면봉보관함
	비닐소독장갑
10단계 * 소형포함	혈액 채취(BLOOD SAMPLE)
	채취물 보관함
	EDTA Tube
	비닐소독장갑
11단계 * 소형포함	소변 채취(URINE SAMPLE)
	채취물 보관함
	소변통(알코올 및 음주대사체용 1개, 약독물 검사용 1개)
	지퍼백
	부착 테이프
	비닐소독장갑
12단계 * 소형포함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3장)

구 분	구성물품 목록
기타 * 소형포함	경찰보관용 봉투(상자 뚜껑 겉면 상단 부착)
	수술용 고무장갑(Latex Surgical Gloves(Gamma 멸균)) (진찰용)
	일회용 질경(7단계에서 사용)
	증거물(EVIDENCE) 표시 라벨(주황색)
	생물학적 위험(BIOHAZARD) 표시 라벨(주황색)
	마스크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사용 안내서
	기록 받침대
	포장 상자
	검사필 스티커

※ 구성 물품을 사용빈도에 따라 대형(총 12단계)과 소형(총 8단계)으로 분리하여 제작

3 성폭력 응급키트의 적절한 배분 및 관리

- 각 시·도 및 시·군·구는 응급키트의 배포 및 사용현황에 대한 관리 강화
 - 사용실적에 비하여 과다 배포되었거나, 치과, 신경정신과, 정형외과 등 응급 키트 사용이 예상되지 않는 의료기관 등에 배포된 키트는 회수하여 적정하게 재배분(종합병원 및 산부인과 위주 보급)
 - 배포 후 장기간 활용하지 않은 채 성폭력상담소 등에 보관된 키트는 회수 조치하고, 장기간 사용실적이 없는 의료기관 등에는 1~2개 기준으로 비치 (과다 비치하지 않도록 조치)
- 응급키트 처치료(개당 100,000원) 지급 및 배포현황 반기별 파악
 - 시·도에서는 시·군·구를 통해 병원별 응급키트 사용량 및 처치료 지원내역 파악 등 사용실태 점검
 - 사용실적이 저조한 병원에 대해서는 최소 보관분(1~2개)을 제외한 잉여 응급 키트를 시·군·구에서 회수, 관내 부족한 의료기관에 신속히 배분
- 시·도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응급키트 신청시 기준 강화
 - 시·도는 분기별 시·군·구 사용실적 점검결과, 잔량이 전체 배포 수량의 10% 미만일 경우 추가 소요량 신청

※ 시·도 잔량이 10% 이상일 때는 시·군·구별 수급조절(시·도)

1 사업개요

-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관리

2 근 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3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가. 지정대상

-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또는 보건지소,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

나. 지정신청 방법(규칙 제13조)

- ① 신청서 제출 : 의료기관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서 서식 : [별지 제8호의2서식], 지침 [서식 25] 참조(전자문서 포함)
 - 신청서 첨부 서류(전자문서 포함)
 -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 지정대상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② 검토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 수리시 검토사항
 - 지정대상 기준 적합 여부
 - 법인의 경우 법인의 정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 ③ 전담의료기관 지정서 발급 [별지 제9호 서식]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의료기관

다. 취소기준

- 성폭력방지법 제27조제3항제1~3호의 전담의료기관 취소기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반드시 취소)
 -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3.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4.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지정현황(274개소)

(2025. 11월 기준)

시·도별	지정기관수	시·도별	지정기관수
서울	21	강원	30
부산	17	충북	5
대구	5	충남	21
인천	10	전북	19
광주	4	전남	39
대전	2	경북	24
울산	2	경남	24
세종	3	제주	5
경기	43	전국	274

※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는 연중 수시로 진행되므로 상기 현황은 변동될 수 있음

- 변동 세부 현황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참고(정책정보☞정책자료실☞주제별 정책자료☞인권보호)

※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해제절차

- 지정절차 : 의료기관(신청, 별지 제8호의2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지정서 교부) → 시·도지사 → 성평등가족부장관
의료기관(신청, 별지 제8호의2서식)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지정서 교부) → 성평등가족부장관
- 해제절차 : 의료기관(신청, 서식 26) ↔ 시장·군수·구청장(해제 통보) → 시·도지사 → 성평등가족부장관
의료기관(신청, 서식 26)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해제 통보) → 성평등가족부장관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 참고사항

- 종합병원(준종합병원 포함)을 중심으로 전담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 해당 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에는, 응급실 및 야간당직실이 갖추어져 있는 산부인과(여성병원), 성폭력피해자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도 예외적으로 지정 가능
- 서비스 이용수요 및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 개소수를 시·군·구별(시·도별)로 관리

○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 성폭력피해자가 전담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절차 생략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처치 시 처치료 지급 : 개당 100,000원
- ※ 집행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의료비 지원 지침 부분 참조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사용 시 주의사항

- 응급키트는 의사의 지시 없이 비의료인이 자의적으로 수행해서는 안됨
- ※ 7, 8단계는 의사만 시행 가능하고, 나머지 단계는 의료인이 시행할 수 있음

단 계	내 용
1단계	동의서 작성
2단계	진료기록 작성
3단계	겉옷, 속옷, 이물질 수집
4단계	손톱 채취
5단계	가해자의 얼룩 및 타액 채취
6단계	가해자가 흘린 음모 채취
7단계	생식기 증거 채취
8단계	항문 직장 내 증거 채취
9단계	구강 내 증거 채취
10단계	혈액 채취
11단계	소변 채취
12단계	체크리스트 작성

- 응급키트 사용 후 사용되지 않은 잔여물과 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해 채취한 검체,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은 키트상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 사용 후 키트 상자와 기타 증거물 등은 담당경찰관에게 인계
- 의료기관 보관용 기록(1, 2, 12단계)은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제1항 제9호 규정에 준하여 3년간 보존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보급

- 시·군·구 및 시·도를 경유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신청

○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와 책자 발간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 이용 홍보, 정보제공을 위한 가이드북·매뉴얼 등의 보급

※ 성폭력피해를 준응급 증상으로 지정(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02. 2. 8)

- 응급실 관리료의 건강보험 적용
-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시 진료의뢰서 없이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 응급실에서 원내 조제·투약
-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받더라도 진료내역이 본인이나 가족에게 통보되지 않음
- ※ 성폭력은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통보 제외대상 특수상병군에 포함

6 행정사항

- 전담의료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 또는 취소된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일 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 또는 취소현황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제27조 3항에 따른 지정취소사유에 해당 할 경우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함
- 각 시·군·구에서는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와 연계된 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등과 의료기관간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 특히,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처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지원(주·야간)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의료기관이 응급키트 처치 업무를 수행 하도록 안내하고, 관내 해바라기센터와 연계를 강화하도록 전담의료기관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전담의료기관에서는 성폭력피해자 진료대장 [서식 27] 및 성폭력응급키트 관리 대장 [서식 28] 비치
- 관내 해바라기센터, 지방의료원을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지정하여 관리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범피기금) 의료비의 5% 내에서 관내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 홍보비로 사용 가능

〈참고 : 전국 전담의료기관 현황〉

시도	의료기관명	주 소
서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95 합춘회관 B1 (서울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59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124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을지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68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342
	인정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164
	은산부인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37 영진빌딩 4층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세브란스병원 본관 1층 응급진료센터
	동신종합병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6길 32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유광사여성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194
	봄빛정신과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84, 동서빌딩 203호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고려병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242
	양지병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국립경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123
	미미한의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14 2층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녹색병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아미동1가, 부산광역시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262
	동아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일신기독병원	부산광역시 동구 정공단로 34
	해동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133
	미래여성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459(개금동)
	한마음신경정신과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17(온천동)
	이화산부인과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16-2 (대연동)
	해원산부인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운봉길3(반송동)
	해운대산부인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로 30(중동)
	뉴본여성의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234
	다움병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608 (두구동)

시도	의료기관명	주 소
부산	부산의료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거제동)
	이현숙정신건강의학과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로 4(광안동)
	좋은삼선병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326(주례동)
	기장병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을 대청로 72
	광안자모병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55(광안동)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대구의료원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46길 16
	여성아이병원	대구 달서구 월배로 141
	달성군보건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27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황원준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99-1
	인천적십자병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인구보건복지협회가족보건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42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
	부평세림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75
	의료법인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22
	가톨릭대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00번길 25
	백령병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233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
	에덴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면양로170번길 10 (두암동)
	하남성심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259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더블유 여성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70(3, 4, 5층)
울산	울산병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 160번길 41, 울산병원 별관
	울산대학교 병원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세종	한사랑산부인과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로 122
	연세정담정신건강의학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301호 201-3호
	미애로여성의원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53, 6층
경기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밝은마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50-1

시도	의료기관명	주 소
경기	최보원산부인과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2, 백성병원 별관 3층
	원산부인과병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759번길 32
	용인세브란스병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63
	일산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그레이스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3
	명지병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14번길 55
	일산백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일산동국대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야탑동)
	화성중앙종합병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
	미즈파크여성병원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139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경기도 화성시 큰재봉길 7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중동)
	온세병원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29번길 49, 엠투프라자10층
	한나산부인과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2로 20
	현대병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21
	메이퀸이지은산부인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0 동양빌딩 304
	BM산부인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76
	마음도탁정신건강의학과의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74 C동 518호
	윤정신과의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9
	의료법인 플러스의료재단 단원병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20(초지동)
	박애병원	경기도 평택시 평택2로 20번길 3
	굿모닝병원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38
	평택성모병원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284(세교동)
	의료법인 갈렌의료재단 박병원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33(장당동)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평촌동)
	김포우리병원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1
	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3로 283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07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동)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271 (금오동)
	신소연산부인과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70 (의정부동)
	의료법인 광명성애병원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36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7

시도	의료기관명	주 소
경기	산본제일병원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74
	오산한국병원	경기도 오산시 말머리로1번길 16
	양정분산부인과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86
	장스365의원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74번길 80
	참조은병원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45(경안동)
	해성산부인과	경기도 동두천시 정장로 34
강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 77
	강원대학교병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 156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산로 20
	원주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387
	강릉아산병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강릉동인병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419번길 42
	강릉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007
	강릉올곡병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 3304번길 11
	동해동인병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하평로 26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드미길8
	한마음산부인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서황지로 4
	속초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3
	고려산부인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96
	삼척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오십천로 418
	삼척시 보건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척주로 76
	아름다운 병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42-10
	연세정신건강의학과의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변영로 4
	횡성대성병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275
	횡성군보건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91
	영월의료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59
	영월군보건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44
	평창보건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1
	정선군보건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철원병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208
	화천군보건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강변로 111
	양구군보건소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42
	양구 성심병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중심로 160
	인제군보건소	강원특별자치도 인제읍 인제로140번길 34

시도	의료기관명	주 소
강원	고성군보건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30
	양양군 보건소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로 9-5
충북	청주의료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48
	진국대학교 충주병원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82
	충주의료원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로 239-50
	인신경정신과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 97
	업승호산부인과	충청북도 제천시 동명로 58
충남	단국대학교의과 대학부속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천안의료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해민신경정신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7
	행복주논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11
	퀸스산부인과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1길 9-13
	혜성산부인과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2길 18-11
	공주의료원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77
	보령아산병원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136
	다운미래산부인과의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6
	서산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149
	백제종합병원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4번길 14
	현대정형외과의원병원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96
	김광석외과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14
	조산부인과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87
	건양대학교부여병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00
	미래산부인과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96
	해성정신건강의학과의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50, 2층
	청양군보건의료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7길 54
	홍성의료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예산명지병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26
	태안군 보건의료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
전북	한나여성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89
	다솜신경정신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0
	김임신경정신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7
	전북대학교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27 (지곡동)
	미래와여성산부인과의원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로 164 (수송동)
	개정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312 (사정동)

시도	의료기관명	주 소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
	정읍아산병원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606-22
	김현기정신건강의학과	전라북도 정읍시 남북로 24-3
	남원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365
	김제보건소	김제시 성산길 138
	한사랑산부인과	김제시 중앙로 131
	고려병원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동학로 21
	진안군의료원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89
	장수군보건의료원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47
	순창군보건의료원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교성로 135
	고창종합병원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화산1길 9
	부안성모병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오정2길 24
전남	목포한국병원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83
	목포중앙병원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23
	목포시의료원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 18
	미즈아이병원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418
	여천전남병원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95(선원동)
	여수전남병원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49(광무동)
	초도보건지소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대동길 78
	연도보건지소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연도북부길 14
	성가롤로병원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
	밝은마을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319, 3층
	웰빙의원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325, 5층
	즐거운치과의원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315, 3층
	아이덴치과	전라남도 순천시 신월큰길 1-4, 7층
	라임치과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321, 노엘빌딩 4층
	순천의료원	전라남도 순천시 서문성터길 2
	조운향피부과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325, 5층
	나주종합병원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로 5419
	마리엠산부인과	전라남도 나주시 빗가람로 740, 한빛타워 7층
	우리산부인과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로 191
	미래여성의원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중앙로 142
	담양사랑병원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천변7길 19
	곡성군보건의료원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4
	구례보건의료원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동편제길 30

시도	의료기관명	주 소
전남	고흥종합병원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35
	녹동현대병원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차경구령목길 215
	보성아산병원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가평길 36-17
	차메디컬산부인과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칠층로 141-7, 상가동 207호
	장흥우리병원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83
	강진의료원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5
	해남종합병원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5
	영암한국병원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8
	무안종합병원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몽탄로 65
	함평성심병원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영수길 136
	영광기독병원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265
	낙월보건지소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낙월길 42-2
	장성병원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171
	완도대성병원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동로 63
	조도보건지소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창유2길 12
	흑산면보건지소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흑산일주로 16
경북	하상호·김남주산부인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330번길 3(죽도동)
	포항성모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대잠동)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맘존여성병원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315
	김천제일병원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1길 12(신음동)
	이상식산부인과	경상북도 김천시 자산로 69
	김천의료원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포천중문의과 대학 부속 구미차병원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10길 12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경상북도구미시 1공단로 179
	미리안산부인과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 194
	맑은마음정신과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75
	임영미산부인과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14길 4
	장지훈정형외과	경상북도 구미시 상사서로 163
	미래로병원	경상북도 구미시 여현로 30
	적십자병원	경상북도 상주시 상서문로 53
	성모병원	경상북도 상주시 냉림서성길 9
	문경제일병원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3길 25
	김성연산부인과	경상북도 문경시 중앙6길 10-1

시도	의료기관명	주 소
경북	경산산부인과	경상북도 경산시 중앙로 63, 2층
	청송군보건의료원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의료원길 19
	예천권병원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136
	울진군의료원	경북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71
	울릉군보건의료원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396-18
경남	창원한마음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 57번길 8
	마산의료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미래산부인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2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통영시 보건소	경상남도 통영시 안개4길 108
	늘푸른산부인과	경상남도 사천시 중앙로 126
	프라임여성의원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67(내동)
	환명의료재단조은금강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1814-37(삼계동)
	우리여성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91(내동)
	제일병원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4
	대우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두모길 16
	거봉백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5길 14
	미즈모아산부인과의원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역6길 9
	복음의원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23-6 복음의원
	함안군보건소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4길 10
	한성병원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1길 2
	고성군보건소 (고성읍보건지소)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35
	고성강병원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9
	이경화 산부인과 의원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96번가길 4-2
	하동군민여성의원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115
	산청군 보건의료원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97
	한마음연합의원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길 44
	거창적십자병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1
	삼성합천병원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876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아라일동)
	제주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일동)
	예나산부인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83
	한라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연동)
	서귀포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47 (동홍동)

IV-2 돌봄 비용 지원

1 목 적

-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을 통해 성폭력피해 아동 등의 건강한 보호 및 조속한 피해회복 지원

2 사업 대상 및 내용

가. 지원대상 : 아래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면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지원

-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 및 피해아동의 13세 미만의 형제·자매
-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자의 13세 미만 자녀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 예시) 한부모, 맞벌이, 조손가정, 장애부모,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기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 폭넓게 인정

나. 지원내용

- 돌봄서비스 이용 시(민간베이비시터,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아양육지원, 활동보조인 등) 자부담 비용분에 대해 지원
※ 돌보미는 돌봄 서비스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함(가족 제외)
※ '15년 6월부터 활동보조인 이용 가능(복지부)

다.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원칙, 연장 12개월 포함 최대 18개월까지 가능

라.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원칙, 연장 6백만원 포함 최대 9백만원까지 가능

- ※ 지원기간 및 금액 한도 지원 후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일 경우, 시·군·구청장 및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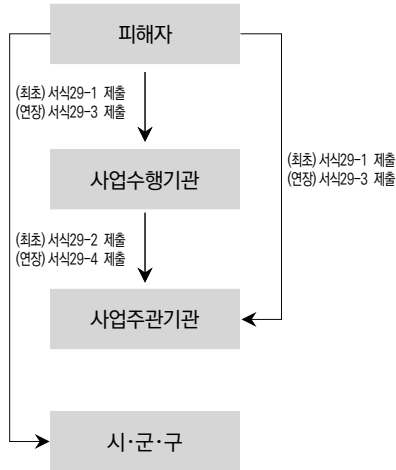
구 분	시간당 기준 단가(예시)
일 반 단 가	시간당 평균 8~9천원

※ 상기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별 돌봄서비스의 시장가격, 야간·주말 추가요금, 돌봄 제공자의 교통비(시외의 경우 등)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단가 초과 시 관련 서류에 사유를 반드시 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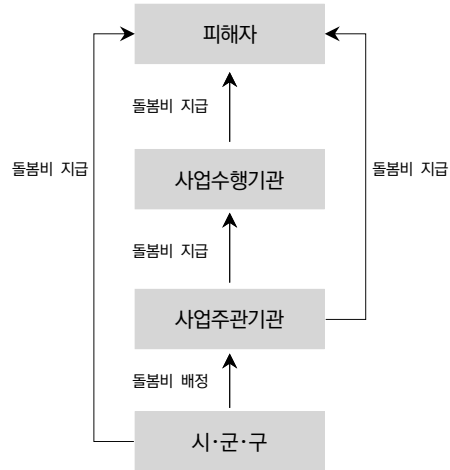
※ 가사 베이비시터도 허용함

3 지원 절차

돌봄비 지급 신청 시(최초/연장)



돌봄비 지급 시



○ 돌봄 비용 지원 안내

-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시·군·구에서 성폭력피해자(또는 피해자의 자녀)에게 돌봄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폭력 피해사실 확인 후 돌봄비용 지원제도 안내

○ 비용 청구

-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돌봄 서비스 이용 후 이미 지불한 돌봄 비용을 보전받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본인이 지원받고 있는 사업수행기관에 피해자 부담액에 대한 보전 청구
- 제출서류
 - 돌봄비용 지급 신청서 1부 [서식 29-1]
 - 돌봄비용 본인부담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계산서, 입금증 사본)
 -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 사업수행기관은 피해자로부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여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 뒤 각 시·도별 사업주관기관에 지급 신청 [서식 29-2]

○ 비용 지원

- 지급청구를 받은 사업주관기관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와 중복지급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도 또는 시·군·구로부터 선급 받은 예산중에서 이를 사업수행 기관에 지급한 후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내역을 보존 관리
-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돌봄 비용을 지급받은 사업수행기관은 이를 피해자 (또는 대리인)에게 지급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돌봄 비용을 직접 집행하는 경우,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와 중복지급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 집행(사업주관기관을 통한 집행도 가능)하고, 지급절차 및 구비 서류 등을 최소화하는 등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 내역을 보존 관리
- 지급, 환수 규정

지 급	지급 중단 및 환수
▶ 돌봄 비용의 지급은 피해 발생 후부터 치료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서 최대 6개월 지원(심의를 통해 연장 가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비용이 지급된 경우와 과오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환수 ▶ 환수방법 -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환수 여부 결정 ※ 심의위 구성 및 소집절차는 연장결정방법과 동일 - 돌봄비용 환수결정서 및 납입고지서를 납입일 1월전까지 환수대상자에게 통보 ※ 환수는 이자를 적용치 않고 원금만 회수 - 시·군·구청장은 환수한 돌봄 비용을 당해년도 지원분과 과년도 지원분으로 구분 • 징수 당해년도 지원에 대한 징수금은 당해 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 처리 • 과년도 지원에 대한 징수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 돌봄 비용지원은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지능력 부족, 기타 사정상 필요시에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 베이비시터(아이돌보미) 회사 등에 직접 지원 가능(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추가 확인 및 실태관리 철저 요망)

○ 본인부담 후 보전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돌봄 비용을 우선 지원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피해자 지원기관과 주관기관 또는 지자체가 협의하여 우선 지원 여부 결정 가능

○ 연장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 한도 및 방법은 아래와 같음

① 1차 연장

-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시·군·구청 장(피해자가 시·군·구로 직접 연장신청한 경우)이 최대 6개월, 3백만원 한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시·군·구청장(피해자가 시·군·구로 직접 연장신청한 경우)은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정도, 평소 생계곤란 여부(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 일상생활 복귀곤란 여부(의사 소견서 등)를 고려하여 지원 연장 결정

② 2차 연장

- 심의위원회가 최대 6개월, 3백만원 한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심의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사유, 지원 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등을 기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

※ 심의위원회는 시·군·구 담당자,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를 포함하되, 위원 중 1/3을 아래와 같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됨

1. 사회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심의위원회의 의결(서면의결 가능)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의결은 심의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함

※ [서식 29-3, 4] 참조

○ 사업주관기관 및 지자체는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가정형편 등에 따라 우선 지원 여부 결정 가능

○ 사업수행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과 함께 돌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 확인

- 사업수행기관은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안내
-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유의사항 안내
 - 베이비시터(아이돌보미) 등이 친족 관계일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음
 -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서비스(장애인 활동보조인, 장애아 양육지원사업) 등 정부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정부 지원받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본인 자부담액에 대해서만 지원함(중복지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가능)
- 돌봄서비스 제공자(아이돌보미 등)에게 유의사항 안내
 - 아동의 피해 후유증이 심각한 경우에는 가급적 부모 등 보호자가 돌보는 것이 바람직함을 설명해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보호자 등과 면담, 전화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월 1회 이상)
 -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아동의 심리 상태 및 정서적 어려움 등을 돌봄서비스 제공자에게 설명하고, 피해 아동을 돌볼 시의 유의사항, 2차 피해 방지 등을 안내하여야 함
 - 아동의 피해 후유증이 심각한 경우 돌봄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의 상태에 대해 알릴 것인지 보호자와 협의
- 시장·군수·구청장은 성폭력 피해자 돌봄비 지원 실적을 보고서식[서식 30]에 의하여 상반기 실적은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연간 운영실적은 차년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시도별 사업주관기관 〉

구 분	시도내 사업 수행기관 명단	연 락 처
서 울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형)	02-3274-1375
부 산	부산해바라기센터(통합형)	051-244-1375
대 구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형)	053-421-1375
인 천	인천해바라기센터(아동형)	032-423-1375
광 주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형)	062-232-1375
대 전	대전해바라기센터(통합형)	042-280-8436
울 산	울산해바라기센터(통합형)	052-265-1375
세 종	세종시 여성가족과	044-300-3714
경 기	경기해바라기센터(아동형)	031-708-1375
강 원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통합형)	033-652-9840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통합형)	033-252-1375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통합형)	033-741-1896
충 북	충북해바라기센터(아동형)	043-857-1375
충 남	충남해바라기센터(통합형)	041-567-7117
전 북	전북해바라기센터(아동형)	063-246-1375
전 남	전남해바라기센터(통합형)	061-351-4375
경 북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통합형)	054-278-1375
경 남	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통합형)	055-754-1375
제 주	제주해바라기센터(통합형)	064-749-5117

〈참고 : 전국 해바라기센터 기능 및 현황〉

□ 기능별 센터 유형

(2025. 12월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
연혁	2005~	2004~	2010~
대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개소수	18개	7개	16개
근무 형태	365일 24시간	09:00~18:00 * 18시 이후 재택당직근무 실시	365일 24시간
경찰 근무	경찰 배치 (상주)	경찰 출장 지원	경찰 배치 (상주)
주요 업무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	상담·의료·법률·심리지원 (경찰 출장으로 수사지원 가능)	상담·의료·수사·법률·심리지원

□ 시설 현황 : 41개소 운영(위기지원형 18개소, 아동형 7개소, 통합형 16개소)

(2025. 12월 기준)

시도	명 칭	유형	운영기관	소재지
서울	서울해바라기센터	통합	서울대병원	서울 종로구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위기	경찰병원	서울 송파구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위기	보라매병원	서울 동작구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위기	서울의료원	서울 중랑구
	서울해바라기센터	아동	연세의료원	서울 마포구
부산	부산해바라기센터	통합	부산대병원	부산 서구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위기	부산의료원	부산 연제구
대구	대구해바라기센터	위기	대구의료원	대구 서구
	대구해바라기센터	아동	경북대병원	대구 중구
인천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	위기	인천의료원	인천 동구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	위기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인천 부평구
	인천해바라기센터	아동	가천대길병원	인천 남동
광주	광주해바라기센터	위기	조선대병원	광주 동구
	광주해바라기센터	아동	전남대병원	광주 동구

시도	명 칭	유형	운영기관	소재지
대전	대전해바라기센터	통합	충남대병원	대전 중구
울산	울산해바라기센터	통합	울산병원	울산 남구
경기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통합	아주대병원	경기 수원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통합	명지병원	경기 고양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	통합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경기 부천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	위기	단원병원	경기 안산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	위기	의정부의료원	경기 의정부
	경기해바라기센터	아동	분당차병원	경기 성남
강원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통합	강원대병원	강원 춘천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	통합	강릉동인병원	강원 강릉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	통합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 원주
충북	충북해바라기센터	위기	청주의료원	청주 흥덕구
	충북해바라기센터	아동	건국대충주병원	충북 충주
충남	충남해바라기센터	통합	단국대병원	충남 천안
	충남서남부해바라기센터	위기	홍성의료원	충남 홍성
전북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	통합	원광대병원	전북 익산
	전북해바라기센터	위기	전북대병원	전북 전주
	전북해바라기센터	아동	전북대병원	전북 전주
전남	전남해바라기센터	통합	영광기독병원	전남 영광
	전남동부해바라기센터	위기	성가롤로병원	전남 순천
	전남남부해바라기센터	위기	강진의료원	전남 강진
경북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	통합	포항성모병원	경북 포항
	경북북부해바라기센터	위기	안동의료원	경북 안동
	경북서부해바라기센터	위기	김천제일병원	경북 김천
경남	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	통합	경상대병원	경남 진주
	경남해바라기센터	위기	마산의료원	경남 마산
제주	제주해바라기센터	통합	한라병원	제주 제주시

IV-3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1 사업 수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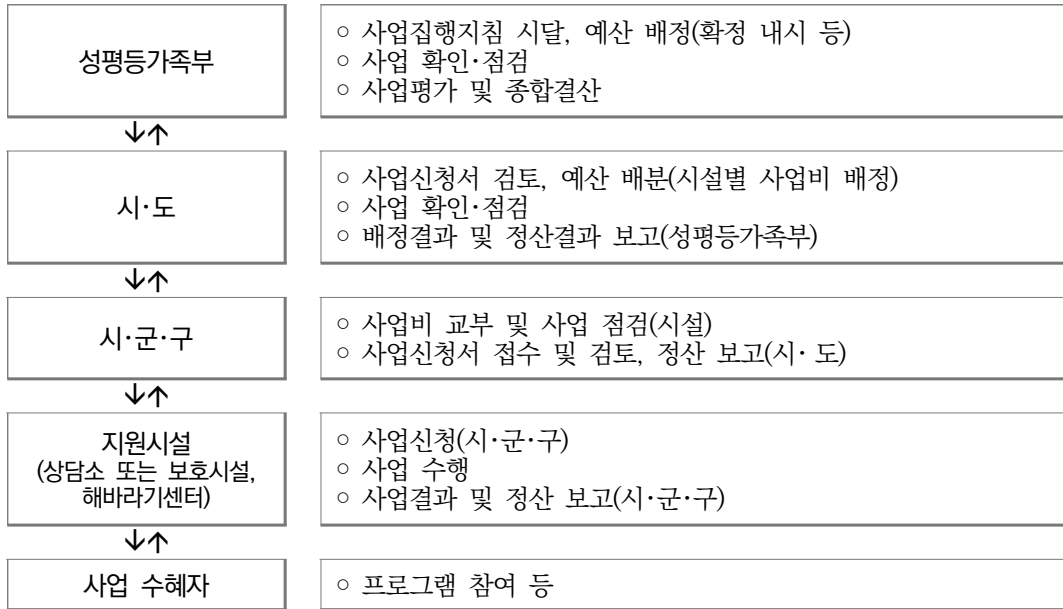
1 사업 개요

- 목적 :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손상된 심신 및 정서의 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신속한 복귀를 도모
- 법적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사업내용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 ※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
 -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심신회복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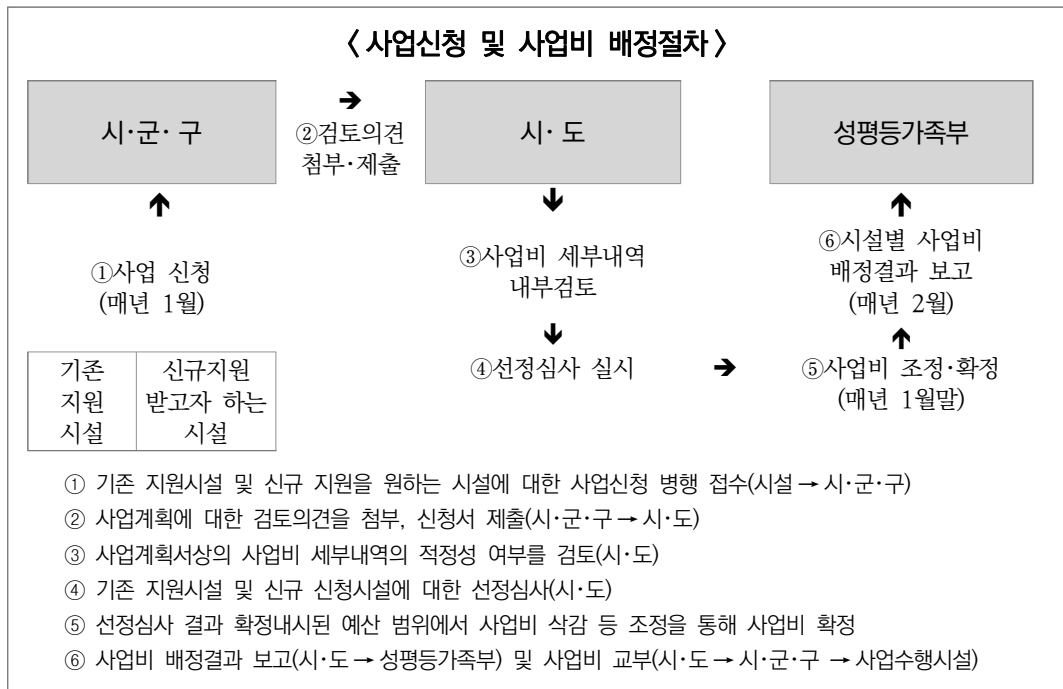
2 사업수행 기관

- 사업 신청대상
 - 전년도에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존시설(이하 “기존 지원시설”이라 함)
 - ※ 기존 지원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의 유형과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성폭력 시설에서 가정폭력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불가
 - 기존 미지원시설 중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해바라기센터
 - ※ 프로그램에 참여할 피해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3 사업추진체계



4 사업비 배정절차



① 사업 신청

- 신청대상 시설에서 관할 시·군·구에 필요한 프로그램 사업을 신청
- 제출서류 : [서식 31-1] ~ [서식 31-3]

② 사업신청서 검토 및 시·도 제출

- 시·군·구에 접수된 사업신청서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사업신청서 시·도 제출
- 제출서류 : [서식 31-1] ~ [서식 31-4]

③ 사업비 세부내역 사전 검토

- 시·도에서는 접수된 사업신청서상 사업비 세부내역이 사업별 기준단가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사전 검토

④ 프로그램별 사업수행시설 선정 심사

- 심사주체 : 시·도 직접 수행 또는 시·도에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또는 가정·성폭력 관련으로 구성된 기존 위원회 활용)하여 수행
- 심사방법 : 기존 지원시설·신규신청시설에 대해 별도의 선정심사표에 의해 심사하되, 최종 점수에 따라 기존·신규 구분없이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배정
 - ※ 필요시 신청 시설에 대해 사전 현장점검 실시
 - ※ 전년도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행정기관의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누적된 기관은 선정심사에서 제외
- 필수 선정 대상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 ※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필수 지원시설로서 사업수행 시설 선정 시 해당 시설을 포함할 것. 다만, 치료회복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보조금법」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해 사업수행이 배제된 경우에는 필수 선정 대상시설에서 제외됨
 - ※ 지자체 검토 및 선정 심사 위원회의 심사 등 선정 과정에서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프로그램 사업 계획 등과 관련한 의견이 있을 경우, 지자체에서는 해당 특별지원 보호시설과 협의하여 관련 의견을 반영·수행하도록 협의할 수 있음.

⑤ 시설별 사업비 조정·확정

- 프로그램별 사업수행시설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내시된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 삭감 등 조정을 통해 사업비 확정

⑥ 사업비 교부

- 시·도는 조정·확정한 사업수행시설별 사업비 배정결과를 성평등가족부에 보고 하고, 시·군·구에 사업비를 교부
- 보고서류 : [서식 31-5, 6]

5 사업 수행 및 정산

⑦ 사업 수행 및 결과보고

- 시·군·구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수행시설별 사업 수행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종료 후 사업 운영실적을 시·군·구로 제출
- 보고서류 : [서식 31-7]

⑧ 사업비 조정 및 정산

- 상반기 이후 중간 정산 실시, 시·도 내 사업비 재배정
- 당해 연도 사업결과를 사업수행기관 → 시·군·구 → 시·도 → 성평등가족부로 보고 (차년도 1월말까지)

6 사업추진일정

- 확정내시 통보 : 전년도 12월(성평등가족부)
- 사업신청서 접수, 검토 및 배정 : 당해 연도 1월말까지(시·도)
- 사업비 배정결과 제출 : 당해 연도 2월 10일까지(시·도 → 성평등가족부)
- 사업수행 : 연중(사업신청서를 전년도 접수하는 등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음)
 - * 사업수행 기간동안 진행된 프로그램 진행비(강사로 포함)에 대해서는 사업비 교부 이후 소급 적용 가능
- 사업결과보고 : 차년도 1월말까지

7 행정사항

가. 강사 및 강사로 지급 기준

- 내부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개인에게 지급할 수 없음
 - 강사 구성에 불가피한 경우 시설 자체 내부규정을 정하여 30% 범위내에서 강사료 단가 조정 가능
 - 상담·보호 및 지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유연근무·대체근무 등 탄력적 근무를 적극 활용

- ※ 내·외부 강사 비율은 시설 특성, 프로그램 대상 및 내용에 맞게 구성
- ※ 동일법인 소속으로 동일 시·군·구내 소재하고 있는 상담소, 보호시설 등에서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상근 종사자가 동일 시·군·구내 동일법인 소속의 시설(보호시설·상담소)에서 강의할 경우 내부강사로 봄

- 타 지역의 강사 활용 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숙박비 : 실비(서울 10만원, 광역 8만원, 기타 지역 7만원 한도 내)
 - 식 비 : 1일 25,000원
 - 교통비 : 실비(철도는 일반실 기준, 자동차는 실비 기준)

나. 기타 행정사항

- 자아 정체감 형성 과정에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심리·정서적 치료 및 지원이 보다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사업수행 기관 선정 시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 중인 보호시설을 우선 고려할 것을 권장
 - ※ 사업수행 기관 선정 시 우선 고려 대상 시설 : 미성년 피해자가 직전 연도말 기준 전체 현원 대비 50% 이상 입소한 일반 보호시설
- 사업계획 변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되, 단순한 프로그램 내용·횟수 등의 변경은 사업수행시설(상담소·보호시설)에서 자체 조정 가능한 “개별상담”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변경은 불가함
 - 지역 특성상 집단상담 성원 구성이 곤란한 경우 3인 이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집단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단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 상황 등을 현장 확인·점검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
- 프로그램 홍보를 위하여 리플릿, 팸플릿 등의 제작·배부 비용을 연간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 각 시설에서는 만족도 조사 설문지[서식 32]를 항상 비치하고, 프로그램 종료 시 참여자에게 설문에 응하도록 적극 권장
 - 반송용 봉투 수취인은 해당 시·도(여성정책 부서)로 하며, 해당 시·도에서는 설문지를 취합하여 만족도 조사결과를 성평등가족부로 보고
- 기타 당해 연도 사업추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전년도 기준에 준하여 처리함

가. 프로그램 운영 기준 및 방법

- 상담 장소
 - 관련법상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장소
 - 상담내용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
- 상담 형태
 -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 일상적인 상담과 구별하여 피해자별로 개별화·전문화된 치유프로그램 적용
 - ※ 단,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보호시설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게 치료회복프로그램 구성 요망
 - ※ 치료회복 프로그램 중 개별 심리상담의 경우,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로 개인 심리상담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대상자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89집단상담 운영 기준

가) 진행자

- 대상자 10인을 기준으로 주진행 1명, 보조진행 1~2인의 강사로 운영(아동 청소년, 장애인 집단인 경우 필요에 따라 10인 이하라도 보조강사 1~2인 가능)
 - 주진행자: 전문강사 Ⅱ, Ⅲ 중 1인이 진행
 - 보조진행자: 전문강사 Ⅰ 기준으로 2인까지 활용 가능
(1인은 진행기록을 담당)
-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것은 일상적인 상담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전문성이므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강사를 적극 활용

나) 프로그램 운영 방법

(1) 집단 구성: 집단은 2~8명 내외

- (폐쇄집단) 종료 시까지 동일 성원으로 유지하는 폐쇄집단형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후에 신규 입소자 발생 시에 집단에 추가 가능
 - ※ 가능한 나이, 피해정도, 피해경험 등이 비슷한 그룹으로 구성
 - ※ 주제별로 운영할 때, 피해자의 연령(청소년 vs 성인), 결혼 여부(기혼 vs 미혼), 피해유형(친족 vs 비친족), 피해의 노출 여부, 피해자의 주요 증상, (원)가족과의 관계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 운영

- (2) 필수 회기 : 최소 10회기(20시간) 이상 운영
- (3) 시간 : 회기당 90분 ~ 120분 배정
- (4) 운영방식
- ① 분산형 운영(매주 1회기씩, 15주간(대략 4개월) 진행)
 - ② 예외적으로 통합형 운영 가능
 - ※ 통합형 : 초기 집중형 운영으로 초기 친밀감과 정서적 안전감 확보 후 분산형을 운영하여 재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습득, 일상생활의 적응력 제고와 정체성 확립
- (5) 상담기록 관리 : 프로그램별로 기록자를 지정하거나 보조강사 1인이 프로그램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여 편철
- ※ 강사의 강의계획서, 상담(치료)기록부, 단계별 프로그램 진행기록부, 사진자료 등을 기록·보관
- (6) 사후평가 : 각 상담소는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실적보고 제출 시에 함께 제출

나. 프로그램별 운영기준

종 류	상담내용 및 목표	상담횟수 및 방법	강 사	운영 단가
개별 심리상담	- (목표) 피해자 개개인의 개별적 욕구와 필요에 따라, 피해 상황과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실시하며 심리적 안정과 생활 안정을 도모 - (내용) 개인별 상황에 따른 삶의 방향 탐색 및 지원 1) 치유 결정 2) 견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3) 기억 재생 4) 사실로 인정하기 5) 침묵 깨기 6) 내 책임이 아닌란 걸 깨닫기 7) 내부의 어린아이와 접촉 8) 슬픔작업 9) 분노작업 10) 폭로 후 대면하기 11) 용서하기 12) 내면세계의 힘과 만나기 등의 단계로 진행 - (기타) 전문가 심리평가 및 정신과 치료 등 필요시 적용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사용)	- 1회 1시간 내외 - 횟수는 피해자 상황에 따라 조정 - 8~10회 진행 후 평가, 슈퍼비전 받은 이후 지속 할지 협의	전문(Ⅱ, Ⅲ)	전문Ⅱ : 50천원(1회) 전문Ⅲ : 100천원(1회)

종 류	상담내용 및 목표	상담횟수 및 방법	강 사	운영 단가												
여성주의 집단상담 -자조 (self-help)와 힘 돋우기 (empowerment)	- (목표) 성폭력 피해 경험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고, 성역할 분석, 힘의 분석, 주장훈련, 의식향상훈련, 인간관계기법, 독서요법, 재구성, 재명명 등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 * 피해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고 실현하며 성폭력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나아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게 됨 * 또한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확립하며, 성폭력의 개인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됨 - (내용) 심리교육 및 행동 훈련* 등을 이용하여 자기이해와 관계 형성을 도움 * 성교육, 집단토론, 집단 내 개인상담, 빈의자 기법, 내면화된 메시지 교환하기, 어린 시절 사진 보기, 읽기와 시청각 교육, 대인관계도 만들기, 신체 작업, 비폭력대화 미술치료, 타로, 애니어그램, MBTI) ** 아동, 장애인 대상 집단상담의 경우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 구성	- 2~8인(연령, 피해 유형 등이 비슷한 그룹으로 구성) - 주 1~2회(1회 90분~120분 배정) - 최소 10회기 (20시간)이상 운영 - 분산형 운영, 숙박형 불인정	• 주진행(1인) : 전문(Ⅱ, Ⅲ) • 보조진행 (2인) : 전문 (Ⅰ)	• 강사비 단가 <table><tr><td></td><td>최초 1시간</td><td>매1시간 초과</td></tr><tr><td>전문(Ⅰ)</td><td>50천원</td><td>15천원</td></tr><tr><td>전문(Ⅱ)</td><td>100천원</td><td>35천원</td></tr><tr><td>전문(Ⅲ)</td><td>150천원</td><td>50천원</td></tr></table> • 장소사용료(1회) 100,000원		최초 1시간	매1시간 초과	전문(Ⅰ)	50천원	15천원	전문(Ⅱ)	100천원	35천원	전문(Ⅲ)	150천원	50천원
	최초 1시간	매1시간 초과														
전문(Ⅰ)	50천원	15천원														
전문(Ⅱ)	100천원	35천원														
전문(Ⅲ)	150천원	50천원														
심신회복 캠프	- (목표) 문화체험, 여행을 통해 자연과 접하여 정서 함양과 심리적인 휴식을 취하며, 집단 속에서 관계성 훈련, 친목도모와 유대감을 강화	- 10명 내외(자녀 등 가족 동반 가능, 퇴소자 참여 가능) - 당일, 1박 2일 ~2박 3일	• 주진행(2인) : 전문(Ⅱ, Ⅲ) • 보조진행 (3~4인) : 전문(Ⅰ)	• 강사비 단가 <table><tr><td></td><td>최초 1시간</td><td>매1시간 초과</td></tr><tr><td>전문(Ⅱ)</td><td>100천원</td><td>35천원</td></tr><tr><td>전문(Ⅲ)</td><td>150천원</td><td>50천원</td></tr><tr><td>보조진행</td><td colspan="2">1인당 70천원(1회)</td></tr></table> • 장소사용료 1회 150,000원 숙박비 2인 1실 140,000원 식비 1인 5식, 1식 15,000원 다과비 : 1인 7,000원 기준 교통비 실비기준		최초 1시간	매1시간 초과	전문(Ⅱ)	100천원	35천원	전문(Ⅲ)	150천원	50천원	보조진행	1인당 70천원(1회)	
	최초 1시간	매1시간 초과														
전문(Ⅱ)	100천원	35천원														
전문(Ⅲ)	150천원	50천원														
보조진행	1인당 70천원(1회)															

종 류	상담내용 및 목표	상담횟수 및 방법	강 사	운영 단가
기 타	- (목표) 성폭력 피해를 직접 다루지 않는 심성 계발을 위한 일반 프로그램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인식하고 확산시키고 이끌어 내도록 긍정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내용)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한계성을 가진 개인의 행동이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사회적 상호 작용 기술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진로교육, 양성평등교육, 경제교육, 공예, 원예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춤/동작치료, 자기방어훈련, 사이코 소시오드라마, 분노 조절 프로그램, 인간관계와 자기표현 훈련, 장점 강화 프로그램, 감수성 훈련, 글쓰기작업, 말하기대회 등	- 전체회기의 20% 범위 내에서 필요 시 활용 * 단, 장애인, 아동 등 특성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 30%(발달장애인의 경우 40%)까지 가능) - 주 1회씩 8~10주간 진행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한 자로서 활동 경력 3년 이상인 자	최초 1시간 100천원, 매 1시간 초과 시 35천원

- 초과 시간은 최대 3시간까지만 지급 가능
- 야간(18시 이후), 휴일 상담 시 상담료 50% 가산 지급 가능
 - ※ 지자체 예산 배정 및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집행 가능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소모품과 다과 구입 등은 가능하나 재료비 외 비품구입은 불가
- 개별심리상담만으로 프로그램 구성 불가
- 숙박형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심신회복캠프를 활용하되, 심신회복캠프 이후 평가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별 동시 혼용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피해의 특성, 증상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혼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자체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전문강사 자격기준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공통기준을 갖추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여야 함.
단, 강사수급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공통기준 1, 2항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경험이 있고, 3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강사로 활용할 수 있음

구 분	자 격 기 준	비 고
공통 기준	1. 성폭력피해자 상담관련 교육(법정시간)을 이수하고 2. 성폭력 피해자 상담에 100시간 참여한 자 3. 피해자 상담 슈퍼비전을 5사례 이상 하거나 받은 자	※ 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만 해당
1. 전문 강사 (I)	1. 대면상담경력 2년 이상인 자 2. 아동미술치료 등 아동심리치료·상담 1년 이상 경력자 (아동상담의 경우) 3.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자로서 대면상담 경력 1년 이상인 자	※ 상담경력 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분야 관련 상담임
2. 전문 강사 (II)	1. 대면상담경력 5년 이상인 자 2. 성폭력 피해자 등 집단상담경력 3년 이상인 자 3. 아동미술치료 등 아동심리치료·상담 3년 이상 경력자 (아동상담의 경우) 4.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집단상담경력 2년 이상인 자	
3. 전문 강사 (III)	1. 관련분야 박사 학위 이상으로 성폭력 피해자 등 대면상담경력 1년 이상인 자 2. 대면상담경력 10년 이상으로, 5년 이상의 집단상담경력을 갖춘 자 3.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 대면상담경력 3년 이상인 자	

주 : 1. 대면상담경력 : 주 3회 이상, 1일 4시간 이상 대면상담 경력
2. 상담경력 : 주 1회 이상, 1일 2시간 이상 전화·면접 상담경력
3. 집단상담경력 : 5인 이상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이상, 연간 10회 이상 상담한 경력
4. 관련분야 : 법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사회사업학, 여성학, 상담학, 의학, 간호학, 범죄학 등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역디성센터로 표기)

1 사업 개요

가. 목적

-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에 의한 심층 상담, 삭제지원 및 수사 동행,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
-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교육·홍보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교류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및 피해 예방 대응체계 강화

나. 법적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다. 지역디성센터 업무(법률 제7조의4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조의10)

-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접수·상담 및 사후관리
 - 피해자 의료·법률 연계 지원, 수사기관·법원 동행
 - 피해자 맞춤형 치유회복프로그램 제공
-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모니터링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및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및 예방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교류
- 불법촬영물 등의 피해자 지원 통계 작성 및 관리

라. 지역디성센터 현황('26년) : 총 17개소

○ 17개 시도에 17개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황('26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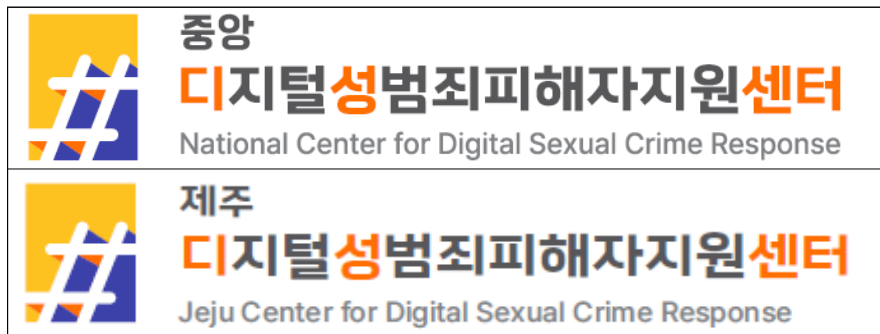
구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기관
중앙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	서울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부산	부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부산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대구	대구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대구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인천	인천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재)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광주	광주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복지사업위원회 (광주YWCA통합상담지원센터)
대전	대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대전YWCA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울산	울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성평등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세종	세종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증촌종합복지센터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경기	경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강원	강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함께하는공동체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충북	충북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남	충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우리가족
전북	전북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주성폭력상담소)
전남	전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행복누리 (목포여성상담센터)
경북	경북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포항여성회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경남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경남여성회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제주	제주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제주YWCA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마. 명칭 및 엠블럼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성폭력 방지법」 제7조의4에 근거하여 법에서 규정한 피해접수, 상담, 삭제지원 등을 제공하는 기관임을 알리는 명칭 및 엠블럼 적극 사용

※ 「성폭력방지법」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 및 지역)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엠블럼 〉



(참고) ‘#’ 기호의 의미 : 여성인권 및 디지털 공간에서의 안전 보장

‘#’(해시태그, 핵심어표시)는 디지털 시대의 상징적인 기호로, 온라인상에서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기관의 목표와 조화를 이룸. ‘#’는 연결과 결합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기호임

- 연대(Solidarity) : ‘#’의 교차 선은 여러 사람이나 단체가 함께 모여 힘을 합치는 연대의 모습 상징
- 약속(Promise) : ‘#’의 견고한 구조는 약속의 단단함과 의지를 표현
- 보호(Protection) : ‘#’의 격자 모양은 보호막이나 안전망을 연상
- 연결(Connection) : ‘#’의 사람들과 정보를 연결하는 도구로서의 이용성
- 신뢰(Trust) : ‘#’의 안정적인 격자 구조는 신뢰의 기반을 표현
- 유대감(Bond) : ‘#’의 교차 선들은 사람들 간의 유대와 관계를 시각화

2 지역다성센터 설치·운영기준

가. 설치·운영 주체(법률 제7조의4 제3항)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음

나. 설치·운영 기준(시행규칙 제2조의9 제3항 및 [별표1])

○ 설치 기준

- (사무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제3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업무용 책상, 컴퓨터 등)를 갖추어야 한다.
- (상담실) 상담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과 설비(칸막이, 방음장치 등)를 갖추어야 한다.
- (비상재난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 실정에 맞도록 비상재난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운영 기준

- (장부 등의 비치)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사무실에 갖추 두어야 한다.
 - 1) 지역다성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2)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 서류
 - 3) 지역다성센터의 운영일지
 - 4) 지역다성센터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 5) 예산서 및 결산서
 - 6)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장부
 - 7) 금전·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 서류
 -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 송신·수신한 문서철
 - 9) 상담 등 지역다성센터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 및 서류
- (회계처리)
 - 1) 지역다성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과 그 밖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기부금품은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회계 처리해야 한다.

○ 기타 사항

- 지역다성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분류(‘25.7.28.) 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등록·운영 등을 위한 제반사항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

※ 시설 관련 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02-2077-3944)

- 필요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른 ‘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특례’ 적용 가능

다. 조직·운영 사항(시행규칙 제2조의9 제4항)

- 지역다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가. 위탁 주체(법률 제7조의4 제4항)

- (특별·광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나. 위탁 가능 대상(법률 제7조의4 제4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법인 정관에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과 관련한 목적이 명시된 기관 또는 정관에 관련 목적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다. 위탁 방법(시행규칙 제2조의11)

- 시·도지사가 지역다성센터를 위탁하여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
 - 1) 지역다성센터 설치·운영 기준 충족 여부
 - ※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9제3항 [별표1]
 - 2) 지역다성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충족 여부
 - ※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별표1] 1. 일반기준 나목 및 제2호 마목
 - 3)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업무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 ※ 「성폭력방지법」 제25조에 따른 평가 결과 반영('28년 이후)
 - 4)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라. 위탁 계약의 내용

- 1) 수탁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 2) 위탁계약기간
- 3) 수탁기관의 공간 및 설비
- 4) 수탁기관의 업무내용
- 5)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 ※ 「성폭력방지법」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침 규정 준수 포함
- ※ 시·도지사는 국비지원 대상 선정 시 운영주체(법인 등)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여부 확인 필요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 위탁이 변경될 시, 시·도지사와 신규 수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의 종사자 고용승계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8)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및 상담기록 이송에 관한 사항

- ※ 위탁이 변경될 시, 시·도지사는 법 제7조의3제6항에 따른 각종 기록 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기존수탁센터에서 보관 중인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및 상담기록 등을 피해당사자 등 삭제지원요청자의 동의를 얻어 소관 지자체의 감독 하에 신규수탁센터로 이송토록 조치

9)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 (포함 사항)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위탁 계약이 해지되며 위탁 계약기간 중에 수탁기관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계약 해지 가능

10) 기타 수탁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마. 위탁 결과 고시 및 보고

- 시·도지사는 지역다성센터 운영을 위탁 받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의 명칭,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공보에 고시(시행규칙 제2조의11 제2항)
- 시·도지사는 지역 다성센터의 위탁 운영 기관을 선정·변경한 경우, 위탁 운영 개요를 위탁계약 후 2주 내 성평등가족부에 보고([서식42 참고])
 - ※ 위탁 개요 : 수탁기관 현황(수탁기관 명칭, 대표자, 주소, 기관 유형, 종사자 현황), 위탁기간, 고용승계 현황 등
 - ※ 시·도에서 지역 다성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 운영 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26년에 한하여 기존 수행방식(보조사업)으로 운영. 다만, '27년부터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위탁 운영에 대한 제반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운영

가. 종사자의 배치기준

○ 지역여성센터의 장 1인 / 팀장 1인 이상 / 팀원 1인 이상

- 예산,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센터장은 팀장을 겸임*할 수 있음

* 센터장은 단독 전담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여성센터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역여성센터의 장은 법인 대표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여성폭력 피해지원 업무를 하는 시설의 장이 겸임할 수 있음. 단, 센터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나. 종사자의 자격기준(시행령 제7조 및 별표1)

구 분	내 용
자격 기준	①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2호)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센터장〉 •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여성학, 사회학, 법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 또는 컴퓨터 공학 등의 정보통신·전산 등의 분야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학위와 성폭력등 방지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박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등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둘 이상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력기간을 합산한다)

구 분	내 용
자격 기준	〈팀장〉 •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여성학, 사회학, 법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 또는 컴퓨터 공학 등의 정보통신·전산 등의 분야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학위와 성폭력등 방지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 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등에서 임직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둘 이상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력기간을 합산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팀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등에서 임직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둘 이상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력기간을 합산한다) ②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및 팀원은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성폭력방지법」 제19조의2에 따른 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 2011년 이전 종전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훈련시간(64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

구 분	내 용
결격 사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으로서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으로서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비고) 그 밖에 지역다성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참고) 종사자 결격조치 관련 시스템 활용

- (국가 및 지자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조회
 - (국가·지자체 외)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통한 조회
- ※ 결격조치와 관련된 관련법령을 명확하게 등록하여야 함

다. 종사자 채용 및 임면보고 등

○ 종사자 채용

-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 시 임금·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함
 - ※ 공정한 채용을 위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권고(외부인원 50% 이상), 이 경우 법인 임직원은 내부위원으로 간주
 - ※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해 공개 채용 과정에서 종교관련 정보, 가족관계, 출신지역 정보 등 개인정보 취합 금지
 - ※ 시행령 상의 종사자 개별 기준 충족 여부, 상담업무 종사자 교육훈련과정(100시간) 이수 여부 등 채용 시 수료증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필히 확인
 - 종사자 자격 중 각종 경력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영수증, 소득세 원천 징수부 등)를 첨부하여야 함. 단,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시설장의 서명 또는 직인으로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로 증명할 수 있음
 - ※ 지역디성센터 종사자가 다른 지자체 소속 지역디성센터로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여성폭력 관련 기관 중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종사하였던 종사자가 지역디성센터로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도 근속연한으로 인정함
 -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전제조건 :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 계약 체결,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등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경우)

○ 종사자 임면보고

- 종사자 채용 시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공문으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 종사자 채용 시 관련시스템에 따라 종사자 임면보고(사유 : 종사자 경력인정여부의 증명서류 제출 시 증빙자료로 활용)
- 종사자 결원 시 1월 이내에 신규 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함

○ 종사자의 대체 인력 지원

- 시설장은 종사자의 퇴사, 육아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신규 또는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등 적정 인력을 운영하여야 함
- 지역디성센터 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대체 인력의 자격은 지역디성센터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무료법률 지원 사업 활용 가능

- 지역디성센터 종사자가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억고소 등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성평등가족부의 무료법률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음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제 하에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전제조건〉

-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 기준을 충족시킬 것

가.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된 경우

※ 채용 당시 위 〈전제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등이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서 보직이 변경된 경우로 적용 가능

나. 동일한 설치·운영자가 각각 설치·운영하는 시설 간 인사이동

* 다만, 시설장으로 근무 중인 성직자가 소속 종교 단체의 인사 발령으로 타 시설의 시설장으로 인사 이동하는 경우, 해당 종교 단체를 「동일한 설치·운영자」로 볼 수 있음(‘21.1.1부터 시행)
(종교 단체의 인사 발령 문서 등 내부 의사 결정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다. 설치·운영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사무국*에서 근무하다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

* 법인 정관 또는 하위 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 및 정원 등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에 따름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팀장 및 팀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

- (요건)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6개월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절차) 특례채용은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팀장 및 팀원 채용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또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3차 공고시부터 적용 가능함
- (관리) 시설은 수습직원을 특례채용한 경우 이를 시·도에 즉시 보고하고 시·도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현장점검 시 채용의 공정성, 6개월 내 교육과정 이수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

라. 종사자 근무시간 및 복무

- 주 5일, 평일 8시간 이상 근무(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 ※ 시설별 종사자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설장 책임 하에 지역디성센터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선택제 운영 가능
 - ※ 센터장을 비롯한 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하며, 겸직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근무시간 중 대학출강 등 타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는 겸직으로 봄(소관 지자체는 겸직 여부 반기별 확인)
 - ※ 근무시간 중 디지털성범죄 대표 상담전화 1366으로부터 바로 연결되는 피해상담에 차질 없이 대응(종사자 간 상담시간 조정 및 이석 시 착신 권고, 출근 후 및 업무 중 온라인 신청 게시판 확인)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수사기관·법원 동행, 출장 상담,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의 고유 임무 수행 목적의 출장은 가능함
 - 이 경우 반드시 관련자료(근무상황부, 상담일지, 출장대장, 교육대장 등)를 비치하여 이를 증빙하여야 함
 - ※ 근무상황부, 출장대장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인사현황자료(출장현황, 휴가현황, 교육현황 등)로 대체 가능함
 - 잦은 출장으로 인해 피해자 상담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 분담 등에 관하여 형평성 있는 지역디성센터 자체 규정을 구비하여야 함
 - ※ 지역디성센터 종사자가 외출, 조퇴 등 이석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
 - 「성폭력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철저
 - 지역디성센터 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 ※ 특히, 지역디성센터 종사자의 외부강의시 지원사례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유의
 - 지역디성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수집 또는 제공할 수 없음
 - ※ 법령 위반 종사자는 「성폭력방지법」 제3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36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법령 위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78조(징계사유)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지자체는 지역디성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본래의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실시

마. 종사자 교육 및 역량 강화

- 법정 의무교육 필수 이수(별첨3)
- 신규 채용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신입입문과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센터장, 팀장, 팀원 등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8시간 이상 실시(연중)
 - 시행기관: 성평등가족부장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시·도지사(「성폭력방지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이러닝(동영상) 교육 콘텐츠 학습,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통합 워크숍 등 참석

가. 재무회계 원칙

- 지역다성센터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 지역다성센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장부에 기재 후 집행
-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는 5년 이상 보존

나. 국비지원 중단(보조금관리법 제31조의2)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여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성평등가족부에 서면보고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보조금관리법 제33조제3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성폭력방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 행정처분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 여부 검토

다. 2026년 보조금 지원 단가(국비+지방비)

(단위 : 천원)

구 분	국비	지방비
인건비(3명) 및 운영비	61,185천원 - 38,390천원×3명×50%=57,585천원 - 7,200천원×1식×50%=3,600천원	61,185천원 - 38,390천원×3명×50%=57,585천원 - 7,200천원×1식×50%=3,600천원
사업비 (프로그램비 등)	8,500천원 - 17,000천원×1식×50%=8,500천원	8,500천원 - 17,000천원×1식×50%=8,500천원
합 계	69,685천원	69,685천원

※ 개소당 총 지원 금액은 국비, 지방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국고보조율은 50%임

※ 각 지자체는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보조금 집행기준 사항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을 따름

가. 인건비 및 운영비

- 각 지자체 및 지역디성센터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되, 여건에 따라 국비 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음
 - ※ 단, 기존임금 저하 등의 종사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별도의 인건비 지급기준 등을 적용받는 종사자는 해당 기준에 의하며, 필요시 자체부담에 의거하여 추가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별도 인건비 지급기준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규직 등에 대해 별도 기준 적용 가능
- 종사자 인건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총액의 70~9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지역디성센터 개소당 3명의 인건비를 지원함
 - 인건비는 기본급,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초과·야간·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함. 다만, 2026년도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은 2026년 기준 최저임금액(10,320원×209시간 = 2,156,880원) 이상이 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은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기본급에는 포함하지 않음
 - 중도 퇴직자 및 신규 채용자 인건비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 일할계산 산식: 월 고정급(보험료 제외) ÷ 209시간 × 8시간 × 월 근무일수
 - ※ 월 근무일수는 중도 퇴직일 또는 신규 채용일이 해당하는 월의 근무일수를 말함
 - 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적립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반환해야 함
- 운영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총액의 10~3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항목을 포함함
 - 종사자 상해보험료(1인당 보험료 연 5만원 이내)
 - 수용비(인쇄비, 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기관 운영 관련 홍보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PC 등 통신시설 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PC 등 장비·물품의 임차료 등

- 출장비(일비 및 교통비) 지급

〈여비 집행 기준〉

- ① 근무지 내 : 일비 4시간 이하 10,000원, 4시간 초과 20,000원
- ② 근무지 외 : 일비 25,000원, 식비 25,000원, 교통비 실비지급
 - ※ 근무지 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왕복)가 12km미만인 출장을 의미함. 출장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의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함
 - ※ 근무지 내 출장 시에는 교통비 별도 지급하지 않음
 - ※ 근무지 외 출장에 개인 차량 이용 시에도 연료비 및 통행비를 실비로 지급 가능
 - ※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 및 연도 중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회의비)

-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비 내에서 슈퍼비전 또는 종사자 소진 방지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치료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종사자 소진방지 관련은 연간 1인당 30만원 범위 내 사용 가능)

※ 지원 가능 항목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치료, 개인 및 집단 상담·심리치료, 힐링 프로그램 교육 등 프로그램화된 것(지역디성센터 자체 프로그램 포함)은 참여지원 가능(단순 여행이나 영화 관람 등은 지원 불가, 단 여행·영화관람도 소진방지를 위해 프로그램화한 경우 가능)

○ 운영비 지출원칙

-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지도·감독
-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부당 사용사례가 적발된 경우, 감사 등을 실시하여 환수 및 징계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분
- 지역디성센터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지역디성센터 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 (개인적으로 사용 금지)

※ 보조금 전용카드 등에서 발생한 포인트 등은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보조금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나. 사업비(치유회복프로그램 등)

- 사업비는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피해자 의료비지원, 예방교육, 홍보비 및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집행
-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은 ‘치유회복프로그램 세부 운영지침(별첨 1)’을 따름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단가 및 절차 준용(누적금액 산정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비에서 집행한 의료비를 포함하여야 함)
-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지원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리플릿, 팸플릿 등의 제작·배포 비용을 위해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 비용 지출 위해 연간 사업계획서에 관련 계획 포함되어야 하며 실적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다. 유의사항

- 운영비(관리비 등) 및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여부는 향후 지역다성센터 운영 평가에 직접 반영되므로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함
- 시·도는 지역다성센터로부터 연간 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서) 및 지급신청을 받을 때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사업비 연간 지출 계획이 포함되도록 집행 안내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사업비를 활용하여야 함('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유관사업 예산으로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 전체를 환수할 수 있음
- 보조금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 부정수급 등 사유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처분을 받은 경우, 성평등 가족부 장관은 반환 대상 보조금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함(「보조금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관련) 〉

제재부가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나.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라. 행정사항

- 사업계획 변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되, 단순한 프로그램 내용횟수 등의 변경은 지역디성센터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 단 “개별상담”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변경은 불가함
- 현장점검 실시
 - 시·도는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시·도는 관할 지역디성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일지 등을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불가피하게 상담일지 제출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 상담일지 등 피해지원 관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역디성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시·도)의 담당공무원이 지역디성센터 운영실태, 이용자 및 운영비 집행상황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디성센터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함

마. 보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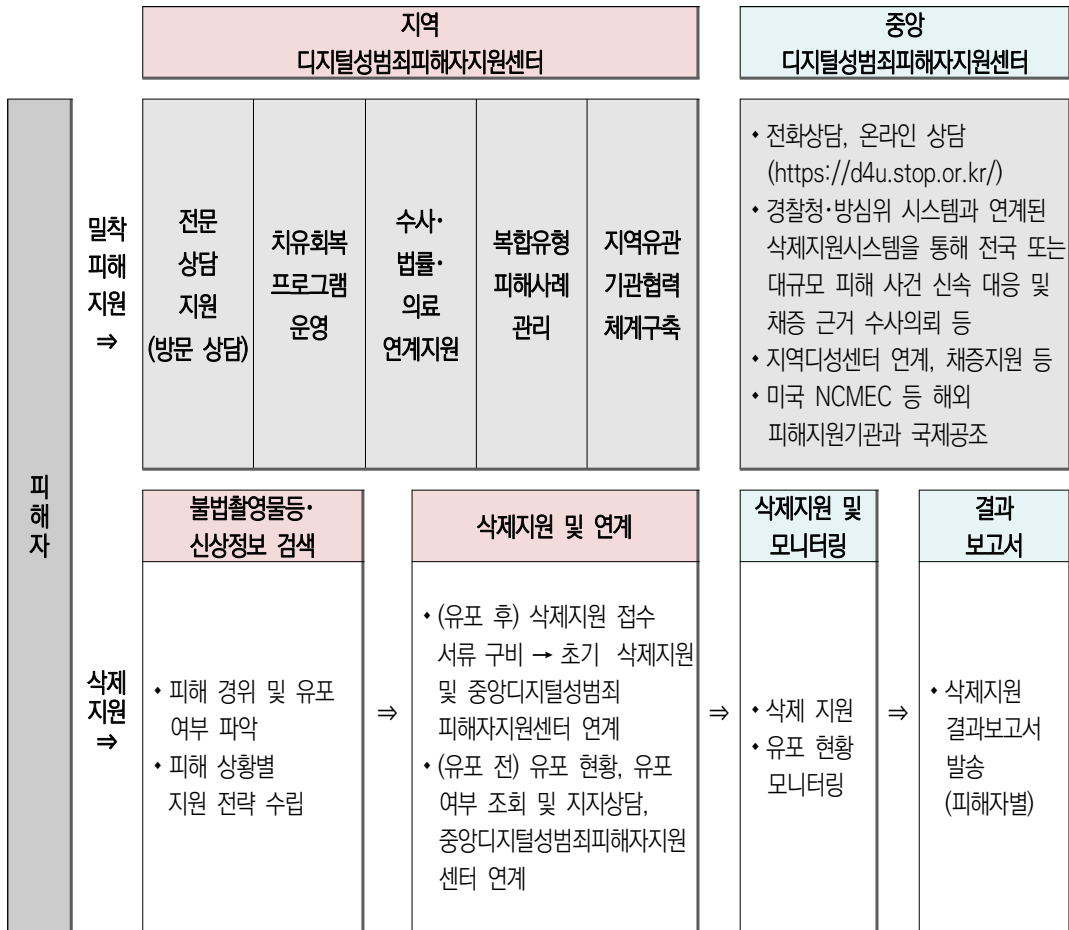
- 운영실적 및 정산 보고
 - 제출자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제출자료 : 지역디성센터의 분기별 운영실적, 보조금 정산내역 등
 - 제출시기 :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은 4, 7, 10월의 각 10일까지, 상·하반기 총실적 및 정산내역은 차년도 1월 30일까지 제출
 - 제출처 : 성평등가족부(디지털성범죄방지과)
 - ※ '26년에 변경되는 운영실적 서식 및 실적 입력 기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현장점검(시·도) 결과 보고
 - 시·도는 3분기 이내에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3분기 운영실적 제출 시 그 결과를 함께 제출
- 「보조금관리법」 위반에 따른 국고보조금 중단 사유 발생, 「성폭력방지법」 등 법령 위반으로 지역디성센터 운영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성평등가족부에 보고

7 지역디성센터 업무 안내

가. 계획수립 : 지역디성센터는 보조금 신청 시 연간 사업계획서 제출

나. 피해 지원 업무 및 지원 대상자

○ 업무 절차



* 지역 및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상호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전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및 일상회복 지원을 원스톱 지원 체계로 수행

○ 지원 대상자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 미성년인 피해자에게 상담, 삭제지원 등 원활한 피해 지원이 어려울 경우, 법정대리인등의 동의 없이 본인의 동의만으로 피해 지원 가능

※ (참고사항) 「(경찰청) 수사규칙」 개정('25.10.31.)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일 때 피해자 진술 거부 등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등에 수사 진행상황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음(제13조 제3항)

다. 지역 - 중앙 디성센터 연계·협력

- 피해지원 연계가 필요한 경우 보안을 위해 중앙 및 지역 디성센터는 '연계기관용 접수' 창구를 통해 관계 서식 송부 및 상호 소통을 하여야 함

※ 연계기관 이용자 등록 후 사용 가능(등록 진행 : 중앙디성센터 상담연계팀(02-735-8994))

- 삭제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지역디성센터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디성센터와 협의하여 중앙-지역 시스템 API 연계 추진

- 정보통신사업자 사전조치 지원을 위한 방심위 '공공 DNA DB' 구축 협조, 선진 삭제지원 기술 공유, 경찰청의 센터 삭제지원 의뢰 절차 간소화 등 도모

※ 시스템 구축 계획이 있는 지역디성센터는 사전에 중앙디성센터와 API 연계 운용 협의

- ▶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인터넷 사업자 등 정보통신사업자는 인터넷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에 따라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 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사업자의 이러한 사전적 자율조치(DNA 필터링)를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공 DNA DB'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음(20년~)

※ "디지털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9.11월, 성평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에서 수집된 불법촬영물등은 시스템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공공 DNA DB'로 구축·저장됨

- 분기별 간담회, 종사자 워크숍 등을 통해 중앙-지역의 현안 및 정보 공유, 상담 사례·방식 공유,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위한 상호협력을 도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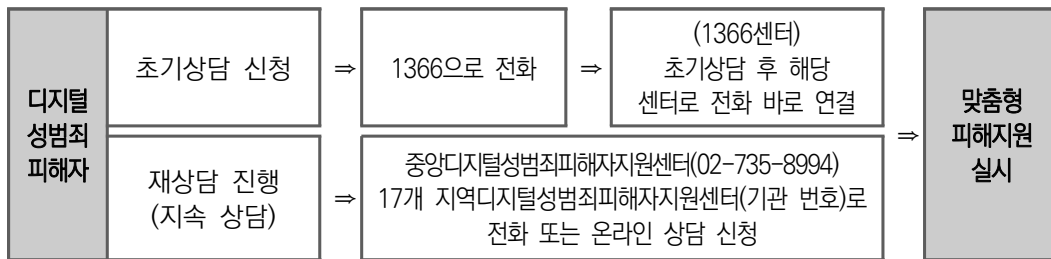
〈지역-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협력 사항〉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삭제지원 접수·연계 *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유포 여부 확인 * 삭제지원 접수서류 및 자료 확보 → 초기 삭제지원 및 중앙디성센터 삭제지원 연계 • 피해자 수사·법률·의료 등 사후지원 지속 * 지원별 실적 관리 및 보고 • 디지털성범죄 복합유형 피해사례 관리 • 지역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상담 등 매뉴얼 배포 및 직무교육 실시 • 지역-중앙 디성센터 삭제지원 연계 체계 구축 및 지원 * 삭제지원 실시 현황 및 결과보고서를 지역디성센터와 공유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사후지원 지속 및 지역디성센터 서비스 연계 강화 • 지역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원

라. 피해상담

- 피해지원 기관별 상담번호를 모르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업무시간 중 ‘1366 - 지역디성센터 바로 연결 서비스’ 운영
- 종사자 간 상담시간 조정, 자리 이석 시에는 착신, 온라인 신청 게시판 확인 등을 통해 1366으로부터 지역디성센터로 바로 연결되는 상담에 대응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체계 〉



마. 삭제지원(법률 제7조의3 및 시행규칙 제2조의6)

1) 삭제지원 요청(시행규칙 제2조의6 제3항)

- 삭제지원요청자 :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 지원대상자 : 법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
- 삭제지원요청자가 요청 시 구비해야하는 서류
 -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만)
 - 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피해당사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경우만)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인 경우에도 단독으로 삭제지원 요청 가능하며, 상세 업무 요령은 중앙 디성센터에서 제공하는 삭제지원 매뉴얼 참조

2) 삭제지원 대상

-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정보통신망(인터넷)에 유포되어 있는 불법촬영물등과 그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관련 모든 정보

- (불법촬영물등) 불법촬영물, 합성·편집물(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 관련 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및 제14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지원
- (피해자의 신상정보) 불법촬영물 등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3) 삭제지원 절차

(1) 중앙다성센터에서 제공하는 삭제지원 매뉴얼 참조하여 삭제지원 수행

※ 운영지침에서는 삭제지원 절차의 개략적 흐름을 설명하고 있으며, 삭제지원(보안)시스템 구축 여부에 따른 차이 유의하여 삭제지원

(2)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유포현황 등 상담

- 유포여부, 유포협박, 유포불안 등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 삭제지원 및 유포 모니터링을 위해 ①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등 원본 ② 다운로드 받은 유포물(불법촬영물등의 사본) ③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유포 게시물의 URL(링크 주소), 제목, 키워드 등 확보 여부 확인
 - ※ 개별 PC에 불법촬영물등의 영상물 원본 또는 사진(이미지 파일) 원본 등을 다운로드 및 저장 보관하여서는 안 됨

(3) 삭제지원 등에 필요한 관계 서식 수령

- 피해당사자를 대리하여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유포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36]’, ‘대리삭제 동의서(위임장)[서식 37]’ 등 관계 서식 수령
 - ※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 증명 서류,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증명(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 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
 - ※ 개인정보의 제3자(중앙다성센터, 무료법률지원사업 수탁기관 등 피해지원기관) 제공 동의는 삭제 지원을 포함한 수사·재판·법률·의료 연계 시 필요함을 필수적으로 안내
 - ★ (삭제지원(보안)시스템 미구축 센터) 이하 다른 절차들을 생략하고 5)의 ‘중앙다성센터 삭제지원 연계’ 절차 수행

(4) 유포현황 또는 유포여부 모니터링 지원

- DNA 검색, 인터넷에서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 플랫폼(성인사이트, SNS, P2P,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웹하드 등)별로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유포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유포 게시물의 URL 확인

- 가해자의 유포협박이 있거나 피해자가 유포불안을 느낄 시 불법촬영물등 원본을 활용하여 유포여부 모니터링 지원 가능

(5) 사업자에 직접 삭제요청

-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가 유포된 해당 플랫폼에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 요청서[서식 38]’에 따른 내용을 작성하여 직접 삭제요청
 - ※ [서식 38]은「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별지 서식으로「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불법촬영물등 신고 창구에 동 별지 서식을 전자 웹폼 형식으로 게재하거나 첨부하여 신고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신고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의 경우, 자체 신고창구를 마련·안내하거나 신고 창구가 없을 수 있으므로, 해당 플랫폼의 자체 창구(1:1 문의 등) 또는 연락 가능한 메일로 삭제요청

(6) 삭제요청 불응 시 방미심위에 심의요청 또는 중앙디성센터에 삭제지원 연계

4)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요청

- 불법촬영물등 삭제·접속차단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의거 방미심위 (www.kocsc.or.kr) ‘디지털성범죄 신고’ 창구를 통해 심의요청
 - ※ 방미심위 심의요청 시 필수 제출 정보 : 심의대상 URL, 피해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위임장)

5) 중앙디성센터 삭제지원 연계

- 중앙디성센터 온라인 게시판(d4u.stop.or.kr)의 ‘연계기관용 접수’ 창구에 웹폼으로 게재된 ‘연계 의뢰서[서식 39]’ 작성 및 삭제지원요청자로부터 수령한 [서식36] 및 [서식37] 첨부
 - ※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증명 또는 관계증명 서류, 지원대상자 신분증 사본 등 함께 송부
 - ※ 향후 중앙 디성센터 홈페이지 개편(협업 게시판 신설 등)으로 연계 방식 변화가 있을 경우, 중앙 디성센터에서의 안내에 따라 연계 수행
- (삭제지원시스템 구축 센터)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피해 정보의 수집 및 보관,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의 삭제 요청 및 확인·점검(유포·재유포 모니터링), 일상회복 지원 등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지원 수행
 - 삭제요청에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가 필요한 경우 중앙디성센터로 적극 삭제지원 연계
 - ※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면서 삭제요청에 불응하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 중앙 디성센터에서 ①‘불법성증명공문’ 발송 ②해외 피해지원기관(美NCMEC, 英IWF 등)과의 핫라인 구축을 통한 국제공조 등의 삭제지원 방법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음

- (삭제지원시스템 미구축 센터)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유포 게시물의 URL, 제목, 키워드(유포 검색 예상어) 등을 확보한 후 '연계기관용 접수' 창구를 이용하여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URL 등 공유 및 사례 연계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유포 게시물 URL을 활용한 불법촬영물등 원본 확보 전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지원을 수행할 경우, 원본 확보가 어려움

- 삭제지원요청자에게 불법촬영물등 원본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온라인 게시판(d4u.stop.or.kr) '신청 확인하기' 창구에 접속하여 반드시 등록해야함을 안내

※ ①인터넷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등 원본 ②다운로드 받은 유포물(불법촬영물등) ③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유포 게시물 URL(링크 주소) 중 한 가지 이상 반드시 필요함을 삭제지원요청자에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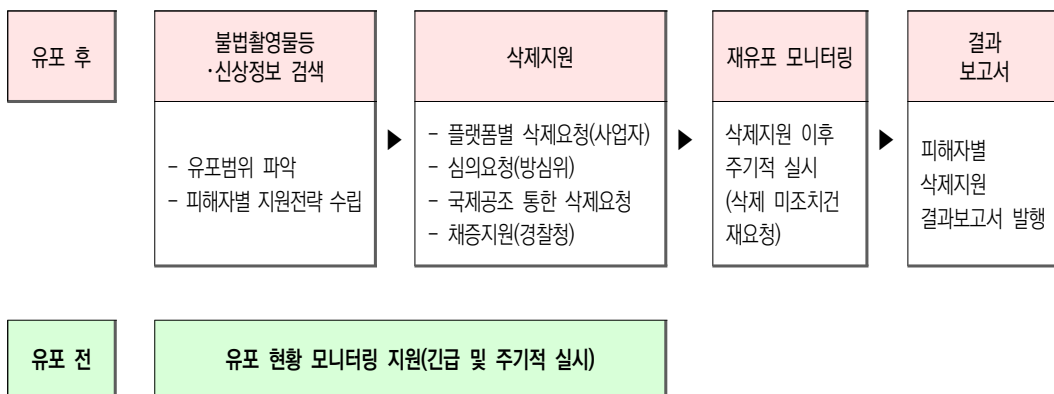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삭제지원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확인 온라인 게시 주소: <https://d4u.stop.or.kr/>

- 삭제지원 결과보고서는 최초 지원 시작 후 3개월간은 긴급지원 기간으로 매월 1회(총 3회) 발송, 이후 지속적 삭제지원 및 유포현황 모니터링하고 연 1회 3년 간(총 3회) 보고서 발송
- 예시) '26.5.1. 신고 접수했다면 다음 달 10일부터 3개월간(6.10, 7.10, 8.10) 긴급 지원 결과보고서 발송, 이후 3년간('27.6.10, '28.6.10, '29.6.10) 연간 결과보고서 발송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의를 통해 불법촬영물등 대상자의 신상정보만 유포된 경우는 신상정보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적극 수행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업무 흐름도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개

- 주요 업무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365일 상담 및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삭제지원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및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상담 신청 및 방법
 - 상담신청 : 1366(기관번호 02-735-8994)
온라인 게시판(<https://d4u.stop.or.kr>)
 - 상담시간 : 365일(전화상담 및 온라인 게시판 상담신청)
- 삭제지원 절차: 초기 상담을 통해 삭제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유포 관련 자료와 삭제지원 구비서류 수령 ⇒ 플랫폼(성인사이트, SNS, P2P,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웹하드 등)별로 유포 현황 검색 후 삭제 요청 ⇒ 최초 지원 시작 후 3개월간은 긴급지원 기간으로 매월 1회(총 3회)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발송 ⇒ 이후 지속적 삭제지원 및 유포현황 모니터링(연 1회 삭제지원 연간결과보고서 발송)
(※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 접수 시 별도의 결과보고서는 발송되지 않음)
- 삭제지원 기간

지원 대상		삭제 지원	모니터링
내담자		3년	3년
선제적 삭제지원	수사기관	3년	1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구	-

※ 삭제지원 및 모니터링 기간 연장 가능

〈 삭제지원 관련 용어 설명 〉

- DNA검색 : 원본 영상물(이미지)에서 사람의 유전자처럼 고유한 특징인 DNA를 추출하여 이미지가 변형(흑백, 반전, 화질, 배속, 자막추가 등)이 되더라도 유포 사이트에서 동일한 영상의 URL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기술
- 모니터링 : 유포 여부 확인 단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DNA검색 등을 활용하여 삭제요청 등에 필수적인 피해촬영물 등이 유포된 URL을 확보하는 과정
- AI기반 텍스트 마이닝 :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집된 비정형 텍스트를 자연어 처리 기법 등의 처리를 통해 정형화하고, 정형화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성착취 의심 정보를 탐지하는 기술

바. 의료지원 연계(법률 제27조)

-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지원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과 연계하여 지원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에서도 의료비 지원 가능

사. 법률지원 연계(법률 제7조의2, 시행령 제4조의2)

-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무료 소송, 상담 등 법률구조 지원은 성평등가족부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 ※ 성폭력 피해 무료법률지원사업 수탁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 위기센터,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 피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 동행 지원

〈 2025년 무료법률지원사업 위탁기관 〉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5)
- 한국여성변호사회(☎ 02-595-2097)

아.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 세부 운영지침은 ‘별첨1’ 참조

- (목적) 디지털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손상된 심신 및 정서의 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신속한 복귀를 도모
- (사업내용)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 ※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 (지원내용)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로 및 상담료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심신회복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자. 피해 예방 및 지원 교육·홍보(법률 제7조의4)

-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
 -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활동 실시, 지역여성센터 및 지원 프로그램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케이블TV, 반사회보 등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 활동 실시 등

차.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법률 제7조의4 및 시행규칙 제2조의10)

-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및 피해예방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협력체계 구축·교류
 - 지방 경찰청(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지역 피해지원기관(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범죄피해자지원기관, 스마일센터 등)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위한 핫라인 및 협의체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실무회의 등 운영
 - 광역 단위로 구축된 지역여성센터가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수행기관의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역사회 내 디지털성범죄 발생 시 통합대응을 위한 체계 마련
 - 정보교류,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목록 관리, 피해사례 초기 적극 발굴·연계 및 복합유형 피해사례 관리 등

가. 각종 기록 등의 보존 및 관리(법률 제7조의3 및 시행규칙 제2조의6)

- 상담 내용은 반드시 상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
-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그 상담기록은 법령 또는 지침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수집·보관을 지원하되, 삭제지원요청자의 폐기 요청이 있는 경우 확인서를 받아 즉시 폐기
 - ※ (불법촬영물등)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에 의한 불법촬영물·합성편집물(복제물 포함) 및 신상정보와 그 상담기록 수집 및 보관: 10년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36]’를 받아 수집·보관
 - ※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선제적 삭제지원의 경우, 아래 기간을 준수하여 수집 및 보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그 복제물 및 신상정보와 그 상담기록 : 영구
 - ※ 「성폭력방지법」시행규칙 제2조의6 제4항 제1호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
 - ※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강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전연령 대상 강간 살인죄 등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담 관련 자료 폐기에 신중하여야 함. 단, 피해자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피해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자료 폐기 가능
 -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불법촬영물·합성편집물(복제물 포함) 및 신상정보와 그 상담기록 : 10년
 - ※ 「성폭력방지법」시행규칙 제2조의6 제4항 제2호
 - ※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삭제지원한 경우이더라도 지원 과정에서 지원대상자가 확인되면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36]’ 수령
-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 5년 간 보관하되, 삭제지원 요청자의 폐기 요청이 있는 경우 확인서를 받아 즉시 폐기
 - ※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 제4항 제3호

가. 구상권 행사 주체 및 대상(법률 제7조의3 제4항 및 제5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을 행사할 수 있음

※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나. 구상권 행사 위탁(법률 제7조의3 제7항 및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삭제지원 및 구상권 행사의 업무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위탁 가능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정부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연기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민법」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다. 구상권 행사 자료 요청 등(법률 제7조의3 제6항 및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탁기관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 해당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요청 방법) 자료 요청의 목적, 자료 등의 범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상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요청

가. 프로그램 운영

- 상담 장소
 - 관련법상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장소
 - 상담내용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
- 상담 형태
 -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 일상적인 상담과 구별하여 피해자별로 개별화·전문화된 치유프로그램 적용
 - ※ 단,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보호시설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게 치유회복프로그램 구성 요망

○ 집단상담 운영 기준

가) 진행자

- 대상자 10인을 기준으로 주진행 1명, 보조진행 1~2인의 강사로 운영(아동 청소년, 장애인 집단인 경우 필요에 따라 10인 이하라도 보조강사 1~2인 가능)
 - 주진행자: 전문강사 II, III 중 1인이 진행
 - 보조진행자: 전문강사 I 기준으로 2인까지 활용 가능
(1인은 진행기록을 담당)
-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것은 일상적인 상담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전문성이므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강사를 적극 활용

나) 프로그램 운영 방법

(1) 집단 구성: 집단은 2~8명 내외

- (폐쇄집단) 종료 시까지 동일 성원으로 유지하는 폐쇄집단형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후에 신규 입소자 발생 시에 집단에 추가 가능
 - ※ 가능한 나이, 피해정도, 피해경험 등이 비슷한 그룹으로 구성
 - ※ 주제별로 운영할 때, 피해자의 연령(청소년 vs 성인), 결혼 여부(기혼 vs 미혼), 피해유형(친족 vs 비친족), 피해의 노출 여부, 피해자의 주요 증상, (원)가족과의 관계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 운영(예: 아동·청소년, 장애인 대상 집단상담의 경우 특성에 맞게 양육자와 집단 구성하여 운영 가능)

(2) 필수 회기: 최소 10회기 이상 운영

(3) 시간: 회기당 90분~120분 배정

(4) 운영방식

① 분산형 운영(매주 1회기씩, 15주간(대략 4개월) 진행)

② 예외적으로 통합형 운영 가능

※ 통합형 : 초기 집중형 운영으로 초기 친밀감과 정서적 안전감 확보 후 분산형을 운영하여 재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습득, 일상생활의 적응력 제고와 정체성 확립

(5) 상담기록 관리 : 프로그램별로 기록자를 지정하거나 보조강사 1인이 프로그램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여 편철

※ 강사의 강의계획서, 상담(치료)기록부, 단계별 프로그램 진행기록부, 사진자료 등을 기록·보관

(6) 사후평가 : 각 상담소는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실적보고 제출 시에 함께 제출

나. 프로그램별 운영기준

종 류	상담내용 및 목표	상담횟수 및 방법	강 사	운영 단가
개별 심리상담	- (목표) 피해자의 개별적 욕구와 필요 및 피해 상황에 따라 실시하며 심리적 안정과 생활 안정을 도모 - (내용) 개인별 상황에 따른 삶의 방향 탐색 및 지원 1) 치유 결정 2) 견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3) 기억 재생 4) 사실로 인정하기 5) 침묵 깨기 6) 내 책임이 아니란 걸 깨닫기 7) 내부의 어린아이와 접촉 8) 슬픔작업 9) 분노작업 10) 폭로 후 대면하기 11) 용서하기 12) 내면세계의 힘과 만나기 등의 단계로 진행 - (기타) 전문가 심리평가 및 정신과 치료 등 필요시 적용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사용) * 아동·청소년, 장애인의 경우 특성에 맞게 양육자 대상으로 개별 심리상담 지원 가능	- 1회 1시간 내외 - 횟수는 피해자 상황에 따라 조정 - 8~10회 진행 후 평가, 슈퍼비전 받은 이후 지속 할지 협의	전문(Ⅱ, Ⅲ)	전문Ⅱ : 50천원(1회) 전문Ⅲ : 100천원(1회)

종 류	상담내용 및 목표	상담횟수 및 방법	강 사	운영 단가												
여성주의 집단상담 -자조 (self-help)와 힘 돋우기 (empowerment)	- (목표) 성폭력 피해 경험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고, 성역할 분석, 힘의 분석, 주장훈련, 의식향상훈련, 인간관계기법, 독서요법, 재구성, 재명명 등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 * 피해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고 실현하며 성폭력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나아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게 됨 * 또한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확립하며, 성폭력의 개인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됨 - (내용) 삼리교육 및 행동 훈련* 등을 이용하여 자기이해와 관계형성을 도움 * 성교육, 집단토론, 집단 내 개인상담, 빈의자 기법, 내면화된 메시지 교환하기, 어린 시절 사진 보기, 읽기와 시청각 교육, 대인관계도 만들기, 신체작업, 비폭력대화 미술치료, 타로, 애니어그램, MBTI) ** 아동·청소년, 장애인 대상 집단상담의 경우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 구성	- 2~8인(연령, 피해 유형 등이 비슷한 그룹으로 구성) - 주 1~2회(1회 90분 ~120분 배정) - 최소 10회기 이상 운영 - 분산형 운영, 숙박형 불인정	• 주진행(1인) : 전문(Ⅱ, Ⅲ) • 보조진행 (2인) : 전문 (Ⅰ)	• 강사비 단가 <table><tr><td></td><td>최초 1시간</td><td>매1시간 초과</td></tr><tr><td>전문(Ⅰ)</td><td>50천원</td><td>15천원</td></tr><tr><td>전문(Ⅱ)</td><td>100천원</td><td>35천원</td></tr><tr><td>전문(Ⅲ)</td><td>150천원</td><td>50천원</td></tr></table> • 장소사용료(1회) 100,000원 다과비 1인(1회당) 7,000원		최초 1시간	매1시간 초과	전문(Ⅰ)	50천원	15천원	전문(Ⅱ)	100천원	35천원	전문(Ⅲ)	150천원	50천원
	최초 1시간	매1시간 초과														
전문(Ⅰ)	50천원	15천원														
전문(Ⅱ)	100천원	35천원														
전문(Ⅲ)	150천원	50천원														
심신회복 캠프	- (목표) 문화체험, 여행을 통해 자연과 접하여 정서 함양과 심리적인 휴식을 취하며, 집단 속에서 관계성 훈련, 친목도모와 유대감을 강화	- 10명 내외(자녀·양육자 등 가족 (보호자)동반 가능, 퇴소자 참여 가능) - 1박 2일~2박 3일	• 주진행(2인) : 전문(Ⅱ, Ⅲ) • 보조진행 (3~4인) : 전문(Ⅰ)	• 강사비 단가 <table><tr><td></td><td>최초 1시간</td><td>매1시간 초과</td></tr><tr><td>전문(Ⅱ)</td><td>100천원</td><td>35천원</td></tr><tr><td>전문(Ⅲ)</td><td>150천원</td><td>50천원</td></tr></table> 보조진행 1인당 70천원(1회) • 장소사용료 1회 150,000원 숙박비 2인 1실 140,000원 식비 1인 5식, 1식 15,000원 교통비 실비기준 다과비 : 1인 7,000원 기준		최초 1시간	매1시간 초과	전문(Ⅱ)	100천원	35천원	전문(Ⅲ)	150천원	50천원			
	최초 1시간	매1시간 초과														
전문(Ⅱ)	100천원	35천원														
전문(Ⅲ)	150천원	50천원														

종 류	상담내용 및 목표	상담횟수 및 방법	강 사	운영 단가
기 타	-(목표) 성폭력 피해를 직접 다루지 않는 심성 계발을 위한 일반 프로그램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인식하고 확산시키고 이끌어 내도록 긍정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한계성을 가진 개인의 행동이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사회적 상호 작용 기술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진로교육, 양성평등교육, 경제교육, 공예, 원예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춤/동작 치료, 자기방어훈련, 사이코소시오드라마, 분노 조절 프로그램, 인간관계와 자기 표현 훈련, 자존감 강화 프로그램, 감수성 훈련, 글쓰기작업, 말하기대회 등	- 전체회기의 20% 범위 내에서 필요 시 활용 * 단,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특성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 30%(발달 장애인의 경우 40%) 까지 가능 - 주 1회씩 8~10주간 진행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한 자로서 활동 경력 3년 이상인 자	최초 1시간 100천원, 매 1시간 초과 시 35천원

※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타 방법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 치유회복 프로그램 가이드북 (2020)' 참조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d4u.stop.or.kr) - 치유회복프로그램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초과근무 시간은 최대 3시간까지만 지급 가능
- 야간(18시 이후), 휴일 상담 시 상담료 50% 가산 지급 가능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소모품과 다과 구입 등은 기능하나, 재료비 외 비품 구입은 불가
- 치유회복프로그램을 개별 심리상담만으로 구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성이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개별 심리상담만으로 구성 가능
- 본 지침에 명시된 최소 기준을 준수하되, 피해자 및 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가능
- 숙박형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심신회복캠프를 활용하되, 심신회복캠프 이후 평가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프로그램별 동시 혼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다만, 피해의 특성, 증상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혼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자체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전문강사 자격기준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공통기준을 모두 갖추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여야 함.
단, 강사수급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공통기준 1, 2항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경험이 있고, 3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강사로 활용할 수 있음

구 분	자 격 기 준	비 고
공통 기준	1. 성폭력피해자 상담관련 교육(법정시간)을 이수한 자 2. 성폭력 피해자 상담에 100시간 참여한 자 3. 피해자 상담 슈퍼비전을 5사례 이상 하거나 받은 자	※ 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만 해당
1. 전문 강사 (I)	1. 대면상담경력 2년 이상인 자 2. 아동미술치료 등 아동심리치료·상담 1년 이상 경력자 (아동상담의 경우) 3.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자로서 대면상담 경력 1년 이상인 자	※ 상담경력 은 가정폭력· 성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분야 관련 상담임
2. 전문 강사 (II)	1. 대면상담경력 5년 이상인 자 2. 성폭력 피해자 집단상담경력 3년 이상인 자 3. 아동미술치료 등 아동심리치료·상담 3년 이상 경력자 (아동상담의 경우) 4.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집단상담경력 2년 이상인 자	
3. 전문 강사 (III)	1. 대면상담경력 10년 이상으로, 집단상담경력을 갖춘 자 2. 관련분야 박사 학위 이상으로 성폭력 피해자 대면상담경력 1년 이상인 자 3.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 대면상담경력 3년 이상인 자	

주 : 1. 대면상담경력 : 주 3회 이상, 1일 4시간 이상 또는 연 620시간 이상 대면상담 경력
2. 상담경력 : 주 1회 이상, 1일 2시간 이상 또는 주 2시간 이상 전화·면접 상담경력
3. 집단상담경력 : 2인 이상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이상, 연간 10회 이상 상담한 경력
4. 관련분야 : 법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사회사업학, 여성학, 상담학, 의학, 간호학, 범죄학 등

라. 강사의 기준

- 내부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개인에게 지급할 수 없음
 - ※ 내·외부 강사 비율은 시설 특성, 프로그램 대상 및 내용에 맞게 구성
 - ※ 동일법인 소속으로 동일 시·군·구내 소재하고 있는 상담소, 보호시설 등에서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상근 종사자가 동일 시·군·구내 동일법인 소속의 시설(보호시설·상담소)에서 강의할 경우 내부강사로 봄
- 강사 구성에 불가피한 경우 시설 자체 내부규정을 정하여 30% 범위 내에서 강사료 단가 조정 가능
- 상담·보호 및 지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유연근무·대체근무 등 탄력적 근무를 적극 활용
- 타 지역의 강사 활용 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숙박비 : 실비(서울 10만원, 광역 8만원, 기타 지역 7만원 한도 내)
 - 식 비 : 1일 25,000원
 - 교통비 : 실비(철도는 일반실 기준, 자동차는 실비 기준)

별첨2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실적 집계 기준

상담 지원	정보제공	- 센터 지원 내용 및 구비서류 안내 등 지원 전반과 관련한 문의 답변 및 정보를 제공한 경우
	지지상담	- 상담원이 직접 심리·정서적 지지를 제공한 경우 * 지지 상담이 치유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경우는 상담 실적에 반영하지 않음(중복집계 하지 않음)
	연계관련상담	- 연계를 위해 피해지원 기관 및 내담자와 소통한 경우 * 한 연계기관과 다회 상담한 경우에도 1회 집계
삭제 지원	직접삭제지원	- 개별 플랫폼 직접 삭제요청: 피해 촬영물 및 관련정보 유포 URL에 대해 삭제요청 스크립트를 발송한 경우
	연계삭제지원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삭제지원 요청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지원 연계 의뢰서를 발송한 경우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 인원수와 횟수 모두 기입 ※ 1인이 N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면 인원 : 1인 / 횟수 : N번으로 기입
수사 법률 지원 연계	수사관련상담	- 수사지원을 위해 수사기관 담당자와 연락한 경우 - 수사기관 연계를 위해 공문 접수한 경우
	법률관련상담	- 법률지원을 위해 검사, 변호사, 판사 등 담당자와 연락한 경우 - 법률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법률 관련 정보를 조회·문의한 후 내담자에게 안내한 경우
	채증지원	- 채증자료를 내담자 및 수사·사법기관 관계자에게 전달한 경우
	수사동행·연계	- 피해자와 관련된 수사(경찰/검찰)에 동행하거나 연계한 경우
	고소장작성지원	- 고소장 양식 또는 외부 변호사의 고소장 검토 내용을 전달한 경우
	변호사선임 (연계)	- 무료법률구조사업 변호사 선임 연계를 위해 연계의뢰서를 발송한 경우 - 국선변호사 선임 및 변경을 위해 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기타	- 기타 수사·법률과 관련한 지원을 제공한 경우
의료 지원 등 기타 연계	병원지원연계	- 의료비와 관련한 지원 연계를 위해 연계의뢰서를 발송한 경우
	보호시설입소	- 보호시설 입소 지원 연계를 위해 연계의뢰서를 발송한 경우
	기타	- 기타 지원 연계를 위해 연계의뢰서를 발송한 경우

※ 시·도비로 수사·법률·의료를 직접 지원하는 경우에도 관련 실적을 연계지원 실적에 포함시킬 것

별첨3 법정의무교육 안내

구 분	법적근거	대 상	시행주체	이수방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 평등법 제13조	전 종사자	고용노동부	직원연수·조회·회의, 사이버 교육(연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전 종사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privacy.go.kr) 참고
퇴직연금제도 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고용노동부	온라인, 집합, 서면, 상시게시(연1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	전 종사자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연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 촉진법 제5의2	전 종사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edu.kead.or.kr) 참고(연 1회 1시간 이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협회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8시간 이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노인학대 신고자의무교육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근로기준법	전 종사자	고용노동부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교육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전 종사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연 1회 이상)

※ 시설장 및 종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수하도록 노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 I. 가정폭력 상담소
- II.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시설)
- III. 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 IV.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 V. 여성긴급전화 「1366」
- VI. 『긴급피난처』 지정·운영
- VII. 가정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 의료비 지원
- VIII.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1 상담소 개요

가. 국비지원 상담소 현황

('26년 1월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개소수	123	11	10	4	6	4	3	3	20	8	5	7	8	8	9	13	3	1
통합상담소	55	2	6	3	4	2	3	3	6	5	2	4	3	4	3	2	2	1
가정폭력 상담소	68	9	4	1	2	2	0	0	14	3	3	3	5	4	6	11	1	0

※ 장애인 상담소 4개소 : 일반 1개소(광주), 통합 3개소(부산1, 대구1, 제주1)

나. 법적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및 제14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다. 가정폭력 상담소의 업무(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1) 가정폭력 상담소(이하 일반상담소)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단, 정신질환자나 심각한 폭력성이 있는 내담자는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시설 등 유관기관과 연계
 -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지원 상담을 위한 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 보호
- 가정폭력·스토킹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 지원 : 열람·발급 제한에 필요한 서류 중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가 포함됨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침 참조
- 전자소송의 사전포괄동의 안내 :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시, 전자소송의 사전포괄동의 방법 안내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하며, 유효기간 유의 및 만료전 연장 주의 권고안내
-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아동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 제도 지원 : 가정폭력·스토킹 피해학생의 전학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등 상담사실 확인서’가 포함됨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침 참조
-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부·열람 제한 지원 :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행위자 본인 및 제3자의 증명서 등을 교부·열람·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자 개인 정보는 현출되지 않은 채 교부·열람·발급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침 참조
- 가정폭력으로 취업, 직업훈련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취업 등 자립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
- 가정폭력 중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피해아동 등의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지원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거부(제외)제도 안내

구분	등재 거부	등재 제외
내용	특정인에게 피부양자 자격이 등재되지 않도록 거부하는 제도	특정인 구분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이 등재되지 않도록 거부하는 제도
신청방법	피부양자 등재거부(제외) 신청서 작성 및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사 제출	

※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행 등 미성년 피해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 이후 퇴직시 자동으로 부모(가해자)에게 피부양자로 연계되어 피해자 자격변동 내역이 전달됨(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한 부모에게 자동연계)

※ [참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과 사례관리를 위해 ‘2024 여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활용 요망

2)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이하 '통합상담소')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 피해 신고 접수 이에 관한 상담
 -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임시보호 및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 인도
 -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 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 폭력 예방과 방지에 관한 홍보 및 교육
- 그 외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 지원, 전자소송의 사전포괄동의 안내
 -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아동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 제도 지원 등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거부(제외)제도 안내

구분	등재 거부	등재 제외
내용	특정인에게 피부양자 자격이 등재되지 않도록 거부하는 제도	특정인 구분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이 등재되지 않도록 거부하는 제도
신청방법	피부양자 등재거부(제외) 신청서 작성 및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사 제출	

※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행 등 미성년 피해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 이후 퇴직시 자동으로 부모(가해자)에게 피부양자로 연계되어 피해자 자격변동 내역이 전달됨(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한 부모에게 자동연계)

※ [참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과 사례관리를 위해 '2024 여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활용 요망

2 상담소 설치·운영기준

가. 상담소 설치·운영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나. 시설 설치기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의2)

구 분	내 용
일반 상담소	○ 규모 : 최소 49.59m² 이상 ○ 구조 및 설비 : 사무실, 면접상담실, 전화상담실, 보호실(임시보호업무 수행 필요 시), 비상재해대피시설 등 - (장애인피해자 지원시설의 경우)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시설 구비 ○ 종사자 수 : 상담소장 1인, 상담원 2인 이상 * 국비지원 상담소의 경우 상담원 3인으로 운영 (근로기준법 등 준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 규모 : 최소 79m² 이상 ○ 구조 및 설비 - 사무실 1실, 상담실 2실, 전화상담실 1실, 집단지도실(심리치료실 병용) 1실 이상 설치 - (장애인피해자 지원시설의 경우)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시설 구비 * 사무실 1실, 상담실 2실, 전화상담실 1실, 집단지도실 1실의 규모를 합쳐 최소 79m² 이상 유지 ○ 종사자 수 - 상담소장 1인, 상담원 4인 이상 * 국비지원 상담소의 경우 상담원 5인으로 운영

※ 인구 10만 이하 4인 운영 상담소가 국비지원 통합상담소로 전환된 경우 종사자 5인으로 한시적 운영

다. 명칭 : 통합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비용 지원은 운영비로 집행 가능

3 상담소 설치 신고 등

가. 상담소 설치·신고

1) 신고서 제출 : 신고인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신고서 서식 및 구비서류는 가정폭력방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관내 타 상담소 등의 설치운영 및 상담수요, 향후 예산지원 전망 등을 사전 설명하고 해당지역의 상담소의 적정 공급수준을 유도

2) 심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상담소 설치요건의 준수 여부 확인
 - ※ 특히 상담원이 법령상 시군구에 신고된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4]의 교육시간, 과목 등)을 이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련 교육기관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등 설치요건의 준수여부 확인 강화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정 구비서류 외에 설치 신고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나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할 수 있음
 - ☞ 사회복지사업법(특히 시설장의 요건) 및 건축법, 그린벨트 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하여 관련부서와의 협조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신고수리 여부 결정
 - ※ 상담소는 노유자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등으로 분류됨

3) 신고증 교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신고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
 -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2호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
- 신고시설이 상담업무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안내
- 통합상담소 운영형태별 신고방법
 - ①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 : 가정폭력상담소 및 성폭력상담소의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받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합 운영을 따로 신고
 - ②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 기능추가 : 가정폭력상담소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합 운영을 따로 신고
 - ③ 성폭력상담소 + 가정폭력상담 기능 추가 : 성폭력 상담소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합 운영을 따로 신고
 - ※ 통합운영 신고는 별지 [서식 1] 양식으로 함

나. 상담소 변경(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1) 사유(변경신고 신청 대상) : 상담소의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상담소의 장 변경

2) 변경신고 및 수리 절차

- 신청서 제출 : 신고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변경사항 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소재지 변경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 등본 확인
- 상담소 신고증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교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인
※ 상담소 변경 신고수리 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3) 유의사항

- 상담소 운영 주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폐지신고 후 새로이 설치신고를 해야 함. 단, 상담소 운영주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 시설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지속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존 시설에 준하는 예산지원이 가능함
- 개인상담소의 경우 ‘상담소의 장 변경’은, 운영주체가 동일한 경우[신고인(대표자)은 변경되지 않고 별도 고용된 소장이 변경]에 한함
- 지역을 달리하여 상담소를 이전할 경우, 기존 관청에 상담소 폐지신고 후 이전하고자 하는 관청에 신규 설치 신고하여야 함. 단, 운영실적, 운영기간 등은 개소일부터 계속 인정하며 지원여부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지 않음
※ 운영주체, 권역 변경 후 계속적 국비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성평등가족부와 협의

다. 상담소 폐지·운영중단·재개(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

1) 상담소를 폐지 또는 일시적 운영중단(운영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함) 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운영중단·운영재개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2) 신고 및 수리 절차

- 폐지·운영중단·운영재개 신고서류 제출 : 신고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폐지·운영중단 신고 시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는지
확인 후 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에 따라, 시설 폐지 신고를 한 경우 폐지 신고가 수리된 즉시 사회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폐지 신고 수리 전까지 결산
보고, 보조금 정산, 입소자 퇴소보고, 종사자 퇴소보고 등의 업무 처리의 완료 여부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함

※ 상담소 폐지·운영중단·운영재개 신고수리 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가. 종사자 자격 기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3)

구 분	내 용
일반 상담소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2항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②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 종사자별 개별기준 － 상담소의 장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가정폭력등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 상담원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③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④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대상 상담소 및 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통합 상담소	○ 상담소장: 가정폭력 상담소장 또는 성폭력 상담소장의 자격 중 하나만 갖추면 가능 (각각의 교육과정은 모두 수료하여야 함) ※ 하나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나머지 교육과정은 1년 이내 수료 필요 ○ 상담원: 가정폭력 상담원 또는 성폭력 상담원 자격 중 하나만 갖추면 가능 (각각의 교육과정은 모두 수료하여야 함) ※ 하나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나머지 교육과정은 6개월 이내 수료 필요

* 상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담원을 관리할 수 있는 직제를 운영할 수 있음

* 상담소의 장 자격기준 중 가정폭력 방지업무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서의 업무 또는 유관기관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보호·지원 등에 대한 관련 업무임

－ 가정폭력 방지업무의 경력인정 기관 :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된 기관 또는 시설, ② 가정폭력 방지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 또는 단체,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④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가정폭력 관련 기관(※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

* 종사자 자격 중 각종 경력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영수증, 소득세 원천 징수부 등)를 첨부하여야 함. 단,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시설장의 서명 또는 직인으로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로 증명할 수 있음

※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

- (요건)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수습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 1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절차) 특례채용은 상담원 채용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또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3차 공고시부터 적용 가능함
- (관리) 시설은 수습직원을 특례채용한 경우 이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즉시 보고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현장점검 시 채용의 공정성, 6개월 내 교육과정 이수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

나. 종사자 복무

- 시설기준의 종사자 수에 포함된 소장 및 상담원은 상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 학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예방교육,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를 위하여 상담을 나가는 등 상담소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출장은 가능함
 - 이 경우 관련자료(근무상황부, 상담일지, 출장대장, 교육대장 등)를 비치하여 이를 증빙하여야 하며,
 - ※ 근무상황부, 출장대장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인사현황자료(출장현황, 휴가현황, 교육현황 등)으로 대체 가능함
 - 잦은 출장으로 인해 피해자 상담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교육 업무 분담, 교육비 활용 기준 등에 관하여 상담소 자체 규정을 구비하여야 함
 - ※ 상담소 종사자가 외출, 조퇴 등 이석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비치
- 상담소장의 겸직관련
 -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장은 상근의무가 있고, 가정폭력방지법에도 상담소장의 전임의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상담소장의 겸직은 불가함. 단,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겸직이 필요한 경우는 시·군·구청장의 승인 하에 겸직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은 인건비가 타 기관과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해당 시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함
 - ※ 겸직가능사유 : 대학부설시설에 해당대학의 교수가 소장에 임명되는 경우, 법인부설 상담소의 소장을 해당법인 대표가 겸직하는 경우,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장(동일법인·단체에 한함)과 겸직하는 경우

다. 종사자 채용 및 임면보고

○ 종사자 채용

- 공개경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시 임금·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함
- 종사자 결원시 1월 이내에 신규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함
- 종사자는 교육훈련과정(100시간) 이수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상의 개별 기준도 갖추어야 하므로 채용 시 수료증 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필히 확인하여야 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사자가 될 수 없음(법률 제8조의2제1항)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 ※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해 공개 채용 과정에서 종교관련 정보, 가족관계, 출신지역 정보 등 개인정보 취합 금지
- ※ 공정한 채용을 위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권고(외부인원 50% 이상), 이 경우 법인 임직원은 내부위원으로 간주

○ 종사자 임면보고

-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권자는 종사자 채용 시 반드시 사회복지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가정폭력상담소의 장은 국비(지방비 포함)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종사자 채용 시 관련시스템에 따라 종사자 임면보고(사유 : 종사자 경력인정여부의 증명서류 제출 시 증빙자료로 활용)

○ 종사자의 대체인력 채용

- 시설장은 종사자의 퇴사, 육아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신규 또는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등 적정 인력을 운영하여야 함
- 대체인력의 자격은 상담원 등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장애인 상담소 종사자 채용

- 장애인상담소에 지원되는 상담지원인력의 자격기준은 가정폭력 상담원 자격 기준을 갖춘 자이며, 경력자 등을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음

라. 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강화 등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연중)
 - 시행기관 : 성평등가족부장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시·도지사(가정폭력 방지법 제8조의 4)
- 법정 의무교육 안내

구 분	법적근거	대상	시행주체	이수방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 평등법 제13조	전 종사자	고용노동부	직원연수·조화·회의, 사이버 교육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전 종사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privacy.go.kr) 참고
퇴직연금제도 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고용노동부	온라인, 집합, 서면, 상시게시(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	전 종사자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 촉진법 제5의2	전 종사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참고(연 1회 1시간 이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협회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8시간 이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전 종사자	고용노동부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교육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 종사자	성평등가족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연 1회 이상)

※ 시설장 및 종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수하도록 노력할 것

가. 운영시간

- 주 5일, 평일 8시간 이상 운영(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 시설별 종사자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시설장 책임 하에 상담소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선택제 운용 가능

나. 상담소의 회계 등 업무 관리

- 관리규정

- 상담소의 장은 상담소의 운영방침, 직원의 업무분장, 상담소의 이용수칙, 그 밖에 상담소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상담소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

- 현장점검 및 감사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상담일지 등에 대한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 등은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일지 등을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하게 상담일지 제출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단,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이 상담소 운영실태, 이용자 및 운영비 집행상황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담소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장부의 비치

구분	관리에 관한 장부	사업에 관한 장부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장부 종류	- 상담소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직원관계철(인사기록카드, 이력서, 사진 등) - 회의록관계철 - 소속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 및 관계철 등 기록 -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문서철) - 문서 접수대장 및 발송대장, 종사자 근무상황부, 출장대장, 교육대장 등 각종 대장	- 상담소의 이용자 관계서류 (신상조사서, 지원기록 등) -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 상담원 교육관계서류 - 기타 운영실적 등	- 총계정원장 - 수입 및 지출보조부 - 금전출납부 및 증빙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비품관리대장 -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 각종 증빙서류

○ 상담소 신고증 게재

- 시설 이용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신고 시설임을 알릴 수 있도록 시설 내에 신고증 게재

○ 기록의 보존

- 상담내용, 재무·회계 기록에 관한 사항 등은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 (기록의 보존)에 따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상담소에서의 성폭력 상담일지는 10년 이상 보관 후 폐기조치 하되,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강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전연령 대상 강간살인죄 등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담관련 자료 폐기에 신중하여야 함. 단, 피해자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피해자로 부터 확인서를 받아 자료 폐기 가능

○ 재무회계 관리의 보존 및 관리

- 상담소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 재무회계 관리는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 법령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용
- 상담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장부에 기재 후 집행

○ 업무의 전산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정책에 협력하여야 함

○ 후원금품의 관리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발급(의료·사회복지·종교·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통해 후원금 또는 지정기탁금을 수령한 경우 포함)
 - ※ 금융기관 등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발급 가능
 - ※ 후원금 전용계좌는 시설 명칭이 부기된 시설 고유의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두어야 함
-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 비치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

■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 ■

연번	일시	후원자(법인)	후원금 유형 및 금액		지정후원금 용도	비고
			지정	비지정		
1	2020.1.25.	○○○법인	500,000원		청소년 생계비	
2	2020.1.30.			100,000원	청소년 교육비	

- 후원자가 후원금품의 용도를 지정했을 경우 지정 용도와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후원자(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 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역을 통보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용도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후원금으로 인정

- 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8, 별표 10의 세출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하되, 가급적 내역수준으로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되도록 할 것
- “법인·시설의 운영” 등과 같이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에 따라 관리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 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는 사용 금지
-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
- 시설비는 건물 노후화, 정원대비 협소한 공간 등 시설 입소·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원칙으로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상담소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제출 후 20일 이내에 상담소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함(단, 후원자 성명은 비공개)

○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

- 상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목적용 외에 수집 또는 제공할 수 없음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 상담소와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 및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 ※ 가정폭력방지법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20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비밀을 누설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반으로 동법 제78조(징계사유)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지자체와 시설장은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본래의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되어 지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실시(「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수집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리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거나,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경우 수집 가능
- 입소/이용자, 후원자 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그 외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노력 등

가. 시설의 안전관리(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 종사자의 안전관리

- 상담소의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1인당 보험료 연 5만원 이내, 운영비로 지출)

○ 자체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시설장은 소관시설에 대하여 매 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시안전점검) 시설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시안전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안전점검기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지침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지자체에서는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대상 선정 시 피해자 상담 등에 필요한 컴퓨터 등 주요 물품과 시설 안전점검 결과 개보수 필요시설, 노후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

○ 지자체 안전점검

- 시·도 및 시·군·구는 하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성평등가족부에서 통보하는 안전 점검 계획에 따라, 종사자대상 교육훈련, 안전점검표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에 보고
-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 상태, 보험가입 여부, 시설 거주자 건강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며, 취약시기의 특성에 따라 급식시설 위생상태, 폭설·제설·동파·난방관리 대책 등 추가 점검

- 국토안전관리원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별도 신청 및 직권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 * 주요 점검내용 : 시설물 기초지반 침하 및 벽면 균열 발생 여부, 시설물 주변 석축·옹벽, 비탈면의 결함 발생여부 등
 - 지자체에서는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보수 등이 시급히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능보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나. 사고 예방 및 조치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 소화시설·장비는 소방법령의 제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종사자가 수시로 확인·점검
- 시설장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평상시 종사자들에게 사고예방의 중요성 및 각종 시설물 취급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항상 숙지하도록 지도하여 사고발생 예방
 -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절기·해빙기 안전점검 철저(보일러·가스·전기 등)
 - 화재대피 훈련 등 방재훈련을 시설별로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
 -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등
 - 시설장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보고, 의료조치, 초기대응(화재진화 등), 외부연락 등에 대한 종사자의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종사자들이 유사시 자신의 임무를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 시설장은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피난방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고에 빠른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시·군·구청장은 사고발생시 시설안전사고보고서 별지 [서식 7]을 작성 즉시 보고 : 시·군·구청장 → 시·도 → 성평등가족부
- ※ 소방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관련 제규정에 따른 방염설비를 갖추어야 함

○ 종사자 안전대책 마련

- 시설장, 시·도·구청장은 시설종사자가 상담 등 업무와 관련 폭행 등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
 - 시설 내·외 CCTV 설치, 가스충 등 구비
 - 경찰관서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시도 또는 구청에서 시설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

■ 보험가입여부 확인(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 ▶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 시·군·구는 시설 이용자와 생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법 제58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 [별표 5]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것
 - 지자체는 시설 정기안전점검 시 각 시설의 대인·대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1인당 배상책임보험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 책임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배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의미함
 - ** 책임공제라 함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설립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 의미함
- ▶ 시설의 지도·감독청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시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소멸시 상품을 가입토록 관리해 나가되
 - 불가피하게 해당 시설이 적립식 상품을 가입한 경우라면 시설이 그 만기 환급금 수령 후 시설 운영비로 세입처리를 반드시 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다.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제3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의 I. 성폭력피해상담소-7. 그 밖에 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다.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참조 및 준용

7 국비지원 상담소 지원기준

가. 지원요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신고된 상담소로서 상담소의 설치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준수하여 3년 이상 운영하고 상담 실적 등이 우수한 상담소
 - 위 사항은 국고지원의 최소요건으로서 운영기간 최소연수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원요건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님
 - 단, 일부지역 및 도서벽지 등 3년 이상 운영 상담소가 없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판단 하에 1년 이상 운영 상담소 선정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운영기간 기산일은 상담소로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실제 상담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함

나. 국비지원 대상 선정기준

단계	절 차
1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국비지원 선정 계획 통보
2	■ 상담소 국비지원 선정 계획 안내
3	■ 국비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4	■ 국비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시·도에 지원신청
5	■ 현장실사, 추천심사위원회 개최, 국비지원기관 추천
6	■ 국비지원 심사 및 통보

- 성평등가족부는 국비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시·도가 신청한 국비지원 대상 상담소에 대하여 심사·선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국비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서 시·군·구가 신청한 국비지원 대상 상담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통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상담활동 등 사업수행 능력과 지역안배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비지원 대상을 선정 및 지원신청

- 시·도지사는 국비지원대상 선정 시 내부 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상담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활용
- 기존 지원상담소의 경우에도 법령 및 지침 준수여부, 운영실적 등을 확인하여 예산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
 - ※ 시·군·구청장은 신규 및 기존지원시설에 대한 현지확인 실적을 시·도지사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에 제출
- 동일한 운영주체(법인 또는 개인)가 동일 시·군·구내에서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상담소를 각각 개설하거나 동일분야 상담소를 2개소 이상 운영하는 경우 중복 지원불가

다. 국고지원 시 유의사항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상담소가 최소 1개소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안배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함
- 기존 국비지원 상담소의 운영이 부실하거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종사자 임면의 허위 보고 등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 직장내 괴롭힘 발생 등에 대한 조치의무 미이행 등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성평등가족부에 서면보고(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하여 보고)
-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시 조치
 - (국고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국비지원 중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여야 함 (보조금관리법 제31조의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성평등가족부에 서면보고(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하여 보고)

※ <참고> 보조금 지원 취소 및 반환 관련 근거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강제 징수)

-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보조금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가정폭력방지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청·교부 및 사용하여야 함

가. 보조금 교부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은 상담소가 제출한 당해연도 연간 사업계획서 [서식I]를 검토하여 사업비 교부를 결정
 - ※ 시·군·구는 상담소로부터 연간 사업계획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유도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상담소에 사업비 교부
 - ※ 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교부결정은 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름

나. 예산 편성 및 집행

1) 2026년도 지원내역 및 금액 등

(단위: 천원)

일반상담소 (4~5인)	통합상담소 (6~7인)	장애인상담소 추가 지원(개소당)
165,300~202,803	248,418~285,921	상담원(1인) : 37,503 교통비 : 12,099

※ 금액은 국비, 지방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보조율은 국비 50%임. 단,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70% 국비 지원

- 종사자 인건비는 지원 예산총액의 70~9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기본급,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초과·야간·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함. 다만,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이 2026년 기준 최저임금액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 (가입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 ※ 누리집 <http://insurancesupport.or.kr>

-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은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기본급에는 포함하지 않음

- 지원금은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되, 인건비 불용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운영비로 전환하여 집행 가능
-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음
- 예산항목별 세부내역

항 목	내 역
인건비	• 보수, 제수당(초과·야간·휴일근무), 직원 4대 보험료(국민·건강·산재·고용보험), 퇴직적립금, 기타 복리후생 관련경비 포함
운영비	• 수용비 : 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 여비 : 국내(근무지 내·외) 출장여비 ※ 여비집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 공공요금 및 제세 : 수도, 전기요금 및 지방세 등,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비* 등 ※ 상담소별 1곳의 협의회비만 집행 가능(단, 통합상담소의 경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비도 추가 집행 가능) ※ 종사자 상해보험료(1인당 보험료 연 5만원 이내) • 임차료 : 사무실 임차료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 연료비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 시설장비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통신시설 유지비 •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 차량유지비, 재료비 등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회의비 등
기능보강비	• 시설 신·증축비, 개보수비, 비품구입비, 수리비 등

2) 운영비 등 관련

- 운영비는 지원 예산총액의 10~30% 내에서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음
 - 사무실 임차료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는 월 50만원 한도(통합상담소의 경우 월 70만원)에서 집행 가능함. 단, 5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가 집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승인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함
 - ※ 단, 해당관청 관할 공공기관 건물 내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 입주하도록 검토·조치할 수 있음
 -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임차료 등은 지방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 지자체에서는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통합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을 우선 대부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 운영비 지출원칙(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각 시·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지침」 등에 따라 보조금 전용카드에 클린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관리
- 또한 각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지도·감독
-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부당 사용사례가 적발된 경우, 감사 등을 실시하여 환수 및 징계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분

▶ 보조금 전용카드란?

- ① 시설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 ②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발급 및 거래내역 전송
- ③ 클린카드 기능 탑재

*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계약한 금융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함

-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 금지)
- * 보조금 전용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등은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보조금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 기능보강비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상담소 운영에 따른 기능보강비를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음

3) 종사자 인건비 관련

- 국비지원 상담소의 인건비는 소장 1인 및 종사자 3인으로 책정하며(통합상담소의 경우 소장 1인, 종사자 5인), 이는 최소 지급기준으로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음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국비지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종사자 호봉 책정을 할 수 있음
- 중도 퇴직자 및 신규 채용자 인건비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
 - 일할계산 산식 : 월 고정급(보험료 제외) ÷ 209시간 × 8시간 × 월 근무일수
 - ※ 월 근무일수는 중도 퇴직일 또는 신규 채용일이 해당하는 월의 근무일수를 말함

- 개인이 운영주체이거나 법인·단체대표(운영주체)와 시설장이 동일한 시설의 경우 시설장의 퇴직급여는 별도로 적립하지 않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적립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반환해야 함

- 1년 미만 근무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 근로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해야 함

4) 종사자 소진방지 지원 관련

-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비 내에서 슈퍼비전 또는 종사자 소진방지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치료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 지원 가능 항목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치료, 개인 및 집단 상담·심리치료, 힐링 프로그램 교육 등 프로그램화된 것은 참여지원 가능(단순 여행이나 영화 관람은 지원 불가, 단 여행·영화 관람도 소진방지를 위한 프로그램화한 경우 가능)
 - ※ 지원 대상 및 가능 액수 :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 연간 1인당 30만원 범위 내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지방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다. 기타 행정사항

-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행정조치를 통보받은 상담소의 경우 예산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
- 상담소가 폐쇄될 경우 시·군·구청장은 폐쇄되는 상담서류 일체를 관할 지역 내의 다른 상담소에 이송토록 조치
 - ※ 가정폭력 상담일지는 3년 이상 보관 후 폐기 조치
 - ※ 상담소에서의 성폭력 상담일지는 10년 이상 보관 후 폐기 조치하되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강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전연령 대상 강간살인죄 등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담관련 자료 폐기에 신중하여야 함. 단, 피해자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피해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자료 폐기 가능
- 상담소 종사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상담소로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도 근무연한으로 인정함
- 공무원의 사회복지법인·시설 재취업 공무원과 사적 접촉 방지 법령 신설 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22.5월 시행)〉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각 상담소의 운영 및 정산실적을 지정서식에 따라 상반기 실적은 2026년 7월 31일까지, 연간 운영실적은 2027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 및 상담소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지급·정산 등 회계업무, 종사자 인사업무, 통계관리업무 등 가능한 모든 업무를 전산화 하여야 함
- 가정폭력 상담소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
-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시설안전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사회복지시설 화재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용할 수 있음

1 보호시설 운영 개요

가. 운영 현황

('26년 1월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63	12	2	3	1	4	1	1	11	5	3	3	4	4	1	6	2
일반시설	36	8	1	2	1	1	-	1	10	4	1	-	2	2	1	2	-
가족보호 시설	27	4	1	1	-	3	1	-	1	1	2	3	2	2	-	4	2

※ 장애인시설(입소정원) : 서울(12명), 광주(7명)

※ 장기시설(장애인 시설 포함) : 서울(2개소), 부산(1개소), 광주(2개소), 경기(1개소)

나. 법적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다. 보호시설의 업무(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 및 종사자는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 ※ 가정폭력방지법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20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비밀을 누설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반으로 동법 제78조(징계사유)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라. 시설 운영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비공개로 운영되며 시설관련 정보 등은 비공개 처리할 수 있음

2 | 설치 기준

가. 설치·운영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나. 설치 기준

1) 시설 설치기준

- 고려사항 : 입지조건 : 시설의 적정한 분포,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면적 : 입소정원 × 1인당 연면적 6.6㎡ 이상
※ 부득이한 경우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초과 입소가능
- 구조 및 설비
 - 거실은 적당한 난방, 통풍 및 일조량을 갖춰야 함
 -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 식당 및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 화장실, 급·배수 시설
 - 비상재해대비시설
 - (장애인 피해자 지원시설의 경우)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시설 구비 노력

3 | 보호시설 설치 신고 등

가. 설치인가 절차(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1) 인가신청서 제출

- 신청인 ⇒ 관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심사: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 설치기준 및 종사자 자격 요건 등
 - ※ 보호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등으로 분류됨

3) 인가필증 교부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인(접수 후 10일 이내)

나. 보호시설 변경인가 및 폐지·운영중단·재개

○ 변경인가(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 ① 신고서 제출: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된 경우,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② 검토 및 변경인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인가 여부 결정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 후 처리

○ 폐지·운영중단·재개신고(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

- ① 신고서 제출: 법인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② 운영중단·폐지·재개신고서 서식: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신고서 첨부서류

-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제외)
 - 보호시설 인가증(폐지의 경우)
 - 보호시설 종사자 인사기록카드(폐지의 경우)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
조치계획서
- ③ 검토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④ 운영중단·폐지신고 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 후 처리
- ※ 운영중단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함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하여 신고 수리 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가. 종사자 자격기준

- 종사자 자격(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 보호시설의 장과 상담원의 자격은 상담소와 동일함
 - * 보호시설의 장 자격기준 중 가정폭력 방지업무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서의 업무 또는 유관기관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보호·지원 등에 대한 관련 업무임
 - ※ 가정폭력 방지업무의 경력인정 기관 :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된 기관 또는 시설, ② 가정폭력 방지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 또는 단체,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④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가정폭력 관련 기관(※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

- (요건)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수습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 1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절차) 특례채용은 상담원 채용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또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3차 공고시부터 적용 가능함
- (관리) 시설은 수습직원을 특례채용한 경우 이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즉시 보고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현장점검 시 채용의 공정성, 6개월 내 교육과정 이수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

나. 종사자 수

- 종사자 수(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2])
 - 보호시설에는 보호시설의 장 1인과 상담원 등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두어야 함
 - * 보호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담원을 관리할 수 있는 직제를 운영할 수 있음
 - 다만, 보호시설의 재정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과 상담원은 겸직 가능
 - * 국비지원 보호시설의 경우, 시설장과 상담원 겸직 불가
 - 보호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 시설장의 상근 의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참조

구 분	단기 / 장기 보호시설 정원		
	5~10인 이하	11~30인 이하	31인 이상
시 설 장	1	1	1
상 담 원	2	3	4
총 계	3	4	5

※ 국비지원 보호시설은 국비지원 인력을 정원으로 추가

※ 가족보호시설은 정원별 단기 / 장기 보호시설에 상담원 등 1인 추가

※ 장애인보호시설은 입소정원 10인당 보조인력 1인을 증원 배치하여야 함

다. 보호시설 운영 및 종사자 관리

○ 운영시간 및 종사자 복무

- 매일 24시간 체제로 365일 무휴 운영
- 시설기준의 종사자 수에 포함된 시설의 장, 상담원 및 보조원은 상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 ※ 법인의 대표자(이사장 포함)가 시설장을 겸할 수 없음

○ 출장 관련 규정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 상담 등 보호시설 고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출장은 가능함
- 이 경우 반드시 관련자료(근무상황부, 출장대장, 교육대장, 상담일지 등)를 비치하여 이를 증빙하여야 함
- ※ 근무상황부, 출장대장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인사현황자료(출장현황, 휴가현황, 교육현황 등)로 대체 가능함

○ 종사자 채용

- 공개경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 시 임금·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함
- 종사자 결원 시 1월 이내에 신규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사자가 될 수 없음(법률 제8조의2 제1항)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 ※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해 공개 채용 과정에서 종교관련 정보, 가족관계, 출신지역 정보 등 개인정보 취합 금지
- 폭력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업무배치 규정 마련,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체계 등을 정비하여야 함
- 종사자 임면보고
 -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권자는 종사자 채용 시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보호시설의 장은 국비(지방비 포함)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종사자 채용 시 관련시스템에 따라 종사자 임면보고(사유 : 종사자 경력인정여부의 증명서류 제출 시 증빙자료로 활용)
- 종사자 소진방지
 -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비 내에서 종사자 소진방지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치료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 지원 가능 항목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치료, 개인 및 집단 상담·심리치료, 힐링 프로그램 교육 등 프로그램화된 것은 참여지원 가능(단순 여행이나 영화 관람은 지원 불가, 단 여행·영화관람도 소진방지를 위한 프로그램화한 경우 가능)
 - ※ 지원 대상 및 가능 액수 :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 연간 1인당 30만원 범위 내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지방비에서 추가지원할 수 있음
- 종사자의 대체인력 채용
 - 시설장은 종사자의 퇴사, 육아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신규 또는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등 적정 인력을 운영하여야 함
 - 대체인력의 자격은 상담원 등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강화 등 법정 의무교육 안내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연중)
 - 시행기관 : 성평등가족부장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시·도지사(가정폭력 방지법 제8조의4)
 - ※ 법정 의무교육 이외에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연수비를 기관운영비 내에서 지출 가능

- 법정의무교육

구 분	법적근거	대상	시행주체	이수방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 평등법 제13조	전 종사자	고용노동부	직원연수·조회·회의, 사이버 교육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전 종사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privacy.go.kr) 참고
퇴직연금제도 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고용노동부	온라인, 집합, 서면, 상시계시(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	전 종사자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 촉진법 제5의2	전 종사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참고(연 1회 1시간 이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협회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8시간 이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전 종사자	고용노동부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교육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 종사자	성평등가족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연 1회 이상)

※ 시설장 및 종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수하도록 노력할 것

가. 입소 관리

□ 입소 대상자: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가정폭력 피해 뿐 아니라 스토킹, 교제폭력을 포함한 여성폭력 피해자 포함)

○ 일반 보호시설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지적장애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을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을 보호자의 입소동의 없이 입소시킨 경우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가족보호시설

- (1순위)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
- (2순위) 자녀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
- (3순위) 가정폭력피해자
 - ※ 가족보호시설은 되도록 자녀를 동반한 피해자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나. 퇴소 관리

□ 퇴소 사유

- 보호목적의 달성 또는 보호기간 만료
-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자
- 타 입소자 및 상담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예시: 자해, 폭력, 음주과다, 무단외박 반복 등)
 - ※ 장애인 입소자가 보호기간 만료로 퇴소 시 계속적인 시설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시설장은 해당 시·군·구에 장애인시설로의 연계를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시·군·구 보호시설 담당 공무원은 장애인시설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장애인시설로 입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다. 보호기간

□ 보호기간(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2)

- 단기보호시설(가족보호시설 포함) : 6개월 이내가 원칙이나,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 가능(최대 12개월)
 - ※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연장 사유 및 기간을 포함한 보호기간 연장 결정을 보호 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장기 / 장애인 보호시설 : 2년 이내
- 임시보호 : 3일 이내(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
 - ※ 동일한 가정폭력을 사유로 2개소 이상의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별 입소기간을 합산하여 보호기간 적용(단, 보호시설 퇴소자가 다른 가정폭력을 사유로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새로이 적용)

※ 가정폭력 피해자 장기·장애인 보호시설의 운영

- 중장기 시설의 경우 시설인가, 입소자 관리, 보조금 지원 등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장기 시설 인가 시, 지역별 수요 및 향후 예산지원 전망 등에 대해 시·도 및 성평등가족부와 사전협의하는 등 신중을 기할 것
 - 입소대상 및 보호기간의 운영·관리
- 〈입소대상 제한〉
- ① 장기 시설의 장은 단기시설을 거친 자를 우선적으로 시설에 입소시키되, 동반자녀 유무, 폭력피해의 심각성, 소송진행 여부, 자립의지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함
 - ※ 장기시설의 장은 단기시설로부터 피해여성에 대한 서류(사본) 일체 및 자립계획을 이송받아 참고하여야 함
 - ② 장애인 시설의 장은 경증 장애인(4급 이하)으로서 생활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가급적 단기시설 입소를 유도하여, 중증장애(정신지체 포함) 중심으로 시설을 운영해야 함

가. 보호시설의 회계 등 업무 관리

○ 관리규정

-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방침, 직원의 업무분장, 입소자에 대한 소방·재난·보건 등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시설의 이용수칙, 그 밖에 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해야 함

○ 현장점검 및 감사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시·도 또는 시·군·구 등은 보호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입소자대장 등을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하게 입소자대장 제출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등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이 보호시설 운영실태, 입소자 및 운영비 집행상황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시설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장부의 비치

구분	관리에 관한 장부	사업에 관한 장부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장부종류	- 보호시설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직원관계철(인사기록카드, 이력서, 사진 등) - 회의록관계철 - 소속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 및 관계결의 기록 -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행정 기관과의 문서철) - 문서 접수대장 및 발송대장 - 종사자 근무상황부, 출장대장, 교육대장 등 각종 대장 - 입소자대장, 시설안전교육 일지, 시설안전점검일지, 시설안전사고보고서, 차량운행일지 등	- 입소자 관계서류(신상조사서, 입소확인서, 지원기록 등) -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 상담원 교육관계서류 - 운영실적 관련자료 등 - 피해자 또는 가해자프로그램 운영관련 서류 - 의료비관련 서류 - 법률지원관련 서류 - 학업지원관련 서류 - 기타 보호시설 사업에 관한 자료 등	- 총계정원장 - 수입 및 지출보조부 - 정부보조금명세서 - 사업비명세서, 사무비명세서, 예비비사용조서 - 후원금수입 및 사용내역서 - 금전출납부 및 증빙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비품관리대장 -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 각종 증빙서류

※ 기타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된 각종 서식 및 자료는 별도로 비치 활용

○ 기록의 보존

- 입소자의 상담내용 및 보호실적, 재무·회계 기록에 관한 사항 등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기록의 보존)에 따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단, 재무·회계 기록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보관

※ 성폭력 상담일지는 10년 이상 보관 후 폐기조치 하되,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강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전연령 대상 강간살인죄 등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담관련 자료 폐기에 신중하여야 함. 단, 피해자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피해자로 부터 확인서를 받아 폐기 가능

○ 재무회계 관리

- 시설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 재무회계 관리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재무회계 관련 법령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준용
- 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장부에 기재 후 가능

※ 지출결의서 작성 시 지출내역을 6하 원칙에 의거 기재하고, 반드시 내부결재를 득할 것

○ 후원금품의 관리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발급(의료·사회복지·종교·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통해 후원금 또는 지정기탁금을 수령한 경우 포함)

※ 금융기관 등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발급 가능

※ 후원금 전용계좌는 시설 고유의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두어야 함

-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 비치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

■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 ■

연번	일시	후원자(법인)	후원금 유형 및 금액		지정후원금 용도	비고
			지정	비지정		
1	2025.1.25.	○○○법인	500,000원		청소년 생계비	
2	2025.1.30.			100,000원	청소년 교육비	

- 후원자가 후원금품의 용도를 지정했을 경우 지정용도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후원자(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 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통보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용도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후원금으로 인정

- 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8, 별표 10의 세출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하되, 가급적 내역수준으로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되도록 할 것
 - “법인·시설의 운영” 등과 같이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에 따라 관리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는 사용 금지
-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
- 시설비는 건물 노후화, 정원대비 협소한 공간 등 시설 입소·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 보호시설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함(단, 후원자 성명은 비공개)

○ 업무의 전산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정책에 협력하여야 함

나.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제3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의 II-1.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8. 그 밖에 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라.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참조 및 준용

7 시설의 안전 관리

가. 시설의 안전관리(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 보험 가입
 -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함
- 자체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시설장은 소관시설에 대하여 매 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시안전점검) 시설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시안전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안전점검기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제12조에 의한 정밀 안전진단 지침
 -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 지자체에서는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대상 선정 시 시설 안전점검 결과 개보수 필요시설, 노후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
- 지자체 안전점검
 - 시·도 및 시·군·구는 하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성평등가족부에서 통보하는 안전 점검 계획에 따라, 종사자대상 교육훈련, 안전점검표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에 보고

-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 상태, 보험가입 여부, 시설 거주자 건강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며, 취약시기의 특성에 따라 급식시설 위생상태, 폭설·제설·동파·난방관리 대책 등 추가 점검
- 국토안전관리원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별도 신청 및 직권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 * 주요 점검내용 : 시설물 기초지반 침하 및 벽면 균열 발생 여부, 시설물 주변 석축·옹벽, 비탈면의 결함 발생여부 등
 - 지자체에서는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보수 등이 시급히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능보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나. 사고 예방 및 조치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 소화시설·장비는 소방법령의 제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종사자가 수시로 확인·점검
- 시설장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평상시 종사자들에게 사고예방의 중요성 및 각종 시설물 취급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항상 숙지하도록 지도하여 사고발생 예방
 - 주간 및 야간근무자 지정 및 근무 철저
 -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절기·해빙기 안전점검 철저(보일러·가스·전기 등)
 - ※ 가스경보기를 설치하여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 미연에 방지
 - 화재대피 훈련 등 방재훈련을 시설별로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
 -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 시설장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보고, 의료조치, 초기대응(화재진화 등), 외부연락 등에 대한 종사자의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종사자들이 유사시 자신의 임무를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 시설장은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피난방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고에 빠른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시·군·구청장은 사고발생시 시설안전사고보고서 별지 [서식 7]을 작성 즉시 보고 : 시·군·구청장 → 시·도 → 성평등가족부

※ 소방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관련 제규정에 따른 방염설비를 갖추어야 함

- 시설장은 시설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는 사례(종사자 채용 공고, 법인홈페이지 등)가 없도록 주의

- 종사자 안전대책 마련

- 시설장은 시설종사자가 상담 등 업무와 관련 폭행 등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

- 시설 내·외 CCTV 설치, 가스충 등 구비
- 경찰관서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가정폭력 보호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의무(1인당 보험료 연 5만원 이내, 운영비로 지출)

■ **보험가입여부 확인**(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 ▶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 시·군·구는 시설 이용자와 생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법 제58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 [별표 5]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것
- 지자체는 시설 정기안전점검 시 각 시설의 대인·대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1인당 배상책임보험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책임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배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의미함

** 책임공제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설립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 의미함

- ▶ 시설의 지도·감독청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시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소멸식 상품을 가입토록 관리해 나가되

- 불가피하게 해당 시설이 적립식 상품을 가입한 경우라면 시설이 그 만기 환급금 수령 후 시설운영비로 세입처리를 반드시 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 재난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3조)

-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가. 국비지원기관 선정

- 성평등가족부는 국비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시·도가 신청한 국비지원 대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심사·선정할 수 있음
- 신규 지원 대상 시설 및 정원 조정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시설은 지역형편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1차로 결정하되 성평등가족부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지원여부 및 지원시기 결정
 - 시설 설치 후 최소 1년 이상 운영실적 등을 검토하여 운영비 지원여부를 결정
- 국비지원 중단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여야 함(보조금관리법 제31조의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성평등가족부에 서면보고
(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하여 보고)

나. 지원 기준 및 항목

- 지원기준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국비지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종사자 호봉 책정을 할 수 있음(상답원은 생활복지사 수준 적용)
- 지원항목 : 인건비, 운영비
- 지방비 부담비율 : 특별시·광역시(시 100%), 도(도 50%, 시·군 50%)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보조금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가정폭력방지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청·교부 및 사용하여야 함

다. 인건비, 운영비 지원 기준

※ 시설장 1명 인건비 포함, 종사자 추가 배치 시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가능

○ 일반보호시설

(연간기준, 단위: 천원, 지방비 포함)

정 원		종사자수	지원액
10인 이하 시설		5명	206,822
11~30인 이하	15인 이하	5~6명	207,133 ~ 245,815
	20인 이하		215,057 ~ 253,739
	25인 이하		224,672 ~ 263,354

※ 정원 11인 이상 30인 이하 시설의 경우 정원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원

※ 종사자 1명은 상담원, 취사원(조리사자격증 소지), 생활지도원 등으로 채용 가능

○ 가족보호시설: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은 아래 기준으로 운영비 지원

※ 단, 가족보호시설을 신청하는 비영리법인은 법인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하는 법인에 한함

(연간기준, 단위: 천원, 지방비 포함)

정 원		종사자수	지원액
10인 이하 시설		6명	249,385
11~30인 이하	15인 이하	6~7명	253,658 ~ 292,340
	20인 이하		265,410 ~ 304,092
	25인 이하		277,161 ~ 315,843
	30인 이하		288,913 ~ 327,595

※ 일반시설에 비해 추가로 지원하는 종사자 1명은 상담원, 취사원(조리사 자격증 소지), 생활지도원, 관리원(소방안전관리 자격증 소지) 등으로 채용 가능

○ 장애인보호시설은 추가지원으로 인건비 2명(상담원 1명, 취사원 1인) 및 교통비를 개소당 89,463천원(지방비 포함/년)을 별도 지원함

※ 상담원 및 취사원의 최저 인건비 기준은 보호시설 상담원과 동일

- 상기 인건비, 운영비 금액은 보호시설 1개소 당 최소 지원 금액이며, 임의로 지급 단가를 감액 조정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종사자 인건비는 사업비를 제외한 지원 예산액의 70~9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기본급,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초과·야간·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함. 다만,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이 2026년 기준 최저임금액(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 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 (가입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 누리집 <http://insurancesupport.or.kr>

-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은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기본급에는 포함하지 않음
- 운영비는 지원 예산총액의 10~3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종사자 상해보험료(1인당 보험료 연 5만원 이내)
 - 수용비(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여비, 공공요금 및 체세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비 등),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통신시설 유지비), 소규모의 수선비, 차량비, 재료비 등
 - * 소모성 물품 구입(입소자를 위한 물품, 집기 등) 가능
 - * 여비집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입소자를 위한 타지역 출장여비 지급 가능
 - * 보호시설별 1곳의 협의회비만 집행 가능
 -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회의비 등)
 - 숙직비(1일 2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등
 - 종사자의 숙직, 연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활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활용 가능. 단, 대체인력이 가정폭력상담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음

- 운영비 지출원칙(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각 시·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지침」 등에 따라 보조금 전용카드에 클린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관리
 - 또한 각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지도·감독
 -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부당 사용사례가 적발된 경우, 감사 등을 실시하여 환수 및 징계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분

▶ 보조금 전용카드란?

- ① 시설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 ②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발급 및 거래내역 전송
- ③ 클린카드 기능 탑재
 - *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계약한 금융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함

-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 금지)
 - * 보조금 전용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등은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보조금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 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적립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반환해야 함

- 1년 미만 근무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 근로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해야 함

라. 인건비, 운영비 집행방법

- 지자체 직영 보호시설의 경우 예산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배정
- 상반기 집행실적 평가 및 하반기 예산전망에 따른 가정산시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 조정
 - ※ 장애인보호시설 교통비 집행방법
 - 가정폭력피해 여성장애인 방문상담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별도지원
 - 동 교통비는 차량운행비, 장애인 대상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비로 집행 가능
 - 예) 차량유류비, 차량보험료 및 수선비, 운전기사 인건비, 교육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 장애인보호시설 별도 지원예산 집행 방법

- 장애인 방문상담 등 시설 업무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별도 지원
 - 장애인 대상 가정폭력 상담 및 예방교육 등 상담원의 업무에 소요되는 출장비(일비 및 교통비) 지급
 - 근무지 내 : 일비 4시간 이하 10,000원, 4시간 초과 20,000원
 - 근무지 외 : 일비 25,000원, 식비 1일 25,000원, 교통비 실비지급
 - ※ 근무지 내 출장에 교통비 별도 지급하지 않음
 - ※ 근무지 외 출장에 개인 차량 이용 시에도 실비 지급 가능
 - 업무 차량 유지비(유류비, 차량보험료 및 수선비, 자동차세·환경부담금 등)로 집행 가능
- 상담원 및 취사원 인건비(2명) 추가 지원
 - 1인당 지원액은 기본급,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초과·야간·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함. 다만,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이 2024년 기준 최저임금액(9,860원 × 209시간 = 2,060,74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마. 기타 피해자 지원 서비스 지원 기준

1) 지원항목

(가) 생계비

- 지원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 비수급자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 전 입소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가능하나, 보건복지부 시설급여와 이중지원은 불가

생계비 지원대상자 결정 방법

- ① 보호시설에 피해자 입소 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군·구에 보고
- ② 시·군·구에서는 입소 보고된 자에 대하여 행복e음을 이용하여 자산조사 실시
- ③ 자산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자는 기초생활급여를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자는 생계비 지원대상자로 결정

- 지원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와 동일 기준 적용

〈 2026년도 비수급자 생계비(1인당) 지급기준〉

구 분	금 액	지 급 시 기
주·부식비, 피복비	426,741원	매 월
월동대책비	40,000원	10월 지급(연 1회)
특별위로금	50,000원	설·추석 전월(연 2회) * 수급자 개인별 직접지급

※ 특별위로금은 수급자 개인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반 자녀 계좌 신규 개설이 필요하거나 이로 인해 입소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동반 입소자의 계좌로 입금 가능

(나) 아동교육지원비

- 지원대상 :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대상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5호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과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학비(입학금, 수업료)지원 제외

초·중등교육법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함

- 단, 보건복지부 교육급여 수급자 결정 전일 경우 우선 지원가능하나, 보건복지부 시설급여와 이중지원은 불가하여 환수 조치

○ 지원내용

- ① 입학금·수업료(지원대상 : 고등학생 ☞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및 특성화 고등학교 포함)

- 지원대상 : 고등학생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포함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협의 후 입학금·수업료 지급

- 지원내용 :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신규 지원대상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 ② 교과서대

- 지원대상 : 고등학생

- 지원내용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지원방법 :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 시 동시 지원

③ 교육활동지원비

- 지원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 지급(교육부, 2026년 교육급여 기준 적용)
- 지원방법 : 1학기(3월), 2학기(7월) 2회 거쳐 지급, 신규 지원대상자는 급여 신청일이 상반기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 2회(최초 지급시, 7월)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하반기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 지원절차

구분	아동교육지원비 지원 절차
지원 금액	○ 아동교육지원비 지급단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그 지침에 따른 교육급여 지원기준을 따름
신청 방법	○ 입소자 신청서 작성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 보호비용(변경)신청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 제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

④ 교복비

-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학생
- 지원내용 : 동복·하복 각 300,000원 지급
- 지원방법 : 신입생의 경우, 동복비는 2월, 하복비는 4월에 지급 전학생은 전학시기 등 고려하여 지급하되, 타 기관·지자체 등에서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이 확인된 경우 환수 가능

(다) 생활지원비

- 지원대상 :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수급자, 미수급자 포함)
- 지원내용 : 미취학아동 월 20천원, 초등학생 월 30천원, 중학생 월 40천원, 고등학생 월 50천원 지급
- 지원방법 : 매월 1회 지급

(라) 직업훈련비

-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주거지원 임대주택 입주자
 - ※ 보호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지원받는 중간에 퇴소하는 경우 퇴소 후에도 동일 훈련직종에서 계속 지원 가능함
- 지원기준 : 국·공립 직업훈련기관, 민간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모든 외부 훈련기관을 포함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피부미용, 요리, 미용, 디자인, 컴퓨터 관련 등 실질적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한 직업교육 및 진학교육비
 - 직종별 훈련 과정 및 비용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인 1인당 지원단가를 규정하지 않음
 -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만 지원하며 시설이 교육기관에 입금하되 수강료, 교육기관이 발행한 청구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리
 - ※ 직업훈련비 선납이 원칙인 훈련기관의 경우에는 우선 선집행하고 향후 출석률 80% 미만인 경우 훈련생 본인이 직업훈련비를 부담할 수 있음
- 지원항목 :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직업교육비 또는 학원비, 교통비(필요시 1인당 월 10만원)
 - 직업훈련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재료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이 판단하여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 직업훈련비 추가로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지방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2) 비용 신청방법

- 보호비용 신청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에서는 각 지자체별 지원정책 여부를 확인한 후,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고, 지자체별 지원정책이 있을 경우 대상자에게 지원정책을 안내

3) 지원 방법

(가) 생계비

- 보건복지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와 같이 보호시설장에게 지급
- 생계비 지원대상자가 보호시설에 입·퇴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비는 입·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
 - ※ 보호시설장은 주·부식비와 피복비 등 구분 없이 집행 가능
 - ※ 특별위로금은 시설장을 통해 대상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 피해자 생계비 집행은 종사자 식비와 합산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함

(나) 아동교육지원비 : 보호시설장에게 지급하여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교로 직접 납부하고, 교과서대는 대상자 또는 동반입소한 피해자(입소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함

(다) 생활지원비 : 보호시설장에게 지급하여 피해자 또는 동반입소한 피해자(입소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함

- 집행실적 보고 : 보호시설장은 매월 전월의 집행실적을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군·구청장에게 보고

(라) 직업훈련비

- 교통비 지원방식은 훈련생의 계좌로 입금
 - 직업훈련비 선납이 원칙인 훈련기관의 경우에는 우선 선집행하고 향후 출석률 80% 미만인 경우 훈련생 본인이 직업훈련비를 부담할 수 있음
 - 직업훈련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 입금 시 시설명 노출에 유의

4)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지원

-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및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지원

바. 보호시설 기능보강

1) 지원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함

2) 지원내역

- 보호시설 신·증·개축비, 개·보수비, 임차보증금, 기자재 구입비
- ※ 기능보강비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지방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 ① 신축 및 증축, 개축비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법인에 한함)
- ※ 임차시설은 제외, 단,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취약계층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태로 공급하는 주택, ② 공공기관·단체 소유의 유휴공간 임대(이 경우 임차보증금이 ①의 유형과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더 낮아야 함) 경우에는 보호시설 기능 보강이 가능함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일 경우 지자체에서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는지 확인 후 예산교부 신청

② 개·보수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임차시설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필요시 예외 인정

※ 예외 : 방염설비 및 개·보수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시설안전에 위험이 따르는 경우(안전진단서 등 첨부)

③ 임차보증금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임차보증금 지원’ 부문
준용

- 지원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완료 후, 관련 사항 (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을 성평등가족부로 보고하여야 함

※ 다만, 임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 없이 계약할 수 있음

④ 시설장비 보강 : 사업계획서에 기자재명, 소요량, 사업비, 사용용도 및 기자재
보유현황 등을 포함시켜야 함

- 입소자 안전보장 및 편의를 위한 시설장비 우선 보강 원칙
- 기능보강비로 구입한 비품은 반드시 비품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번호 스티커 부착을 통해 식별·관리

* 관리번호, 품명, 규격, 취득단가, 취득일자, 내용연수 등을 포함(「물품관리법」제16조의2에 따른 내용연수 참조)

4) 사업수행(신·증·개축비, 개·보수비, 임차보증금)

○ 사업계획서 수립

- 신·증·개축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의 해당 유무와 건축 가능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신청하고, 건축규모는 예산신청에 따라 반영된 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시설의 부족 또는 과다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한 규모로 상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함

※ 신·증축비를 지원받아 시설을 운영중인 법인은 법인해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으로 설치된 건축물 등을 10년 이상 보조금의 목적사업 수행만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 (사업량),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자부담분),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조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도지사가 검토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만, 시설의 건축허가기관이 다르거나 건축공사 실시설계(본 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설계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설계도서는 배치도와 평면도만 제출)

※ 경미한 개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설계검토의견서 생략 가능

- 시설 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사업비 반납 및 이월

- 사업수행이 어려울 때에는 사유서 및 사업자의 포기서를 첨부하여 반납조치하여야 함
-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공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시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낙찰차액 활용사업

- 입찰결과 등에 따라 차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이 원칙임
- 다만, 관급자재비 변동·법정경비·안전시설물 설치·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 등 시·도지사가 해당 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음

○ 사업변경

- 국고보조사업계획의 변경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한하여 시·도 지사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면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공기연장,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변경, 사업량의 변경
 - 낙찰차액 활용사업(동일한 시설의 다른 기능보강사업에 한함)
- ※ 기자재 구입 및 변경 사항은 시도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성평등가족부에 별도 보고하지 않아도 됨

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

-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주민센터에 신청
 - ※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제작·배포한('21.9월) 「피해상담사실확인서 발급 매뉴얼」 참조
-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시, 전자소송의 사전포괄동의 안내
 - ※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우려 방지

가-1.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등 교부·열람 제한

-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교부·열람 제한 또는 제한 해지를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
-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행위자 본인의 제3자 증명서 등을 교부·열람·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자 개인 정보는 현출되지 않은 채 교부·열람·발급
 - ※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별표(*)'처리한 후 교부·열람·발급함
 - ※ 공시 제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관할 가정법원에서의 불복 기회를 보장

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주민등록 직권조치방법(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에 있어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아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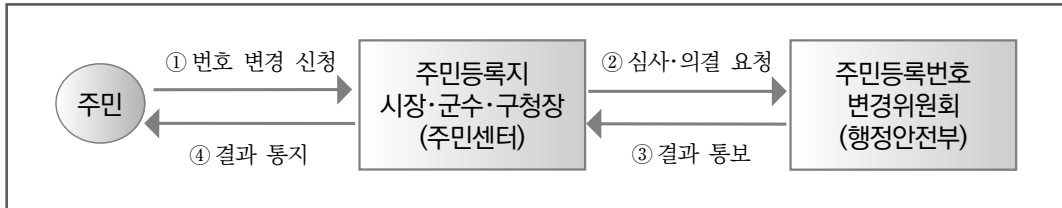
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 배경 :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17.5월~)
- 신청 대상자 :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입증자료 제출
 - * 대리신청 가능 :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법률대리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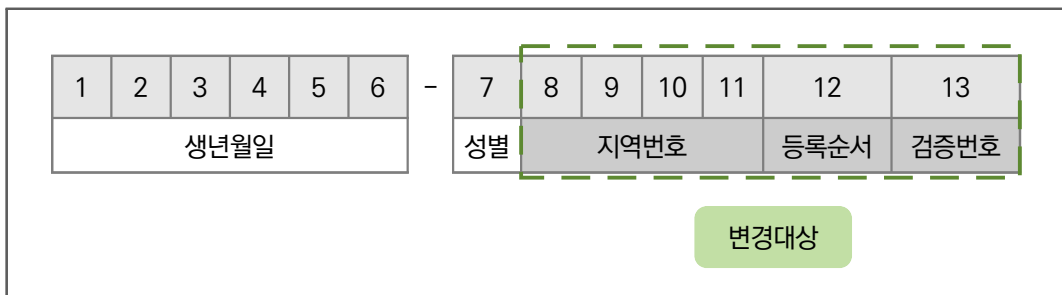
〈입증자료 예시〉

◇ 가정폭력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등

- 변경 절차: 신청자가 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변경



- 변경 후 기존번호와의 연계
 -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공공기관 ⇒ 자동변경
 -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등 ⇒ 직접 변경 신청
 -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공시제한 신청 및 해지신청 가능(법원행정처)
 - * 법정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임의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음
 - * 신청인이 직접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함(우편신청 불가능)
- 관련 서식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신청)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라. 가정폭력 피해아동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 제도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주소지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할 경우,
-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의거 우선적으로 취학 지원하고,
- 가해자(친권자 등)에게 학생이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2차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① 가정폭력 피해학생 취학 지원(전학 등)

-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주소지외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청가능
 - (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입증자료)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별지 [서식 6])
- (협조 요청사항)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정하여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
 -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학생의 재적교에서 요청하는 출결 관리 및 평가 응시 등에 협조함

※ (근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② 전학 처리시 주소지 등 개인정보 비공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가정폭력행위자는 제외한다)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③ **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④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 장”은 “고등학교의 장”으로, “교육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⑤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 친권자라 하더라도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피해 학생의 전학사실(전학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알리지 않도록 유의
- * 가해자에게 전학사실을 알리지 않음에 따라, 가해자가 학교장, 담임교사 등 학교 관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로 연락하여 저지

○ (전학 전 학교·교육청) 아동의 비밀전학 신청 시부터 전학 학교명 등 자료는 비공개로 처리하고,

- 가정폭력가해자에게 피해자 및 아동(학생)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
⇒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서 가정폭력피해 아동의 비밀전학 시 피해자와 아동의 연락처가 가해자(주로 아버지)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전학 간 학교명, 주로 어머니인 피해자와 아동의 거주지·입소 쉼터, 전화번호 등) 관리주의

* “전학처리 서류”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이므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주의표시(기재)하고, 별지 [서식 6]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리

* 가해자가 친권자 자격으로 전학 학교명을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유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제9조제1항 제1호, 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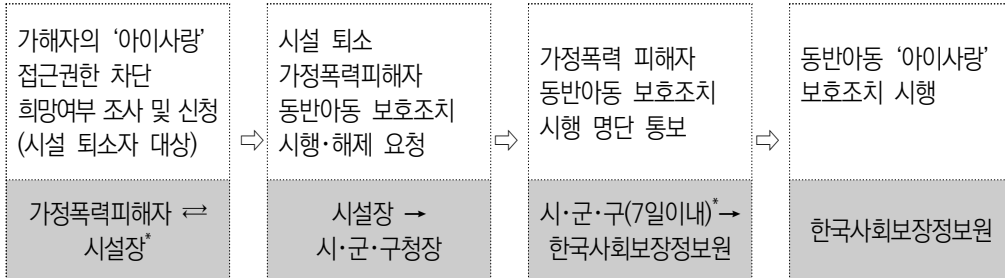
○ (전학 후 학교·교육청) 전학한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피해사실 및 전학 학교명 등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③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아동의 어린이집 정보 보호

- 시설 퇴소 아동의 정보가 '임신육아종합포털'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 퇴소 이후에도 전산관리번호로 정보 관리('21.5~)
- 처리절차



*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의제기 시 시·군·자치구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법원 판결문,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로 해제신청하고, 시·군·자치구에서는 해당 보호시설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전고지후 해제여부 판단·처리

④ 기타 협조 요청사항

- 학교와 교육청 직원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 실시 요청
 - * 직장교육, 워크숍 등 실시 시 유의사항(가정폭력피해 아동보호) 전파교육 등
- 자살징후,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의심되는 경우 전문상담기관에 연계

마.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거부(제외)제도

-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행 등 미성년 피해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 이후 퇴직시 자동으로 부모(가해자)에게 피부양자로 연계되어 피해자 자격변동 내역이 전달됨(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한 부모에게 자동연계)되므로 등재거부(제외) 제도에 대한 안내 필요

구분	등재 거부	등재 제외
내용	특정인에게 피부양자 자격이 등재되지 않도록 거부하는 제도	특정인 구분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이 등재되지 않도록 거부하는 제도
신청방법	피부양자 등재거부(제외) 신청서 작성 및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사 제출	

바. 보호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진료 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

-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환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 요구 불필요
 -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제4항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의료급여증을 소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의료급여증으로 신분을 확인하므로 주민등록증 등 별도의 신분증 제시 요구 불필요
 - ※ 근거 : 의료급여법 제8조(의료급여증)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진료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 허용. 다만, 건강보험 요양급여 진료자는 적용 제외
 - ※ 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제1항 1.가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0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 부여(「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지원내용 : 가정폭력피해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특례 적용
- 신청자격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요건은 제외함
- 지원요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 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함
- 우선 공급대상 임대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택1)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 성평등가족부의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의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 증거서류 신청·발급 절차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 (피해자)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 신청서 작성 신청 : [서식 3]
- (시·군·구청장) 보호시설 또는 주거지원시설에 발급신청서 내용 확인 요청
- (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발급신청서 내용 확인 후 시·군·구청장에 제출 : [서식 4]
- (시·군·구청장) 신청자(피해자)에게 확인서 발급 : [서식 5]

- (피해자) 피해자가 입소·입주한 사실이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임대주택을 말함)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청장에 [서식 3]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시·군·구청장)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은 해당 보호시설 또는 주거지원시설에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 또는 확인 요청
- (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시·군·구청장의 확인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서식 4]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서식 4 작성시〉 보호시설 퇴소사유 기재요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보호시설의 퇴소) 각호의 어느 하나로 기재**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4.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등

주거지원시설 퇴거사유 기재요령 : 아래 중 어느 하나로 기재

1. 입주 목적이 달성된 경우(사회복귀, 자립 등)
2.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4. 그 밖에 관리비 체납 등 입주자 준수사항 위반 등

※ 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의 장은 반드시 국민임대주택 관련 서류를 「시설 입소 확인서 발급대장」을 만들어 관리

- (시·군·구청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주거지원시설의 장의 확인서내용을 관련 보고서류 등과 확인하여 최종 검토 후 [서식 5]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주거지원시설 입주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발급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기간을 충족하는지 여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입주) 여부를 검토 후 확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
- ※ 보호시설 입소기간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입주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시설 위치 노출 등으로 피해자가 다른 시설로 옮긴 경우에는 퇴소 1개월 이내에 다른 보호시설에 재입소하였을 경우에는 연속 입소로 봄
(A 보호시설 3개월 입소 후 퇴소, 1개월 내 B 보호시설 재입소하여 다시 3개월 입소 후 퇴소일 경우, 6개월 입소로 간주)

○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신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 가정폭력 피해자 전세임대주택 입주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7항 및 제18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시·군·구청장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 시 전세임대주택 공급 가능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입주자 선정)

- ⑦ 시장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대상지역 공급계획물량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제7조제1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

4. 그 밖에 시장등이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자

제18조(공동생활가정 전세임대 운영특례)

- ① 공동생활가정의 입주대상자 및 운영기관 선정 등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공동생활가정 전세임대는 해당 시·도의 행정구역에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가구 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다.
- ③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미리 공공주택사업자 및 도지사등과 지원주택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입주대상자)

- ① 이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거사다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거나, 법무부장관이 주거사다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에 한한다.(이하 “입주대상자”라 한다)

...

2.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11 기타 행정사항

- 지자체는 관할 지역내 가정폭력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경찰, 1366센터, 상담소 등에서 시설입소 연계 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우선 입소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지도
- 보호시설이 폐쇄될 경우 시·군·구청장은 입소자 관계서류 일체를 관할지역의 다른 보호시설에 이송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시설 설치 인가 또는 신고, 입소정원 변경 시 운영비 등 예산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성평등가족부와 사전 협의
- 지자체는 관할 지원시설에 대하여 적정 입소자 비율이 유지되도록 지도하고 입소자 비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지자체 및 현장실정에 맞게 정원조정 추진
 - 지자체는 현장점검시 평균입소율(이용자 제외)이 최근 3년 평균 50% 미만인 시설에 대하여 정원조정 등 자체 개선안을 강구토록 지도
 - ▶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원에 따른 종사자 수의 유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정원조정 등 시설별 자체노력을 강구하여야 함
 - ▶ 지자체에서는 정원 대비 평균보호인원 비율이 낮은 보호시설의 정원을 시설과 협의하여 조정 검토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각 보호시설의 운영실적 등 관련 통계자료를 지정 서식에 의거하여 상반기 실적은 2025년 7월 30일까지, 연간 운영실적은 2026년 1월 30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호시설의 장은 사회 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을 활용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지급·정산 등 회계 업무, 종사자 인사업무(시설장·상담원의 채용공고, 선발, 퇴직 등), 통계관리 업무 등 가능한 한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여야 함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할 수 있음
-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시설안전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사회복지시설 화재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용할 수 있음

1 목 적

-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입소 후 퇴소하여 자립을 계획하는 피해자(이주여성 폭력피해자 포함)의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과 동반입소한 아동의 퇴소 후 생활 안정 및 자립의지를 고양

2 사업 개요

가. 사업 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 후 퇴소 시 자립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본인과 동반아동에게 지원금 지원
 - * 보호시설 퇴소 후 퇴소자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 등을 지원

나.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다. 추진 경과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법률 근거 마련('17.12)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국비 지원 실시('19.1.~)
- '24년 자립지원 대상자의 동반아동 지원금 지급 시행('24. 1.)

라. 지원 대상

-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 가정폭력 피해자(이주여성 폭력피해자 포함) 및 동반 아동
 - ①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 입소기간이 4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입소한 인원 중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고 퇴소가 불가피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②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되거나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주거지원 퇴거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고 운영기관은 시·군·구에 자격여부를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한다
- ③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신청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 입소일(직전 보호시설과 다른 보호시설로 입소한 경우 포함)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인 경우에 한함

마. 지원 금액 : 피해자 1인당 500만원, 아동 1인당 25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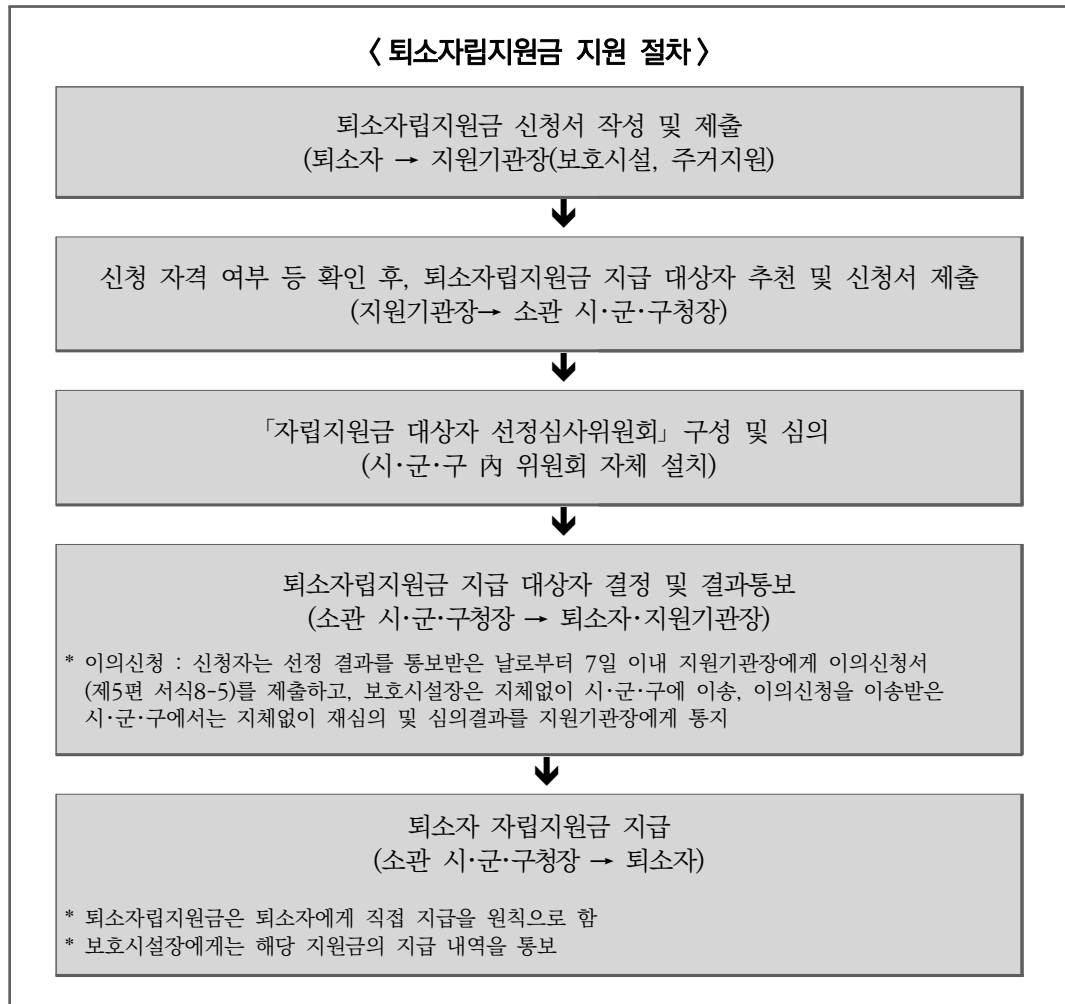
바. 지원 원칙

- 1인당 1회 지원원칙
 *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자체는 신청자가 가정폭력보호시설 및 타 보호 시설에서 퇴소할 당시 이미 퇴소자립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지급해야 함
- 자립지원금 지원 선정자 본인통장으로 직접 지급(불가피 할 경우 시설장 통장으로 지급하되, 이 경우 시·군·구는 지급대상자에게 통보)

3 사업 추진체계

- 성평등가족부
 - 사업계획 및 사업지침 수립
 - 사업총괄 및 보조금 교부(성평등가족부 → 시·도) 등
- 지자체(시·도, 시·군·구)
 - 보조금 교부(시·도 → 시·군·구)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자립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시·군·구)
 - 지원기관 실태점검 및 관리·감독
- 지원기관(보호시설 및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
 -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및 자립지원금 신청서 추천 및 신청서 제출
 - 퇴소자에 대한 상담과 취업 등 자립지원 사후관리

〈 퇴소자립지원금 지원 절차 〉



가. 신청방법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포함)은 퇴소자의 자립지원금 자격 여부 확인 후 소관 시·군·구에 신청서 제출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후 폭력피해 주거지원 시설로 입소할 경우에는 주거지원시설 퇴거시에 지급하며, 퇴거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 * 미퇴소자의 경우 사전준비 등을 위해 퇴소 전 2개월 전부터 지원가능
 - * 입소기간 4개월을 충족하였으나 자립지원금을 받지 않은 퇴소자가, 2개월 이내 보호시설 재입소 시 신청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자립지원금 신청 가능
- 연도말 신청·선정으로 예산이 소진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해 지급이 가능함
 - * 자립지원금 지원실적은 지급연도로 포함

나. 선정방법

- 자립지원금 신청서(서식 8-1), 보호시설 퇴소 또는 지원주거 퇴거 후 사후관리 여부(서식 8-2), 사후관리서(서식 8-3)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시·군·구는 대상자의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립지원금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선정심사함
 - ※ 심사기준은 [서식 8-4](예시)를 참조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 심사기준 마련 및 활용

《이의신청 절차》

- 퇴소자는 자립지원금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지원기관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
- 지원기관장은 지체없이 시·군·구에 이송
- 이의신청을 이송받은 시·군·구에서는 지체없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 결과를 퇴소자 및 지원기관장에게 통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
 - 심사위원은 시·군·구의 가정폭력 업무담당 공무원, 지역의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단체·시설협의회의 임직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호선
 -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단, 공무원인 심사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에 한함
-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서면심의 가능)
- 심사위원회는 대상자의 지급순위 확정 등 자립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거나, 타 입소자 및 상담원의 안전을 위협하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유로 퇴소·퇴거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예산 현황 : 총 1,353백만원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 1,036백만원
- 이주여성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 317백만원

나. 일반 원칙

- 국고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감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함
- 국고보조금은 성평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 피해자 계좌로 교부
- 사업결과는 운영기관 → 시·군·구 → 시·도 → 성평등가족부로 보고 (익년도 1월말까지)

다. 자립지원금 지급 후 사후관리

- 자립지원 사후관리서(서식 8-3)을 참고하여 사후관리 실시

1 | 개 요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원 양성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2 |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폐지등

1)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가. 설치주체 및 설치방법(가정폭력방지법 제8조의3 제1항 및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직접 설치
 - ※ 단, 지방자치단체 외의 각급 정부기관에서 설치 시에는 관할 시·군·구청과 사전 협의할 것
-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 ※ 국·공립대학의 경우도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나. 설치기준(가정폭력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4)

- 강의실 : 교육인원 1인당 연면적 1m² 이상
 - ※ 자체 강의실을 확보하여야 함. 다만 교육공간이 부족할 경우 교육에 적합한 다른 장소 활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인원당 면적기준은 충족하여야 함
- 사무실 : 교수연구 및 사무 공간
- 기타 : 화장실·급수시설·소방시설·방음장치·채광·환기·냉난방·조명시설 및 교재·교구 구비

다. 설치신고(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

- ① 신고서 제출 : 법인 ⇒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서 서식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 ※ 시설설비란에 강의실 면적 및 교육정원을 기재하도록 함

- 신고서 첨부서류

- 법인의 정관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 교육훈련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교육훈련시설 종사자의 명단

※ 교육훈련시설의 시설장이나 종사자에 대한 별도 자격기준은 없음. 다만, 운영주체인 비영리 법인에서 책임을 지고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 및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함

-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에는 연간 교육계획 및 교육강사 등 확보 계획 등에 대한 관련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② 검토 :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수리 시 검토사항

- 신고자격(비영리법인 여부 및 정관상 목적사업 부합 여부 등) 적정 여부
※ 정관이나 규약 등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사업 내용이 포함
- 시설기준(시설면적, 시설설비 등) 적합 여부
※ '건축물 용도기준'과 관련하여 노유자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외에 '업무시설' 등에도 설치가능
- 시설 종사자 확보 여부 및 강사의 자격
- 건축법령, 소방법령 등 관계법령 규정 준수 여부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정 구비서류 외 설치신고 검토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음

③ 신고증[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교부 : 시장·군수·구청장 ⇒ 법인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은 접수 후 10일 이내 처리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지7호
- 신고증에 강의실 면적 및 교육정원 반드시 기재

2) 변경신고(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

① 변경신고 대상(사유)

- 교육훈련시설장 및 교육정원의 변경
- 교육훈련시설의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② 변경신고서 제출: 법인 ⇒ 시장·군수·구청장

- 변경신고서 서식: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 변경신고서 첨부서류
 -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 장 변경의결서
 -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변경에 한함)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변경에 한함)
 -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③ 검토: 시장·군수·구청장

④ 변경신고 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은 접수 후 5일 이내 처리
 -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별지9호
-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교부
 - ※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 검토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3) 폐지·운영중단신고(규칙 제12조)

① 운영중단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함

② 신고서 제출: 법인 ⇒ 시장·군수·구청장

- 운영중단·폐지신고서 서식: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신고서 첨부서류
 -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제외)
 -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③ 검토: 시장·군수·구청장

④ 운영중단·폐지신고 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은 접수 후 6일 이내 처리
 -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별지10호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강 중 환불을 요청한 교육훈련자에 대한 환불조치 여부, 교육훈련과정 수료 및 교육훈련실적 보고 완료 여부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후 신고 수리

4) 재개신고(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

- 운영중단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청에 운영재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교육 운영

가. 교육 강사의 자격기준(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7호(제7호의 경우 같은 법 제59조제4항0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서의 입학학력으로 인정되는 학교만 해당한다)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 의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 가정폭력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상담소·보호시설·긴급전화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 ※ 교육훈련시설의 종사자
 - 교육훈련시설의 시설장이나 종사자에 대한 별도 자격기준은 없음. 다만, 운영주체는 교육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 및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함

나. 교육과정의 운영기준(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

교육분야	교육과목	이수시간
소양분야	- 가족복지 및 정책 -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 여성인권과 폭력	15
전문분야 I	- 가정폭력의 이해 - 가족법 및 가정폭력관련법 - 법률구조실무 - 법적절차 및 대응 - 의료지원실무	30
전문분야 II	- 상담심리개론 - 상담의 기법 및 프로그램 -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 대상별 상담과정	35
전문분야 III	- 상담 사례연구 및 실무실습 - 역할연습	20
총 계		100

○ 총 이수시간 : 100시간 기준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20퍼센트 범위에서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조정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 이수시간은 최소 100시간 이상이어야 함

○ 교육기간 : 3주 이상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원칙

○ 교육강좌당 수강생 수 : 70명 이하

○ 수강료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 상한 범위(1인당 40만원 이내) 내

※ 교육훈련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음

○ 강사 관련 사항 : 강사 1인이 4과목 이상 강의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매 교육기간별 강사의 인적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교육내용 필수 포함 사항

- ‘아동복지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아동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한 사항(신고요령, 피해아동보호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에 의거하여, 장애인 학대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한 사항(신고요령,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에 의거하여,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한 사항(신고요령, 피해노인 보호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함
-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교육 훈련 과정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없음
 - (예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원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150시간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별도로 각각 100시간을 운영하여야 함
- 중복수강 과목의 인정
 - 성폭력 또는 성매매 상담원 양성교육 과정 중에서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교육과 중복되는 3개 과목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수료한 적이 있으면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 과정 일부 수강 면제

〈중복 교과목〉

- 소양분야 2과목: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여성인권과 폭력
- 전문분야 1과목: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 중복이수자는 이전에 교육을 받았던 교육훈련시설로부터 교과목 이수 확인서[서식 13]를 발급받아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 제출

※ 수강 면제 신청을 받은 기관은 확인서를 제출한 수강생이 실제로 그 과목에 출석을 했는지 여부와 중복 수강을 인정할 교과목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수강 면제 인정 가능(이수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더 적은 수의 시간만 인정 가능)

다.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기준

- 개 요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을 집합교육 외에 일정부분 사이버 교육을 인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한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자격
 - 「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사이버 교육 운영시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3항에 의한 교육과정 중 “소양분야 교육과목”과 “전문분야 중 실습분야를 제외한 이론분야 교육과목”을 합하여 최대 40시간으로 한정

〈교육과목별 이론 및 실습과목구분〉

교육 분야		교육 과 목	이수시간
소양분야	이 론	가족복지 및 정책	15
	이 론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이 론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이 론	여성인권과 폭력	
전문분야 I	이 론	가정폭력의 이해	30
	이 론	가족법 및 가정폭력 관련법	
	실 습	법률구조실무	
	이 론	법적절차 및 대응	
	실 습	의료지원실무	
전문분야 II	이 론	상담심리개론	35
	실 습	상담의 기법 및 프로그램	
	이 론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실 습	대상별 상담과정	
전문분야 III	실 습	상담 사례연구 및 실무연습	20
	실 습	역할연습	
총 계			100

○ 교육시간 인정기준

- 기존 오프라인 교육훈련시설 교육시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질의응답, 온라인 토론 등 수업에 부수되는 활동을 제외한 순수한 “온라인 강의 진행시간”만을 “사이버 교육시간”으로 인정

○ 출석 및 평가관리

(가) 출석관리

- 「원격대학 학사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운영중인 교육과정에 준하여 출석인정 기간, 출석인정방법 및 결석처리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시스템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나) 강의내용관리

- 수업계획서는 수강신청 전 운영플랫폼에 입력되어야 하며 계획서에는 과목 정보(수업개요, 수업목표, 수업진행방법 등)와 평가기준(출석, 수업진도율, 시험 등 평가항목과 반영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 관리자는 학생별 교육과정 이수여부 및 진도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다) 평가관리

- 사이버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출석평가 방식(온라인평가 불가)으로 하여야 하며, 과목별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해당과목에 대한 교육수료를 인정함

(라) 게시판 및 정보 공유 관리

- 학습 참고자료나 학습운영 관련 궁금한 사항은 게시판,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학습자와 교수 또는 운영자간 활발한 의견교류 및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4 교육훈련시설의 운영 일반

가. 수강생 모집

○ 수강생 : 별도 기준 없음

- 수강생에게 교육과정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안내

○ 광고물,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모집할 수 있음

- ※ 교육훈련시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강생 모집을 위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강료 환불 등을 하여야 함

나. 교육설명

- 교육훈련시설은 교육희망자가 수강등록 하기 전 교육의 목적·과정 및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잘못 등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 수강등록

- 교육수강신청서[서식 9]는 교육실시 개시 전까지 접수 완료하여야 함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수강생명부[서식 10]를 작성하여야 함

라. 교육과정 운영계획 보고

- 교육훈련시설의장은 매 교육과정별 운영계획서, 수업시간표, 수강료 책정금액, 강사 인적사항, 수강생명부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신고된 교육훈련시설 외의 장소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조치사항 (규칙 별표 4 제1항 가목)

① 교육정원 등이 변경되는 경우

- 변경(교육정원)신고서 :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 첨부서류 : 교육정원 변경의결서, 교육장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신고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 대장등본 포함),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및 교육기간동안의 강의실 및 부대시설 사용계약서
-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장소는 강의실이 교육인원 1인당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등 교육에 적합한 시설기준 등을 갖춘 곳이어야 함

② 교육정원 등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직전 교육과정 운영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교육과정 개설 시)

- 시·군·구청에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교육기간 동안의 강의실 및 부대시설 사용계약서'만 제출

마. 수강료 수납 및 환불(가정폭력방지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6조)

- 교육수강료(교재비 포함)는 1인당 100시간 기준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교육훈련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음
- 수강료는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교육훈련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이 중단되어 교육 전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교육생들이 수료를 못한 경우 교육훈련시설은 전액환불 조치하여야 함
- 교육훈련시설은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교육생이 교육 개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하고, 교육개시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바. 과정운영 및 수료인정

-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시간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서식 11]을 발급하도록 함
- 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 처리함
 - ※ 결석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며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사. 교육과정 운영결과 보고

- 교육훈련시설은 교육과정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료자명단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5 처분, 과태료 및 벌칙

가. 처분(가정폭력방지법 제12조)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교육훈련시설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강사로 채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 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경고·업무정지 또는 시설의 폐지 등 처분을 할 수 있음

- 교육생에게 수강료 외 부당한 비용을 징구하거나, 교육훈련 자격미달 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준에 미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때에도 행정조치를 할 수 있음

나. 과태료 및 벌칙(가정폭력방지법 제20조 및 제22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 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거나 또는 관계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동 법에 따른 신고 없이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기타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동 법에 따른 신고 없이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행정사항

-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교육훈련시설은 교육훈련실적, 재무·회계 서류 등을 폐지신고서에 첨부하여 당해 시·군·구청장에게 폐지 신고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현장점검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 시·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교육훈련 실적 등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1 목 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 교제폭력 등 다양한 폭력 피해자가 언제라도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전화 「1366」을 365일·24시간 운영하여 피해자의 초기상담과 긴급 임시보호 지원 및 전문지원기관 연계

2 운영 방향

- 위기상담, 긴급보호 등을 위한 초기지원기관으로써 365일 24시간 운영 체계를 유지
- 피해자 지원시설, 경찰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광역 단위 거점 역할 수행으로 기초 단위의 신중·복합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서비스 제공

3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4 주요 업무

- 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신고접수 및 긴급상담,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 전문상담소(상담원)에 연계가 곤란한 야간·휴일 등 특정 시간에는 1차 긴급상담 후 최대한 신속히 전문상담소로 연계조치
 - 폭력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위기개입이나 상담활동, 긴급한 구조를 위해 112, 119 등의 연계조치, 관련 상담·의료·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기타 폭력피해자가 요청하는 사항 등
 - 폭력피해자 상담 및 연계를 위한 현장지원

-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초기상담 및 임시보호 등 지원
- 긴급피난처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에 대한 임시보호(최대 7일), 숙식 및 정보제공 등 서비스 제공

※ 단, 교제폭력 피해자 등 다른 보호시설로 연계가 어려운 경우 30일까지 연장하여 보호 가능

○ 그 외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 지원, 전자소송의 사전포괄동의 안내
-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아동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 제도 지원 등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거부(제외)제도 안내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열람 또는 교부의 제한 안내

○ (통합지원사업)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복합·고난도 사례 및 여성폭력 사각지대에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 2026년 여성폭력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 수행기관 참고사항

- 주요업무 중 통합사례관리는 여성폭력 지원시설 간 피해자 지원의 혼란이 없도록 아래 기준 준수
- ▶ 여성긴급전화 1366 접수사례를 ① 복합·고난도 사례, ② 일반 사례, ③ 단순 사례로 구분
- ▶ 통합지원단은 ① 고난도 복합 사례 위주로 지원하되 ②, ③ 사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로 즉시 연계

구분	개념	수행업무
①복합·고난도 사례	▶ 2개 이상의 복합적인 여성폭력 등 피해를 경험하여 지원기관 2개소 이상의 협업지원이 필요한 사례 ▶ 사각지대 고난도 피해지원 사례 - 기존 전달체계에서 누락되어 지원이 어려운 사례 - 현재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에서 원활히 지원이 되지 않는 사례 -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지원이 어려운 사례 등	▶ 통합사례관리 • 통합지원단의 초기 위기 개입, 통합사례회의 운영, 주사례 기관 연계 협력, 지원서비스 및 피해자 모니터링

* 사업운영 관련 상세내용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배포하는 '통합지원 사업 안내서' 참고

5 운영주체 및 시설 설치기준 등

○ 운영규모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 센터																		
총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	1	1	1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 경기도 2개소(경기, 북부)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수행 1366센터											
총계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	1	1	1	1	1	1	1	1	1	1	1

○ 시설종류 : 사회복지시설 중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운영 주체

-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단, 직영이 곤란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법률구조법인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운영 : 사각지대 상담 및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 여성폭력피해자 초기지원체계 총괄·지원 : 상담시스템 및 통계 운영관리, 폭력 피해자 초기지원 및 협력강화사업 등
- (통합지원사업) 사업 운영 매뉴얼 배포 등 사업관리 전반 지원

※ 사업관리 : 월 실적관리, 정례회의, 현장점검, 사업 참여인력 슈퍼비전·워크숍 역량강화 등

-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고용승계 의무 : 긴급전화 1366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1항 5의2에 근거하여 1366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 시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에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

- ※ 위탁심사 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여부 확인 필요

- 설치 기준 및 규모 : 연면적 100㎡ 이상이어야 하며, 타 시설과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사무실 :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상담실

- 33㎡ 이상의 규모로 구획된 전화상담실 및 개별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상담 내용이 노출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원간 방음이 될 수 있는 설치구조를 갖추어야 함

- 긴급피난처

- 야간, 심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 긴급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16.5㎡ 이상의 긴급피난처를 갖추어야 함

- ※ 단, 인근 보호시설 등에 7일 이내 전원 조치

- 시설 구조·설비

- 1366전용상담시스템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통신보안 및 PC 보안장치를 갖추어야 함 * 여성긴급전화1366전용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

- 일조·채광·환기 등 종사자 및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 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함

- 종사자 소진방지 및 안전대책

- 센터장은 종사자 소진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자체 운영비 내에서 종사자 소진방지 및 정신건강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 지원 가능 항목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치료, 개인 및 집단 상담·심리치료, 힐링 프로그램 교육 등 프로그램화된 것은 참여지원 가능

- ※ 지원 가능 액수 : 연간 1인당 30만원 범위 내

- 센터장은 종사자가 상담 등 업무와 관련 폭행 등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
- 시설 내·외 CCTV 설치, 가스충 등 구비
- 경찰관서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보험가입여부 확인**(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 ▶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 시·군·구는 시설 이용자와 생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법 제58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 [별표 5]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것
 - 지자체는 시설 정기안전점검 시 각 시설의 대인·대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1인당 배상책임보험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 책임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배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의미함
 - ** 책임공제라 함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설립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 의미함
- ▶ 시설의 지도·감독청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시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소멸시 상품을 가입토록 관리해 나가되 불가피하게 해당 시설이 적립식 상품을 가입한 경우라면 시설이 그 만기 환급금 수령 후 시설운영비로 세입처리를 반드시 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참조)

- 위원장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중앙센터는 진흥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여성폭력방지 관련 법령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 여성폭력방지 관련 법령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이용자 대표
 - 여성폭력방지 관련 법령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대표
 - 해당 시·도(또는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여성폭력방지 관련 법령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 공익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2항제6호 참조)

-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관련 법령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법인의 임원 및 시설장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가 명확한 자는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할 것
 - *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에 유의할 것(법제처 해설, 17-0433)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관련법 제36조제1항 참조)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가정폭력 피해자 특성에 따른 연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시설 운영위원회의 보고사항(관련법 제36조제3항 참조)
 - ※ 아래 사항 등을 운영위원회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은 아님
 -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 ☞ 국가감염병 확산 등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서면보고로 갈음
- 회의 개최
 -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운영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위원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
 - 회의결과 공개 : 회의는 시설 생활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 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위원장이 비공개 결정 가능(비공개사유는 공개하여야 함)운영위원회 운영일지를 작성·보관
 - 회의개최 방법 : 대면심의가 원칙이며, 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원격영상 회의는 허용(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준용)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원격영상회의와 같은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심의 가중 다만 이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및 분쟁소지 해소를 위하여 영상회의를 녹화하여 보관

- ①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함
- ②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운영위원회 위원임을 확인)
- ③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간 의견교환이 가능하여야 함
 - 전자적 방법의 운영위원회 참여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이 있는 시설의 경우, 법정처리기한 등 심의의 시급성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음
 - 다만, 전자적방법의 운영위원회 진행이 곤란한 사유를 관할 지자체에 명확히 소명

-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중앙센터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산 제출 시 함께 제출

6 종사자 채용 및 근무방법

- 종사자(이하 ‘센터장’ 포함)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기준은 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한다

○ 종사자 채용 및 임면

- 센터장의 임면 시에는 위탁운영기관에서 반드시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임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설은 자치단체장이 임면함

- 종사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사자가 될 수 없음(법률 제8조의2제1항)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해 공개 채용 과정에서 종교관련 정보, 가족관계, 출신지역 정보 등 개인정보 취합 금지

- 운영주체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응시자에 대한 서류 및 면접심사 후 선발

- 근로계약서 작성 비치

- 운영주체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전담직원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

- 종사자 결원 시 1월 이내에 신규 종사자를 공개채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25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함

○ 종사자 채용계약 시 준수사항

- 센터장은 종사자 채용 시 반드시 사회복지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사유 : 종사자 경력인정여부의 증명서류 제출 시 증빙자료로 활용

○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 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의 자격은 상담원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 한하며,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인력 기준 및 배치

- 전담인력 배치 : 센터당 15명 이상(센터장 및 상담원, 현장상담원 등) / 통합사례 관리자 미포함
- 운영주체(법인 등 기관) 관계자가 센터장을 겸직할 경우에는 센터장을 제외한 상담원을 전담직원 인력기준을 반영하여 배치하고 이 경우, 겸직한 센터장의 인건비는 국비 지원 제외
- ※ 단, 관계자로서 센터장을 겸직하는 경우, 운영주체(법인 등) 사무국외 타 사업 및 시설에서 겸직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함
- 필요시 회계·사무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채용·배치할 수 있음
- 상담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음
- 통합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 2인을 추가 배치

○ 종사자 복무원칙

-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센터장은 상근해야 하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센터장과 상담원은 전임하여야 함
- ※ 시설장의 상근의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참조

○ 종사자 직급 및 자격기준

직급	자격기준
센터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성매매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만 해당한다) ※ 인력의 효율적 운용 및 대표의 대외활동 측면에서 운영주체(기관) 관계자의 센터장으로 겸직은 가능하나, 위의 자격 ①~③ 중의 하나에 충족해야 하고, 운영주체 사무국외 타 사업 및 타 시설에서 겸직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상담원	1.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외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원만 해당한다) 4. 1366에서 자원봉사 상담원으로 1년 이상이면서 500시간 근무한 자 ※ 1366 자원봉사 경력으로 채용되고자 하는 상담원의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위 근무기간 및 시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함 ※ 1366 자원봉사 경력으로 채용되는 자는 전체상담원의 30% 이내로 하며, 2013년 지침 시행 이전에 자원봉사 경력으로 기 채용되어 근무 중인 상담원은 이 비율(30%)에서 제외함 ※ 종전 지침의 규정에 따라 기 채용된 상담원은 계속 근무 시에만 자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함
현 장 상담원	1.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상담원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할 수 있음
(통합지원사업) 통합사례 관리사	1. 여성폭력 피해지원 및 통합적 사정의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통합사례관리사) 배치 2. 전담인력은 다음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근무경력은 각 자격증 취득 이후 해당 분야의 단체 또는 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산정) ※ 2차 공개채용 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원 종사자 임면 기준으로 완화하여 채용을 추진할 수 있다.

※ 1366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담원 자격을 갖춘 자 중 직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4시간 운영에 차질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 근무시간

- 상담원이 8시간 3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지정
 - ※ 종사자의 휴일 및 야간근무, 연·월차 휴가 등 복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기타 사항은 지자체 및 위탁법인의 운영규정에 따름
- 통합지원사업 전담인력(통합사례관리사)의 근무시간은 월~금(공휴일 제외), 9:00~18:00(주 40시간) 근무 원칙으로 3교대 근무자로 배치 불가

○ 종사자 역량강화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연중)
 - 시행기관 : 성평등가족부장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시·도지사
 - ※ 법정 의무교육 이외에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연수비를 기관운영비 내에서 지출 가능

• 법정 의무교육 안내

구 분	법적근거	대상	시행주체	이수방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 평등법 제13조	전 종사자	고용노동부	직원연수·조회·회의, 사이버 교육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전 종사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privacy.go.kr) 참고
퇴직연금제도 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고용노동부	온라인, 집합, 서면, 상시게시(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	전 종사자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 촉진법 제5의2	전 종사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참고(연 1회 1시간 이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협회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8시간 이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전 종사자	고용노동부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교육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 종사자	성평등가족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연 1회 이상)

※ 시설장 및 종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수하도록 노력할 것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긴급피난처 피신 및 관련기관 연계 등을 위해 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서비스 지원
 - 현장상담 수요발생시 상담원은 2인 1조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찰이 동행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함
 - 현장 지원 출동 후 (수기 또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근무일지 작성

- 여성폭력 피해지원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복합유형 폭력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 및 사례관리
 - 통합사례회의 개최를 통한 피해자 통합지원계획 수립 및 주사례기관 연계, 모니터링 등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자체 및 경찰,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확대를 위한 활동

통합사례관리 전담인력 지원사례(예시)

- 성폭력 피해자 A 지원사례
 - 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 + 성폭력상담소의 상담 지원으로 일반연계
 - 이후 가족 내 폭력 문제가 드러나며 1366으로 재사정 및 지원 연계 요청
 - (1차 회의) 지자체, 피해자보호시설, 상담소와 사례회의 진행하며 가족과의 분리 및 지원 논의
 - ⇒ 보호시설, 긴급 생계비, 자활 프로그램 연계
- 열악한 주거환경과 가해자 위협 상황에 놓인 가정폭력 피해자 B 지원사례
 - (1차 회의) 지자체, 종합사회복지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사례회의 개최
 - ⇒ 거주지 수리, 응급 안전벨 설치, 긴급생계비 및 물품지원 등 통합지원
 - (2차회의) 피해자 거주지에 가해자가 접근, 피해자의 위협 상황 해소 필요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자체 협력을 통해 타 지역 주거이전 지원

- 통합지원 사례관리는 단순사례, 일반사례, 복합·고난도사례에 따라 처리 프로세스가 구분, 단순 및 일반사례는 기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연계 및 지원
- 통합사례관리사는 통합사정을 통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사례(복합·고난도 사례) 위주로 선정 (※ 상세 내용은 하단 고난도 사례선정 기준 참고)

고난도 사례 선정 기준

1단계 : 사례의 복합성 사정	① 5대 폭력 및 2개 이상의 복합적인 여성폭력 등 피해 사례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범죄) ② 사각지대 피해지원 사례(예시) - 상담소 미설치 지역 : 기초 지자체의 여성폭력지원기관 없어 통합지원단이 직접 개입해야 하는 사례 - 광역단위 자원 연계 사례 : 광역·중앙단위 자원이 필요한 사례 - 신종폭력 및 고난도 사례 : 기존 전달체계에서 누락이 되거나, 지역사회복지 지원체계에서 원활히 지원이 되지 않는 사례											
2단계 : 사례의 위험성 사정	폭력의 특성과 재범위험성을 사정 - 각 영역에서 해당되는 문항이 하나 이상인 경우 통합지원을 우선 고려 - 4번과 6번은 결정문항으로 해당 시 통합지원을 우선 고려 <table border="1"> <thead> <tr> <th></th><th>내 용</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5">폭력 특성</td><td>1. [반복성] 같은 폭력이 2회 이상 반복되는가?</td></tr> <tr> <td>2. [지속성] 장기간 폭력피해가 지속되었는가? (예: 1년 이상 폭력피해가 지속)</td></tr> <tr> <td>3. [가속성] 폭력의 강도가 점차 심해지는가?</td></tr> <tr> <td>4. [중첩성] 여러 유형의 폭력이 중첩되는가? (예: 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가 동시에 발생)</td></tr> <tr> <td>5. [확장성] 피해여성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폭력피해가 발생하는가?</td></tr> <tr> <td rowspan="2">재범 위험성</td><td>6. 가해자 추적 및 보복의 위험이 있는가?</td></tr> <tr> <td>7. 가해자와 현재 물리적 분리가 불가능한가? (예: 함께 거주하는 가족, 직장 상사 등)</td></tr> </tbody> </table>		내 용	폭력 특성	1. [반복성] 같은 폭력이 2회 이상 반복되는가?	2. [지속성] 장기간 폭력피해가 지속되었는가? (예: 1년 이상 폭력피해가 지속)	3. [가속성] 폭력의 강도가 점차 심해지는가?	4. [중첩성] 여러 유형의 폭력이 중첩되는가? (예: 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가 동시에 발생)	5. [확장성] 피해여성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폭력피해가 발생하는가?	재범 위험성	6. 가해자 추적 및 보복의 위험이 있는가?	7. 가해자와 현재 물리적 분리가 불가능한가? (예: 함께 거주하는 가족, 직장 상사 등)
	내 용											
폭력 특성	1. [반복성] 같은 폭력이 2회 이상 반복되는가?											
	2. [지속성] 장기간 폭력피해가 지속되었는가? (예: 1년 이상 폭력피해가 지속)											
	3. [가속성] 폭력의 강도가 점차 심해지는가?											
	4. [중첩성] 여러 유형의 폭력이 중첩되는가? (예: 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가 동시에 발생)											
	5. [확장성] 피해여성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폭력피해가 발생하는가?											
재범 위험성	6. 가해자 추적 및 보복의 위험이 있는가?											
	7. 가해자와 현재 물리적 분리가 불가능한가? (예: 함께 거주하는 가족, 직장 상사 등)											

○ 사례 선정 시 유의사항

- 폭력피해 유형의 중첩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폭력이 가지는 특성과 재범 위험성을 함께 고려함. 피해여성이 폭력에 노출된 기간이 길거나 가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추적의 위험이나 폭력의 재발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을 우선 선정함
- 5대 폭력 피해사례를 우선지원 대상으로 고려하되 정해진 유형에 속하지 않는 피해 또한 지원 대상 여부를 사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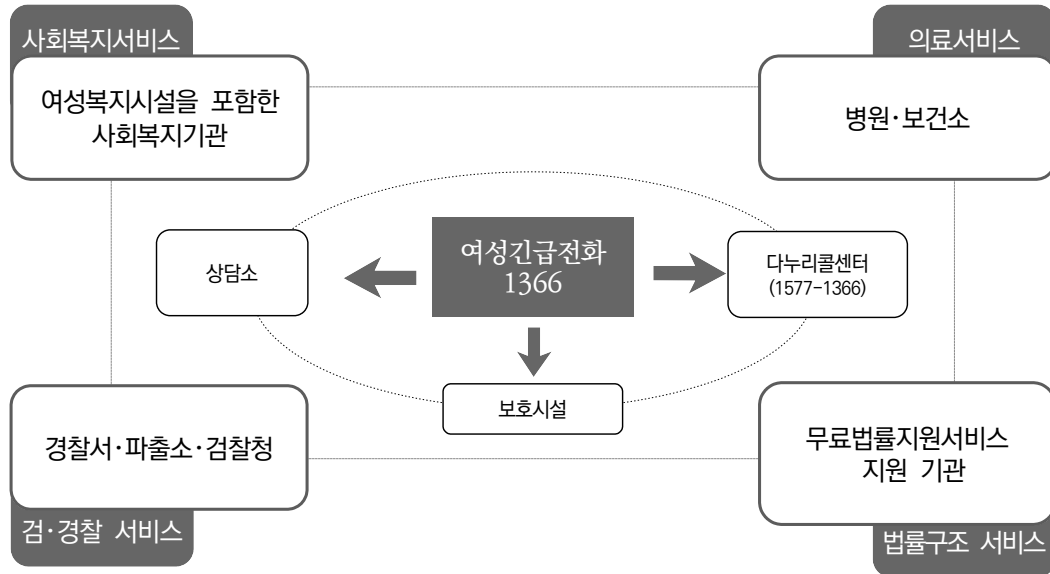
여성폭력피해 사례 분류 및 수행주체

구분	개념	수행업무	수행주체
고난도 사례	▶5대 폭력 피해지원 사례 및 2개 이상의 복합적인 여성폭력 등 피해를 경험하여 지원기관 2개소 이상의 협업지원이 필요한 사례 ▶사각지대 피해지원 사례	▶지원기관의 1대1 사례관리 ▶통합 지원단의 통합 회의	▶(사례관리) 피해자 지원기관·유관기관 ▶(통합) 사업 운영기관
일반사례·단순 사례	▶1366센터 및 피해자 지원기관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타 기관으로 연계가 필요한 사례 ▶피해자의 원하는 지원이 명확하며,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된 사례 ▶기존 전달체계에서 지원 가능한 사례	▶초기상담 기관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지원기관으로 연계 및 종료 ▶초기상담 기관에서 사례관리	▶1366센터 및 피해자 지원기관 ▶유관기관

- 24시간 Hot-Line 운영
 - 서비스 대상자가 긴급상담 및 안내·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운영체제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8시간 3교대 근무체제로 운영
 - 서비스 대상자와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긴급보호 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신전화 회선을 5회선 이상 설치하며 상담 또는 연계기능을 빠른 시간 내로 완결하여 상시 긴급통화가 가능한 상태 유지
 - 정보제공, 의료서비스 및 위기개입 서비스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기능 수행
 - 야간근무자가 없는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는 퇴근 시 상담전화를 「1366」에 착신하도록 조치
 - 시·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지역의 1366센터 운영이 중단될 경우, 기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긴급보호 조치
 - 긴급피난처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을 임시보호(최대 7일*) 및 숙식제공 등 서비스 제공
 - * 단, 교제폭력 피해자 등 다른 보호시설로 연계가 어려운 경우 30일까지 연장하여 보호 가능
 - 긴급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근거리 상담소, 보호시설, 112, 119 등으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대한 긴급연락망 구축 및 협조체계 유지
 - 긴급피난 및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는 긴급보호 조치한 후 관련기관(상담소, 복지시설, 112, 119, 행정기관, 수사기관, 병원 등)과 협조하여 계속 보호가 가능하도록 조치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주요 연계내용
 - 서비스 대상자에게 외부서비스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서비스 대상자를 해당 외부서비스기관 의뢰
 - 서비스 대상자를 위해 자원동원(프로그램, 전문인력 지원, 비용공제, 각종 정보) 요청
 - 외부서비스기관과 프로그램 계획, 홍보 활동, 자원 발굴 등을 공동으로 수립·시행

- 정보교류 및 자원공유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DB 구축
 -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유관기관에 제공

〈지역별 네트워크 운영체계〉



유관기관별 서비스 기능

- 긴급보호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 지원
- 상담소·보호시설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 및 시설 보호 등
 - 의료기관 : 가정폭력·성폭력·학대아동 발견 시 신고,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 및 사후관리, 피해자 판정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진단서 발급
 - 교육기관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발견 시 신고, 피해자 가정상황 등 가족력 등의 관련 자료 제공, 피해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 대한 협조,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법률구조기관 :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법적 소송 진행, 피해자 법률적 보호 및 폭력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
 - 행정기관 : 피해자 및 가해자의 신분조회, 피해자 및 보호아동의 격리보호 의뢰,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호와 의료보호 등의 협조
 - 사법기관 : 폭력사태 접수 및 수사, 전문기관 상담원의 현장조사 시 동행 협조, 단순 폭력 사례에 대해 전문기관으로의 의뢰, 격리보호, 치료 등이 필요한 보호조치 제공, 형사재판 과정을 통하여 피해자 지원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삭제지원, 일상회복 등 피해자 지원 ('25.4월 이후 수정 운영지침 안내 예정)

○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 운영

- 복합·고난도 사례에 대한 통합지원, 통합사례회의 추진
 -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 유관기관 지원요청에 대한 상담·자문 및 사례회의 실시
 -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수립, 연계·모니터링

여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절차(안)



- 광역단위 협업 구축 운영

-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영역별 기관·전문가 인프라를 확보
- 협력기관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 업무협약 체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업무 협력(안)



- 광역단위 총괄 기능
 -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 유기적 협력 확대, 정례협의체 추진
 - 지역 내 중대사건 총괄 지원, 현안 이슈·신종폭력 관련 교육 운영 등
-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
 - 연초에 유관기관과의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고려하여 홍보계획서 작성
 - 여성긴급전화 1366의 필요성과 역할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112, 119, 검찰, 변호사, 보호관찰소, 의사, 교사 등 폭력피해여성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지속적인 1366홍보로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 홍보책자 및 자료 배포 : 안내책자, 소식지,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지역사회에 대하여 캠페인,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CATV, 반사회보 등을 활용하여 홍보 활동 실시
- 상담기록의 보존
 - 상담 시 대상자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상담내용은 반드시 상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에 대한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도록 적절한 장소에 보관
 - 상담 관련 자료는 최소 3년 동안 보관(통합지원사업 관련 자료 최소 0년 보관)
-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보장
 - 개인 정보의 수집 및 관리는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서에 의함([서식 참조])
 -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시설장 및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된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 ※ 가정폭력방지법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20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비밀을 누설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반으로 동법 제78조(징계사유)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지자체와 시설장은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본래의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되어 지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실시(「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수집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리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거나,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경우 수집 가능
- 입소/이용자, 후원자 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그 외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노력 등

○ 재난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3조)

-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보험 가입

-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함

○ 기타 협조 요청사항

- 자살징후, 아동·노인·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전문상담기관에 연계

10 | 2026년 국고보조금의 지원

- 보조금은 지역별 인구수 및 종사자 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인건비, 운영비,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유지비, 긴급피난처 운영비 등을 포함함

※ 국비 보조율 50%, 1366운영비와 통합지원사업비 집행은 구분

○ 세부지원 내역

- 인건비

- 인건비는 기본급,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포함
- 다만,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이 2026년 기준 최저임금액(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국비지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종사자 호봉 책정을 할 수 있음
- * 통합사례관리사는 팀장+팀원, 팀원2명 등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며, 채용되는 통합상담사의 경력에 맞도록 지급 가능
- 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적립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반환해야 함

-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해야 함

- 종사자의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음
- 그 외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음

- 운영비

- 종사자 상해보험료(1인당 보험료 연 5만원 이내)
- 일반수용비(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자원봉사 상담요원, 특근매식비, 여비, 홍보비, 차량유지비, 재료비, 임차료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월 70만원한도 내) 등

* 여비집행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유지비
 - 네트워크 구축·사용·유지비, 관계자 간담회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전국협의회비
 -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등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경비
- 긴급피난처운영비
 - 긴급피난처 운영 관련 입소자 숙식제공 및 지원을 위한 비용, 관리운영비 등
- 현장상담서비스 사업비
 - 현장상담원 급여, 교통비, 상해보험료, 현장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
- 기능보강비
 - 기자재 구입비, 차량 구입비, 시설개보수비 등으로 사용
 - * 기능보강비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서 규정하는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정 변경으로 인한 세부집행계획 변경은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시·도는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후 성평등가족부에 사후보고)
-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 운영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배포 ‘통합지원사업 안내서’ 참고
 -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의 공적자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되, 자원 연계가 지연 및 어렵거나 다른 공적지원이 없는 경우* 피해지원비 집행
 - * 통합사례관리 피해자(내담자) 발굴 후 종결 전까지 필요한 피해지원비 지원
 - 긴급피난처, 의료비, 긴급피난처,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등 다른 국고보조사업 지원 기준에 맞는 피해자(내담자)에 대해서는 타 사업 우선 지원 등 다른 국고보조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특정인 한 명의 피해자(내담자)에 집중지원 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 지원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관련 기관(병원, 상담기관 등)에 직접 지급하고, 생필품 등 물품은 구매하여 피해자(내담자)에게 지급
 - ※ 통합사례관리 대상 피해자(내담자)에게 생활비, 상품권 등 직접적인 현금 급여 제공 불가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민간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집행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한해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 집행

-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에 대해 피해지원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유서), 내부 결재를 거쳐 집행 가능

※ 피해지원비 집행시 반드시 ‘통합사례회의록’과 ‘지원 사유서’ 내부결재 절차를 거쳐 지원 가능

피해지원비		
구분	지원비 사용 내용	비 고
심리 지원비	- 통합사례를 지원하고 있는 피해자(내담자) 심리검사, 전문 심리 상담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이 아닌 전문가, 전문상담기관에서 심리진단(장애진단) 및 심리치료비 • 의료기관에서 받는 경우 ‘피해지원비-의료비’로 지급, 전문 임상심리사 및 상담센터에서 받는 경우 ‘심리지원비’에서 지급	
의료 지원비	• 피해 회복을 위한 기본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 계층이 다른 의료비 보조 항목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비급여 항목만 지원가능(급여 항목 중복지원 금지, 단, 다른 의료비 보조 사업에서 의료비 급여 항목을 지원받고 있지 않다면 급여 항목도 지원 가능) * 그 외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 및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 집행 가능	
생활 지원비	• 생계비 : 식료품, 반찬, 분유 등 • 물품비 : 의복, 여성용품(생리대 등), 동반 아동 물품(기저귀, 젖병 등), 상비약 등 • 교통비 : 택시비 등 • 방문물품비 : 찾아가는 현장상담' 통합지원 내담자 가정방문 물품 구입비 (세대당 20,000원 이내) • 임시숙박 : 7~30일 이내 타 자원 연계 전까지 • 긴급피난처, 스톱킹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보호시설 연계 등 타 국고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하되 불가피하게 임시 숙박비가 필요할 경우, ‘통합사례회의록’, ‘지원사유서’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 지원 가능 (예시: 피해자의 치유·장애 등의 이유로 단체생활이 어려울 경우)	

○ 인건비운영비 지출원칙(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각 시·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지침」 등에 따라 보조금 전용카드에 클린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관리
- 또한 각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지도·감독
-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부당 사용사례가 적발된 경우, 감사 등을 실시하여 환수 및 징계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분

▶ 보조금 전용카드란?

- ① 시설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 ②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발급 및 거래내역 전송
- ③ 클린카드 기능 탑재

*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계약한 금융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함

-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 금지)
 - * 보조금 전용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등은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보조금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보조금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가정폭력방지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청·교부 및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목적외 사용 금지)
- 재무회계 관리
 - 직영시설을 제외한 위탁시설의 재무회계는 운영주체의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 재무회계 관리는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 정부재무회계 관련 법령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준용
 - 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 장부에 기재 후 가능

11 기타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운영주체 변경 시 관계서류 및 장비일체를 변경된 운영주체에게 이관
- 시·도지사는 관내 「1366」의 운영실적 및 통합지원사업 실적 등 관련 통계자료를 지정서식에 의거하여 상반기 실적은 당해연도 7월 20일까지, 연간 운영실적은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 전산시스템을 통해 운영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 여성긴급전화센터의 공식 명칭은 「여성긴급전화1366 ○○센터」로 함
 - * (예시)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 지방자치단체장 및 센터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지급·정산 등 회계업무, 종사자 인사업무, 통계관리업무 등 가능한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여야 하며, 시설장·상담원의 채용공고, 선발, 퇴직, 지원금 집행실적을 일모아시스템 DB에 입력하여 참여자의 중복지원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센터의 장은 종사자 입·퇴사 시 여성긴급전화 관련 시스템의 권한을 현행화 하여야 함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할 수 있음

1 목 적

- 폭력피해자 상담 또는 신고 등을 통해 우선 긴급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피난처로 임시보호 조치한 후 피해자 상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함

2 긴급피난 보호대상

- 숙식지원이나 정신적·육체적 안정과 상담·치료 등 긴급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 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 또는 동반가족

3 긴급피난처 지정 등

- 시설 내에 긴급피난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거나 또는 임시보호 할 공간이 있는 시설에 대해 시·도지사가 긴급피난처로 지정 및 운영인력 자체배정
 - 지정기준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기준에 준함(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 1366센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상담소, 여성회관, 임시보호소 등을 긴급피난처로 이용 가능
 - 지정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신청, [서식 14]) → 시·도지사(지정)
 - ※ 시·도지사는 긴급피난처 지정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14일 이내)
- 보호기간 : 3일 이내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
- 긴급피난처는 보호여성의 대상에 맞추어 시설별로 보호대상을 지정하며 가능한 유사한 시설에 보호(예 : 성매매 피해여성 분리보호 등)
- 긴급피난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각종 보호시설 및 상담소, 여성회관, 민간단체 등에 임시보호시설을 갖추어 긴급피난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4

긴급피난 요령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소 또는 시·군·구 상담원의 상담결과 및 경찰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시설에 임시보호 의뢰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및 상담소는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 우선 시설에 보호한 후, 즉시 시·군·구 관계 공무원에게 통지(상담소는 1366센터에도 통지)
- 전문적이고 장기간의 보호를 요하는 경우 1366센터 및 지역상담소에서 상담 진행 후 해당시설로 전원 조치
- 입·퇴소 등 제반사항은 보호시설 운영기준에 따라 조치

5

긴급피난처 운영비 지원

- 긴급피난·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소된 시설의 입소자 경비를 기준으로 보호기간 만큼 보조비율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 가능



1 | 개 요

가. 목적

-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나.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스톱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 | 지원 대상 및 범위

가. 지원대상

- 가정폭력, 스톱킹, 교제폭력 피해자
 - ※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 없이 외국인 피해자의 의료비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지원('18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입은 피해에 한함)
 - ※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아동에 대한 아동심리치료비 등 포함

나. 지원범위

- 치료비용(입원비 포함)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
- 보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신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임신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 일반·상해진단서 발급 비용
-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보호시설 입소 중 발병한 질병 등의 진단비 및 치료비, 출산 관련 의료비 등
 - ※ 출산 진료비는 입소자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 가능(50만원 초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이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음(의사소견서 등 첨부))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의 간병지원이 필요한 비용
- 의료 보조기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단, 임차 사용이 가능한 경우 가급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차료 지원

3 | 지원 방법

가. 지원 원칙

-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100만원(1회 당) 이상 고액의 검사 또는 고액의 비급여 항목 지원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서 검토, ▲내부 사례회의 등을 거쳐 지원 여부 결정
 - 단, 총 진료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서, 내부 사례 회의,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급 여부 결정(단, 외상(外傷) 치료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외)
- 한방 치료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응급 치료가 아닌 고가의 한방 침약이나 탕약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 사실과 치료 내용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지원 가능(단, 단순 미용이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제외)
- 저소득 의료급여(1, 2종) 수급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급여로 집행
- 입원실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기준병상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병실이 없거나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거나, 의사의 소견서 또는 상담원(간호사 등 의료지원 담당자 포함) 의견서 등 사유서를 첨부하여 상급병실 사용 가능

※ 긴급 시 사유서를 사후에 첨부 가능

※ 상급병실 사용 필요 : 13세 미만의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심각한 외상 피해,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 되는 사건 등

- 의료비 중복 지원 등의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
 - 피해자 및 가족이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상황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 전체를 환수할 수 있음
 - * ▲ 피해자가 타 지원기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실손의료보험 등)에서 동일 폭력 피해건에 대해 의료비를 받은 경우 ▲ 형·민사 합의금으로 의료비를 수령한 경우 등
 - ※ 비용환수절차 : 의료비를 지급한 기관 등의 의료비 통장으로 수령인이 지급받은 의료비를 반납 하도록 함. 의료비 지급 기관은 반납 받은 의료비를 여타 가정폭력 등 피해자 의료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집행잔액은 지자체에 반납함
- 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의료비 지원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지침 준용 가능

나. 치료보호 비용 지원 기한

- 피해발생 후 5년 이내 범위에서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 단, 피해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치료에 대해서는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 및 치료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
- ※ 국가재정법 제96조 규정을 준용하여 치료보호 최대 지원 기한을 피해발생 후 5년으로 적용

다. 치료보호 비용 신청방법

1) 피해자에 대한 치료요구(의뢰)

- 피해자 지원기관의 장은 피해자에게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상자의 가정폭력 피해사실 확인 후 의료기관에 피해자 치료를 의뢰
-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수사기관 등에서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치료를 요구

상담소 등의 '피해 상담 사실 확인(확인서 발행)' 절차는 다음의 경우에 생략

- ① 피해자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의 사건(고소·고발·진정 등) 접수증 사본을 진료 받을 의료기관에 제출하거나,
- ②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 등의 사실 확인(확인서 작성 후 서명)이 있는 경우

2) 의료비의 청구

①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은 진료비 명세서(간이영수증은 불가),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의 치료를 의뢰한 피해자 지원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에 의료비(본인부담액) 청구([서식 23])

②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이미 지불한 의료비를 보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간이영수증은 불가)과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지원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에 의료비(본인부담액) 보전 청구([서식 24])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이란?

- 보호시설, 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명의로 발행한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수사기관의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사본
-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서명한 사실 확인서

3) 의료비의 지급

- 피해자가 치료받은 의료기관 소재지의 피해자 지원기관과 시·도 또는 시·군·구, 가해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 피해자의 주소지가 가해자와 다를 경우, 피해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의료비를 직접 집행하는 경우, 지급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최소화하는 등 치료보호 활성화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협조관계에 유의하고,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내역을 보존 관리

- ▶ 피해자 의료비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료기관 부설 클리닉 혹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상담학, 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 아동심리치료학, 교육심리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심리상담기관도 집행 가능
- ※ 피해자가 종전부터 이용해 온 기관이거나 피해자가 사는 지역 인근에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 없는 경우 박사학위 수료자 또는 상담경력 5년 이상인자가 운영하는 기관도 예외적으로 집행 가능
- ※ 의료비 청구시 해당기관 운영자의 박사학위 혹은 전문의 자격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4) 정 산

- 의료비 예산을 배정(선급)받아 이를 집행한 피해자 지원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 집행 내역을 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시·군·구에 보고(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하고, 시·군·구에서는 이를 자체 집행내역과 함께 관리

4 치료보호 비용 지원체계

- 배정대상
 - 시·도, 시·군·구
 - 보호시설, 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이하 '피해자 지원기관')
 - ※ 가정폭력 피해자는 지방의료원에서 무료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 의료원에 의료비 배정을 할 수 있음
- 배정방법
 - 시·도는 피해자 지원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에도 예산을 배정하고, 설치된 시·군·구는 지원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되, 예산의 일부를 자체 보유하여 직접 집행 및 시설별 배정 예산의 부족에 대비(예산 배정 규모, 자체보유 규모 등은 관내 의료기관 등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판단)
 - 피해자 지원기관에 예산 배정 시, 운영비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전년도 의료비 예산 집행 실적에 따라 차등 배정
 - ※ 시·군·구는 지원기관에 예산 배정 시 분기 또는 반기별로 배정
- 집행 및 정산
 - 시·도 및 시·군·구, 지원기관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예산을 별도로 운영(집행 내역 사업별 분리 정산·관리)
 -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거나 예산이 부족한 상담소 등은 필요 시, 해당 예산이 배정된 상담소 등 또는 시·군·구에 의료비 지급을 의뢰하여 피해자의 치료보호 조치(예산의 수시배정 조치 없이도 지원기관을 통하여 의료비의 과부족분 해소)
- 배정시기 : 매분기 초에 배정
 - ※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내 피해자 지원기관의 의료비 집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과부족에 의한 지원 불능, 집행지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변경(조정)배정 조치
 - ※ 시·도는 관내 시·군·구 및 지원기관의 의료비 예산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지역별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5 구상권의 행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구상권의 행사는 별개로서, 시·군·구에서는 구상권 행사 이유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소극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시·군·구청장은 가정폭력행위자 명단을 관리하고 구상권(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을 행사하되 다음의 경우 구상권 행사 불가

〈가정폭력방지법 제18조제4항〉

-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
- 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규정의 수급자인 경우
- 행위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
- 연간 피해자 1인 의료비 지원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가정폭력행위자가 전출시, 전출지 시·군·구청장은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관계서류 일체 이송
- 구상권은 지방채권으로 관리하며, 지방재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조치

6 비밀준수 의무

- 현행 가정폭력방지법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준수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준수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 및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등은 직무상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함(특히,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7 행정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보호 실적을 상반기 실적은 지정 서식에 의거 2024년 7월 30일까지, 연간 운영실적은 2025년 1월 30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
특히 경찰서, 의료기관 등에 동 제도를 적극 홍보
 - 의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 경찰,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에서도 관련 절차 숙지 및 안내에 유의
-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 등의 과다·중복 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집행내역 점검 등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 ※ 의료비가 집중·과다 지급된 의료기관 등이 있을 경우, 필요 시 해당 상담소 등에 대한 별도의 현장점검 실시 등 집행관리 강화
- 의료비 집행에 대해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동 지침의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준용 가능

VIII-1

사업수행 체계

1 사업 개요

가. 목 적

-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

나. 법적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다. 사업내용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 ※ “예시”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 ※ 상담결과에 따라 피해자별 참여가 필요한 프로그램명 및 목적, 참여횟수 등 관리
- 특히 집단 상담의 경우 기 보급된 “가정폭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활용

라.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
-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심신회복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2 사업수행 기관

- 사업 신청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상담소

3 사업추진체계



① 사업 신청

- 신청대상 시설에서 관할 시·군·구에 필요한 프로그램 사업을 신청
(서식 26, 서식 27-1~27-4 참조)

② 사업신청서 검토 및 시·도 제출(시·군·구)

- 시·군·구에서 접수된 사업신청서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사업신청서 시·도 제출(서식 26, 서식 27-5 참조)

③ 사업비 세부내역 사전 검토(시·도)

- 시·도에서는 접수된 사업신청서상 사업비 세부내역이 사업별 기준단가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사전 검토
※ '사업별 기준단가'는 권익증진지침의 사업별 '프로그램 운영 기준단가' 참조

④ 프로그램별 사업수행시설 선정 심사(시·도)

- 심사주체 : 시·도 직접 수행 또는 시·도에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또는 가정폭력 관련으로 구성된 기존 위원회 활용)하여 수행
- 심사방법 : 선정심사표(서식 28-1~28-2 참조)에 따라 점수 부여
 - 신청시설에 대해 별도의 선정심사표에 의해 심사하되, 최종 점수에 따라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배정
 - 필요할 경우 신청 시설에 대해 사전 현장점검 실시
 - 전년도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행정기관의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누적된 기관은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외

⑤ 시설별 사업비 조정·확정(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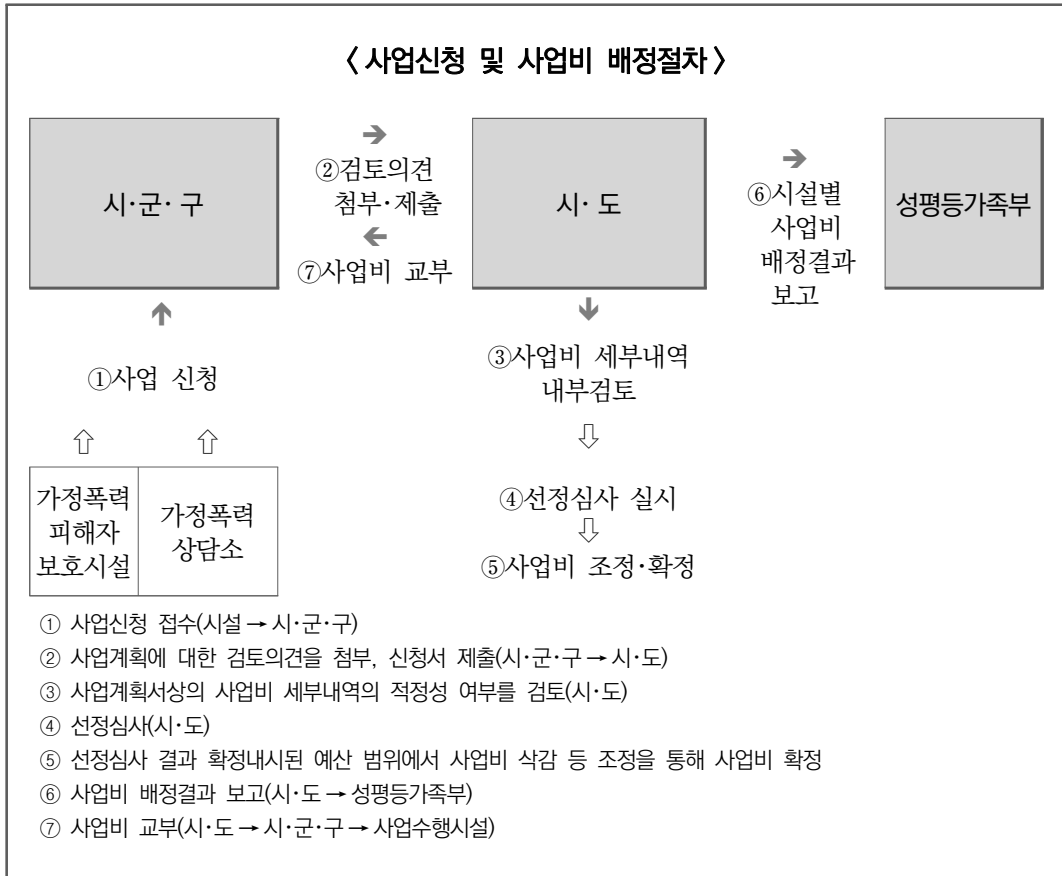
- 프로그램별 '사업수행시설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내시된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 삭감 등 조정을 통해 사업비 확정

⑥ 사업비 배정결과 보고 및 사업비 교부(시·도)

- 시·도는 조정·확정한 사업수행시설별 사업비 배정결과를 성평등가족부에 보고하고, 시·군·구에 사업비를 교부
※ 성평등가족부 보고자료는 서식 27-6, 29 참조

⑦ 사업 수행

- 시·군·구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수행시설별 사업 수행



5 사업비 조정 및 정산

- 필요할 경우 상반기 이후 중간 정산을 실시, 사업비 재배정
- 당해연도 사업결과는 사업수행기관 → 시·군·구 → 시·도 → 성평등가족부로 보고 (다음 해 1월 30일까지)

6

사업추진일정

- 확정내시 통보 : 전년도 12월(성평등가족부)
- 사업신청서 접수, 검토 및 배정 : 당해연도 1월말까지(시·도)
- 사업비 선정결과(배정결과) 배정결과 제출 : 당해연도 2월말까지
(시·도 → 성평등가족부)
 - * 사업수행시설별 사업계획서 요약본을 작성하여 제출([서식27-7])
- 사업수행 : 1월~12월
 - * 지자체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회복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모를 전년도 시행하는 등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 사업수행 기간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 진행비(강사료 포함)에 대해서는 사업비 교부 이후 소급적용 가능
- 사업결과보고 : 다음 해 1월 30일까지
 - * 치료회복프로그램 사업결과보고서 요약본을 작성하여 제출([서식29])

7

행정사항

가. 강사료 지급 기준

- 내부강사에 대한 강사수당은 지급 불가
 - ※ 동일법인 소속으로 동일 시·군·구내 소재하고 있는 상담소, 보호시설 등에서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상근 종사자가 동일 시·군·구내 동일법인 소속의 시설(보호시설·상담소)에서 강의할 경우 내부강사로 봄
 - ※ 사업이 일시중지된 경우 근로계약 중단이 불가피함에 따라 내부강사에서 제외
- 외부 강사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 기준단가 30%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 단가 조정 가능함
-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 단, 강사와 협의 시 지급방법을 변경 가능
- 상담·보호 및 지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유연근무·대체근무 등 탄력적 근무를 적극 활용

- 타 지역의 강사 활용 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숙박비: 실비(서울 10만원, 광역 8만원, 기타 지역 7만원 한도 내)
 - 식 비: 1일 25,000원
 - 교통비: 실비(철도는 일반실 기준, 자동차는 실비 기준)

나. 기타 행정사항

- 시·도에서는 연초 사업수행기관 선정 후, 배정결과 및 사업계획서(요약본)를, 사업 종료 후에는 사업결과보고서(요약본)를 1달 이내에 성평등가족부 제출
- 사업계획변경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되, 단순한 프로그램 내용·횟수 등의 변경은 보호시설·상담소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 단, “개별상담” 만을 위한 프로그램 변경은 불가함
 - 지역 특성상 집단상담 성원 구성이 곤란한 경우 3인 이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집단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단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 상황 등을 현장 확인·점검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
- 소관 지자체에서는 강사의 선정 및 종사자의 인근 지역으로의 출강 빈도 등 집행·운영의 적정성을 관리·감독해야 함
- 각 시설에서는 만족도 조사 설문지(참고자료 3) 및 반송용 봉투를 항상 비치하고, 프로그램 종료 시 참여자에게 설문에 응하도록 적극 권장
 - 반송용 봉투 수취인은 해당 시·군·구(여성정책 부서)로 하며, 해당 시·군·구에서 설문지를 취합하여 반기별·상담소별 만족도 결과를 집계하여야 하며, 반기별 추진실적 제출시 시·도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함

VIII-2 세부 운영지침

가. 프로그램 운영 기준 및 방법

- 상담 장소
 - 관련법상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장소
 - 상담내용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
 - 상담 형태
 -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 일상적인 상담과 구별하여 피해자별로 개별화·전문화된 치유프로그램 적용
- ※ 단,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보호시설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게 치료회복프로그램 구성 요망

나. 프로그램 운영 기준

종 류	상담내용 및 목표	상담횟수	강 사	비 고
개별 심리상담	- 폭력상황 및 개인별 문제 파악 - 개인별 상황에 따른 삶의 방향 탐색 및 지원 - 위기개입 등 전문가 진단 및 정신과 치료 등 필요시 적용	- 1회 1시간 - 횟수는 피해자 상황에 따라 조정	전문강사 : (Ⅱ), (Ⅲ)	전문Ⅱ : 1회당 50,000원
				전문Ⅲ : 1회당 100,000원
집단상담	- 구타경험과 현실의 탐색 - 폭력순환 고찰 - 맞지 않을 권리(인지적 접근) - 죽음, 고립, 무의미감 등 치료 - 사회적 지지망의 구축 ※ 장소사용료 1회 100,000원	- 규모 : 최소 3인 이상 - 주1~2회 (1회 1시간 30분 ~ 3시간)	주진행(1인) : 전문(Ⅱ), 전문(Ⅲ) 보조진행(1~2인) : 전문(Ⅰ)	전문(Ⅰ) : 최초 1시간 5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15,000원
				전문(Ⅱ) : 최초 1시간 10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35,000원
				전문(Ⅲ) : 최초 1시간 15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50,000원

종 류	상담내용 및 목표	상담횟수	강 사	비 고
심신회복 캠프 (1박2일 기준)	- 문화체험·여행을 통해 자연과 접하여 정서함양과 심리적인 휴식을 취하며, 집단 속에서 관계성 훈련, 친목도모와 유대감 강화 ※ 장소사용료 : 1회 150,000원 숙박비 : 2인1실 140,000원 식 비 : 1인 5식, 1식 15,000원 이내 교통비 : 실비 * 시설차량이용시 유류대, 주차료, 도로통행료 포함 다과비 : 1인 7,000원 기준 ※ 교통비는 2가지 이상의 교통 수단 이용 가능 ※ 매 식비는 전체 식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규모 : 10명내외 (자녀참여가능) - 1박2일~2박3일	주진행(2인) : 전문(II), (III) 보조진행(3~4인) : 전문(I)	전문(II) : 최초 1시간 10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35,000원
				전문(III) : 최초 1시간 15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50,000원
				보조진행 : 1인, 1일당 70,000원
동반자녀 심리치료	- 미술치료 - 놀이지도치료 - 아동치료프로그램 등	- 주 1~2회 (1회 50분)	전문강사 : (II), (III)	전문II : 1회당 50,000원
				전문III : 1회당 100,000원

종 류	상담내용 및 목표	상담횟수	강 사	비 고
아동 집단상담	- 폭력가정 아동의 외상문제 - 분노, 우울을 건강하게 표출 하는 방법 - 분노조절 - 자존감 향상 - 위기대처능력 향상 등	- 규모 : 10인 내외 - 주 1~2회 (1회 90분 이내)	주진행(2인) : 전문(II), (III) 보조진행(2인) : 전문(I)	전문(I) : 최초 1시간 35,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15,000원
				전문(II) : 최초 1시간 7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35,000원
				전문(III) : 최초 1시간 10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50,000원
기 타	음악치료, 미술치료, 춤치료, 원예, 수예 등 심리·정서 치료에 필요한 회복프로그램	전체회기의 30% 범위 내에서 필요시 활용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한 자로서 활동 경력 3년 이상인 자	최초 1시간 10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35,000원
				보조진행 : 1인, 1일당 70,000원

-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시 1시간으로 인정하며, 최대 3시간까지만 지급 가능
※ 상담료 지급가능액 : 최초 1시간 + 초과시간 3시간 = 4시간까지 지급 가능
- 야간(18시 이후), 휴일 상담 시 상담료 50% 가산 지급 가능
- 개별심리상담 만으로 프로그램 구성 불가
- 심신회복캠프에 참여하는 피해자 이외의 시설 관계자에 드는 제반비용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솔(진행) 인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
- 심신회복캠프 이후 평가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심리검사비, 재료비 등 소모품과 다과 구입 등은 가능하나 재료비 외 비품구입은 불가

다. 전문강사 자격기준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자 격 기 준	비 고
전문강사(I)	1. 대면상담경력 2년 이상인 자 2. 알코올전문상담 경력 1년 이상인 자 (알코올 상담의 경우) 3. 아동미술치료등 아동심리치료·상담 1년 이상 경력자 (아동상담의 경우) 4.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자로서 대면상담 경력 1년 이상인 자	※ 상담경력 은 가정폭력· 성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분야 관련 상담임
전문강사(II)	1. 대면상담경력 5년 이상인 자 2. 가정폭력 피해자 등 집단상담경력 3년 이상인 자 3. 알코올전문상담 경력 3년 이상인 자(알코올 상담의 경우) 4. 아동미술치료 등 아동심리치료·상담 3년 이상 경력자 (아동상담의 경우) 5.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집단상담경력 2년 이상인 자	※ 상담경력 은 가정폭력· 성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분야 관련 상담임
전문강사(III)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이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등 대면상담 경력 1년 이상인 자 2. 대면상담경력 10년 이상으로, 5년 이상의 집단상담경력을 갖춘 자 3. 관련분야 의사 자격증 소지자로 대면상담경력 3년 이상인 자	※ 상담경력 은 가정폭력· 성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분야 관련 상담임

주 : 1. 대면상담경력 : 주 3회 이상, 1일 4시간 이상 대면상담 경력
2. 상담경력 : 주 1회 이상, 1일 2시간 이상 전화·면접 상담경력
3. 집단상담경력 : 5인 이상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이상, 연간 10회 이상 상담한 경력
4. 관련분야 : 정신, 심리, 사회복지, 사회사업, 여성학, 법학 및 교정학 등

라. 집단 상담 표준 운영 모델(보호시설, 상담소 공통 적용)

1) 성인의 경우

(1) 대상

- ①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초기상담을 받고, 2회 정도 개별상담을 받은 입소자
- ② 초기의 위기개입이 신속히 이루어져서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 입소자

(2) 프로그램 구조

- ① 대상 : 보호시설 입소자 및 주거지원 입주자 5~10명
- ② 횟수 : 10회(준비모임과 추후 평가 모임 포함)
※ 하루 2회기 이상 진행 불가
- ③ 시간 : 2시간 20분 ~ 3시간
- ④ 간격 : 1주 2회 또는 1주 1회
- ⑤ 집단의 성격 : 집단 종료시까지 동일 성원으로 유지하는 폐쇄집단형태 운영을 원칙으로 함. 단 신규 입소자 발생 등 불가피하게 기존 집단에 새로운 성원의 추가 참여가 필요한 경우, 시설장이 판단하여 집단상담 중간에 참여토록 할 수 있음
- ⑥ 지도자 : 집단상담전문가 1명, 집단상담 보조자 1명
- ⑦ 행정지원 : 집단상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며 참여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도록 협조
- ⑧ 상담원의 협조 : 쉼터의 입소자들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하며, 참여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쉼터 교육과 상담은 집단상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조

(3) 운영모델

〈프로그램 회기별 내용〉

단 계	회기	주 제
제1단계 : 준비 및 참여	1회	프로그램 준비과정에 참여
제2단계 : 관계형성	2회	지지적 관계형성과 후유증 인식
	3회	감정표현과 성장 및 변화의 목표설정
제3단계 : 성장과 변화	4회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처방법
	5회	배우자와 자신의 원가족과 의사소통 유형 이해
	6회	기능적 의사소통기술 훈련
	7회	건강한 가족, 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제4단계 : 종결과 평가	8회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립하기, 자원의 확인과 강화
	9회	자신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인식과 평가
제5단계 : 변화 확인과 강화	10회	추후평가 : 변화 확인과 강화

2) 아동의 경우

(1)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동반 입소한 자녀들이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가급적 대상 연령을 동일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

(2) 프로그램 운영, 회기 및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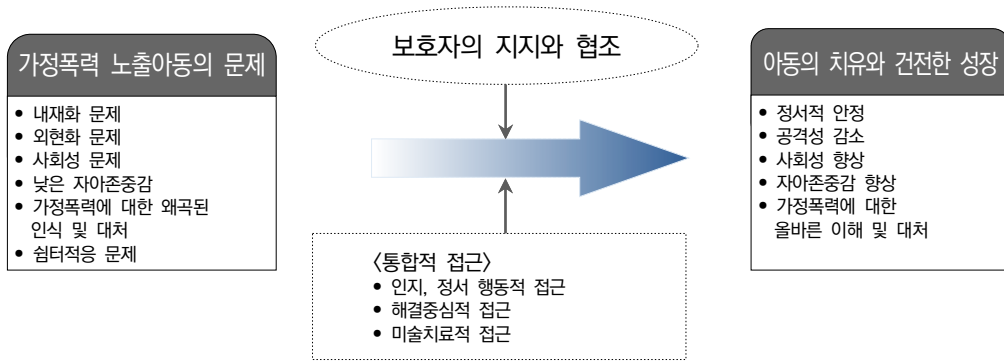
- ① 프로그램은 폐쇄집단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프로그램 도입단계(1~3회기) 이후에는 새로운 아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도록 권장
- ② 1주일에 2회의 집단모임
* 하루 2회기 이상 진행 불가
- ③ 총 9회기의 프로그램과 추후모임을 5주에 걸쳐 진행
- ④ 간식시간을 포함하여 90분 이내로 구성

(3) 운영모델

〈프로그램 회기별 내용〉

단 계	회기	목 표
제1단계 : 도입 단계	1회	○ 사전조사 ○ 참여자 및 진행자 관계형성하기 ○ 프로그램 이해하기
	2회	○ 심터생활 적응 향상시키기
	3회	○ 감정의 특성 및 역할 이해하기
제2단계 : 가정폭력 이해 및 대처 행동조절	4회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인식하기 ○ 가해가족에 대한 양가감정을 수용하기
	5회	○ 가정폭력 경험 나누기 ○ 가정폭력의 원인과 책임 이해하기
	6회	○ 가정폭력 상황에서 자기보호기술 향상시키기 ○ 가정폭력의 부정적 영향 감소시키는 대안적 활동 찾기
제3단계 : 행동조절	7회	○ 분노 이해하기 ○ 적절한 분노표출과 부적절한 분노표출 방법 구분하기
	8회	○ 위축된 행동, 공격적 행동과 자기주장적 행동 구분하기 ○ 자기주장적 행동 익히기
제4단계 : 종결단계	9회	○ 미래지향적 관점 도입하기 ○ 프로그램을 통한 성취 점검하기 ○ 프로그램 평가하기
제5단계 : 변화유지단계	10회	○ 변화 확인 및 강화 ○ 추후평가

(4) 기대 효과



3) 시설별 표준 프로그램 실시 평가

※ 시설은 표준 프로그램 실시 전후로 성인 및 아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연말 실적보고서를 제출

○ 평가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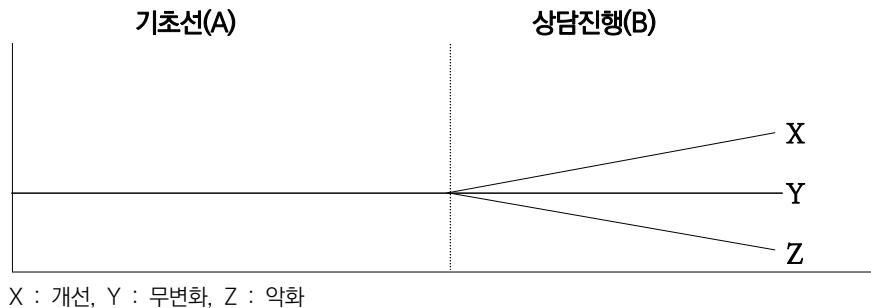
- 단일사례 설계(single case design)를 이용하여 사전 - 사후 또는 사전 - 중간 -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추이 비교

○ 평가 방법

- 평가척도 : 개발된 척도 활용(서식(제5편 참고자료) 참고)
- 평가시기 :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하여 상담 전 - 상담종결 후 등으로 구분하여 2회 이상 실시(사전 1회·상담회기 중 1회이상·상담종결 후 1회 또는 사전 1회·상담종결 후 1회)

○ 평가 종합

- 개별참가자 또는 개별집단을 대상으로 사전 - 중간 - 사후 또는 사전 - 사후 설문 체크
- 상담종결 후 결과 종합(다이어그램 작성)



제5편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I. 스톱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운영



1 사업 개요

가. 목적

- 스톱·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통한 피해자 인권보장 및 안전한 일상회복 지원

나. 법적 근거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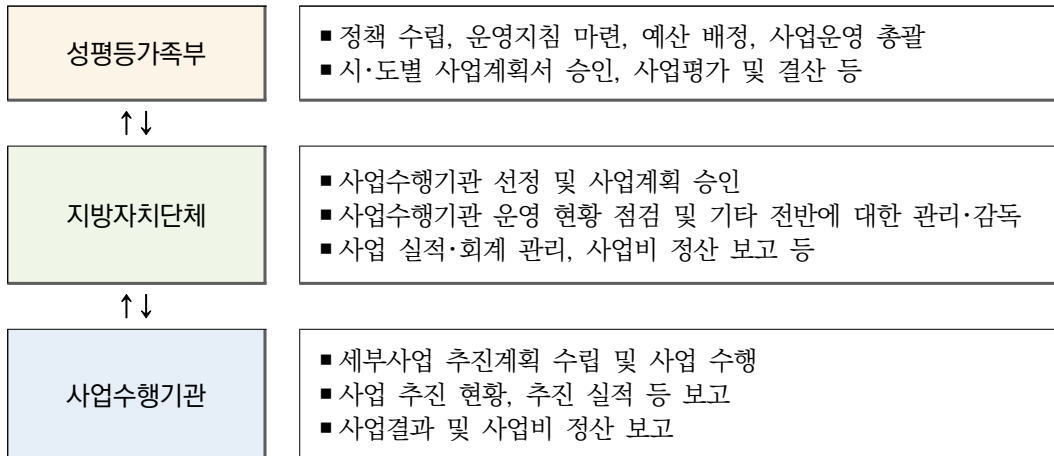
다. 추진 경과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방지 종합 대책」 수립('18. 2월)
 - 여성긴급전화1366을 통해 피해 상담, 일시보호 실시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 4월) 및 시행('21. 10월)
 - 스톱·교제폭력 제정에 따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스톱·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및 의료·법률 서비스 제공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23. 1월) 및 시행('23. 7월)
 - 스톱·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긴급주거, 임대주택, 치료회복프로그램) 추진
- 긴급주거지원 사업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전국 확대 실시('24)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수립('25. 9월)
 - 상담, 주거,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 추진

라. 기본 방향

- 피해자 신변 안전을 위한 주거지원
- 심신·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긴급 구조를 위한 112·119 연계조치 및 수사·법률·의료·전문상담 등 연계
-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를 통한 스톱·교제폭력 피해 적극 대응

마. 사업 추진 체계



2 사업 운영

가. 지원 대상 : 스토킹*(교제폭력 포함)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동거인 포함)

* 성별을 기반으로 한 폭력으로서의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채권·채무관계·충간소음 등의 갈등으로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자는 제외)

〈참고〉 스토킹 행위 유형(「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물건등을 나타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스토킹처벌법」 개정(23년 7월)에 따라 온라인 스토킹 행위(3호, 6호, 7호) 추가

나.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1) 현황

(25.12.31.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전체	1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법적 근거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

3) 지원시설의 업무(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 피해자들의 보호와 임시거소의 제공 및 숙식 제공
-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의 제공
- 피해자들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 지원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수사·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 스토킹의 예방·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에 위탁된 업무
- 그 밖에 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통합지원 가이드라인

- 단일한 기관에서 긴급주거지원과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 적극 발굴
- 상담-주거-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피해자 맞춤형 연계 지원 시행
- 피해 예방부터 일상 회복까지 전 단계에 걸쳐 피해자 보호·지원 실시

다. 사업별 주요 내용

1) 긴급주거지원

○ 원룸·오피스텔 등 임시숙소를 활용한 긴급 보호·지원(30일 이내)

- ※ ① 피해자 수요, 입소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② 피해자가 긴급주거지원 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설이 만실되어 임시숙소에 즉시 입소하기 어려운 경우 1366 긴급피난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경찰에 연계 또는 숙박비 지원

- 24시간 상담 및 숙소 관리 등 피해자 지원
- 개별 거주 및 일상생활(출퇴근 등) 가능한 형태의 임시숙소 마련
- 임시숙소 운영 개수 및 형태는 지역 상황에 따라 다양화 가능
- ※ 고정형 숙소 제공 외에 피해자 요구에 따른 숙박비 지원 등

〈 숙박비 지원 가이드라인 〉

- 대상 : 긴급주거지원 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설이 만실되어 임시숙소에 즉시 입소하기 어려운 피해자
- 집행 기준 :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14일로 하며, 1박당 10만원 이내에서 지급
- ※ 단, 피해자 안전을 위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인근의 숙소를 안내할 것

- 보호기간 동안 식품, 식료품, 생필품 제공 등 생활 지원

○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피해자 안전 보호 및 맞춤형 지원

- 피해자 안전 보호를 위해 임시숙소 내 안전 장비 구비
- 호신용품 등 휴대용 안전 장비 지원

〈 안전 장비 예시 〉

- 112 신고 비상벨(관할 경찰서 협의 통해 112신고 연계 등록)
- 가정용CCTV(숙소 내외 원격 모니터링)
- 호신용 경보기, 휴대용 비상벨, 호신용 스프레이, 호루라기 등 호신용품
- ※ 주거지원시설 내 112 신고 연계 장비(비상벨 등), 가정용CCTV는 필수적으로 구비하고, 개인용 호신용품 등은 피해자에게 개별 지급

- 긴급한 구조를 위한 112·119 연계조치 및 법률·의료·전문상담 등 연계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사례 관리 및 퇴소 후 조치

- 운영기관은 필요시 사례 관리 회의를 실시

- 피해자 퇴소 후 2개월간 사후 모니터링 실시(주기적 전화 모니터링 등)
- ※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위해가 해소된 경우 등은 모니터링 종료

2)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일상적인 상담과 구별하여 개별화·전문화된 단계별 심리 지원 실시
 - ※ 운영프로그램(예시) :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참고)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심리지원 방안

구분	심리 지원 방안
피해자 지원 초기(사건 접수) 단계	1) 정확한 심리 평가 및 진단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인식 강화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위험성·심리상태 평가 2) 피해자 위기 상담 - 피해자 지원(법률·의료지원, 그룹 자조모임 조성 등)의 제반 활동과 병행하여 시행 - 피해자 안전감을 강화시켜주는 상담 시행
피해자 지원 본격 단계	1) 지지 상담 - 개별상담, 트라우마 집중 상담 - 위기 상담에서 안내한 피해자 지원 작업 지속 2) 인지행동치료 - 트라우마 집중 상담(전문가 필요시 연계) - 약물치료 필요시 전문가 연계 3) 가족 상담 - 스토킹·교제폭력 교육 - 피해 상담(가족 구성원이 피해자인 경우) 4) 기타 - 집단상담, 명상, 심신회복 캠프,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피해자 지원 종료 단계	1) 심리평가에 기반한 사례 종결, 사례 모니터링 2) 지역사회 연계

- 운영 세부사항은 ‘치료회복프로그램 세부 운영지침(별첨 1)’을 따름

3) 기타 지원 내용

○ 호신용품 등 휴대용 안전 장비 지원

- 주거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도 지원

〈 휴대용 안전 장비 지원 가이드라인 〉

- 대상 : 주거지원 시설 입소자, 비입소자 등 안전 장비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 피해자
동행 지원 종사자 등
- 예시 : 호신용 경보기, 휴대용 비상벨, 호신용 스프레이, 호신용 호루라기, 스마트 초인종
(도어벨), 문열림센서 등 피해자가 휴대하기 용이하거나 직접 설치할 수 있는
장비

○ 무료법률지원

- 폭력으로부터 방어, 보호 등 지원이 필요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소송, 상담 등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성평등가족부 ‘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사업’과 연계

〈 무료법률지원사업 위탁기관 〉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5)
- 한국여성변호사회(☎ 02-595-2097)

○ 의료비 지원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피해자의 후유증 최소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 ‘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의료비 지원’ 지침 참고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입소 지원

- 보호시설에 입소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숙식제공, 자립지원 생계비 및
동반 아동의 교육비 등 지원
- 실질적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한 직업교육 및 진학교육비 등 지원
- 퇴소 시 자립지원금 대상자 선정 절차에 따라 지급

○ 취학 지원(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 등)

※ 가정폭력 피해아동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 제도 참고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취학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가. 피해자등의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해당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입학에 승낙해야 한다.

나.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해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각급 학교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4) 임대주택 주거지원

○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공간 제공(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 입주자 상담 및 주택 관리·점검 등 피해자 지원
- 개별 거주 및 일상생활(출퇴근 등) 가능한 형태의 임대주택 마련

○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피해자 안전 보호 및 맞춤형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직업훈련·취업 등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자립지원
- 피해자 안전 보호를 위해 임시숙소 내 안전 장비 구비

※ 1) 긴급주거지원 사업 내용 내 안전 장비 예시 참고

- 긴급한 구조를 위한 112·119 연계조치 및 법률·의료·전문상담 등 연계

※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임대주택 운영 세부내용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준용.
단, 임대주택 관리비 등 입소자 부담분은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운영비로 지원 가능

라. 주거지원사업(긴급주거, 임대주택) 입·퇴소 관리

○ 입소 관리

- 경찰 연계(직접 연계, 범죄신고확인 등) 및 여성긴급전화1366,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연계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및 그 가정 구성원 중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단, 이외의 경우에도 운영기관 판단으로 입소 가능

○ 퇴소 관리

- 보호 목적의 달성 또는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상담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예: 자해, 폭력, 음주 과다 등)를 한 경우

○ 보호 기간

※ 주거지원사업 입소자 모두 최대 보호 기간 이후에도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공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관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운영기관의 사례 관리 회의 등을 통해 입소 연장 가능

- 긴급주거지원 : 30일 이내

※ 피해자 수요, 입소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임대주택 주거지원 : 6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

마. 사업수행기관 선정

1) 선정 기준

- 스토킹·교제폭력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관

- 상시 출동대기 등 경찰 긴급지원 연계체계를 구축한 기관
- 24시간 피해자 연계·보호가 가능한 기관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또는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기관

〈예시〉

- 「가정폭력방지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설(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등)
- 「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설(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설(상담소, 지원시설 등)

- 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해당하는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사업 수행 제한 중인 기관은 선정 불가

2) 선정(재선정) 절차

○ 지자체는 3년 주기로 공모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

※ 다만, 기존 사업수행기관(시범사업 운영기관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선정할 수 있음

○ 추진 절차

단계	내용	담당기관
1단계	• 사업 공모	시·도
2단계	• 사업계획서 제출	수행기관
3단계	•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시·도
4단계	• 수행기관 선정 결과 성평등가족부에 통보	시·도

※ 지역여건에 따라 시·군·구에서 공모사업 추진 가능

○ 시·도지사는 사업 기간(3년)이 만료*되거나, 사업수행기관 선정 취소 등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재선정함

* 사업 기간 만료 시, 기존 사업수행기관(시범사업 운영기관 포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선정할 수 있음

○ 재선정 절차는 위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에 따라 실시

※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재선정 추진

▶▶▶ (예시) 사업수행기관 선정심사 항목

심 사 항 목	
사업운영계획(40점)	• 사업 목적 및 취지와와의 부합성 • 사업 내용의 충실성 - 주거지원시설 확보 계획의 적절성 및 시설 접근성·안전성 -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적절성 • 예산 운영 계획의 적절성 • 추진 일정 계획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30점)	• 사업자(법인)의 관련 활동 및 유사사업 경력 • 사업자(법인)의 재무 상태(안정성·건전성) • 사업자(법인)의 자부담 능력
조직 및 시설(30점)	• 조직 및 인력 구성 계획의 적절성 •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 • 사무 공간 등 시설 확보 여부
가감점(5점)	•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정부·지자체 평가, 행정처분 이력 등)

※ 지자체에서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 심사항목 변경 가능

3) 선정 취소

- 업무정지 또는 폐쇄권자 : 성평등가족부장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업무 정지·지정 취소, 국비 지원 중단 등 사유
 - 종사자가 입소·이용자에게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여야 함(「보조금법」 제31조의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성평등가족부에 서면보고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보조금법」 제33조제3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스토킹방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 행정처분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 여부 검토

3 | 종사자 채용 및 자격조건

가. 종사자 수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 4명
 - ※ 지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담원을 관리할 수 있는 직제를 운영할 수 있음
- 임대주택 주거지원 : 1명
 - ※ 지자체 자체 예산 부담으로 추가 인력을 둘 수 있음

나. 종사자 자격기준(「스토킹방지법」 시행령 제8조 [별표 2])

○ 일반 기준

-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교육전문기관이 개설·운영하는 스톱킹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상담원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6개월 이내)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개별 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스톱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스톱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스톱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종사자 채용

- 스톱킹 피해자 지원 사업 종사자 인력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 단,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전제조건 :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 계약 체결,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등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경우)

- 채용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사자가 될 수 없음(「스토킹방지법」 제10조)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해 공개 채용 과정에서 종교관련 정보, 가족관계, 출신지역 정보 등 개인정보 취합 금지

가. 회계 관리

- 스톡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재무회계는 법인 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 재무회계 관리는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 법령 준용
- 센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 장부에 기재 후 집행
 - ※ 지출결의서 작성 시 지출 내역을 육하원칙에 의거 기재하고, 반드시 내부 결재를 득할 것
-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는 5년 이상 보존
- 성평등가족부는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시·도별 예산 배정
 - 지원 조건은 국비 50%, 지방비 50%
 - ※ 치료회복프로그램의 경우 국비 70%, 지방비 30%(서울은 국비 50%, 지방비 50%)

나.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1) 스톡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① 인건비 : 급여 및 수당, 기관부담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 지원센터 예산 이외의 법인 전입금 또는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인력 확보 가능
-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는 여건에 따라 국비지원 인건비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종사자 호봉 책정 및 수당(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할 수 있음
 - ※ 운영기관은 국비지원 기준상 인건비 총액의 10~30% 범위 내에서 인건비와 운영비·사업비 간 조정 편성 가능
- 종사자 급여는 당사자의 통장으로 이체하여야 하며, 급여명세서를 발급하고 사본을 운영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② 운영비(기관)

- 종사자 상해보험료
- 수용비(인쇄비, 소모성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등
-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회의비)
- 종사자 소진방지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등에 예산 지원 가능(연간 1인당 30만원 범위 내)
- 홍보비(리플릿·팸플릿 등의 제작·배포 등)
- 법정 의무교육 외 직무연수비

③ 긴급주거지원 운영

- 주거지원 시설 월세, 청소비, 관리비 및 공과금, 숙박비 등
※ 주거시설 내 입소자를 위한 소모성 물품(집기, 간편식 등) 구입 가능

④ 사업비

- 고정형 숙소 안전 장비 구축·유지비(112신고 비상벨, CCTV 등)
- 휴대용 안전 장비 지원비
- 식품, 식료품, 생필품 등 생활 지원비
- 휴대용 안전 장비 지원비
- 피해자 지원·보호를 위한 소모성 물품
- (치료회복프로그램 예산이 소진된 경우)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비

2) 치료회복프로그램 : 강사료, 프로그램비 등 사업운영비(별첨 1 참고)

※ 주거지원 입소자, 비입소자 모두 지원할 수 있음

3) 임대주택 주거지원

① 인건비 : 급여 및 수당, 기관부담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 지원센터 예산 이외의 법인 전입금 또는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인력 확보 가능
-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는 여건에 따라 국비지원 인건비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종사자 호봉 책정 및 수당(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국비지원 기준상 인건비 총액의 10~30% 범위 내에서 인건비와 운영비·사업비 간 조정 편성 가능
- 종사자 급여는 당사자의 통장으로 이체하여야 하며, 급여명세서를 발급하고 사본을 운영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② 사업비(기관 운영비 등)

- 종사자 상해보험료
- 수용비(인쇄비, 소모성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등
-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회의비)
- 주거지원시설 월세, 청소비, 관리비 및 공과금 등
 - ※ 주거시설 내 입소자를 위한 소모성 물품(집기, 간편식 등) 구입 가능
- 종사자 소진방지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등에 예산 지원 가능(연간 1인당 30만원 범위 내)
- 안전장비지원비(112 신고 연계 장비, 개인용 스프레이 등 호신용 안전 장비 개별 지급, 가정용CCTV 필수 구비)
- 홍보비(리플릿·팸플릿 등의 제작·배포 등)
- 법정의무교육 외 직무연수비

다. 예산집행

- 모든 예산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확정 통보된 최종 사업계획서상의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사업운영 의무를 다하여야 함
- 보조금은 사업선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 시 환수함
-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기관 명의로 개설
 - 기존 개설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통장잔고(액) 정리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운영기관은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지침」 등에 따라 보조금 전용카드에 클린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하여야 함
 - 각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지도·감독
 -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부당 사용사례가 적발된 경우, 감사 등을 실시하여 환수 및 징계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분
 -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
 - ※ 보조금 전용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등은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보조금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개인적 목적 사용 금지)

▶ 보조금 전용카드란?

- ① 시설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 ②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발급 및 거래내역 전송
- ③ 클린카드 기능 탑재

*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계약한 금융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함

- 보조금 예산을 법령 및 이 지침의 근거 없이는 협의회 등 각종 단체의 회비, 기타 분담금으로 지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예산사용에 대한 모든 영수증 및 첨부 서류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 시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함(5만원 한도 내)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함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보조금 카드사용 취소 시에도 취소 영수증 첨부
- 보조금 사업예산 정산 시 법령 및 이 지침에 따라 정산에 필요한 증빙을 갖추어 제출
- 강사료·자문수당·원고료·발표비·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 가능)하여야 함
 -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현금지급(5만원 이하)을 인정함

라. 예산변경

- 사업의 목적달성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공문을 통해 사전에 시·도(시·군·구)에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 확정예산에 대해 예산 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시·도(시·군·구)의 사전 승인 후 실시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 운영 주체가 동일한 경우, 운영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집행을 위하여 사업비·운영비에 한해 탄력적 운영 가능

가. 사업 실적 및 집행 현황 보고

- 운영기관은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지정 서식에 의거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시·도(시·군·구)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운영실적 등 관련 통계자료를 지정 서식에 의거하여 상반기 실적 및 정산내역은 당해 연도 7월 20일까지, 연간 운영 실적 및 정산내역은 그 다음해 1월 20일까지 성평등가족부에 제출

나. 긴급주거지원 만족도 조사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결과 보고

- 시설 입소자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설문에 응하도록 적극 권장
- 방법, 일정 등 상세 내용은 추후 통보

다. 각종 장부의 비치

- 관리에 관한 장부
 - 연혁에 관한 기록부, 직원 관계철, 회의록 관계철, 소관 법인의 정관 및 관계 결의 서류, 문서철, 문서접수·발송대장
- 사업에 관한 장부
 - 이용자 현황 등 시설 이용자 관련 서류(입소확인서, 지원기록 등)
 -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등 운영실적 관련 자료
-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비품관리대장
 -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 각종 증빙서류

라. 보안유지

- 지원을 받은 스토킹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사례관리 자료들은 보안에 유의하여 보관하여야 함. 특히 사업담당자는 퇴직 후에도 본 사업의 수행으로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음
 -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스토킹방지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가. 프로그램 운영

- 상담 장소
 - 관련법상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장소
 - 상담내용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
- 상담 형태
 -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 일상적인 상담과 구별하여 피해자별로 개별화·전문화된 치유프로그램 적용
- 집단상담 운영 기준
 - 가) 진행자
 - 주진행 1명, 보조진행 1~2인의 강사로 운영
 - 주진행자 : 전문강사 II, III 중 1인이 진행
 - 보조진행자 : 전문강사 I 기준으로 2인까지 활용 가능
(1인은 진행기록을 담당)
 -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것은 일상적인 상담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전문성이므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강사를 적극 활용

나) 프로그램 운영 방법

- (1) 집단 구성 : 집단은 2~8명 내외
 - (폐쇄집단) 종료 시까지 동일 성원으로 유지하는 폐쇄집단형태 운영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불가피하게 기존 집단에 새로운 성원의 추가 참여가 필요한 경우, 시설장이 판단하여 집단상담 중간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 ※ 가능한 한 나이, 피해정도, 피해경험 등이 비슷한 그룹으로 구성
 - ※ 주제별로 운영할 때, 피해자의 연령(청소년 vs 성인), 결혼 여부(기혼 vs 미혼), 피해유형, 피해자의 주요 증상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 운영(예 : 아동·청소년, 장애인 대상 집단상담의 경우 특성에 맞게 양육자와 집단 구성하여 운영 가능)
- (2) 필수 회기 : 최소 5회기 이상 운영(준비모임과 추후 평가모임 포함)
- (3) 시간 : 회기당 90분~120분 배정
- (4) 운영방식
 - ① 분산형 운영(1주 1회 또는 2회 진행)

② 예외적으로 통합형 운영 가능

※ 통합형 : 초기 집중형 운영으로 초기 친밀감과 정서적 안전감 확보 후 분산형을 운영하여 재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습득, 일상생활의 적응력 제고와 정체성 확립

(5) 상담기록 관리 : 프로그램별로 기록자를 지정하거나 보조강사 1인이 프로그램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여 편철

※ 강의계획서, 상담(치료)기록부, 단계별 프로그램 진행기록부, 사진자료 등 기록·보관

(6) 사후평가 : 각 운영기관은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실적보고 제출 시에 함께 제출

나. 프로그램별 운영기준

종 류	상담내용 및 목표	상담횟수 및 방법	강 사	운영 단가												
개별 심리상담	- 피해자의 개별적 욕구와 필요 및 피해 상황에 따라 실시하며 심리적 안정과 생활 안정 도모 - 개인별 상황에 따른 삶의 방향 탐색 및 지원 - 위기개입 등 전문가 심리진단 등 필요시 적용 * 아동·청소년, 장애인의 경우 특성에 맞게 양육자 대상으로 개별 심리상담 지원 가능	- 1회 1시간 내외 - 횟수는 피해자 상황에 따라 조정	전문(Ⅱ, Ⅲ)	전문Ⅱ : 1회당 50,000원												
				전문Ⅲ : 1회당 100,000원												
집단상담	- 피해 경험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고, 성역할 분석, 힘의 분석, 주장훈련, 의식향상훈련, 인간관계기법, 독서요법, 재구성, 재명명 등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 * 피해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고 실현하며 나아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게 됨	- 2~8인(연령, 피해 유형 등이 비슷한 그룹으로 구성) - 주 1~2회(1회 90~120분 배정) - 최소 10회기 이상 운영 - 분산형 운영, 숙박형 불인정	• 주진행(1인) : 전문(Ⅱ, Ⅲ) • 보조진행(1~2인) : 전문 (Ⅰ)	• 강사비 단가 <table><tr><td></td><td>최초 1시간</td><td>매1시간 초과</td></tr><tr><td>전문(Ⅰ)</td><td>50천원</td><td>15천원</td></tr><tr><td>전문(Ⅱ)</td><td>100천원</td><td>35천원</td></tr><tr><td>전문(Ⅲ)</td><td>150천원</td><td>50천원</td></tr></table> • 장소사용료(1회) 100,000원		최초 1시간	매1시간 초과	전문(Ⅰ)	50천원	15천원	전문(Ⅱ)	100천원	35천원	전문(Ⅲ)	150천원	50천원
	최초 1시간	매1시간 초과														
전문(Ⅰ)	50천원	15천원														
전문(Ⅱ)	100천원	35천원														
전문(Ⅲ)	150천원	50천원														

종 류	상담내용 및 목표	상담횟수 및 방법	강 사	운영 단가											
심신회복 캠프 (1박2일 기준)	- 심리교육 및 행동 훈련* 등을 이용하여 자기이해와 관계형성을 도움 * 집단토론, 집단 내 개인상담, 빈의자 기법, 내면화된 메시지 교환하기, 어린 시절 사진 보기, 읽기와 시청각 교육, 대인관계도 만들기, 신체작업, 비폭력대화 미술치료, 타로, 애니어그램, MBTI) ** 아동·청소년, 장애인 대상 집단 상담의 경우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 구성														
	- 문화체험, 여행을 통해 자연과 접하여 정서 함양과 심리적인 휴식을 취하며, 집단 속에서 관계성 훈련, 친목도모와 유대감을 강화	- 10명 내외 (자녀·양육자 등 가족(보호자)동반 가능) - 1박 2일~2박 3일	• 주진행(2인) : 전문(Ⅱ, Ⅲ) • 보조진행 (3~4인) : 전문(Ⅰ)	• 강사비 단가 <table><tr><td></td><td>최초 1시간</td><td>매1시간 초과</td></tr><tr><td>전문(Ⅱ)</td><td>100천원</td><td>35천원</td></tr><tr><td>전문(Ⅲ)</td><td>150천원</td><td>50천원</td></tr><tr><td>보조진행</td><td colspan="2">1인당 70천원(1회)</td></tr></table> • 장소사용료 1회 150,000원 숙박비 2인 1실 140,000원 식비 1인 5식, 1식 15,000원 다과비 1인 7,000원 교통비 실비기준 ※ 시설 차량 이용 시 유류비, 주차료, 도로통행료 포함 ※ 매 식비는 전체 식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최초 1시간	매1시간 초과	전문(Ⅱ)	100천원	35천원	전문(Ⅲ)	150천원	50천원	보조진행	1인당 70천원(1회)
	최초 1시간	매1시간 초과													
전문(Ⅱ)	100천원	35천원													
전문(Ⅲ)	150천원	50천원													
보조진행	1인당 70천원(1회)														
기 타	- 긍정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아 존중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음악치료, 미술치료, 춤치료, 독서, 원예, 수예 등 정서치료, 사이코소시오드라마, 자기방어훈련, 인간관계와 자기표현훈련 등	전체회기의 20% 범위 내에서 필요시 활용	해당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활동 경력 3년 이상인 자	강사비: 최초 1시간 10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35,000원 보조진행 : 1인, 1일당 70,000원											

○ 초과근무 시간은 최대 3시간까지 지급 가능

○ 야간(18시 이후), 휴일 상담 시 상담료 50% 가산 지급 가능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소모품과 다과 구입 등은 가능하나, 재료비 외 비품 구입은 불가
- 스톱킹 피해자 특성이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치료회복프로그램은 개별 심리상담만으로 구성 가능
- 본 지침에 명시된 최소 기준을 준수하되, 피해자 및 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가능
- 숙박형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심신회복캠프를 활용하되, 심신회복캠프 이후 평가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다. 전문강사 자격기준 :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자 격 기 준	비 고
1. 전문 강사 (I)	1. 대면상담경력 2년 이상인 자 2. 아동미술치료 등 아동심리치료·상담 1년 이상 경력자 (아동상담의 경우) 3.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자로서 대면상담 경력 1년 이상인 자	※ 상담경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톱킹 등 여성폭력 분야 관련 상담임
2. 전문 강사 (II)	1. 대면상담경력 5년 이상인 자 2. 가정폭력·스톱킹 피해자 등 집단상담경력 3년 이상인 자 3. 아동미술치료 등 아동심리치료·상담 3년 이상 경력자 (아동상담의 경우) 4.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집단상담경력 2년 이상인 자	
3. 전문 강사 (III)	1. 관련분야 박사 학위 이상으로 가정폭력·스톱킹 피해자 등 대면상담 경력 1년 이상인 자 2. 대면상담경력 10년 이상으로, 5년 이상의 집단상담경력을 갖춘 자 3.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 대면상담경력 3년 이상인 자	

- 주 : 1. 대면상담경력 : 주 3회 이상, 1일 4시간 이상 대면상담 경력
 2. 상담경력 : 주 1회 이상, 1일 2시간 이상 전화·면접 상담경력
 3. 집단상담경력 : 5인 이상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이상, 연간 10회 이상 상담한 경력
 4. 관련분야 : 법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사회사업학, 여성학, 상담학, 의학, 간호학, 범죄학 등

라. 강사의 기준

- 내부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해당기관 및 개인에게 지급할 수 없음
 - ※ 동일법인 소속으로 동일 시·군·구 내 소재하고 있는 상담소, 보호시설 등에서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상근 종사자가 동일 시·군·구 내 동일법인 소속의 시설(보호시설·상담소)에서 강의할 경우 내부강사로 봄
- 강사 구성에 불가피한 경우 시설 자체 내부규정을 정하여 30% 범위 내에서 강사료 단가 조정 가능
- 타 지역의 강사 활용 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숙박비 : 실비(서울 10만원, 광역 8만원, 기타 지역 7만원 한도 내)
 - 식 비 : 1일 25,000원
 - 교통비 : 실비(철도는 일반실 기준, 자동차는 실비 기준)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북한이탈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

- I.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비공개 시설)
- II.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운영(비공개 시설)
- III.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 IV.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 V.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1 시설 개요

가. 사업 목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 피해 이주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통한 피해자 인권보호

나. 법적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및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다. 사업 내용

- 운영 현황

(24.12.31.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설 수	28	4	1	2	1	1	1	1	4	1	1	1	2	3	3	1	1

- 시설의 업무(가정폭력방지법 제8조)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본국으로의 출국 관련 지원
 -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시설 퇴소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 그 밖에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

라. 시설 운영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는 비공개로 운영되며 시설관련 정보 등은 비공개 처리할 수 있음

2 시설의 설치 기준

가. 설치·운영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나. 설치기준

1) 시설 설치기준

- 고려사항 : 입지조건 : 시설의 적정한 분포,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면적 : 입소정원 $\times 6.6\text{m}^2$ 이상
※ 부득이한 경우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초과 입소가능
- 구조 및 설비
 - 거실은 적당한 난방, 통풍 및 일조량을 갖춰야 함
 -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 식당 및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 화장실, 급·배수 시설
 - 비상재해대비시설

다. 설치인가 절차(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1) 인가신청서 제출

- 신청인 $\Rightarrow$ 관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심사: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 설치기준 및 종사자 자격 요건 등

※ 보호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로 분류됨

3) 인가필증 교부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인(접수 후 10일 이내)

라. 보호시설 변경인가 및 폐지·운영중단·재개

○ 변경인가(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 ① 신고서 제출: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된 경우,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② 검토 및 변경인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인가 여부 결정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 후 5일 이내에 처리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별지6호

○ 폐지·운영중단·재개신고(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

- ① 신고서 제출: 법인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② 운영중단·폐지·재개신고서 서식: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신고서 첨부서류
 -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제외)
 - 보호시설 인가증(폐지의 경우)
 - 보호시설 종사자 인사기록카드(폐지의 경우)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 ③ 검토: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④ 운영중단·폐지신고 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 후 6일 이내에 처리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1호
※ 운영중단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함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신고 수리 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3 시설의 인력 및 복무

가. 종사자 자격기준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 개별기준

구 분	자 격 요 건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의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등 관련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 보호시설만 해당한다)
상담원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보호시설만 해당한다)

* 종사자 자격기준 중 가정폭력등 방지업무는 가정폭력등피해자 지원시설에서의 업무 또는 유관기관 등에서 가정폭력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보호·지원 등에 대한 관련 업무임

- 가정폭력 방지업무의 경력인정 기관 :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된 기관 또는 시설, ② 가정폭력 방지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 또는 단체,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④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가정폭력 관련 기관(※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

* 종사자 자격 중 각종 경력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영수증, 소득세 원천 징수부 등)를 첨부하여야 함. 단,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시설장의 서명 또는 직인으로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로 증명할 수 있음

-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은 외국인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단체 또는 보호시설을 의미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

- (요건)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수습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 1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절차) 특례채용은 상담원 채용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또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3차 공고시부터 적용 가능함
- (관리) 시설은 수습직원을 특례채용한 경우 이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즉시 보고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현장점검 시 채용의 공정성, 1년 이내 교육과정 이수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

나. 종사자 수(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2])

- 보호시설에는 보호시설의 장 1인과 상담원 등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두어야 함
 - ※ 국비지원 보호시설의 경우, 시설장과 상담원 겸직 불가
 - ※ 보호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담원을 관리할 수 있는 직제를 운영할 수 있음

구 분	외국인보호시설	
	5~10인 이하	11~30인 이하
시 설 장	1	1
상 담 원	4	5
총 계	5	6

다. 보호시설 운영 및 종사자 관리

- 운영시간 및 종사자 복무
 - 매일 24시간 체제로 365일 무휴 운영
 - 시설기준의 종사자 수에 포함된 시설의 장, 상담원 및 보조원은 상근하여야 함
 - 보호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 법인의 대표자(이사장 포함)가 시설장을 겸할 수 없음
 - ※ 시설장의 상근 의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참조
 - ※ 종사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방문 시 필요한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음(서식 1) 종사자 신분증 참조)
- 출장 관련 규정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 상담 등 보호시설 고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출장은 가능함

- 이 경우 반드시 관련자료(근무상황부, 출장대장, 교육대장, 상담일지 등)를 비치하여 이를 증빙하여야 함

※ 근무상황부, 출장대장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인사현황자료(출장현황, 휴가현황, 교육현황 등)로 대체 가능함

○ 종사자의 채용

- 공개경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 시 임금·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함
- 종사자 결원 시 1개월 이내에 신규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사자가 될 수 없음(법률 제8조의2제1항)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 ※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해 공개 채용 과정에서 종교관련 정보, 가족관계, 출신지역 정보 등 개인정보 취합 금지
- ※ 공정한 채용을 위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권고(외부인원 50% 이상), 이 경우 법인 임직원은 내부위원으로 간주
- 폭력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업무배치 규정 마련,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체계 등을 정비하여야 함

○ 종사자 임면보고

-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권자는 종사자 채용 시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보호시설의 장은 국비(지방비 포함)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종사자 채용 시 관련시스템에 따라 종사자 임면보고(사유 : 종사자 경력인정여부의 증명서류 제출 시 증빙자료로 활용)

○ 종사자 소진방지

-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비 내에서 종사자 소진방지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치료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 지원 가능 항목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치료, 개인 및 집단 상담·심리치료, 힐링 프로그램 교육 등 프로그램화된 것은 참여지원 가능(단순 여행이나 영화 관람은 지원 불가, 단 여행·영화 관람도 소진방지를 위한 프로그램화한 경우 가능)

※ 지원 가능 액수 : 연간 1인당 30만원 범위 내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지방비에서 추가지원할 수 있음

○ 종사자 대체인력 채용

- 시설장은 종사자의 퇴사, 육아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신규 또는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등 적정 인력을 운영하여야 함

- 대체인력의 자격은 상담원 등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강화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연중)

▪ 시행기관 : 성평등가족부장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시·도지사(가정폭력 방지법 제8조의4)

※ 법정 의무교육 이외에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연수비를 기관운영비 내에서 지출 가능

- 법정의무교육

구 분	법적근거	대상	시행주체	이수방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 평등법 제13조	전 종사자	고용노동부	직원연수·조회·회의, 사이버 교육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전 종사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privacy.go.kr) 참고
퇴직연금제도 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고용노동부	온라인, 집합, 서면, 상시게시(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	전 종사자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 촉진법 제5의2	전 종사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참고(연 1회 1시간 이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협회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8시간 이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전 종사자	고용노동부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교육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 종사자	성평등가족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연 1회 이상)

※ 시설장 및 종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수하도록 노력할 것

4 시설의 입소 및 퇴소

가. 입소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외국인 및 귀화자 등 포함) 및 그 가정 구성원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지적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동반가족의 경우 피해사실에 대한 법원 진술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상담 및 객관적 자료 확인 후 필요기간만 입소 허용
-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다는 사유로 지자체에서 입소 승인(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2항)을 거부하여서는 안됨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입소 등 보호지원 시 유의사항

- ① 입소 사실의 보고
 - 시설의 장은 쉼터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행복e음을 이용하여 일반 문서로 입소보고)
- ② 입소 승인사항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을 보호자의 입소 동의 없이 입소시킨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로 별도 대장을 마련·작성하여 입소 승인)
- ③ 상담 및 관리 시 유의사항
 - 방임, 유기 등 무형의 폭력피해자는 상담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실 확인 후 입소 여부를 결정함
 - 기타 임신 및 동반자녀 유무, 폭력피해의 심각성, 외국인등록증·비자 소지 등을 확인 후 입소 여부를 결정함
- ④ 운영위원회의 활용
 - 입소 적격 여부에 대하여는 필요 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함

나. 퇴소대상

-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 보호 목적의 달성 또는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타 입소자 및 상담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예시 : 자해, 폭력, 음주과다, 무단외박 반복 등)

다. 보호기간 : 2년 이내

- 임시보호 : 3일 이내(필요 시 7일까지 연장 가능)
- 1년 이상 보호하는 경우, 시설장은 계속적 보호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상자 및 사유 등을 지체없이 보고함
- 동일한 가정폭력을 사유로 둘 이상의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각각의 입소 기간을 합산하여 보호기간을 적용함. 단, 퇴소자가 또 다른 가정폭력을 사유로 입소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새로이 적용함
 - ※ 이혼소송 완료 등 가정폭력의 위협이 해소된 경우 「자활지원센터」 및 「모자보호 및 자립시설」로 적극 유도할 것

라.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 가해자와 폭력피해이주여성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시설관계자와 관련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 입소자 및 상담원 보호를 위해 기관의 명칭, 연락처, 위치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로 운영
 - ※ 가정폭력방지법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20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비밀을 누설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반으로 동법 제78조(징계사유)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

5 시설의 관리 및 운영

가. 보호시설의 회계 등 업무 관리

○ 관리규정

-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방침, 직원의 업무분장, 입소자에 대한 소방·재난·보건 등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시설의 이용수칙,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해야 함

○ 현장점검 및 감사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시·도 또는 시·군·구 등은 보호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입소자대장 등을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하게 입소자대장 제출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등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이 보호시설 운영실태, 입소자 및 운영비 집행상황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시설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장부의 비치

구분	관리에 관한 장부	사업에 관한 장부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장부종류	- 보호시설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직원관계철(인사기록카드, 이력서, 사진 등) - 회의록관계철 - 소속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 및 관계결의 기록 -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문서철) - 문서 접수대장 및 발송대장 - 종사자 근무상황부, 출장대장, 교육대장 등 각종 대장 - 입소자대장, 시설안전교육일지, 시설안전사고보고서, 차량운행일지 등	- 입소자 관계서류(신상조사서, 건강기록부, 입·퇴소자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상담, 의료·법률·출국지원의 내용 등) -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 상담일지 작성 시 폭력피해가 입증될 수 있도록 입소 배경과 폭력피해 정도 등을 개인별로 구체적으로 작성·관리 - 상담원 교육관계서류 - 운영실적 관련자료 등 - 프로그램 운영관련 서류 - 의료비관련 서류 - 법률지원관련 서류 - 학업지원관련 서류 - 자립지원 관련 서류 - 기타 보호시설 사업에 관한 자료 등	- 총계정원장 - 수입 및 지출보조부 - 정부보조금명세서 - 사업비명세서, 사무비명세서, 예비비사용조서 - 후원금수입 및 사용내역서 - 금전출납부 및 증빙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비품수불대장 - 비품관리대장 -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 각종 증빙서류

※ 기타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된 각종 서식 및 자료는 별도로 비치 활용

○ 기록의 보존

- 입소자의 상담내용 및 보호실적, 재무·회계 기록에 관한 사항 등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기록의 보존)에 따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단, 재무·회계 기록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보관

○ 재무회계 관리

- 쉼터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 재무회계 관리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재무회계 관련 법령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준용
- 쉼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장부에 기재 후 가능

※ 지출결의서 작성 시 지출내역을 6하 원칙에 의거 기재하고, 반드시 내부결재를 득할 것

○ 후원금품의 관리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발급(의료·사회복지·종교·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통해 후원금 또는 지정기탁금을 수령한 경우 포함)

※ 금융기관 등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발급 가능

※ 후원금 전용계좌는 시설 고유의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두어야 함

-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 비치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

■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 ■

연번	일시	후원자(법인)	후원금 유형 및 금액		지정후원금 용도	비고
			지정	비지정		
1	2000.1.25.	ㅇㅇㅇ법인	500,000원		청소년 생계비	
2	2000.1.30.			100,000원	청소년 교육비	

- 후원자가 후원금품의 용도를 지정했을 경우 지정용도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후원자(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 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통보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용도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후원금으로 인정

- 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8, 별표 10의 세출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하되, 가급적 내역수준으로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되도록 할 것
 - “법인·시설의 운영” 등과 같이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에 따라 관리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는 사용 금지
-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
- 시설비는 건물 노후화, 정원대비 협소한 공간 등 시설 입소·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 보호시설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제출 후 20일 이내에 시설 내 자체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함(단, 후원자 성명은 비공개)

○ 업무의 전산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함

나.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구성)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단, 각 부분별 인원은 2인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설의 장
 -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 시설 종사자의 대표
 -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시설의 운영, 사회복지 또는 자립지원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① 시설장의 친인척, ②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시설장 제외)는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할 것
 - ※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 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에 유의할 것(법제처 해석, 17-0433)
- (기능) 위원회는 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사항 심의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임기 및 운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운영
 - 운영위원회 운영일지를 작성·보관

※ 서면 또는 대리출석에 의한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원칙적으로 불가(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시설 관리안내」)

☞ 다만, 국가감염병(코로나-19 등) 확산 등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다자간(영상) 통화, 다자간 메신저(모바일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심의 가능, 다만 이 경우에도 분쟁소지 해소를 위하여 회의개최 증빙자료 보관(영상회의 및 메신저 대화내용 저장 등) 요망

- ①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함
- ②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운영위원회 위원임을 확인)
- ③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간 의견교환이 가능하여야 함
 - 전자적 방법의 운영위원회 진행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이 있는 시설의 경우, 법정처리기한 등 심의의 시급성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음
 - 다만, 전자적방법의 운영위원회 진행이 곤란한 사유를 관할 지자체에 명확히 소명

-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산 제출 시 함께 제출

다. 유관기관 연계

- 한국어 방문교육, 맞춤형 직업훈련 등 다문화가족센터, 새일센터 등의 운영 프로그램 적극 활용

6 시설의 안전 관리

가. 시설의 안전관리(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 보험 가입
 -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함
- 자체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시설장은 소관시설에 대하여 매 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시안전점검) 시설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시안전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안전점검기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제12조에 의한 정밀 안전진단 지침
 -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 지자체에서는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대상 선정 시 시설 안전점검 결과 개보수 필요시설, 노후 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
- 지자체 안전점검
 - 시·도 및 시·군·구는 하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성평등가족부에서 통보하는 안전 점검 계획에 따라, 종사자대상 교육훈련, 안전점검표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에 보고
 -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 상태, 보험가입 여부, 시설 거주자 건강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며, 취약시기의 특성에 따라 급식시설 위생상태, 폭설·제설·동파·난방관리 대책 등 추가 점검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별도 신청 및 직권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 * 주요 점검내용: 시설물 기초지반 침하 및 벽면 균열 발생 여부, 시설물 주변 석축·옹벽, 비탈면의 결함 발생여부 등
 - 지자체에서는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보수 등이 시급히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능보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나. 사고 예방 및 조치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 소화시설·장비는 소방법령의 제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종사자가 수시로 확인·점검

- 시설장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평상시 종사자들에게 사고예방의 중요성 및 각종 시설물 취급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항상 숙지하도록 지도하여 사고발생 예방
 - 주간 및 야간근무자 지정 및 근무 철저
 -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절기·해빙기 안전점검 철저
(보일러·가스·전기 등)
 - ※ 가스경보기를 설치하여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 미연에 방지
 - 화재대피 훈련 등 방재훈련을 시설별로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
 -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 시설장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보고, 의료조치, 초기대응(화재진화 등), 외부연락 등에 대한 종사자의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종사자들이 유사시 자신의 임무를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 시설장은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피난방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고에 빠른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시·군·구청장은 사고발생시 시설안전사고보고서 별지 [서식 7]을 작성 즉시 보고 : 시·군·구청장 → 시·도 → 성평등가족부
 - ※ 소방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관련 제규정에 따른 방염설비를 갖추어야 함
- 시설장은 시설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는 사례(종사자 채용 공고, 법인홈페이지 등)가 없도록 주의
- 종사자 안전대책 마련
 - 시설장은 시설종사자가 상담 등 업무와 관련 폭행 등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
 - 시설 내·외 CCTV 설치, 가스충 등 구비
 - 경찰관서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가정폭력 보호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의무(1인당 보험료 연 5만원 이내, 운영비로 지출)

■ **보험가입여부 확인**(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 시·군·구는 시설 이용자와 생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법 제58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 [별표 5]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것

- 지자체는 시설 정기안전점검 시 각 시설의 대인·대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1인당 배상책임보험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책임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배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의미함

** 책임공제라 함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설립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 의미함

▶ 시설의 지도·감독청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시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소멸식 상품을 가입토록 관리해 나가되

- 불가피하게 해당 시설이 적립식 상품을 가입한 경우라면 시설이 그 만기 환급금 수령 후 시설운영비로 세입처리를 반드시 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 재난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3조)

-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7 국고보조금 지원 내용

가. 지원 금액(지방비 포함)

(단위 : 천원)

정 원	종사자(명)		지원 금액				
	시설장	상담원	계	인건비·운영비		긴급지원비	치료·회복 프로그램
5명 이상 10명 이하	1	4	247,614	205,255	10,359	18,000	14,000
11명 이상 30명 이하	1	5	297,221	246,306	10,915	24,000	16,000

※ 운영비는 인건비·운영비 합계의 8~2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책정 가능

나. 지원 기준

- 상기 인건비 및 운영비 총액은 보호시설 1개소 당 최소 지원 금액으로 임의로 지급 단가를 감액 조정하여 지원할 수 없음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는 여건에 따라 국비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종사자 호봉 책정을 할 수 있음(상담원은 생활복지사 수준 적용)
- 기존 국비지원 시설의 운영이 부실하거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종사자 임면의 허위 보고 등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 직장내 괴롭힘 발생 등에 대한 조치의무 미이행 등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성평등가족부에 서면보고(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하여 보고)

- 국고지원 보호시설이 운영중단 시 즉시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함
(운영 재개시 국비지원은 신규지원기관 선정 절차를 적용함)
- 지원형태 : 지자체 매칭 펀드(50~70%)
 - 국고 보조율 : 서울 50%, 기타 지역 70%
- 지원항목 : 인건비·운영비, 긴급지원비, 치료·회복프로그램비

다. 집행 기준

○ 인건비

- 기본급,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초과·야간·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함.
다만,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은 2026년 기준 최저임금액(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 (가입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 누리집 <http://insurancesupport.or.kr>

-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은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기본급에는 포함하지 않음
- 중도 퇴직자 및 신규 채용자 인건비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 일할계산 산식 : 월 고정급(보험료 제외) ÷ 209시간 × 8시간 × 월 근무일수
※ 월 근무일수는 중도 퇴직일 또는 신규 채용일이 해당하는 월의 근무일수를 말함
- 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적립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반환해야 함(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 ■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해야 함

○ 운영비

- 종사자 상해보험료(1인당 보험료 연 5만원 이내)
- 수용비(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비 등. 단, 각 시설은 1곳의 협의회비만 지출 가능),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PC 등 통신시설 유지비), 소규모의 수선비, 차량비, 재료비 등

* 소모성 물품 구입(입소자를 위한 물품, 집기 등) 가능

* 입소자를 위한 타지역 출장여비 지급 가능

〈여비 집행 기준〉

- ① 근무지 내: 일비 4시간 이하 10,000원, 4시간 초과 20,000원
- ② 근무지 외: 일비 25,000원, 식비 25,000원, 교통비 실비지급
 - ※ 근무지 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왕복)가 12km미만인 출장을 의미함. 출장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의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함
 - ※ 근무지 내 출장 시에는 교통비 별도 지급하지 않음
 - ※ 근무지 외 출장에 개인 차량 이용 시에도 실비 지급 가능

-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회의비 등)
- 숙직비(1일 2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등
- 종사자의 숙직, 연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활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활용 가능. 단, 대체인력이 가정폭력상담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음
-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비 내에서 종사자 소진방지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치료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연간 1인당 30만원 범위 내)
 - ※ 지원 대상 :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
 - ※ 지원 가능 항목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치료, 개인 및 집단 상담·심리치료, 힐링 프로그램 교육 등 프로그램화된 것은 참여지원 가능(단순 여행이나 영화 관람은 지원 불가(단순 여행이나 영화 관람은 지원 불가, 단 여행·영화관람도 소진방지를 위한 프로그램화한 경우 가능))
 -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임차료 등 지방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운영비 지출원칙

- 각 시·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지침」 등에 따라 보조금 전용카드에 클린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관리
- 또한 각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지도·감독
-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부당 사용사례가 적발된 경우, 감사 등을 실시하여 환수 및 징계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분

▶ 보조금 전용카드란?

- ① 시설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 ②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발급 및 거래내역 전송
- ③ 클린카드 기능 탑재

*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계약한 금융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함

-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 금지)

* 보조금 전용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등은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조금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 긴급지원비

- ① 생계비 :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에 대한 주·부식비, 취사용연료비, 의류·신발비, 월동대책비 및 특별위로금 등(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와 동일 기준 적용)

※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와 같이 보호시설장에게 지급

※ 생계비 지원대상자가 보호시설에 입·퇴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비는 입·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

※ 보호시설장은 주·부식비와 피복비 등 구분 없이 집행 가능(다만, 종사자 식비와 합산하여 집행할 수 없음)

※ 특별위로금은 시설장을 통해 대상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 전 입소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가능하나, 보건복지부 시설급여와 이중지원은 불가

〈 2025년도 비수급자 생계비(1인당) 지급 기준 〉

구 분	금 액	지 급 시 기
주·부식비, 피복비	426,740원	매 월
월동대책비	40,000원	10월 지급(연 1회)
특별위로금	50,000원	설·추석 전월(연 2회) * 수급자 개인별 직접지급

- ② 교통·통신비 : 입소자의 교통카드비, 전화카드비 등
- ③ 의료지원비 : 피해자 치료보호 사업 및 가정폭력피해자 무료진료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한 지원, 건강검진비, 일상치료비, 산후조리비 등
 - ※ 미등록 외국인 시설입소 시 전염병 등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가능
- ④ 법률지원비 : 무료법률지원사업(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 등)에 해당되지 않는 법률지원비 지원
 - ※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 해당 지역 성매매 상담소를 연계,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의료, 법률)'을 통하여 지원하며, 불가피한 경우 또는 추가적 비용에 대해 지원
- ⑤ 통·번역비 : 통·번역이 필요한 경우 자체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지출하여야 함
- ⑥ 출국지원비 : 법률적인 절차가 끝났으나 지불능력이 없는 이주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의 항공료 등
- ⑦ 아동양육비 : 동반아동의 학습준비물, 교복비 등
- ⑧ 직업훈련비 : 국공립 직업훈련기관, 민간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모든 외부 훈련기관 포함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피부미용, 요리, 미용, 디자인, 컴퓨터 관련 실질적 취업 창업이 가능한 직업교육 및 진학교육비를 우선 지원함

(출석률 80% 이상의 경우에 집행함. 시설이 교육 기관에 입금하되, 교육 기관이 발행한 수강료 청구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리)

 - ※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재료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이 판단하여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 교통비 지원방식은 훈련생의 계좌로 입금(입금 시 시설명 노출에 유의)
 - ※ 직업훈련비 추가로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지방비 추가지원할 수 있음
- ⑨ 기타 : 생활용품 구입비 및 위생용품비 등

생계비 지원대상자 결정 방법

- ① 보호시설에 피해자 입소 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군·구에 보고
- ② 시·군·구에서는 입소 보고된 자에 대하여 행복e음을 이용하여 자산조사 실시
- ③ 자산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자는 기초생활급여를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자는 생계비 지원대상자로 결정
 - ※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및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지원

○ 치료·회복 프로그램비

- 입소자를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시설장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군·구 및 시·도 승인을 받아야 함
 - 상담 장소
 - 관련법상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장소
 - 상담내용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
 - 상담 형태
 -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 심신회복캠프, 한글교실, 의사소통훈련 등
 - 일상적인 상담과 구별하여 피해자별로 개별화·전문화된 치유프로그램 적용
- ※ 단,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보호시설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게 치료회복프로그램 구성 요망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보조금 집행 관련 유의사항

- 보호시설 입소자가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 대상자인 경우는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지원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수급대상자(시설수급자)에 대해서는 주·부식비, 피복비, 교육비, 의료급여 등 중복 지원 불가함
- 의료·법률지원은 피해자 치료보호 사업 및 무료법률지원사업 지침 참조
- 출국 관련 여권은 1회성 여행증명서 발급을 원칙으로 함
-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지침 참조
- 치료·회복프로그램비는 인건비, 운영비로 전용 불가함. 다만, 의료비가 부족한 경우치료·회복프로그램비에서 지출할 수 있음
- 입소자를 위한 통역 및 번역 서비스는 다누리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긴급지원비 또는 치료·회복프로그램비에서 지출함.
- 동반자녀가 아닌 동반가족(여성)의 경우, 긴급지원비 중 생계비, 교통·통신비, 의료비, 출국 지원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기타 항목은 지급 불가)
- 의료비 등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구 기준이 아닌 시·도를 기준으로 긴급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권자가 된다.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참조)
- 보장시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다. 기능보강

○ 지원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함

○ 지원내역

- 보호시설 신·증축비
- 보호시설 개·보수비, 기자재 구입비
 - ※ 기능보강비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추가지원할 수 있음

○ 지원대상

- 신축 및 증축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법인에 한함)
 - ※ 임차시설은 제외, 단, ①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취약계층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공급하는 주택, ②공공기관·단체 소유의 유희공간 임대(이 경우 임차보증금이 ①의 유형과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더 낮아야 함) 경우 보호시설 기능 보강 가능
 -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일 경우 지자체에서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 확인 후 예산교부 신청
- 개·보수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 임차시설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필요시 예외인정
 - ※ 예외 : 방염설비 및 개·보수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시설안전에 위험이 따르는 경우 (안전진단서 등 첨부)

- 시설장비 보강 : 모든 시설

○ 사업수행

-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

- 시설보강사업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의 해당 유무와 건축 가능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신청하고, 건축규모는 예산신청에 따라 반영된 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시설의 부족 또는 과다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한 규모로 상반기전에 신청하여야 함

※ 신·증축비를 지원받아 시설을 운영 중인 법인은 법인해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으로 설치된 건축물 등을 10년 이상 보조금의 목적사업 수행만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자부담분),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조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도지사가 검토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만, 시설의 건축허가기관이 다르거나 건축공사 실시설계(본 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설계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설계도서는 배치도와 평면도만 제출)

※ 경미한 개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설계검토의견서 생략 가능

- 시설 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시설기자재 보강

- 사업계획서에 기자재명, 소요량, 사업비, 사용용도 및 기자재 보유현황 등을 포함시켜야 함

○ 사업비 반납 및 이월

- 사업수행이 어려울 때에는 사유서 및 사업자의 포기서를 첨부하여 반납조치하여야 함
-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공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시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낙찰차액 활용사업

- 입찰결과 등에 따라 차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이 원칙임
- 다만, 관급자재비 변동·법정경비·안전시설물 설치·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 등 시·도지사가 해당 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음

○ 사업변경

- 국고보조사업계획의 변경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한하여 시·도 지사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면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공기연장,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변경, 사업량의 변경
- 낙찰차액 활용사업(동일한 시설의 다른 기능보강사업에 한함)

※ 기자재 구입 및 변경 사항은 시도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성평등가족부에 별도 보고하지 않아도 됨

8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

-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제작·배포한(‘21.9월) 「피해상담사실확인서 발급 매뉴얼」 참조

-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시, 전자소송의 사전포괄동의 안내

※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우려 방지

가-1.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등 교부·열람 제한

-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교부·열람 제한 또는 제한 해지를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

-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행위자 본인의 제3자 증명서 등을 교부·열람·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자 개인 정보는 현출되지 않은 채 교부·열람·발급

※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별표(*)’처리한 후 교부·열람·발급함

※ 공시 제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관할 가정법원에서의 불복 기회를 보장

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주민등록 직권조치방법(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에 있어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아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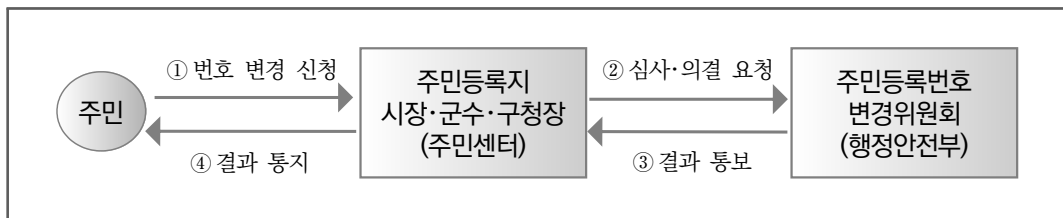
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 배경 :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17.5월~)
- 신청 대상자 :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입증자료 제출
* 대리신청 가능 :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법률대리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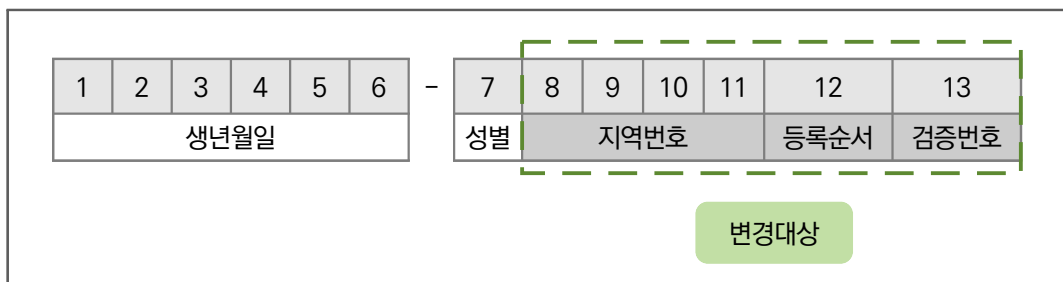
〈입증자료 예시〉

- ◇ 가정폭력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등

- 변경 절차 : 신청자가 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변경



○ 변경 후 기존번호와의 연계

-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공공기관 ⇒ 자동변경
-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등 ⇒ 직접 변경 신청
-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공시제한 신청 및 해지신청 가능(법원행정처)
 - * 법정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임의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음
 - * 신청인이 직접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함(우편신청 불가능)

○ 관련 서식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신청)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라. 가정폭력 피해아동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 제도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주소지의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할 경우,

-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의거 우선적으로 취학 지원하고,
- 가해자(친권자 등)에게 학생이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2차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① 가정폭력 피해학생 취학 지원(전학 등)

-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주소지의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청가능
 - (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입증자료)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별지 [서식 6])
 - (협조 요청사항)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정하여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
 -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학생의 재적교에서 요청하는 출결 관리 및 평가 응시 등에 협조함
- ※ (근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가정폭력행위자는 제외한다)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 ②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 ③ 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 ④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 장”은 “고등학교의 장”으로, “교육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 ⑤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전학 처리시 주소지 등 개인정보 비공개

- * 친권자라 하더라도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피해 학생의 전학사실(전학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알리지 않도록 유의
- * 가해자에게 전학사실을 알리지 않음에 따라, 가해자가 학교장, 담임교사 등 학교 관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로 연락하여 저지

- (전학 전 학교·교육청) 아동의 비밀전학 신청 시부터 전학 학교명 등 자료는 비공개로 처리하고,

- 가정폭력가해자에게 피해자 및 아동(학생)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
⇒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서 가정폭력피해 아동의 비밀전학 시 피해자와 아동의 연락처가 가해자(주로 아버지)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전학 간 학교명, 주로 어머니인 피해자와 아동의 거주지·입소 습터, 전화번호 등) 관리주의

* “전학처리 서류”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이므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주의표시(기재)하고, 별지 [서식 6]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리

* 가해자가 친권자 자격으로 전학 학교명을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유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제9조제1항 제1호, 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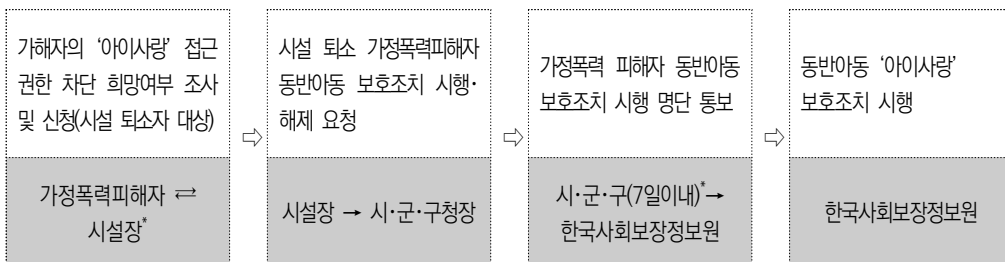
- (전학 후 학교·교육청) 전학한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피해사실 및 전학 학교명 등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③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아동의 어린이집 정보 보호

- 시설 퇴소 아동의 정보가 ‘임신육아종합포털’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 퇴소 이후에도 전산관리번호로 정보 관리('21.5~)
- 처리절차



*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의제기 시 시·군·자치구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법원 판결문,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로 해제신청하고, 시·군·자치구에서는 해당 보호시설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전고지후 해제여부 판단·처리

④ 기타 협조 요청사항

- 학교와 교육청 직원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 실시 요청
 - * 직장교육, 워크숍 등 실시 시 유의사항(가정폭력피해 아동보호) 전파교육 등
- 자살징후,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의심되는 경우 전문상담기관에 연계

마.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거부(제외)제도

-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행 등 미성년 피해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 이후 퇴직시 자동으로 부모(가해자)에게 피부양자로 연계되어 피해자 자격변동 내역이 전달됨(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한 부모에게 자동연계)되므로 등재거부(제외) 제도에 대한 안내 필요

구분	등재 거부	등재 제외
내용	특정인에게 피부양자 자격이 등재되지 않도록 거부하는 제도	특정인 구분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이 등재되지 않도록 거부하는 제도
신청방법	피부양자 등재거부(제외) 신청서 작성 및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사 제출	

바. 보호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진료 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

-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환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 요구 불필요
 -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제4항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의료급여증을 소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의료급여증으로 신분을 확인하므로 주민등록증 등 별도의 신분증 제시 요구 불필요
 - ※ 근거 : 의료급여법 제8조(의료급여증)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진료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 허용. 다만, 건강보험 요양급여 진료자는 적용 제외
 - ※ 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제1항 1.가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시 포함)은 관할 지역내 이주여성 폭력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경찰, 1366센터, 상담소 등에서 시설입소 연계 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우선 입소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지도하여야 함
- 시설이 폐쇄될 경우 시·군·구청장은 입소자 관계서류 일체를 관할 지역의 다른 보호시설에 이송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쉼터의 설치인가 및 입소정원 변경 시 운영비 등 예산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시 포함)은 관할 지원시설에 대하여 적정 입소자 비율이 유지되도록 지도하고 입소자 비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지자체 및 현장 실정에 맞게 정원조정을 추진하여야 함
 - 지자체는 현장점검시 최근 3년 평균입소율(이용자 제외)이 50% 미만인 시설에 대하여 정원조정 등 자체 개선안을 강구토록 지도하여야 함
 - ▶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원에 따른 종사자 수의 유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정원조정 등 시설별 자체노력을 강구하여야 함
 - ▶ 지자체에서는 정원 대비 평균보호인원 비율이 낮은 보호시설의 정원을 시설과 협의하여 조정 검토
- 시·도지사는 관내 각 보호시설의 운영실적 등 관련 통계자료(수기대장 실적 포함)를 지정 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취합하여, 상반기 실적은 7월말까지, 연간 운영실적은 익년 1월말 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시 포함) 및 보호시설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지급·정산 등 회계업무, 종사자 인사업무, 통계관리업무 등 가능한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여야 하며, 시설장·상담원의 채용공고, 선발, 퇴직, 지원금 집행실적을 일모아 시스템 DB에 입력하여 참여자의 중복지원 등을 확인하여야 함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연도 가정폭력보호시설 운영지침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할 수 있음

1 시설 개요

가. 사업 목적

-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가정 구성원의 주거지원으로 자립 유도

나. 법적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다. 사업 내용

-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운영지원 : 4개소(서울2, 인천1, 충남1)
-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의 업무
 -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경유)에 대한 주거 등을 지원하여 자립 및 자활기반 마련 지원
 - 시설 퇴소 후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라. 시설 운영

-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은 비공개로 운영되며 시설관련 정보 등은 비공개 처리할 수 있음

2 시설의 설치 기준

I.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 부분의 해당내용 준용

3 시설의 인력 및 복무

I.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 부분의 해당내용 준용(종사자 수 제외)

가. 종사자 수 : 4명

- 입소자의 자립 및 직업알선·연계를 지원하는 시설장 1인 및 상담원 3인을 두어야 함
 - ※ 국비지원 보호시설의 경우, 시설장과 상담원 겸직 불가
 - ※ 보호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담원을 관리할 수 있는 직제를 운영할 수 있음

4 시설의 입소 및 퇴소

가. 입소대상

- 쉼터 및 자활지원센터에 입소한 적이 있는 이주여성으로, 자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입소를 희망하는 자
- 입소 이주여성의 그 가정 구성원

나. 퇴소대상

- 입소기간이 만료한 자
- 입소기간 중 임대주택 입주 등 자립기반을 갖춘 자
-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자
- 타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예시 : 자해, 폭력, 음주 과다, 무단외박 반복 등)

다. 입소기간

- 기본 1년으로 하되 6개월 단위로 2년까지 연장 가능(입소자가 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 가해자와 폭력피해이주여성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시설관계자와 관련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 입소자 및 상담원 보호를 위해 기관의 명칭, 연락처, 위치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로 운영
 - ※ 가정폭력방지법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20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비밀을 누설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반으로 동법 제78조(징계사유)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

5 시설의 관리 및 운영

I.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 부분의 해당내용 준용

6 시설의 안전 관리

I.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 부분의 해당내용 준용

7 국고보조금 지원 내용

가. 지원 금액(지방비 포함)

(단위 : 천원)

정 원	종사자(명)		지원 금액		
	시설장	상담원	계	인건비	운영비
10명	1	3	182,744	164,204	18,540

※ 국고보조금은 총액 범위 내에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통합하여 사용가능함
 다만 운영비는 '지원금액' 기준에 준하여 집행하되 개별 시설의 여건에 따라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경우라도 운영비는 최소 10% 이상 집행하여야 함

나. 지원 기준

- 상기 인건비 및 운영비 총액은 보호시설 1개소 당 최소 지원 금액으로 임의로 지급 단가를 감액 조정하여 지원할 수 없음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는 여건에 따라 국비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종사자 호봉 책정을 할 수 있음(상담원은 생활복지사 수준 적용)
- 기존 국비지원 시설의 운영이 부실하거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종사자 임면의 허위 보고 등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 직장내 괴롭힘 발생 등에 대한 조치의무 미이행 등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성평등가족부에 서면보고(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하여 보고)
- 국고지원 보호시설이 운영중단 시 즉시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함
 (운영 재개시 국비지원은 신규지원기관 선정 절차를 적용함)

- 지원형태 : 지자체 매칭 펀드(50~70%)
 - 국고 보조율 : 서울 50%, 기타 지역 70%
- 지원항목 : 인건비·운영비

다. 집행 기준

- 인건비
 - 기본급,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초과·야간·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함. 다만,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은 2026년 기준 최저임금액(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 (가입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 누리집 <http://insurancesupport.or.kr>

-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은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기본급에는 포함하지 않음
- 중도 퇴직자 및 신규 채용자 인건비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 일할계산 산식 : 월 고정급(보험료 제외) ÷ 209시간 × 8시간 × 월 근무일수
※ 월 근무일수는 중도 퇴직일 또는 신규 채용일이 해당하는 월의 근무일수를 말함
- 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적립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반환해야 함(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 ■

-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해야 함

- 운영비
 - 종사자 상해보험료(1인당 보험료 연 5만원 이내)

- 수용비(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비 등. 단, 각 시설은 1곳의 협의회비만 지출 가능),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PC 등 통신시설 유지비), 소규모의 수선비, 차량비, 재료비 등

* 소모성 물품 구입(입소자를 위한 물품, 집기 등) 가능

* 입소자를 위한 타지역 출장여비 지급 가능

〈여비 집행 기준〉

① 근무지 내 : 일비 4시간 이하 10,000원, 4시간 초과 20,000원

② 근무지 외 : 일비 25,000원, 식비 25,000원, 교통비 실비지급

※ 근무지 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왕복)가 12km미만인 출장을 의미함. 출장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와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함

※ 근무지 내 출장 시에는 교통비 별도 지급하지 않음

※ 근무지 외 출장에 개인 차량 이용 시에도 실비 지급 가능

-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회의비 등)
- 숙직비(1일 2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등
- 종사자의 숙직, 연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활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활용 가능. 단, 대체인력이 가정폭력상담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음
-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비 내에서 종사자 소진방지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치료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연간 1인당 30만원 범위 내)

※ 지원 대상 :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

※ 지원 가능 항목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치료, 개인 및 집단 상담·심리치료, 힐링 프로그램 교육 등 프로그램화된 것은 참여지원 가능(단순 여행이나 영화 관람은 지원 불가(단순 여행이나 영화 관람은 지원 불가, 단 여행·영화관람도 소진방지를 위한 프로그램화한 경우 가능))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임차료 등 지방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입소자 주·부식비 및 피복비는 보장시설 수급자로 인정될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로 지출
 - 시설 미수급자 입소자에 대하여 간접경비에서 주·부식비, 피복비로 집행 가능
- ※ 주부식비는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와 같이 보호시설장에게 지급

※ 보호시설장은 주·부식비와 피복비 등 구분 없이 집행 가능(다만, 종사자 식비와 합산하여 집행할 수 없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 전 입소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가능하나, 보건복지부 시설급여와 이중지원은 불가

- 입소자 의료·법률·수사 지원비, 치료회복 프로그램비, 아동양육비, 직업훈련비 등으로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의 해당항목의 집행기준 지침 준용

□ 운영비 지출원칙

- 각 시·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지침」 등에 따라 보조금 전용카드에 클린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관리
- 또한 각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지도·감독
-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부당 사용사태가 적발된 경우, 감사 등을 실시하여 환수 및 징계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분

▶ 보조금 전용카드란?

- ① 시설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 ②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발급 및 거래내역 전송
- ③ 클린카드 기능 탑재

*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계약한 금융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함

-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 금지)

* 보조금 전용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등은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조건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8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 I.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 부분의 해당내용 준용

- 시설이 폐쇄될 경우 시·군·구청장은 입소자 관계서류 일체를 관할 지역의 다른 보호시설에 이송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쉼터의 설치인가 및 입소정원 변경 시 운영비 등 예산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시 포함)은 관할 지원시설에 대하여 적정 입소자 비율이 유지되도록 지도하고 입소자 비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지자체 및 현장 실정에 맞게 정원조정을 추진하여야 함
 - 지자체는 현장점검시 3년 평균 평균입소율(이용자 제외)이 50% 미만인 시설에 대하여 정원조정 등 자체 개선안을 강구토록 지도하여야 함
 - ▶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원에 따른 종사자 수의 유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정원조정 등 시설별 자체노력을 강구하여야 함
 - ▶ 지자체에서는 정원 대비 평균보호인원 비율이 낮은 보호시설의 정원을 시설과 협의하여 조정 필요
- 시·도지사는 관내 각 보호시설의 운영실적 등 관련 통계자료(수기대장 실적 포함)를 지정 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취합하여, 상반기 실적은 7월말까지, 연간 운영실적은 익년 1월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시 포함) 및 보호시설의 장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과 사회복지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지급·정산 등 회계업무, 종사자 인사업무, 통계관리업무 등 가능한 모든 업무를 전산화 하여야 하며, 시설장·상담원의 채용공고, 선발, 퇴직, 지원금 집행실적을 일모아 시스템 DB에 입력하여 참여자의 중복지원 등을 확인하여야 함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연도 가정폭력보호시설 운영지침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할 수 있음

1 시설 개요

가. 사업 목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자립·자활에 필요한 지원 제공
- 직업교육훈련 및 취·창업 능력개발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하도록 지원

나. 법적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다. 사업내용

- 운영지원 : 1개소(서울)
- 업무내용
 -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가정 구성원에 대한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
 - 이주여성 자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훈련, 취업지원
 -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생활문화 교육 등 사회정착을 위한 재교육
 - 취·창업 후 사후관리
 - 동반자녀의 육아 및 보육 지원
 - 시설 퇴소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2 시설의 설치 기준

가. 설치·운영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나. 설치기준

- 고려사항 : 입지조건 : 시설의 적정한 분포,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규모 : 입소정원 × 9.9m² 이상
※ 부득이한 경우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초과 입소가능
- 구조 및 설비
 - 거실은 적당한 난방, 통풍 및 일조량을 갖춰야 함
 - 사무실, 상담실, 실습지원실, 보육지원실
 - 도서실, 기숙시설, 다목적실
 - 화장실, 급·배수 시설
 - 비상재해대비시설

다. 설치인가 절차(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1) 인가신청서 제출

- 신청인 ⇒ 관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심사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 설치기준 및 종사자 자격 요건 등
 - ※ 보호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로 분류됨

3) 인가필증 교부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인(접수 후 10일 이내)

라. 보호시설 변경인가 및 폐지·운영중단·재개

- 변경인가(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 ① 신고서 제출 :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된 경우,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② 검토 및 변경인가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인가 여부 결정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 후 5일 이내에 처리
 -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별지6호
- 폐지·운영중단·재개신고(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
 - ① 신고서 제출 : 법인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② 운영중단·폐지·재개신고서 서식 :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신고서 첨부서류
 -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제외)
 - 보호시설 인가증(폐지의 경우)
 - 보호시설 종사자 인사기록카드(폐지의 경우)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 ③ 검토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④ 운영중단·폐지신고 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 후 6일 이내에 처리
 -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1호
 - ※ 운영중단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함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신고 수리 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3 시설의 인력 및 복무

가. 종사자 자격기준

- 일반 기준 :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교육 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개별 기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구 분	자 격 요 건
자활지원 센터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보호 시설만 해당한다)
사무국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보호 시설만 해당한다)

구 분	자 격 요 건
선임상담원/ 상담원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보호시설만 해당한다)
직업훈련 교사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직업훈련기관 및 관련 시설에서 해당업무 경험이 2년 이상인자
행정관리	1. 회계 및 세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업무경험이 2년 이상인 자
공통사항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미성년자가 아닌 자

- 종사자 자격기준 중 '가정폭력 방지업무'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서의 업무 또는 유관기관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보호·지원 등에 관한 업무임
- 가정폭력 방지업무의 경력인정 기관 :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된 기관 또는 시설, ② 가정폭력 방지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 또는 단체,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④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가정폭력 관련 기관(※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
-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 :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이주여성 상담분야의 전문인력 풀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감안, 수습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1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은 외국인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단체 또는 보호시설을 의미
- 자활지원센터에서 외부 강사로 하여금 자립자활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직업훈련교사를 두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상당하는 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나. 종사자 수

- 보호시설에는 보호시설의 장 1인과 상담원 등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두어야 함

※ 국비지원 보호시설의 경우, 시설장과 상담원 겸직 불가

※ 보호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담원을 관리할 수 있는 직제를 운영할 수 있음

구분	계	센터장	사무국장	선임 상담원	상담원	직업훈련 교사	행정관리	시설관리
인원	11명	1명	1명	1명	5명	1명	1명	1명

다. 보호시설 운영 및 종사자 관리

○ 운영시간 및 종사자 복무

- 매일 24시간 체제로 365일 무휴 운영
- 시설기준의 종사자 수에 포함된 시설의 장, 상담원 및 보조원은 상근하여야 함
- 보호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 법인의 대표자(이사장 포함)가 시설장을 겸할 수 없음
 - ※ 시설장의 상근 의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참조
 - ※ 종사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방문 시 필요한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음(〈서식 1〉 종사자 신분증 참조)

○ 출장 관련 규정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 상담 등 보호시설 고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출장은 가능함
 - 이 경우 반드시 관련자료(근무상황부, 출장대장, 교육대장, 상담일지 등)를 비치하여 이를 증빙하여야 함
 - ※ 근무상황부, 출장대장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인사현황자료(출장현황, 휴가현황, 교육현황 등)로 대체 가능함

○ 종사자의 채용

- 공개경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 시 임금·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함
- 종사자 결원 시 1개월 이내에 신규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사자가 될 수 없음(법률 제8조의2제1항)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 ※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해 공개 채용 과정에서 종교관련 정보, 가족관계, 출신지역 정보 등 개인정보 취합 금지
 - ※ 공정한 채용을 위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권고(외부인원 50% 이상), 이 경우 법인 임직원은 내부위원으로 간주
- 폭력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업무배치 규정 마련,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체계 등을 정비하여야 함

○ 종사자 임면보고

-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권자는 종사자 채용 시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호시설의 장은 국비(지방비 포함)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종사자 채용 시 관련시스템에 따라 종사자 임면보고(사유 : 종사자 경력인정여부의 증명서류 제출 시 증빙자료로 활용)

○ 종사자 소진방지

-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비 내에서 종사자 소진방지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치료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원 가능 항목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치료, 개인 및 집단 상담·심리치료, 힐링 프로그램 교육 등 프로그램화된 것은 참여지원 가능(단순 여행이나 영화 관람은 지원 불가, 단 여행·영화 관람도 소진방지를 위한 프로그램화한 경우 가능)

※ 지원 가능 액수 : 연간 1인당 30만원 범위 내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지방비에서 추가지원할 수 있음

○ 종사자 대체인력 채용

- 시설장은 종사자의 퇴사, 육아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신규 또는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등 적정 인력을 운영하여야 함
- 대체인력의 자격은 상담원 등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강화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연중)
 - 시행기관 : 성평등가족부장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시·도지사(가정폭력 방지법 제8조의4)

※ 법정의무교육 이외에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연수비를 기관운영비 내에서 지출 가능

- 법정의무교육

구 분	법적근거	대상	시행주체	이수방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 평등법 제13조	전 종사자	고용노동부	직원연수·조회·회의, 사이버 교육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전 종사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privacy.go.kr) 참고
퇴직연금제도 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고용노동부	온라인, 집합, 서면, 상시게시(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	전 종사자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 촉진법 제5의2	전 종사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참고(연 1회 1시간 이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협회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8시간 이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전 종사자	고용노동부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교육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 종사자	성평등가족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연 1회 이상)

가. 입소대상

- 입소대상
 - 입소를 희망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중 자활의지가 강하고 다음요건의 1가지 이상을 갖춘 자
 - 법률적 문제(이혼 등 신분정리)가 해결되어 국내체류가 가능한 자
 - 자녀를 동반하고 이혼소송중인자 중 기관장의 의뢰를 받은 자 (의뢰서 및 상담기록 첨부)
 - 입소 이주여성의 가정 구성원
- 입소 우선순위
 - 국내 거주기간이 짧은 자
 - 미취학 자녀 동반자
- 운영위원회(입퇴소 선정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 후 면접심사 가능

나. 퇴소대상

- 입소기간이 만료한 자
- 입소기간 중 자립·자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자
- 취업이나 창업을 한 자로서 이주여성 그룹홈 및 임대주택 입소 예정자
-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다른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예시 : 자해, 폭력, 음주과다, 무단외박 반복 등)
- 자활의지가 없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센터장이 퇴소를 명하는 자

다. 입소기간

- 기본 1년 6개월로 하되 1회 6개월 연장 가능(최장 2년)

라.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 가해자와 폭력피해이주여성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시설관계자와 관련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 ※ 가정폭력방지법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20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비밀을 누설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반으로 동법 제78조(징계사유)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

5 시설의 관리 및 운영

I.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 부분의 해당내용 준용

6 시설의 안전 관리

I.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 부분의 해당내용 준용

7 운영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 용
한국어 교육	- 수준별, 단계별 교육, 맞춤형 교육 - 한국어자격증시험 대비반(취업대비)
컴퓨터 교육	- 기본교육 및 단계별 전문교육 - 실습지원실 상시 활용
보육지원 프로그램	- 간접폭력피해 아동 대상으로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상담기법 활용 등
언어발달 교육프로그램	- 동반아동 대상 - 언어발달 진단, 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 등
심리 상담치료	- 음악치료, 미술치료, 모래치료, 웃음치료, 독서치료, 명상, 문화체험 등
사회 적응교육 프로그램	- 문화적 차이 극복 및 한국사회 정착 - 생활문화, 경제생활, 사회생활 등 적응 프로그램 - 전문강사 초빙 강의
취·창업 프로그램	- 입소자들의 수요 및 직업적성검사 - 결혼이민여성 대상 전문교육 - 개인별 직업훈련계획서 및 사설학원 이용시 경비 지원 - 취·창업연계 관련기관 컨소시엄 구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노동부, 소상공인협회, 중소기업청, 교육청, 미소금융, 사업체 등)
자활 의욕 고취 프로그램	- 자활 정보제공, 직업적성프로그램, 상담 등
부모역할 프로그램	- 모역할에 대한 강의 및 상담 등
아이놀이 프로그램	- 부모와 자녀간의 믿음과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

나. 민간자원의 활용

- 전문가, 자원봉사자
 - 의료, 법률, 상담, 보육, 인적자원개발, 금융, 사업체 등 분야의 전문가를 자활지원센터 후원인력으로 임명하고 인력풀을 구성하여 최대한 활용함
- 일반 자원봉사자
 - 한국어교육, 아동교육, 보육지원, 취창업프로그램 지원 등에 자원봉사자 활용
 - 지역사회 다문화사회 감수성 증가를 위해 자원봉사자 인력풀 운영 활성화
- 멘토 자원봉사자
 -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자녀들의 학교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함
 - 여성지역자원봉사자와 이주여성간의 친정엄마 또는 자매결연운동 등

다. 유관기관 연계

- 한국어 방문교육, 맞춤형 직업훈련 등 다문화가족센터, 새일센터 등의 운영 프로그램 적극 활용

8 국고보조금 지원 내용

가. 지원 금액(지방비 포함)

(단위 : 천원)

정 원	종사자(명)		지원 금액			
	시설장	종사자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40명	1	10	1,095,578	451,561	155,282	488,734

※ 운영비·사업비는 인건비로 전용 불가, 4대사회보험료 및 기관부담금은 인건비에서 지출

나. 지원 기준

- 상기 인건비 및 운영비 총액은 보호시설 1개소 당 최소 지원 금액으로 임의로 지급 단가를 감액 조정하여 지원할 수 없음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는 여건에 따라 국비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종사자 호봉 책정을 할 수 있음(상담원은 생활복지사 수준 적용)

- 기존 국비지원 시설의 운영이 부실하거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종사자 임면의 허위 보고 등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 직장내 괴롭힘 발생 등에 대한 조치의무 미이행 등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성평등가족부에 서면보고(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하여 보고)

- 국고지원 보호시설이 운영중단 시 즉시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함
(운영 재개시 국비지원은 신규지원기관 선정 절차를 적용함)
- 지원형태 : 지자체 매칭 펀드(50~70%)
 - 국고 보조율 : 서울 50%
- 지원항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다. 집행 기준

- 인건비
 - 기본급,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초과·야간·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함.
다만,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은 2026년 기준 최저임금액(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은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기본급에는 포함하지 않음
 - 중도 퇴직자 및 신규 채용자 인건비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 일할계산 산식 : 월 고정급(보험료 제외) ÷ 209시간 × 8시간 × 월 근무일수
 - ※ 월 근무일수는 중도 퇴직일 또는 신규 채용일이 해당하는 월의 근무일수를 말함
 - 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적립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반환해야 함(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 ■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해야 함

○ 운영비

- 종사자 상해보험료(1인당 보험료 연 5만원 이내)
- 수용비(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비 등. 단, 각 시설은 1곳의 협의회비만 지출 가능),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PC 등 통신시설 유지비), 소규모의 수선비, 차량비, 재료비 등

* 소모성 물품 구입(입소자를 위한 물품, 집기 등) 가능

* 입소자를 위한 타지역 출장여비 지급 가능

〈여비 집행 기준〉

① 근무지 내 : 일비 4시간 이하 10,000원, 4시간 초과 20,000원

② 근무지 외 : 일비 25,000원, 식비 25,000원, 교통비 실비지급

※ 근무지 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왕복)가 12km미만인 출장을 의미함. 출장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의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함

※ 근무지 내 출장 시에는 교통비 별도 지급하지 않음

※ 근무지 외 출장에 개인 차량 이용 시에도 실비 지급 가능

-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회의비 등)
- 숙식비(1일 2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등
- 종사자의 숙직, 연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활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활용 가능. 단, 대체인력이 가정폭력상담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음
-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비 내에서 종사자 소진방지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치료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연간 1인당 30만원 범위 내)

※ 지원 대상 :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

※ 지원 가능 항목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치료, 개인 및 집단 상담·심리치료, 힐링 프로그램 교육 등 프로그램화된 것은 참여지원 가능(단순 여행이나 영화 관람은 지원 불가(단순 여행이나 영화 관람은 지원 불가, 단 여행·영화관람도 소진방지를 위한 프로그램화한 경우 가능))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임차료 등 지방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운영비 지출원칙

- 각 시·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지침」 등에 따라 보조금 전용카드에 클린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관리
- 또한 각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지도·감독
-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부당 사용사례가 적발된 경우, 감사 등을 실시하여 환수 및 징계 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분

▶ 보조금 전용카드란?

- ① 시설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 ②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발급 및 거래내역 전송
- ③ 클린카드 기능 탑재

*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계약한 금융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함

-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 금지)
- * 보조금 전용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등은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조금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 사업비 : 자활지원센터 이용자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센터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생활지원, 교육과정 운영, 공동작업장 운영, 아이돌보미지원 등)

- 기초생활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대상자가 아닌 자
- 주부식비 : 식료품, 피복비 등

※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와 같이 보호시설장에게 지급

※ 보호시설장은 주·부식비와 피복비 등 구분 없이 집행 가능(다만, 종사자 식비와 합산하여 집행할 수 없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 전 입소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가능하나, 보건복지부 시설급여와 이중지원은 불가

- 교통·통신비 : 교통카드비, 전화카드비

- 의료·법률지원비 : 이주여성의 심신치료 및 자활지원, 건강검진비, 일상치료비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수급대상자(시설수급자)에 대해서는 주·부식비, 피복비, 교육비, 의료급여 등 중복지원을 할 수 없음

- 교육과정 운영

-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의 사회정착을 위한 한국어 및 컴퓨터 교육, 사회적응 프로그램, 취·창업 및 자활의욕고취 프로그램, 보육지원 및 언어발달 등 운영

※ 한국어 및 컴퓨터 교육 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발전센터 등 유관기관의 이주여성 교육 과정 적극 활용

- 직업교육훈련 : 국공립 직업훈련기관, 민간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평생교육 시설 등 모든 외부 훈련기관 포함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피부미용, 요리, 미용, 디자인, 컴퓨터 관련 실질적 취업 창업이 가능한 직업교육 및 진학교육비를 우선 지원함

(출석률 80% 이상의 경우에 집행함. 시설이 교육 기관에 입금하되, 교육기관이 발행한 수강료 청구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리)

※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재료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이 판단하여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교통비 지원방식은 훈련생의 계좌로 입금(입금 시 시설명 노출에 유의)

※ 직업훈련비 추가로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지방비 추가지원할 수 있음

- 직업교육훈련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훈련과정을 적극적으로 이용

- 새일센터, 가족센터 등의 결혼이민여성 대상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동행면접, 여성인턴제 운영, 취업 후 사후관리

※ 다문화가족센터 : 가족센터에서 취업 사전교육 실시 후 새일센터 등 직업훈련기관으로 연계해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제공 및 사후관리 지원

- 공동작업장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언어, 건강, 자녀문제 등으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직업 능력훈련과정 또는 디딤터 자활프로그램을 이수 중이거나 수료한 입소자에게 실습지원 및 재훈련 등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 촉진

- 공동작업장 및 인턴십 과정 등에 주 15시간 이상 참여하면서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1인 월 60만원 이내에서 '일자리참여수당' 지원 가능

※ 고용노동부 훈련참여지원수당과 중복지급 불가하며 디딤터 교육참여수당(28만원 이내)과는 별도 지급 가능

※ 교육 수료 후 바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입소자 우선으로 참여자를 선정하며,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 훈련개시 첫 월에는 일자리참여수당을 바로 지급하고 익월부터는 전월의 출석률을 확인하여 8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출석률 확인 증빙서류 등 받드시 구비)

- 아이돌보미 지원
 - 입소자가 직업교육훈련 등 자립·자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반아동의 육아 및 보육지원
- 1인당 지원 한도액
 - 의료, 법률, 공동작업수당 지원은 1인당 760만원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 ※ 1인당 지원 한도액은 고용노동부 훈련수당 및 쉼터에서의 의료, 법률 지원비용을 포함
 - 지원한도액 관리를 위하여 개별지원 통합관리카드 작성

8 |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I.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 부분의 해당내용 준용

9 | 기타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자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범위 내에서 세부내역을 검토·조정한 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함
 - 시설은 사업계획 예산의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기재·작성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연간 사업계획서 검토 후 예산액 확정·통보
-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시 포함)은 관할 지원시설에 대하여 적정 입소자 비율이 유지되도록 지도하고 입소자 비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지자체 및 현장 실정에 맞게 정원조정 검토를 추진하여야 함
 - 지자체는 현장점검시 최근 3년 평균입소율(이용자 제외)이 50% 미만인 시설에 대하여 정원조정 등 자체 개선안을 강구토록 지도하여야 함
 - ▶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원에 따른 종사자 수의 유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정원조정 등 시설별 자체노력을 강구하여야 함
 - ▶ 지자체에서는 정원 대비 평균보호인원 비율이 낮은 보호시설의 정원을 시설과 협의하여 조정 검토
- 시·도지사는 자활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등 관련 통계자료를 지정서식에 의거 하여 상반기 실적은 7월말까지, 연간 운영실적은 익년도 1월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함

-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시 포함) 및 보호시설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지급·정산 등 회계업무, 종사자 인사업무, 통계관리업무 등 가능한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여야 하며, 시설장·상담원의 채용공고, 선발, 퇴직, 지원금 집행실적을 일모아시스템 DB에 입력하여 참여자의 중복지원 등을 확인하여야 함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연도 가정폭력보호시설 운영지침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할 수 있음

1 상담소 개요

가. 국비지원 상담소 현황

(‘24.12.31.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개소수	9	1	-	1	1	-	-	-	-	1	1	1	1	1	-	-	1	-

나. 법적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및 제6조(상담소의 업무)

다. 이주여성 상담소의 업무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에 대해 아래의 지원 활동을 실시함
 - 가정폭력 등 폭력 및 그 피해에 관한 상담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상담 등을 위한 통·번역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고용, 체류에 관한 상담 및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찾아가는 현장상담 및 사례관리
 -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 그룹홈 등)로 인도 및 안내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 지원 및 안내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 및 안내
 - 가정폭력 등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폭력피해 상담·지원에 관한 조사·통계 관리
 - 가정폭력 등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숙식 지원 등 임시 보호
 - 정신적·육체적 안정 및 상담·치료 등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등 전문시설로 연계

- 이주여성 폭력과 그 피해에 관하여 조사·연구
 -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및 인권보호에 관한 상담
 - 그 밖에 이주여성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 지원 : 열람·발급 제한에 필요한 서류 중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가 포함됨
 - 전자소송의 사전포괄동의 안내 :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시, 전자소송의 사전포괄동의 방법 안내
-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하며, 유효기간 유의 및 만료전 연장 주의 권고안내
-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아동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 제도 지원 : 가정폭력·스토킹 피해학생의 전학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등 상담사실 확인서’가 포함됨
 -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부·열람 제한 지원 :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행위자 본인 및 제3자의 증명서 등을 교부·열람·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자 개인 정보는 현출되지 않은 채 교부·열람·발급
 - 가정폭력으로 취업, 직업훈련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취업 등 자립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
 - 가정폭력 중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피해아동 등의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지원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거부(제외)제도 안내

구분	등재 거부	등재 제외
내용	특정인에게 피부양자 자격이 등재되지 않도록 거부하는 제도	특정인 구분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이 등재되지 않도록 거부하는 제도
신청방법	피부양자 등재거부(제외) 신청서 작성 및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사 제출	

※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행 등 미성년 피해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 이후 퇴직시 자동으로 부모(가해자)에게 피부양자로 연계되어 피해자 자격변동 내역이 전달됨(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한 부모에게 자동연계)

2 상담소 설치·운영기준

가. 설치·운영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나. 설치 및 운영 기준

구 분	내 용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상담소 운영〉 ○ 규모 : 99㎡(종사자 6명), 132㎡(종사자 8명) * 가정폭력 상담소 기준 준용 ○ 구조 및 설비 - 사무실, 면접상담실 2실, 전화상담실 2실, 회의실, 비상재해대피시설 등 설치 * 면접상담실, 전화상담실 개수는 사무실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 가능 ○ 종사자 수 - 상담소장 1명 - 상담원 5명, 7명 * 이주여성 상담원이 2명 이상이어야 함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긴급피난처 운영〉 ○ 면적 : 16.5㎡ * 1366긴급피난처 기준 준용 ○ 구조 및 설비 - 거실,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식당 및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화장실, 급수·배수시설, 비상재해대피시설 등 설치 * 사무실·상담실·숙직실 겸용 및 목욕실·세탁장·화장실 겸용 가능 ○ 종사자 수 - 상담원 2명 ○ 운영시간 : 24시간 운영 ○ 보호기간 : 7일 이내 보호를 원칙, 필요시 14일까지 연장 가능 ※ 지역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보호시설이 피해자 임시 보호 등 긴급피난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경우 긴급피난처 미설치 가능 ※ 긴급피난처 미설치 시 상담소 면적 추가 또는 인력·예산 조정 ※ 1개소당 상담소 종사자 최대 8명(소장1명, 종사자7명) ⇒ 긴급피난처를 설치하지 않고, 상담소 종사자가 7명 이상일 경우 이주여성 상담원은 3명 이상이어야 함

다. 명칭 : ○○* 이주여성 상담소 *해당지역명(시·도명)

○ 로고



* 상기 로고를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음

3 상담소 설치 신고 등

가. 상담소 설치·신고

- 1) 신고서 제출 : 신고인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신고서 서식 및 구비서류는 가정폭력방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관내 타 상담소 등의 설치운영 및 상담수요, 향후 예산지원 전망 등을 사전 설명하고 해당지역의 상담소의 적정 공급수준을 유도
- 2) 심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상담소 설치요건의 준수 여부 확인
 - ※ 특히 상담원이 법령상 시군구에 신고된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4]의 교육시간, 과목 등)을 이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련 교육기관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등 설치요건의 준수여부 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정 구비서류 외에 설치 신고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나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할 수 있음
 - ☞ 사회복지사업법(특히 시설장의 요건) 및 건축법, 그린벨트 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하여 관련부서와의 협조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신고수리 여부 결정
 - ※ 상담소는 노유자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분류됨
- 3) 신고증 교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신고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
 -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1호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
 - 신고시설이 상담업무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안내

나. 상담소 변경(시행규칙 제3조제3항)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 상담소 운영 주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폐지신고 후 새로이 설치신고를 해야 함. 단, 상담소 운영주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 시설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지속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존 시설에 준하는 예산지원이 가능함
- ※ 개인상담소의 경우 '상담소의 장 변경'은, 운영주체가 동일한 경우[신고인(대표자)은 변경되지 않고 별도 고용된 소장이 변경]에 한함
- ※ 권역을 달리하여 상담소를 이전할 경우, 기존 관청에 상담소 폐지신고 후 이전하고자 하는 관청에 신규 설치 신고하여야 함. 단, 운영실적, 운영기간 등은 개소일부터 계속 인정하며 지원여부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지 않음

2) 신고서 제출 : 신고인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변경신고서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첨부서류

-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 또는 변경사유서 (개인인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 변경시설의 평면도(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소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상담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상담소 신고증

3) 심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4) 변경신고 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 후 5일 이내에 처리
 -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별지3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그 변경내용을 상담소 신고증에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다. 상담소 폐지·운영중단·재개(시행규칙 제12조)

- 1) 운영중단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함
- 2) 신고서 제출 : 법인 등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운영중단·폐지·재개신고서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신고서 첨부서류
 -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제외)
 - 상담소 신고증(폐지의 경우)
 - 상담소 종사자 인사기록카드(폐지의 경우)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 3) 검토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4) 운영중단·폐지신고 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 후 6일 이내에 처리
 -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10호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신고 수리 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가. 종사자 자격 기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3)

구분	일반기준	개별기준
상담소의 장	상담원 교육과정 이수 (100시간)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의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등 관련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상담원	상담원 교육과정 이수 (100시간)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 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보호시설만 해당한다)

* 종사자 자격기준 중 가정폭력등 방지업무는 가정폭력등피해자 지원시설에서의 업무 또는 유관기관 등에서 가정폭력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보호·지원 등에 대한 관련 업무임

- 가정폭력 방지업무의 경력인정 기관 :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된 기관 또는 시설, ② 가정폭력 방지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 또는 단체,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④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가정폭력 관련 기관(※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

* 종사자 자격 중 각종 경력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영수증, 소득세 원천 징수부 등)를 첨부하여야 함. 단,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시설장의 서명 또는 직인으로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로 증명할 수 있음

*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은 외국인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단체 또는 보호시설을 의미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

- (요건)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수습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 1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절차) 특례채용은 상담원 채용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또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3차 공고시부터 적용 가능함
- (관리) 시설은 수습직원을 특례채용한 경우 이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즉시 보고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현장점검 시 채용의 공정성, 1년 이내 교육과정 이수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

- (권장) 이주여성 상담소의 특성을 감안, 이주여성 상담 등 지원 관련 경력 및 한국어능력 자격구비
 - 이주여성 관련 종사 경력 : 상담소장(2년), 상담원(1년)
 - 한국어능력 : 한국어능력시험 4등급 이상
- (자격기준완화) 2회에 걸친 직원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법정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없을 경우 가정폭력 방지업무 경력 외에 성폭력·가정폭력 방지업무 경력도 가능토록 하는 등 자격기준 완화 가능

나. 종사자 복무

- 시설기준의 종사자 수에 포함된 소장 및 상담원은 상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 상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담원을 관리할 수 있는 직제를 운영할 수 있음
- 학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예방교육, 폭력피해 이주여성 또는 가해자를 위해 상담을 나가는 등 상담소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출장은 가능함
 - 이 경우 관련자료(근무상황부, 상담일지, 출장대장, 교육대장 등)를 비치하여 이를 증빙하여야 하며,
 - ※ 근무상황부, 출장대장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인사현황자료(출장현황, 휴가현황, 교육현황 등)으로 대체 가능함
 - 잦은 출장으로 인해 피해자 상담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교육 업무 분담, 교육비 활용 기준 등에 관하여 형평성 있는 상담소 자체 규정을 구비하여야 함
 - ※ 상담소 종사자가 외출, 조퇴 등 이석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비치

○ 상담소장의 겸직관련

-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장은 상근의무가 있고, 가정폭력방지법에도 상담소장의 전임의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상담소장의 겸직은 불가함. 단,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겸직이 필요한 경우는 시·군·구청장의 승인 하에 겸직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은 인건비가 타 기관과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해당 시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함

※ 겸직가능사유 : 대학부설시설에 해당대학의 교수가 소장에 임명되는 경우, 법인부설 상담소의 소장을 해당법인 대표가 겸직하는 경우,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장(동일법인·단체에 한함)과 겸직하는 경우

다. 종사자 채용 및 임면보고

○ 종사자 채용

- 공개경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시 임금·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함
- 종사자 결원시 1월 이내에 신규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함
- 종사자는 교육훈련과정(100시간) 이수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상의 개별 기준도 갖추어야 하므로 채용 시 수료증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필히 확인하여야 함
- 상담소가 상담, 심리치료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 상담원”으로 둘 수 있음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사자가 될 수 없음(법률 제8조의2제1항)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해 공개 채용 과정에서 종교관련 정보, 가족관계, 출신지역 정보 등 개인정보 취합 금지

※ 공정한 채용을 위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권고(외부인원 50% 이상), 이 경우 법인 임직원은 내부위원으로 간주

○ 종사자 임면보고

-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권자는 종사자 채용 시 반드시 사회복지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상담소의 장은 국비(지방비 포함)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종사자 채용 시 관련시스템에 따라 종사자 임면보고(사유 : 종사자 경력인정여부의 증명서류 제출 시 증빙자료로 활용)

○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

- 상담소 종사자의 육아휴직시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의 자격은 상담소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국고지원 상담소의 경우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라. 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강화 등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연중)

- 시행기관 : 성평등가족부장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시·도지사(가정폭력방지법 제8조의4)

※ 법정 의무교육 이외에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연수비를 기관운영비 내에서 지출 가능

○ 법정 의무교육

구 분	법적근거	대상	시행주체	이수방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전 종사자	고용노동부	직원연수·조회·회의, 사이버 교육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전 종사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privacy.go.kr) 참고
퇴직연금제도 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고용노동부	온라인, 집합, 서면, 상시게시(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	전 종사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의2	전 종사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참고(연 1회 1시간 이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협회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8시간 이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전 종사자	고용노동부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교육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 종사자	성평등가족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연 1회 이상)

※ 시설장 및 종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수하도록 노력할 것

가. 운영시간

- 상담소 : 주 5일, 평일 8시간 이상 운영(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 * 시설별 종사자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시설장 책임 하에 상담소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선택제 운용 가능
- 긴급피난처* : 365일, 24시간 운영
 - * 긴급피난처에 입소 인원이 없을 경우 상담소장은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나. 상담소의 회계 등 업무 관리

- 관리규정
 - 상담소의 장은 상담소의 운영방침, 직원의 업무분장, 상담소의 이용수칙, 그 밖에 상담소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상담소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함
- 현장점검 및 감사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상담일지 등에 대한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 등은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일지 등을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하게 상담일지 제출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 단,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이 상담소 운영실태, 이용자 및 운영비 집행상황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 상담소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장부의 비치

구분	관리에 관한 장부	사업에 관한 장부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장부 종류	- 상담소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직원관계철(인사기록카드, 이력서, 사진 등) - 회의록관계철 - 소속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 및 관계철 등 기록 -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행정 기관과의 문서철) - 문서 접수대장 및 발송대장, 종사자 근무상황부, 출장대장, 교육대장 등 각종 대장	- 상담소의 이용자 관계서류 (신상조사서, 지원기록 등) -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 상담원 교육관계서류 - 기타 운영실적 등	- 총계정원장 - 수입 및 지출보조부 - 금전출납부 및 증빙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비품수불대장 - 비품관리대장 -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 각종 증빙서류

- 상담소 신고증 게재
 - 시설 이용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신고 시설임을 알릴 수 있도록 시설 내에 신고증 게재
- 기록의 보존
 - 상담내용, 재무·회계 기록에 관한 사항 등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기록의 보존)에 따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 단, 재무·회계 기록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보관
- 재무회계 관리의 보존 및 관리
 - 상담소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 재무회계 관리는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 법령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용
 - 상담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장부에 기재 후 집행
- 업무의 전산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함
- 후원금품의 관리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발급(의료·사회복지·종교·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통해 후원금 또는 지정기탁금을 수령한 경우 포함)
 - ※ 금융기관 등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발급 가능
 - ※ 후원금 전용계좌는 시설 명칭이 부기된 시설 고유의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두어야 함
 -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 비치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

■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 ■

연번	일시	후원자(법인)	후원금 유형 및 금액		지정후원금 용도	비고
			지정	비지정		
1	2020.1.25.	○○○법인	500,000원		청소년 생계비	
2	2020.1.30.			100,000원	청소년 교육비	

- 후원자가 후원금품의 용도를 지정했을 경우 지정 용도와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후원자(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 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역을 통보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용도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 후원금으로 인정

- 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8, 별표 10의 세출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하되, 가급적 내역수준으로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 되도록 할 것
 - “법인·시설의 운영” 등과 같이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에 따라 관리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 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는 사용 금지
-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
- 시설비는 건물 노후화, 정원대비 협소한 공간 등 시설 입소·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원칙으로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상담소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제출 후 20일 이내에 상담소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함(단, 후원자 성명은 비공개)

○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

- 상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목적용 외에 수집 또는 제공할 수 없음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상담소와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 및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된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 ※ 가정폭력방지법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20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비밀을 누설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반으로 동법 제78조(징계사유)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지자체와 시설장은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본래의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되어지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실시(「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수집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권리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거나,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경우 수집 가능
- 입소/이용자, 후원자 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그 외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노력 등

다. 유관기관 연계

- 피해자가 일시 또는 중장기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상담소 긴급피난처 또는 보호 시설에 긴급보호 조치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다누리콜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등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의 허브(중심기관) 역할 수행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긴급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보호시설, 112, 119, 병원 등으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급연락망 및 협조체계 구축
 - 대상자를 해당 외부 서비스 기관에 의뢰
 - 대상자에게 외부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 대상자를 위한 자원 동원(프로그램, 전문인력 지원, 비용공제, 각종 정보 제공) 요청 등
-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 자원에 대해 DB 구축 및 체계적 관리

라. 홍보 활동

- 이주여성들이 상담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월별 및 계기별(가정폭력 추방주간 등)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역사회 캠페인,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지역 SNS, 이주여성 커뮤니티 등 대상별 차별화된 홍보 추진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의 필요성과 역할을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보호시설, 112, 119, 행정기관, 수사기관, 병원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게도 지속적으로 홍보
- 안내책자, 소식지, 홍보물 제작·배포 등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
 - *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이주여성도 폭력피해 대처방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상담소, 보호시설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모국어 활용

6 긴급피난처 운영

가. 목적

-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를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우선 긴급피난처로 임시 보호한 후 상담 및 보호시설 등 관련기관으로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나. 긴급피난 보호대상

- 긴급히 숙식지원이나 정신적·육체적 안정과 상담·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

다. 긴급피난처 설치

- 상담소는 긴급피난처 운영을 원칙으로 함(비공개 시설)
 - 상담소장을 긴급피난처의 장으로 봄
 - 지역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보호시설이 피해자 임시 보호 등 긴급피난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경우 긴급피난처 미설치 가능(긴급피난처 미설치 시 상담소 면적 추가 또는 인력·예산 조정)
 - * 상담소장은 보호시설과의 업무협약, 인력 재배치 계획, 상담소 추가 면적 확보 계획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긴급피난처 미설치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함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장은 상담소 인근*에 긴급피난처를 마련하여 상담소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
 - * 상담소장이 긴급피난처를 원활히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긴급피난처 설치
- 보호기간 : 7일 이내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14일까지 연장 가능

라. 기능

- 가정폭력 등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숙식 지원 등 임시 보호
- 정신적·육체적 안정 및 상담·치료 등 상담소 업무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등 전문시설로 연계

마. 긴급피난 절차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상담원의 상담결과에 따라 임시 보호
- 상담에 필요한 기간 임시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적이고 장기간의 보호를 요하는 경우 상담소 상담원과 상담진행 후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등 관련 기관에 연계
- 입·퇴소 등 제반사항은 보호시설 운영기준에 따라 조치

바. 긴급피난처 운영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장이 긴급피난처의 인력 등 운영을 총괄 관리
- 긴급피난처 예산이 남을 경우 상담소의 긴급지원비 등으로 활용 가능
- 상담소장은 긴급피난처에 입소 인원이 없을 경우 긴급피난처 상담원을 상담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 가능

7 | 지원 조직

가. 통·번역 지원단

- 목적 : 다국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번역 가능 이주여성, 내국인에게 기본적 교육을 이수한 후 통·번역 활동 등에 참여
- 구성 : 통·번역이 가능한 이주여성 및 내국인에게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체류 등에 관한 교육 이수(언어별* 구성)
 - 통·번역지원단 교육, 내담자 지원 실습 등을 거친 후 인력풀 관리
- * 권장 언어 :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등
- 활용 : 모국어 상담원이 없는 소수 언어 또는 상담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에 통번역 지원단 활용
- 예산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활동비 지급 가능

나. 법률 지원단 구성·운영

- 목적 : 이주여성의 폭력피해, 체류문제, 가정문제 등 복합적 문제에 대한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변호사 등으로 자문단 구성
- 구성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분야, 출입국 관련 국적 등 체류 자격 분야, 이혼 등 가사분야 등으로 구성
 - 지역 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 협회 등과 협력하여 인력풀 구성
- 활용 : 이주여성의 생활, 체류 등 복합적 문제에 대한 분야별 법률 상담 제공 및 수사·소송과정 지원 등

- 예산지원 : 무료법률지원사업(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 등)을 우선 활용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비 지급 가능

다. 의료 지원단 구성·운영

- 목적 : 지역내 의사, 의료기관 등으로 의료 지원단을 구성하여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진료 및 치료, 진단서발급, 건강관리 등 지원
- 구성 :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적절한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과, 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포함하여 구성
- 활용 : 이주여성의 생활, 체류 등 복합적 문제에 대한 분야별 법률 상담 제공 및 수사·소송과정 지원 등
- 예산지원 : 피해자 치료보호 사업 및 가정폭력피해자 무료진료 사업을 우선 활용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

8 시설의 안전관리

가. 시설의 안전관리(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 종사자의 안전관리
 - 상담소의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1인당 보험료 연 5만원 이내, 운영비로 지출)
- 자체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시설장은 소관시설에 대하여 매 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시안전점검) 시설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시안전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안전점검기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지침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 지자체에서는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대상 선정 시 피해자 상담 등에 필요한 컴퓨터 등 주요물품과 시설 안전점검 결과 개보수 필요시설, 노후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

○ 지자체 안전점검

- 시·도 및 시·군·구는 하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성평등가족부에서 통보하는 안전 점검 계획에 따라, 종사자대상 교육훈련, 안전점검표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에 보고
-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 상태, 보험가입 여부, 시설 거주자 건강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며, 취약시기의 특성에 따라 급식시설 위생상태, 폭설·제설·동파·난방관리 대책 등 추가 점검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별도 신청 및 직권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 * 주요 점검내용 : 시설물 기초지반 침하 및 벽면 균열 발생 여부, 시설물 주변 석축·옹벽, 비탈면의 결함 발생여부 등
- 지자체에서는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보수 등이 시급히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능보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나. 사고 예방 및 조치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 긴급피난처에 가스경보기를 설치하여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 미연에 방지
- 소화시설·장비는 소방법령의 제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종사자가 수시로 확인·점검
- 시설장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평상시 종사자들에게 사고예방의 중요성 및 각종 시설물 취급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항상 숙지하도록 지도하여 사고발생 예방

-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절기·해빙기 안전점검 철저(보일러·가스·전기 등)
 - 화재대피 훈련 등 방재훈련을 시설별로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
 -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등
 - 시설장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보고, 의료조치, 초기대응(화재진화 등), 외부연락 등에 대한 종사자의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종사자들이 유사시 자신의 임무를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 시설장은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피난방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고에 빠른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시·군·구청장은 사고발생시 시설안전사고보고서 별지 [서식 7]을 작성 즉시 보고 : 시·군·구청장 → 시·도 → 성평등가족부
- ※ 소방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관련 제규정에 따른 방염설비를 갖추어야 함

○ 종사자 안전대책 마련

- 시설장, 시·도·구청장은 시설종사자가 상담 등 업무와 관련하여 폭행 등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
- 시설 내·외 CCTV 설치, 가스충 등 구비
- 경찰관서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보험가입여부 확인(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 ▶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 시·군·구는 시설 이용자와 생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법 제58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 [별표 5]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것
 - 지자체는 시설 정기안전점검 시 각 시설의 대인·대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1인당 배상책임보험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 책임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배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의미함
 - ** 책임공제라 함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설립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 의미함
- ▶ 시설의 지도·감독청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시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소멸시 상품을 가입토록 관리해 나가되
 - 불가피하게 해당 시설이 적립식 상품을 가입한 경우라면 시설이 그 만기 환급금 수령 후 시설운영비로 세입처리를 반드시 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다.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구성)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단, 각 부분별 인원은 2인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설의 장
 - 시설 이용자 대표
 - 시설 종사자의 대표
 -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① 시설장의 친인척, ②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시설장 제외)는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할 것
 - ※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에 유의할 것(법제처 해석, 17-0433)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기능) 위원회는 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사항 심의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임기 및 운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함
 -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운영
 - 운영위원회 운영일지를 작성·보관
 - ※ 서면 또는 대리출석에 의한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원칙적으로 불가(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다만, 국가감염병 확산 등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다자간(영상 통화, 다자간 메신저(모바일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심의 가능, 다만 이 경우에도 분쟁소지 해소를 위하여 회의개최 증빙자료 보관(영상회의 및 메신저 대화내용 저장 등) 요망

- ①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함
- ②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운영위원회 위원임을 확인)
- ③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간 의견교환이 가능하여야 함
 - 전자적 방법의 운영위원회 진행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이 있는 시설의 경우, 법정처리기한 등 심의의 시급성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음
 - 다만, 전자적방법의 운영위원회 진행이 곤란한 사유를 관할 지자체에 명확히 소명

-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보는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산 제출 시 함께 제출

9 국비지원 상담소 지원기준

가. 지원요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상담소로서, 3년 이상 운영하고 이주여성 상담 실적, 시설평가 결과 등이 우수한 상담소
 - 운영기간 기산일은 상담소로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실제 상담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함
- 이주여성 상담·보호 관련 사업실적이 2년 이상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 ※ 상담소 면적, 구조 및 설비 등은 선정통보 이후 3개월 이내 충족 가능(사업계획서에 구체적 이행계획 반영 및 시·도의 계획이행 여부 점검·확인)

나. 국비지원 대상 선정기준

단계	절 차	담당기관
1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계획 통보	성평등가족부
2	■ 상담소 운영(국비지원) 계획 안내	시·도 → (시·군·구) → 기관
3	■ 운영(국비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 희망기관 → 시·도
4	■ 현장실사, 추천위원회 개최, 운영(국비지원) 기관 추천	시·도
5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결과 통보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는 국비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시·도가 신청한 국비지원 대상 상담소에 대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국비지원 희망기관의 지원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 및 확인하고 추천 위원회 개최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에 추천
- 시·도지사는 국비지원대상 선정시 내부 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 상담소 추천위원회’를 구성·활용
- 기존 지원상담소의 경우에도 법령 및 지침 준수여부, 운영실적 등을 확인하여 예산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
 - ※ 시·군·구청장은 신규 및 기존지원시설에 대한 현지확인 실적을 시·도지사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에 제출
- 국고지원 상담소가 운영중단 시 즉시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함
(운영 재개 시 국비 지원은 신규지원기관 선정 절차를 준용함)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로 국비지원을 받는 기관이 동일 시·군·구내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성매매 상담소로 중복 지원받는 것은 불가
- 국비지원 중단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여야 함(보조금법 제31조의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성평등가족부에 서면보고(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하여 보고)

다. 국고지원 시 유의사항

- 시·도지사는 이주여성 규모, 지역의 상담 수요, 운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기존 국비지원 상담소의 운영이 부실하거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종사자 임면의 허위 보고 등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 직장내 괴롭힘 발생 등에 대한 조치 의무 미이행 등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성평등가족부에 서면보고(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하여 보고)

-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시 조치

- (국고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국비지원 중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여야 함 (보조금법 제31조의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성평등가족부에 서면보고

※ <참고> 보조금 지원 취소 및 반환 관련 근거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강제 징수)

-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보조금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가정폭력방지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청·교부 및 사용하여야 함

10 국고보조금 지원 내용

가. 예산지원 기준(1개소당 6명, 8명)

(단위 : 천원)

구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종사자 6명	292,202	232,314	25,000	34,888
종사자 8명	378,640	309,752	34,000	34,888

※ 금액은 국비, 지방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보조율은 국비 50%임

- 시·도는 국비지원 기관 선정 통보 후, 선정기관의 세부 사업계획(실행계획)을 제출받아 검토·승인하고 성평등가족부*에 제출

*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시·도는 상담소로부터 사업계획서(실행계획) 및 사업비 지급 신청을 받을 때 인건비, 사업비 및 운영비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집행하도록 유도

※ 국비지원 기관 선정 시기, 인력 규모, 긴급피난처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예산지원 금액 조정

나. 인건비 관련

- 종사자 인건비는 기본급,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초과근무수당, 긴급피난처의 야간근무수당 등 모든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함
다만,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이 2026년 기준 최저임금액(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 (가입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 누리집 <http://insurancesupport.or.kr>

-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은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기본급에는 포함하지 않음
- 상기 인건비는 소장 1인 및 종사자 5인 또는 7인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긴급피난처 2인 포함), 운영기관(지자체 또는 수탁기관) 자체기준에 의거하여 지원 다만, 예산지원 기준을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음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국비지원 인건비 지급기준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종사자 호봉 책정을 할 수 있음
- 중도 퇴직자 및 신규 채용자 인건비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
 - 일할계산 산식 : 월 고정급(보험료 제외) ÷ 209시간 × 8시간 × 월 근무일수
 - ※ 월 근무일수는 중도 퇴직일 또는 신규 채용일이 해당하는 월의 근무일수를 말함

-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해야 함

다. 운영비 관련

- 종사자 상해보험료(1인당 보험료 연 5만원 이내)
- 수용비(인쇄비, 소모성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비 등. 단, 각 시설은 1곳의 협의회비만 지출 가능),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통신시설 유지비), 소규모의 수선비, 차량비, 재료비 등
-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회의비 등)
- 긴급피난처 관리·운영비, 생활소모품비, 영유아지원비 등
- 사무실 임차료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월 70만원 한도에서 지자체 승인 없이 운영비로 집행 가능함. 단, 7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가 집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승인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함
 -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임차료 등은 지방비에서 추가지원할 수 있음
- 운영비 지출원칙(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각 시·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지침」 등에 따라 보조금 전용카드에 클린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관리
 - 또한 각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지도·감독
 -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부당 사용사례가 적발된 경우, 감사 등을 실시하여 환수 및 징계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분

▶ 보조금 전용카드란?

- ① 시설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 ②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발급 및 거래내역 전송
- ③ 클린카드 기능 탑재

*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계약한 금융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함

-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 금지)

* 보조금 전용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등은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조건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 기능보강비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상담소 운영에 따른 기능보강비를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음

라. 사업비 관련

- 가정폭력 등 폭력 및 그 피해에 관한 상담(전화, 면접, 사이버 등)
- 통·번역 지원, 법률·의료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조직(통·번역 지원단, 법률 지원단) 운영, 상담소운영위원회 운영, 교육 및 역량강화
- 지역내 이주여성 폭력 실태파악(조사) 등 폭력피해 상담·지원에 관한 조사 및 통계 관리
-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폭력피해 예방 홍보
 - *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이주여성도 폭력피해 대처방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상담소, 보호시설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모국어 활용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관련 유관기관 연계·협력 등 네트워크 구축 등

마. 종사자 소진방지 지원 관련

-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비 내에서 종사자 소진방지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치료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연간 1인당 30만원 범위 내)
 - ※ 지원 대상 :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
 - ※ 지원 가능 항목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치료, 개인 및 집단 상담·심리치료, 힐링 프로그램 교육 등 프로그램화된 것은 참여지원 가능(단순 여행이나 영화 관람은 지원 불가, 단 여행·영화관람도 소진방지를 위한 프로그램화한 경우 가능)
 - ※ 지원 가능 액수 : 연간 1인당 30만원 범위 내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지방비에서 추가지원할 수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행정조치를 통보받은 상담소의 경우 예산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
- 상담소가 폐쇄될 경우 시·군·구청장은 폐쇄되는 상담서류 일체를 관할 지역 내의 다른 상담소에 이송토록 조치
※ 단, 상담일지는 3년 보관 후 폐기 조치
- 상담소 종사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상담소로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도 근속연한으로 인정함
- 공무원의 사회복지법인·시설 재취업 공무원과 사적 접촉 방지 법령 신설 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22.5월 시행)〉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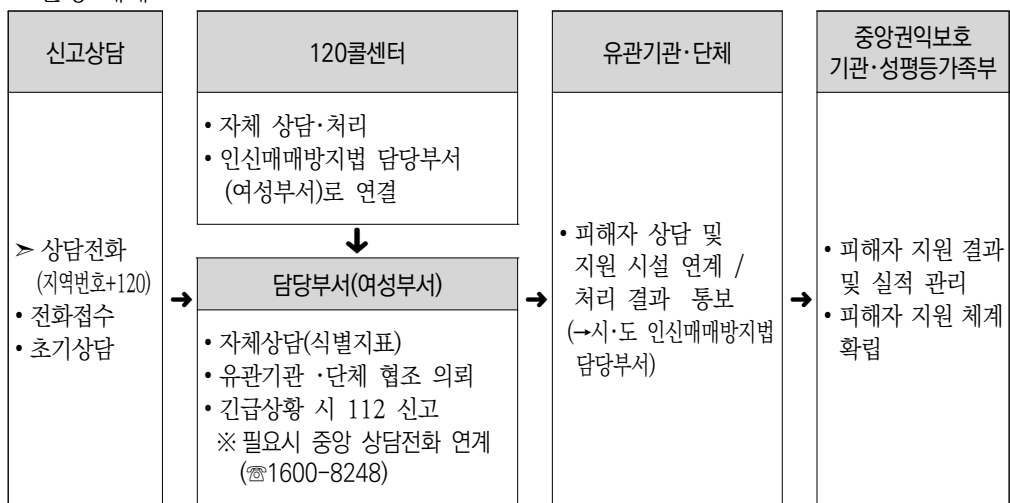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각 상담소의 운영 및 정산실적을 지정서식에 따라 상반기 실적은 7월말까지, 연간 운영실적은 익년 1월말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시 포함) 및 상담소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지급·정산 등 회계업무, 종사자 인사업무, 통계관리업무 등 가능한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여야 함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연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침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할 수 있음

(참고) 이주여성 인신매매등 피해자 발생 시

□ 시도 피해 상담전화

- 운영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원 120콜센터
- 운영방법 : ☎지역번호 + 120
 - 운영시간 : 10:00 ~ 17:00
 - 대 상 : 인신매매 관련 피해자, 신고의무자, 일반국민 등
 - 내 용
 - 인신매매등 피해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 피해유형별 전문상담 필요시 관계부처 소속 상담전화 연계
 - 긴급상황 시 수사기관 등 상담원이 직접 신고
- ※ 상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중앙 상담전화 연계(☎1600-8248)

○ 운영 체계도



○ 기존 지원체계 내 정보제공 및 연계(관계부처·기관)

구 분		성 착 취	노 동 력 착 취
내 국 인	공 통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선원)지방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 (11개소)
	아 동 청소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전화(1388)	
	성 인	성매매피해상담소(31개소) 서울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남성의전화)	
	장애인	장애인인권옹호기관(1644-8295) 성매매피해상담소 특성화센터(서울)	
	노 인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외국인		성매매피해상담소 두레방(1개소)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9개소)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시설(33개소)	• 한국외국인노동지원센터(1644-0644) • 고용허가제)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 (선원)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1566-3151)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및 방향

- 북한이탈 및 정착과정에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 트라우마를 입은 북한이탈여성들에게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적응 및 정착 지원
- 동료상담원의 맞춤형 상담·치유 프로그램 제공으로 폭력피해 예방 및 폭력 트라우마 치유 지원
- 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들을 위한 지역사회 내 서비스 기관 간의 지원체계 구축으로 폭력피해 치유 통합적 서비스 제공

나.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 추진 경과

- '13년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8개소 지정
- '14년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10개소로 확대 지정

2 사업 추진체계

가. 사업추진 체계도



나. 사업 주체별 역할

- 성평등가족부
 - 기본정책 및 세부 운영지침 수립·시달
 - 사업 대상지역 선정
 - 사업운영 재원 확보 및 지원
 - 사업 수행상태 수시 점검, 평가 및 피드백
 - 중앙단위에서 대외기관 협조 확보 지원
- 지방자치단체(시·도)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예산 배분
 - 지역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 사업운영 재원 확보 및 지원
 -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 예산 집행 등 사업수행기관 관리·감독(현장점검 및 결과보고)
 - 사업 지도·점검 및 정산보고
- 사업 수행기관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모집·선정
 - 심리치유프로그램 및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실시 운영
 - 지역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만족도 조사 실시 등 사업 성과관리
 - 예산 집행, 사업 성과 보고 및 정산

3 사업 운영(국비지원) 기관 선정 및 현황

가. 운영(국비지원) 기관 선정

- 북한이탈여성의 거주 현황,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선정

선정 절차	담당 기관
• 심리치유센터 선정계획 통보	성평등가족부
• 심리치유센터 선정계획 안내	시·도 → 지원 희망기관 등
• 운영(국비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 희망기관 → 시·도
• 현장실사, 추천위원회 개최, 운영(국비지원) 기관 추천	시·도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결과 통보	성평등가족부

- 시·도는 가족센터,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하나센터 등 전문성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각 시설의 상담사 현황, 상담 실적 등 운영 능력을 고려하여 선정

※ 북한이탈여성 상담원이 있는 기관 우대

나. 운영 현황 : 8개 지역, 10개 기관

시·도	사업수행기관	비 고
서울특별시	(사)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17년 변경
	(사)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16년 변경
대구광역시	(사)영남가족사랑센터 부설 영남가정폭력상담소	'13년 지정
인천광역시	서인천 가족상담소	'19년 변경
광주광역시	광주하나센터	'22년 변경
대전광역시	대전다올통합상담소	'26년 지정
경기도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13년 지정
	의정부시 가족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한삶	'26년 지정
경상남도	마산 가정상담센터	'14년 지정

4 국고보조금 지원 내용

가. 지원 금액(지방비 포함) : 센터당 35.2백만원

- 지원형태 : 지자체 매칭 펀드(서울 50%, 기타 지역 70%)
- 지원항목

구 분	내 용
인건비	동료상담원 급여, 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금
사업비	심리치유 프로그램비, 찾아가는 상담활동비, 동료상담원 양성 교육비, 전문 상담원 수당, 회의 수당 등

나. 지원 기준

- 기존 국비지원 시설의 운영이 부실하거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종사자 임면의 허위 보고 등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 직장내 괴롭힘 발생 등에 대한 조치의무 미이행 등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성평등가족부에 서면보고(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하여 보고)
- 국고지원 시설이 운영중단 시 즉시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함
(운영 재개시 국비지원은 신규지원기관 선정 절차를 적용함)

다. 집행 기준

- 인건비 : 동료상담원에게만 지급
 - 동료상담원은 북한이탈여성이어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동료상담원 양성교육 또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원 교육 이수자를 우선 채용
 - ※ 종사자 인건비는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기본급, 4대보험 부담금, 퇴직적립금,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함. 다만,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이 2026년 기준 최저임금액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 ※ 동료상담원 채용 시 채용공고 3번 이상 시에도 북한이탈여성의 응시가 없을 경우에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표3]을 적용할 수 있음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는 인건비를 지원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행단체(법인 또는 지자체)의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함. 다만, 여건에 따라 지방비 등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종사자 호봉 책정을 할 수 있음(상담원은 생활복지사 수준 적용)

- 인건비는 1개월의 근무일수를 채운 경우에 지급

※ 근무 일수에 못 미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준수

○ 사업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

- 심리치유 프로그램비 : 사회적응 프로그램, 심리정서 프로그램, 각종 자조모임 등, 강사비, 도서·교재 구입비, 프로그램 재료비 등의 직접비, 전화, 문자발송 등 홍보비
- 찾아가는 상담활동비 :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한 동료상담원 등에게 지급

〈여비 집행 기준〉

① 근무지 내 : 일비 4시간 이하 10,000원, 4시간 초과 20,000원

② 근무지 외 : 일비 25,000원, 식비 25,000원, 교통비 실비지급

※ 근무지 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왕복)가 12km미만인 출장을 의미함. 출장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외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함

※ 근무지 내 출장 시에는 교통비 별도 지급하지 않음

※ 근무지 외 출장에 개인 차량 이용 시에도 실비 지급 가능

※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단가 등 조정 가능

- 동료상담원 양성 교육비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상담원 교육비 지급
- 전문상담원 수당 : 인건비가 지급되는 동료상담원 외의 상담원에게 연계될 경우 지급
-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기준단가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
- 회의 수당 : 자문회의, 협의회, 평가회의 등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 지급

5 동료상담원 인력 및 복무

가. 상담원 인원 : 센터당 동료상담원(북한이탈 여성) 1명

※ 3회에 걸친 동료상담원(북한이탈여성) 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없을 경우 내국인으로 채용 가능

나. 상담원(북한이탈여성)의 자격

- 북한이탈여성으로 성평등가족부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동료상담원 양성교육 또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원 교육 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우대

다. 상담원의 채용

- 공개경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원이 될 수 없음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을 면제되지 아니한 자
- ※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해 공개 채용 과정에서 종교 관련 정보, 가족관계, 출신지역 정보 등 개인정보 취합 금지

라. 상담원의 복무

- 상담원은 상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 주 5일, 월~금 09:00~18:00, 시차출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탄력근무는 가능하나 시간제(주 40시간 이하) 근무 불가

마. 상담원 소진방지

-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비 내에서 종사자 소진방지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치료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연간 1인당 30만원 범위 내)
 - ※ 지원 대상 :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
 - ※ 지원 가능 항목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치료, 개인 및 집단 상담·심리치료, 힐링 프로그램 교육 등 프로그램화된 것은 참여지원 가능(단순 여행이나 영화 관람은 지원 불가(단순 여행이나 영화 관람은 지원 불가, 단 여행·영화관람도 소진방지를 위한 프로그램화한 경우 가능))

바. 상담원 대체인력 채용

- 시설장은 상담원의 퇴사, 육아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신규 또는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등 적정 인력을 운영하여야 함
- 대체인력의 자격은 동료상담원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가. 지원 대상 : 북한이탈여성

- 가족단위 접근을 통한 북한이탈청소년, 남성에 대한 지원 대상의 해당여부 판단은 사업수행자가 심층 상담과 사례회의 등을 거쳐 판단 후 지원 가능
- ※ 내방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이 가능한 사업 참여 대상에 대해서는 개인별 파일을 작성·관리

나. 프로그램 운영

- 내방, 방문(찾아가는 상담), 전화를 통해 개별·집단 상담 지원
 - 북한이탈 및 정착과정에서 폭력피해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적 어려움 및 욕구 파악
 - 심리검사와 가족 및 자기 탐색을 통한 자신의 현재 상황 파악 후 건강한 자기 관리(생각, 행동, 감정 관리)를 위한 실천 방법 모색
 - 가족갈등 및 심리적 갈등의 대안적 방법 모색
 - 관련된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 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의료원 등의 사회 관계망과의 연계사례회의를 통한 지원
 -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하고, 단기 또는 중장기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에 보호 조치
 - 법률상담, 무료법률구조(대한변협)를 통한 변호사 지원 연계
 - ※ '23년부터 실적산출시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참여자 연령, 성별 현황 관리(서식2)
- 자조모임 지원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 상담종결 후 취미 동아리를 결한 모임을 통하여 자녀양육 및 사회정착을 위한 치유 및 적응 프로그램 실시
 - 상담 참여 후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하여 안정적 지원 지속
 -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 상담 및 홍보 등에 활용하고 해당자를 프로그램 운영시 활용하는 방안 모색
- 동료상담원 등 역량강화
 -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및 특수성 이해를 위한 관련기관 워크숍 등 참여
 - 동료상담원, 사례지원자, 상담심리사의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을 통한 역량강화

○ 활동 홍보

- 북한이탈여성들이 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월별 및 계기별(가정폭력 추방주간 등)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역사회 캠페인,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지역 SNS, 북한이탈여성 커뮤니티 등 대상별 차별화된 홍보 추진
-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의 필요성과 역할을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 112, 119, 행정기관, 수사기관, 병원 등 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게도 지속적으로 홍보

7 제 경비 집행지침

- 예산의 집행은 사업운영지침 및 지자체와의 협약 등에 의해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라 각 항목별 예산액(교부액) 범위 내 집행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에 대한 별도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과 혼용하여서는 안 됨
 -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 사업소관과 구분·관리
 - 당해 법인 또는 단체 명의의 사업 통장을 별도 개설
- 사업비는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 내역을 회계장부에 반드시 기록·관리하여야 함(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비 통장의 지출액 및 회계장부의 지출액과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는 일치하여야 함
- 지출한 자금에 대해 매 사항별로 증빙서류를 징구·보존하여야 함
 - 입금의뢰서, 집행처리영수증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지출결의서의 뒷면에 첨부
 - 영수증은 사업비 지출내역에 기재된 항목의 순서별로 편철하고 사업비 집행 영수증은 반드시 원본으로 보관
 - 각종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 첨부
- 지출은 상담소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카드 미가맹점이나 원거리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좌입금 가능하나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 간이영수증 증빙 가능하나 1만원 이상 금액 불가
- 각종 장부와 경비의 지출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

8 행정사항

가. 보조금 교부

- 교부방법 : 2회 분할 교부 원칙(1차 70%, 2차 30%)
- 교부시기 : 1차(1월중), 2차(8월중 : 사업 중간 결과보고 이후)

나. 사업계획서 및 실적 보고

- 사업계획서 요약서 제출(서식1) : 당해연도 1월말까지
- 중간 결과보고서(6월말 기준, 서식2) : 당해연도 7월말까지
- 최종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12월말 기준, 서식2) : 차년도 1월말까지
 - (광역자치단체) 차년도 1.20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

다.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점검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세부내역을 검토·조정한 후, 성평등가족부에 제출
 - ▶ 사업계획에는 예산의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기재·작성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

아동·청소년성보호사업 운영지침

- I.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 II.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 III.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I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I-1 취업제한제도 현황

1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7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사실상 노무제공 포함)이 제한

2 주요 연혁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00.2.3.) 및 시행('00.7.1.)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06.6.30. 시행)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도입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학교, 유치원,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체육시설)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08.2.4. 시행)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청소년지원 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및 전부개정('10.1.1. 시행)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0.4.15. 시행)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성인대상 성범죄 추가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개인과외교습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2.8.2. 시행)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가정방문 학습 교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3.6.19. 시행)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경비업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위헌결정(’16)
 - ※ 취업제한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6.11.30. 시행)
 - 취업제한 점검·확인 주기(연 1회 이상) 법제화, 본인 성범죄 경력조회 근거 마련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위탁교육기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8.7.17. 시행)
 - 취업제한제도 변경
 - ※ (기존)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제한 → (변경) 법원이 10년 이내 취업제한 명령·선고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서비스기관·단체)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기관 추가(대학)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8.9.14. 시행)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지방자치법」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5.27. 시행)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1.1.1. 시행)
 -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사무 지자체 및 교육청 이양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자료제출
 - 성범죄 경력자 해임요구·기관폐쇄
 - 과태료 부과 징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3.10.12. 시행)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
 -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5.10.23. 시행)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
 - 「외국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대안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취업제한 기간 중 그 기관을 운영하여 기관 폐쇄요구에 불응하거나 성범죄자 취업여부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에 불응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 뿐만 아니라 보수교육 과정에도 포함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체육시설,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변경
 -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게임제공업(PC방 등) 및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법률로 상향
 - 평생교육기관 대상 성범죄자 취업여부 점검주체를 실제 인·허가·등록 등을 담당하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변경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5.10. 1. 시행)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변경

3

취업제한 대상자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로서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최대 10년) ('18.7.17.부터 시행)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20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성인대상 성범죄 : 2010.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종전('18.7.16. 이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량에 따라 차등 적용***

*** 3년 초과 징역·금고형 5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3년, 벌금형 1년

4

취업제한대상 성범죄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법 제2조 제2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의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

나. 성인대상 성범죄(법 제2조 제3의2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형법」 제242조, 제243조, 제244조 및 제245조의 죄
 - 「형법」 제288조, 제289조,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 제294조의 죄
 -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의 죄
 - 「형법」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제56조제1항	적용기관	관련법률	소관	비고
1. 유치원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교육청	
2. 학교	초·중·고등학교, 기타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과기부 (한국과학영재학교에 한함), 교육청	
	위탁교육기관(학습부진관련)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교육청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교육부	'18.7.17.부터 시행
2-2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위센터, 위스쿨 등)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교육청	'18.7.17.부터 시행
2-3 국제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5.27.부터 시행
2-4 외국교육기관	유치원 또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상응하는 외국 교육기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교육부 및 교육청	'25.10.23.부터 시행
3.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교습소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학원·교습소 및 아동· 청소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교육청	
4.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보호법」 제35조	성평등가족부	
5.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시설〉 - 공연시설 :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 전시시설 :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 도서관 : 도서관, 작은도서관 - 문학관 : 공립문학관, 사립문학관 - 지역문화 활동시설 : 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 문화보급 전수시설 :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화관, 종합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별표1)	문체부, 국방부, 국토부, 복지부, 성평등부, 통일부, 해수부, 행안부 등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이용시설
	과학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과기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이용시설

제56조제1항	적용기관	관련법률	소관	비고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교육부 교육청	청소년이용시설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이용시설
	수목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이용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이용시설
	〈기타〉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둔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2호의(청소년 이용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8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이용시설
6-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확대)청소년쉼터 →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제1항, 제31조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23.10.12.부터 시행
6-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단체	'20.5.27.부터 시행
7.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제10조	지방자치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6조의2	지방자치단체	'23.10.12.부터 시행
8.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 제52조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	「아동복지법」 제37조	지방자치단체	'18.7.17.부터 시행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지방자치단체	'23.10.12.부터 시행
9.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확대)청소년 지원시설→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7조	지방자치단체	'23.10.12.부터 확대
9의2.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7조의2	지방자치단체	'23.10.12.부터 시행
10.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원업무 종사자에 한함	「주택법」 제2조제3호	지방자치단체	

제56조제1항	적용기관	관련법률	소관	비고
11.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체육시설 중 문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포함
12. 의료기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	「의료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	'23.10.12.부터 시행
13. 게임(시설) 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오락실 등)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사업장(멀티방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가목, 제7호, 제8호	지방자치단체	
14. 경비업 법인	경비업 법인의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경찰청	
15. 청소년단체	청소년단체 중 성평등가족부 장관 및 지자체의 장에게 허가받거나 등록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25.10.23. 부터 시행
16.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제2조 제6호 및 제26조	지방자치단체	
17.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사업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지방자치단체	
18.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업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8호	성평등가족부	*점검/관 변경 : 지자체 → 성평등가족부 ('23.10)
19.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특수교육 서비스 제공 기관·시설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특수교육서비스제공 기관·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11조, 제28조	교육청	'18.7.17.부터 시행
2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5.10.23.삭제 (시행)
21. 교육기관 중 아동 청소년 대상기관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회관, 과학교육원 등 교육감이 대통령령 또는 조례 등 설치근거에 따라 설치한 교육기관	「지방교육자치법」 제32조	교육청	'18.9.14.부터 시행
22.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20.5.27.부터 시행 *점검/관 변경 : 식약처 → 지자체 ('23.10)
23.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	'23.10.12.부터 시행
24.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5조의2	지방자치단체	'23.10.12.부터 시행
2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	'23.10.12.부터 시행
26.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	교육청	'25.10.23.부터 시행

※ 교육부 지정 학원 관련 문의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044-203-6386

※ 문체부 지정 체육시설 관련 문의 :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 국토부(택배서비스, 소화물배송) 문의 :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 044-201-4158, 4153

6 취업제한 점검·확인 사항

-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노무제공 포함) 여부 확인
-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여부 확인
- 성범죄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

7 권한의 위임 현황

- 경찰청장의 경비업 법인에 대한 취업제한 점검·확인 권한을 시·도경찰청장에 위임

8 법 위반 시 조치

- 취업제한 기간 중의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 중일 경우 해임 요구 및 기관 폐쇄(허가 취소 등) 조치
- 성범죄 경력조회 미 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해임·기관폐쇄 요구 불이행(1개월 이내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점검 시 필요한 자료 제출 불응 또는 거짓 자료 제출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9 취업제한 기간

- 법 시행('18.7.17.) 이후 형 확정자
 -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최대 10년)
 -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을 제한하지 않음
- 종전('18.7.16. 이전) 형 확정자
 - 종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차등적용(형량에 따라 5년·3년·1년 적용)

〈 취업제한 기간 〉

구 분	종전 형 확정된 자		법 시행 이후 형 확정된 자
	'06.6.30.~'09.12.31.	'10.1.1.~'18.7.16.	'18.7.17.~
3년 초과 징역·금고형	형 확정된 날부터 5년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5년	법원이 형 선고시 취업제한 명령 선고 (최대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형 확정된 날부터 3년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3년	
벌금형	형 확정된 날부터 1년	형 확정된 날부터 1년	

《
며
어
공
하
하
》

[illegible]

대상기관의 종류	형의 종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성범죄 발생 시점				성범죄 발생 시점			
		2006.6.30. ~2008.2.3. (법률 제7801호)	2008.2.4. ~2009.12.31. (법률 제8634호)	2010.1.1. ~2010.4.14. (법률 제9765호)	2010.4.15. ~2012.8.1. (법률 제10260호)	2012.8.2. ~2013.6.18. (법률 제11287호)	2013.6.19. ~2016.11.29. (법률 제14236호)	2016.11.30. ~2018.7.16. (법률 제15352호)	형 확정 시점
⑥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법원 학습 교사	3년 초과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진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진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⑦ 경범죄법(경비원),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 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활동 기획업·대중문화예술기획업· 청소년가정지원업·청소년시설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	3년 초과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진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진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⑧ 위탁교육기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3년 초과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진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진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⑨ 대학, 학생상담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 통합서비스수행기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서비스제공 기관·단체	3년 초과 징역·금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3년 이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벌금형	해당 없음				해당 없음			

I-2 취업(예정)자 등 성범죄 경력 조회

1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법 제56조제4항)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취업자(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법 제56조제5항)

2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자(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경력조회 의무자	조회대상자	비고
지자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본인 동의서 필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사실상 노무제공자 또는 노무제공 예정자	조회대상자 동의서 필요

※ 조회 대상자 본인이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 가능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 한 것으로 봄(법 제56조제4항)
- 취업예정자 등이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한 것으로 봄(법 제56조제5항)

3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 (조회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 (조회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을 통해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 ※ 경찰청과 직접 연계된 시스템(교육부-복지부 보육정보시스템) 사용
 - (첨부서류)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경찰서 요청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 (조회대상)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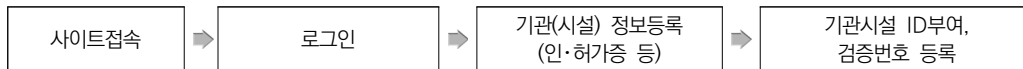
- (조회방법)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또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으로 조회 신청
- (첨부서류)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 ※ (인허가증 등 구비서류 제출 면제기관) 의료기관, 문화·체육시설,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 * 아동청소년기관의 장이 행정정보공동이용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함

온라인(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

-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서 출력 가능
- 취업(예정)자의 동의(취업예정자가 직접 공인인증처리를 얻어 시설(기관)장이 신청서 작성 및 회신서 확인)

〈 신청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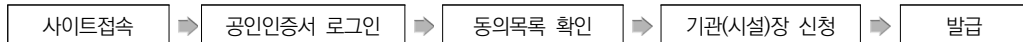
① 기관(시설)장의 시설정보 사전등록



② 취업(예정)자 동의



③ 기관(시설)장 신청, 발급



☞ 성범죄경력 신청·회보의 오·남용 방지 및 보안을 위해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아이핀을 통한 본인 확인 실시(24시간 신청 가능)

○ 취업(운영) 예정자 본인

- (조회방법) 본인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 (첨부서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신고증 등)

본인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시 첨부서류

- ①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②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또는 신고증 등) 1부
 - ※ 운영하려는 자가 본인 조회를 신청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교육감, 교육장)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임을 증명하는 내용의 공문 발송 등 별도의 확인 절차 필요

- 범죄 경력 조회 통합서식 사용('18.3.21. 시행)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동의서 및 회신서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4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

-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는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발급
-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 결과를 반영

5 법 위반 시 조치

-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 (또는 취업하려는)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또는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67조제3항)
 - ※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1차 위반 : 300만원, 2차 위반 :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 500만원)
 - ※ 과태료 관련 일반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I-3 취업(운영)중인 성범죄 경력자 여부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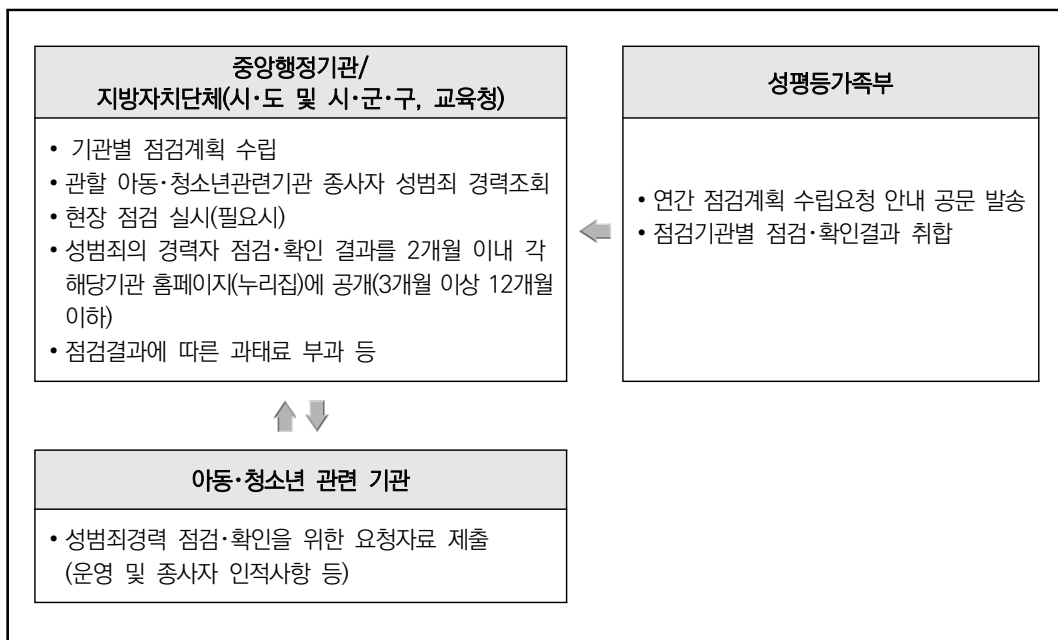
1 관련 법령

-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은 소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연 1회 이상 성범죄자의 취업(운영) 여부 점검·확인(법 제57조 제1항~제5항)

지방이양일괄법 시행('21.1.1.)에 따라 국가위임사무로 운영되던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해임요구 등,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가 자치사무로 이양

2 점검·확인 개요

- 점검 의무자 : 중앙행정기관(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문체부, 보건부, 국토부, 경찰청 등) 및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등)
- 점검 주기 : 연 1회 이상
- 점검 체계



3 점검·확인 사항

-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여부
 -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중인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및 운영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여부 확인
 -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취업중인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에 대하여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 추가 확인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병행
-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을 위하여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 등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위한 자료 제출 요구(법 제57조제5항)

4 권한의 위임 현황

-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한 경찰청장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 위임(법 제60조)

5 법 위반 시 조치

-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법 제58조)
 -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취업자의 해임 및 관련기관 등의 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
- 과태료 부과(법 제67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제2호)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기관폐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67조제2항제2호)
 - ※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 4)
 - 1차 위반 : 600만원, 2차 위반 : 800만원, 3차 위반 : 1,000만원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제57조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67조 제4항제2호)
 - ※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 4)
 - 1차 위반 : 300만원, 2차 위반 : 300만원, 3차 위반 : 300만원

I-4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1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6항, 시행령 제27조

2 주요 내용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공개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이 경우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공개

3 공개 방법 및 절차

- **(공개주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
- **(공개내용)**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결과^{*}(아동청소년보호법 시행령 27조 2항)
 -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총 기관 수, 점검·확인 기간, 점검·확인 기관, 점검·확인 인원 수,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한 내용,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명칭 주소 등
- **(공개방식)**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기관별 취합해서 일괄공개(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시·도지사, 시·군·구 지자체장),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함.
 - ※ 각 점검기관은 점검·확인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하되 점검 대상 기관별 조치(종사자 해임, 기관 폐쇄 등)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개시점을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여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I-5 종전 형 확정자에 대한 제도 적용 및 불복절차

1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2 종전 형 확정자 적용

- 법 시행 이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 적용 - 형량에 따라 5년·3년·1년으로 차등 적용

※ '06.6.30. ~ '10.9.30. 형 확정자 적용

- 3년 초과인 징역·금고형 확정일부터 5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확정일부터 3년
- 벌금형 확정일부터 1년

※ '10.1.1. ~ '18.7.16. 형 확정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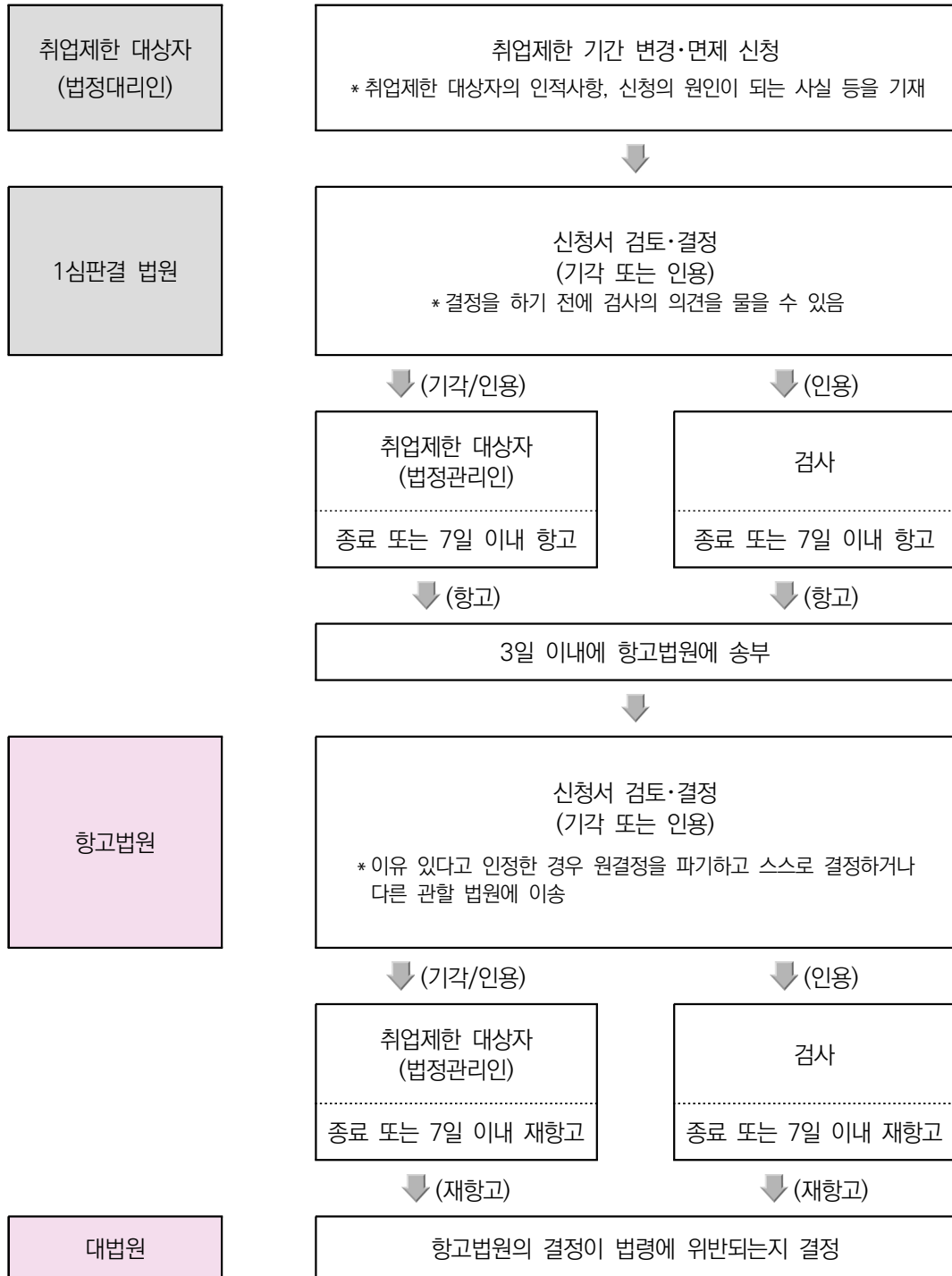
- 3년 초과인 징역·금고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일부터 5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일부터 3년
- 벌금형 확정일부터 1년

※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3 취업제한 불복절차

- 신청자 :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사유 : 취업제한 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신청내용 :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 요청
- 처리절차
 - 취업제한 대상자는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면제를 1심 사건법원에 신청
 - 법원은 인용·기각 결정하고, 검사에게 결정문 등본 송부
 - 검사 및 대상자는 법원의 인용결정에 7일 이내 항고·재항고 가능
 - 법원은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 결정문 등본을 성평등가족부에 송달

《 종전 형 확정자 취업제한 불복절차 》



※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음

《 종전 형 확정자 적용 방법 》

☞ 종전 형 확정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 적용 방법

- 성범죄를 범하고 법 시행('18.7.17.) 이전에 형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것임

① 법률 제7801호 또는 법률 제8634호 적용

- 형 확정일부터 취업제한기간이 제7801호는 5년간, 법률 제8634호는 10년간 적용되지만, 개정법('18.7.17. 시행)에 따라 취업제한기간 적용

☞ 개정법에 따른 법률 제7801호, 제8634호 적용

- 가. 3년 초과 징역·금고형 확정일부터 5년
- 나. 3년 이하 징역·금고형 확정일부터 3년
- 다. 벌금형 확정일부터 1년

② 법률 제9765호, 제10260호, 제11287호, 제11572호, 제14236호 적용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종료(유예·면제)일부터 취업제한 기간은 10년간 적용되지만, 개정법('18.7.17. 시행)에 따라 취업제한기간 적용

☞ 개정법에 따른 법률 제9765호, 제10260호, 제11287호, 제11572호, 제14236호 적용

- 가. 3년 초과 징역·금고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유예(면제)일부터 5년
- 나. 3년 이하 징역·금고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유예(면제)일부터 3년
- 다. 벌금형 확정일부터 1년

③ 현재 위헌결정 이후(2016.3.31. / 2016.4.28. / 2016.7.28. / 2016.10.27.)

- 현재 위헌결정 이후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개정법('18.7.17. 시행)에 따라 취업제한기간 적용

☞ 개정법에 따른 현재결정이후 법 시행일 전까지 대상자

- 가. 3년 초과 징역·금고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유예(면제)일부터 5년
- 나. 3년 이하 징역·금고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유예(면제)일부터 3년
- 다. 벌금형 확정일부터 1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법 제7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을 한 자[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
- 상기 사항에 대한 미수범

◆ 예비, 음모(법 제7조의2)

-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법 제8조)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법 제8조의2)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 강간 등 상해·치상(법 제9조)

-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강간 등 살인·치사(법 제10조)

-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법 제11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미수범도 처벌)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법 제11조의2)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미수범도 처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미수범도 처벌)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법 제12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미수범도 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법 제13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법 제14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미수범도 처벌)
-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미수범도 처벌)
-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 알선영업행위 등(법 제15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 영업으로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법 제15조의2)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미수범도 처벌)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④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 성인대상 성범죄

○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의2호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 ◆ 「형법」 제2편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 ◆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참고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Q&A

취업제한제도 일반

| 제도 의미 |

Q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인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체육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PC방)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성범죄자가 취업하거나 해당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성범죄 예방조치입니다.

Q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대상 성범죄 및 취업제한 기관별 시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06년 6월 30일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도입·시행되었으며, 성인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10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Q3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의미는 무엇인가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은 '06년 6월 30일 이후 발생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10년 4월 15일 이후 발생한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을 말합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여야 하며, 이는 “범죄경력조회”와는 다르게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해당여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 교육감은 취업중인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범죄경력 조회를 확인·점검하여야 합니다.

? 4

취업제한제도는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정판결 받은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06년 6월 30일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 또는 운영을 제한합니다. 이에 '06년 6월 30일 이전의 성범죄는 취업제한 대상이 되지 않기에 경력조회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없음'으로 회신됩니다.

? 5

취업하고자 하는 자(사실상 노무제공자 포함)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취업 후에 확인하여도 되는지요?



취업예정자의 경우 취업 근무일 이전에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한 후에 취업 하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며, 취업 후에 실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6

채용중인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주기는 얼마의 주기로 해야 하는지와 점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은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범죄 경력자의 운영 및 취업여부를 점검·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 7

취업제한중인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 또는 운영하고 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 중 이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발견 즉시 해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취업 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았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1차위반 600만원, 2차위반 800만원, 3차위반 1천만원)
- 또한, 각 점검기관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가 성범죄 경력으로 적발될 경우 기관폐쇄, 인·허가 취소 등을 요구하며, 기관 폐쇄 전이라도 운영자가 아동·청소년과 접촉이 즉시차단 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중단 등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Q8

계약직 근로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근무 중이며, 예산 등에 의거 연초에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를 매년 실시해야 하나요?

!!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를 하지만 채용 계약을 매년 새로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Q9

성범죄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고용형태는 해당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일일강사 포함), 위탁기관의 파견직원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Q10

성인대상 성범죄를 규정하는 법률은?

!!

성인대상 성범죄는 “성인이 피해자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말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합니다.

Q11

성범죄경력조회 회보서의 유효기간이 따로 있나요?

!!

법령에 규정된 성범죄 경력조회 회보서의 유효기간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는 당해 계약기간 및 근무기간 동안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주체 |

Q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은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시 성범죄 경력을 확인 후 업무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Q 2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은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취업예정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Q 3

의료기관이면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실제 1개의 기관(법인)이 2이상의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확인, 점검·확인, 해임요구 등 주체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인 의료기관이 교육청으로부터 기관의 일부부서 등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 (특수교육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자) 교육청은 해당기관 지정 전 그 기관의 운영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고, 지정된 기관의 장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운영 전 관련 종사자(의료인 외 기타 행정직 등 모든 종사자 포함)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 (특수교육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중) 2이상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해당하지만 실제 1개 기관(법인)으로 종사자 중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는 동일하므로 인허가 등록 등 주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인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력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확인결과 적발된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은 의료인 외 기타 행정직 등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점검·확인하므로 이들 중 적발된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해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력조회 대상범위(사람) |

Q4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도 성범죄경력 조회를 해야 하나요?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과 무관하게 내국인과 같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 경력만 확인됩니다.

Q5

공익근무요원은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자가 되나요?

!!

공익근무요원은 사실상 노무제공자에 해당되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여야 하며, 경력 조회 결과 취업제한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관할 병무청에 해당 공익근무요원의 재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Q6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비전임교원, 시간강사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나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8.7.17.부터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은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학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비전임 교원, 시간강사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Q7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중 이사와 감사에 대하여 법 제56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한지요?

!!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중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은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정기적으로 학교에 출입하기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57조에 따라 연1회 점검도 하여야 합니다.

Q8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노무’의 해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성범죄 경력조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노무제공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선 “사실상의 노무”를 ㉠ 아동·청소년 대상 직접 용역 제공과 ㉡ 간접 용역(단순 노무) 제공으로 구분한 후,

㉠ 제공하는 용역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강사, 교생실습 등)는 정기적 제공여부나 제공시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 없이 성범죄 경력조회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 간접 용역 제공의 경우 ① 보호대상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가능성, ② 취업제한 기관 관계자의 감독 여부, ③ 정기성 여부, ④ 용역제공 시간(취업제한 기관에 머무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여부를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9

자원봉사자들은 성범죄 경력조회의 대상인가요?

!!

자원봉사자의 경우 ①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실비 성격의 교통비나 식사비는 대가로 보지 않음) 순수한 자원봉사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노무”에 해당하지 않아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② 그러나, 자원봉사자가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자원봉사행위가 자격증 등의 취득에 필수적 요건 사항에 해당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노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②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위 Q8번의 “사실상노무” 해석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10

학교를 방문하여 자판기 음료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나요?

!!

위 Q8번의 ‘사실상노무’ 해석기준에 따라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1

학교장으로부터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학교매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학교시설의 일부를 학교장으로부터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학교매점을 운영하는 자는 용역업체 직원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기에 학교 운영자는 성범죄 경력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2

대학에 임시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도 성범죄 경력조치 대상인지요?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기에 성범죄 경력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3

학교에서 실시하는 1회성 특강의 강사도 성범죄 경력조치 대상이 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에게 성범죄 경력조치 의무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제56조제5항의 법문에서 노무제공의 횟수와 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정기적 제공여부나 제공시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성범죄 경력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성인만 대상으로 운영하는 강좌는 ① 아동·청소년의 접촉여부, ②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관 관계자의 감독 여부 등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치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14

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 회의 등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치를 실시해야 하나요?



기관에 감사의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실비보상 또는 사례비 차원의 비용을 지급할 뿐 통상적인 취업 및 노무 등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아 성범죄 경력조치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15

근로장학생의 경우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근로장학금을 받는 것인데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취업제한 대상기관인 대학에서 소속 학생에게 행정보조 등 근로장학생을 운영할 경우 이 근로장학금은 등록금과 생활비의 지원 성격으로 보아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장학생의 명칭을 사용하지만, 외부재단(한국장학재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속 대학이 아닌 취업제한대상기관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제한대상기관(초등학교, 유치원 등)에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합니다.

? 16

특수형태 근로자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에 해당 하나요?



특수고용 등 근로형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골프장은 체육시설에 해당되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므로 경기보조원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이용객에게 직접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면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해당하여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17

교사 또는 공무원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공무원 임용 시와 같은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범죄 경력조회를 중복해서 시행해야 하나요?



공무원 임용 시에 하는 신원조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 개별법상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따라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종류 및 기간 등과 적용 사항이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8

지자체, 교육청 등이 강사, 상담사 등을 채용하여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파견 보내는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한지요?

지자체에서 파견 강사 등에 대해 근로계약,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종사자가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파견되어 사실상 노무를 제공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한 동일인이 다수의 학교 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를 제공받는 각 학교 등에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8항에 따라 유치원,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아래 표 참조)의 취업자,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대해 직접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취업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아니므로 불가합니다.

구분 (제56조제1항)	적용기관	관련법률
1. 유치원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2. 학교	초·중·고등학교, 기타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위탁교육기관(학습부진관련)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2-2 학생상담지원시설, 등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위센터, 위스쿨 등)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19.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특수교육 서비스제공 기관·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11조, 제28조
21. 교육감이 설치한 아동청소년 대상교육기관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회관, 과학교육원 등(조례 등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지방교육자치법」 제32조

19

도서관이 시청의 직속기관이라면 법 제56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한지요? 공무원이 시청에서 도서관으로 전보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하나요?

해당시설이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시설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에 해당되어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하며, 해당기관의 장(도서관장)은 종사자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도서관으로 전보시 해당기관의 장(도서관장)은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합니다.

20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의 경우 경비업 법인으로부터 경비원을 파견받아 경비원을 용역형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하나요?

㉠ 법제처 법령해석(15-0290)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 외에 원사업자도 그 도급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비업체의 경비업무 종사자가 아파트에 배치되어 경비업무를 하게 될 경우, 사실상 노무제공에 해당하며 경비업체의 종사자로서 경비업체에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였더라도 별도로 아파트 관리소장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2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수탁받은 기관이 직접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한지요?

㉠ 수탁기관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면 위탁받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내에 취업 중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자(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관련기관임을 확인하는 자료(인·허가증 등)로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 합니다.

22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직속교육기관은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하는지?

㉠ 교육청 조례(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의 설치근거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이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면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치근거가 다를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가 불가합니다.

23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원, 보건소가 법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대상 기관인지?

㉠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 제31조 특례규정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병원, 의원 등으로 보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 해당합니다. 해당기관의 장(보건소장)은 의료인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합니다.

24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기 위하여 본인 동의서를 받았는데, 추후 동의서를 재사용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지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의 제출서류인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제공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개인 의사에 반하는 범죄경력조회와 이로 인한 소송 등 각종 법률적 문제를 방지하고자 성범죄 경력조회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동의서는 원본 제출(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 탑재된 전자문서도 인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시 채용하고자 할 때는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동의서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 아울러 2명 이상 대상자의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는 연명 동의서를 ‘뒤쪽’에 두고 있는바, ‘앞쪽’에 대표 1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뒤쪽’에 나머지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작성하면 됩니다.

25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 회신서를 타 기관에도 공유가 가능한지와 회신서의 유효기간 및 보관해야 하는 기간을 법에 규정하고 있는지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보관 기관 및 파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하고 있으므로 회신서가 유효한 해당 취업자 등이 노무를 제공하는 동안만 보관하고 퇴사 또는 계약이 해지되어 되어 근무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해당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 파기

-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3항에서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채용 전 성범죄경력조회 유무 입증이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에 정보공개통해 “회보서 발급 이력”을 제출받아 입증하시면 됩니다.

26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교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할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라는 증명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해당 사업장은 별도 인허가, 신고, 등록 대상이 아니기에 성평등가족부 고시 내용을 경찰관서에 제시 하여야 하며 가맹점의 경우는 본사의 상호 또는 가맹점 확인서 등이 표시된 사업자등록증을 경찰관서에 제시하면 됩니다.

-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지정현황 참조(국가법령정보센터 등 확인 가능)

Q 1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 기관 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시행령 별표 4)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Q 2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와 위임기관은?



-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과태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같은 법 제60조,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등이 부과·징수합니다.
- 과태료 부과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개별적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Q 3

하나의 기관이 둘 이상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해당될 경우 과태료는 각각 부과해야하는지?



하나의 기관이 둘 이상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해당할 경우 ① 종사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별로 서로 달라 분리되어 있을 경우, 위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② 종사자가 둘 이상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동시에 소속된 경우(동일한 위반행위가 두 개 이상의 기관에 각각 해당될 경우)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인허가 등록 등 주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에서 부과하면 됩니다.

Q 4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근무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치를 하고 채용하여야 하나,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 해고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취업한 후에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 해고 하였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전형('18.7.16.이전) 확정자에 대한 적용 관련

Q 1

가해자가 2013.7.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2016. 12.1.에 징역 3년6개월의 형 확정되고, 그 형의 집행이 2020.5.30. 종료된다고 가정한다면 취업제한 기간은?

답

취업제한 적용기간은 2020.5.30. ~ 2025.5.29.

※ 형 집행(2016.12.1. ~ 2020.5.30.)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적용됨

Q 2

가해자가 2017.3.5.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2018. 2.18. 징역 1년 선고·확정되고, 그 형의 집행이 2019.2.17. 종료된다고 가정한다면 취업제한 기간은?

답

취업제한 적용기간은 2019.2.17. ~ 2022.2.16.

※ 형 집행(2018.2.18.~2019.2.17.)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적용됨

Q 3

가해자가 2016.4.8.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2017.6.10.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확정되었다면 취업제한 기간은?

답

취업제한 적용기간은 2017.6.10. ~ 2020.6.9.

※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이 적용됨

Q 4

가해자가 2017.1.5.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2017. 12.7. 벌금 200만원 선고·확정되었다면 취업제한 기간은?

답

취업제한 적용기간은 2017.12.7. ~ 2018.12.6.

※ 형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취업제한이 적용됨

1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2 주요 연혁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신설('06.6.30.)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08~)
-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10.1.1.) 및 과태료 세부 기준 마련('12.8.2.)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200만원), 2차 위반(250만원), 3차 위반(300만원)
-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세부 기준 변경('13.6.19.)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 4 위반횟수별 과태료 최고금액
부과 : 300만원
- 신고의무 대상 기관에 '대학' 추가('18.7.17.)
- 신고의무 대상 기관에 '체육단체' 추가('20.5.29.)
- 신고의무 대상 기관에 '위탁교육기관, 위탁교육시설, 학생상담지원시설, 제주국제학교,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소'를 추가('21.6.9.)
- 신고의무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추가('23.10.12.)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으로 신고의무 대상시설의 기관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 취득 과정뿐만 아니라 보수 교육 과정도 포함('25.10.23.)

3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 대상시설의 운영자, 종사자(법 제34조제2항)

4 신고절차 및 방법

-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112, 경찰서 등)에 신고

- 상담 또는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는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청소년성문화센터 등과 연계

5 신고의무 위반시 조치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법 제67조제4항제1호)
 - 신고의무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신고의무 대상시설

신고의무 대상시설	근거법률
1.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2. 학교, 위탁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8조, 「고등교육법」 제2조
3.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초중등교육법」 제28조
4. 제주국제학교	「제주특별법」 제223조
5.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6.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수행기관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 같은법 제37조
7.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8.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제7조, 제26조의2
9. 학원 및 교습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10.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7조
1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12.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13.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
14.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
1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호
1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17.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
18. 체육단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
19.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6조제3호

- 교육목적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홍보 강화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 시설 기관장 및 종사자 관심제고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대처능력 제고로 성범죄 피해 최소화
- 교육대상 : 전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제34조, 제35조)
 -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기관장 및 종사자도 교육 참석 가능
- 교육일정 : 매년 1~12월(예정)
- 교육기관 : 민간위탁사업자(공모선정) / 성평등가족부 나라배움터
- 학습방법
 - 민간위탁사업자에게 직접 신청*
 - ※ 교육 인원 및 상황에 따라 찾아가는 교육 및 비대면 원격교육 가능
 - 성평등가족부 나라배움터에서 해당 교육과정 개별신청
- 교육내용
 -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보호제도 안내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제도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성범죄 신고 요령 및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등)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
 - 기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정책 등
 - ②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시 신고 및 대처법 안내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성 및 유형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시 신고 의무 및 대처 방안
 - 지역사회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 및 협조사항 등

Q 1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시설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추행사건 등이 일어나서 시설장에게 보고했는데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시설의 장 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서 해당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초 발견자가 종사자라 하더라도 과태료는 종사자와 보고를 받은 시설 장에게도 부과됩니다.

Q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되나요?

A

당해 시설의 책임자 및 종사자에게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신고 절차와 방법이 궁금해요?

A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폭력상담소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조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Q 4

2005년에 기관에서 아동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아동만 상담과 치료를 받게 했는데, 갑자기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나타나 민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A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안 시점이 2006년 6월 30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시행 이전이므로 신고의무는 없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의 조사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며, 신고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는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기관에 범죄 발생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신고의 방법은 112신고 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 민원담당 경찰관의 상담 등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는 수사기관에 수사의 단서로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실관계 등 수사가 개시될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12에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한 기록이 남는데 신고의무자는 실제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그 후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의 성범죄 사건으로 유무죄 확정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6

피해자 측에서 신고를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가 거부하더라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시설장이나 종사자는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신고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 7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우리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이들이라 신고하기가 난처합니다. 가해아동이 13살과 15살인데 신고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5세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13세 가해자는 형사미성년자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보호처분의 종류는 아래 관련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미성년자 : 만 14세 미만).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감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8

성범죄를 발견한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즉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성범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즉시’에 대하여 물리적인 시간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신고의무기관에서 ‘신고를 하기 위하여 수사의 단서가 되는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최단시간’을 의미합니다.

9

학교에서 오래전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피해아동·청소년은 이미 성인이 된 이후인 경우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서는 신고에 따른 별도의 물리적 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시점이 오래되고 현재 피해자가 성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및 종사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총괄

가. 목적

- 본 지침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이하 ‘성교육’이라 함)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수행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방법 등 제반 행정사항을 안내하기 위함

나. 적용범위

- 본 지침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청소년성문화센터에 한하여 적용
-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 및 보조금 사용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 시·도(시·군·구)의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동 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적용할 경우, 지역별 이용 대상자의 특성 및 서비스내용 등에 따른 합리적 이유, 불가피성 등이 있어야 함

다. 법적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및 제16조(운영실적의 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개정 '21.1.5.)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단체에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제1항제3호의 단체 :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 2. 제1항제4호의 단체 :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 ③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운영실적의 제출)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단체의 장은 매 <u>반기</u>(半期)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성교육 전문기관의 <u>반기별</u> 운영실적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u>반기별</u> 운영실적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u>반기</u>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 <u>반기</u>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 아동·청소년이 성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채 인터넷 음란물, 포래 등을 통해 그릇된 성 관련 내용을 습득함에 따라,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 지원 필요
-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가치관 정립 지원 및 성범죄 피해 예방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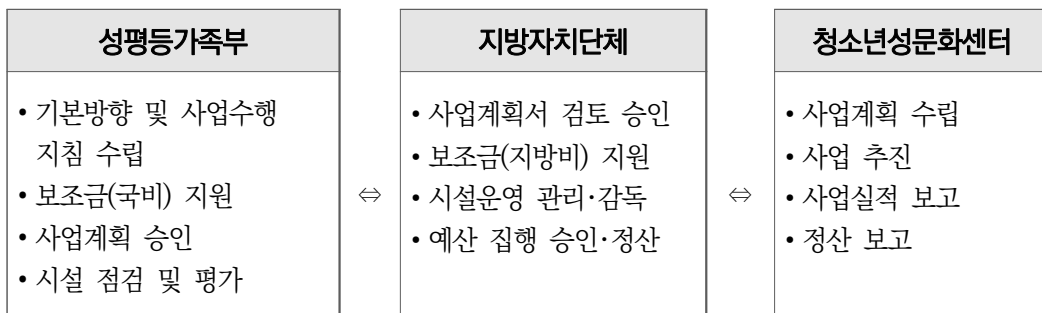
나. 기본방향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체험 중심의 성교육으로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제공
- 자기 주도적 체험학습을 통해 성문화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고 건강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
- 매뉴얼, 정형화된 성교육 공간 배치·제공 등 통합 성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일정한 수준의 전문적 교육서비스 제공

다.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 장애인, 부모 등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성교육 자원활동가, 교사 등 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 개선, 긍정적인 성문화 확산 등 특성화 사업 실시

라. 사업추진체계



마. 설치 연혁

- '07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21개소: 기존 5개소, 신규 16개소)
- 청소년성문화센터 표준 콘텐츠 개발('07.4)
-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 성교육전문가 지원('07.12)
- '08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29개소: 기존 21개소, 신규 8개소)
- '09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35개소: 기존 29개소, 신규 6개소)
- '10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38개소: 기존 35개소, 신규 3개소)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법적근거 마련('10.4.15)
- '11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42개소: 고정형 41, 이동형 1)
- '12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44개소: 고정형 41, 이동형 3)
- '13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0개소: 고정형 43, 이동형 7)
- '14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4개소: 고정형 45, 이동형 9)
- '15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8개소: 고정형 49, 이동형 9)
- '15년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매뉴얼 보완·개발
- '16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8개소: 고정형 48, 이동형 10)
- '17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8개소: 고정형 48, 이동형 10)
- '18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8개소: 고정형 47, 이동형 11)
- '19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8개소: 고정형 47, 이동형 11)
- '19년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매뉴얼 보완·개발
- '20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8개소: 고정형 47, 이동형 11)
- '21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7개소: 고정형 47, 이동형 10)
- '22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7개소: 고정형 47, 이동형 10)
- '22년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매뉴얼 보완·개발
- '23~'25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7개소: 고정형 47, 이동형 10)

청소년성문화센터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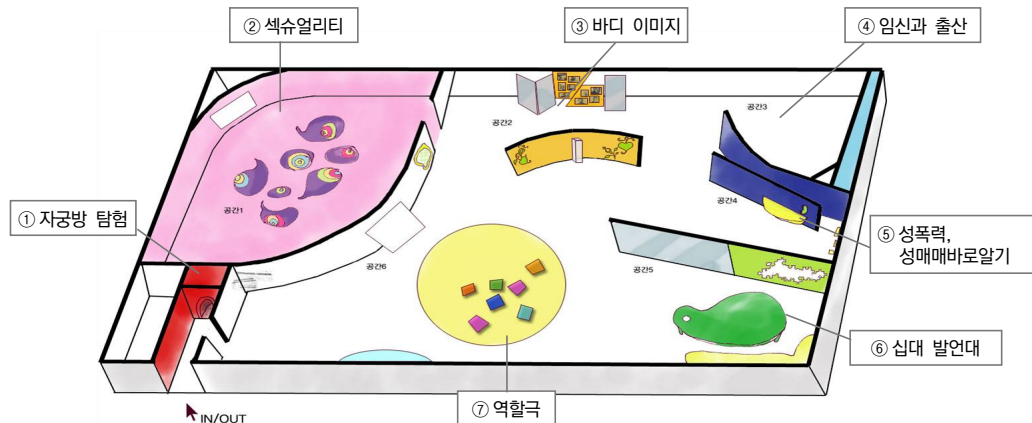
(단위 : 개소, '25.12월 기준)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고정	47	8	3	2	2	2	1	1	6	3	2	2	4	4	3	2	2
이동	10	-	2	-	-	-	-	-	3	1	1	1	-	-	1	1	-

※ 지자체 직영 : 전북(군산, 정읍), 제주(제주, 서귀포)

바. 설치기준

- 위탁자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 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 복지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 고려 가능)
 -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 고려 가능)
- 시설규모(고정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설치·운영 기준) 참조
 - 사무실, 교육장, 성문화 체험관을 합쳐 연면적 165㎡ 이상 공간 필수 확보
 - 교육장(25명 이상 수용 가능) 포함 몇 개의 구역(section)으로 구성, 각 구역을 순회하면서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매뉴얼 활용
 -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함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구, 경보설비 및 비상구를 설치하여 화재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시설 배치도 (예시)



- 시설규모 (이동형)
 - 45인승 버스
 -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구성 내용을 참조하여 이동형 공간에 맞게 재배치 하여 맞춤형 체험교육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함

-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매뉴얼 활용

※ 신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시 기 운영 중인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성교육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등의 자문을 받은 후 시설 설치

3 운영 방향

가. 주요 업무

- 체험관 및 이동형 교육장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 교사, 기관종사자, 학부모 및 양육자 등 성인 대상 성교육, 가족 참여 프로그램 실시
 - 학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유해환경 밀집 지역, 농어산촌 지역, 취약지역 등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
 - 성교육 자원활동가, 교사 등 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보호 교육, 장애·비장애 통합 성교육 실시
 -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 개선, 긍정적인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성보호 교육 관련 단체·기관의 허브역할 수행
 - 그 밖에 지역별 특성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보호 및 성교육을 위하여 성평등 가족부 및 시도(시·군·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상담, 인식 개선,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등 센터별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나. 성과목표

성과지표	내 용	'26년 목표
이용자 수	성교육서비스 이용자 수	1,761천명
이용자 만족도	성교육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측정	95.9점
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전·후 성의식 향상률	성교육 전·후 성의식 변화 측정	13.8%
지역사회 연계	홍보, 협력 및 공동사업 수행	센터별 특성에 맞게 수행
언론 홍보	보도자료 작성	센터별 반기 1회 이상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매칭
- 예산규모 : 국비 5,097백만원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5,097백만원
 - * 1개소 지원 예산 : ('25) 173,052천원 → ('26) 178,842천원
- 운영 형태별 예산 지원 내역
 - 인건비 내역은 급여 지급 최저 기준이며 지자체 승인에 따라 금액 변경 가능
 - 고정형 : 178,842천원(국비 89,421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고 정 형	
		금 액	내 역
인건비	급여	143,002	센터장(1) 36,481
			팀장(1) 27,597
			팀원(3) 78,924
	퇴직(적립)금	11,912	1년 이상 근무자
	4대 보험 (기관부담금)	16,488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운영비	경상비, 교육훈련비 등	7,440	사업비(성 교육비, 홍보비 등), 관리운영비(공과금 및 제세, 수용비, 시설유지비, 임대료 등), 교통비, 복리후생비, 인건비성 경비, 교육훈련비 등

- 이동형(통합형) : 178,842천원(국비 89,421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이 동 형	
		금 액	내 역
인건비	급여	129,333	팀장(1) 27,597
			팀원(2) 52,616
			운전기사(1) 31,840
			시간제강사(1) 17,280
	퇴직(적립)금	10,773	1년 이상 근무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	14,912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운영비	경상비, 교육훈련비 등	23,824	사업비(성 교육비, 홍보비 등), 관리운영비(공과금 및 제세, 수용비, 차량유지비 등), 교통비, 복리후생비, 인건비성 경비, 교육 훈련비 등

- 이동형(독립형) : 178,842천원(국비 89,421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이 동 형		
		금 액	내 역	
인건비	급여	133,842	센터장(1)	32,106
			탐원(2)	52,616
			운전기사(1)	31,840
			시간제강사(1)	17,280
	퇴직(적립)금	11,149	1년 이상 근무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	15,432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운영비	경상비 교육훈련비 등	18,419	사업비(성 교육비, 홍보비 등), 관리운영비(공과금 및 제세, 수용비, 차량유지비 등), 교통비, 복리후생비, 인건비성 경비, 교육훈련비 등	

가. 예산집행

○ 일반 사항

-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여야 함
-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사업예산 편성 지출
- 청소년성문화센터 회계는 수탁법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금은 보조금과 분리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 고정형 / 이동형 통합센터는 센터 사정에 따라 예산 및 사업 수입 통합 운영 가능

○ 인건비

- 인건비(급여, 수당 등), 운영비(사업비, 관리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개별시설 담당부서의 예산 사정에 따라 별도 규정을 마련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종사자 호봉을 책정할 수 있음(단, 운영비는 인건비로 변경 불가)

※ 종사자 인건비(센터장 포함)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속연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

- 총 인건비 집행 잔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후 인건비성 경비 또는 운영비로 충당 할 수 있음

* 총 인건비 집행 잔액 : 입·퇴사 및 결원 등의 사유로 연간 총 인건비 불용이 발생할 경우 잔액

*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근로기준법 등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변경 승인 시 변경 사유를 첨부하여야 함

* 인건비성 경비 : 시간외근무수당, 직책수당,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수당, 연차수당, 성과급 등

- 퇴직적립금과 관련하여 퇴직적립금은 퇴직연금으로 전환가능하며 지급 대상은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함
- 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적립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 운영비로 사용 가능(여타 종사자 인건비로는 사용 불가)

○ 수익금

- 근무시간 중 찾아가는 성교육 출강으로 수령한 강사료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강사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시설이용료, 교육비, 찾아가는 성교육 강사료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수익금 전액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성 경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
- 수익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하에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수입 운영 시 법률, 조례, 지침 등에 따라 자체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성평등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함
- 자체 수익금 관리 규정 마련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수입) 체험관 교육 및 찾아가는 성교육 등을 통해 창출되는 수입 단가
 - (지출) 찾아가는 성교육 등에 파견되는 강사·자원 활동가 등 활동비 지급 단가
 ※ 성교육 자원 활동가 등 양성 및 찾아가는 성교육 지원 제반에 필요한 센터 운영비를 고려하여, 활동가 등에게 지급되는 시간 당 단가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필요

○ 기 타

- 후원금 접수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접수 및 관리 투명성 제고에 노력
- 세부 프로그램 진행에 소요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직원 외 강사료는 운영비로 집행
- 사업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예산은 운영비로 집행
- 협의회 또는 각종 단체의 회비, 기타 분담금 지출은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조건 참조
- 보조금 집행내역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하여야 함
 - * 보조금 집행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정보공시를 등록해야 함
 -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제36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근거하여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조치 및 보조금 삭감, 명단 공표가 진행되며, 정보공시 등록 관련 e나라도움 콜센터에 문의

나. 국비 지원 중단 등 사유

- (국고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기존 국비지원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이 부실하거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 등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성평등가족부에 서면보고(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하여 보고)

- (국비지원 중단)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여야 함(보조금법 제31조의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성평등가족부에 서면보고(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하여 보고)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보조금법 제33조제3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참고> 보조금 지원 취소 및 반환 관련 근거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강제 징수)

다. 인사관리

○ 직원의 구분 및 정원

- 직원은 센터장, 팀장, 팀원·강사, 운전기사(이동형)으로 구분함

※ 인력 구성(팀원, 시간제 강사)은 지역사회정, 결원 등 고려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지자체 승인에 따라 변경 가능하나, 통합형은 고정형·이동형 센터별 센터장·팀장 중 1인은 두어야함

- 고정형 : 5인(센터장 1인, 팀장 1인, 팀원 3인)
- 이동형(통합형) : 5인(팀장 1인, 팀원 2인, 기사 1인, 시간제 강사 1인)
- 이동형(독립형) : 5인(센터장 1인, 팀원 2인, 기사 1인, 시간제 강사 1인)

〈업무분장 (예시)〉

구 분	담 당 업 무	비 고
센터장	• 청소년성문화센터 업무 총괄 • 대외홍보, 협력 및 자문 활동 •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찾아가는 성교육 강의 • 예산 및 인사관리	
팀장	• 프로그램 기획·운영 • 자원활동가 관리 및 운영 • 매뉴얼 및 자료 구축 관리 •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찾아가는 성교육 강의 • 기타 센터 행정업무	
팀원·강사	•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찾아가는 성교육 강의 • 교육일정 및 시설관리 • 교육과 관련된 행정 및 회계업무 • 홍보활동 및 각종회의 업무 • 실적 관리 • 홈페이지 관리 • 기타 센터 행정업무 • 이동형 시간제 강사 :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수행 및 교육관련 행정업무 등 지원	
업무지원 (수탁기관 등)	• 버스 운행 및 시설 관리·유지 • 회계업무 지원 ※ 별도의 팀으로 구성하지 않아도 무방	

※ 센터별 업무분장은 센터 특성에 맞게 센터장이 정하며, 자치단체장에게 보고

- 직영 및 위탁기관의 대표가 당연직 센터장인 경우(지자체장 등) 실질적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상근직 센터장을 반드시 임명하여,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 센터장은 2인 이상의 팀원·강사 중 선임자를 팀장으로 임명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음
-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의 선발과 관련하여 채용의 책임은 위탁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종사자 결원 시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1개월 이내에 신규 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함
 - 공개경쟁 원칙
 - * 시도, 시군구 또는 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고
 - * 다만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또는 위탁단체)의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용 가능
 - * 직원 채용 시 이력서 상에 가족사항, 취미, 종교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그 반대의 경우도 포함)하거나 위탁기관 변경 시, 기존 직원의 고용 승계 보장
 - 이동형 센터에서 채용하는 시간제 강사 업무는 이동형 센터 팀원의 업무를 고려하여 각 센터에서 정하여 채용
 - 채용 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함
 - 채용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직원 자격기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구 분	자 격 기 준
성교육 전문 기관의 장 (센터장)	1.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간호학을 전공한 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팀원 및 전문강사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 2.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센터장·팀원·강사 등 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위 자격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함
- 다만 지역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자격기준을 달리 정하여 채용 가능(이 경우 협의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함) 단,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직무 관련 교육 과정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관련 단체 인정(예시)

- 공무원으로서 아동·청소년 관련 보직 근무
- 청소년시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한 단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
- 교육 및 상담기관 등 단체
- 기타 성교육 관련 민간기업 또는 법인(기관 등록증 등 증빙자료 제출)
 - * 증빙자료(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제출)와 수탁 법인의 의견을 제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한 경우

○ 직원의 신분 보장

-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음
- 직원의 정년은 만 65세까지로 함
 - ※ 정년 기준(만 65세)이 지자체 또는 수탁법인의 인사 규정과 상이할 경우, 직영센터는 지자체 인사규정을, 위탁센터는 수탁법인 인사규정을 우선 적용

라. 복무관리

○ 근무형태 및 시간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원은 주 5일(40시간) 근무를 준수해야 함
 - *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개관 요일 및 개관 시간 변경 가능
- 정규근무 시간은 평일 09:00~18:00으로 함(탄력근무 적용 가능, 단 탄력근무시 업무대행자 지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관하여야 할 경우 휴관 개시일 1주일 전에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함(설·추석 명절 및 공휴일 제외)

○ 출장

- 성문화센터 명의 또는 직책으로 찾아가는 성교육 등 성문화센터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출장은 가능함

* 이 경우 반드시 관련자료(근무상황부, 상담일지, 출장대장, 교육대장 등)를 비치하고 이를 증빙하여야 함

※ 고유 업무에 대한 기준은 센터별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관련한 출강 등 수익금은 센터 수익금으로 처리

- 잦은 출장으로 인해 체험관 성교육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교육 업무 분담, 교육비 활용 기준 등에 관하여 형평성 있는 센터 자체 규정을 구비하여야 함
※ 종사자가 외출, 조퇴 등 이석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비치
- 성문화센터 고유 업무 외 토론회, 연구회 참석 등은 연가 처리하여야 함

○ 휴일 및 휴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준용, 기타 사항은 지자체 및 위탁법인의 운영 규정에 따름

마. 시설 등 안전관리

○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안전조치 강구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매년 자체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장에게 지시하고 안전사고 우려 사항 발생 시 즉시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보고 받아 시정명령을 할 것

※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안내 후 검토, 승인

※ 안전기준 (예시) : 지진,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피난·연소방지·경보 시설 및 물품 구비 등 소방안전시설 기준 준수, 상병자를 위한 응급조치용 비상약품, 구호기구 등을 갖출 것,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물 등 안내문 설치, 안전사고,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 대책 마련, 센터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실시, 화재보험 및 상해보험 등 가입, 센터별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자체 안전대응매뉴얼 작성 관리 및 모의훈련실시(반기별 1회 이상)

-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점검 결과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함
- 이용 청소년 등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자동차관리법」 등 차량 관련 법령에 따라 이동형 센터 버스 등 검사 실시할 것

바. 교육훈련

-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는 직무 관련 교육(종사자 역량 강화, 인권 침해 예방 및 민원 응대 요령 등)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센터 종사자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 참여하도록 조치 (종사자 교육여비 등 지원)
 - ※ 교육훈련비를 활용한 교육은 현재 담당업무에 관련한 교육과정으로 한함
 - ※ 교육훈련의 경우,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종사자의 교육훈련비를 납부할 수 있음

사. 각종 장부의 보존 및 관리

- 관리에 관한 장부
 - 연혁에 관한 기록부, 직원 관계철, 회의록 관계철, 소관 법인의 정관 및 관계 결의 서류, 문서철, 문서접수·발송대장
- 사업에 관한 장부
 - 이용자 현황 등 시설 이용자 관련 서류
 - 교육 및 상담일지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수집 또는 제공할 수 없고,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비품관리대장
 -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 각종 증빙서류
- 위의 각종 장부 및 문서 등은 수탁 주체의 책임 하에 청소년성문화센터 명의로 분리하여 5년간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 기관 변경 시 이관 조치

-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은 성평등가족부 제작 표준 매뉴얼에 의거하여 발달단계, 성별 특성,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운영
 - ※ 개별 교육 내용에 대해 교육 수요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며, 학교 등 교육 요청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교육 서비스 제공되도록 운영
- 고정형과 이동형 특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고정형 : 체험관을 활용한 교육 우선 실시
 - 이동형 : 저소득층 및 접근성이 어려운 학교 및 단체 등 우선 실시
- 대규모 1회성 교육 지양, 소그룹으로 대상 특성을 반영한 참여형 프로그램 지향
-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도 활용 가능
 -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서 제작한 동영상 및 교재 활용
- 성교육 프로그램에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신종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연계 활용

가. 사업계획서 제출

- 각 시·도는 확정내시 된 예산에 따라 해당 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사업계획서*를 당해 연도 1월 15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 「서식9」, 「서식10」 양식 준수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업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각 시·도에 수정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음

나. 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점검

- 사업 추진실적 보고
 -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장은 매 반기(半期)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별 운영실적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
 - 반기별 운영실적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

- 각 시·도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반기별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각 시·도는 전년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를 익년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 「서식11」, 「서식12」 양식 준수

○ 사업 추진실적 점검

- 분기별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업 추진실적 및 자료 등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요구하여 점검할 수 있음

다. 사업평가 및 현장점검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각 시·도 및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한 사업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평가 영역 (예시):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 목표량 대비 달성률,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자 만족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전·후 성의식 향상률, 현지 평가, 청소년성문화센터 직원에 대한 역량 강화 정도

※ 시설평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평가(3년 주기, 2028년 예정)

※ 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전·후 성의식 향상률: 성교육 수혜자의 성의식 변화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설문조사

○ 연도 내 최소 1회 이상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내실화 도모

- 목적: 지자체의 사업수행기관 관리 및 관련 실적 보고 등 점검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 마련
- 방법: 현장점검표 「서식13」, 「서식14」 및 운영지침에 의한 현지 방문 확인
- ※ 세부실시계획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별도 확정 통보 예정

- 주요 점검 내용

- (인건비, 운영비 현황)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회계 관련 서류 비치·관리 실태 등
- (시설이용료, 입장료 등 관리현황)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태
- (기금사업 수행실태) 복권기금 지원사업 수행의 적정성 여부
- (시설의 운영상황) 시설 기능보강 여부, 안전실태 등
- (기타 공통사항) 만족도, 시설 종사자, 이용자 등 현장의 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

○ 현장점검 역할분담 및 실시방법

- (지방자치단체) 연 1회 이상 소속 센터 점검 후 점검결과보고서 제출(8.31. 까지)
- (성평등가족부) 연 1회 이상 점검(점검 센터 및 시기 추후 통보)
- (청소년성문화센터) 주요점검 내용 관련 서류 준비 등 점검 협조

7 직영 및 위탁운영

가. 직영

- 해당 시·도(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 포함) 및 시·군·구 조례 등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설치·운영

나. 법인 설립 운영

-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
- 법인 설립 시 지자체 또는 법인 단체는 법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년성문화센터 인력을 법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음

다. 위탁운영

(1) 기관(단체)의 선정

- 선정절차
 - 위탁운영 시 공개 모집으로 수탁자 선정

선정절차

① 공고(시·도 또는 시·군·구) ⇒ ② 신청서 접수(법인·단체 등) ⇒ ③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시·도 또는 시·군·구) ⇒ ④ 수탁기관 결정 ⇒ ⑤ 위탁계약 체결(시·도 또는 시·군·구) ⇒ ⑥ 위탁계약 체결 결과 보고(시·군·구 → 시·도 → 성평등가족부)

-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수행단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

	수탁자격	위탁근거 법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청소년성문화센터)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사업실적,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선정방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되, 선정심의 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자 배제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
- 심사평가표, 회의록 등 선정 과정에서의 기록 관리·보존 철저
- 평가 기준 및 선정 결과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위탁계약의 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계약 기간, 위탁대상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그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탁계약 기간

-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함. 단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센터 종사자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외의 수탁단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그 외 상임직 또한 겸직할 수 없음

(2) 기관(단체)의 선정 취소

○ 선정 취소 사유

-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위탁 취소 세부 기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위탁 취소 세부 기준

1.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단체 등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 위탁을 받은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력 등 기준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5. 허위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유용하여 사업비가 환수된 경우
6.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보고가 허위인 경우
7. 청소년성문화센터 고유업무 외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및 위탁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지정·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9. 현장점검 결과, 시정·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지도·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센터 현지조사 및 해당 센터 관계자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도록 청문 과정을 거치는 등 투명하게 절차를 이행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지정 취소 처분 후 1주일 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위탁 취소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
- 지정취소를 통보받은 센터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익월부터 센터운영을 중단해야 함

8 기타 행정사항

-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행정조치를 통보받은 성문화센터의 경우 예산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
- 소관 지자체에서는 강사의 선정 및 종사자의 인근 지역으로의 출강 빈도 등 집행·운영의 적정성을 관리·감독해야 함
- 국고보조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지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함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 위탁 취소 및 위탁기간 종료로 인한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 시, 선정 절차에 따라 선정 후 1주일 내에 성평등가족부 보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 I.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공통지침
- II.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 및 이용
- III.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개별지침
- IV.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 V.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기능보강
- VI.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 VII.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 VIII.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기타 지원



1 개 요

가. 근거 법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내지 제10조
-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내지 제24조

나. 시설 현황

(2026. 1월 기준 /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90	21	9	6	3	5	3	2	12	2	2	2	4	6	2	8	3
일반 지원시설	23	4	3	2	1	1	1	1	2	1	1	1	1	1	1	1	1
청소년 지원시설	12	5	1	1	-	1	-	-	-	-	-	-	-	1	-	3	-
외국인 지원시설	1	-	-	-	-	-	-	-	1	-	-	-	-	-	-	-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1	3	2	1	-	1	-	-	1	-	-	1	1	-	-	1	-
자활지원 센터	13	2	1	1	1	1	1	-	3	-	-	-	1	1	-	-	1
대안교육 위탁기관 ¹⁾	2	1	-	-	-	-	-	-	-	-	-	-	-	-	-	1	-
상담소	28	6	2	1	1	1	1	1	5	1	1	-	1	3	1	2	1

1)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지원시설의 부속시설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근거

다. 시설 종류 : 법 제9조, 제15조, 제17조

구분	시설 종류	입소·이용 대상 (기본입소기간)	주 요 기 능	연장사유 ²⁾ 및 기간
생활 시설	일반 지원시설	일반성인 성매매피해자등 (1년)	• 숙식제공, 전문상담 • 의료·법률지원 • 사회보장 급부수령 지원 •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상담원 의견 반영 (1년 6개월)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등 (19세가 될 때까지)	• 일반지원시설과 동일 • 진학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기관 취학 연계 등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 상담원 의견 반영(2년)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등 (3개월)	• 피해자 긴급보호 • 통역서비스 제공 • 전문상담, 의료·법률 지원 • 대사관 등 관계기관 연계 • 숙식제공, 귀국지원 등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 • 성매매피해자로 수사 중인 경우(사건을 불기소 처분, 공소제기 할 때까지) (연장)
	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	탈성매매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자활조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자(2년)	• 일정기간 주거 지원 등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상담원 의견 반영(2년)
이용 시설	상담소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 긴급구조, 현장방문 상담 • 의료 및 법률문제 지원 • 지원시설 등 관련기관 연계 • 집결지 현장지원사업(8개소) 등	-
	자활 지원센터	탈성매매한 자로 자활 지원이 필요한 자	• 탈성매매한 자의 자활역량 강화 • 전업준비를 위한 훈련 • 공동작업장 등 자활참여자 지원사업 • 취업 및 창업 지원 • 외부자원 활용 연계망 구축 • 취업·창업자 사후관리 등	• 자활참여자지원사업의 경우 →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 기본이용기간 포함 최대 4년까지 이용 가능
	대안교육 위탁기관 ³⁾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등	• 의무교육 및 자활교육 • 사회적응강화 훈련 지원 등	-

2) 장애인 입소자 입소기간 연장 신설(본 지침의 8편 III.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개별지침 참조)

3)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지원시설의 부속시설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근거

가. 설치·운영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개인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10조제2항)

나. 설치 기준(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구 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설치 기준																			
입지조건	시설의 적정한 분포,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교통편의 등 충분히 고려																			
구조 및 설비	① 일반·청소년·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기본: 거실,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식당 및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함 - 예외 • 목욕실, 세탁장, 화장실 겸용 가능 • 입소자 정원이 10인 미만인 지원시설은 사무실과 상담실 겸용 가능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형편에 따라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② 자활지원센터 - 사무실, 상담실, 공동작업장, 교육실(공동작업장과 교육실은 겸용 가능) ③ 상담소 - 기본: 사무실, 면접상담실, 전화상담실, 회의실, 보호실 • 보호실은 상담자 일시 보호시설로 9.9㎡ 이상이어야 함 - 예외: 보호실은 상담소 형편에 따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설치규모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th>최소면적</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지원 시설</td><td>입소정원 10명 이상</td><td>9.9㎡×입소정원</td></tr> <tr> <td>입소정원 8명 이상 10명 미만</td><td>82.62㎡</td></tr> <tr> <td>입소정원 5명 이상 8명 미만</td><td>69.30㎡</td></tr> <tr> <td>입소정원 5명 미만</td><td>34.65㎡</td></tr> <tr> <td colspan="2">자활지원센터</td><td>99.15㎡</td></tr> <tr> <td colspan="2">상담소</td><td>49.59㎡</td></tr> </tbody> </table>		구 분		최소면적	지원 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	9.9㎡×입소정원	입소정원 8명 이상 10명 미만	82.62㎡	입소정원 5명 이상 8명 미만	69.30㎡	입소정원 5명 미만	34.65㎡	자활지원센터		99.15㎡	상담소		49.59㎡
구 분		최소면적																		
지원 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	9.9㎡×입소정원																		
	입소정원 8명 이상 10명 미만	82.62㎡																		
	입소정원 5명 이상 8명 미만	69.30㎡																		
	입소정원 5명 미만	34.65㎡																		
자활지원센터		99.15㎡																		
상담소		49.59㎡																		

※ 이용시설(상담소, 자활지원센터 등)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등으로, 생활시설(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 생활시설 등)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

다. 설치 절차(시행규칙 제5조, 제22조)

구 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설치 절차
설치 신고서 제출	○ 신고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 법인정관, 재산목록,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등의 평면도,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및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이 필요한 경우)을 확인(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함)
설치심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설치기준, 종사자 자격요건 등
설치신고 증명서 교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인 ※ 성매매피해자 청소년지원시설은 “청소년 지원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발급·교부
변경신고	○ 상담소등 신고시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변경사항 : 상담소등의 장, 명칭, 소재지, 입소정원 변경 - 구비서류 : 변경통지서, 입소자조치계획서, 재산목록, 설치신고증명서 등
폐지·휴지 등의 신고	○ 상담소등 폐지·휴지 및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시행규칙 별지 제13호) - 구비서류 •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13호) • 상담소등 입소자·이용자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 1부 • 상담소등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 1부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 1부 • 상담소등의 설치신고증명서(폐지하는 경우만) • 상담소등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 및 자격증사본(휴지 전과 종사자를 달리하여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 상담소등의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폐지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
설치·변경 폐·휴지 등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직접)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 - 설치신고증명서교부일, 변경신고일,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內

- ※ 시설 운영주체 변경 : 운영주체가 변경될 경우, 폐지신고 후 새로이 설치신고를 해야 함
- 단, 시설 운영주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 시설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지속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존 시설에 준하는 예산지원 가능
- ※ 전 회계연도 개시일 기준 미설치(미신고)된 시설은 운영비가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기편성 되었더라도 신고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
- ※ 명칭사용 특례(법 제35조) : 상담소등의 장은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안전·진학·취업·자활·피해회복을 위한 필요 서식에 낙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상담소 등의 기관 명칭을 별도 명칭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

라. 상담소 등의 폐쇄 등(법 제31조)

- 상담소 등의 업무정지 또는 폐지 명령 및 폐쇄권자 : 성평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
- 업무정지·폐쇄 등의 사유
 - 지원시설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10조제4항)
 - 자활지원센터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15조제5항)
 - 상담소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17조제5항)
 - 상담소등의 보고제출의무 미 준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27조제1항)
 - 상담소등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한 경우(법 제29조)
 - 상담소등의 장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이용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관련법 참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설치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정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는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성매매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상담소에 임시보호를 한 경우
 -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청문실시 : 업무정지 또는 폐지 및 폐쇄를 할 경우 별도의 청문절차법을 준수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행정처분의 기준 :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5 참조
 - 처분의 통지 및 사후 조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업무정지 등을 결정한 때는 대상자에게 처분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행정처분의 기준(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별표 5])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시설 폐쇄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성매매피해자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지원시설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시설의 입소자를 수용할 다른 적당한 지원시설이 없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1차	2차	3차
1. 상담소등이 법 제10조제3항, 법 제15조제4항 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담소등 폐쇄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상담소등을 영리 목적으로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담소등 폐쇄
4. 상담소등의 장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범죄를 범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상담소등 폐쇄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설치 목적이 달성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5호	상담소등 폐쇄		
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담소등 폐쇄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는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가.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성매매피해자들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상담소에 임시보호를 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담소등 폐쇄
나.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담소등 폐쇄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15조 [별표 4])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제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1차	2차	3차
1. 상담소등이 법 제10조제3항, 법 제15조제4항 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담소등 폐쇄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상담소등을 영리 목적으로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담소등 폐쇄
4. 상담소등의 장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범죄를 범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상담소등 폐쇄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설치 목적이 달성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5호	상담소등 폐쇄		
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담소등 폐쇄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는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가.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성매매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상담소에 임시보호를 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담소등 폐쇄
나.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담소등 폐쇄

가. 상담소 등 종사자의 수

구 분	상담소	자활 지원센터	지원시설			
			8명 미만	8명 이상 15명 미만	15명 이상 20명 미만	20명 이상
상담소 등의 장 ⁴⁾	1	1	1	1	1	1
사무국장	-	-	-	-	1	1
상담원	3	2	1	3	4	5
직업훈련교사	-	2	-	-	-	-
사무지원	1	1	-	1	1	1
취사원/세탁원	-	-	-	1	1	1
관리인	-	-	-	-	-	1
총 계	5	6	2	6	8	10

1. 지원시설에서 직접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직업훈련교사는 상담원으로 볼 수 있다.

2. 자활지원센터에서 외부 강사로 하여금 자립자활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직업 훈련교사를 두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상당하는 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소등(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제외한다)의 장은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4.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의 퇴직 등으로 일시적인 결원상태가 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별기준 중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둔 경우에는 1년간 이를 각각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로 볼 수 있다.

나. 종사자 자격기준

○ 일반 기준

- 상담소등의 장, 사무국장, 상담원, 직업훈련교사는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근거⁵⁾하여 청소년지원시설(대안교육 위탁기관 포함) 및 상담소 모든 종사자의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근거하여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일반, 청소년,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모든 종사자의 채용 전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 실시

4) 상담소 등의 장 :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의 장

5) 청소년지원시설 및 상담소 이외의 경우 시설 자체 규정에 따라 필요 시, 경찰서 협조를 받아 실시

○ 개별 기준(시행규칙 제7조 「별표 2」)

직종별	상담소 등 종사자 자격기준
상담소 등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3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무국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상담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외국인여성 지원시설만 해당한다)
직업 훈련교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사무지원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비교: 위 표에서 “경력”은 해당 자격 또는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 해당 임직원 채용 전의 경력 또는 공무원 임용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 ▶ 개별 기준상의 경력인정 범위(상근경력 인정 원칙)
 - 비상근 근무자 및 자원활동가 : 사회복지시설관리내에 근무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월
 - 경력산정 시 유의사항 : 급여 지급과 관련된 경력 산정과는 무관, 4주를 1개월로 계산

○ 자격기준 특례(수습종사자)

- 사무국장,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의 퇴직 등으로 일시적인 결원 상태가 발생한 경우 별표 2의 개별기준 중 사무국장,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둔 때에는 2년간 이를 각각 사무국장,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로 볼 수 있음

○ 종사자 신규채용 및 복무

- 종사자 신규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경쟁채용 원칙임
- 상담소등 종사자 등의 신분증 발급(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은 상담소등의 장, 사무국장 및 상담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음(별지 제11호 서식)
 - ▶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았던 신분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7조 [별표 3] '상담소등의 종사자 수'에 포함되는 종사자 주요 복무

- 상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 ▶ 근무상황부 또는 출근부(근무시간 기재)는 반드시 비치하고 외출, 조퇴 등 이석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반드시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비치
 - ▶ 근무시간 중 외부 의료·법률지원, 회의, 교육, 워크숍 등으로 이석을 해야 할 경우 최소 인원(1명)의 사무실 대기 조치 또는 외부전화 착신을 해 두어야 함
-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함
 - ▶ 다만,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 예방교육, 성매매피해자를 위하여 상담을 나가는 등 고유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위의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근무상황부, 출장명령서, 출장복명서, 상담일지 등) 비치
- 근무시간 중 대학출강 등 타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는 겸직으로 봄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의 장은 상담소등의 종사자 중 겸직 자가 있는 지를 반기별로 확인,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상근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

○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철저
- 시설 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 ※ 특히, 시설 종사자의 외부강의 시 지원사례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유의

- 상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목적용 외에 수집 또는 제공할 수 없음

※ 법령 위반 종사자는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3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36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법령 위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78조(징계사유)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

(참고) 개인정보의 보호 및 유출방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 지자체와 시설장은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본래의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되어지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실시(「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수집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권리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거나,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경우 수집 가능
- 입소/이용자, 후원자 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그 외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노력 등

다. 종사자 소진방지

- 상담소 등의 장은 종사자 소진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비 내에서 종사자 소진방지 및 정신건강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 지원 가능 항목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심리치료, 힐링 프로그램, 교육 등 프로그램화된 것은 참여 지원 가능(단순여행이나 영화 관람은 지원불가, 다만 여행·영화관람도 소진방지를 위한 프로그램화한 경우 가능)
 - ▶ 지원가능액수 : 연간 1인당 30만원 범위

라. 종사자 신고의무제도 안내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 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 신고 절차 및 방법

- 신고의무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112, 경찰서 등)에 신고
- 상담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전국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

- 신고의무 위반 시 조치: 신고의무 기관·시설 또는 단체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

○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신고 절차 및 방법

-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112, 경찰서 등)에 신고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의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신고 절차 및 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or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하거나, ‘희망의 전화’ 129에 전화로 신고
- 또는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도움신청하기 메뉴 활용하여 신고

마. 종사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

- 교육대상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 2 상담원 자격요건 개별기준 충족하는 자
 - 성매매방지시설 설립준비자(해당 지방자치단체 확인공문 혹은 설립주체가 법인일 경우 설립계획서 제출)
 - 여성폭력방지기관 종사자 및 근무 경력자
- 교육시간 : 이론 90시간, 실습 10시간
- 교육내용 : 시행규칙 제7조 별표 2 3. 상담원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 참조
- 교육생 선발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교육 신청
 - ※ 교육기관에서 선발기준 및 교육인원 별도 공고
- 교육기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수료기준 : 이론 90%, 실습 90% 이상 출석 시 수료 인정
 - ▶ 출석시간 미달(중도포기자)로 인한 교육 미수료자가 추가교육을 통해 교육을 수료할 경우 전액 자비 부담
 - 50% 미만 수강 시 처음부터 재수강 후 수료
 - 50% 이상 수료 시 1년 이내 재수강할 경우 미수강 부분만 수강 후 수료
 - 50% 이상 수강하였어도 1년 이후 재수강 시에는 처음부터 재수강
 - ▶ 현장실습은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성매매방지 시설·상담소등에서 수행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할 경우 소속기관 실습 허용(증빙서류 제출): 만 1세 이하 영아를 양육 중인 종사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수습종사자, 한부모, 감염병 확산 우려 등으로 타기관 실습이 불가피한 경우
 -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관의 경우에는 전체 교육시간의 10% 범위 내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 할 수 있음
- 교육비 지원 :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비로 지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상담원 등 종사자 보수교육

- 교육대상 : 성매매방지 지원시설 및 상담소등의 종사자
- 교육시간 : 8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 교육내용 : 시행규칙 제18조 참조
- 교육생 선발 : 상담소 등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교육신청서 직접 접수
 - ※ 연간 교육일정, 선발기준 및 교육인원은 교육기관에서 별도 공고
- 교육기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수료기준 : 90% 이상 출석 시 수료 인정
- 교육비 지원 :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비로 지원(여비는 제외)
- 특징 : 상담소 등의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인 경우는 본 보수교육의 수료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음
 - ※ 본 보수교육 수료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개별적으로 면제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 (<http://edu.welfare.net>)하고 수료증을 우편 혹은 방문 제출함으로써 면제받을 수 있음

바.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 법정 의무교육 안내

구 분	법적근거	대상	시행주체	이수방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 평등법 제13조	전 종사자	고용노동부	직원연수·초회·회의, 사이버 교육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전 종사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privacy.go.kr) 참고
퇴직연금제도 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고용노동부	온라인, 집합, 서면, 상시게시(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	전 종사자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 촉진법 제5의2	전 종사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참고(연 1회 1시간 이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협회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8시간 이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전 종사자	고용노동부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교육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 종사자	성평등가족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전 종사자	보건복지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연 1회 이상)

※ 시설장 및 종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수하도록 노력할 것

가. 운영위원회 구성(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목적 :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시설의 장, 시설거주자(이용자) 대표, 시설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 대표, 해당 시·군·구 소속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시설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 ① 시설장의 친인척, ②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시설장 제외)는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할 것
 - ▶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에 유의할 것(법제처 해석, 17-0433)
- 임명 또는 위촉 : 관할 시·군·구청장
- 위원 임기 :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운영 : 분기별 및 수시 운영(회의록 작성 및 보고 연1회)
 - ▶ 서면심의나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다만, 전염병 확산방지 등을 위해 대면진행이 곤란한 경우 서면심의 및 회의 인정)

나. 장부 등의 비치(시행규칙 제10조 별표4)

장부의 종류		
운영에 관한 장부	사업에 관한 장부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① 상담소등 연혁에 관한 기록부 ② 직원관계철 (인사기록카드·이력서·사진 포함) ③ 회의록철 ④ 소속법인정관(법인의 경우) 및 관계결의 서류 ⑤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⑥ 문서 접수·발송대장 등 ⑦ 상담원 교육·훈련 관계 서류	① 상담소등 입소·이용자 관계 서류(신상조사서, 건강기록부, 입소·퇴소자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상담, 법률지원의 내용 등) ②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 상담 시 대상자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상담내용은 반드시 상담일지에 기록 및 철저한 보안 유지 ▶ 상담관련자료는 최소 3년간 보관 ③ 운영프로그램 관리대장(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평가 관련서류)	①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②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③ 예산서 및 결산서 ④ 비품 출납대장 및 관리대장 ⑤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 증명 서류 ⑥ 시설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⑦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서류(5년 이상 보관)

다. 재무회계 등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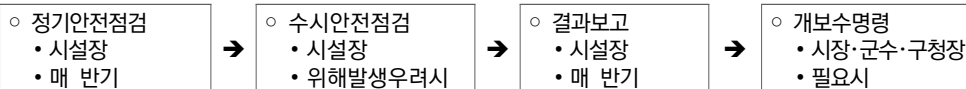
- 재무회계 관리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재무회계관련 법령을 준용
- 시설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
- 시설 운영 및 재무회계 등 관리에 중대한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합동 평가 및 차년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음
 - ▶ 관리미비사항 : 회계부정 집행 등 중대과실 지적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미보완, 운영실적 보고 기한 경과 등

5 | 자원·상담·자활시설의 안전관리

가. 시설의 안전점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참고)

- 화재보험 가입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대인·대물 보험 가입
- 시설의 장은 소관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실시 및 위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 시설의 장은 정기 안전점검 결과 당해 시설이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때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수시 안전점검 실시
 - ▶ 안전점검 요청기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시설물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안전점검 기관
- 시·군·구청장은 시설로부터 결과를 제출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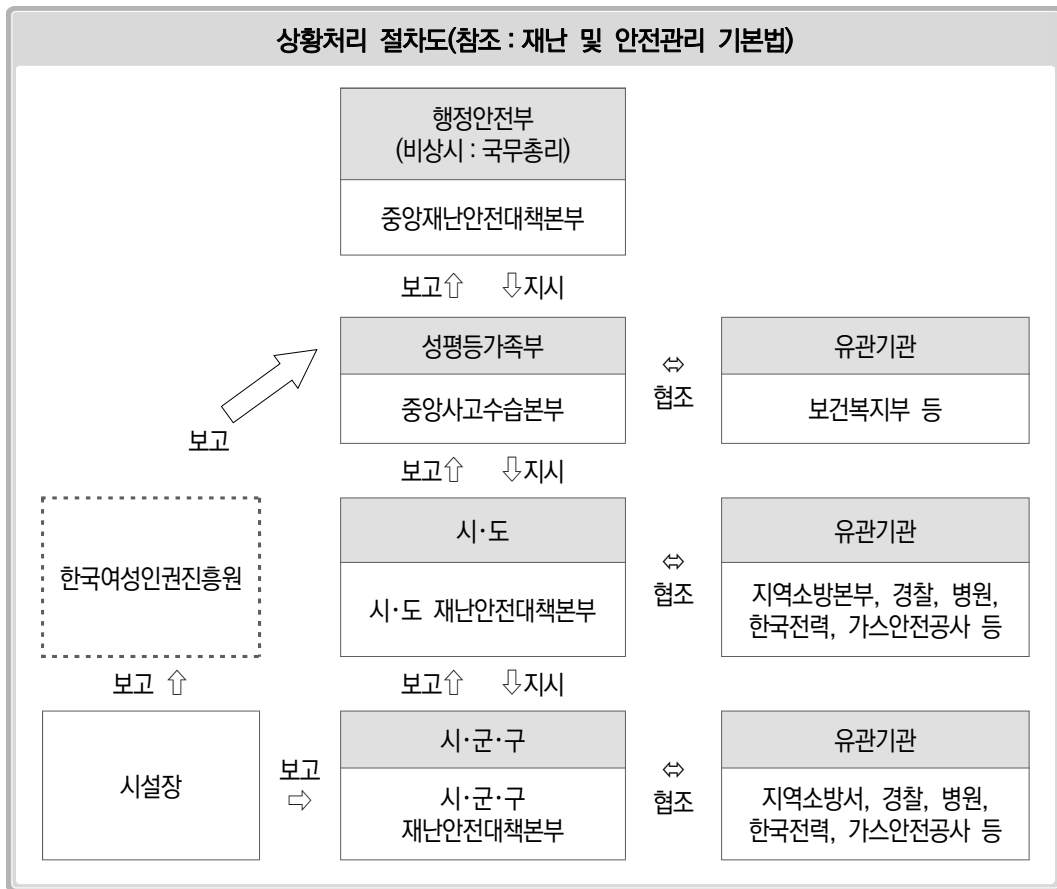
사회복지시설 수시 안전점검



- ▶ 수시 안전점검 사유
 - 정기안전점검결과 당해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 ▶ 수시 안전점검 실시 가능한 자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의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나. 시설 재난예방 및 대응

- 방염설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20조)
 - 실내장식물, 커튼, 카펫 등의 물품에 대하여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함(상세 내용은 상기 법률 참조)
- 24시간 생활시설에 가스경보기를 설치하여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
- 재난발생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다. 시설 입소·이용자 대상 안전교육(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3조)

-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가.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요청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은 시·도 및 시·군·구 시설 및 상담소가 제출한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비 교부를 신청
- 시·도지사는 시·군·구 사업계획을 포함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교부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로 제출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은 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함

○ 보조금의 교부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시·도 또는 시·군·구 시설 및 상담소에 사업비 교부
- 회계연도가 종료하면, 당해 연도에 교부된 보조금은 증빙자료 첨부하여 정산·보고
- 사업비 잔여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액은 반납 조치함

나. 예산 편성

○ 예산의 편성·집행·회계관리 등에 대해 본 사업 안내서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준용

▶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시설의 종사자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지원 기준 : 개별 시설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의함

- 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균형 있게 집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정 분야에 편중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 종사자의 육아·질병 휴직 시 대체인력 활용 경우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인건비 지원액 : 38,139천원 / 1인(연간)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국비 지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에 준하여 종사자 호봉을 책정할 수 있음

▶ 인건비 지원액(38,139천원)은 예산 편성 상 기준금액이며, 실제 종사자의 경력 및 직급에 따른 인건비는 지자체 및 시설의 내부규정에 따름

- 인건비는 기본급,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초과근무수당,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 가능

- 종사자 월 기본급은 2026년 기준 최저임금액(10,320원×209시간 = 2,156,88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 예산 계획의 변경

-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및 상담소가 예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군·구와 협의할 것

○ 시설 및 상담소장은 보조사업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보조사업비 예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상위 보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인건비 경우 불용 발생할 경우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전환하여 집행 가능
 - ▶ 종사자 입·퇴사 및 결원 등의 사유로 인건비 불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전환하여 집행 가능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 참고 〉

보조비목	보조세목	보조비목	보조세목
인건비(110)	보수(01)	운영비(210)	시설장비유지비(09)
	일용임금(04)		차량비 등(10)
	기타인건비(05)		복리후생비(12)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일반용역비(14)
	공공요금 및 제세(02)		기타운영비(16)
	피복비(03)	여비(220)	국내여비(01)
	특근매식비(05)	업무추진비(240)	사업추진비(01)
	일·숙직비(06)		기관업무비(02)
	임차료(07)	건설비(420)	시설비(03)
	유류비 등(08)	유형자산(430)	자산취득비(01)

*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등 참고

○ 예산과목

- 예산편성 비목·세목 및 내역

과 목			내 역	e나라도움	
관	항	목		보조비목	보조세목
공통경비	인건비	급여	• 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인건비 (110)	보수 (01)
				인건비 (110)	일용임금 (04)
		제수당	• 인건비 한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에서 정한 수당 편성 * 지자체에서 승인한 별도 수당 편성 가능	인건비 (110)	보수 (01)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인건비 (110)	보수 (01)
		사회보험 부담비용	• 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금	운영비 (210)	복리후생비 (12)
		기타 후생경비	• 직원의 건강 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비 (210)	복리후생비 (12)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비	• 기관운영 및 사업운영 관련 소요비용	업무 추진비 (240)	기관업무비 (02)
		회의비	• 운영위원, 자문위원, 인사위원 등 회의비 • 부서운영비 :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월 30만원 이내)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운영비	여비	• 직원의 국내 출장여비, 아웃리치 활동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자산취득비에 계상),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소규모수선비, 포장비,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사례금, 청소용역비 등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공공요금	• 우편료, 전신전화료·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사용료, 인터넷 및 웹하드 사용료, 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 난방연료비 등	운영비 (210)	공공요금 및 제세 (02)
				운영비 (210)	유류비 등 (08)
		제세공과금	•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협회비, 종사자 상해보험료	운영비 (210)	공공요금 및 제세 (02)
		차량비	• 차량 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비	운영비 (210)	차량비 등 (10)
		월 임차료	• 월 임차료(연 임차료 포함) 및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운영비 (210)	임차료 (07)

과 목			내 역	e나라도움	
관	항	목		보조비목	보조세목
		기타운영비	• 직원의 급량비 및 특근매식비 • 직원교육비 : 사업 질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비, 직원의 피복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운영비 (210)	피복비 (03)
	시설비	시설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운영비 (210)	특근매식비 (05)
	시설 경비	운영비	• 생계비 : 주식비, 부식비 등 • 수용기관경비 : 위생용품(치약·칫솔·수건 구입비 등) • 피복비 : 시설 입소자의 피복비 • 의료비 : 시설 입소자 건강진단비, 간병비, 의약품비 등 •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및 자립준비생활비(시설만 가능)	생계비 (311)	
				수용기관경비 (312)	
				피복비 (313)	
				의료비 (314)	
				직업재활비 (316)	
		교육비	• 수업료 : 입소자 중 학생에 대한 수업료 • 학용품비 : 입소자 중 학생에 대한 학용품비 • 도서구입비 : 입소자 중 학생에 대한 도서구입비, 부교재비 • 교통비 : 입소자 중 학생에 대한 대중교통비 • 급식비 : 입소자 중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수업료 (321)	
				학용품비 (322)	
				도서구입비 (323)	
				교통비 (324)	
				급식비 (325)	

* 우측의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을 기본으로 예산 편성하여 e나라도움 사용

- 사무실등 월 임차료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는 월 100만원(연 1,200만원) 한도에서 지자체 승인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로 집행 가능
 - ▶ 다만, 지자체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을 초과하여 운영비로 집행 가능
- 종사자 상해보험료는 연간 1인당 5만원 이내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급 가능
- 각 시설은 제세공과금으로 협회비 지급 가능하며, 이 4곳(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여성지원시설협의회, 성매매 근절을위한 한소리회, 현장상담센터협의회) 중에서 각 1곳을 지정해야 함

다.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국고보조금 교부절차
 -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교부
 - 국고보조금 교부액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완료
-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
 - 시·도별 또는 사업 시행기관별 상반기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연초 확정 내시한 국고보조금 배정액 변경 가능

라. 예산 집행기준

- 보조금 처리기준
 - 모든 수입 및 지출관리는 별도 국고보조금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며, 후원금 및 자부담 통장 등과 별도관리
 - 수입과 지출은 내부 품의서에 따른 결재 후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총계정원장, 수입·지출보조부, 지출증빙서류 등을 구비하고 적정 관리
 - ▶ 총계정 원장의 일련번호, 보조부의 일련번호, 지출증빙서의 일련번호를 일치시켜, 비교대조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재무·회계와 관련한 자료는 5년 이상 보존해야 함
 - 총계정원장 보조부는 사업별, 세목별로 구분 관리하며, 각각에 대해 증빙서류 첨부함
 - ▶ 총계정원장은 통장의 입·출금 및 잔액과 일치하여야 함(이자발생액 제외)
 - 예) 사업 구분 :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세목 구분) /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의료·법률·직업훈련과 치료·회복 프로그램운영으로 세목 구분) / 집결지 현장지원사업 /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
- 운영비 지출원칙(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거래내역의 투명성 및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e나라도움 전용카드(전용계좌) 사용
 -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지침」 등에 따라 보조금 전용카드에 클린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관리
 -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하여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토록 조치(개인적 사용 금지)
 - * 보조금 전용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등은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보조금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 보조금 전용카드란?

- ① 시설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 ②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발급 및 거래내역 전송
- ③ 클린카드 기능 탑재

*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계약한 금융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함

-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지도·감독
-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부당 사용사례가 적발된 경우, 감사 등을 실시하여 환수 및 징계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클린카드 기능)

분류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
유흥업종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주점으로 등록된 호프집, 맥주홀, 카페일바, 주류판매점, 카페, 카바레
위생업종	아·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실내·외 골프장,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스크린골프,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기원, 스키장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 예산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와 계좌이체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가급적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
 - ※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구비
 - ※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집행 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

국세청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안내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있는 물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신속·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작·보급하는 카드

* 신청문의 :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

○ 지출 증빙서류 철저

- 지출결의서 : 지출내역을 6하 원칙에 따라 기재 후 반드시 내부결재 득하고 처리
- 지출증빙서류는 총계장원장 보조부 각각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철하고 월별 (분량에 따라 분기별)로 편철하여 보관
 - ▶ 지출증빙서류 표지에 해당 지출증빙서류의 지출액을 기재하고 담당자와 책임자 날인 할 것
- 세금계산서(계산서), 청구서, 견적서, 영수증, 입금증, 카드매출전표, 내부결재 문서(품의서) 등 관련 문서 첨부
 - ▶ 업무를 위한 교통비(유류비 포함)는 출장여비로 처리

○ 집행기준 단가

1) 여비 기준 :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및 [별표2] 적용

- 관내 출장 : 10,000원(4시간 미만), 20,000원(4시간 이상) * 교통비·식비 포함
- 관외 출장 : 출장보고서와 영수증을 출장신청서(사전 결재)와 함께 제출, 출장 건당 신청 교통비와 숙박비는 실비이므로 필히 영수증 첨부

(단위 : 원)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1박당)	식비 (1일당)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 관외출장 경우, 교통비는 시외/고속버스·철도·항공 등의 운임만 해당하며, 현지 교통요금(택시, 시내버스 등)은 포함하지 않으며 일비 내에서 처리함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1. 11. 30.>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13.1.9.>

[전문개정 2010.11.10.]

〈참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개정 2023.3.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

-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2) 강사료 등 사례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급상한	지 급 대 상
특강	최초 1시간	300,000원	1. 중앙관서 전·현직 장·차관(급) 2.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3. 전·현직 대학교 총장, 학장, 원장(급) 4. 국책연구기관장
	초과 (매시간)	200,000원	5. 경제5단체장 및 그룹규모 회장 6.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사회저명인사
일반 I	최초 1시간	250,000원	1. 대학(원)의 교수 이상 2. 국장(급) 공무원 3. 언론기관 국장, 논설위원급 이상 자
	초과 (매시간)	100,000원	4. 대기업체 임직원(급) 이상 5.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6.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능력 상당자
일반 II	최초 1시간	200,000원	1. 대학교(원)의 부교수(급) 이하 2. 서기관(급) 이하 공무원
	초과 (매시간)	50,000원	3. 기업체 부장(급) 이하 4.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 및 능력 상당자

구분	지급기준	지급상한	지 급 대 상
일반Ⅲ	최초 1시간	100,000원	1.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2.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능력 상당자
	초과 (매시간)	50,000원	
보조강사	1시간	50,000원 이내	주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동작의 시범 및 실습 등의 역할 담당자 ※ 단순한 강의매체(OHP, 차트) 조작은 제외

※ 강의시간은 기본 1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상 초과일 경우에만 초과시간으로 인정

※ 적용범위 : 온·오프라인 시설 프로그램, 직무교육, 직원연찬회, 워크숍, 세미나 등 내부행사 연구용역사업 및 위탁 사업에 포함된 강사로 등 사업

※ 온라인 동영상 강의 촬영물 배포 시, 저작권에 대한 검토 필요

※ 지자체 및 센터 여건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3) 연구·심사·자문 등 전문가 사례비 지급 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특정과제 연구	1건	2,000,000원 이내	특정과제 1개월 이상 연구자 ※ 동 지급액을 초과하는 과제는 연구용역으로 추진
	1회	300,000원 이내	연구용역보고서 감수 및 검토 의견서 작성
심사위원	1일, 건	300,000원 이내	1. 입찰 등 용역사업 사업제안서 심사(사업 1건당) ※ 4개업체 이상 심사시 50% 추가지급 가능 2.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심사(1일당) ※ 합숙심사시 300,000원 이내 3. 기타 사업의 심사 또는 평가(사업 1건당)
전문가 자문	1건	300,000원 이내	1. 사업개발 및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2. 각종 법안의 검토의견서 및 소송 관련 답변서, 준비서면, 이유서 작성 등 법률자문 ※ 고문변호사의 경우 300,000원까지 지급 가능 3. 정보화사업, IT사업 등 기술자문 ※ 자문결과보고서 제출
토론회, 세미나	1회(1일)	300,000원 이내	주제발표자, 기조연설자, 패널사회자 포함
		150,000원 이내	패널 멤버
위원회, 간담회	1일	100,000원 이내	1. 사업추진방향 및 의제선정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필요로 하는 회의 참석자 2. 각종 위원회 참석위원 ※ 용역사업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 (연구진 제외) 사례비는 용역 수행기관(용역비)에서 지급
	2시간 초과시 (1일1회 추가 지급 가능)	50,000원 이내	
시험위원	1일	100,000원 이내	합격자 선정을 위한 서류시험 위원 ※ 면접시험 및 외국인의 경우 50% 추가지급 가능
	2시간 이상 (1일1회)	50,000원 이내	

※ 전문가 자문 사례비는 결과물 제출을 위한 작성 원고의 원고료와 병급할 수 없음

※ 지자체 및 센터 여건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마.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등의 사용
 - 시설 및 상담소 등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집행·정산 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등 공식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시 조치
 - 1) 국고보조금의 용도와 사용 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2) 교부결정의 취소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나.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참고〉 보조금 지원 취소 및 반환 관련 근거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강제징수)

7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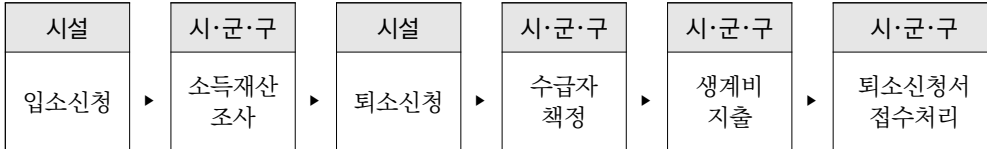
가. 운영·정산 실적 보고 : 반기별

- 상담소등 시설 :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운영실적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함께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 : 매 반기 다음달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 매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성평등 가족부장관에게 보고

- 나. 종사자 채용시 개별자격기준 및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적정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토록 하며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의 이수가 안 된 종사자는 채용 2년 이내에 필히 양성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함(종사자 자격기준 특례 참조)
- 다. 신규시설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운영 및 회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하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교육
 - 국비지원 대상 선정 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여부 확인 필요
-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매매 상담소 등의 장, 명칭, 소재지, 입소정원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후 15일 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에 보고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성평등가족부에 직접 보고하여야 함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설치 또는 시설종류의 변경, 입소정원 변경 시 예산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
- 마. 시·도 및 시·군·구는 관할 시설 및 상담소에 대하여 매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에 제출
-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폐쇄 등 조치 (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 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안내하여야 함
- 사. 시설의 평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매 3년마다 상담소 등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토록 하여야 함
- 평가항목: 입소자 운영관리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서비스 만족도, 시설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평가방법: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그 밖의 평가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성매매 지원시설 생계급여 수급자 책정 관련 시·군·구 필수 이행사항

- 보장시설인 성매매 지원시설이 입소자의 생계급여를 신청 하였으나, 수급자 책정 전 소득·재산 조사 단계에서 대상자가 퇴소하여 퇴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퇴소신청서를 즉시 접수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 책정 및 생계비 지출 후 퇴소 신청서 접수 처리(단, 지급 금액은 실제 퇴소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출하도록 하며, 과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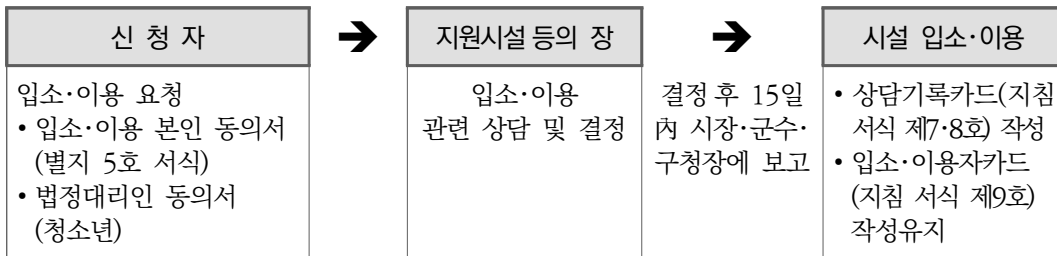
※ 입소 신청 후 대상자가 1~2개월 생활을 하였으나 소득·재산 조사 중 퇴소 신청서 접수 처리하는 경우 시설은 생활한 기간에 대한 생계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가. 지원시설 입소·이용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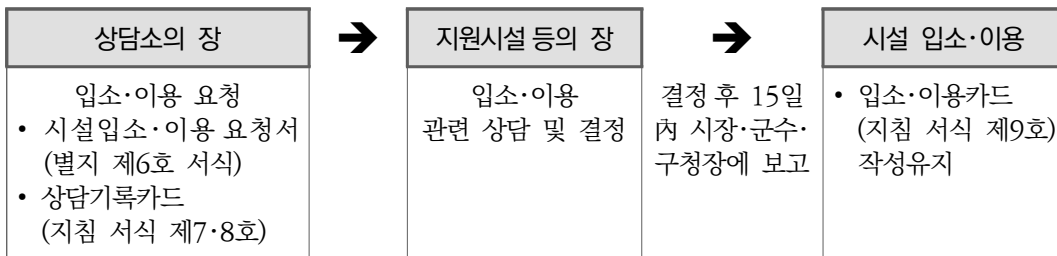
-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청소년시설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⁶⁾
 -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 또는 이용요청을 받은 경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계요청을 받은 경우

나. 지원시설 입소·이용 절차(시행규칙 제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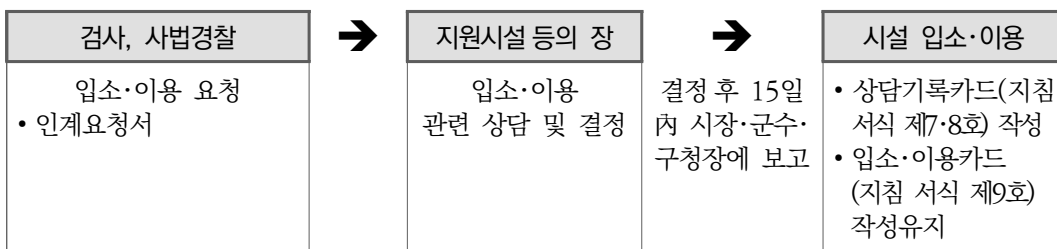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상담소의 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계요청을 받은 경우]



- 6) 법정대리인의 주소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입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시설 상담원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원의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입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시행령 제5조).

다. 입소정원 변경

- 지원시설(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포함)의 장은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에 입소자조치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퇴소조치 및 이용중단(시행규칙 제9조제4항)

-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 퇴소 또는 이용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성매매·성매매알선·성매매소개 업소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자
- 입소·이용 내부규정에 따른 퇴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시설의 장은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단체생활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 또는 이용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 지원시설의 장은 퇴소·이용중단을 결정한 경우 15일 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마. 입소·이용자의 인권보장

- 시설 내 운영위원회에서 입소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공동생활규칙(안) 마련
- 입소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내용을 알려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 입소자의 개별적 면회, 자유로운 전화 이용, 외출 등을 보장
- 입소·이용자의 인권보호 위해 시설명, 시설 소재지, 종사자 및 입소·이용자 정보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대안교육위탁기관)
 - ▶ 단, 피해자시설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음
- 시설 조치 여부에 대한 시·군·구 점검 사항
 - 생활자에게 인권침해사실 진정권에 대한 고지 여부
 - 시설 내에 진정함 설치 유·무
 -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의 국가인권위원회 송부 여부
 - 방문 조사 시 협조 상태 등

III-1 일반 및 청소년 지원시설 운영

1 개 요

가. 일반 및 청소년 지원시설 지원 개요

구분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목적	○ 성매매피해자 숙식제공 및 자립지원 등	○ 성매매피해자 숙식제공 및 자립지원 등
대상	○ 성인 성매매피해자 등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등
주요업무 (법 제11조)	1. 숙식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5.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9.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 1~9 일반지원시설과 동일 ○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 수행
입소기간 (연장)	1년 원칙(1년 6개월 연장 가능) ▶ 입소자 희망으로 해당지원시설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입소기간 연장	19세가 될 때까지(2년 연장 가능) ▶ 입소자 희망 및 법정대리인 ⁷⁾ 동의로 해당 지원시설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입소기간 연장
보고	입소기간 연장 시, 연장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좌동

7) 법정대리인의 소재불명(所在不明)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소자 본인의 동의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갈음한다(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나. 장애인 입소자의 입소기간⁸⁾ 연장(법 제9조 제5항) 및 입소율 관리

- 입소자가 장애인⁹⁾인 경우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하여 지원 가능
 - 1회당 2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 연장 가능
 - 단, 지원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의 장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등 입소자 피해회복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함
- 장애인은 입소율 계산시 입소인원을 1.5인으로 산정

다. 지원시설 입소자와 구분되는 이용자

구분	지원시설 이용자에 대한 지원 개요
개 념	• 지원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지 않으면서 지원시설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 성매매피해자 등
선 정	• 관련시설 입소·이용 경력자인 경우 전 입소·이용시설 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자 • 초기대상자(관련시설 입소·이용 경력 없는 자)는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자활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된 자
이 용 기 간	• 입소기간에 준함
이용자 관 리	• 시설 이용과 동시에 이용자에 대하여 시설이용 안내 등 오리엔테이션(1일) 실시 • 이용기간 동안 월 4회 이상(1회 이상 면접상담, 3회는 전화상담 등 가능) 취업, 치료, 생활환경 등에 대한 상담¹⁰⁾ 실시 • 이용기간 동안 관련 정보 제공 및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실시
인 원	• 입소정원의 50% 내외

8) 장애인 입소기간 연장 : 일반·청소년 지원시설 및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공통 적용

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10) 입소자와 동일하게 이용 신청, 선정 및 관리 시 별지 제6호 서식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입소·이용 요청서” 및 지침상 서식 제7호 “상담기록카드” 등 필수 서식 작성·비치

2 국고보조금 지원

가. 지원 항목

○ 인건비, 시설운영비

- ▶ 국고보조금은 총액 범위 내에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통합하여 사용가능함. 다만 운영비는 아래 '나. 지원금액' 기준에 준하여 집행하되 개별 시설의 여건에 따라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경우라도 운영비는 최소 10% 이상 집행하여야 함

나. 지원 내역(시설 운영비)

○ 공통경비 : 6. 예산편성 및 집행 공통기준 참고

- 운영비 중 자립준비생활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월 5만원 이내 지급 가능
- 입소자의 주부식비 및 피복비는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지출 가능
- 보장시설 비수급자 입소자 경우 생계비, 교육비, 주·부식비, 피복비 등을 운영비로 집행 가능

○ 이용자 경우

- 교통비는 거주지 등을 감안하여 지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1인당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주부식비는 1인당 월 5만원 이내로 지원 가능
- ▶ 지급단가 및 물량은 시설규모나 실정에 맞게 실소요 단가 적용

다. 지원시설¹¹⁾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법 제14조)

구분	지원시설 입소자 아동교육지원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지원 대상	○ 아동을 동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한 자 또는 입소 후 출산하여 지원시설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
지원 금액	○ 아동교육지원비 지급단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그 지침에 따른 교육급여 지원 기준을 따름 ○ 아동양육비 지급단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그 지침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기준을 따름
신청 방법	○ 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의 장 또는 입소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보호비용(변경)신청서,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사본,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아동교육지원비 신청의 경우) ○ 보호비용 지급 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 지원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소급하여 지원
확인·통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비용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11) 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 해당

라. 지원시설¹²⁾에 대한 간병비 지원

○ 간병비 지원 :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구분	지원시설 간병비 지원
목적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간병 비용 지원을 통해 이들의 조속한 회복 도모
지원 대상	○ 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 입소자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 간병이 필요하나 가족 등으로부터 간병 지원을 받기 어려운 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자로서 정서 불안 등의 증세로 인해 자해 위험이 있거나 수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 도움이 필요한 자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1일 기준 단가 참고)
신청 방법	○ 입원하여 치료 중인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간병비 지급 신청서[서식 28]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원 중 또는 입원 후 2주일 이내 신청 - 입원확인서, 진료비(간병비) 계산서 각 1부 - 간병인의 필요를 적시한 의사소견서(진단서) 1부

○ 간병비 집행기준

구분	지원시설 간병비 집행기준
신청	○ 입원하여 치료 중인 자 또는 그 대리인 신청
확인	○ 지급청구를 받은 시설의 장은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하고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내역을 보존 관리 ▶ 간병비 부족으로 인한 운영비의 추경 예산 조정은 불가
집행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시설 운영비(간접경비)로 집행
지급 방법	○ 피해자인 신청인 계좌에 직접 지급 - 불가피할 경우 사실여부 확인 후 간병인 계좌로 지급하고 증빙서류 첨부

▶ 간병비 1일 기준 단가(예 시)

구 분		1일 기준 단가 (예시)	
		종 일	시 간 제
병 원	일 반 단 가	8만원	5만 7천원(주·야간 12시간 기준)
	특 수 단 가	8만 5천원	6만 3천원(주·야간 12시간 기준)
▶ 특수단가 적용 기준 ① 사지마비, 편마비에 준하는 보행 불가능 상태인 경우 ② 응급실, 폐쇄병동에 입원한 경우 ③ 그 외 특수단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소견서 첨부) ▶ 종일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도적인 주·야간 교대 지양 ▶ 간병비 예시 단가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자부담으로 함 ▶ 간병인은 간병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함. 단, 간병인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간병이 가능한 자도 예외적으로 인정(가족, 친인척, 성매매피해자 시설종사자는 제외함)			

12) 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 해당

○ 간병비 환수규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비가 지급된 경우와 과오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환수(환수는 이자를 적용치 않고 원금만 회수)

마.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 자립지원수당(‘26년 신설)

- (지원대상) 성착취·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다음의 나이 및 입소 기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나이) 성착취·성매매 피해자로 시설 입소 당시 만 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만 19세 이상인 자
 - (입소 기간) 퇴소일 기준, 과거 지원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내용) 매월 1회 50만원, 최장 12개월 간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은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관련 서식'의 참고자료를 참조

3 행정사항

- 지자체는 관할 지원시설에 대하여 적정 입소자 비율이 유지되도록 지도하고 입소자 비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정원조정 등을 권고
 - 지자체는 '최근 3년 간 평균입소율(이용자 제외)이 50% 미만'인 시설에 대하여 정원조정 등 자체 개선안을 강구토록 권고하여야 함
 - ▶ 시설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정원조정 등 시설별 자체노력을 강구하여야 함

Ⅲ-2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

1 개 요

가. 외국인 지원시설 지원 개요

구분	외국인 지원시설
목적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숙식제공 및 귀국지원 등
대상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및 성매매에 유입될 우려가 높으나 타 정부기관이 운영·지원하는 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여성
주요 업무 (법 제11조)	○ 외국인 피해여성들에게 무료숙식 등을 제공하며 귀국까지 안전하게 보호 ○ 성매매업소로부터의 구조, 출국 및 국내체류 등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 성매매관련 여성질환 등 응급치료 지원 ○ “여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한 피해자 구조, 법원 동행 등 법률 지원 ○ 출입국관리소, 자국대사관, 경찰서 등 외국인 여성의 피해구제 및 법률 지원과 관련된 기관 연계 ○ 법률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피해여성에 대한 자활지원센터의 자활참여자치지원사업(공동작업장 운영, 인턴십프로그램) 연계 지원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등 귀국을 위한 서류작성과 항공권 제공 등 귀국지원 ○ 피해여성들의 자활을 도모하고 사회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실용적인 인권, 언어, 컴퓨터 등의 교육 실시 ○ 외국인여성 보호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등
입소 기간	○ 3개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가능)
입소 정원	○ 일시적으로 입소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시설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입소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나. 종사자 자격기준(시설 공통기준 이외 규정 적용)

- 공개경쟁채용 원칙. 다만, 특별한 사유로 공개경쟁채용이 부적절한 경우 자체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 가능
- 전문상담원 배치 : 통역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상근 통역사 배치
 -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문 통역서비스 제공

2 국고보조금 지원

가. 지원 항목

- 인건비, 시설운영비
 - ▶ 국고보조금은 총액 범위 내에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통합하여 사용가능함. 다만 운영비는 아래 '나. 지원금액' 기준에 준하여 집행하되 개별 시설의 여건에 따라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경우라도 운영비는 최소 10% 이상 집행하여야 함

나. 지원 내역

- 시설운영비 : 6. 예산편성 및 집행 공통기준 참고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설운영비에서 입소자에 대한 주부식비(생계비) 집행 가능
- 귀국비용(구조지원사업 공통기준 이외 규정 적용)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귀국비용은 구조지원사업비에서 지원

Ⅲ-3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운영

1 개 요

구 분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개요
목 적	○ 탈성매매한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으로 자립 유도
대 상	○ 탈성매매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자활조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자
주요업무 (법 제11조)	1. 숙박 지원 2.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3.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 지원 4. 자립·자활을 위한 활동의 지원 5. 사회보장급부(생계·의료급여) 수령지원 ○ 입소자 자립촉진: 입소자 중 근로소득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립적립금으로 근로소득의 월 70% 이상을 저축 해야함(근로소득 산정 시 공제) ▶ 입소자 자립촉진 상세내용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참고
입소인원	○ 5인 이상 ~ 8인 미만
입소기간 (연장기간)	○ 2년(2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입소자 희망으로 해당지원시설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입소기간 연장

2 국고보조금 지원

가. 지원 항목

○ 인건비, 시설운영비

- ▶ 국고보조금은 총액 범위 내에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통합하여 사용가능함. 다만 운영비는 아래 '나. 지원금액' 기준에 준하여 집행하되 개별 시설의 여건에 따라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경우라도 운영비는 최소 10% 이상 집행하여야 함

나. 지원 내역(시설 운영비)

- 공통경비: 6. 예산편성 및 집행 공통기준 참고
- 시설경비: 일반·청소년 지원시설과 동일하나 주거지원 시설임을 감안,
입소자 자활단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비지출
 - 입소자 주부식비 및 피복비는 보장시설 수급자로 인정될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로 지출
 - 보장시설 수급자 미해당 입소자에 대하여 시설경비에서 주·부식비 집행 가능

3 행정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의 장이 일반 및 청소년지원시설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에 이를 반영하여 인건비 중복지원 및 예산 불용을 방지해야 함
 - ▶ 시설의 장은 시설장을 겸임하게 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분기별로 예산을 교부받기 전에 이를 보고하여 인건비의 중복지원 또는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여야 함

Ⅲ-4 자활지원센터 운영

1 개 요

구 분	자활지원센터 개요
목적	◦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자립·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 ◦ 전업을 위한 훈련·준비단계에 대한 지원
대상	◦ 탈성매매한 자로 자활 지원이 필요한 자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중 법률소송을 진행 중인 자
주요업무 (법 제16조)	◦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 ◦ 자활참여지원사업 운영 : 공동작업장 및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 지원 ◦ 전업 및 사회통합 지원 -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전업관련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지도,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적 소양교육, 창업지원 및 취업·창업자 사후지원 ◦ 직업훈련 및 진학·기술교육(외부 위탁교육 포함) 실시¹³⁾ - 직업훈련은 취업, 창업 또는 진학 준비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훈련 종목으로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지원 -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진학훈련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으나 승인된 사업 계획의 범위 내에 한함 ◦ 자활과정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 등의 운영 지원¹⁴⁾ - 자립자활 과정에서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의료적·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법률 비용 지원은 승인된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 한함 ◦ 그 외 이용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성평등가족부가 승인한 사업

13) 직업훈련 비용 지원은 “구조지원사업” 직업훈련 비용 지원 지침을 준용

14) 의료 및 법률 비용 지원은 “구조지원사업” 의료 및 법률 비용 지원 지침을 준용

가. 자활참여자치지원사업 내용

구분	공동작업장	인턴십 프로그램(전국사업 ¹⁵⁾)
사업 선정	○ 참여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 습득, 직업탐색, 사회적응을 위한 일 경험 등이 가능한 사업 ▶ 제품포장과 같은 단순작업 지양	○ 개인별 상담 등을 통해 참여자 선호와 적성에 맞는 업종 ○ 사전에 사업수행업체(기관)와 제휴 또는 협약체결을 통해 운영
지원 금액	○ 1인당 월 1백만 원 ○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에 한하여 3인까지 추가 지원가능 (자녀1인당 월 10만원) ▶ 부양가족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근거서류 없을 경우 지원불가)	○ 공동작업장과 동일
지원 조건	○ 월 150시간까지 참여 가능 - 참여지원금은 시간당 당해연도 최저시급* 기준 지원 * '26년 기준 10,320원 - 공동작업장 참여자가 작업장 운영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작업장 총 참여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참여 시간으로 인정	○ 월 150시간까지 참여 가능 - 참여지원금은 시간당 당해연도 최저시급* 기준 지원 * '26년 기준 10,320원 -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는 월 150시간 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이상 경우 지원 기관과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업체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지원 기간 (연장)	1년 원칙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그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한해 추가로 3년까지(1년+3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별도 심사표 작성, 서식 16)	1년 원칙 (1년 동안 인턴십을 참여한 대상자가 인턴십 기간연장을 희망할 경우 공동작업장 지원 기간(최장 3년) 중 잔여기간만큼 지원 가능-공동작업장과 동일 심사절차를 거침) 예) 공동작업장과 인턴십을 각 1년씩 참여 후 인턴십을 계속하고자 할 때, 연 단위로 심사승인을 거쳐 2년 추가지원 가능
	※ 공동작업장 및 인턴십프로그램은 최장 4년 지원가능(1년원칙, 3년 연장가능)	
지원 인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별 최소 10~30명 이내로 운영가능(인턴십 프로그램 인원 포함)	

15)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위해 피해자 등은 거주하는 시·도가 아닌 타 시도의 자활지원센터에서도 공동작업장과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단, 공동작업장의 경우 자활지원센터 간 지원만 가능함

나. 자활참여자지원사업 관리

구 분	자활참여자지원사업 관리
사업 참여자 관리	○ 공동작업장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시간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상시 비치·관리 ○ 공동작업장 참여자의 참여상황부 등 참여상황(참여시간 기재) 상시 기록·관리 ○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상황 수시 관리 및 참여자의 참여내용 및 환경 등에 대한 고충상담을 월 2회 이상 실시 ○ 공동작업장 및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금 지급시에는 지원금 지급대장 [서식 17] 작성 및 참여상황부 [서식 18],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 ○ 인턴십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지출 시, 제휴업체, 기관 등에서 제출받은 참여상황부 등을 반드시 첨부
공동 작업장 수익금 관리	○ 공동작업장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은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관리 ○ 수익금은 참여자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수시 또는 일괄 배분할 수 있음 ▶ 참여자 배분 : 상여금, 자립적립금, 복리후생비 등 참여자의 자립 및 자활지원 위한 배분으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단, 참여자의 복리후생지원을 위한 현물지급 예외적 가능) ○ 수익금은 공동작업장 운영을 위한 직·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음 • 직접 사업비 : 공동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직접 비용 * 예시) 재료비, 자활참여자교육비, 기타 지자체가 승인한 사업비 등 • 간접 사업비 : 공동작업장 운영을 위한 간접비용 * 예시) 판매홍보비, 수익금 부가가치세, 공동작업장(작업물품 판매매장 포함)임대료 및 관리비, 기타 지자체가 승인한 사업비 등 • 사용불가 항목 : 공동작업장 사업과 관련 없는 차량유류비, 제세공과금, 자활지원 센터 보증금 등 ○ 수익금은 사회적 기업 설립재원 확보 등 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하여 적립할 수 있으며 수익금의 적립은 전체 수익금의 30% 이내에 한함. (다만, 지자체의 승인이 있을 경우 시설 여건에 따라 수익금 적립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자체는 매년 센터의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시 공동작업장 수익금 관리운영 계획도 포함하여 실시

3 국고보조금 지원

가. 지원 항목

- 인건비, 시설운영비, 사업비, 자활참여자치원사업 참여자 지원금

나. 지원 내역

- 센터운영비 : 6. 예산편성 및 집행 공통기준 참고
- 사업비 : 자활지원센터 이용자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소요비용 (직업훈련비, 자활참여자치원사업 재료구입비, 자활지원사업비 등)
 - ▶ 인건비·운영비는 자활참여자치원사업 지원금 제외한 전체예산의 80% 범위 내에서 집행
 - ▶ 사업비에서 인턴십 참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용 집행 가능
- 자활지원센터 사업비에서 의료·법률·직업훈련 등 지원 시 유의사항
 - 지원시설·상담소·현장지원사업 등 다른 시설·사업 등을 통한 의료·법률·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동종의 항목에 대해 자활지원센터에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의료 및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경비가 과다하여 구조지원사업 활용으로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자활지원이 가능함(이 때 상담사의 의견, 대상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시군구에 보고함)
 - 자활지원센터 사업비로 의료·법률·직업훈련을 지원할 경우 그 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구조지원사업의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준용
- 자활참여자치원사업 참여자 지원금
 - 공동작업장·인턴십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 예산 범위 내에서 센터당 10~30명까지 참여자 지원 가능
 - 타 용도로 예산 전환 사용불가
 - ▶ 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비로 전환하여 집행하는 것은 가능(인건비, 운영비로의 전환은 불가)
 - 참여자 지원금은 참여자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 등으로 금융기관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장애인 중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청소년 중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통장 압류설정으로 인해 계좌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령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수령증을 관련 서류에 증빙으로 첨부

4 행정사항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활지원센터 예산액 결정을 위한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범위 내에서 세부내역을 검토·조정한 후 성평등가족부에 제출
 - ▶ 사업계획에는 예산의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기재·작성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사업비 적정 집행 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

Ⅲ-5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부설 대안교육 위탁기관¹⁶⁾ 운영

1 개 요

구분	대안교육 위탁기관 개요
목적	○ 기존의 제도권 교육기관에서 소외된 성매매피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제도권 교육과 연계하여 학업 지속 지원 또는 자립·자활 역량 강화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상실감을 치유하여 학업 및 사회 복귀를 지원
대상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등(청소년지원시설 대상과 동일)
주요 업무	○ 위탁교육 형식으로 의무교육 제공 및 다양한 학습 기회 지원 ○ 심신의 건강회복 및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기능 강화교육 지원 ○ 대안교육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 통합적 자활교육지원 ○ 일반교과과목 및 대안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및 학업지원

2 설치기준, 설치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

가. 설치·운영권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청소년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나. 설치기준

- 구조 및 설비 : 상담실, 사무실, 교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
- 규모 :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구조와 설비를 갖춘 최소면적 99제곱미터 이상

1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에 근거하여 학력인정 위탁업무를 수행하거나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지원하는 기관

다. 설치절차 등

-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상담소 등의 설치기준 및 절차 등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설치절차의 경우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

라. 종사자의 수 및 자격조건

- 종사자의 수 : 4명(센터장, 정교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명, 사무지원 1명)
- 종사자의 자격조건
 - 센터장 : 정교사 또는 직업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자
 - 정교사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
 - 직업훈련교사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시행령 제28조제2항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자활지원센터의 상담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사무지원 :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3 국고보조금 지원

가. 지원 항목

- 교사 인건비, 자활교육 운영비, 프로그램비
 - ▶ 국고보조금은 총액 범위 내에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통합하여 사용가능함. 다만 운영비는 아래 ‘나. 지원금액’ 기준에 준하여 집행하되 개별 시설의 여건에 따라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경우라도 운영비는 최소 10% 이상 집행하여야 함

나. 지원 내역

- 인건비 : 센터장, 정교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2명), 사무지원(1명)
 - 센터장 및 교사 인건비 단가는 지원·상담·자활시설의 시설장 및 상담원 등의 종사자와 동일

- 자활교육 운영비
 - 자활교육 외부강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
 - 자활교육에 대한 교육기자재비, 교재 및 도서비
- 기관 운영비 : 6. 예산편성 및 집행 공통기준 참고
- 프로그램 비용
 - ▶ 지급단가 및 물량은 시설규모나 실정에 맞게 실소요 단가를 적용
-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동일한 항목에서 중복사용 불가

4 행정사항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을 위한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세부내역을 검토·조정한 후 성평등가족부에 제출
 - ▶ 사업계획에는 예산의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기재·작성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사업비 적정 집행 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

Ⅲ-6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1 개 요

가. 성매매피해상담소 지원 개요

구 분	성매매피해상담소 개요
목적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현장상담, 법률·의료 지원, 관련시설 연계 등을 통해 인권유린 상황에 조기개입하고 피해자 보호와 탈성매매 지원
대상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주요업무 (법 제18조)	- 상담 및 성매매피해자들의 구조 - 상담 전용전화를 설치·운영하되, 야간(18:00~09:00)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의 연계 등 상담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조치(업무시간 8시간 준수)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 법원에서의 증인신문과 수사기관의 조사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 - 필요한 경우 법률적 지원,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 등 의료지원 병행 - 각 상담소는 보수교육 과정에 매년 최소 1명의 상담원이 '청소년 지원 전문 과정'에 연 1회 참석하도록 권고하며, 지역 내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 경우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대신함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상담 및 지원연계 - 여성긴급전화(1366), 현장상담센터,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 외국인시설 등과 연계한 전화통역시스템을 활용,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상담 - 경찰청, 출입국관리소, 피해여성 자국대사관, 외국인시설 등과 연계하여 출국 시까지 피해구제, 긴급보호 등 적절한 지원연계 - 현장방문 상담 - 집결지,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청소년 밀집지역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통한 긴급 지원 및 탈성매매 유도 - 홍보지를 통해 성매매피해 관련 도움 요청기관, 법률지식 등의 정보제공 - 면담 및 의약품·생필품 등 물품지원 등을 통해 성매매 종사여성들과 관계형성 - 성매매 업소 및 여성들에 대한 현황파악 및 현장실태조사 -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소방서 등 관련 공무원들에게 협조 요청 - 기타 전화·인터넷·편지 등을 통한 상담 또는 현장방문상담 실시 -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 관련기관·시설 및 자활지원·의료·법률 서비스 연계망 구축 - 여성긴급전화(1366), 기타 지원시설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및 긴급 상황에 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보호시설, 117, 112, 119 등과 협조체계 유지 - 가족, 친척 등이 없거나 신변안전이 요구되는 경우 상담과정 종료 시까지 또는 법률지원이 이루어지는 동안 관련시설 연계를 통해 일시적으로 주거 제공

구 분	성매매피해상담소 개요
주요업무 (법 제18조)	4.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탈성매매 여성의 건강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5.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성매매관련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나 가족들에게 관련 법률·절차, 유사 사례 등에 대해 상담 실시 및 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 6.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7.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및 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8.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성매매 예방상담 추진 - 유홍업소 종사 북한이탈여성의 성매매 유입예방을 위한 상담 실시 - 북한이탈여성 거주지 관할 경찰서(보안과) 신변보호담당관과 협조체계 유지 9. 홍보사업 - 성매매업소 방문 및 여성들에 대한 정보 제공시 상담센터 홍보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 유홍업소 밀집지역, 청소년 출입금지구역 등에 홍보 스티커 부착 -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 실시 - 여성긴급전화(1366), 여성폭력관련 상담소등에 홍보전단 배포 등

나. 상담소 설치 고려사항

- 상담 공간 확보 및 전담직원 배치 등을 통해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기능을 내실화하고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 주요 역 주변, 버스터미널, 관광·유홍지역 등 성매매 피해자 및 성매매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우선 설치

다. 종사자 배치 및 자격기준(시설 공통기준 이외 규정)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성매매피해상담소
- 상담원은 사회복지직렬의 지방일반직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로 할 수 있음
- 상담원 중 1명 이상은 공무원으로 배치하여야 함

가. 지원 항목

- 인건비, 시설운영비, 아웃리치 사업비
- 운영비 : 6. 예산편성 및 집행 공통기준 참고
 - 피해여성 지원비(물품지원 등), 출장상담활동비, 교육·홍보·조사비 등
 - 상담소에서 의료지원을 받는 여성 중 간병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에 대한 간병비 지원규정을 준용
- 아웃리치 사업비(홍보 캠페인 비용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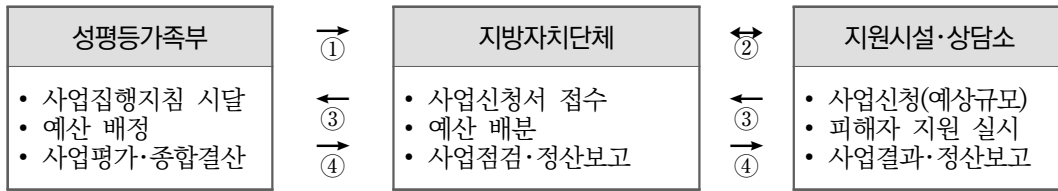
- 상담원의 교육 등 법정자격 구비, 상담소 운영실적 보고,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지원시설의 경우와 동일함
- 기존 국비지원 상담소의 운영이 부실하거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종사자 임면의 허위 보고 등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 등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보조금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청·교부 및 사용하여야 함

17) 설치(신고) 후 6월 이상 운영실적이 있으며 집결지 및 성매매가능업소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한 상담소를 우선 지원

1 사업개요

구 분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개요	
목 적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	
시 행 주 체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제외	- 성매매피해 상담소 - 의료·법률 지원(직업훈련 제외) -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 업 내 용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1인당 지원한도액 : 1,000만원 -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각종 질병 등 치료비, 선불금 등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및 취업·창업에 위한 직업훈련비 등 지원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통·번역비 지원	
	-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성매매피해자의 심신의 안정과 치유, 자활의 구체적 목표 제시 등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지 원 기 간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기간 1년 원칙, 연장 가능 기간 2년. 총 3년까지 지원 가능 - 기간 산정 시 공백 기간을 제외하고 월 단위로 산정 예) 의료자원을 2013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받은 후 중단한 경우 : 실제 지원기간은 3개월이므로 2017년 1월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중 복 지 원 불 가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중복지원 불가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을 통하여 의료·법률·직업훈련을 지원받는 경우,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통해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성매매피해자등 1인이 여러 사업을 통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음	

2 사업추진체계



- ① 사업 집행지침 시달 및 예산배정(성평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
 - 시·도별 예산 신청 및 기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분기별로 교부요청서를 접수 후 예산 배분
- ② 사업신청 접수 및 예산 배분(지방자치단체 ↔ 지원시설·상담소)
 - 시설·상담소로부터 사업신청 접수·검토 후 시설별 예산 배분
- ③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지원시설·상담소 → 지방자치단체 → 성평등가족부)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실적자료 확인·집계 작업 수행
- ④ 사업 추진결과 평가 및 점검(성평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 → 지원시설·상담소)

3 사업비 지원내용 및 집행방법

가. 공통사항

- 지원금액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 집행
 - 지원한도액 관리를 위해 개별지원 통합카드[서식 25] 작성
 - 통합카드에 연계 이전 기관의 지원 금액, 기간, 항목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통합카드를 통해 모든 기관에서의 전체 지원액 및 지원기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 통합카드에 상담소,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현장자원사업 등 이전 기관에서 지원받은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중복지원 방지
- 지원기간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기간
 - 1년 원칙, 연장 가능 기간 2년, 총 3년까지 지원 가능
 - 기간 산정 시 공백 기간을 제외하고 월 단위로 산정
 - 예) 의료자원을 '25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받은 후 중단한 경우 : 실제 지원기간은 3개월이므로 '26년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구조지원사업비 초과지급 대상 및 절차

구분	구조지원사업비 초과지급
대상	○ 1인당 지원한도액 1,000만원을 초과하였거나 지원기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구조지원이 반드시 더 필요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 입소·이용자 ※ 타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액도 총 지원액으로 합산
절차	① 초과금액이 300만원 미만 또는 (기간) 5년 미만 경과 - 시설장이 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 지원대상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 - 시설장은 결정 후 15일 내에 지원한도 초과사유 및 초과금액 또는 초과기간을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함 ② 초과 금액이 300만원이상 또는 (기간) 5년 이상 경과 - 시설장의 요청에 의해 시·군·구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3인 이상(성매매방지 관련 시설대표,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결정 - 해당 시설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시설장의 검토결과를 존중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심의 마치고(서면심의 가능) 지급여부 결정

- ‘구조지원사업’은 ‘시설 및 상담소 운영사업’과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
 - 구조지원사업은 세부적으로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과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분하여 관리
 - ▶ 구조지원사업 예산은 타 용도로 사용 불가
- 지출은 시설명의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카드 미가맹점이나 원거리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좌입금 가능하나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 간이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하나 1만원 이상 금액은 불가
- 통장에서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방식 불가
 - 단, 1일 지출액을 한 번에 인출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때 총계정원장(보조부),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는 각각 건별로 갖추어야 함

나. 의료지원

구분	구조지원사업 의료지원
대상	- 지원시설(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¹⁸⁾ 입소·이용자 및 상담소 이용자 * 자활지원센터 이용자는 상담소 및 지원시설 연계를 통해 지원
지원 내용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한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않는 의료비용 - 의료지원에 수반되는 간접비용 지원 (의료진료 동행비, 교통비, 식비, 입원 시 필요한 생활용품, 통·번역비 등) 지원 가능 ▶ 건강보조식품, 보약 등 시행규칙상 규정되지 않은 항목은 제외
집행 방법	- 의료지원 시 치료보호 대상자가 성매매피해자라는 사실을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이 입증·확인하고 의료기관에 치료 의뢰 - 의료지원 대장[서식 19]을 작성하고 진료내역, 의료비영수증,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 - 해바라기센터에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청구 시 진료명세, 의료비 영수증 수령 후 지출

- ▶ 의료지원 범위(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1. 성병감염 여부의 진찰·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3.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의 치료·보호비용
 4.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기분장애, 불안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섭식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성적장애 등]의 치료비용
 5. 성매매로 인하여 임신한 성매매피해자등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한 비용
 6.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 제거비용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
 7. 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8. 그 밖에 성매매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드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영상 및 양전자 단층촬영을 포함한다)

다. 법률지원

구분	구조지원사업 법률지원
대상	- 지원시설(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¹⁹⁾ 입소·이용자 및 상담소 이용자 * 자활지원센터 이용자는 상담소 및 지원시설 연계를 통해 지원
지원 내용	- 성매매 또는 성매매 목적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및 기타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및 증거수집 등을 위한 제비용(조사동행비, 교통비, 숙박비, 녹음비 등 간접비용), 외국인 피해자 통·번역비, 귀국지원 비용 ▶ 법률지원의 제비용도 1인당 지원한도액에 포함되므로 숙박비 등의 간접비용이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집행 방법	- 법률지원대장[서식 20] 및 개별 법률지원 기록카드[서식 21]를 작성 - 변호사 선임의 경우 사업수행자가 법률사무소에 카드결제(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 가능, 현금지급 불가)하고 법률사무소에서 발행한 청구서 및 영수증 첨부 - 증거수집비용 등은 업무수행자가 관련 제 경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급 청구한 경우에 한해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별 카드와 함께 보존

18)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제외

19)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제외

라. 직업훈련지원

구분	구조지원사업 직업훈련지원
대상	○ 지원시설(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 입소·이용자(상담소 제외)
지원 내용	○ 취업·창업 등의 준비 또는 진학을 위한 학원 등 수강료(재료비 포함) 및 직업훈련수당 (월 20만원 이내 - 1인당 지원한도액 1,000만원안에 포함됨) ○ 직업훈련 지원에 수반되는 간접비용 지원(교통비, 식비, 통·번역비 등)
직업 훈련 수당 지원 대상	○ 국공립·민간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평생교육시설, 검정고시 교육기관 등 외부 훈련기관에 수강하는 자로서 훈련수당을 80% 이상인 자 - (직업훈련 시작 첫 달) 훈련수당 월 기준액 바로 지급 / (직업훈련 다음 달부터) 전월 훈련 출석률 대비 80% 이상인 경우에만 매월 훈련수당 지급 ▶ 출석부, 확인서 등 출석률 확인 근거서류 반드시 첨부 ▶ 시설에서 자체 운영하는 검정고시 등 훈련과정은 지원 대상 기관에서 제외
집행 방법	○ 직업훈련 지원대장 [서식 22], 자격증 취득현황 [서식 23], 검정고시 교육 및 응시결과 [서식 24] 등 기록 ○ 사업수행자가 교육기관에 카드결제(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 가능, 현금지급 불가) 하고 교육기관이 발행한 청구서 및 영수증 첨부 - 훈련수당은 수강생 본인 계좌에 입금 ○ 학원 등록 후 교육과정 변경이나 수강포기 시 수강료 여입조치 철저 - 교육기관으로부터 수강료를 반환 받아 영수증을 첨부하여 여입조치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²⁰⁾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참조 ○ 금융기관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수령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수령증을 관련 서류에 증빙으로 첨부

마.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및 상담소 이용자
-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외부)강사료 및 상담료
 - ▶ 단, 청소년의 경우 부모상담도 병행가능
 - 집단상담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성매매피해자 치료 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20)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④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치료·회복 프로그램 유형

유형	프로그램 예시	유형	프로그램 예시
상담치료	• 개별심리상담 • 약물·알콜상담 • 의식개혁 프로그램	정서치료	• 캠프(극기훈련, 지역탐방 등) • 음악치료 • 미술치료 • 모래치료 • 웃음치료 • 독서치료 • 명상(요가) • 문화체험 • 다도체험 • 원예치료 • 자원봉사 • 연극치료 • 글쓰기치료 • 춤치료 • 사물놀이
강의(학습)	• 성교육 • 법률강좌 • 예절교육		
동기부여	• 비전제시 • 직업탐색		
	• 단체심리상담 • 의사소통훈련 • 가족상담		
	• 경제교실 • 건강강좌		
	• 자기경영 • 진로교육		

○ 집행방법

- 구조지원사업 예산 총액의 70% 이내에서 집행하되, 지자체 승인 시 70% 이상 집행 가능하고, 지원 결정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함
- 숙박비 등 집행기준

구분	지급 내용
숙박비	실비(1인당 10만 원 이하) ▶ 단, 1인 숙박비 지급상한액의 합계보다 저렴한 단체숙박일 경우 실소요액 지급
식비	1식 15,000원 이하
간식비	1인 1일 7,000원 이하

- 강사료 집행기준
 - 강사료는 I.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공공지침의 6. 지원·상담·자활시설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공통기준의 강사료 등 사례비 지급기준 준용
-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출
 - 반드시 치료·회복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에만 집행하여야 함
 - ▶ 실제 내용상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해서는 안 됨

- 캠프 프로그램의 운영은 연 3회, 1회당 3박 4일까지 허용하며, 외국여행 등 과도한 비용을 수반하는 프로그램 운영 불가
 - ▶ 단, 항공여행 시 저가항공 이용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은 구체적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소모성 재료비 이외의 비품 구입은 불가
- 성매매피해자 이외의 시설 관계자에 드는 제반비용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솔(진행) 인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
 - ▶ 성매매 피해자 5인이 참여하는 치료캠프에 시설 관계자 등 인솔인원 5인이 참여하는 경우 사업비 지원 불가
 - ▶ 단, 안전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피해자, 신경정신과 진료 중인 피해자 1인에 대하여 인솔인원 각 1인 참여 가능
- 개인적으로 사회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특별한 소견이 있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불가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인에게 동일프로그램을 반복해서 실시하는 것은 지양
 -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출
 -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세금계산서(계산서), 입금증, 카드매출전표, 강사료 지급대상자의 자격 등 증빙서류 첨부

바. 통·번역 지원

구분	통·번역 지원
대상	○ 통·번역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 내용	○ 의료지원, 법률 지원, 직업훈련지원 시 필요한 통·번역 지원(1인당 최대 150만원) ○ 집행기준 :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기준에 따름 1. 통역료 :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0분씩 끊어 남는 부분은 이를 30분으로 본다)로 산정하되, 최초 30분에 대하여는 70,000원, 이후 추가되는 30분에 대하여는 매 30분마다 50,000원을 지급 2. 번역료 :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지급 3. 통역인 여비 지급 가능, 단 대중교통(철도 일반석, 고속버스 등)에 한하여 실비 지원
집행 방법	○ 통·번역인 통장사본 및 이력서, 통·번역비 지급영수증 등 - 지급 시 구체적인 통·번역 내용, 소요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 통·번역 지출 시 통·번역인 이력서에 관련 전문 이력이 명시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구조지원사업 운영 및 사업비 집행 실태에 관한 사항을 각 시설의 지도·점검 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전담의료기관 지정 이용 등
 - 특별자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의 치료를 위하여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으로 봄
 - 상담소 등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담의료기관은 다음의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함
 -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건상담·지도
 - 성매매피해자의 치료 및 신체적·정서적 치료(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 알콜 및 약물중독치료)
 - 성매매피해의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의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임차료 및 장비(기자재) 보강 등을 지원함으로써 입소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나. 지원 내용 및 대상

지원내용	지원대상	주요 참고 사항
시설 임차료 (전세 보증금)	• 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 • 자활지원공동생활시설 • 자활지원센터 • 상담소	▶ 임차시설에 대한 월 임차료(월세)는 기능보강비에서 지원 불가 ▶ 자활지원센터, 자활지원 공동생활시설 등의 설치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설치 예산을 적극 반영
시설 증·개축	• 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자활지원센터	▶ 임차시설 제외 ▶ 시설 신축비 지원 불가 원칙
시설 개·보수	• 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자활지원센터	▶ 임차시설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필요시 예외 인정 ▶ 개·보수 등을 하지 않아 시설안전에 위험이 따르는 경우 (안전진단서 등 첨부)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비용 지원 시, 법인해산 시에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 확인한 후 예산 교부 신청
시설장비 (기자재) 보강	• 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 • 자활지원공동생활시설 • 자활지원센터 • 상담소	▶ 가구·비품 등 노후화 된 장비, 사무용품 교체비용 등

다. 주요 사항

-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의 설치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된 후 1년 이상 운영·상담 실적이 있는 시설
 - ▶ 운영기간 기산일은 시설 신고 수리일로부터 계산
- 보조금 지원 시설의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하여 운영 중인 시설 현황을 사회복지 통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 중인 시설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 불가
- 신·증축비를 지원받아 시설을 운영 중인 보조사업자는 시설 폐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으로 설치된 건축물 등을 10년 이상 보조금의 목적사업 수행만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 지원시설의 설치 연도, 지원횟수, 시설의 자체 환경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정할 수 있음

라. 사업 수행

▶ 사업흐름도 : 기능보강 사업계획서 제출(전년도 상반기) → 현지점검(전년도 8~9월) → 가내시 통보(전년도 10월)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 국고보조금 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집행

- 시설 기능보강비는 상반기 중에 국고보조 및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조속히 추진
- 시설 신축 또는 증·개축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기획 및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련 전문가의 건축 설계 자문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
- 건축규모는 관계공무원이 실태조사를 철저히 수행 후 입소자 수(정원), 이용자 수 및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반영

2 | 지원세부기준

가. 시설 인프라 강화

(가) 시설 신축비 지원

- (1) 지원내용: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은 제외한다.]
- (2) 지원대상: 일반·청소년·외국인 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단체가 시설의 설치·운영 주체일 경우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 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 후 예산교부 신청
 - ▶ 신축시 건축연면적이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일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게 됨을 참고 (동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능보강비 신청 시 자부담 원칙)
 - ▶ 설계용역비는 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고려사항

- 법인(비영리법인 등),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정비 조성사업에 시설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나) 시설 리모델링비 지원

- (1) 지원내용: 매입 또는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 ▶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증설
- (2) 지원대상: 일반·청소년·외국인 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 ▶ 임차시설은 제외
 -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단체가 시설의 설치·운영 주체일 경우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 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 후 예산교부 신청
 - ▶ 리모델링시 건축연면적이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일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게 됨을 참고 (동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능보강비 신청 시 자부담 원칙)
 - ▶ 설계용역비는 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고려사항

- 법인(비영리법인 등),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리모델링 대상 건물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함

나. 시설 환경개선

(가) 시설 증·개축비 지원

(1) 지원내용

- 증축의 경우 기존 건물의 안전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개축의 경우 건물 노후도가 심하여 전체적인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2) 지원대상 : 일반·청소년·외국인 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3) 고려사항

-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증축비 지원은 지양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지원시설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함
 - ※ 특별한 사정 :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 이하 시설 등
- 최종 선정된 증개축 사업자는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시설은 비공개)

(나) 시설 개·보수비 지원

(1) 지원내용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해 시설 건축물의 내·외부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 노후시설 개보수(안전 확보 등), 시설 안전진단 결과 보수대상 시설(전기, 승강기, 소방, 구조 등)

(2) 지원대상 :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3) 고려사항

- 최종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시설은 비공개)

(다) 시설 장비(기자재)비 지원

(1) 지원내용 : 장비 또는 기자재를 확충 또는 교체하는 것

- ▶ 안전용품(소화기, 가스누출탐지기, 화재탐지기 등), 주방용품(조리기구, 자외선 살균기 등), 사무용품(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등), 가구·비품, 공기질 개선물품(공기청정기 등), 학습기자재, 기타(손씻기 시설 등)
- ▶ 안전성이 보증된 KS(기술표준원) 인증 및 단체표준(한국표준협회에 등록된 단체) 인증제품이나 장비를 구매하되, 장애인 제조물품 또는 여성기업인 제조물품을 우선 구매

(2) 지원대상 :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3) 고려사항

- 동일한 조건일 경우 장애인이 입소한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장비비로 구입한 장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장이 관련 목록 등을 구비
- 시설 폐지 시 시·군·구에 반납하여 타 시설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시설 임차료(전세보증금·임대주택보증금) 지원

(1) 지원내용 : 타인의 건물 사용을 위해 전·월세 등의 조건으로 계약할 때 지급하는 금액

- ▶ 다만,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차 계약 시 예외적으로 전세권설정 등기없이 계약가능

(2) 지원대상 :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3) 고려사항

- 지원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야 함
- 시설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된 금액은 국고로 반납 조치
 - ▶ 시·군·구청장 명의로 근저당 혹은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 등을 통하여 임차료 회수장치를 마련할 수 있음
- 임차시설의 월 임차료(연 임차료 포함)는 기능보강비에서 지원 불가
- 지방자치단체와 보조 사업자는 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으로 이전 방안 강구하여야 함
 -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으로 이전하여 월 임차료 발생 시, 월 50만원 한도에서 지자체 승인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로 집행 가능함. 단, 월 30 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고 자 하는 경우 지자체가 집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승인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함

다. 지원 단가

(가) 단가 책정

- 사업규모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책정된 공사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의 책임 하에 단가를 조정·시행
 - * 기능보강 지원 단가는 설계, 감리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 건축공사 비용만을 포함
 - * 국고보조금은 시설 건립을 위한 기자재 등 건축 비용에 총당되어야 함. 건축물 대지의 용도 변경 등 소요비용, 건축허가 조건 이행을 위한 기타 경비(농지전용 부담금, 경계측량비, 설계용역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설계·감리비는 시설 부담을 원칙으로 함
- 총사업비에 시설(운영법인)의 자부담금이 포함된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금 지급 전에 우선하여 집행하고, 보조금 지급 후에는 보조금 집행 비율에 맞춰 자부담금 집행
- 각종 계약행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지도·감독

(나) 고려 사항

- 건축물 준공 연도, 최근 3년간 기능보강 지원내용 등 시설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기능보강 지원 추진계획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시설노후도(전기·소방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서 확인 등), 이용인원 증가여부, 용도변경 등 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고려
- 사업금액의 적절성 : 도면 및 내역서 확인, 시장 조사(표준품셈)

3 사업수행 절차

1. 국고보조금 신청 등

가. 국고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 1) 사업수행기관은 성평등가족부에서 통보한 보조금 확정통지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서, 예산교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함
 -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축 및 리모델링 경우 부지 또는 건물 확보 방안 포함),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자부담분), 사업별 추진일정을 포함
 - ▶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의견서 등
 - 2) 시·군·구 및 시·도는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 조정 후 시·도에서 성평등가족부에 내년도 국고보조금 교부를 상반기 중에 신청함
 - ▶ 설계도 등 각종 제출 서류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검토 후 각 1부씩 보관
 - 가) 사업수행기관이 동일 사업에 대해 성평등가족부 외 타 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중복 지원 여부 면밀히 검토 후, 중복 신청 발견될 경우 해당 사업(중복 부분) 취소를 성평등가족부에 보고
 - 나) 교부신청서 점검표에 맞게 점검하고 누락사항이 없는지 확인(점검일은 시·도에서 최종 점검한 날짜로 기재)
 - 다) 교부신청서, 의견서, 사업계획서의 제출자나 수령자 명의는 사업수행기관에서 시·군·구, 시·도, 성평등가족부로 제출하는 과정마다 각각의 관계자로 수정 제출
 - 라) 첨부한 사업계획서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최종 승인한 사업계획이어야 함
 - 마) 성평등가족부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가 없는 경우는 기 신청 사업계획서를 첨부함
 - 바)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교부신청 시 건축에 관한 종합적 설계도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 사항의 검토 내용을 포함하되 지자체 기본설계 검토의견서(기술직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 다만, 시설의 건축허가기관이 다르거나 건축공사 실시설계(본 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설계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설계도서는 배치도와 평면도만 제출)
- ※ 경미한 개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설계검토의견서 생략 가능

사)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시 자부담이 있을 경우 전년도에 예산 계상 신청 시 자부담 계획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재원확보 내용을 확인(부지 매입비 제외 등)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3)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시 e-호조시스템에 사전 내시등록 완료 후 교부신청

4) 성평등가족부는 제출 자료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나. 국고보조금의 반환 및 선정 취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2)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3)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4) 계획된 기일을 경과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5)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보고가 허위인 경우
- 6) 심의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 7) 타 기관 또는 후원 등을 통하여 기 승인된 사업을 완료한 경우
- 8) 사업계획 전면 변경 등 당초 승인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 9) 그 밖에 국고지원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일반사항〉

- 1) 사업수행기관은 교부 받은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예산 계상 시 제출한 자부담분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함(연도별, 지원분야별 분리 관리)
- 2)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의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기간 내에 예산 집행하여야 함
- 3)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신청 시 부담하기로 한 자부담액은 보조금 교부 전 우선 집행하고 교부 후에는 보조금액 집행비율에 맞춰 자부담액 집행

- 4)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 연도 내 완공이 어려운 공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가 이월 처리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집행잔액 및 이자액 관리〉

- 1) 사업수행기관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 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함
- 2) 단, 아래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국고반납대상이 아님
 -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
 - 나) 사업수행기관 및 시·군·구에서 발생한 이자
 - ▶ 사업수행기관 발생이자: 시·군·구, 시·군·구 발생이자: 시·도의 세입으로 처리하되, 사업수행기관이 시·도인 경우는 국고반납대상임
- 3)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모든 승인사업의 지출이 최종 완료)에는 사업계획변경 등을 통해 집행 잔액을 사용할 수 없음

〈증빙서류〉

- 1)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에 따라 보조금 별도 계정에서 직접 집행된 온라인 지급증빙서, 보조사업비 카드 영수증 처리만 인정
 - 계약에 의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는 계약서 사본 첨부
- 2) 다음의 지출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도록 함
 - 사업비 사업명세서, 별도 계정의 입출금 내역, 사업비 예금이자 발생 및 집행 내역서,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기타〉

동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법』 등 예산 회계 관계법 및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름

라. 보조금에 의해 형성된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

- 1)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보조금에 의해 형성된 중요재산(부동산과 그 종물 등)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2)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기본재산처분 허가 시에는 반드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중요재산 처분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해야 함
- 3)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재단법인 등의 중요재산 처분 승인 신청 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민법 등에서 정한 기본재산처분 허가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류와 시·도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함. 특히 장기차입금(담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차입이후의 정상적인 시설 운영 전망, 차입금의 원활한 상환 가능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야 함
- 4) 다만,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와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음

5) 중요재산

가) 부동산과 그 종물

- (1) 국고보조금으로 신축하여 새로 취득한 경우
- (2) 국고보조금으로 증축하여 기존건물의 규모가 확대되고 효용이 증가한 경우
- (3) 국고보조금으로 건물을 개보수하여 그 효용이 증가한 경우(건물의 내·외부 도색, 방수공사, 창호교체 등 단순 개보수 공사와 100㎡ 이하의 소규모 개보수 공사는 등록 제외)

나) 그 밖의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단가가 5백만 원 이상인 장비, 물품

6) 중요재산의 취득가액 등 기준

- 가) 기능보강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포함한 총액기준으로 하되, 완료 정산된 금액 기준으로 등록
- 나)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되어 이미 등록된 중요재산은 감정평가액이 있을 경우 그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증감액을 등록

7) 중요재산 시스템 등록절차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보고(사업수행기관) → 중요재산 현재가액 조사(성평등가족부) → 자료 제출(기획재정부) → 등록(시스템 운영자)

8) 중요재산 부기등기

가) 사업수행기관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다는 사항 등을 표기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아래와 같이 해야 하며,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함(『보조금법』 제35조의2)

-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사업수행기관이 법인인 경우 '시·도지사'로 대체

나) 위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

2. 사업시행 및 관리절차

가. 사업계획의 변경

1) 사업계획 변경 승인

가) 『보조금법』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국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낙찰차액 활용사업 : 관급자재비 변동·법정경비·안전시설물 설치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 등 시·도 지사가 해당 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음

나) 성평등가족부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지방비 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단기간에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시·도로 변경내시 할 수 있음

다)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만을 보고 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장비보강 목록 변경
- 자체부담 조정에 따른 사업비, 사업량의 변경
- 낙찰 차액 활용 사업
 - ※ 입찰결과에 따라 차액이 발생할 경우 동일한 시설의 다른 기능보강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단, 설계비와 감리비로는 사용 불가)
- 동일 시·도 내에서의 사업지 변경
 - ※ 시·군·구의 사업지 변경 시 해당 시·군·구의 의견 검토 필요
- 연도 내 공사기간 연장(시·군·구 승인사항)
- 사업량 변경 없는 자부담 증가(시·군·구 승인 사항)

2) 사업계획 변경 절차

- 가) 사업계획변경이 있는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와 관련 첨부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함
- 나) 시·군·구 및 시·도는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 조정 후 시·도에서 성평등가족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
- 다) 성평등가족부는 검토 후 승인여부를 시·도에 알림
- 라)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 동 공사에 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함

나.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 관리

1)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 가)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정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등 참고
- 나) 시설 신축 및 증개축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인편의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함
- 다) 공사 설계는 예산교부 전까지 완료 하여야 함
- 라) 신축, 증·개축사업은 공사 설계 및 시공 감리는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함

2) 설계단계 관리

- 가) 사업수행기관은 기 승인된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건축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함
-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반영되도록 설계
- 다) 건축설계도서는 기본설계도서와 실시설계도서로 구분하며 기본설계도서는 시·도, 실시설계도서는 시·군·구의 사전 심의 완료 후 진행
- 라) 심의 요구 시 필요한 제출 양식 및 첨부 서류는 심의 실시 지자체에서 정하고, 사업수행기관은 해당 서류 구비하여 심의 요구하여야 함
- 마) 각 심의단계에서 제시한 의견은 반영하여야 하며, 제반 여건상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심의 실시 지자체와 추가 협의 하여야 함

3) 설계심의 절차

〈기본설계 심의(1차 심의)〉

- 가) 사업수행기관은 지원 금액 및 평가의견에 맞춰 구체적인 기본설계안을 작성하고 기본설계 심의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나) 시·군·구 및 시·도는 사업 수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 후 심의 결과를 해당 사업수행기관에 알림
- 다) 심의결과 “부적합”의 경우 건축 기본설계 재심의 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시·군·구 및 시·도는 재심의 후 결과를 해당 사업수행기관에 알림
- 라) 기본설계심의가 승인되지 않으면 실시설계 등의 추후 작업을 진행할 수 없음
- 마)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시 설계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배치도, 평면도 첨부)

〈실시설계 심의(2차 심의)〉

- 가) 사업수행기관은 기본설계 심의내용을 반영하여 실시 설계안을 작성하고 실시 설계 심의신청서와 관련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심의 요청
 - 단, 총 사업비 7억 원 미만 공사는 실시설계 심의 생략할 수 있음

- 나) 시·군·구는 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공사비 내역 및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상세설계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고 결과를 사업수행기관에 알림
- 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에는 건축, 설비 등 전문분야를 감안하고 세부 사항은 시·군·구에서 결정함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의견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사업비 내역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용역) 계약심사’로 대신할 수 있음
- 다) 심의결과 “부적합” 경우 건축 실시설계 재심의 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 구비하여 시·군·구에 재심의 요청하고, 시·군·구는 재심의 후 결과를 해당 사업수행기관에 알림
- 라) 실시설계심의가 승인되지 않으면 입찰, 공사 등의 추후작업을 진행할 수 없음

〈설계변경 심의〉

- 가) 착공 후 설계안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나) 단, 불가피하게 기승인 된 설계도의 변경, 구조상의 변경 등 주요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설계변경 심의를 거친 후 진행함(경미한 변경은 제외)
- 다) 설계변경 심의 절차는 기본설계 심의와 동일함

4) 입찰 및 계약 방법

- 가) 입찰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 병행 가능), 계약방법은 사회 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계약법 규정 준용

지명경쟁의 경우

-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일반공사) 또는 1억원 이하인 공사(전문공사)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 매각 또는 매입 등

수의계약의 경우

-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일반공사) 또는 1억원 이하인 공사(전문공사)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등 일반 경쟁을 피하기 위한 불필요한 분할 수의계약 발주 금지

나) 시설공사는 각 개별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건축공사 등 분리 발주하여야 함

다) 장비 구입은 적정한 가격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나라장터를 통한 물품 계약을 권장하며,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교 견적을 통해 단가 적정성을 확인하고, 반드시 관할 시·군·구의 시설 담당부서와 감사담당부서로부터 계약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고, 납품시에도 시·군·구 담당자 입회하에 납품을 검수토록 함

5) 입찰의 참가 자격 및 낙찰자 결정

가) 경쟁입찰에 있어 부당한 제한으로 인한 참여업체 제한 금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참가자격외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참가를 제한 하는 것은 금지함

단, 시설 공사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계약을 포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1항 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보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방법 부적정 또는 적격심사 미 실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또한 동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 능력, 재무상태 및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 심사 후 낙찰자 결정

6) 착공보고 절차

가) 사업수행기관은 공사 착공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나) 착공보고서는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함

7) 시설 완료보고 절차

※ 완료보고는 실적(정산)보고로 일원화하여 제출

8) 시공부문 관리

- 가) 사업수행기관은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방수 및 단열공사, 마감공사, 설비공사 등과 같은 주요공정에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업수행에 최선을 기해야 함
- 나) 시설 신축의 경우 완제품 및 원자재의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진입로 및 공간을 확보하고, 입소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풍 및 소음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함
- 다)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해야 함
- 라)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지방계약법』에 의거하여 선정
- 마) 2개 년도에 걸쳐 계속공사를 할 경우에는 국가재정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하여 선정
- 바)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강구할 것
- 사) 공사금액 과다집행 등 산출내역서 및 설계내역서와 다른 시공 금지

9) 시설공사의 경비 부담

- 가) 공사에 필요한 공공요금 성격의 부담금은 시공업체 부담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으로서 준공검사를 완료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전기료와 상·하수도료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비용(경비)으로서 시공업체가 납부하여야 함
- 나) 하자검사 철저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이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실시
 - 동법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방수(3년)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함
- 다) 지연배상금 징수 및 대금지급의 부적정

라) 준공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 징수

- 『지방계약법』 제30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함

마) 선금금 지급의 적정 및 사후관리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선금지급 가능하며, 총 공사비 지급은 선금 의무지급률에 따른 선금과 공정률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선금 의무지급률〉

공사금액	선금 의무지급 비율
100억 원 이상	30%
20억 원 ~ 100억 원 미만	40%
20억 원 미만	50%

- 또한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목적에 따라 노임지급, 자재확보 등을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급 후 사용처 확인 등 사후 관리 필요

다. 장비(기자재) 부문 관리

1) 장비변경심의 절차

가)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금액 및 평가 의견에 따라 확정된 목록대로 장비를 구매해야 함

나) 사업수행기관의 상황 변경 등에 따라 승인된 장비의 종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장비변경 심의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 단, 승인된 장비의 사양 및 수량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에서 승인 후 성평등가족부에 결과 보고

다) 시·군·구 및 시·도는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 후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부에 장비변경심의를 요청

라) 성평등가족부는 검토 후 심의 결과를 시·도에 알림

마) 심의가 승인되지 않으면 장비를 변경하여 구매할 수 없음

2) 기타 사항(A/S, 입찰조건 등)

- 가) 신규 구입하는 장비는 반드시 A/S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비 구매 계약 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분명히 포함시켜야 함
(예 : 하자보증보험증권, 이행보증증권, 제조자의 사후관리각서 요구 등)
- 나) 국고지원사업 장비는 국고지원으로 구매한 장비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비별로 관리 라벨 등을 붙여 표식토록 함

라. 임차보증금 지원

- 1) 근저당 및 전세권 설정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임차인 부담분) 등 임차료 지원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은 사업수행기관이 부담함
- 2) 임대 계약 체결시 보증금에 사업수행기관의 자부담이 포함된 경우에는 임대 계약서에 보조금과 자부담 분을 함께 표시하여 공증하며, 자부담은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기관에게 반환함
- 3) 시·군·구청장은 임대계약 체결 전에 임차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및 압류 등 임차기간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저해요소 여부를 확인하고, 시·군·구청장 명의의 근저당 혹은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 등을 통하여 임차료 회수장치를 마련함
※ 기존 국고보조금으로 임차한 시설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해당

3.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보조사업자의 성실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신청
- 편성된 시설 예산의 관·항 간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6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에서 국고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숙지하지 못해 범하는 사소한 기재상의 오류 또는 중대한 업무상의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관련 회계교육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예산집행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함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시설 신축 부지의 미확정 등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
-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한 후 시설물 설치사항 등의 사진을 첨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등 증빙서와 시설물에 대한 법인 및 사업수행자 소유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단,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소유 토지 사용을 허가받아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동 사실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토지의 사용권이 영구 또는 반영구적이어야 함
- 시설 등의 신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함
 - ※ 신축부지로 매입한 급경사 임야지역 또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인해 사업 중단 우려, 산업단지 조성 등 도시계획으로 부지 이전, 주택재개발지구 등은 사전 타당성 검토 필요
-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공사 준공, 장비 구입)에 건물이나 장비의 활용을 통한 시설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운영계획을 검토 수립함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함

4. 사업실적 관리

가. 사업 모니터링

- 1) 사업수행기관은 6월말 기준으로 7월 5일까지 집행 현황보고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는 산하 사업수행기관의 집행현황을 취합, 검토 후 성평등가족부에 7.15까지 제출
- 2) 연도별, 지원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함

나. 실적보고(정산보고)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수행기관에서 국고보조금이 3억 원 이상인 보조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보조금법 제27조, 기획재정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 나)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방법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을 적용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참고

2) 회계연도 종료 시

- 가) 사업수행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보고서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는 산하 사업수행기관의 실적보고서를 취합, 검토 후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함
- 나) 사업 실적보고서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해 1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해야 함
- 다) 성평등가족부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사업실적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3) 사업완료 시

- 가) 사업수행기관은 시설 또는 장비보강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완료 관련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도는 자료 검토 후 성평등가족부에 사업완료 실적 보고서를 제출함
- 나) 사업 완료는 지원 목적 달성하고 별도계좌에서 해당 사업비가 마지막으로 지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다) 사업수행기관은 시설물 설치사항 등의 사진을 첨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준공 및 기성 확인필증 등 증빙서류와 시설물에 대한 법인 및 사업수행자의 소유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단, 동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소유 토지 사용을 허가받아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동 사실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이 경우 해당 토지의 사용권이 영구 또는 반영구적일 것)
- 라) 잔여사업비는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함

마) 사업완료 실적보고서는 사업이 완료된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해 1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해야 함

바) 성평등가족부는 사업 완료에 따른 실제 사용 및 제반 사항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4) 사업폐지 시

- 시설 신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받아 운영하던 시설 등이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28조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폐지하는 경우 신축 또는 리모델링비
반납
- 기자재비 및 장비비 등을 지원받아 구입한 물품은 시설의 폐지 시 시·군·구에
반납하여 타 시설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공사비(칸막이, 보일러 등)는 내용연수 10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씩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 받음
- 기자재가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교부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

사 업 별	제 출 서 류
공통서류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서식 29] ☐ 시·도지사의 의견서 : [서식 30] ☐ 기능보강사업 신청내역서(총괄표) : [서식 31] ☐ 교부신청서 점검표 [서식 32]
시설 신축 리모델링	☐ 시설 신축·리모델링 계획서 ① 시설 신축 - 시설 신축(리모델링)계획서[서식 35], 사업자 조사표[서식 33] - 이전 신축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사본 각 1부(건물, 토지분 매입가격 구분표시) - 기술직공무원 또는 건축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의 설계검토의견서 1부(시·도 보관) [서식 34] - 기술직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공사견적서 1부(시·도 보관) ② 시설 리모델링 - 시설 신축(리모델링)계획서[서식 35], 사업자 조사표[서식 33] - 건물매입 후 리모델링 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사본 각 1부(건물, 토지분 매입가격 구분표시) - 기술직공무원 또는 건축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의 설계검토의견서 1부(시·도 보관) [서식 34] - 기술직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공사견적서 1부(시·도 보관)
시설 증·개축	○ 시설 증개축계획서 [서식 36] ○ 기술직공무원 또는 건축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의 설계검토의견서 1부(시·도 보관) [서식 34] ○ 기술직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공사견적서 1부(시·도 보관)
시설 개·보수	○ 시설 개·보수계획서 [서식 37] ○ 기술직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공사견적서 1부(시·도 보관)
시설장비 (기자재) 구입	○ 시설 장비(기자재)구입계획서 [서식 38]
시설임차 (전세 또는 임대주택 보증금)	○ 시설 임차계획서 [서식 39]

VI-1 추진체계 및 기준

1 사업개요

구 분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구 현장기능강화사업)
목 적	○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현장 접근성을 높인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와 집결지 정비 기반 마련 - 집결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유린 방지 및 탈성매매 지원 - 성매매여성에게 탈업소 및 탈성매매 계기를 제공, 궁극적으로 알선업주의 사업 포기 및 전향 유도
기 본 운 영 방 향	○ 열린터 운영 및 아웃리치 강화를 통한 탈업소 여성에 대한 지원내용 확충 ○ 자활지원체계와의 연계성·통일성을 도모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안정성 제고 ○ 지자체의 집결지 폐쇄·정비 대책과의 연계 강화 - 지자체에서 수립한 집결지 폐쇄·정비 대책을 기반으로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집결지 폐쇄·정비 대책 추진 주체로서의 지자체와 현장지원사업 주체로서의 사업수행자의 역할 분담
대 상	○ 개별지원대상 : 집결지 성매매여성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를 포함한 관련 기록 작성과 일련의 지원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함을 전제(비공개 원칙) - 자활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엄선 ▶ 탈업소 및 탈성매매 한 자는 지원시설, 상담소,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지원 - 지원대상의 해당여부 판단은 사업수행자가 심층 상담과 사례회의 등을 거쳐 판단 하되 상담일지, 상담자 기본카드[서식 26], 회의록 등 증빙서류 구비 - 내방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이 가능한 사업 참여 대상에 대해서는 개인별 파일을 작성·관리

구 분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사 업 내 용	○ 심신치료 및 정서회복 - 아웃리치 위주 상담활동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보하고,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신뢰관계 형성 - 상담 초기 종합건강진단 실시, 성매매로 인하여 얻게 된 제반 질병(정신과 질환 포함) 치료 지원 및 심리치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 - 업주와의 선불금을 포함한 빚 문제 등 제반 민·형사상 해결과제가 있는 경우 변호사 자문 및 소송관련 비용을 지원 - 공적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 신용 불량자가 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및 파산절차 등 지원 - 기타 탈업소 의지가 있음에도 이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각종 요인들을 최대한 발굴, 그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지원(예산조치 등 필요) ○ 자활기반 마련 지원 - 개인별 수준에 따라 직업탐색프로그램 제공 - 직업훈련(진학 포함) 등을 통한 취업준비 과정 지원 ○ 탈업소 및 탈성매매 유도 - 상담소에서 개별지원기간 종료와 동시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자립지원 공동 생활시설 등에 연계 유도(취·창업 등의 준비과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연계) - 주거문제는 연계시설에서의 자활과정을 거치고 자립단계에 들어선 자에 대해 자립지원 공동생활 및 공공주택 입주 등 알선 ○ 상담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 상담 참여 후 중도 포기자 또는 지원기간이 만료된 자를 대상으로 지속적 사후 관리를 통하여 탈업소 유도 - 지원기간 도중 또는 만료 후 탈업소한 자(특히 귀가한 자)에 대한 지속 관리 - 취업 또는 창업한 자에 대하여도 필요 시 지원을 계속 -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 상담 및 홍보 등에 활용하고 해당자를 동료상담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① 성평등가족부

- 기본정책 및 세부 운영지침 수립·시달
- 사업 대상지역 및 사업운영 주체 선정
- 사업운영 재원 확보 및 지원
- 사업 수행상태 수시 점검, 평가 및 피드백
- 중앙단위에서 대외기관 협조 확보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당해 시·도 및 시·군·구)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예산 배분
- 사업 지도·점검 및 정산보고
- 집결지역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역 내 홍보활동 및 주민의식 개선사업 추진
-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사회보장, 지역개발 등 유관부서 협조 확보

③ 사업수행자(집결지 인근 성매매피해상담소)

- 선정기준
 - 해당지역 사업수행 경험(업소진입 및 현장접근상담 가능 여부)
 - 관련 전문인력 보유 또는 동원능력
 - 사업지역에 대한 이해도(대상여성의 연령구조, 여성 및 업주들의 조직화 정도, 상주인원 또는 출퇴근 여부, 영업형태, 자활수요 등)
 - 경찰 및 지자체 등의 협조 및 지지획득 능력
 - 연계 지원시설 확보 여부 등
-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전담팀 구성 운영
 -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터에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
 - 사업 운영과 관련한 사무관리, 각종 통계(D/B) 및 보고업무 수행
 - 재무회계·재산관리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재무회계관리 지침 준용
- 집결지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서비스 실시
 -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상담활동,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창업·취업알선 등
- 기타 부대사업 실시
 - 집결지 여성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④ 협력기관

- 경찰 :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
 - 해당 집결지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단속
 - 상담활동가 신변 안전보호
 - 구출 또는 입건된 성매매 여성 보호 및 지원 연계
 - 기타 업주 등 당해 지역 동향정보 공유 등
- 소방관서 : 집결지 내 시설안전점검 등을 성매매 방지활동과 연계
- 기타 : 검찰, 법원, 지방노동지청, 세무서, 보건소 등
 - 입건된 성매매사범 처리 관련 지원
 - 취업 및 창업알선 지원
 - 세금 탈루업자 탈세조사, AIDS 예방활동 연계 등

⑤ 지원그룹

- 지원시설 : 청소년, 일반, 외국인지원시설 등
 - 탈업소 후 보호 및 자활지원 연계를 위하여 필수적 확보
- 의료지원분야 : 전담병원 또는 전문의 확보
- 법률전문가 : 전담 자문변호사 섭외로 전문성 확보
- 기타민간단체 : 여성단체, 사회복지단체,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3 사업수행 기준

가. 사업의 시행 및 종료

① 사업계획의 제출 및 변경

- 사업 수행 시설(단체) 등은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계획의 변경 시에도 이와 같음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사업수행자의 사업계획서에 해당 집결지 폐쇄·정비에 관한 자체계획서를 첨부, 성평등가족부에 예산 배정 요청
- 성평등가족부는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시·도별 예산 배정
 - 사업 신규 시행 시에는 시행 여부에 관한 심사절차를 거칠 수 있음
 - ▶ 사업수행자의 현장접근성, 활동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대상 지역 선정

②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해당 집결지역 현황
 - 종사여성 관련 사항 : 종사여성 규모, 연령, 경력분포, 근무형태(출퇴근 여부 등), 조직화 정도(대표자나 리더 영향력, 활동상황 등) 등
 - 업소 관련 사항 : 업소 수, 영업형태(주점·숙박 등 겸업 여부 등), 주요 고객층, 업주의 조직화 수준(조직화된 경우 대표자 또는 리더 영향력, 활동상황 등), 영업규모(매출액 등) 등
 - 기타 주변여건 등 : 위치적 특성, 관련 상권, 경찰 단속행태, 기타
- 사업수행자의 활동상황
 - 시설운영현황 : 종사자 현황, 집결지 관련 운영실적 등
 - 집결지 활동실적 : 방문상담, 홍보사업, 지원내용 등
 - 기타 대외활동 등 특기사항
- 집결지 사업추진전략
 -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접근방법
 - 전담인력 확보 계획(종사 예정자 인적사항 포함)
 - 외부 자원동원 및 유관기관 지지획득 방안
- 주요 사업 추진일정
 - 월별로 작성 : 업소 종사여성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단계별로 제시

- 주요 사업비 투입계획
 - 개인별 지원 사업
 - 홍보 등 포괄적 사업 추진계획
- 집결지 폐쇄·정비에 관한 계획(지자체 작성)
 - 집결지 정비계획의 수립 여부 및 가능성
 - 집결지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내용(관계부서 협조)
 - 공중위생, 식품위생, 건축, 세무, 소방, 학교보건 등 관계법에 따른 집결지 성매매 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점검 계획
 -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의 구성·운영 계획
 - 집결지 폐쇄·축소를 위한 교육, 캠페인 등 기타 자체 대책 내용

③ 지역별 사업규모

- 사업 진행 과정에서 현장방문 및 홍보 등으로 지원요구가 증대할 경우 그 수요에 대응하여 연차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지 여부 판단
- 지속관리·지원 대상자²¹⁾는 지역별로 4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함
- 단, 연도별 사업규모(사업대상 및 종사 인력)는 가용재원과 지역 사업 시행 기간의 경과, 사업수행자의 실적과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에서 일괄 조정

나.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 주관 : 시·군·구(시·도)
 - ▶ 시·군·구 주관인 원칙이나, 시·도의 규모 등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에서 운영(사업수행자 주관)
- 구성(예시)
 - 시·군·구(시·도)의 여성정책과 및 유관부서(환경위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의 국장 또는 과장
 -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 관할 소방서, 세무서, 보건소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소관 부서장
 - 해당지역 여성폭력 관련 전담 검사

21) 지원기간 내 탈업소 내지 탈성매매를 목표로 하고 자발적·지속적 내방상담이 가능한 인원(관리카드 작성자) 또는 개별지원가능 인원

- 시·도 및 시·군·구 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원
- 사업수행자 대표 또는 책임자, 지역 성매매피해자 관련 상담소·지원시설의 장 또는 책임자 등
 - ▶ 필요시 부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관 국장이 주재하는 협의체와 소관 과(팀)장이 주재하는 실무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음
 - ▶ 지역 '성매매방지대책협의회' 등이 이미 구성·운영되고 있는 경우, 동 협의체와 통합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협의체를 별도 구성·운영
- 역할 : 집결지 정비기반 조성과 현장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단위 정보공유, 세부추진방안 협의 및 기관별 진행상황 점검
- 운영 : 분기 1회 이상
- 행정사항
 - 지역협의체 운영 예산은 시·군·구에서 직접 집행
 -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당해연도 지역협의체 운영계획과 전년도 운영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다.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역할과 기능

구분	현장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역할 및 기능
시 설	○ 기존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물적 시설을 이용하고 상담활동 및 프로그램 등 수행에 필요한 공간 등은 현지 특성을 고려, 배치
상담원	○ 정원 : 센터 당 2명 기준으로 운영. 다만, 집결지 규모, 지원인원, 재개발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배정 ○ 자격 : 상담원의 법정자격을 갖춘 자 ▶ 법정 상담원 양성교육만 이수하지 못한 자는 '수습상담원'으로 칭하되 상담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동 정원으로 간주
행 정 사 항	○ 종사자 자격증빙 관련서류, 근무상황부, 급여대장 등을 구비 ○ 사업수행자는 현장지원사업의 인력·조직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구 분	지 역	사업수행주체	비 고
'09. 1~ (시범 사업 지역)	부산 충무동·초장동	(사)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성매매피해상담소 '살림'	
	인천 송의동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부설 '희희낙낙'	사업종료 ('20)
	부산 범전동	'꿈아리' 부전현장상담센터	사업종료 ('14)
	경기 성남 중동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With Us'	사업종료 ('23)
'09. 7~	서울 영등포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	
	광주 대인동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사업종료 ('20)
	전북 전주 서노송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사업종료 ('21)
	경북 포항 대흥동	경북 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경남 창원 신포동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업종료 ('23)
'10. 1~	서울 천호동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사업종료 ('23)
	경기 파주 연풍리·대능리	(사)에코젠더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	
	대구 도원동	(사)대구여성인권센터상담소 '힘내'	사업종료 ('20)
	강원 원주·춘천	(사)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춘천길잡이의집	사업종료 ('13)
'11. 1~	경기 수원 매산로	성매매피해상담소 '어깨동무'	사업종료 ('22)
'15.1~	부산 해운대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사업종료 ('20)
'18.1~	서울 성북구	여성인권센터 '보다'	
	대전 중양동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21.1~	부산 동래구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사업종료 ('23)
'22.1~	경기 평택 삼리	평택시 여성인권상담센터 '품'	신규('22)
'22.1~	전북 전주 다가동·전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신규('22)

5 국고보조금 지원

가. 지원 항목(표 1 참조)

- 예산항목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개별지원비를 타 항목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자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표 1. 지원 항목의 구성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운영비	인건비	종사자 급여, 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금	별도 기준
	활동비	상담활동비, 출장비, 아웃리치 활동비	
	운영비	상담소 운영비, 열린터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비	아웃리치 물품비, 예비교육 프로그램비	
개 별 지원비	의료지원	건강검진비 및 치료비	
	법률지원	변호사 선임료, 증거수집비 등	
	직업훈련지원	직업훈련 및 검정고시 교육비	
	직업훈련수당	직업훈련 참여자 지원비	
지역협의체 운영비		회의수당, 회의 운영비 등	지자체 집행

나. 예산편성 및 집행

- 해당지역의 사업규모와 사업운영(예정)자 및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 예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모든 항목은 집결지 여성 대상 프로그램 등 사업에 한정하고 기존 시설 등의 업무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
 - 예) 집결지 관련 홍보·교육 활동은 상담소 홍보·교육활동 병행 추진 가능

다. 지원 내역

○ 개별지원비 지원

- 기본적인 사항은 구조지원사업에서의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내용 및 집행 방법을 준용(피해자 개별지원비 예산은 타용도 전용 불가)
- 그 외 사항은 아래 표의 '현장지원사업 개별지원비 지원'에 따름

구 분	현장지원사업 개별지원비 지원(구조지원사업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의료 지원	○ 대상: 집결지 성매매여성으로서 성매매 또는 성매매업소 생활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질환 또는 부상을 입은 자 (서식 26-상담자 기본카드 작성) ○ 내용: 종합건강검진비용(1인당 60만원 이내)
법률 지원	○ 대상: 집결지 성매매여성으로서 성매매 또는 성매매 목적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및 기타 법적·행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는 자 (서식 26-상담자 기본카드 작성)
직업 훈련 지원	○ 대상: 집결지 성매매여성으로 자활프로그램 참여도 등을 통해 자활의지가 검증된 자로서 취업·창업 준비를 위한 외부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 또는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 - 취업, 창업, 진학 준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훈련 종목에 대하여 지원 (서식 26-상담자 기본카드 작성)
직업 훈련 수당 지급 조건	○ (직업훈련 첫 달) 훈련수당 바로 지급 → (2회차) 전월 출석률 대비 20% 이상인 경우 지급 → (3회차) 전월 출석률 대비 50% 이상인 경우 지급 → (4회차) 전월 출석률 대비 80% 이상인 경우 지급 ○ 직업훈련수당은 수강생 본인 계좌에 직접 입금 ▶ 지급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선지급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상기 조건이 충족된 이후 지급

6 제 경비 집행지침

가. 일반원칙

- 예산의 집행은 사업운영지침 및 지자체와의 협약 등에 의해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라 각 항목별 예산액(교부액) 범위 내 집행
- 사업수행자는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에 대한 별도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과 혼용하여서는 안 됨
 -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 사업소관과 구분·관리
 - 당해 법인 또는 단체 명의의 사업 통장을 별도 개설

- 사업비는 지출결의서[서식 15]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 내역을 회계장부에 반드시 기록·관리하여야 함
 -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비 통장의 지출액 및 회계장부의 지출액과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는 일치하여야 함
- 지출한 자금에 대해 매 사항별로 증빙서류를 징구·보존하여야 함
 - 입금의뢰서, 집행처리영수증 및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의 뒷면에 첨부
 - 영수증은 사업비 지출내역에 기재된 항목의 순서별로 편철하고 사업비 집행 영수증은 반드시 원본으로 보관
 - 각종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 첨부
- 지출은 상담소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카드 미가맹점이나 원거리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좌입금 가능하나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 간이영수증 증빙 가능하나 1만원 이상 금액 불가
- 각종 장부와 경비의 지출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

나. 인건비·활동비

- 인건비는 지원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행단체(법인 또는 지자체)의 자체 기준에 의거하여 지원
- 인건비와 활동비는 1개월의 근무일수를 채운 경우에 지급
 - 근무 일수에 못 미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상담활동비는 현장상담원을 대상으로 지급(1일 최대 10,000원)하며 상담원 양성교육 등 외부교육 참가 일수는 상담활동비 지급 일수에서 제외 후 일할 계산
 -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준수
- 아웃리치 활동비
 - 아웃리치에 참여한 집결지 전담상담원 등 아웃리치 활동을 수행한 상담원 등에게 지급
 - 단순 참가가 아닌 아웃리치 활동에 전면 참여한 경우만 지급할 수 있으며 아웃리치 1회당 최대 50,000원 지급(1인 기준)
 - ▶ 집결지 전담 상담원 뿐만 아니라 소장, 일반상담원 등에게도 지급 가능(자원봉사자 등 제외)

다. 운영비

- 상담소 운영비
 - 상담소에서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관리비,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
- 열린터 프로그램 운영비
 - 강사비, 도서·교재 구입비, 프로그램 재료비 등의 직접비
 - 난방, 전기, 수도 등 간접비
 - ▶ 소풍, 외부 문화체험 등 열린터의 기능과 직접 관계가 없는 지출은 불가
 - 열린터 공간 월 임차료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월 100만원(연 1,200만원) 한도에서 지자체 승인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로 집행 가능
 - ▶ 다만, 지자체에서 집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을 초과하여 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함

라. 사업비

- 아웃리치 물품구입비
 - 아웃리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용 물품 구입
 -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이 상담소에서 수행하는 자활지원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안내
 - 예산 범위 내에서 아웃리치 횟수, 집결지 내 피해여성 수에 따라 집행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적절한 물품을 선정하여야 함
- 예비교육 프로그램비
 - 개별지원 이전 또는 지원기간 동안 사회화를 위한 예비교육을 시행하여 개별 지원의 성과를 높이고 공감대 형성에 기여
 - 사회적응 프로그램, 심리정서 프로그램,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
 - ▶ 대중교통 이용, 만원으로 쇼핑하기, 문화체험, 직업체험

마. 지역협의체 운영비

- 예산액 : 지역별 500천원 이내(국비, 지방비 포함) 배정 또는 지자체 자체예산 활용
- 지역협의체 개최 횟수 : 1분기 1회 이상
- 예산내역 : 회의 운영비 및 회의수당 등으로 지급

7 | 행정사항

가. 운영·정산 실적 보고 : 반기별

- 상담소 및 지원시설 : 매 반기 다음달 15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 : 매 반기 다음달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 매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

나.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점검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세부내역을 검토·조정한 후 성평등가족부에 제출
 - ▶ 사업계획에는 예산의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기재·작성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

VI-2 『열린터』 운영

1 | 개 요

- 집결지 성매매여성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심층상담 및 집결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설치·운영

2 | 지원내역

- 열린터 임차액의 국고보조금 지원('09년 8개소)
- 열린터 프로그램운영비 지원('11년부터 지원)
 - 열린터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상설 개방으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열린터로 기능(간이쉼터, 긴급피난처, 심층상담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직·간접 비용 지원
 - ▶ 열린터의 기능과 관계없는 소품, 외부 문화체험 등은 제외

3 | 현 황(5개소)

지 역	집결지명	운영기관
서울 영등포	영등포역전	다시함께상담센터
서울 성북구	미아리 텍사스	여성인권센터 보다
경기 파주 대능리	파주 용주골	여성인권지원센터 쉬고
전북 전주 다가동·전동	선화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경북 포항 대흥동	포항중앙대학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4 주요 운영내용

- 도서비치 및 아늑한 실내 환경으로 편안한 쉼터 조성
- 집결지 여성들의 심리상담실
-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구조 시 위기상담 및 긴급피난처로 활용
- 프로그램 실시
 - 예비교육 프로그램 진행
 - 직업훈련 프로그램
 - 정기적인 공동식사 프로그램
 - 인권교육, 건강진료, 무료법률 상담 등
- 집결지 성매매여성의 소통의 장 형성 등
 - ▶ 이외에도 해당 집결지 성매매 피해여성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및 운용 가능

5 행정사항

- 기초지자체장 명의로 임차계약서 작성 및 전세권 등기 설정
- 계약기간 만료되면 기초지자체장 명의로 재계약 및 전세권 재설정
 - 변동사항 발생 시 반드시 성평등가족부에 변경된 계약서 및 전세권 등기사본을 송부
- 열린터 폐지 시 임차보증금 중 국비로 지원된 금액은 국고로 반납
- 열린터와 상담소는 동일 주소에 위치하여서는 안 됨
 - 단, 상담소가 집결지에 인접해 있고 열린터를 다른 주소지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소와 분리하여 별도 공간에서 운영할 수 있음



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자’로 규정됨
 -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20.5.19, 시행 ’20.11.20)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규정은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 규정을 포함하도록 함
- 성매매 등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원활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조기 발견,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운영

나. 기본 방향

- 성매매 등 성착취로 유입되는 피해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 상담 및 의료·법률 등 지원을 통한 일상생활 복귀
- 피해아동·청소년의 자립·자활 역량강화 도모
-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매 등 성착취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원기관 안내 및 성범죄 피해예방활동 전개
- 유관기관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피해아동·청소년 적극 대응

다. 법적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 「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 「청소년성보호법」 제47조의 2 신설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 주요 역할

□ 성평등가족부

-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세부지침 마련
-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전반에 대한 총괄
- 지자체와 합동 현장 지도·점검 실시
- 지원센터 사업수행인력 역량강화(중앙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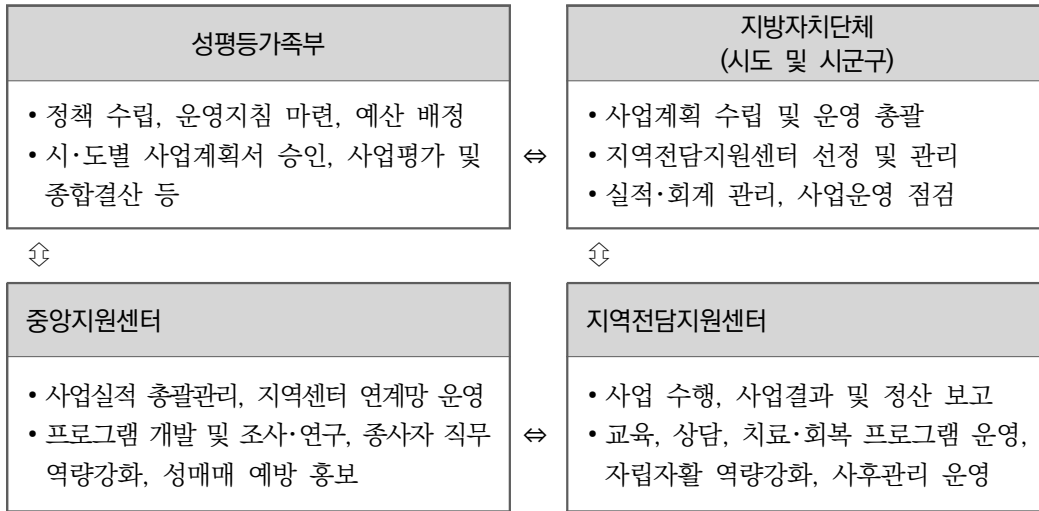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사업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지원센터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계획 승인
- 현장 지도·점검 및 사업수행인력 현황 관리
- 지원센터 조직·인사·급여·회계 및 사업 운영 관리·감독
- 사업결과 평가 및 보조금 정산 보고

□ 사업 수행기관(지역전담지원센터)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 사업수행인력 임면 및 보고
- 사업 추진 상황, 추진 실적 등 보고
- 사업결과 및 보조금 정산 보고
-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마. 사업추진 체계



바. 주요 사업내용

- 성매매등 성착취 신고의 접수 및 상담(온라인·거리 등), 사이버 아웃리치, 기관 연계 등을 통한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 *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부터 성착취 피해가 우려되는 아동·청소년 지원 포함
- 피해아동·청소년 발견 시 성착취 재피해 예방을 위한 생계형 긴급 지원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상담1388 등 연계
-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 형성 도모, 피해아동·청소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진로탐색, 직업훈련, 의료·법률서비스* 지원 등으로 피해아동·청소년 자립·자활 역량강화
 - * (필요시) 경·검 피해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
- 성매매 등 성착취에 유입된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인(만 19세*)이 될 때 까지 종합적 사례관리 지원
 - * 다만, 지적장애 또는 인지능력이 한정된 피해아동·청소년의 경우 발달 정도가 차이가 있으므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만 24세까지 지원 가능
- 성매매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

가. 센터 주요기능

1) 중앙지원센터

- (사업 총괄관리) 정보화 관리, 행정·회계지원 등 사업수행 지원, 시설별 운영 실적 관리, 성매매 예방 홍보
- (지역센터 연계) 지역센터 간 연계망 구축·운영, 관련기관 협력사업 지원, 지역센터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 지원
-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연구) 상담·치료회복, 피해자 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 성착취 가해·피해 아동·청소년 특성분석 등 조사 연구
-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지원센터 종사자 교육을 통해 초기 상담·지원 역량 강화, 신규종사자 양성교육 실시

2) 지역전담지원센터

- (조기발견) 성매매 등 성착취 신고의 접수 및 상담, 사이버 아웃리치, 기관연계 등을 통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 (긴급구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발견 시 성착취 재피해 예방을 위한 생계형 긴급 지원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상담1388 연계
- (상담 및 치료·회복)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형성 도모, 피해청소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자립·자활 역량강화) 안정적인 거주지 지원, 학력취득 및 취업준비, 의료 및 법률서비스* 지원 등 사회적 지지망 제공
 - * (필요시) 경·검 피해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
- (사후지원) 아동·청소년과 서비스 종결 상태이나 이후 별도의 상담이나 멘토링이 필요한 경우 성인(만 19세)이 될 때 까지 종합적 사례관리 지원
 - * 다만, 지적장애 또는 인지능력이 한정된 피해아동·청소년의 경우 만 24세까지 지원 가능

〈주요사업 총괄 예시〉

유 형	주 요 내 용
신고 접수	• 성매매 등 성착취 관련 범죄 피해 접수
아웃 리치	• SNS, 채팅앱, 청소년 이용시설 등 온·오프라인 아웃리치 활동
긴급 구조	• 긴급지원 및 일시보호(교통비, 일반숙박비 등) • 청소년상담1388 통합콜센터 및 청소년쉼터 등 보호체계 연계
상담 지원	• 1:1 개별상담 • 부모 및 가족상담,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의료 지원	•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처방 지원 • 치료비 지원 및 병원 동행
법률 지원	• 법률 지원 연계 및 정보 제공 • 수사기관 및 법원 동행, 상담원 동석, 재판 모니터링, 의견서 및 탄원서 등 제출
학업 지원	• 일반 및 특수학교 복학·진학 정보 제공 • 검정고시 원서접수기관 및 관련 정보 제공(청소년지원시설 연계)
자립 지원	• 직업학교, 취업기관 등 관련기관 정보제공 • 청소년 인턴십센터 등 직업체험 프로그램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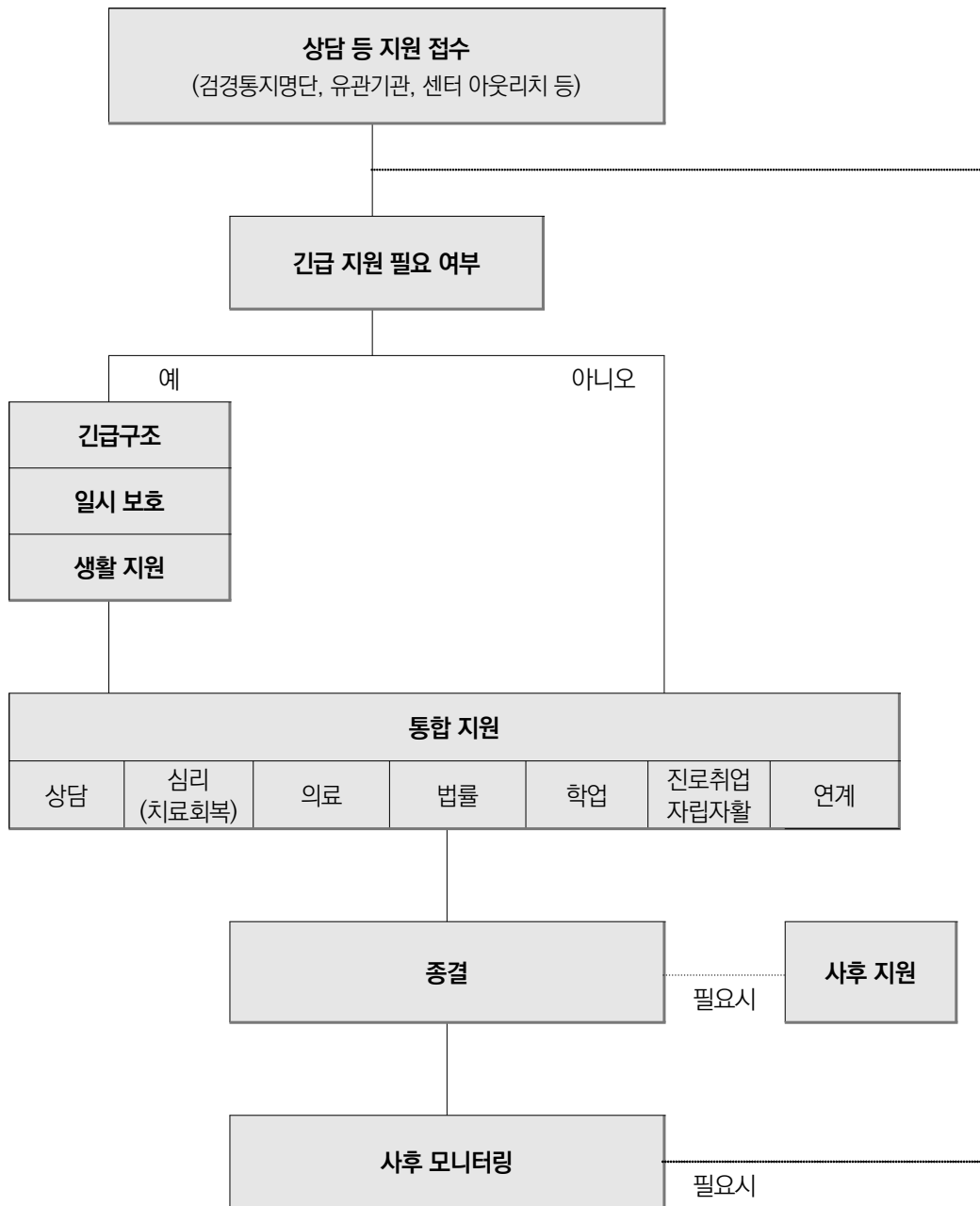
※ 유형별 사업내용을 참고하여 센터별 사업 수행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특성화 지원센터 고려사항〉

※ 특성화지원센터 대상자

- 지적장애 또는 인지 능력이 한정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은 누구나 이용 가능
- 다만, 지적장애 또는 인지능력이 한정된 피해아동·청소년의 경우 발달 정도가 차이가 있으므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만 24세까지 지원 가능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업무 절차 〉



나. 지원센터 운영

- 사업 주체
 - 성평등가족부장관, 지자체(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 성매매 등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또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주된 업무
- 지원센터 설치
 - 전국 17개소(전국 시·도별 1개소)
 - *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와 협의하여 추가 설치 가능
 - 특성화 지원센터 설치·운영
 - * 지적장애 또는 인지 능력이 한정된 성매매 등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은 누구나 이용 가능
- 공간 규모 : 연면적 49.59㎡이상
 -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교육실(교육 장소, 심리치료실 병행), 프로그램실, 일시 보호시설, 화장실 등
 - * 다만, 지자체는 공간규모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성매매 등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다. 사업수행기관 선정 기준

- 성매매 등 성착취 방지,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상담·보호 지원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관

〈예시〉

-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을 수행한 기관
- 성매매/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관
- 성매매피해자 지원 기관(상담소, 지원시설 등)
- 위기청소년 보호시설 담당 기관 등

라.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 지자체는 3년 주기로 공모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함
 - * 다만, 지자체는 기존 사업수행기관이 성매매 등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선정할 수 있음

○ 추진 절차

단계	내용	담당기관
1단계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도
2단계	• 사업 공모	시·도
3단계	• 사업계획서 제출(지원단체 → 시·군·구 → 시·도)	수행기관
4단계	•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정	시·도
5단계	• 수행기관 최종결과 성평등가족부에 통보	시·도

※ 지역여건에 따라 시·군·구에서 공모사업 추진 가능

마. 사업수행기관 선정 취소

- 업무정지 또는 폐지 명령 및 폐쇄권자 : 성평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 등 조치
 -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종사자가 입소·이용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경우
 - 아래와 같은 사무에 해당할 경우
 - 사업수행기관이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사업수행기관이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사업수행기관이 센터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바. 사업수행기관 재선정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기간(사업선정 후 3년)이 만료되거나, 사업수행기관 선정 취소 등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재선정함
 - * 다만,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 기존 수행기관이 성매매 등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선정 할 수 있음
- 재선정 절차는 선정절차 지침에 따라 실시됨
 - * 사업수행기관 재선정 관련하여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추진
 - ※ 사업수행기관 선정심사 항목(예시)

심 사 항 목	
사업계획의 적절성 (25점)	• 사업 목적 및 취지와의 부합성 • 사업내용의 이해도 및 충실성 • 예산운영 계획의 적절성 • 추진일정 계획의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25점)	• 사업수행업체의 전문성 정도 •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성공여부 • 운영인력 투입계획/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재원확보 능력 • 사무공간 등 시설확보 여부
사업수행방법 및 내용의 타당성 (25점)	• 사업추진체계의 합리성 • 과업 수행의 추진전략 및 기법 -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방법 - 사업 홍보방안 • 과업 내용의 참신성 및 다양성
사업의 기대효과 (25점)	• 사업 수혜자의 참여 및 관심도 제고 가능성 • 사업의 대외인지도 제고 가능성

※ 지자체에서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 심사항목 변경 가능

3 | 종사자 채용 및 자격조건

가. 종사자 수

- 중앙지원센터
 - 종사자 수 : 2명
- 지역전담지원센터
 - 종사자 수 : 3명(상담원 3명 또는 중간관리자 1명, 상담원 2명)
 - * 센터 상황에 맞게 인력을 구성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 부담으로 추가 인력을 둘 수 있음

나. 종사자 자격기준

○ 일반 기준

- 종사자(상담원)는 운영주체의 임원 또는 대표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지원센터의 담당업무에 전담하여야 함
 - * 겸직 또는 타 업무 병행 시 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종사자(상담원) 등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상담원 교육과정의 이수가 안 된 종사자는 채용 2년 이내에 필히 양성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함

○ 개별 기준

- 중앙지원센터

직종별	종사자 자격기준
종사자 (기간제)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 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지역전담지원센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준용

직종별	종사자 자격기준
종사자 (상담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장애인 관련 단체, 시설 또는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특성화지원센터만 해당한다.) ※ 단, 7의 요건에 해당하는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1/3명 이상이면 가능

다. 종사자 채용

- 지원센터 종사자 인력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 * 다만, 기존 사업 수행기관(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 성매매/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사업)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고려함
- 종사자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채용하여야 함
- 채용 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함
 - *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 후 실시
- 채용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고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채용 시 임금·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 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함

4 국고보조금 지원

가. 회계관리

- 센터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 재무회계 관리는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 법령 준용
- 센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장부에 기재 후 집행
-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는 5년 이상 보존
- 성평등가족부는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시·도별 예산 배정
 - 사업 신규 시행 시에는 시행 여부에 관한 심사절차를 거칠 수 있음
 - * 사업수행자의 현장접근성, 활동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대상 지역 선정
- 지원조건은 국비 50%, 지방비 50%

나.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① 인건비

- 편성 기준 : 33,372천원 / 1인(연간)
 - 인건비 지원액 (33,372천원)은 예산 편성 상 기준금액이며, 실제 종사자의 경력 및 직급에 따른 인건비는 지자체 및 시설의 내부규정에 따름
 - 종사자 월 기본급은 2026년 기준 최저임금액 (10,320원×209시간 = 2,156,880원)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 지원 내용 : 급여 및 제수당, 기관부담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등

② 운영·사업비

- 편성 기준 : 운영·사업비는 통합 편성
- 지원 내용
 - 종사자 상해보험료
 - 수용비(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등
 -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회의비)
 - 사무실 임차료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 종사자 소진방지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예산 지원(연간 1인당 50만원 범위 내 사용 가능)
 - 청소년 밀집지역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통한 긴급 지원
 -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피해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 지원
 - 성매매피해자 및 청소년 보호·상담시설 등 연계
 -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 등
- * 사업추진 등에 필요하여 기간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집행가능

다. 예산집행

- 모든 예산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확정 통보된 최종 사업계획서상의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사업운영 의무를 다하여야 함

-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기관 명의로 개설
 - 기존 개설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통장잔고(액) 정리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운영기관은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e-나라도움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예산을 법령 및 이 지침의 근거 없이는 협의회 등 각종 단체의 회비, 기타 분담금으로 지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예산사용에 대한 모든 영수증 및 첨부서류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 시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함(5만원 한도 내)
- 보조금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함
- 보조금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집행 내역을 육하원칙(내용, 일시, 장소, 대상자, 목적, 금액)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e-나라도움 시스템 에서 출력한다.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보조금 카드사용 취소 시에도 취소 영수증 첨부
- 보조금 사업예산 정산 시 법령 및 이 지침에 따라 정산에 필요한 증빙을 갖추어 제출하여야 함
- 강사료·자문수당·원고료·발표비·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 가능)하여야 함
 -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현금지급(5만원 이하)을 인정함

라. 예산변경

- 예산변경은 각 지원센터에서 내부결재를 통해 변경하고, “인건비”와 “운영·사업비” 상호간 변경시에는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함

가. 사업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 보고

- 각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을 분기 다음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운영실적 등 관련 통계자료를 지정서식에 의거하여 상반기 실적 및 정산내역은 매년 7월 20일까지, 연간 운영실적 및 정산내역은 그 다음해 1월 20일까지 성평등가족부에 제출

나. 비치해야 할 장부

- 인사(인사기록카드·이력서·사진 포함) 및 회의관련 서류,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의 문서철), 문서접수·발송대장, 업무일지, 운영프로그램 관리대장 (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평가관련 서류), 상담원 교육 등 인사·행정 관계서류
- 피해아동·청소년명단, 이용자 카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지속상담기록지, 연계의뢰서, 이용자 만족도 설문지, 종결보고서, 긴급구조비 지급대장 및 수령확인증
- 정산보고서 및 그 증빙서류, 예산서 및 결산서,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등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다. 보안유지

- 사례관리 지원을 받은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상정보와 사례관리 자료 들은 각별히 보안에 유의하여 보관하여야 함. 특히 사업담당자는 퇴직 후에도 본 사업의 수행으로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음

라. 안전관리

-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기구 등 구비
-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물 등 안내문 설치
- 안전사고,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수송대책 마련
- 상담 공간 및 사무실 화재보험 가입,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외부 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청소년 여행자 보험 등 가입

VIII-1

성매매피해자 신용회복 지원

구 분	성매매피해자 신용회복 지원
사 업 개 요	탈성매매자의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신용회복위원회가 2005년 3월 16일 「탈성매매 여성 신용회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 원 대 상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주거지원, 직업 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자[서식 27]
지 원 내 용 (채무 조정)	- 상환유예 :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연기)하고 유예기간 동안 이자 면제 - 분할상환 :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을 분할상환 - 이자면제 : 상환기간 내에 채무원금만을 전액 상환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및 향후 발생할 이자는 모두 면제 - 신청비용(5만원)은 법률지원비(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로 지원 ※ 개인사채 또는 일부 대부업체 채무는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됨
신 청 방 법	- 신용회복위원회에 내방하여 신청서류 접수 - 신청 이후 신용회복지원 확정 시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되며 신청과 동시에 채권 기관의 상환독촉이 중단되고 확정 시 연체정보는 모두 해제 - 신용회복지원 확정 시 위원회 안내(우편 또는 휴대폰 메시지)에 따라 가까운 신용회복 위원회에 방문, 채무조정합의서 작성 및 신용관리 교육(2시간) 수강
기 타 사 항	- 취업안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자체, 고용·복지부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 상담 및 취업안내 - 상담·문의 - 전화 : 지역번호없이 1600-5500(월~금, 09:00~18:00) - 인터넷 : 홈페이지(www.ccrs.or.kr) 상담 고객센터(인터넷상담) 이용

구 분	성매매피해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사 업 개 요	○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지 원 대 상	○ 15~69세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 지원시설에 입소해 있는 성매매피해자(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	
지 원 내 용	취업지원서비스	소득지원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등 연계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 취업활동비용 : 최대 195.4만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월 28.4만원×6개월) 등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생계급여 조건 부수급자)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신 청 방 법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방하여 신청서 접수	
기 타 사 항	○ 지원사업 안내 : www.work24.go.kr	

구 분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지원 절차(법 제8조)
초등학교	○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의 보호자가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 해당 초등학교의 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입학을 승낙하여야 함 -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함 ▶ 보호자의 주소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하여야 함
그 밖의 각급 학교	○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의 보호자가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각급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 각급학교의 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함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재입학·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함
비밀보장 등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성매매피해자등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 ○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의 출석일수에 산입

구 분	매입임대주거 지원	전세임대주거 지원
사 업 개 요	○ 저소득 무주택 탈성매매자가 국토교통부의 임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지 원 근 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 국토교통부훈령 제1805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30조	○ 국토교통부훈령 제1738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
지 원 대 상	○ 무주택자인 저소득 탈성매매자 ○ 그 외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밖 청소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저소득 장애인,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신흥부부, 다자녀 가구 등
지 원 내 용	○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시세의 3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저렴하게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지원 ○ 기간 : 임대 기간은 2년, 2년 단위로 연장하되 횟수 제한 없음 최대 20년	○ 입주대상자가 희망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보증금은 전세금의 2~5%지원, 임대료는 연 1~2%를 지원 ○ 기간 : 최대 30년
신 청 방 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기 타 사 항	○ 문 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44-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제9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I.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I-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 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의2(국가의 의무)
 -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 국가는 국내외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다. 추진 경과

- 「위안부피해자법」 제정('93.6월)
- 피해자의 간병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06)
-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13)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신청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14)
-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장례비 지원근거 마련('17)

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 현황('25.11월 기준)

○ 지원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계	생 존			사 망
	소 계	국 내	국 외	
240	6	6	-	234

○ 거주 현황

(단위 : 명)

계	서 울	대 구	경 기	경 북	경 남
6	1	1	2	1	1

○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계	90~95세	96세 이상	평균연령
6	2	4	96.3

○ 연도별 신규 등록 및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등록인원	238	239	239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사망인원	192	199	207	214	220	224	227	230	231	232	234
생존인원 (연도말)	42	40	32	26	20	16	13	10	9	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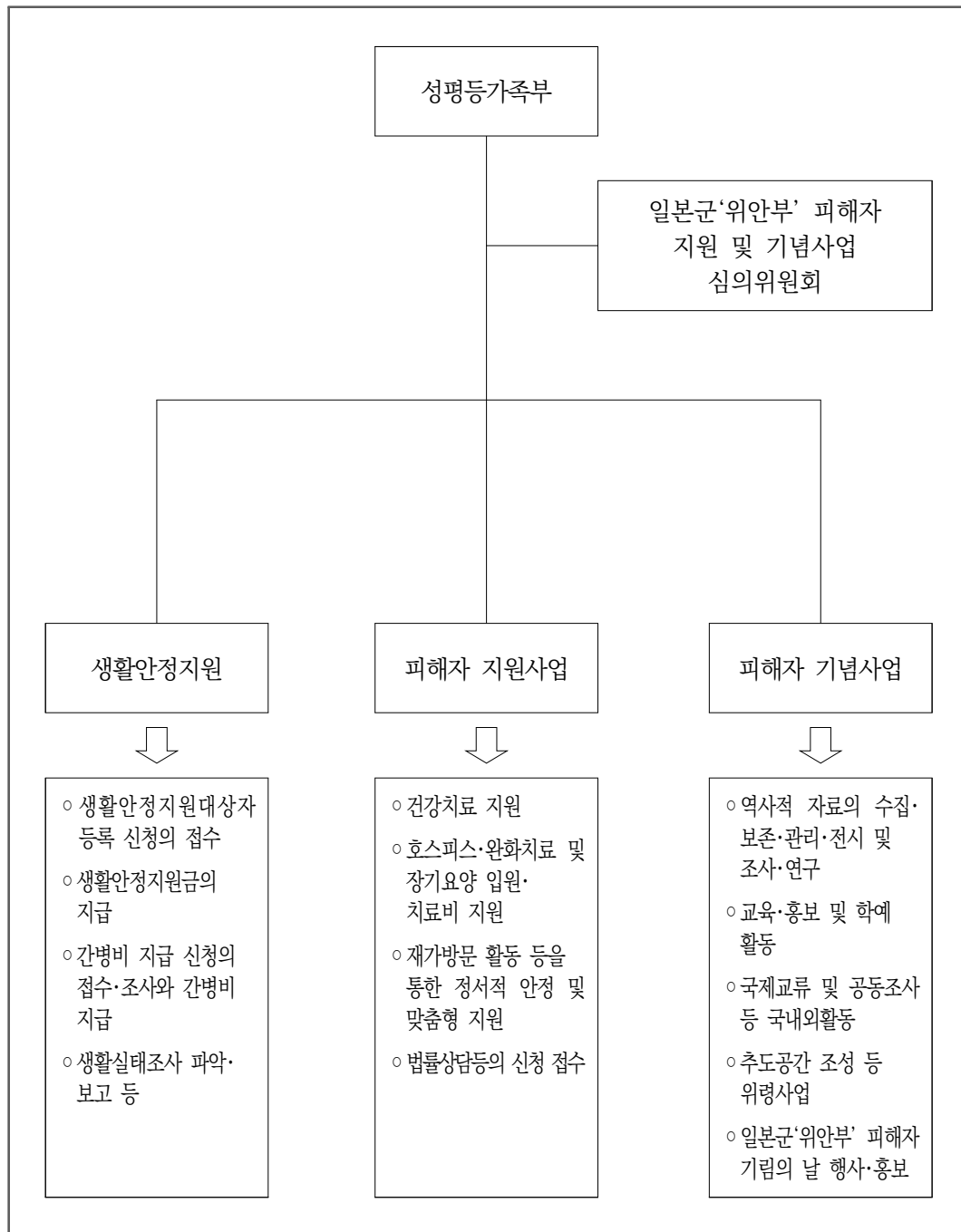
마. 지원 예산

○ 예산액 : 70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총액 (국비기준)	세부 내역	집행주체
생활안정 지원	생활안정지원금	143	• 1인당 월 1,976천원(정액) 지급 - '25년 대비 5% 증액	시·도 및 재외공관
	간병비	268	• 예산상 1인당 월3,722천원 기준 - '25년 대비 8% 증액 * 이용실적에 따라 사후정산	
	특별지원금	43	•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결정·등록시 43,000천원 일시금 지급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건강치료비 및 맞춤형 지원	224	• 치료 카드를 통한 치료비 지원 •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 생활환경 개선 지원 • 정기적인 연락을 통한 정서적 지원 • 사망시 장제비 지원	한국 여성인권 진흥원
피해자 지원사업 (기타)	법률상담 등 지원	10	• 피해자 법률상담 등 지원	성평등가족 부
	생활실태 및 만족도 조사	20	• 피해자별 생활실태 및 정책 만족도 조사 실시(연 1회)	

바. 사업 추진 체계도



※ 근거 : 「위안부피해자법」 제10조(실태조사) 및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참조

가. 등록 대상

-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중 생존자

나. 결정 및 등록 근거

- 「위안부피해자법(약칭)」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결정)

다. 결정 및 등록 절차

○ 개요

- 1) 시·도에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성평등가족부 송부
※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서 등록신청서 접수하여 시·도로 이송
- 2) 신청자(보호자 포함) 증언 청취 등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실시
-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4)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를 시·도 통하여 통지

○ 세부 절차

단 계	내 용	담당기관
1단계	• 대상자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 확인	외교부 및 시·도
2단계	• 신청자 증언 청취 및 관련 자료 조사	성평등가족부
3단계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성평등가족부
4단계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 통지	성평등가족부

- 1) 대상자 등록신청서 제출 [대상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보호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서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또는 보호자)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또는 시·군·구)로 제출하여야 함

- 국외 거주자는 외교부(관할 재외공관)로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교부(관할 재외공관)로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서류

- ① 대상자 등록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 ②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국외거주자만 해당)
- ③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④ 신청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인의 진술서, 사진, 목격자 등 제3자 증언 등

- 2) 대상자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 확인 [광역자치단체·외교부]
 - 시·도지사(외교부장관)는 신청된 서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 3) 대상자 증언 및 관련 자료 조사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등록신청서를 송부 받은 즉시 일본군‘위안부’ 관련 전문가를 통해 신청자의 증언 청취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야 함
- 4) 대상자 등록신청서 심의 및 결정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의 및 결정함
- 5) 심의 결과 통보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시·도를 통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함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상자 결정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다른 방법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

라.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기타 사항

- 성평등가족부와 외교부 또는 시·도 담당 공무원은 신청서 접수 및 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관할 시·도에서는 결정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군·구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 성평등가족부로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주민센터 사례관리 담당자를 추가로 지정하여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를 보호·관리할 수 있음
-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주소지 전입·전출 등 변동사항 발생시 관할 시·도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즉시 보고하고 해당 시·도 간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지원업무를 즉시 인계하여야 함
- 성평등가족부장관(「위안부피해자법」 제1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장, 심의위원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 「위안부피해자법」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

가. 지원 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위안부피해자법(약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된 사람

나. 지원근거

- 「위안부피해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른 간병비 지원
 -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른 장제비 지원
 -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

다. 지원 내용

구 분	지원 내용	관할기관 (지원주체)
생계급여	• (수급권자 인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봄 •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생계·주거·의료급여 등)를 지원함 - 피해자별 지원 금액 등은 달라질 수 있음	보건복지부 (시·군·구)
의료급여	• (수급권자 인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봄 • (지원내용)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제1종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함	보건복지부 (시·군·구)
생활안정지원금	• (지원대상)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월 지원금과 특별지원금 지급 - (월 지원금) 1인당 1,976,000원 지급 -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된 경우 일시금으로 43,000,000원 지급	성평등가족부 (시·도)

구 분	지원 내용	관할기관 (지원주체)													
간병비 지원	• (지원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사람 • (지원내용) 간병인 사용 후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신청하여 간병비 지급 ※ 1인당 월평균 3,722,000원 사용 가능 • (지원단가) 병원 또는 방문 이용으로 구분 <table><tr><th rowspan="3">구 분</th><th colspan="3">1일 지원 한도</th></tr><tr><th rowspan="2">병원</th><th colspan="2">방문간병(시간제)</th></tr><tr><th>입주*</th><th>방문</th></tr><tr><td>금액</td><td>231,000원</td><td>192,000원</td><td>154,000원</td></tr></table> * 생활안정지원자의 자택 등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24시간 간병인을 이용하는 경우	구 분	1일 지원 한도			병원	방문간병(시간제)		입주*	방문	금액	231,000원	192,000원	154,000원	성평등가족부 (시·도)
구 분	1일 지원 한도														
	병원		방문간병(시간제)												
		입주*	방문												
금액	231,000원	192,000원	154,000원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	• (지원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원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함	국토교통부 (시·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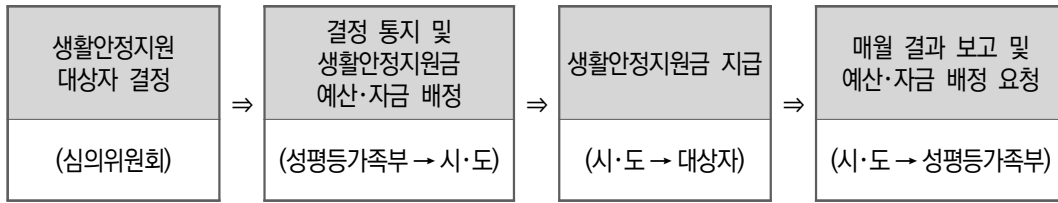
※ 이외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를 통해 △비급여 치료비 등 건강치료 △일상생활 필요물품 △주거환경 개선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피해자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맞춤형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있음

라.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 지원 기준 등

1)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

- (지원 내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하며, 생활안정지원금은 일시금(특별지원금)과 월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 (지원 금액)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된 경우 일시금으로 43,000천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인당 월 지원금 1,976천원을 매월 15일(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하여야 함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절차〉



- (지원금의 환수 등)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생활안정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함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② 과오급(過誤給)된 경우
 -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음
- (매월 결과 보고 및 예산 배정요청 등) 시·도는 매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결과 및 일대일 맞춤형 돌봄서비스 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성평등가족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는 분기별로 생활안정지원금 예산 배정을 요청하여야 함. 자금은 전월 20일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필요한 금액만큼 자금 배정을 요청하여야 함

2) 간병비의 지원

- (지원 내용)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경우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지원 금액)
 - 병원 간병의 경우 일 231,000원 이내 지급
 - 입주간병은 근무일에 생활안정지원자의 자택 등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24시간 간병인을 이용하는 경우로 일 192,000원 이내에서 지원
 - 방문간병은 일 154,000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하루 이용시간이 5시간 이하인 경우 시간당 18,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

- 간병비 한도를 초과하여 신청된 금액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부담으로 함

구 분	1일 지원 한도		
	병원	방문간병(시간제)	
		입주	방문
금 액	231,000원	192,000원	154,000원

※ 입주란 근무일에 생활안정지원자의 자택 등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24시간 간병인을 이용하는 경우

- (간병인의 자격) 영양보호사 자격 소지자 또는 민간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간병교육을 이수한 자
 - 시·군·구에서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새로운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간병인의 관련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한 후 시·도에 간병비를 지급 요청
 - 다만, 간병인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간병이 가능한 자를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하나 사전 협의 요망
- (간병인의 역할)
 - 생활안정지원자는 아래의 표준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고 간병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함

〈간병인 표준 서비스〉

- ①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②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③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④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간병인은 당일 제공한 서비스 내용과 비용에 대해 수행증명서를 작성하고 이용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 보관
 - ※ 다만, 지체 장애 등으로 이용자 직접 서명이 불가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지원 방법 및 절차) 간병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간병비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다음 달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구에서는 관련서류 등을 접수·확인하여 관할 시·도에 간병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함
 - ※ 12월분 간병비의 경우 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원활한 마감을 위하여 지원 수요를 조기 파악하여 지급하되, 실제 이용시간보다 적게 지원이 된 경우, 다음 연도 1월 중 추가 지원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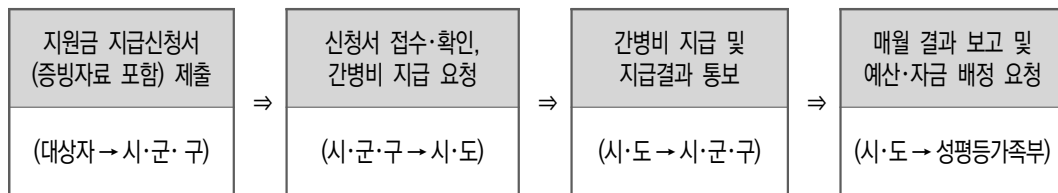
〈간병비 지급 신청 시 증빙 서류〉

구 분	증빙서류
병원	① 진료비 계산서 또는 입원 확인서 1부 ② 간병서비스수행증명 서식 1부
그 외	① 간병서비스수행증명 서식 1부 ② 진단서 1부

- 시·도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개인별 계좌로 간병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사정 상 필요시에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 간병서비스제공자 등에 직접 지원 가능하며, 매월 간병비 지급 현황 및 신청서류 일체를 성평등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함

※ 10일까지 기획재정부 정부 월별세부자금 미확정 시, 자금확정일에 따라 지연 지급 가능

〈간병비 지원 절차〉



※ 간병비 매월 결과 보고 및 예산 배정요청 등에 관하여는 본 지침의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함

- (부정수급) 생활안정지원대상자와 간병인은 실제 근무 내용대로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실제 근무한 내용과 다르게 비용의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의 부정수급에 준하여 환수할 수 있음
- 시·군·구에서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방문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적정한 간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

I-4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조사 및 보고

가. 사업목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를 매년 조사하여 생활안정지원 및 간병비, 치료사업 계획 수립 등 복지사업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

나. 추진근거

- 「위안부피해자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실태조사)

다. 실태조사 실시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조사시기 및 방법 등

- 매년 10월 중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를 면접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함

마. 조사내용

- 실태조사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소득 수준, 가족 상황, 건강 상태 및 주거 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조사를 위한 조사표는 매년 9월 중에 확정

바. 조사결과의 정리 및 확정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결과 등을 분석하고 종합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I-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법률상담등 지원

가. 사업목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지원(이하 “법률상담등”)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지키고 역사를 바르게 보존하기 위함

나. 추진근거

- 「위안부피해자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법률상담 등)

다. 사업내용

- (지원 신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의 ‘법률상담(소송대리) 지원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국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국내 거주자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에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함
- (지원 결정 및 요청) 법률상담등의 신청을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지방변호사회와 그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음
- (비용 지원)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으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 I.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개요
- II.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 III. 세부 사업 운영
- IV. 예산의 지원 및 관리
- V. 사업 점검 및 평가



I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도모

2 법적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등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추진경과

- '13년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 전담기관을 설치·운영
- '14년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법적근거 신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15.12.1. 개정)
- '15년 지역 교육지원기관의 전국 확대 및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전환
 - '13년 권역별 10개 기관 → 17개 시·도별 18개 기관
- '16년 도서벽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시범운영 실시
- '18년 문화예술인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규 교육 대상 발굴 실시
- '19년 체육인, 이주민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규 교육 대상 발굴 실시
- '20년 초·중·고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 '21년 사업 운영 관리방식 개선(유형별 → 5개 교육 분야 실적 통합 관리)
 - ※ (기존) 2개 분야(성폭력·가정폭력) →
 - (확대) 5개 분야(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디지털 성범죄)
- '22년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중점 실시
- '23년 가구방문노동자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규 교육 대상 발굴 실시
- '24년 장애 아동·청소년 특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교제폭력 예방교육 실시
- '25년 사업 운영 관리방식 개선(유형별 → 6개 교육 분야 실적 통합 관리)
 - ※ (기존) 5개 분야(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디지털 성범죄) →
 - (확대) 6개 분야(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디지털 성범죄·교제폭력)

4 사업규모 및 지원예산

- 사업기간 : '13년도~
- 사업규모 :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 총 19개 기관('25.12월 기준)
 -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1개), 지역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18개)
 - * 이하 “중앙 교육지원기관”이라 함, ** 이하 “지역 교육지원기관”이라 함
- 사업 예산 : 총 2,579,288천원

구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사업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사업
사업내용	17개 시·도 지역 교육지원기관(18개소) 운영	중앙 교육지원기관(1개소) 운영
비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출연사업비*
보조율	국비 50%, 지방비 50%	국비 100%
예산규모	1,674,288천원	905,000천원
예산구성	인건비, 감사비, 기본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 양성평등교육사업(중앙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운영, 455백만원**), 인건비(405백만원)

** 장애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특화교육(연간 600회) 등 포함

○ 유형별 예산지원

- 유형별 시·도 구분(3개)

구 분	유형	해당 시·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자치단체 경상보조)	가(2)	서울, 경기(남부)
	나(14)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다(2)	세종, 제주

※ 경기도는 관할 범위 등을 고려하여 2개 권역으로 구분(가급 1, 나급 1)

- 등급별 예산 지원액

(단위 : 개소, 천원, 회)

구 분	유 형	사업목표 (교육횟수)	국비 (A)	지방비 (B)	총 지원액 (A+B)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자치단체 경상보조)	가(2)	405	66,394	66,394	132,788
	나(14)	285	45,453	45,453	90,906
	다(2)	175	34,007	34,007	68,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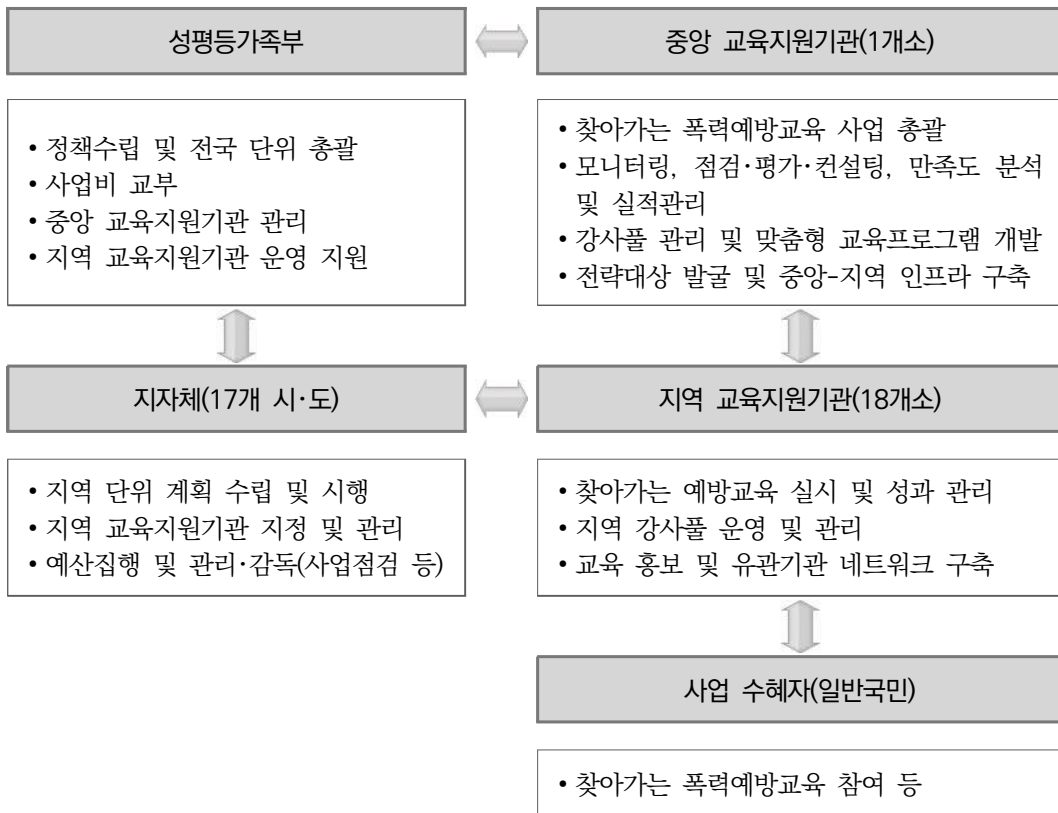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성평등가족부 → 지자체 → 지역 교육지원기관

5 사업 주요내용

- 지역사회에서 교육 기회와 접근성이 취약한 교육 대상을 분석
- 사회문화적 변화와 시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 교육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강사 관리와 교육 반응 분석
- 유관기관 연계·협업을 통한 폭력예방 인식개선 체계 구축

6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추진체계도



나. 사업 주체별 역할

○ 성평등가족부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
-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관련 법규 제정 및 정비
-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관리 감독 및 지도
- 사업비 교부 및 정산, 사업 평가
- 중앙 교육지원기관 위탁사업 관리

○ 지방자치단체(시·도)

- 지역 단위 자체 지원 계획 수립
 - ※ 성평등가족부 ‘2026년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지역 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연계 방안 등 수립.
 - 특히, 유관부서(소속 협회·단체 등 연계) 협업 및 관할 시·군·구, 지역 교육청, 지역 협회·연합회·단체 등과 교육 연계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포함 ⇨ 지역 교육지원기관의 교육 수요 조사 및 교육 대상 발굴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활동을 지원
- 지역 교육지원기관 공모 및 선정
- 예산 집행 및 지역 교육지원기관 사업 관리·감독(사업점검, 결과보고 등)

○ 중앙 교육지원기관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점검 및 평가, 만족도 분석 및 실적관리
- 유형별·대상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 분야별·직군별 강사풀 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워크숍, 매뉴얼 개발 등)
- 전략대상 발굴을 통한 특화교육 운영 지원
- 사업 관계자(시·도, 지역 교육지원기관 등)간 정보 교류 및 협력

○ 지역 교육지원기관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및 성과 관리
- 유형별·대상별 교육 목표에 따른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실시
- 지역별 강사풀 구축 및 관리(워크숍, 소모임 등 역량강화 지원)
- 교육 모니터링(점검) 및 만족도, 인식개선도 조사 실시 등 사업 성과 관리
- 권역별 폭력예방교육 지역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1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선정

가. 중앙 교육지원기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출연사업비로 편성·운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①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한다.

나. 지역 교육지원기관

□ 위탁 절차

- ‘지역 교육지원기관’은 ① 공개모집 또는 ② 폭력예방교육 운영 등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선정할 수 있음
- 위탁 기간은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정함
 - ※ 사업 운영 및 보조금 사용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 시·도의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교육지원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 위탁 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 다음의 각 기관이나 단체 중 성폭력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사업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컨소시엄 구성(공동 수급) 사업 수행 가능

※ 부정수급, 정부의 유사사업 수행 시 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는 기관은 신청 불가

□ 심사방법 및 기준

- 시·도에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되, 서류 심사, 실사 및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 기존 협의체 활용 가능

- 사업 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 수행 방법 및 내용의 합리성, 지역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

- 폭력예방교육 관련 사업수행경력

- 폭력예방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 수준

- 운영계획서의 충실성, 지역연계성 등 실행가능성 종합평가

※ 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기관은 지원 선정에서 제외

□ 위탁 취소 기준

-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함

- 필요시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의(기관 의견 청취 포함)를 거쳐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사업수행기관 위탁 취소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력 등 지원기준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유용하여 사업비가 환수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및 위탁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지정·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가. 명칭 및 현판 설치, 대표번호 사용

- 명칭은 “성평등가족부 지정 또는 지원 ○○(중앙 및 시·도)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으로 함
 - 성평등가족부 지정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 성평등가족부 지원 ○○(시·도)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 각 기관에서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전국 대표번호(1661-6005)를 사용해야 하며, 현판, 현수막, 책자 등 홍보물 제작 시에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명칭을 반드시 포함하여 사용하여야 함
- 중앙 및 지역 교육지원기관은 이용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현판 설치(운영비로 제작 가능)
 - ※ 현판 설치 시 중앙 교육지원기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함

나. 수행인력 관리

□ 자격 기준

- 기관장(총괄책임자) 1인 및 사업 담당자 1인이 필수 참여하여야 하며, 이 중 1인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사업수행기관 대표자 및 사업 담당자 자격기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등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여성학, 사회학, 상담심리학, 아동학, 법학 등 관련분야 전공 또는 관련 자격증·수료증(사회복지사, 성폭력전문상담원,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상담사 등)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관련 기관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사업 담당자 채용

- 사업 담당자 신규채용 시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함
- 공고기간, 공고방법, 심사방법 등 채용절차는 사업수행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등으로 사업 담당자 채용이 적시에 추진 될 수 있도록 함

□ 사업 담당자 근로계약

-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사업수행기관과 사업 담당자 간의 계약관계로, 사업수행기관은 관계법령, 정책 및 내부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
- 사업 담당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은 수행기관 위탁기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됨
- 1년 단위(1.1.~12.31.)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수행 인력에 대해서는 근무 평가 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 사업위탁기간 내에서 근로계약 가능
- 단, 사업 담당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 근거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1호
-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한 뒤, 계약 당사자 간 각각 1부씩 보관

□ 수행인력 복무 관리

- 사업 담당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와 겸임할 수 없음
 - ※ 다만,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기관장과 그 밖의 인력은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장은 직원 간 업무가 균형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관장, 사업 담당자 등 내부 직원에 의한 강의는 ‘시도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량의 15% 이내에서 가능함

사업수행기관 대표자 및 사업 담당자 내부 직원에 의한 강의 기준

- 사업 담당자는 업무시간(9~18시) 중에는 내부 강사로 활동할 수 없음
- 기관장 등은 사업 관리 및 자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 강사로 활동 가능함

□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 사업 수행기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

[참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pp.25~27)

-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인건비 지원기준을 정할수 있으며, 기준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한 : • 시설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만 70세)
• 종사자 60세
 - * 원칙적으로 설립자의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주체이자 동시에 시설장인 자를 의미하나, 법인 설치시설의 경우에는 설치·운영 신고 주체와 시설장이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설립자의 의미에 대해 실질적인 측면(개인재산 출연여부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재 재직 중인 시설장에게 설립자 지위 인정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함. 다만, 설립자의 시설 사유화 의식 탈피 및 조직쇄신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유의
 - ** 설립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위 지급 상한기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사회통념 및 지자체 재정여건 등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농촌 취약지 등 지역적 특성 및 종사자 직군별 업무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로 개별 특례를 마련할 수 있음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 ①, ②에 따른 절차를 거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

① 공개모집 절차를 2회 이상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희망이음* 중 2곳 이상의 사이트에 채용 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개모집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후 협의

* 60세 초과 '대체' 종사자를 특례 채용하는 경우 1회 공모 후 절차에 따라 채용 가능

-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특례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63세까지는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 가능하며, 63세를 초과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방식으로 1회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 하여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65세까지 계약 연장 및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

※ 60세 초과 종사자를 특례 채용한 경우에는 특례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호봉으로 동결(이후 호봉 승급 없음)

②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내에서 청년 인력(만 29세 이하)을 채용하는 경우

- 신규 채용 및 인력 운용 계획을 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이사회를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 위의 계획에는 60세 초과 종사자 및 신규 채용 인력 2인의 인건비를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100% 내에서 지급하되, 60세 초과자의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청년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 적용

다. 사업 관리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작성·제출
 - 각 지역 교육지원기관장은 전년도 사업 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 교육지원기관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25.1월)
 - ※ 지역 교육지원기관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중앙 교육지원기관의 컨설팅을 적극 활용
 - 중앙 교육지원기관장은 각 지역 교육지원기관의 자료를 종합 평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매년 1월말까지 제출
- 사업수행기관의 기관장은 교육지원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3년간 비치 및 보존해야 함
 - 단, 성평등가족부 지원 사업비 예산 집행(재무·회계장부 등)과 관련한 사항은 5년간 비치·보존해야 함

관리·사업에 관한 장부 (3년간 비치 및 보존)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5년간 비치 및 보존)
① 종사자 관리 대장(채용 및 자격 관련 서류 등) ②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문서철) ③ 문서접수·발송대장 ④ 사업운영 관련 문서(교육실시대장, 강의안 등) ⑤ 사업 착수·중간·결과보고서	① 총계정원장 및 사업별 수입·지출부 ②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③ 예산서 및 결산서 ④ 비품수불대장, 비품관리대장(필요시) ⑤ 각종 증빙서류 및 그밖에 필요한 서류

라. 변경사항 등의 보고

- 기관장은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제출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지역 기관장은 중앙기관장 및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교육지원기관의 변경된 자료를 검토·승인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중앙 기관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함
- 기관장은 인력 및 시설, 소재지 등에 변동사항 발생 시 시·도지사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인력 변경 시에는 새로 채용하는 인력 관련 경력사항 등을 공문으로 제출

1 기본방향

- 성평등 관점의 이해 및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연계하여 실시
- 지역사회 내 교수, 전문가 등 다양한 직군의 강사풀 확충 및 역량강화 지원
 - 강사 워크숍, 교육 모니터링 확대 등으로 강사 질 관리 강화
- 디지털 성범죄, 교제 폭력, 복합 피해 등 새로운 폭력유형의 대두에 따른 교육 수요 반영
 - 성범죄 등에 취약한 집단 또는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에 역할 수행이 기대되는 대상 등 발굴, 세분화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실질적 안전망 강화

※ ('26년 목표) 총 5,150회

〈 2026년 시·도별 폭력예방교육 사업목표 〉

(단위 : 개소, 회)

유 형	해당 권역 수	해당 권역명	사업목표 (교육횟수)	총계
가	2	서울, 경기(남부)	405	5,150
나	14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85	
다	2	세종, 제주	175	

※ 세부내용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2 교육대상

가. 개요

- 폭력예방교육 비의무 대상 일반국민(교육 사각지대 우선 발굴 필요) 등

[참고] 폭력예방교육 의무 실시 기관 및 대상

구 분	의무 실시 기관	의무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 국가기관 등 ¹⁾	• (필수) 해당기관에 소속된 사람 ※ 기관장, 고위직, 비정규직 포함
성매매 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초·중·고등학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²⁾	• (필수)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기관장, 고위직, 비정규직 포함 • (필수) 중·고등학생 • (선택) 학부모
성폭력 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³⁾	• (필수)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기관장, 고위직, 비정규직 포함 • (필수) 초·중·고·대학생, 보육아동, 원생 • (선택) 학부모
가정폭력 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⁴⁾	• (필수)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기관장, 고위직, 비정규직 포함 • (필수) 초·중·고·대학생 • (선택) 학부모

주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2)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3)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

4)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

나. 교육대상 세부

○ 교육우선, 취약지역, 지역 구성원, 사건발생 대상 등

구분	배경 및 필요성	교육대상(세부)
교육 우선	교육 기회가 부족·부재한 성범죄 취약층과 관련 주변인을 발굴하여 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원	• 장애인¹⁾, 이주민^{1)·2)}(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노인 •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그룹홈·쉼터·보육시설 이용 청소년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 • 학부모 등 성범죄 취약층 주변인
취약 지역	지리적 여건이 제한적이고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좁아 교육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	• 취약지역* 거주 주민, 채취·생산 종사자 * 도서벽지, 산간오지, 농산어촌, 도농복합
주변인 역할 기대	주민 접촉 빈도가 높아 교육 시 지역사회 내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이 가능	• 지역 리더(아·통·반장, 주민자치모임, 부녀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아동안전지킴이·수호천사 등) • 사회복지 및 청소년 시설 종사자 • 밀집지역 소상공인* 운수업 종사자 * 상가, 편의점, 약국, 학원(교습·생활체육) 등 운영
사건 발생	성폭력 등 사건 발생으로 성범죄 예방,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필요성이 대두된 집단에 선제적 교육을 강화	• 대학생*, 장애인** * 신입생 또는 전문대학, 단과대학 학생으로 한정 ** 자원기관단체법인, 생활이용시설의 임직원, 입소자 등
전략 발굴	관련 교육의 공백으로 성폭력 등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발굴하여 의의성 있는 교육을 지원할 필요	•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및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³⁾ • 청년(사회초년생, 예비사회인, 고립·은둔 청년 등)

주 : 1) 동일 대상 동일 분야 최대 3회차 교육 실시 가능 대상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시 교육(성평등·인권교육) 등과 연계를 통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등 대상 교육 권역별 1회 이상 실시 필수

3) 교육인원 10인 미만인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가능

3 교육 운영

가. 교육 운영 절차



- 교육 신청기관 : (교육 전) 교육신청서 제출, (교육 후) 교육확인서 제출
- 교육 지원기관 : 교육신청서 검토, 강사 연계, 교육 실시, 행정 처리*
 - * 관련 서류(교육신청서, 교육확인서, 설문조사지 등) 수합, 강사비 지급 등
- 강사 : 교육대상 분석, 강의계획서 작성, 교육 진행
- 교육 참여자 : 교육 참여 및 설문조사 제출

나. 교육 신청

- 규모 : 10명 이상
 - ※ 노인, 장애인, 이주민, 그룹홈, 청소년 쉼터 등 교육 효과와 교육집단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규모의 조정(10명 미만)이 필요한 경우 중앙 교육지원기관과 협의 후 실시
- 기간 : '26년 1월 ~ '26년 12월
- 내용 : 강사*에 의한 1시간 무료교육 지원(폭력예방교육)
 - * 지역 교육지원기관은 '시도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사풀'을 별도로 구성해야 함

다. 교육 내용 및 방법

- 폭력 유형별 가·피해자 현황, 예방적 요소(인식 개선 등)를 반영하여 중점 대상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연계하는 등 폭력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
 - ※ (예시) 청소년·대학생·청년 : 디지털 성범죄/교제폭력(스토킹) +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민간기업 종사자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 교제폭력 예방교육(스토킹)
 노인 : 가정폭력 + 교제폭력 예방교육(스토킹)
 - * (6개 분야)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디지털 성범죄·교제폭력 예방
- 신종 성범죄(교제폭력, 스토킹,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취업 사기 등)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청년층에 대한 교육 강화 및 현장 교육 수요와 지역사회 현안을 반영하여 시의성 높은 교육을 제공
- 교육 수요와 참여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 방법의 적용으로 교육 효과성 및 전달력 강화
 - 사례 기반 소규모 토론, 문제해결식, 매체 활용 교육 등
 - 교육 대상(노인,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등) 파악 후 교육 경험, 관련 사건 발생 유무, 교육환경(강의장, 수강인원)을 고려한 콘텐츠* 활용을 권장
 - * 성평등가족부 예방교육 통합관리 사이트(<https://shp.mogef.go.kr/>) 내 교육대상별·교육분야별·문서유형별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열람 및 자료 다운 가능

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사풀 구성

- 지역 교육지원기관에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 외에도 교수, 전문가 등 역량 있는 일반강사를 포함한 강사풀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구성해야 함
- 각 지역 교육지원기관장은 강사풀 구성 현황을 중앙 교육지원기관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최종 승인한 강사 명단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26년 1분기, 이후 강사 명단 변경 시 수시 보고)

나. 강사 자격기준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

- 폭력예방 통합교육 분야 위촉 강사

- 다수의 폭력예방교육 강의 경험이 있는 일반 강사 중 아래 ①~⑤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일반강사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사풀’에 포함할 경우 신규강사의 첫 교육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필수)

- ①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7호(제7호의 경우 같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서의 입학학력으로 인정되는 학교만 해당한다)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의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③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④ 상담소·보호시설·긴급전화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강사로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 ⑤]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중 2. 교육훈련 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준용

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사 관리

- 중앙 및 지역 교육지원기관 강사 워크숍 개최(각 기관별 연 2회 이상)
 - 지역 교육지원기관은 연 2회 이상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시·도별 사업추진계획 공유 및 '25년 강사 활동 방향 안내
 - 지역 교육지원기관 및 강사 간 네트워킹, 우수 교육 사례 공유 등
 -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사는 반드시 중앙 및 지역 교육지원기관의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야 함
- 효과적 교육수행을 위한 강사 지원·관리
 - 지역 교육지원기관과 강사는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확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 파트너로서 존중 및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해 상호 노력하여야 함
 - 교육 실시 전 교육 대상에 대한 기본 정보를 포함한 강의 준비에 필요한 제반 사항(교육신청서 등)을 해당 강사에게 전달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강사의 내실 있는 교육준비를 위하여 강의계획서 작성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의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
 - 강사는 교육대상자의 현황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추천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강의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만족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과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지역 교육지원기관에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의 의뢰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강사풀에서 해당 강사를 제외할 수 있음

5 | 예방행동 변화도 조사

□ 인식개선도 조사 및 자체 점검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참여자의 폭력에 대한 태도변화와 실천의지의 변화 정도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으로 교육 효과성 평가 및 품질 제고
- 예방행동 변화도 조사 및 다각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사업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 도출

〈교육 인식개선도 조사 및 자체 점검 개요〉

구 분	조 사 자	대 상
예방행동 변화도	중앙 및 지역 교육지원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및 교육 진행 강사
자체 점검 (강의 모니터링)	시·도 담당자	
	지역 교육지원기관 대표 및 담당자	

□ 환 류

- 지역 교육지원기관은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강사의 강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 운영에 반영하여야 함
 - 모니터링 과정에서 내용적 편향성·부적절한 발언 여부 등을 점검하여, 해당 사항이 강의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집중 관리가 필요한 강사에 대하여 강의역량 강화를 위한 2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해당 강사에게 재교육 기회 부여
- 교육만족도 및 자체 점검 정성평가 분석결과를 교육콘텐츠 개발 등에 반영하여 현장과 교육의 연계성 강화

1 예산의 지원 및 집행기준

가. 관련 규정

중앙 교육지원기관	지역 교육지원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통)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 본 지침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 규정에 따름	

나. 시·도별 보조금 편성 및 교부

- 사업 예산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실비로 편성하고 아래 기준을 준수
 - 인건비, 강사비, 기본운영비로 구성
- 교육규모별 차등 지원(권역별 기준 참조)
- 보조금은 2회 분할 교부(1차 50%, 2차 50%)

다. 보조금 집행

- 사업기간 : '26. 1. 1. ~ '26. 12. 31.
- 집행기한 : '26. 12. 31.까지 완료
 - 최종 확정 통보된 최종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예산집행계획서상의 보조금 예산

라. 보조금 정산

- 정산시기 : '26. 12. ~ '27. 1. (※ 정산보고서 제출 : '27.1월 중)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사용의 회계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 불용액, 부적정 사용액, 이자발생액 반납 조치

2 보조금 집행 및 관리

가. 인건비

- 사업 담당자 1인의 인건비로 교육 규모별 차등 지원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비로 편성 ‘가급’은 2인 인건비 지원
 - 인건비 편성기준
 - 원천징수 및 사용자 부담금 포함 금액
 -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담당자의 시간외 수당 지급 가능
 - 가급의 경우 ‘사회복지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인력 구성 및 인건비 지급 가능(지자체 승인 필수)
- ※ 전담 2인 또는 전담 1인, 보조 1인 등

○ 인건비 편성기준

(단위 : 개, 천원, 명)

유 형	기관수	인건비 총액	종사자수
가	2	50,642.5	2인
나	14	33,092	1인
다	2	32,456	1인

나. 강사비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사의 강사료
 - 일반 / 도서벽지 : 1시간 / 1회 기준 150,000원
 - 강사료 지급시 강의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 강사료는 반드시 강사 본인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여야 함
- ※ 내부 직원(대표자, 사업담당자 등)에 의한 대상자 교육은 그 어떤 경우에도 강사료를 개인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비 통장과는 별도로 제3의 통장(기타수입)에 입금하여 자체 집행 기준에 따라 활용 가능함

운영경비	가. 자문회의비 - 자문비 • 2시간 이내 : 100,000원 / 1인 • 2시간 초과 : 150,000원 / 1인 - 진행비 • 자문위원 및 참석자 : 10,000원 이내 / 1인 • 운영비 등 : 20,000원 / 1회(필요시) 나. 사무용품비 - 복사용지 및 토너 • 복사용지 : 25,000원 / 1BOX(1개월) • 토너 : 150,000원 / 1개(6개월) - 기타 사무용품 : 실비 다. 유인물 등 제작비 : 10,000원 / 1권(부) ※ 홍보물품 제작 등 라. 교육운영비 - 교육용 다과 및 문구 등 : 40,000원 / 1회(필요시) - 임차료(교육 장소 및 비대면 교육에 대한 기자재 대여) : 최소임차료 계상	• 자문회의 참석비는 외부 자문위원이 포함된 자문 회의에만 지급 ※ 1일 1회에 한함 • 자문회의 참석비 내부직원 지급불가 • 기타 사무용품 자산성 물품 구매 불가 • 교육운영비는 도서벽지 교육 실시 등 필요시 지출												
교통통신비	가. 출장비 ① 강사 여비 - 도서벽지 및 권역 내 왕복 100km 이상 • 교통비 : 50,000원 ※ 도서벽지 등 선박 이용 시 교통비 실비 지급(선박 운임) 가능(증빙자료로 배표 등 인증 필수) • 식 비 : 25,000원 / 1일 • 숙박비 : 실비지급 ※ 서울 10만원, 광역 8만원, 기타 지역 7만원 한도 내 ② 사업 담당자 및 기관장의 사업 관련 출장 관련 - 교통비 • 시(도) 내 출장<table border="1"><thead><tr><th colspan="2">왕복 50km</th><th colspan="2">왕복 100km</th></tr><tr><th>미만</th><th>이상</th><th>미만</th><th>이상</th></tr></thead><tbody><tr><td>20,000원</td><td>30,000원</td><td></td><td>50,000원</td></tr></tbody></table> • 시(도) 외 출장 : 실비지급 ※ 대중교통 일반실 기준 ※ 도서벽지 등 선박 이용 시 교통비 실비지급(선박 운임) 가능(증빙자료로 배표 등 인증 필수) - 일비 및 식비 : 각 25,000원 ※ 1일 5시간 이상 출장 시 나. 도서벽지 교육 시간보상수당(강사) : 100,000원 / 1일 다. 통신비, 우편료 등 : 실비 ※ 대표전화 1661-6005 사용요금·문자 발송비 등 포함	왕복 50km		왕복 100km		미만	이상	미만	이상	20,000원	30,000원		50,000원	• 교통통신비는 세부 지침에 의해 지급 가능 • 강사여비의 경우, 교육 시 강사의 원거리(도서벽지 등)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지출가능(증빙 필수)
왕복 50km		왕복 100km												
미만	이상	미만	이상											
20,000원	30,000원		50,000원											
업무보조원	가. 단순인건비(2026년 최저임금 기준 이상 계상) - 10,320원 이상 / 1시간 ※ 주휴수당, 고용·산재보험(사용자 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산정 필요, 1인당 월 60시간(주휴수당 포함) 초과 금지, 원천징수 실시	• 내부직원 지급 불가												

라. 집행 관련 문서의 관리

○ 관련 문서의 작성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각 기관 양식)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집행 관련 문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지출결의서 세부내용 작성 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 지출결의서 내용 및 증빙이 일치하도록 상세히 기재
- 물품영수증(세금계산서)의 금액과 통장출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하나의 증빙을 여러 가지 비목으로 나누어 설정하지 않도록 함)
- 지출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를 반드시 명시
ex) 단가 × 인원 × 횟수 = 지출비용

○ 관련 증빙문서

- 관련 증빙문서는 지출내역에 기재된 항목 順대로 편철하여 제출(제출된 증빙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영수증 원본은 각 기관에서 향후 5년간 보관)
- 국고 보조금과 자부담 영수증을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

1 사업 점검

가. 기본방향

- 지역 교육지원기관의 사업 운영 및 예산 집행이 지침에 부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통하여 폭력예방교육의 질적 제고 도모
- 지침 변경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변경 내용의 조기 정착 및 현장 어려움 파악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나. 지자체 사업점검 개요

구 분	내 용
점검주체	시·도
실시기간	6월(지자체 자체 계획 수립 후 실시)
결과보고	시·도 → 성평등가족부
점검내용	○ 종사자 채용관리 - 공개경쟁채용 준수, 당해 연도 기준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 ○ 직원복무상황 ○ 예산회계관리 - 집행지침 준수 여부, e-나라도움 집행관리 여부 등 ○ 사업운영 - 사업비 집행내역 및 집행률 현황, 사업계획 대비 이행실적
결과활용	지역 교육지원기관 최종 사업평가 시 반영
향후계획	○ 지자체 점검결과 제출(성평등가족부): 7월

다. 중간점검 개요

- 지역 교육지원기관의 상반기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방향 및 보완사항 파악, 환류 간담회 실시를 통한 연내 사업의 질적 향상도모

구 분	내 용
점 검 단	성평등가족부, 중앙 교육지원기관, 외부 전문가 등
실시기간	7~8월
결과보고	중앙 교육지원기관 → 성평등가족부
점검내용	○ 지역 교육지원기관 사업 중간점검 실시 - 상반기 사업 기획·운영 충실도(신규 교육대상 발굴 및 맞춤형 강의 등) - 사업 운영에 대한 이해 및 현장 적용 능력 향상을 위한 간담회
결과활용	○ 지역 교육지원기관 사업운영 최종 사업평가 시 반영(20%)
향후계획	○ 지역 교육지원기관 사업평가 실시(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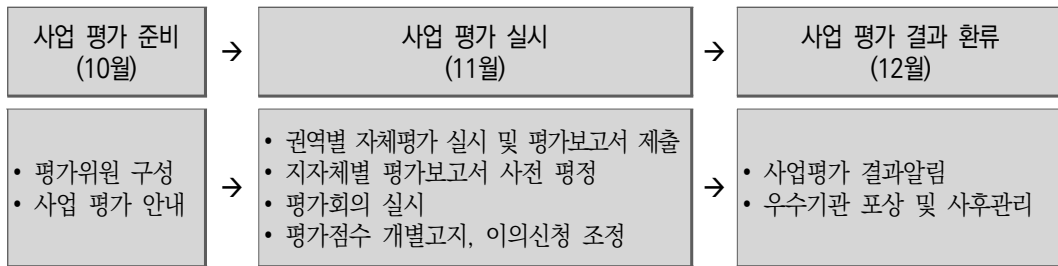
○ 중간점검 평가기준(안)

구분	점검 내용	배점
1	• 사업계획서 맞추어 사업 추진이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육 실적 관리, 사업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분기별 사업 추진 내용 등)	
2	• 지역별 특성 또는 시의성을 반영하여 교육대상을 발굴하였는가? (당해 연도 주요 교육대상 선정 배경)	
3	• 교육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대상선정, 교육기획, 교육결과 등 교육 추진 내용)	
4	• 강사 역량강화 및 관리를 잘 하였는가? (강사풀 구축, 워크숍 및 소모임 프로그램 내용, 자체점검 결과 등)	
5	•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는가? (유관기관 MOU 내용,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내용 등)	
6	• (가점) 중간점검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하였는가? (점검 내용의 구성, 근거자료 준비 등)	
7	• (가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 또는 요청사항을 제출하였는가?	

2 사업 평가

- 목적 : 지역 교육지원기관별 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사업 내실화 도모
- 평가시기 : '26. 11월 중
- 평가대상 : '26년도 지역 교육지원기관 18개소
- 평가 기준일 : '26. 11. 30.(교육지원 사업은 12월까지 지속)
- 평가방법 : 사업수행기관별로 아래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
 - 각 기관별 중간점검(20%) 결과 및 자체 평가보고서(80%)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점 환산
- ※ 예산 처리 및 적정성 등은 관할 시·도의 지도점검 및 현장점검 결과에 근거함

○ 평가 과정



○ 평가기준(안)

항 목	세 부 내 용
정량평가	• 권역별 목표 대비 교육 추진 실적
	• 강사워크숍 실시 등 강사역량강화 지원 실적
	• 교육 모니터링 실시 및 내용 환류 실적
	• 교육생 인식개선도 점수 실적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실적
	• 보고 시한 준수 및 제출(첨부) 자료 누락 여부
정성평가	• 사업 수행의 적절성 및 시의성
	• 교육 사각지대 등 전략대상 발굴
	• 대상 맞춤형 교육기획 및 실행
	• 강사 관리 체계 구축
	• 지자체 사업 협조도

※ 세부내용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인신매매등 예방 및 보호·지원 운영지침

- I.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개요
- II. 인신매매등의 정의
- III.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 IV. 인신매매등 피해자 신고의무
- V.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전화
- VI. 한시적 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인서 발급
- VII.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운영지침
- VIII. 인신매매등 신고의무자 교육



I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개요

1 제정목적

- 인신매매등의 개념과 관련 범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의하고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의 통합대응체계 구축 및 효과적인 피해자 식별·보호 등을 규정하는 포괄적 「인신매매방지법(약칭)」 제정('21. 4월)

2 추진경과

- '20년도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협의(4회)와 전문가 의견수렴(3회) 등을 통해 법안 마련 및 국회 발의(12. 24.) 후, '21년도 국회 본회의 통과('21. 3. 24.) 및 공포('21. 4. 20.)·시행('23. 1. 1.)

* 성평등부, 법무부, 고용부, 외교부, 해수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7개 부처 (주재: 성평등부 차관)

3 주요내용

- **(개념정의)** 인신매매등의 목적이 되는 착취의 유형을 성매매·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으로 구분하고, 형법·성폭력방지법 등 11개 법률상의 27개 범죄를 '인신매매등범죄'로 포괄함.

* (정의)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매매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

- **(정책협의체)** 성평등부장관은 사회부총리 소속 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5년 주기)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등이 매년 계획을 수립·집행

* (정책조정협의회)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사항을 협력·조정하는 정책협의회(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구성)

- **(피해자 식별 등 예방)** 출입국·근로감독·사회복지·사법경찰 등 현업 공무원 및 복지시설 등 종사자에 대하여 피해자 식별·활용 및 예방관련 교육 실시
- **(피해자 보호·지원)**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통해 신고에 따른 긴급한 구조(보호, 응급치료 등)를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지원시설과 연계하여 취학·의료·법률·귀국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피해자 수사·재판상 특례)** 수사 및 재판 절차와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법률조력 등 수사와 재판에 참여를 보장

II

인신매매등의 정의

1 인신매매등의 개념

○ 개념정의

- 인신매매 : ‘사람의 매매’로 한정하거나 납치·감금·폭행 등 단편적 결과로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착취 목적과 수단·행위가 서로 연관된 과정으로 이해
- UN인신매매의정서 :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의 악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나 이익의 제공이나 수령에 의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것을 의미(제3조)
- 인신매매방지법 : ‘인신매매등’이란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를 목적으로 불법적인 수단(폭행, 위계 등)을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의미(제2조)

[참고] 인신매매의정서와 인신매매방지법의 “인신매매” 개념

구분	인신매매의정서의 인신매매	인신매매방지법의 “인신매매등”
목적	1. 성매매나 그 밖의 성적 착취 2. 강제노동이나 서비스 3. 노예제 또는 그와 유사한 관행 4. 예속 행위 5. 장기의 적출 행위	1. 성매매와 성적 착취 2. 노동력 착취 * 노예상태, 노예상태와 유사한 예속상태, 사실상의 채무관계 청산을 위해 노동력을 장기간 부당하게 이용하는 상태, 불리한 노동관계에서 근로하는 상태 등을 포함 3. 장기적출 등의 착취
수단	1.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혹은 그 밖의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 2. 취약한 지위의 악용 3.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보수나 이익을 제공이나 수령	1.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매매하는 행위 2.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3.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행위	사람들을 모집, 운송, 이전, 은닉 혹은 인수하는 것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

※ 아동·청소년·장애인인 경우 폭행, 위계 등 이 법률로 규정된 수단의 사용이 없어도 착취 목적과 행위가 있는 경우 “인신매매”로 간주

2 | 인신매매등 범죄의 개념

- “인신매매등”으로서 「인신매매방지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관 계 법 령

형법(제274조, 제287조, 제288조, 제289조,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 제294조, 제296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15조), 청소년 보호법(제55조~제57조), 아동복지법(제71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근로기준법(제107조), 선원법(제167조제3호), 장애인복지법(제86조제2항 제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5조제5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3 | 인신매매등 피해자의 개념

- 적용대상 피해자(제3조제1항)
 - (1)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으로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 (2)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
 - (3)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1) 또는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외]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
- 국적별 조건(제3조제2항)
 - 내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 외국인 : 국내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1

법령근거(인신매매방지법 제13조, 시행령 제6조)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이하 “피해자 식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 고시하고,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활용을 권고하여야 함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을 권고받은 기관의 장은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식별지표 활용 권고 대상 기관 및 적용업무

기관	활용 권고 기관 공무원	세부 직군	적용업무(예) (내외국인 불문)
검찰청	검사 검찰수사관	검사, 검찰수사관	인신매매등 피해신고 수사 등
경찰청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	경찰	인신매매등 피해신고 수사 등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고용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	사업장 지도·점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 선원근로실태조사 등
해수부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관서 공무원	• 예술 흥행 비자(E-6-2) 연장, 출입국 관리법 제25조의2 및 46조의2 업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장 지도 점검 • 기타 출입국 관련 업무
지자체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지자체	•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장 지도 점검 등 외국인 접촉 업무 • 기타 외국인 관련 지도 점검 업무

※ 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부처별 상황과 조직을 고려하여 적용업무(예시) 수정 가능

3 피해자 식별지표의 주요내용

○ 피해자 식별목표

- 잠재적 인신매매등피해자를 조기에 식별·발견하여 보호·지원
- 다른 범죄에 숨겨진 잠재적 인신매매등피해자를 식별·발견하여 보호·지원
- 식별지표 활용후 피해자 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신고의무자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

○ 주요내용

- (일반적용기준) 피해자 식별지표 행위, 수단, 목적 항목을 활용하여 피해자 여부 확인
 - 법 제13조제1항의 공무원 소속 활용 권고기관은 피해자의 국적, 성별, 연령,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 항목을 추가 또는 수정하여 사용 가능
- (피해자식별지표 세부항목) 인신매매 식별에 필요한 세부 점검항목을 인신매매등 개념의 구성요소(목적, 행위, 수단)별 점검표로 구성함

구성요소	세부 구성 요소	점검문항
행위	모집, 운송, 은닉, 인계·인수	4문항
수단	위계, 위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수단* * 경제적 통제수단 3개, 물리적 통제수단 8개, 정서적 통제수단 6개	3문항
착취목적	공통, 성매매와 성적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 착취	6문항

○ 활용방법 및 유의사항

- 고시된 식별지표는 일반적인 접근과 식별 방법에 기초하므로 잠재적 피해자에게 완벽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염두 하여야 함
- 따라서 신고의무자, 관계공무원 등은 실제 현장에서 현지 상황과 조건에 비추어 경험과 판단을 토대로 식별 과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참 고

신고의무 대상시설(법 제21조, 시행령 제15조)

- ▶ 식별지표는 위 지침을 적용하고 식별지표 활용 후 피해자 지원 절차 등은 지역피해자 권익보호 기관 한시적 운영 절차 기준을 적용('피해자 식별지표의 세부 점검항목' 참조)

4 일반 적용기준

- 가. 피해자식별지표는 인신매매등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신속·정확한 발견과 조사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된 일반화된 지표로서,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등은 피해자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인신매매등의 피해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아래 지표의 ‘행위’, ‘수단’, ‘목적’의 해당 점검표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은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잠재적피해자”라 한다)의 국적·성별·연령·직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중심 관점에서 지표 항목을 추가하거나 문구를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다. 법 제2조제1호 후단의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래 지표 중 ‘수단’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다.
- 라. 잠재적피해자가 ‘행위’, ‘수단’, ‘목적’의 각 항목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로 확인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피해자 식별지표의 세부 점검항목

가. 인신매매등의 ‘행위’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요 소
☐ 본인 및 가족 연락망을 통하여, 또는 취업 광고(인쇄매체,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를 보고 모집인을 만나 수수료(중개료, 이탈보증금 등)를 주기로 약속했다.	모 집
☐ 살던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소지, 다른 나라로 이동했으며, 사전 동의 없이 모집을 한 사람 또는 이동을 시킨 사람과 목적지까지 동행하였다.	운 송
☐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입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일정기간 머물러 있어야 했다.	은 닉
☐ 모집을 한 사람 또는 이동시킨 사람에 의해 제3자에게 인계되었다.	인 계 인 수

나. 인신매매등의 ‘수단’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요 소
☐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폭행과 협박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동하거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거나 고립되었다.	위 력(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 포함)
☐ 모집 당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고지) 들은(받은) 것과 실제로 한 일이나 근로조건이 달랐지만,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위 계 (사기·기만 등 유인 포함)
☐ 본인 또는 가족이 모집인에게 진 부채, 급여통장이나 신분증 같은 서류를 본인의사에 반하여 소유하지 못하는 등 통제로 인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떠날 수 없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 (권력남용, 취약성 이용, 지배관리 등 포함)

위 ‘수단’ 요소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경제적 통제수단

- 사업장에서 부당한 규칙을 이용하여 급여·퇴직급여를 자신의 동의 없이 과도하게 공제하거나 삭감하였다.
- 고용 또는 이주과정(모집·이동·입국 후 등)에서 발생한 또는 발생하는 채무 또는 이탈보증금에 의한 속박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겪었다.
 -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을 그만두거나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웠다.
 - 채무 변제를 이유로 급여·퇴직급여를 부당하게 공제하거나 삭감하였다.
- ※ 채무의 예시 : 증빙서류 준비, 비자 발급, 이동경비, 숙박비용, 중개수수료, 사업장 내 벌금, 생활비 명목 선금금 등
- 노동의 대가로 급여·퇴직급여를 거의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관리하지 못했다

☐ 물리적 통제수단

- 고용주, 기획사 관계인, 중개인, 사업장 관계자 등에게 성폭력이나 육체적 폭력을 당하였거나 반복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
- 계약 조건에 없거나 동의하지 않는 일을 강제로 시키거나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도 일을 시켰다.
-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 업소(성매매업소, 유흥업소, 마사지업소, 클럽 등)에서 다른 업소로 이동하거나 다양한 지역에서 일했다.
- 숙소에서 고용주 및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등 감시를 당했다.
- 음식, 물, 생필품 등을 제한받았고 의료서비스를 제약받았다.

- 일하던 곳에 창살이 설치된 창문, 잠긴 문, 전자감시와 같은 보안장치로 인해 자유로운 이동이 제약된 상태로 감금당했다.
- 외출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과 동행해야 했다. 또한 외부와의 소통(서신교환, 전화, 휴대전화 등)도 허락이 필요했다.
- 여권, 신분증 같은 신분증명서를 본인이 소지 못하거나 신분증 등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 정서적 통제수단

- 본인 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으로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 국내에서 내쫓거나 더 안 좋은 곳으로 보내겠다고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 경찰에 신고하면 불법(성매매, 불법체류, 범죄행위 등)을 저질렀으므로 오히려 본인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등 경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
- 업소(성매매업소, 유흥업소, 마사지업소, 클럽 등)를 탈출하면 가족 및 지인 등에게 성매매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찍게 했다.
- 본인이 현재 있는 곳의 주소 및 위치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고용관계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

다. 인신매매등의 착취 ‘목적’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요 소
☐ 고용 또는 이주과정(모집·이동·입국 후 등)에서 발생한 또는 발생하는 채무(증빙서류 준비, 비자 발급, 이동경비, 숙박비용, 중개수수료 등) 또는 이탈보증금에 대한 변제를 구실로 급여·퇴직급여를 공제당하거나 스스로 관리하지 못했다.	공통
☐ 자유의사에 따라 일을 그만둘 수 없었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 받았다.	
☐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성적 착취를 당했다.	성매매와 성적착취
☐ 적법한 근로조건(최저임금, 수당, 근로 및 휴게시간, 숙식제공 등)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노동력 착취
☐ 계약 조건에 없는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당했고,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육체적 폭력 또는 반복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	
☐ 당사자가 장기 적출을 주장하거나 신체의 흔적이나 상처로 인해 불법 장기 이식이 의심된다.	장기적출 등 착취

6 행정사항

- 피해자식별지표 활용 권고기관은 식별지표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목적

- 직무 수행과정에서 인신매매등 피해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이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여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촉진

2 법적 근거

- 「인신매매방지법」 제21조(신고의무), 제48조(벌칙), 제50조(과태료)
-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 제15조(신고의무)

3 신고 의무

- 누구든지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함)할 수 있음.
- 법령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이하 “신고 의무자”라 함)는 직무상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피해자 권익보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참 고 신고의무 대상시설(법 제21조, 시행령 제15조)

- ▶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 ▶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 ▶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상담소,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시설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 ▶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 ▶ 「인신보호법」상 의료시설, 복지시설, 수용시설, 보호시설
-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 노숙인시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외국인고용지원 단체

- (법 제21조제3항)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

☞ (벌칙) 「인신매매방지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벌

금지되는 불이익조치	벌칙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 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법 제21조제4항)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됨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8조제1항제3호)

- (법 제23조제4항)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신고자등을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訊問)할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관련규정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10조(영상물 촬영), 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제13조(신변안전조치)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인적사항의 공개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벌칙)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한 자는 「인신매매방지법」 제48조제1항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 신고의무 불이행

- (법 제21조제2항) 시설의장이나 그 종사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인신매매등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법 제45조제1항) 성평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지원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법 제46조) 이 법에 따른 지원시설이 아니면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과태료)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 제30조 부과기준 적용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제1항	500만원		
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0조 제2항제1호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다. 법 제46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0조 제2항제2호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1 중앙권익보호기관 피해 상담전화

○ 상담전화 ☎ 1600-8248

- 운영시간: 평일 10:00 ~ 17:00, 한국어 상담만 가능

- 내 용 : 인신매매등 피해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지원연계 등

○ 연계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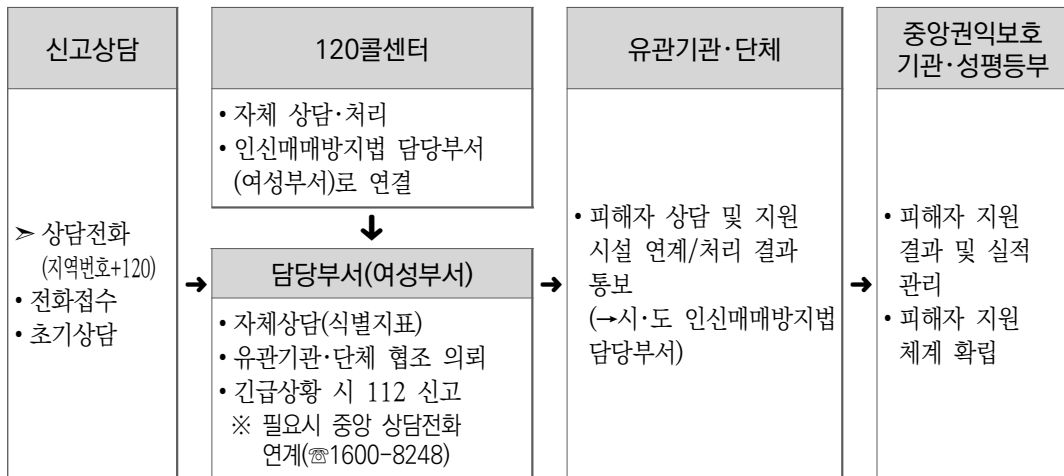
피해 구분	지원기관	지원내용	운영시간
긴급 대응	112	- 인신매매등 긴급 범죄신고, 출동요청 등	365일 24시간
	119	- 신체상해 등으로 긴급하게 구조·이송이 필요한 경우	
성착취	여성긴급 전화1366	- 여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리)신고접수, 긴급상담, 관련기관 연계, 긴급구조 등	365일 24시간
노동 착취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 고용상담, 노동상담, 외국어상담(영어, 중국어) 등 - (지원언어) 3개 국가(한국, 영어, 중국)	평일 09:00~18:00
정신 건강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 정신적 위기상황에 대한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365일 24시간
외국인	다누리콜 1577-1366	- 전문 법률 자문, 3자 통화 통역 및 번역서비스 등 (지원언어) 13개 국가 한국, 영어, 중국, 베트남, 타갈로그어, 캄보디아, 몽골, 러시아, 일본, 태국,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네팔	365일 24시간
	외국인종합 안내센터 1345	- 출입국민원 상담 및 생활편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3자통역서비스 제공 등 (지원언어) 20개 국가 한국, 영어, 중국, 베트남, 태국, 일본, 몽골, 인도네시아, 프랑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러시아,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독일, 스페인, 필리핀, 아랍, 스리랑카	평일 09:00~22:00
	외국인력 상담센터 1577-0071	- 고용·체류지원 업무 상담 등 (지원언어) 20개 국가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영어,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평일 09:00~18:00 (연중무휴)
그 외	장애인 피해 1644-8295	-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의 가족,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등	평일 09:00~18:00
	노인 피해 1577-1389	-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학대피해 노인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학대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등	365일 24시간

* 한국외국인노동지원센터(☎ 1644-0644), (선원)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1566-3151)

2 | 시·도 피해 상담전화

- 운영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원 120콜센터
- 운영방법 : ☎지역번호 + 120
 - 운영시간 : 10:00 ~ 17:00
 - 대 상 : 인신매매 관련 피해자, 신고의무자, 일반국민 등
 - 내 용
 - 인신매매등 피해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 피해유형별 전문상담 필요시 관계부처 소속 상담전화 연계
 - 긴급상황 시 수사기관 등 상담원이 직접 신고
- ※ 상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중앙 상담전화 연계(☎1600-8248)

○ 운영 체계도



○ 기존 지원체계 내 정보제공 및 연계(관계부처·기관)

구 분	성 착 취	노 동 력 착 취
내 국 인	공 통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선원)지방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11개소)
	아 동 청소년	
	성 인	
	장애인	
	노 인	
외국인	성매매피해상담소 두레방(1개소)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9개소)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시설(33개소)	• 한국외국인노동지원센터(1644-0644) • 고용허가제)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 (선원)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1566-3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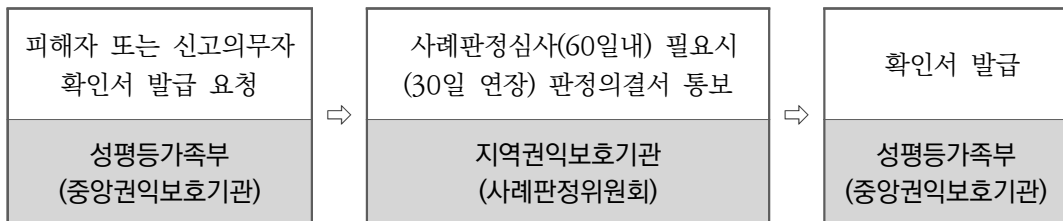
1 추진배경

- 「인신매매방지법」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도별로 지역권익보호기관에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를 두어야 하나,
 - 그 간 시·도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 독려에도 불구하고 미설치로 인해 사례판정과 확인서 발급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중앙권익보호기관에 한시적으로 「사례판정위원회」를 구성·운영

2 현행 법령상 피해자 확인서 발급 절차

- 법적근거 : 인신매매방지법 제14조 및 제15조, 동 법 시행령 제7조

〈 확인서 발급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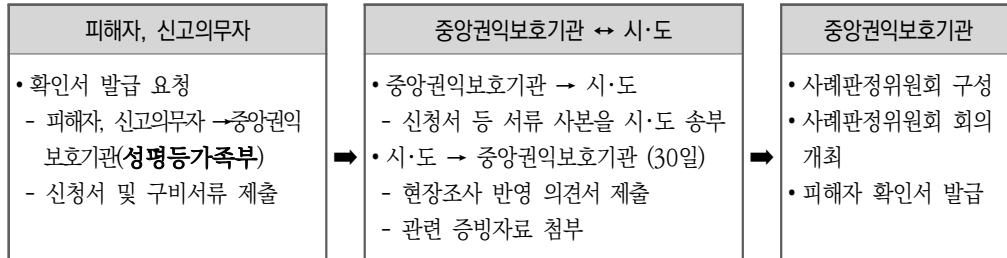
3 한시적 대응방안

- 시·도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미설치로 인해 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 「중앙권익보호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사례판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피해자 확인서 발급

▶ 「중앙권익보호기관」에서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접수(중앙권익보호기관) → 피해사실 확인(시·도) → 사례 판정(중앙권익보호기관)
- 중앙권익보호기관 일괄 심의·판정으로 전문성 강화 및 판정의 일관성 유지 가능

〈 한시적 확인서 발급절차 〉





1

사업 개요

구 분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이하 '피해자 구조지원비')
목 적	인신매매등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피해지원으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마련
지 원 대 상	- 인신매매방지법 제3조(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 -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으로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 -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사 업 주 체	-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이하 '중앙권익보호기관') - 인신매매등피해자 지원기관 -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개인 ※ 이주민 피해자의 경우 원활한 제도 이용을 위하여 피해지원기관에 조력 요청
사 업 내 용	-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질병 등 치료비,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귀국지원 등 - 취학·취업·법률·의료·생계·귀국·통·번역비
지 원 기 간	- 지원항목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지원 가능하며, 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인서 발급 또는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 등 인정 이후부터 지원 가능 (피해자확인서 발급 또는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 등 인정 이전에 발생한 지원은 구조지원비로 지원 불가) - 단,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지원, 법률 지원 등이 긴급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판단하여 선 지급 가능
유 의 사 항	- 지원비 지출은 사용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생계비 지원 예외) - 지원비 지출은 신청자 및 신청자의 대리인(지원기관 등)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비의 경우 해당 병원으로 지급함 (인신매매방지법 제30조에 의거 불가피하게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자에 한하여 생계비 지원 가능) - 내국인 피해자 등 지원기관이 없는 경우 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 ※ 피해자 지원시설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등과 같이 숙식이 제공되는 시설 - 의료비 지급은 중앙권익보호기관의 장(인신매매방지법 제28조)이 직접 집행

구 분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이하 '피해자 구조지원비')
★ 중복 지원 불가	○ 타 지원제도로 취학·취업·법률·의료·생계·귀국·통번역비 지원을 받는 경우,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피해자 구조지원비로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음. 단, '질병군'이 다른 경우 의료지원 가능, 법률지원은 심급이 다를 경우 지원 가능 (예시 1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을 통하여 의료비(심리상담) 지원을 받는 경우,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로 의료비(산부인과) 지원 가능 예시 2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을 통하여 1심 법률지원을 받는 경우,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로 2심 법률지원 가능) ※ 중복지원 여부는 인신매매방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

2 사업추진 체계

가. 피해자 확인서를 받은 사람

1) 사업추진 체계도



2)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신청 및 접수 세부 절차

① (지원기관·개인) 구조지원비 신청서 제출(→ 중앙권익보호기관)

- 신청 대상 :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개인
※ 지원기관을 통해 구조지원비를 신청하되, 피해유형 및 특성으로 인해 지원기관 연계가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가 직접 신청 가능

- 신청 구비서류

(a) 피해자 구조지원비 신청서[서식 12] 1부

(b) 가족관계증명서(직계비속 지원 필요시)

※ 미등록체류자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등

(c) 생계지원 신청 시 생계지원 신청서[서식17] 및 소득 판별 관련 서류[참고]
제출 필수

※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사실증명서(국세청 발급)
제출

※ 2026년 상반기 신청 시 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2026년하반기 신청 시
2025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d) 각 지원 유형별 제출 필요 서류 참조

② (중앙권익보호기관) 신청서 검토 및 중복지원 확인 요청(→성평등가족부)

③ (성평등가족부) 중복지원 확인 요청(→ 신청자 거주 지자체(시·도, 시·군·구),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 단, 미등록외국인 피해자인 경우 지자체 중복지원 확인 절차 생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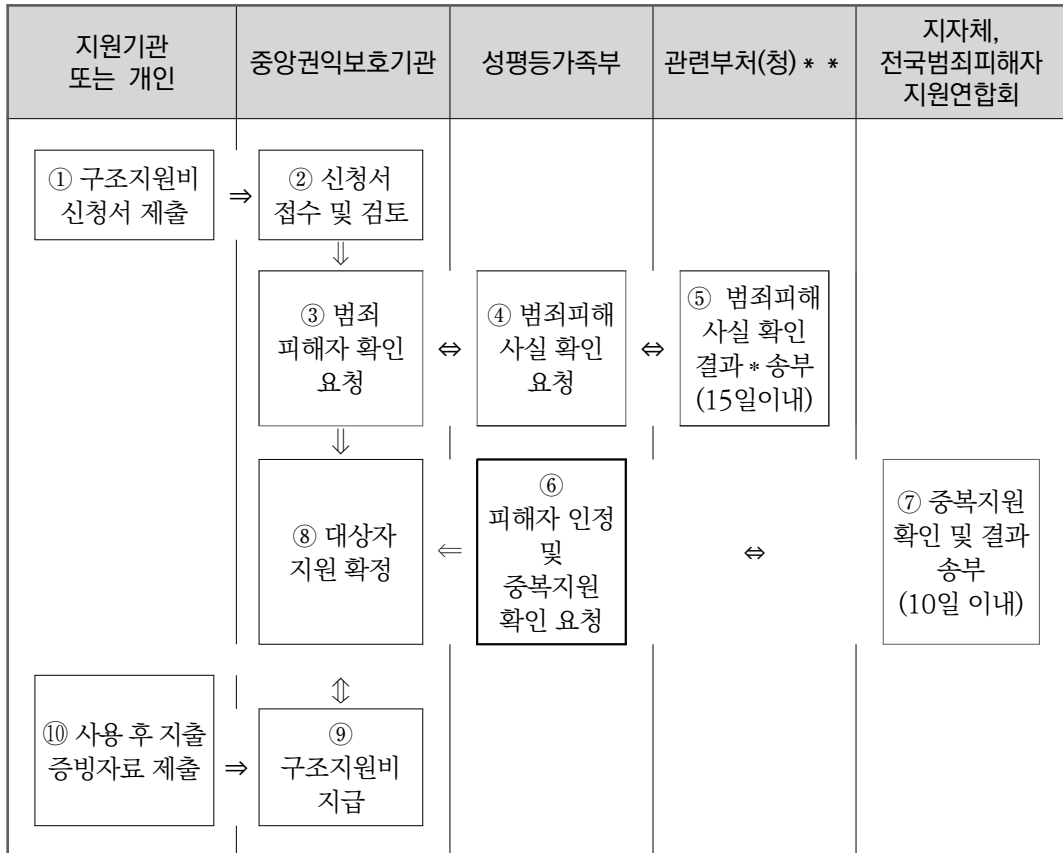
④ (지자체·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중복지원 확인 및 결과 송부(→ 성평등가족부)

- (중복지원 제한) 인신매매방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유사한 보호 및 지원 여부 확인
- 대상자 거주 시·도는 시·군·구의 인신매매 담당부서, 복지부서 등 관계부서의
협조를 통해 유사한 지원여부 확인 후 성평등가족부에 10일 이내 결과 송부

나. 인신매매등 범죄피해자

※ 피해자 확인서 발급 불필요

1) 사업추진 체계도



* 수사관련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사의견서 등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임이 표기된 서류), 식별지표 활용 결과서[서식 13] 또는 부처(청)별 해당 서류 등

* * 관련부처(청)

기관	세부 직군	적용업무
검찰청	검사, 검찰수사관	인신매매등 피해신고 수사 등
경찰청	경찰	인신매매등 피해신고 수사 등
해경청	해양경찰	
노동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	사업장 지도·점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행위 특별단속, 선원근로실태조사 등
해수부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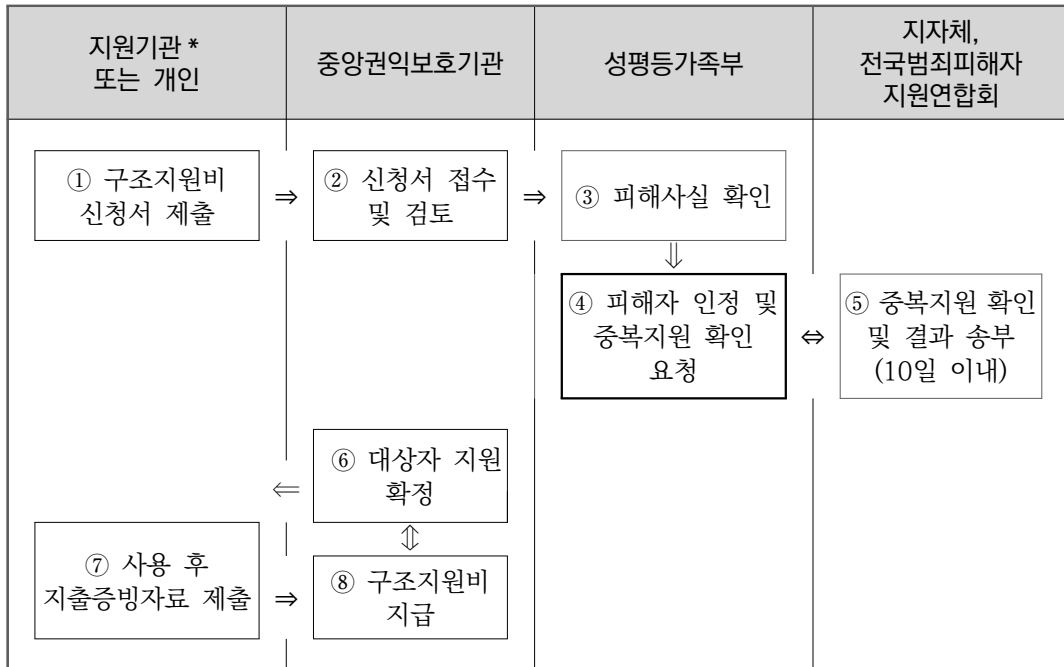
2)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신청 및 접수 세부 절차

- ① (지원기관·개인) 구조지원비 신청서 제출(→ 중앙권익보호기관)
 - 신청 대상 : 인신매매등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개인
 - ※ 지원기관을 통해 구조지원비를 신청하되, 피해유형 및 특성으로 인해 지원기관 연계가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가 직접 신청 가능
 - 신청 구비서류
 - (a) 피해자 구조지원비 신청서[서식 12] 1부
 - (b) 가족관계증명서(직계비속 지원 필요시)
 - ※ 미등록체류자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등
 - (c) 생계지원 신청 시 생계지원 신청서[서식17] 및 소득 판별 관련 서류[참고] 제출 필수
 - ※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사실증명서(국세청 발급) 제출
 - ※ 2026년 상반기 신청 시 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2026년하반기 신청 시 2025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d)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임이 명시된 수사 관련 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 (e) 각 지원 유형별 제출 필요 서류 참조
 - (f) 그밖에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② (중앙권익보호기관) 신청서 검토 및 범죄피해자 사실확인 요청(→ 성평등가족부)
- ③ (성평등가족부) 범죄피해자 사실확인 요청(→ 관련 부처(청))
- ④ (관련 부처(청)) 범죄 피해자 사실 확인 결과 송부(15일 이내)
 - 수사관련 서류(신청인이 인신매매등 범죄 피해자임이 표기 되어야 함)
 - 식별지표 활용 결과서 등(부처(청)별 해당서류 등)
- ⑤ ‘중복지원확인 요청’이하 절차는 ‘피해자확인서 발급 받은 사람’ 과 동일함

다. 아동·청소년·장애인 인신매매등 피해자

※ 피해자 확인서 발급 불필요

1) 사업추진 체계도



* 지원기관에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해서 구조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 식별지표 활용 결과서[서식 13], 상담일지 등 첨부하여 중앙권익보호기관 으로 구조지원비 신청

2)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신청 및 접수 세부 절차

①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신청서 제출(→ 중앙권익보호기관)

- 신청대상 : 인신매매등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지원 기관

※ 지원기관을 통해 피해자 구조지원비를 신청하되, 피해유형 및 특성으로 인해 지원기관 연계가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신청 가능

(a) 피해자 구조지원비 신청서[서식 12] 1부

(b) 가족관계증명서(직계비속 지원 필요시)

※ 미등록체류자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등

(c) 생계지원 신청 시 생계지원 신청서[서식17] 및 소득 판별 관련 서류[참고]
제출 필수

※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사실증명서(국세청 발급)
제출

※ 2026년 상반기 신청 시 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2026년하반기 신청 시
2025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d) 인신매매등피해자임을 나타내는 식별지표 활용 결과서[서식13]
- (e) 각 지원 유형별 제출 필요 서류[서식 12] 참조
- (f) 그밖에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② (중앙권익보호기관) 신청서 검토 및 중복지원 확인(→ 성평등가족부)
- ③ ‘중복지원확인 요청’이하 절차는 ‘피해자확인서 발급 받은 사람’ 과 동일함

3 사업비 지원내용 및 집행방법

가. 공통사항

- 인신매매등 피해자 지원기관(중앙권익보호기관 포함)은 피해자 구조지비 대상자 기본카드[서식14]와 피해자 구조지원비 통합카드[서식15] 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나. 취업지원

구분	취업지원
대상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 1.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으로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2.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 3.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근거	○ 인신매매방지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집행주체	○ 피해자(지원기관 등)
지원내용	○ 지원기준 - 국·공립 직업훈련기관, 민간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모든 외부 훈련기관을 포함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피부미용, 요리, 미용, 디자인, 컴퓨터 관련 등 실질적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한 직업교육 및 진학 교육비 -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연간 총 15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지원항목 :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직업교육비 또는 학원비, 재료비, 한국어 교육 등
집행방법	○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가 수강한 교육기관에 교육비 선지출 후 교육기관이 발행한 청구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비 신청 - 출석부, 확인서 등 출석률 확인 근거 서류 - 자격증 및 검정고시 등 시험료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및 수험증 - 학원비 및 재료비 등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및 내역서 - 가급적 카드 결제하되, 계좌 이체하는 경우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등 첨부

다. 법률지원

구분	법률지원
대상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 1.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으로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2.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 3.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근거	○ 인신매매방지법 제27조, 시행령 제18조
집행주체	○ 피해자(지원기관등)
지원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인신매매등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 형사사건의 대리 및 변호를 무료로 제공 ※ 기존 법률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피해자 구조지원비에서 지원
지원내용	○ 지원 기준 -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실비 지원 - 1인당 법률지원은 총 6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되, 초과 시 중앙권익보호기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여부 결정 - 법률지원의 제비용(인지대 및 증거수집 등을 위한 조사동행비, 교통비, 숙식비, 녹음비 간접비용)은 지원 가능하나, 숙식비 등의 간접비용이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 지원 내용 - 민사·가사 소송대리: 인신매매등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지원 결정 시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 - 형사소송 지원: 인신매매등 피해자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법률상담과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대리 등을 지원
집행방법	○ 변호사 선임의 경우 사업수행자가 법률사무소에 카드결제(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 가능, 현금 지급 불가)하고 법률사무소에서 발행한 청구서 및 영수증 첨부 - 가급적 카드 결제하되 계좌 이체하는 경우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등 첨부 ○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및 법률지원 제비용의 경우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및 청구서 등 첨부 - 가급적 카드 결제하되, 계좌 이체하는 경우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등 첨부

라. 의료비 지원

구분	의료비 지원
대상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 1.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으로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2.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 3.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근거	○ 인신매매방지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집행 주체	○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지정 시)
지원 내용	○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은 제외한다) - 인신매매등 피해자의 의료상담 및 지도 - 인신매매등 피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 등 포함) • 심리치료비의 경우 상담사 자격증, 상담일지, 비용 산정 확인 자료 - 약제비 및 의료기기 구입비, 보조기구 구입 2. 진단서 발급 비용 3. 인신매매방지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된 피해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 원칙	○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 지원(비급여 심리치료 제외)하되,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 가능함. - 다만 비급여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경우 회기당 2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회당 20만원 초과 시 자부담 해야 함. 비급여 심리치료 지원은 6개월, 최대 400만원 원칙 ※ 초기 심리평가(MMPI, 스트레스 검사 등) 비용은 50만원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400만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 의료비 지원내용 금액이(비급여 심리치료 지원비용 포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의료비 지원 신청[서식16] 제출 시 관련 서류 동봉 필요 ※ 100만원(1회당) 이상 고액의 검사 또는 고액의 비급여 항목 지원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서 검토, ▲내부 사례회의 등을 거쳐 지원 여부 결정 ※ 500만원(누적금액) 이상 의료비 지급의 경우 ▲주치의 소견서 검토, ▲내부 사례회의 및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지급 적정성 검토 의견을 첨부 (단, 외상치료에 대한 비용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외) ○ 인신매매등으로 인한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의료비만 지원 (단순한 미용이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지원 제외) ○ 입원실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기준병상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 병실이 없거나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거나, 의사의 소견서 또는 상담원(간호사 등 의료지원 담당자 포함) 의견서 등 사유서를 첨부하여 상급병실 사용 가능

구분	의료비 지원
	* 상급병실 사용 필요 : 13세 미만의 인신매매등 피해자 또는 심각한 외상 피해,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건,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필요한 피해자 등 ※ 긴급 시 중앙권익보호기관과 사전 협의 후 사후에 사유서 첨부 가능 ○ 한방치료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한해 본인부담분만 지원 - 의료비 지원은 인신매매등과 관련된 외상·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응급의료지원의 성격을 지니므로 고가의 한방 처방이나 탕약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저소득 의료급여(1, 2종) 수급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급여로 집행 ○ 보조기구 구입의 경우 진료비 명세서 및 진료내역 등에 보조기구 필요에 대한 의사 소견 필요
집행 방법	○ 피해자 지원기관은 중앙권익보호기관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16]를 제출하고, 중앙권익보호기관은 신청서 접수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비 명세서(간이영수증 불가), 진료내역 등을 제출받은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긴급하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앙권익보호기관과 사전협의 후 의료비 지원 신청서 사후 제출 가능

마. 생계지원

구분	생계지원
대상	○ 인신매매등피해자 지원시설 및 유사한 보호·지원시설*에 불가피한 사유로 입소하기 어려운 피해자등(피해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자 포함) * 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등
근거	○ 인신매매방지법 제30조
집행 주체	○ 피해자(지원기관)
지원 내용	○ 당해연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비 지원금액에 한하여 물품 또는 금품 지원 가능 - 3회 지원(월 1회) 원칙이며, 필요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대 6회 지원 가능 - 생계지원 신청 시 생계지원 신청[서식17]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참고] 제출 필수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후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가능 ○ 생계지원 대상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자의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지원 금액 지원 ○ 지급 기준 - 피해자확인서 발급 시점부터 소급 지원 가능 - 인신매매등 범죄피해자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피해자는 대상자 인정 시점부터 소급 지원 가능
집행 방법	○ 피해자가 기존 생계급여 지원제도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하도록 함. 다만, 자산 및 소득현황이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하나 체류자격 등 기타의 이유로 생계지원이 불가능한 자는 피해자 구조지원비로 생계 지원 가능 ○ 생계비 금품 지급은 반드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지급해야 하며, 생계지원(금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경우 지원금액 내에서 지원기관이 물품구입 후 지원 가능

바. 귀국 지원

구분	귀국 지원
대상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 1.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으로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2.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 3.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근거	○ 인신매매방지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집행주체	○ 피해자(지원기관)
지원내용	○ 본국으로 귀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항공료 구입, 여권 및 비자발급 등 지원 - 귀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중교통(철도 일반석, 고속버스 등)에 한하여 실비 지원
집행방법	○ 귀국 관련 실비를 지원하며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영수증 및 내역서 첨부 필요 - 가급적 카드 결제하되 계좌 이체하는 경우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등 첨부 필요

사. 통역 지원

구분	통·번역 지원
대상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 1.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으로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2.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 3.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집행주체	○ 피해자(지원기관)
지원내용	○ 의료지원, 법률 지원 시 필요한 통·번역 지원(1인당 최대 150만원) ○ 집행기준: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기준에 따름 1. 통역료 :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0분씩 끊어 남는 부분은 이를 30분으로 본다)로 산정하되, 최초 30분에 대하여는 70,000원, 이후 추가되는 30분에 대하여는 매 30분마다 50,000원을 지급 2. 번역료 :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 ,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 을 지급 3. 통역인 여비 지급 가능, 단 대중교통(철도 일반석, 고속버스 등)에 한하여 실비 지원
집행방법	○ 통·번역인 통장 사본 및 이력서, 통·번역비 지급영수증 등 - 지급 시 구체적인 통·번역 내용, 소요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 통·번역 지출 시 통·번역인 이력서에 관련 전문 이력이 명시되어야 함.

① 사업비 집행 방법

- 피해자 구조지원비 예산은 별도 분리하여 회계 처리해야 하며, 통장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함
- 구조지원비는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 항목과 집행건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지출하여야 함
 - 구조지원비 신청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 항목은 지출할 수 없음.
 -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조지원비(변경) 신청서 [서식 12]를 제출하고 중앙권익보호기관의 승인 필요
 - 다만, 총 신청 금액 내에서 항목간 100만원 이내 예산변경인 경우 자체 예산 변경으로 가능, 결과 보고 시 관련 내용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예시) 총액 100만원 신청, 50만원 의료비 신청, 50만원 법률지원비 신청 → (변경) 총액 100만원 변경 없음, 70만원 의료비, 30만원 법률지원비로 변경 가능
 - ※ 변경 시 공문을 통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구조지원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인출 사용이 불가하며, 카드지출 및 계좌이체로만 지출 가능
 - 계좌이체 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등 필수(금품 생계 지원 경우 제외)
- 실제로 집행되는 금액(지출결의서에 명시되는 금액)은 품의서에 명시된 소요 예산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
- 지출 불가 업종에서의 사업비 집행 불가함(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기타 업종 등)
- 구조지원비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출유형별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지출결의서에는 목적 및 내용, 예산 비세목명, 산출내역,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담당자와 관리자가 서명하여야 함
 - 기관사용 양식이 있는 경우 해당 양식을 사용하되, 지출 상세내역 기입 필요
 - ※ 피해자 개인이 신청시에는 지출결의서 작성 생략

② 지출 증빙자료

- 구조지원비 사업비 통장 원본
 -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예산 배분 전 잔액은 0원이어야 하며, 사업종료 후 통장거래내역 사본 제출 필수
- 지출결의서 원본(지출 순서대로 보관)
 - 지출에 대한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증빙을 첨부
 - 적격증빙 : ①카드 결제 영수증, ②국세청 발급 현금영수증, ③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부적격 증빙 : 간이영수증 및 단순 청구서 등
 - 결의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함께 편철하여 보관 후 사업종료 시 중앙권익보호기관으로 제출
- 이외 지출내역과 관련된 자료 일체

- 사업종료 및 정산 확정 이후에도 별도 감사 등을 통해 부적정 집행으로 의심되는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소명이 요구되므로 집행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보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
- 신속한 사업 정산과 집행 관련 시행착오의 방지를 위해 사업수행 지출 발생 시마다 지출 결의서와 증빙자료를 미리 작성하여야 함

③ 기타 유의사항

- 사업 보안관리
 - 수행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 유지를 위하여 전담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상 보안사항 등 대외 비공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함.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지원기관에 있음
 - 지원기관은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서류·자료 등을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없음
- 개인정보 관리
 - 사업추진 과정에서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함
- 사업결과 환류 및 결과 보고
 - 중앙권익보호기관은 사업 진행 및 현황 파악 등을 위하여 선정기관에 사례 회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종료 시 진행 과정 및 결과를 환류하기 위해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인신매매방지법」에 근거한 지역권익보호기관 및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전까지
우리부 및 관계부처 피해자 지원시설을 활용하여 우선 지원
- 다만 피해자등에 대한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대 상	피해유형	근거법률	지원내용	비 고
인신 매매	인신매매	인신매매방지법	• 피해자지원시설(취학, 취업, 법률, 의료비, 생계, 귀국지원 등)	성평등 가족부
성인 여성	성매매, 성적착취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외국인포함)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교육, 법률, 직업훈련 등)	"
		성폭력방지법 (외국인포함)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교육, 법률, 의료, 보호, 직업 훈련, 귀국지원 등)	"
		가족폭력방지법 (이주여성)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교육, 법률, 의료, 보호, 직업훈련, 귀국지원 등)	"
아동· 청소년	성매매, 성적착취 (여성)	청소년성보호법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교육, 법률, 의료, 보호, 직업훈련 등)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취학, 법률, 의료, 보호, 직업훈련 등)	"
	성매매, 성적착취 노동착취(남여)	청소년복지지원법	• 청소년쉼터(교육, 보호, 직업훈련, 문화활동 등)	"
범죄 피해자	범죄피해자 (외국인포함)	범죄피해자보호법	•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법무부
		업무처리지침	• 의료, 생계, 학자금, 장례비 등	"
아동, 청소년	성매매, 성적착취 노동착취(남여)	아동복지법 (장애인포함)	• 치료,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	복지부
장애인	성매매, 성적착취 노동착취(남여)	장애인복지법 (외국인포함)	• 교육, 의료, 직업훈련, 알선, 장애수당, 법률지원 등	"
성 인	노동착취 (남여)	외국인고용법	• 법률, 의료, 귀국, 보호 등	노동부
범죄 피해자	노동착취	선원법	• 법률, 건강증진, 임금체불, 재해 보상 상담 등	해수부

1 법적근거 및 내용

- (근거) 인신매매방지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1. 「인신매매방지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2. 「인신매매방지법」 제29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의 종사자
3. 「인신매매방지법」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종사자
4.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5.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
6. 「선원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7.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종사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교육 방법 및 결과제출

- (교육기간) 2026. 1. 1.부터 2026. 12. 31.까지(매년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또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제작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자체교육
 - 온라인 교육수강 : 온국민평생배움터(www.all.go.kr) 등
 - 교육자료 :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교육정보 → 인신매매등 예방교육자료
- (결과제출) 2027. 1. 15.까지 성평등가족부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제출
 - (광역자치단체: 신고의무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 소속 시·군·구에 신고의무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육 안내, 교육 결과 취합 제출
 -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종사자) 본부 및 소속기관 관련종사자 교육 안내, 교육 결과 취합 제출

- 신고의무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시설 사업 운영지침에 인신매매 신고 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결과는 시·도 인신매매 업무 소관부서에서 최종 취합하여 성평등가족부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제출
 - 시·도 각 사업 부서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예)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신고의무자) 실적 제출 체계

- ▶ 시·도 장애인시설 담당 부서 → 시·도 인신매매 담당 부서 → 성평등가족부 (○)
- ▶ 시·도 장애인복지시설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 성평등가족부 (×)
- ▶ 시·도 장애인복지시설 담당 부서 → 성평등가족부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에 대한 교육 결과는 시·군·구(인신매매 업무 소관부서)에서 취합하여 시·도(인신매매 업무 소관부서)로 제출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중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시·도, 시·군·구 인신매매 업무 담당자는 의무교육 이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인신매매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강 권고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26년 1월 인 쇄
2026년 1월 발 행

발행인 : 원 민 경
발행처 :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6384
FAX / 02-2100-6484

인쇄처 : 중앙인쇄·기획
전화 / 02-736-2866~7

발간등록번호 11-1384000-100046-10